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90(Ⅱ)

외 교 부

1990년도

1015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1077
1016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당사국 회의. New York, 1990.1.16.	1078
1017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38차. Geneva, 1990.8.6.-24.	1079
1018	아파트헤이트 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 New York, 1989.12.12.-14.	1080
1019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16차. Rome, 1990.5.7.-9.	1082
1020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8차. Paris, 1990.5.14.-18.	1083
1021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서태평양지역 회의 제5차 및 제1차 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 Hangzhou(중국), 1990.2.5.-9.	1084
1022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총회, 제27차. 서울, 1990.11.6.-15.	1085
1023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준회원국 가입 및 협력 검토	1086
1024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총회, 제6차. Rotorua(뉴질랜드), 1990.11.28.-12.6.	1087
1025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 제16차. Lisbon(포르투갈), 1990.10.30.-11.2. 전2권 (V.1 5월-10.10.)	1088
1026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 제16차. Lisbon(포르투갈), 1990.10.30.-11.2. 전2권 (V.2 10.11.-11월)	1089
1027	LMES(육상이동자기구)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Bangkok, 1990.7.5.-7.	1090
1028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회의	1091
1029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총회, 제5차. 북경, 1990.11.12.-23.	1092
1030	북한의 IHO(국제수로기구) 가입 신청	1093
1031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 제38차. Madrid(스페인), 1990.4.2.-4.	1094
1032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 제7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0.11.27.-28.	1095
1033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새마을운동 연수	1096
1034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 제10차. Accra(가나), 1990.3.12.-21.	1097
1035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31-32차	1098
1036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2차. Noordwijk(네덜란드), 1990.7.2.-6.	1099
1037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분석 및 검체 채취방법 분과위원회, 제16차. Budapest(헝가리), 1988.11.14.-19.	1100
1038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아주지역 조정위원회. 제6-7차	1101
1039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 제5차. Washington D.C., 1990.10.14.-21.	1102
1040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103
1041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1104
1042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해체 및 청산	1105
1043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하 실무위원회(W.G.) 회의	1106
1044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3차. Washington D.C., 1990.2.5.-7.	1107
1045	환경문제에 관한 주요 개도국 회의. New Delhi, 1990.4.23.-25.	1108
104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Sundsvall(스웨덴), 1990.8.27.-30. 전2권 (V.1 기본문서)	1109
1047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Sundsvall(스웨덴), 1990.8.27.-30. 전2권 (V.2 결과보고)	1110
1048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1111
1049	IOM(국제이민기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1112
1050	IOM(국제이민기구) 세미나, 제9차. Geneva, 1990.11.4.-6.	1113
1051	ECPD(유럽평화개발센터)의 사업참여 요청	1114
1052	AIPO(ASEAN 의회기구) 총회, 제11차. Singapore, 1990.9.10.-15.	1115
1053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3차. Nicosia(사이프러스), 1990.4.2.-7.	1116
1054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4차.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90.10.15.-20.	1117
1055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8차. Stockholm(스웨덴), 1989.6.20.-22.	1118
1056	평화민주당(평민당)의 CDI(국제기독교민주당연합) 옵서버 가입	1119

1057	민주정의당(민정당)의 PDU(태평양민주연합)가입	1120
1058	A.I.(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인권보고서	1121
1059	A.I.(국제사면위원회) 진정서	1122
1060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123
1061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59차. Ottawa(캐나다), 1990.9.27.-10.3.	1125
1062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 제15차. 서울, 1990.6.11.-15.	1126
1063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1 사전준비)	1127
1064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2 영접계획)	1128
1065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3 결과보고)	1129
1066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4 회의 준비자료)	1130
1067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5 연설문)	1131
1068	ISO(국제표준화기구) 회의	1132
1069	UIT(국제사격연맹) 총회. Moscow, 1990.8.12.-16.	1133
1070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가입 및 분담금 문제	1134
1071	국제라이온스대회 서울 유치	1135
1072	EAHC(동부아시아수로위원회) 회의, 제5차. 동경, 1990.10.8.-12.	1136
1073	외국 정부기관과의 합의문서 체결 현황	1137
1074	기관간 약정: 국방부, 1985-89	1138
1075	기관간 약정: 국방부, 1990	1139
1076	각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 및 시행상의 문제	1140
1077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28.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1141
1078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1990.4.1. 발효(조약 제995호) (V.1 1988-89.2)	1142
1079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1990.4.1. 발효(조약 제995호) (V.2 1989.3월-90)	1143
1080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1986.12.26. 발효(조약 제907호) (V.1 1978-80)	1144
1081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1986.12.26. 발효(조약 제907호) (V.2 1981-83)	1145
1082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1986.12.26. 발효(조약 제907호) (V.3 1984-86)	1146
1083	한·피지 간의 대피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1990.5.1 Suva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001호)	1147
1084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16호)	1148
1085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문제	1149
1086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1150
1087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1151
1088	한·폴란드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1990.2.2. 발효(조약 제994호) ...	1152
1089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1990.11.23. Taipei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02호)	1154
1090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1155
1091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0호) (V.2 1990.9-12)	1156

1092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1990.5.19. 발효(조약 제1003호) (V.1 교섭철, 1988-89)	1157
1093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1990.5.19. 발효(조약 제1003호) (V.2 체결철, 1989-90)	1158
1094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159
1095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3호) (V.1 1980-86)	1161
1096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3호) (V.2 1989)	1162
1097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3호) (V.3 1990)	1163
1098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1164
1099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4호) (V.1 1965-66)	1165
1100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4호) (V.2 1967-71)	1166
1101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4호) (V.3 1972-74)	1167
1102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4호) (V.4 1975-76)	1168
1103	통신 관련 기간간 약정 체결 검토	1169
1104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공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1989.4.1. 발효(조약 제974호)	1170
1105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0.2.19. Port-au-Prince에서 서명: 1990.3.21. 발효(조약 제996호)	1171
1106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1990.7.1. 발효(조약 제1005호) (V.1 1984-85)	1172
1107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1990.7.1. 발효(조약 제1005호) (V.2 1986)	1173
1108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1990.7.1. 발효(조약 제1005호) (V.3 1987-90)	1174
1109	한·중미 도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1175
1110	한·미주기구(OAS) 간 협력관계 설정 및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한·OAS 간의 양해각서 체결	1176
1111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0. Brussels에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80호)	1177
1112	한·캐나다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0.9.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17호)	1178
1113	한·가나 문화교류 시행	1179
1114	한·이라크 문화·과학·교육협력 계획 추진	1180
1115	한·파키스탄 문화교류 시행	1181
1116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1182
1117	한·독일 간의 국립 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1183
1118	한·독일 간의 국립 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1184
1119	기관간 약정: 환경청	1185
1120	한·독일 간의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예방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	1186
1121	체육 관련기관 간 약정 체결교섭	1188
1122	한·일본 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90.5.25. 동경에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93호)	1189
1123	한국 특허청·소련 국가발명·발견 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1190
1124	한국 수산청·미국 Alaska 수산연구센터 간의 한·미국 과학자 옵서버 승선 관찰에 관한 약정	1191

1125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192
1126	통상 관련기관 간 약정	1193
1127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1990.2.2. 발효(조약 제993호)	1194
1128	한·루마니아 간의 무역협정, 1990.8.7. Bucharest에서 서명: 1990.12.21. 발효(조약 제1025호)	1195
1129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V.1 7-8월)	1196
1130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V.2 9-10월)	1197
1131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V.3 11-12월)	1198
1132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1 교섭철(1988))	1199
1133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2 교섭철(1989.1-7))	1200
1134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3 교섭철(1989.8-9.15.))	1201
1135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4 교섭철(1989.9.16.-10월))	1202
1136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5 교섭철(1989.11월-1990))	1203
1137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6 체결철)	1204
1138	한·미국 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85호)	1205
1139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9.12. 및 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1.1.1. 발효(외무부고시 제200호)	1206
1140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1 사전협상, 제1-3차)	1207
1141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2 사전협상, 제4-5차)	1208
1142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3 문안교섭)	1209
1143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4 체결)	1210
1144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1211
1145	과학기술협력 관련 기관간 약정	1212
1146	한·불가리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0.3.23 Sofia에서 서명: 1990.11.15. 발효 (조약 제1021호)	1213
1147	한·독일 간의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1214
1148	한·가나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90.6.14 서울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5호)	1215
1149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11.9. 서울에서 서명: 1990.8.21. 발효(조약 제1014호) (V.1 1977-86)	1216
1150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11.9. 서울에서 서명: 1990.8.21. 발효(조약 제1014호) (V.2 1987)	1217
1151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11.9. 서울에서 서명: 1990.8.21. 발효(조약 제1014호) (V.3 1988-90)	1218
1152	한·루마니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0.8.7. Bucharest에서 서명: 1990.12.21. 발효(조약 제1024호)	1219
1153	기관간 약정: 건설부	1220
1154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선택 의정서 채택, 1989.12.15.	1221

1155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1 1967-82)	1222
1156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2 1983-84)	1223
1157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3 1985)	1224
1158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4 1986.1-87.5)	1225
1159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	1226
1160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6 1988.7-10)	1227
1161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7 1988.11-89.6)	1228
1162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8 1989.7-10)	1229
1163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9 1989.11-90.3)	1230
1164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10 1990.3-12)	1231
1165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	1232
1166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1233
1167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 한국가입, 1990.8.9. 전2권 (V.1 1988-89)	1234
1168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 한국가입, 1990.8.9. 전2권 (V.2 1990)	1235
1169	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HS) 개정 조치 검토	1236
1170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237
1171	국제박람회회에 관한 협약 개정안	1238
1172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1239
1173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1240
1174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에 관한 제 문제	1241
1175	IHO(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	1242
1176	IMO(국제해사기구) 1974년 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London, 1990.3.26.-30.	1243
1177	1977년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의정서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 Torremolinos(스페인), 1990.10.15.-19.	1244
1178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 가입. 전2권, 1990.7.9. 발효(조약 제1009, 1010호) (V.1 1986-87)	1245
1179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 가입. 전2권, 1990.7.9. 발효(조약 제1009, 1010호) (V.2 1988-90)	1246
1180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1-2차. Vienna	1247
1181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약 수정 검토	1248
1182	특하절차상 마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한국 가입, 1988.3.28. 발효(조약 제947호)	1249
1183	특하협력조약 유보 철폐, 1990.9.1. 발효(외무부고시 제194호)	1250
1184	핵무기 해저설치금지조약(Sea-Bed조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9.9.19.-29.	1251
1185	세군무기 및 독소무기 협약 이행	1252
1186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자료	1253
1187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관련 검토	1254
1188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관련 실무 대책회의	1256
1189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0.3.5.-30.	1257
1190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0.8.13.-31.	1258
1191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 협약 가입 검토. 전2권 (V.1 1987-88)	1259
1192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 협약 가입 검토. 전2권 (V.2 1989-90)	1260
1193	남극 광물활동규제에 관한 협약 비준문제	1261
1194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5차. Paris, 1989.10.9.-20. 전2권 (V.1 기본문서)	1262
1195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5차. Paris, 1989.10.9.-20. 전2권 (V.2 자료)	1264
1196	제3국의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지위 취득 지지요청	1265
1197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검토	1266
1198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OPRC) 채택 외교회의. London, 1990.11.19.-30.	1267

1199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1990.5.23. 발효(외무부고시 제186호)	1268
1200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간의 Ogaden지역 분쟁	1269
1201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 간의 국경분쟁	1270
1202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1271
1203	각국의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임후보 지지요청	1272
1204	세계 법률가대회. 전2권 (V.1 1986-87.8)	1273
1205	세계 법률가대회. 전2권 (V.2 1987.9월-1990)	1274
1206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지역 상사중재센터 활동	1275
1207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218-223차. New Delhi, 1990.1.25.-12.27.	1276
1208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9차. 북경, 1990.3.12.-17. 전2권 (V.1 기본문서)	1277
120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9차. 북경, 1990.3.12.-17. 전2권 (V.2 자료)	1278
1210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산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11-12차	1279
1211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3-14차	1280
1212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지불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9-22차	1281
1213	ILA(국제법협회) 총회, 제64차. Gold Coast(호주), 1990.8.20.-25.	1282
1214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1283
1215	중국과의 광구중복 문제	1284
1216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1286
1217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전2권 (V.1 1985)	1287
1218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전2권 (V.2 1986-87)	1288
1219	중공 및 중국의 국호·국가·국가 사용문제	1289
1220	표류 중공인(19명) 구조 및 중국 망명사건. 전3권 (V.3 언론대책 및 보도)	1290
1221	남극기지 운영	1291
1222	국제남극학술심포지움, 제2차. 서울, 1990.9.17.-18.	1292
1223	통상대표부 유형 및 법적지위 검토	1293
1224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	1294
1225	국제법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1295
1226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88-89	1296
1227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90	1297
1228	서울평화상 제정 및 시상 추진	1298
1229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제1회 시상	1299
1230	미국 US-Asia지 창간호 한국 특집	1300
1231	주한 독일문화원 운영	1301
1232	일본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설치검토	1302
1233	한·독일 문화 공동위원회, 제7차. Bonn/Berlin, 1990.5.28.-30. 전2권 (V.1 기본문서)	1303
1234	한·독일 문화 공동위원회, 제7차. Bonn/Berlin, 1990.5.28.-30. 전2권 (V.2 자료)	1304
1235	한·헝가리 문화공동위원회, 제1차. Budapest, 1990.11.5.-6.	1305
1236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90.3.16.-17. 전2권 (V.1 기본문서)	1306
1237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90.3.16.-1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1307
1238	한·영국 문화 혼성위원회, 제4차. London, 1990.11.1.-2. 전2권 (V.1 기본문서)	1308
1239	한·영국 문화 혼성위원회, 제4차. London, 1990.11.1.-2. 전2권 (V.2 회의자료)	1309
1240	한·중국 문화교류	1310
1241	한·프랑스 문화교류	1311
1242	제주도 - Bali주(인도네시아) 간의 자매결연	1312
1243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 대책	1313
1244	한·일본 문화교류	1314
1245	한·리비아 문화협력	1315
1246	한·오만 문화교류	1316

1247	한·포르투갈 문화교류	1317
1248	한·소련 문화교류	1318
1249	세계 언론인 회의, 제11차. Moscow, 1990.4.9.-13.	1319
1250	한·유고슬라비아 문화교류	1320
1251	Stirm, Olivier 프랑스 관광장관 방한, 1989.9.8.-12.	1321
1252	몽골 문화관계 주요인사 방한	1322
1253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계획 및 실적	1323
1254	Mohamed ABDERRAHMANI 알제리 'El-Moudjahid'지 편집국장 방한, 1990.12.13.-16.	1324
1255	미얀마 언론인 방한	1325
1256	Katyal, K.K. 인도 'Hindu'지 New Delhi 지국장 방한, 1990.9.25.-30.	1326
1257	Naji AL-HADITHI 이라크 'Baghdad Observer'지 편집국장 방한, 1990.7.29.-8.3.	1327
1258	Ahmad, Zainon 말레이시아 'New Straits Times'지 편집부 국장 방한, 1990.11.18.-23.	1328
1259	Jobse, Rogier 네덜란드 국립응용과학연구소 사무총장 겸 자유기고가 방한, 1990.3.5.-12.	1329
1260	Kanwar Iqbal 파키스탄 'Daily Aftab'지 Islamabad 지국장 방한, 1989.5.2.-6.	1330
1261	Aleksandrowicz, Piotr 폴란드, 'Gazeta Bankowa'지 부편집장 방한, 1989.5.21.-28.	1331
1262	Khelawan, Vernon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Guardian지 편집고문 방한, 1989.12.3.-10.	1332
1263	소련 언론인 방한	1333
1264	Kurspahic, Kemal 유고슬라비아 'Oslobodjenje'지 편집장 방한, 1990.10.28.-11.2.	1334
1265	외국 언론기관과의 방송협력	1335
1266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1336
1267	태국 소재 한국학교 설립 지원	1337
1268	미국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 문제	1338
1269	한·소련 학술교류. 전2권 (V.1 대학기관)	1339
1270	한·소련 학술교류. 전2권 (V.2 연구기관)	1340
1271	Ruiz B. Rose Marie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총장 방한, 1989.11.13.-18.	1341
1272	Torres Moss, Alvaro Rolando 과테말라 Mariano Galvez 대학총장 방한, 1990.9.25.-29.	1342
1273	Fuad HASSAN 인도네시아 문교부장관 방한, 1990.6.25.-28.	1343
1274	자메이카 문교부장관 방한	1344
1275	Brucan, Silviu 루마니아 교수 방한, 1990.6.9.-16.	1345
1276	Oxnam, Robert B. 미국 Asia Society 회장 방한	1346
1277	김영진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교수 방한	1347
1278	Bouton, Marshall M. 미국 Asia Society 부회장 방한	1348
1279	Dalai Lama 중국 티베트 종교지도자 방한 초청문제	1349
1280	Carrucho, Peter 필리핀 관광장관 방한, 1989.9.8.-9.	1350
1281	1990년도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대이라크 참가 제재문제	1351
1282	정동성 체육부장관 동구 및 모로코 순방, 1990.5.19.-30.	1352
1283	불가리아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방한	1353
1284	한·소련 학생교류	1354
1285	아시아·태평양 어린이 회의	1355
1286	한·소련 체육교류	1356
1287	한·잠비아 체육협력	1357
1288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부의 사회단체 변경 등록	1358
1289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1359
129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비 전문인력 보강 검토	1361
1291	중국 경제 동향	1362
1292	EC(구주공동체)의 통신시장 개방 동향	1363
1293	일본 경제 동향	1364
1294	리비아 경제 정세	1365

1295	중남미 경제 정세	1366
1296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전3권 (V.1 1988-89.8)	1367
1297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전3권 (V.2 1989.9-12)	1368
1298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전3권 (V.3 1990)	1369
1299	EC(구주공동체) 통합(경제) 대응방안. 전2권 (V.1 1989.11-90.3)	1370
1300	EC(구주공동체) 통합(경제) 대응방안. 전2권 (V.2 1990.4-12)	1371
130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1372
1302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1373
1303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1374
1304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375
1305	한·지부티 경제협력	1376
1306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377
1307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989. 전2권 (V.1 1-5월)	1379
1308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989. 전2권 (V.2 6-12월)	1380
1309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990	1382
1310	한·이라크 경제·통상협력	1383
1311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1384
1312	한·일본 경제·통상협력	1385
1313	한·케냐 경제협력	1386
1314	한·몰타 경제협력	1388
1315	한·멕시코 경제·통상협력	1390
1316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1391
1317	한·네덜란드 경제협력	1393
1318	한·폴란드 경제·통상협력	1394
1319	한·포르투갈 경제협력	1395
1320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1396
1321	한·세네갈 경제·통상협력	1397
1322	한·수단 경제협력	1398
1323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협력	1399
1324	국제법학회 심포지엄: 한·소련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법적 제문제	1400
1325	한·소련 경제협력	1401
1326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1402
1327	한·유고슬라비아 경제·통상협력	1404
1328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제23차. 과천, 1990.8.30.-9.1. 전2권 (V.1 사전준비)	1405
1329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제23차. 과천, 1990.8.30.-9.1. 전2권 (V.2 회의결과)	1406
1330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1 사전교섭)	1407
1331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2 결과보고)	1408
1332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3 자료)	1410
1333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관세협력소위원회, 제1차. Budapest, 1989.12.8.	1411
1334	한·이란 공동위원회, 제3차. Tehran, 1990.2.17.-19. 전2권 (V.1 기본문서)	1413
1335	한·이란 공동위원회, 제3차. Tehran, 1990.2.17.-19. 전2권 (V.2 자료)	1414
1336	한·모로코 혼성위원회(자료), 제1차. 서울, 1986.10.29.-31.	1415
1337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제2차. Islamabad, 1990.3.13.-15. 전2권 (V.1 기본문서)	1416
1338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제2차. Islamabad, 1990.3.13.-15. 전2권 (V.2 자료)	1417
1339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4차. Tunis, 1986.6.16.-19. 전2권 (V.1 기본문서)	1418
1340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4차. Tunis, 1986.6.16.-19. 전2권 (V.2 자료)	1419
1341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1 기본문서)	1420
1342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2 부내 및 관계부처 자료)	1422

1343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3 결과보고)	1423
1344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4 회의자료 1(경제협의회))	1425
1345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5 회의자료 2(무역실무회의))	1426
1346	미국 지역 민·관 경제협의회	1427
1347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5차. 서울, 1990.10.30.	1428
1348	한·소련 경제인 합동회의, 제2차. 서울, 1990.3.22.-28.	1429
1349	미국·한 협회	1430
1350	한·미국 재계 총회, 제3차. 서울, 1990.6.17.-19.	1431
1351	한·미국 동남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5차. Charleston(미국), 1990.11.17.-20.	1432
135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최 소련 및 동구권 경제관계 세미나. Brussels(벨기에), 1990.4.4.-6.	1433
1353	남남협력위원회(The South Commission) 회의	1434
1354	WEF(세계경제협의회) 세계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90.2.2.-4.	1435
135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Hawaii, 1990.2.20.-22.	1436
1356	동해 연안국 경제협력 심포지엄, 제1차. Vladivostok(러시아), 1990.4.9.-12.	1437
1357	IPAC(국제공공센터) 최고경영자 회의. 서울, 1990.5.10.-11.	1439
1358	중소기업국제회의(ISBC), 제17차. 서울, 1990.9.16.-19.	1440
1359	경제사절단 동구 순방, 1990.3.31.-4.15. 전2권 (V.1 사전준비)	1441
1360	경제사절단 동구 순방, 1990.3.31.-4.15. 전2권 (V.2 결과보고)	1442
1361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 방한, 1990.10.15.-19.	1443
1362	루마니아 경제사절단 방한, 1990.6.24.-28.	1444
1363	르완다 경제사절단 방한(계획)	1445
1364	솔로몬제도 경제사절단 방한, 1990.4.21.-25.	1446
1365	통가 경제사절단 방한, 1990.7.1.-9.	1447
1366	권영각 건설부장관 중화민국 방문, 1990.7.30.-8.2.	1448
1367	Dunn, Dame Lydia 홍콩 무역발전국(TDC) 회장 방한, 1990.4.19.-21.	1449
1368	Ghurburrin, Beergoonath 모리셔스 부총리 겸 경제기획개발장관 방한, 1990.1.17.-20.	1450
1369	Hjelm-Wallen, Lena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장관 방한, 1990.10.9.-13.	1451
1370	베네수엘라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452
1371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원조	1453
1372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원조(무상원조), 1982-88	1454
1373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원조(무상원조), 1989-90	1455
1374	한국의 대가나 원조(무상원조)	1456
1375	한국의 대기니비사우 원조	1457
1376	이란 지진 피해 지원	1458
1377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원조(무상원조)	1459
1378	레바논 지원 국제기금	1460
1379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난민 원조	1461
1380	한국의 대모리타니아 원조(무상원조)	1462
1381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463
1382	한국의 대파키스탄 원조(무상원조)	1464
1383	한국의 대소말리아 원조(무상원조)	1465
1384	한국의 대수단 원조(무상원조)	1466
1385	한국의 대우간다 원조(무상원조)	1467
1386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1468
1387	헝가리 및 폴란드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G24 회의 참여문제. 전2권 (V.1 1989.7-10)	1469
1388	헝가리 및 폴란드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G24 회의 참여문제. 전2권 (V.2 1989.11-90.7)	1470
1389	대개발도상국 원조공여국 회의 참석 요청 및 대응	1472
1390	대기니비사우 원조공여국 회의. Lisbon(포르투갈), 1984.5.21.-23.	1473

1391	중화민국의 해외경제협력 발전기금 설립 및 운영	1474
1392	국내기업 중국 투자 및 지사 설립	1475
1393	중국계 기업 한국지사 설립	1476
1394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1478
1395	방글라데시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요청	1479
1396	대미얀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1480
1397	대코모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481
1398	대에콰도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1482
1399	대피지(Ba/Sigatoka 가교 및 접근도로 건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전2권 (V.2 1989-90)	1483
1400	대온두라스(지방도시 식수정화사업 등)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1484
1401	대인도네시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485
1402	대이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486
1403	대코트디부아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1487
1404	요르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요청	1488
1405	케냐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요청	1489
1406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전2권 (V.1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1490
1407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전2권 (V.2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	1491
1408	대페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492
1409	대소말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493
1410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1494
1411	페루 Lima시 전철 건설사업 참여문제	1495
1412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 전3권 (V.1 1986-87)	1496
1413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 전3권 (V.3 1989-90)	1497
1414	국내 기업의 소련 내 지사 설치	1498
1415	대중국 기술공여 사업	1499
1416	한·일본 기술협력	1500
1417	한·미국 해양지질연구 협력사업 추진	1501
1418	한·베네수엘라 간의 과학기술협력	1502
1419	한·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0.12.4.-8.	1503
1420	한·일본 도시개발 협력회의	1504
1421	세계과학장관회의 개최추진 검토	1505
1422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1506
1423	최형섭 산업과학기술연구원 고문 미얀마 방문, 1990.2.19.-22.	1507
1424	산업·기술협력 실무협의단 일본 방문, 1990.12.10.-13.	1508
1425	과학기술조사단 소련 방문, 1990.9.23.-10.1.	1509
1426	한·소련 수자원 개발협력	1510
1427	한·소련 자원협력	1511
1428	한·미국 에너지 실무협의회, 제7차. 서울, 1990.12.12.-13.	1512
1429	유엔 신·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위원회 회의, 제5차. New York, 1990.3.26.-4.5.	1513
1430	제1차 자원조사단 소련 방문, 1990.8.18.-9.2.	1514
1431	이라크·쿠웨이트사태에 따른 원유수급 대책	1515
1432	대우(주)의 미얀마 가스개발사업 참여	1516
1433	KODECO ENERGY(주)의 인도네시아 서Madura 유전사업 현황보고	1517
1434	리비아 원유 도입	1518
1435	Hisham M. NAZER 사우디 석유팅물부장관 방한, 1990.1.22.-25.	1519
1436	캐나다 원자로(CANDU형: 월성 2호기) 도입	1520
1437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 제1차. Canberra(호주), 1990.2.26.-3.2.	1521
1438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회의, 제1차. 동경, 1990.3.12.-13.	1522

1439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수역 내 조업문제	1523
1440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안	1524
1441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5차 유엔총회 결의안	1525
1442	베링공해 조업 규제	1526
1443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1527
1444	한·미얀마 어업협력	1528
1445	한·칠레 어업협력	1529
1446	한·콜롬비아 어업협력	1530
1447	한·캐나다 간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조업문제 협의	1531
1448	한·덴마크 어업협력	1532
1449	한·멕시코 어업협력	1533
1450	한·니카라과 어업협력	1534
1451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1535
1452	한·페루 어업협력	1536
1453	한·소말리아 어업협력	1537
1454	Falkland 주변수역 조업	1538
1455	한·소련 어업협력	1539
1456	미국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	1540
1457	한·미국 간의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전2권 (V.1 1-5월)	1541
1458	한·미국 간의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전2권 (V.2 6-12월)	1542
1459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어업관리협의 회의. 제2-3차	1543
1460	식물위생조사단 칠레 파견, 1990.3.3.-18.	1544
1461	Chit Swe 미얀마 농림수산부장관 방한, 1990.11.29.-12.5.	1545
1462	국제금융기구의 대중국 차관 중지 조치	1546
1463	IDA(국제개발협회) 제9차 재원보충을 위한 회의. 제2-6차	1547
1464	몽골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1548
1465	마셜군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1549
1466	터키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1550
1467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31차. Montreal, 1990.4.2.-4.	1551
1468	AFDB(아프리카개발은행)/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제26차 총회 및 제6차 재원보충회의	1552
146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9차. Paris, 1990.5.30.-31.	1553
147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조사	1554
147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3권 (V.1 Liaison Group 회의, 1989.10)	1555
147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3권 (V.2 Liaison Group 회의, 1989.12)	1556
147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3권 (V.3 보조금전문가 및 양자 협상, 1989.12-90.1)	1557
147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1 1-2월)	1558
147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2 3월)	1559
147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3 4월-5.10.)	1560
147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4 5.11.-31.)	1561
147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5 6-7월)	1562
147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6 8-9월)	1563
148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7 10월)	1564
148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8 11-12월)	1565
148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DAC(개발원조위원회) Tidewater 회의, 제24차. 고덴바(일본), 1990.7.14.-15.	1566
148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관계 전문가 회의. Paris, 1990.9.10.-11.	1567
1484	P. Vinde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방한, 1990.3.29.-4.1.	1568
1485	UR(우루과이라운드)/고위급 비공식 회의	1569
1486	UR(우루과이라운드)/개도국 비공식그룹 회의 및 평화그룹 회의	1570

1487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571
1488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당·정협의 및 토론회	1572
1489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전2권 (V.1 9-10월)	1574
1490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전2권 (V.2 11-12월)	1575
1491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1 사전준비)	1576
1492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2 회의결과)	1577
1493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3 회의 자료 및 향후 전망)	1578
1494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1 1-4월)	1579
1495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2 5-7월)	1581
1496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3 7-10월)	1582
1497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4 10-12월)	1583
1498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1585
1499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각국의 대한민국 Request List)	1586
1500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1587
1501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7-12월)	1588
1502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1589
1503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1 1-3월)	1590
1504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2 4-5월)	1591
1505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3 6월)	1593
1506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4 7월)	1594
1507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5 8월)	1595
1508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6 9월)	1596
1509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7 10월)	1597
1510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8 11-12월)	1599
1511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9 한국의 농업보호감축계획(Offer List) 제출)	1600
1512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10 각국의 Offer List 제출)	1601
1513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그룹 회의	1602
1514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8월)	1603
1515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9-12월)	1605
1516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협상그룹 회의	1606
1517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1608
1518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 회의. 전2권 (V.2 7-11월)	1609
1519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 회의. 전3권 (V.1 1-5월)	1610
1520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 회의. 전3권 (V.2 6-10월)	1611
1521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 회의. 전3권 (V.3 10-11월)	1612
1522	UR(우루과이라운드)/EPG(저명인사그룹) 회의	1613
1523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강화그룹 회의	1614
1524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	1616
1525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1 1-2월)	1618
1526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2 3-4월)	1619
1527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3 5-6월)	1620
1528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4 7-8월)	1621
1529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5 9-10월)	1622
1530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6 11-12월)	1623
1531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건설/노동력 이동)	1624
1532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관광, Audio/Visual)	1625
1533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교통)	1626
1534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전2권 (V.1 3-9월)	1627

1535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전2권 (V.2 10-12월)	1628
1536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전문직 서비스)	1629
1537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통신)	1630
1538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그룹 회의. 전2권 (V.1 1-7월)	1632
1539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그룹 회의. 전2권 (V.2 8-12월)	1634
1540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1636
1541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1637
1542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7-11월)	1638
1543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1639
1544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전3권 (V.1 1980-86)	1640
1545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전3권 (V.2 1987)	1641
1546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전3권 (V.3 1988-90)	1642
1547	소련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추진	1643
1548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 Geneva, 1990.7.12.	1644
1549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미국 내 동향	1646
1550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1648
155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기타 회의 및 일반사항	1649
155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1 사전준비(I))	1650
155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2 사전준비(II))	1652
155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3 BOP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1653
15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4 회의참석 및 결과)	1654
155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655
155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1657
15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658
15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참가국위원회) 회의	1659
1560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참가국 위원회. Geneva	1660
1561	CCC(관세협력이사회) 기타 위원회 회의	1661
1562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5-6차. Brussels(벨기에)	1662
1563	CCC(관세협력이사회) 단일신고서식(SGD) 전문가그룹 회의	1663
1564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9-20차. Brussels(벨기에)	1664
1565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정책위원회 회의	1665
1566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6-9차	1666
1567	주요국의 수출자율규제 현황	1667
1568	한국의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 순연	1668
1569	미국 슈퍼 301조에 대한 인도의 대응방향	1669
1570	일본의 소고기 수입 자유화 문제	1670
1571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및 한국의 대응	1671
1572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 법안 추진	1672
1573	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조치	1673
1574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1674
1575	국내 산업보호제도 관련 해외사례 조사	1675
1576	한·미국 통상관계 전망 및 대책	1676
1577	한·덴마크 통상협력	1677
1578	한국의 외국인 자동차 과세에 대한 EC(구주공동체)의 개선요청	1678

1579	일본·EC(구주공동체) 간의 반덤핑 분쟁	1679
1580	독일의 한국 신발류 수출자율규제 요청	1680
1581	한·인도 통상협력	1681
1582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문제	1682
1583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약(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전2권 (V.1 사전협약)	1683
1584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약(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전2권 (V.2 협의결과 및 최종보고서)	1684
1585	한·몽골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	1685
1586	한·미국 간의 수입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협의	1686
1587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687
1588	한·미국 간의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품목 협의. 전3권 (V.1 1988-89.9)	1688
1589	한·미국 간의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품목 협의. 전3권 (V.2 1989.10-90.2)	1689
1590	한·미국 간의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품목 협의. 전3권 (V.3 합의서한 및 부속서(서명본))	1690
1591	미국 수출 한국산 배 통관문제	1691
1592	미국산 자몽 발암물질 검출 문제	1692
1593	한·미국 금융협력. 전3권 (V.1 1989-90.3)	1693
1594	한·미국 금융협력. 전3권 (V.2 1990.4-9)	1694
1595	한·미국 금융협력. 전3권 (V.3 1990.10-12)	1695
1596	한·미국 세관분야협력 일반	1696
1597	미국산 pecan 수입 규제	1697
1598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 동향. 전3권 (V.1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업체 의견서)	1698
1599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 동향. 전3권 (V.2 미국 업계 청원내용 검토)	1699
1600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 동향. 전3권 (V.3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1700
1601	한국무역협회 발간 '미국의 대한민국 불공정 무역사례 보고서' 관련 검토	1701
1602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협정 운영	1702
1603	한·미국 간 섬유쿼터 운영	1704
1604	유고슬라비아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문제	1705
1605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제1차. 서울, 1990.8.9.	1706
1606	한·미국 통상장관회담, 제13차. Washington D.C., 1990.2.12.-13. 전2권 (V.1 1988-89)	1707
1607	한·미국 통상장관회담, 제13차. Washington D.C., 1990.2.12.-13. 전2권 (V.2 1990)	1708
1608	한·미국 간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 Washington D.C., 1990.3.13.-14.	1709
1609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9.9.6.-8.	1710
1610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6차. 서울, 1990.9.13.-14.	1712
1611	GATT(관세및무역예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관련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상	1713
1612	한·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 제5차. Taipei, 1989.8.22.-25.	1714
1613	한·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 제6차. 서울, 1990.9.11.-13.	1715
1614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협상. 전3권 (V.1 1987-88)	1716
1615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협상. 전3권 (V.2 1989)	1717
1616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협상. 전3권 (V.3 1990)	1718
1617	한·EC(구주공동체)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 서울, 1990.5.30.-6.1.	1719
1618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1 기본문서)	1720
1619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2 자료)	1721
1620	1990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서울, 1990.5.8.-9.	1722
1621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1 사전준비)	1723
1622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724
1623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3 회의자료)	1725
1624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서울, 1990.5.23.-25.	1726
1625	한·미국 무역통계 실무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90.7.12.-13.	1727
1626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SOM(고위관리회의) 계기 한·미국 통상관계 협의. 서울, 1990.10.23.-26.	1728

1627	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730
1628	세계통상장관회의. Puerto Vallarta(멕시코), 1990.4.18.-20.	1731
1629	한태평양지역 관세청장회의, 제2차. 서울, 1990.9.10.-12.	1732
1630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1 1990.1-5)	1733
1631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2 미국, 일본 COCOM 관계자 방한)	1734
1632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3 1990.6)	1735
1633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4 1990.7-12)	1736
1634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협의회, 제7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0.5.28.-29.	1737
1635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협의회, 제8차. Hong Kong, 1990.9.6.-7.	1738
1636	투자 및 통상사절단 캐나다 방문, 1990.6.13.-25.	1739
1637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1740
1638	투자조사단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파견, 1990.9.6.-11.	1741
1639	통상사절단 소련 방문, 1990.6.2.-16.	1742
1640	민간 무역사절단 소련 및 동구 순방	1743
1641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744
1642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 중남미 파견	1745
1643	일본 수입촉진단 방한	1746
1644	토고 투자유치사절단 방한, 1990.2.12.-16.	1747
1645	미국 통상사절단 방한	1748
1646	박필수 상공부장관 멕시코 방문, 1990.4.17.-25.	1749
1647	조순 대통령 특사 미국 방문, 1990.12.11.-20.	1750
1648	Denis, Germain A.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차관보 방한, 1990.5.14.-15.	1751
1649	Shannon, Gerald E. 주제네바 캐나다대사 방한, 1990.11.10.-14.	1752
1650	Lamarche, Roberto L. 도미니카공화국 상공부차관 방한, 1989.11.16.-19.	1753
1651	Cresson, Edith 프랑스 유럽담당장관 방한, 1990.9.23.-25.	1754
1652	Five, Kaci Kullmann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90.9.24.-28.	1755
1653	Ridley, Nicholas 영국 상공장관 방한, 1990.5.7.-10.	1756
1654	미국 의회 통상관계 보좌관단 방한	1757
1655	미국 통상관계 인사 방한	1759
1656	한·미국 간의 초콜릿 관세 인하 문제	1760
1657	수입 농산물 검역 시행	1761
1658	대망(주)의 대가나 어망공장 플랜트 수출 손해배상 문제	1762
1659	대일본 시멘트 수출	1763
1660	터키의 한국산 상품(P.S.F.) 반덤핑 조사문제	1764
1661	각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1765
1662	한·미국 방위산업 협력	1766
1663	대라이베리아 방위산업물자 수출문제	1767
1664	대중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1768
1665	대잠수함 헬리콥터 구매	1769
1666	방위산업제품 수입에 관한 대미국 협조	1770
1667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771
1668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전2권 (V.1 1-5월)	1772
1669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전2권 (V.2 6-12월)	1773
1670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	1774
1671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전2권 (V.2 후속조치(88.6-89.1))	1775
167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1776
1673	미국·일본 통신문제 동향	1777
1674	미국의 한국산 합섬스웨터 반덤핑 제소	1778

1675	한·미국 간 무역분쟁 처리	1779
1676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허가문제	1780
1677	한·오스트리아 항공협력	1781
1678	한·바레인 항공협력	1782
1979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5차. 서울, 1988.11.15.-17.	1783
1680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6차. Taipei, 1989.12.5.-8.	1784
1681	한·중국 항공협력. 전2권 (V.1 1988-89)	1785
1682	한·중국 항공협력. 전2권 (V.2 1990)	1786
1683	한진해운의 프랑스 내 지점 설치	1787
1684	한·일본 항공협력. 전2권 (V.1 1-8월)	1788
1685	한·일본 항공협력. 전2권 (V.2 9-12월)	1789
1686	한·일본 해운협력	1790
1687	한·노르웨이 해운협력	1791
1688	한·사우디아라비아 항공협력	1792
1689	한·수리남 항공협력	1793
1690	한·소련 전자·통신협력	1794
1691	한·소련 항공협력. 전2권 (V.1 1-2월)	1795
1692	한·소련 항공협력. 전2권 (V.2 3-11월)	1796
1693	한·소련 해운협력	1797
1694	한·미국 해운협력	1798
1695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2차. 서울, 1990.5.30.-31.	1799
1696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0.6.25.-26.	1800
1697	라이베리아 해운사절단 방한, 1990.3.25.-28.	1801
1698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2권 (V.1 1988-89.2)	1802
1699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2권 (V.2 1989.3-90.4)	1803
1700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 1989.1-6)	1805
1701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2 1989.7-8)	1806
1702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3 1989.9)	1808
1703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4 1989.10)	1809
1704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5 1989.11(I))	1811
1705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6 1989.11(II))	1812
1706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7 1989.12)	1813
1707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8 1990.1-2(감사서한))	1814
1708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9 1990.2-4)	1815
1709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0 1990.2-5(BIE 조사단 방한, 90.4.7.-14.))	1816
1710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1 1990.4-5(I))	1817
1711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2 1990.5(II))	1818
1712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3 1990.6)	1819
1713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4 1990.7-12)	1820
1714	서울 국제무역박람회(SITRA '90), 1990.10.30.-11.5.	1821
1715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822
1716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참가. 전3권 (V.1 1987-89년 상반기)	1823
1717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참가. 전3권 (V.2 1989 하반기)	1824
1718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참가. 전3권 (V.3 1990)	1825
1719	중국 개최 전시회 참가	1826
1720	오키나와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개최	1827
1721	오사카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개관	1828

1722	미국산품 특별전시회(US Product Show-Seoul) 개최	1829
1723	Sofia(불가리아) KOTRA 무역관 개설	1830
1724	Prague(체코) KOTRA 무역관 개설	1831
1725	동Berlin(동독) KOTRA 무역관 개설	1832
1726	Bucharest(루마니아) KOTRA 무역관 개설, 1990.10.1.	1833
1727	Atlanta(미국 Georgia주) KOTRA 사무소 개설 검토	1834
172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1835
1729	주한 소련 및 동구권 무역사무소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문제	1836
1730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제14차. New York, 1990.10.1.-3.	1837
1731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6차. Houston, 1990.7.9.-11. 전2권 (V.1 3월-7.6.)	1838
1732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6차. Houston, 1990.7.9.-11. 전2권 (V.2 7.7.-8월)	1839
1733	TCDC(개발도상국가기술협력) 회의. Jakarta, 1990.7.30.-8.3.	1840
1734	콜롬보플랜 마약 자문계획 지원	1841
1735	콜롬보플랜 일반사항	1842
1736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3차. Bangkok(태국), 1990.11.22.-28. 전2권 (V.1 기본문서)	1843
1737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3차. Bangkok(태국), 1990.11.22.-28. 전2권 (V.2 자료)	1844
173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1 기본문서 I(1월-6.25.))	1845
1739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2 기본문서 II(6.26.-7.11.))	1846
174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3 기본문서 III(7.12.-8월))	1847
174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4 의제별 자료)	1848
1742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5 말씀자료 및 언론보도) ..	1849
1743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6 결과보고)	1850
1744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Vancouver(캐나다), 1990.9.11.-12.	1851
174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환경장관회의. Bangkok, 1990.10.15.-16.	1852
1746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0.3.7.-8. 전3권 (V.1 기본문서 1(1989-90.1.25.))	1853
1747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0.3.7.-8. 전3권 (V.2 기본문서 2(1990.1.26.-3월))	1854
1748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0.3.7.-8. 전3권 (V.3 참고자료)	1855
1749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2차. Singapore, 1990.5.21.-22. 전2권 (V.1 기본문서)	1856
1750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2차. Singapore, 1990.5.21.-22. 전2권 (V.2 참가보고서 및 자료)	1858
1751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0.10.22.-23. 전3권 (V.1 기본문서 1(1990.7.-10.14.))	1859
1752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0.10.22.-23. 전3권 (V.2 기본문서 2(1990.10.15.-11월))	1860
1753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0.10.22.-23. 전3권 (V.3 참고자료)	1861
1754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역 및 투자데이터(TID) 검토 간사국 회의. 동경, 1990.7.9.	1862
175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WGTP(무역진흥 실무그룹) 회의, 제1차. 서울, 1990.6.28.-29.	1863
1756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투자 및 기술이전 실무그룹 회의, 제1차. 동경, 1990.11.8.-9.	1864
175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1865
1758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KOPEC(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866

1759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제23차. 동경, 1990.5.20.-23. 전2권 (V.1 기본문서)	1867
1760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제23차. 동경, 1990.5.20.-23. 전2권 (V.2 회의자료)	1868
1761	태평양연안국협의회(PACRIM) 회의. San Francisco	1869
1762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1870
1763	카리브지역 연구회의	1871
1764	EC(구주공동체)와 태평양 연안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구주 의회 결의안, 1989.3.17.	1872
1765	Andriessen, Frans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0.3.24.-27.	1873
1766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1874
1767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2차. Geneva	1875
1768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3차. Geneva	1877
1769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4차. London, 1990.6.20.-26.	1878
1770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2차. London, 1990.6.27.-29.	1879
177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1880
1772	아프가니스탄 사태	1882
1773	알제리 정세	1883
1774	알바니아 정세	1884
1775	아르헨티나 정세	1885
1776	호주 정세	1886
1777	방글라데시 정세	1887
1778	불가리아 정세. 전2권 (V.1 1-8월)	1889
1779	불가리아 정세. 전2권 (V.2 9-12월)	1890
1780	미얀마 정세. 전2권 (V.1 1989-90.8)	1891
1781	미얀마 정세. 전2권 (V.2 1990.9-12)	1892
1782	보츠와나 정세	1893
1783	브루나이 정세	1894
1784	볼리비아 정세	1895
1785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1 1-6월)	1896
1786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2 7-12월)	1897
1787	중화민국 정세	1898
1788	칠레 정세	1899
1789	카메룬 정세, 1988	1900
1790	카메룬 정세, 1989-90	1901
1791	캐나다 Quebec주 분리·독립 문제	1902
1792	캐나다 정세	1903
1793	코스타리카 정세	1904
1794	중국 티베트(西藏)자치구 문제	1905
1795	중국 정세	1906
179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세	1908
1797	카보베르데 정세	1909
1798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10
1799	덴마크 정세	1911
1800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1912
1801	에콰도르 정세	1913
1802	이집트 정세	1914
1803	엘살바도르 정세	1915
1804	에티오피아 정세, 1989	1916
1805	에티오피아 정세, 1990	1917
1806	에티오피아 Eritrea지역 분리·독립문제	1918

1807	프랑스 정세	1919
1808	가봉 정세	1920
1809	독일 통일과정 및 경제사회 통합 연구	1921
1810	독일 정세. 전6권 (V.1 1989.5-90.2)	1922
1811	독일 정세. 전6권 (V.2 1990.3)	1924
1812	독일 정세. 전6권 (V.3 1990.4-5)	1925
1813	독일 정세. 전6권 (V.4 1990.6-8)	1926
1814	독일 정세. 전6권 (V.5 1990.9)	1927
1815	독일 정세. 전6권 (V.6 1990.10-12)	1928
1816	가나 정세	1929
1817	과테말라 정세	1930
1818	헝가리 정세	1931
1819	홍콩 장래문제, 1984-85	1932
1820	홍콩 장래문제, 1990	1933
1821	교황청 정세	1934
1822	아이티 정세	1935
1823	인도 정세	1936
1824	인도네시아 정세	1937
1825	이라크 정세	1939
1826	이란 정세	1940
1827	이스라엘 정세	1941
1828	이탈리아 정세	1942
1829	코트디부아르 정세	1943
1830	일본 정치 정세. 전2권 (V.1 중의원 총선 및 제2차 가이후(海部) 내각 출범)	1944
1831	일본 정치 정세. 전2권 (V.2 제3차 가이후 내각 출범)	1945
1832	일본 정세	1946
1833	케냐 정세, 1988	1947
1834	케냐 정세, 1989-90	1949
1835	쿠웨이트 정세	1950
1836	라이베리아 정세. 전2권 (V.1 1-6월)	1951
1837	라이베리아 정세. 전2권 (V.2 7-12월)	1952
1838	라오스 정세	1953
1839	리비아 정세	1954
1840	말레이시아 정세	1955
1841	몽골 정세	1956
1842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 승인 문제	1957
1843	모리타니아 정세	1958
1844	몰타 정세	1959
1845	나이지리아 정세	1960
1846	나미비아 독립. 전3권 (V.1 1989.1-6)	1961
1847	나미비아 독립. 전3권 (V.2 1989.7-12)	1962
1848	나미비아 독립. 전3권 (V.3 1990)	1963
1849	노르웨이 정세	1964
1850	니카라과 정세	1965
1851	파키스탄 정세	1966
1852	폴란드 정세	1967
1853	파나마 사태. 전6권 (V.1 1988)	1968
1854	파나마 사태. 전6권 (V.2 1989.1-6)	1969

1855	파나마 사태. 전6권 (V.3 1989.7-9)	1970
1856	파나마 사태. 전6권 (V.4 1989.10-11)	1971
1857	파나마 사태. 전6권 (V.5 1989.12)	1972
1858	파나마 사태. 전6권 (V.6 1990)	1973
1859	파푸아뉴기니 정세	1974
1860	포르투갈 정세	1975
1861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국제기구 가입 노력	1976
1862	페루 정세	1977
1863	루마니아 정세, 1981-85	1978
1864	루마니아 정세, 1989-90	1979
1865	르완다 정세	1980
1866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1981
1867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1982
1868	세네갈 정세, 1986-89	1983
1869	세네갈 정세, 1990	1984
1870	수단 정세	1985
1871	수리남 정세	1986
1872	스위스 정세	1987
1873	튀니지 정세	1988
1874	상투메프린시페 정세	1989
1875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1990
1876	탄자니아 정세	1991
1877	영국 정세	1992
1878	소련 정치 정세	1993
1879	소련의 극동개발계획	1994
1880	제28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1990.7.2.-13.	1995
1881	대소련 경제협력 관련 각국의 입장	1996
1882	미국 의회 동향 일반. 전2권 (V.1 1989.12-90.6)	1997
1883	미국 의회 동향 일반. 전2권 (V.2 1990.7-12)	1998
1884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 선거), 1990.11.6. 전2권 (V.1 선거 동향, 6-10월)	1999
1885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 선거), 1990.11.6. 전2권 (V.2 선거 동향, 11월)	2000
1886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2001
1887	우루과이 정세	2002
1888	베트남 정세	2003
1889	베네수엘라 정세	2005
1890	중남미 통합	2006
1891	중미지역 국가 정세	2007
1892	유고슬라비아 정세	2008
1893	남·북예멘 통합, 1990.5.22. 전2권 (V.1 1989)	2009
1894	남·북예멘 통합, 1990.5.22. 전2권 (V.2 1990)	2010
1895	자이르 정세	2011
1896	네팔·인도 관계	2012
1897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 관련 총영사관 보고	2013
1898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 일반	2014
1899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와 재일본 민단 관계	2015
1900	재일본 한국인 방한	2016
1901	재소련 한인동포 현황	2017
1902	세계 한인 상공인대회, 제1회. 서울, 1990.3.18.-20.	2018

1903	재칠레 한국인 학교 설립	2019
1904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2020
1905	미국 이민	2021
1906	남미 소재 농장관리 방안	2022
1907	한·벨기에 영사 협조	2023
1908	중국의 아국 조난선원 송환	2024
1909	중국인 불법입국 처리대책	2025
1910	한·프랑스 영사 협조	2027
1911	한·이스라엘 간의 영사협력	2028
1912	한·바누아투 간의 영사협력	2029
1913	한국선박 베트남 억류사건	2030
1914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문제	2031
1915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인 처리 문제	2032
1916	베트남 난민의 송출 문제	2033
1917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	2034
1918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대처방안 검토	2035
1919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지침 개선	2036
1920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	2037
1921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1 1990.1-4)	2038
192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2 1990.5-12)	2039
1923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전2권 (V.1 1983-84.7)	2040
1924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전2권 (V.2 1984.8월-1990)	2041
1925	주헝가리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2042
1926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하자보수	2043
1927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준공. 전2권 (V.1 1989)	2044
1928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준공. 전2권 (V.2 1990)	2045
1929	주터키대사관 청사 및 관저부지 매입 검토	2046
1930	주캐나다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2047
1931	주Cairo(이집트)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1 1987)	2048
1932	주Cairo(이집트)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2 1988-90)	2049
1933	주독일대사관 청사 부속건물 매입 검토	2050
1934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2051
1935	주네덜란드대사관 청사 매입	2052
1936	주포르투갈대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1 1987-88)	2053
1937	주포르투갈대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2 1989-90)	2054
1938	주스위스대사관 청사 매입	2055
1939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용 건물 매입. 전2권 (V.1 1986-87)	2056
1940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용 건물 매입. 전2권 (V.2 1990)	2057
1941	주Sao Paulo(브라질)총영사관 관저 매입	2058
1942	주Toronto(캐나다)총영사관 관저 매입	2059
1943	주피지대사관 관저 매입 검토	2060
1944	주Agana(Guam)총영사관 관저 매입	2061
1945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청사 임차	2062
1946	주미국대사관 구관저 처분 및 직원주택 매입	2063
1947	Vanderdonckt, Paul 주한 벨기에대사관 상무관 간첩사건	2064
1948	안상근 재독일 반한 동포 간첩사건	2065
1949	김형규 재독일 동포 간첩사건	2066
1950	김대중 귀국. 전8권 (V.6 2.13.-28.)	2067

1951	김대중 귀국. 전8권 (V.7 3-12월)	2068
1952	학원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 반응	2069
1953	대일본 외교 강화 방안	2071
1954	한·미국 정부일반	2072
1955	한·우루과이 정부일반	2073
1956	호요방(胡耀邦) 중공 당 총서기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 1985.4.13.-21.	2074
1957	화국봉(華國鋒) 중공 수상 일본 방문, 1980.5.27.-6.1.	2075
1958	중공·소련 관계	2076
1959	Van den Broek 네덜란드 외무장관 중공 방문, 1985.1.15.-21.	2077
1960	중공의 대한 태도 조사	2078
1961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1 1-3월)	2079
1962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2 4-8월)	2081
1963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3 9-11월)	2082
1964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4 12월)	2083
1965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 1월-3.18.)	2084
1966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2 3.20.-27.)	2085
1967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3 4월)	2087
1968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4 5-6월)	2089
1969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5 7-9월)	2091
1970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6 10-11월)	2093
1971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7 12월)	2094
1972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9 청문록, 3.15.-16.)	2095
1973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0 청문록, 3.21.-22.)	2096
1974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1 청문회 자료, 3.21.)	2097
1975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2 청문록, 4.20.)	2098
1976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3 청문록, 6.1.)	2099
1977	주한 미국문화원(서울) 점거 농성사건, 1985.5.23.-26. 전2권 (V.2 농성해제 후 및 언론보도)	2100
1978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및 광주 문화원 점거사건	2101
1979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전5권 (V.1 예비회담, 1-6차, 1978.7.7.-15.)	2102
1980	Alva Castro, Luis 페루 수상 겸 경제장관 방한, 1985.10.7.-11.	2103
198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한국 직원 등 중공 방문	2104
1982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 수리남 및 우루과이 방문, 1985.2.20.-3.7.	2105
1983	북한·콜롬비아 관계	2106
1984	북한·에과도르 관계	2107
1985	북한·중미 관계	2108
1986	국제기구회의의 참가 중공 인사 방한 초청	2110
198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3차. Rome, 1985.11.9.-28. 전2권 (V.2 이사국 입후보)	2111
1988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	2112
1989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2113
1990	유공(주)의 수단 석유 합작개발 사업 참여	2114
1991	프랑스 핵연료 화학 재처리 시설 도입문제. 전3권 (V.3 언론보도)	2115
1992	한·중공 대륙붕 문제	2116
1993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KIWI)	2118
1994	유양수 교통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1980.2.22.-3.7.	2119
1995	중공 국내정세 및 권력구조	2120
	부록	2121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10 / 1-89

1989~90년 중 한국의 대남아공 유류금수 위반사례에 대한 정부간 감시그룹의 지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대남아공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의 한국 위반사례 지적

- 대남아공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의장은 1989.7.3. 주유엔대사 앞 서한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World Eminence가 1988.10.22. 한국 온산항을 출발하여 1988.11~12월 중 유류공급차 남아공에 입항했던 정보를 알리면서 총회 결의(대남아공 유류공급 완전 중단 조치 협조)에 따른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
- 외무부는 7.21. 상기 선박의 온산항 입출항 사실 확인 및 관계서류 제공 등을 관련부처에 요청
- 외무부는 8.4. 법무부 및 관세청 조회 결과를 동 그룹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주유엔대사에 지시

2. 대남아공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의 추가 위반사례 지적에 대한 정부 대응

- 상기 유엔감시그룹 의장은 1989.7.23. 주유엔대사 앞 서한에서 한국이 관련된 대남아공 유류금수 위반혐의 사례 9건을 통보
- 외무부는 9.20. 및 9.27. 관계부처 조회 결과 남아공과의 유류 수출입 관계 사항은 전혀 없음을 주유엔대사에게 회보
- 주유엔대사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혐의사례 9건에 대해 유엔총회 보고서에 기록될 가능성을 보고
- 주유엔대사는 10.26. 개최된 감시그룹 회의에서 한국 관련 케이스를 포함한 남아공 유류금수 사항에 대해서는 금차 총회보고서에 일괄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6개월 내 추가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
- 유엔 감시그룹의장은 12.4. 남아공 유류금수 관련 한국의 법규 또는 행정조치 통보를 요청
- 외무부는 1990.1.4. 한국은 남아공의 아파트헤이트 정책을 강력히 규탄, 대남아공 유류금수 조치의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한국은 관련 위반사례 없음으로 통보하도록 유엔대표부에 지시
- 유엔 감시그룹의장은 주유엔대사 앞 해명공한에서 위반혐의 사례 삭제 등 조치 결과를 통보

107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당사국 회의. New York, 1990.1.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11 / 1-97

정부는 1990.1.16. 뉴욕에서 개최된 제13차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회의에 최락천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90.1.16. 제13차 당사국 회의 뉴욕 개최
- 1990.1.19. 임기만료 예정인 CERD(인종차별철폐위) 위원 9인 선출 목적
 - CERD는 18명의 위원(임기 4년)으로 구성되어 매 2년마다 9명의 위원을 신규 선출

1078

2. 회의 결과

- CERD 위원 개편을 위한 투표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나이지리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가나, 파키스탄, 쿠바 등 9개국 후보가 선출됨.
- 한국은 CERD 위원 입후보 지지 요청국 중에서 한국의 CEDAW(여성차별철폐위) 위원 입후보 지지와 연계하여 지지국을 우선 선정함.
 - 한국이 지지한 9개국 후보 중 기니를 제외한 8개국 후보 당선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38차. Geneva, 1990.8.6.-2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12 / 1-150

정부는 1990.8.6.~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8차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이랑 주네바대표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개요

- 1965년 제20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채택되었으며 1989.9월 현재 가입국 수는 128개국이며, 한국은 1978.8.8. 가입함.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당사국 중 임기 4년의 전문가로 18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2회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활동 결과를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함.
- 회원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매 2년마다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취한 입법·사법·행정적 제반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CERD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2. 한국대표단 활동내용

- 제5차 보고서(1988.3월 제출) 및 제6차 보고서(1990.7월 제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CERD 위원들은 한국 보고서의 내용 및 체제가 제반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평가하고 협약 제4조(인종차별행위 처벌)의 적용을 위한 국내법상 추가 입법 필요성, 주한미군의 지위, 외국인을 위한 법적장치, 노동권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현황 등에 대해 질문함.
 - 협약 제4조의 내용은 한국 형법과 민법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법적장치 관련 서울올림픽 기간중 수만의 외국관광객이 방한하였으나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보도나 고발이 한건도 없었다고 답변

3. 한국의 제6차 보고서 주요 내용

- 제6공화국 이래 한국정부의 기본권 확대 노력 및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반대
- 1990.4월 한국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 한국인의 동질성 등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입법화는 불필요
- 한국 거주 외국인 통계 및 외국인의 국내에서 지위 보장 근거
- 인종차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보호, 구제조치 등 법제도

아파트헤이트 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 New York, 1989.12.12.-1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13 / 1-86

정부는 1989.12.12.~14. 뉴욕에서 개최된 아파트헤이트(Apartheid) 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에 박쌍용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채의석 주유엔 차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제44차 유엔총회는 1989.11.13.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면서 12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1989.12.12.~14. 아파트헤이트 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2. 파견 목적

- 외무부는 1989.11.28. 아파트헤이트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제3세계 비동맹 무대에서 한국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3. 아파트헤이트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관련 결의안을 준수함.

4. 주요 결과

- 유엔 특별총회는 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해 준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구성하고 유엔회원국 이외 아파트헤이트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비정부 기구나 개인이 동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아프리카국가들과 비동맹국가 대표들은 연설을 통해 아파트헤이트가 근절되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대남아공 경제제재 조치를 지속하여 남아공이 민족해방단체와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함.
- 유엔 특별총회는 아래 요지의 선언서를 채택함.
 - 남부아프리카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아파트헤이트가 근절되어야 하며 남아프리카가 비인종차별 민주국가가 되어야 함.
 - 협상의 여건은 정치범의 무조건 석방, 시 및 읍에서 군대 철수, 비상사태 해제 및 정치활동 규제법 폐지 등임.
 - 대남아공 무기금수 조치를 지속해야 함.



5. 평가

- 상기 선언문 채택은 나미비아 독립과정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남아공이 국제적 압력에 의해 다소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상황에 맞추어 유엔이 아파르트헤이트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16차. Rome, 1990.5.7.-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6 / 14 / 1-80

정부는 1990.5.7.~9. 로마에서 개최된 제16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에 이태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53개국 회원국 대표, 참관인 등
 - 북한은 2명의 대표 참석

1082

2. 주요 의제

- 의장 및 부의장단 선출
- 1990~91년도 이사회 이사 선거
- 임시의제 선택 및 참관인 승인
- 이사회의 재무보고서 검토와 인준 등

3. 정부 훈령

- 실질 토의에 참가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참가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것
- 정부의 문화재 보존복구 현황을 홍보하고 복구 전문가 양성을 촉구할 것
- 북한대표단이 한국을 비방할 경우 답변권 행사를 통해 대응할 것
- 1990~91년도 이사회 이사에 입후보한 이태녕 교수가 피선될 수 있도록 지지 교섭할 것

4. 주요 결과

- 캐나다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사무총장은 1990~9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함.
- 이사회의 재무보고서 및 1988 및 1989년도 이사회의 사업보고서가 인준됨.
- 23명의 이사 선거에 이태녕 교수가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스리랑카 후보가 당선되고 대부분 이사는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차지함.

5. 건의 사항

- 한국 문화재 보존의 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생 파견, ICCROM과의 공동세미나 등 연구사업 수행 등을 건의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8차. Paris, 1990.5.14.-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6 / 15 / 1-106

정부는 1990.5.14.~18. 파리에서 개최된 제58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김옥경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IOC 총회 개요

- 1924년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우역(牛疫) 방제를 위하여 28개 대표들이 국제수역회의 기구를 창설하고 사무국을 1927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하였으며, 매년 총회가 개최됨.
- 한국은 1953년 가입하였으며 1990.5월 현재 회원국은 114개국

2. 참가국

- 87개 회원국, 11개 국제기구 대표 등 총 250명

3. 주요 의제

- 소 반추수의 질병(Pestes des petits ruminants), 레트로 바이러스(Retrovirus)에 의한 질병, 회원국의 가축위생 현황 보고

4. 정부 훈령

-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회원국과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가축 위생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최신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가축방역분야의 기술 향상과 정책수행에 기여하도록 할 것

5. 주요 결과

- 전체회의에서는 몰타,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3개국의 가입을 환영하고 IOE 사무총장의 업무보고, 중소 초식동물의 질병(PPR)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
- 극동태평양 아시아지역 위원회에서는 가축질병 진단기술 보급을 위한 국제센터를 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필요한 재정은 스웨덴, 캐나다, 일본, ADB(아시아개발은행)이 부담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들은 우역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감소 추세이나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포성 구내염은 중남미와 이탈리아, 홍콩, 마카오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콜레라(ASF)는 이탈리아, 남미 일부지역에서 발병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한국대표는 1987년부터 오제스키병이 한국에서 발병하고 있다고 보고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 서태평양지역 회의 제5차 및 제1차 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 Hangzhou(중국), 1990.2.5.-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6 / 16 / 1-85

정부는 1990.2.1.~9.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제5차 WESTPAC(서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1차 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에 박주석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자원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WESTPAC의 개요

- 서부태평양지역 내 회원국(19개국)간 해양개발 및 환경 보존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간 협의기구

1084

2. 제5차 WESTPAC의 및 제1차 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

- 정부는 1989.12.29. 서태평양지역 내 해양연구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역내 국가들과 해양연구 관련 협력증진을 위해 WESTPAC 회의 및 제1차 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 제15차 IOC 총회는 1989.7월 기존의 WESTPAC의 대신 서태평양 소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할 것을 결정한 후 처음으로 동 소위원회를 개최함.

3. 회의 의제

- WESTPAC 과제와 활동, 의장단 선출, 소위원회 기능 및 활동계획, 신규제안, 개도국의 해양 과학 수행능력 제고, 예산 심의, 다른 유엔기구와의 협력방안 등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총회, 제27차. 서울, 1990.11.6.-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 / 1-247

정부는 1990.11.6.~15. 서울에서 개최된 제27차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총회에 김지동 동력자원연구소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8개 회원국 정부관리 및 학자
-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소련, 영국, 미국 등 8개 지원국 학자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대표

2. 주요 토의내용

- 탄화수소자원 프로그램
- 해저 및 해안 광물자원 프로그램
- 항공자력도 편찬계획
- 지질과학조사
- 제4기 지질 프로그램
- 범지구적 환경변화
- 해상안정 및 해양환경

3. 회의 참가 성과

- 회원국 및 지원국들과의 해저자원 관계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 회원국들의 석유를 비롯한 해저자원개발 현황 파악
- 해저자원 개발 및 해안지대 관리에 관한 국제기술동향 파악
- 한국의 해저광물자원 탐사 및 항공자력 탐사, 제4기 지질연구 활동 홍보

108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준회원국 가입 및 협력 검토

생산연도 1981-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0-77 / 2 / 1-115

1981~90년 중 검토해온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준회원국 가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임.

1. 주태국대사는 1981.9월 SEASAMO 사무국장이 9.17.자 공한으로 한국의 SEASAMO 준회원국 가입을 재차 촉구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사무국장은 1983.8월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재차 요청

1086

2. SEAMEO 개관

- 창설: 1965.11.30.
- 회원국
 - 정회원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8개국
 - 준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3개국
- 목적: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동남아지역 국가간의 협조

3. SEASAMO 사무국은 1982.12월 주태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제18차 회의에 한국 정부의 옵서버 파견을 요청해 옴.

- 문교부는 회의 참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참

4. SEASAMO 사무국은 1984.1월 주태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제19차 회의에 한국 정부의 옵서버 파견을 요청해 옴.

- 문교부는 한국의 옵서버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주태국대사가 개회식에 참석

5. 주태국대사는 1989.8월 SEASAMO 사무국장이 한국의 SEASAMO 준회원국 가입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남아지역 문교장관기구는 아세안 창설에 앞서 1965년에 구성되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가 훈련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6. 외무부는 1990.1월 문교부에 동남아 문교교육장관기구에 대한 협력지원 및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문교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함.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총회, 제6차. Rotorua(뉴질랜드), 1990.11.28.-1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3 / 1-85

정부는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개최된 제20차 APPTC(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센터) 관리 이사회(1990.11.26.~27.)와 제6차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총회(1990.11.28.~12.6.)에 권영수 체신부 강원체신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1994년 UPU(만국우편연합) 서울 총회 개최 대비, 총회 조직 운영 관찰 및 경험 축적
- APPU 회원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교환
- 제6차 APPU 총회 부의장직 수행

2. 주요 의제

- 제6차 APPU 총회
 - APPU 조약 개정
 - 아태지역 우편서비스 질적 향상
 - 아태지역 특급우편서비스(EMS) 교환 취급국 확장
- 제20차 APPTC 관리이사회
 - 아태우정연수센터 과정 편성 및 정원 배정
 - 교직원 인사 및 신임교관 선출

108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 제16차. Lisbon(포르투갈), 1990.10.30.-11.2. 전2권 (V.1 5월-10.1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4 / 1-356

1990.10.30.~11.2.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6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INTELSAT 법률전문가로 추천된 한국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교섭 활동임.

1. INTELSAT 법률전문가 개요

- 구성: 법률전문가 11인 및 교체전문가 11인(무보수, 비상근)
- 기능: 기구협정 및 운영협정과 관련한 법적분쟁 해결
- 선출: INTELSAT 가입국 정기총회에서 정전문가 11인 및 교체전문가 11인 등 총 22인 선출 (비밀투표 및 지역배분 원칙)

2. 법률전문가 입후보 필요성

- 수년 내 발사계획 중인 통신위성 업무를 우주통신법 차원에서 사전 대처
- 국제무대에서의 우주통신 법률전문가 육성 및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장려

3. 한국 입후보 지지교섭 활동

- 외무부는 1990.8.31. 박원화 국제기구과장의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 관련, 동인의 피선을 위한 지지교섭 활동 전개를 재외공관에 지시함.
-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 22개 국가 중 칠레, 나이지리아, 호주, 콜롬비아, 태국, 핀란드,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자국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송부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 제16차. Lisbon(포르투갈), 1990.10.30.-11.2. 전2권 (V.2 10.11.-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5 / 1-351

정부는 1990.10.30.~11.2,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6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 총회에 주철기 주포르투갈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NTELSAT 법률전문가에 입후보한 박원화 후보의 당선 지지교섭
- 위성통신 발전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2.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법률전문가 피선

- 1990.10.31. 실시된 22개국의 입후보자에 대한 법률전문가 선출 투표에서 박원화 후보를 포함한 아래 국가 11명의 법률전문가가 선출됨.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 박원화 후보의 INTELSAT 법률전문가 피선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전문직 진출을 통한 국위선양 효과와 국제위성통신분야에서의 국제분쟁에 대비한 한국인의 진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평가됨.

108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LMES(육상이동지구국)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Bangkok, 1990.7.5.-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6 / 1-144

정부는 1990.7.5.~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LMES(육상이동지구국)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교체대표: 이관현 체신부 사무관)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육상이동 위성지구국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용을 촉진할 장·단기 조치에 대한 토의 및 자료수집
- 육상이동 위성통신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 및 정책의 조사

2. 정부 훈령

- LMES에 관한 실질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정책과 입장이 회의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 할 것
-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회의 전체의사에 따르도록 할 것
- 한국에서는 허가받은 지구국이 없음을 감안, 각국의 관계규정 및 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제도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회의 결과

- 결의사항
 - LMES 활용은 역내 국가들의 무역증진, 지역 내 장거리 운송촉진 등 중요한 이익이 됨을 고려하여 LMES의 활용 및 사용촉진이 바람직함.
- 권고사항
 - LMES 자유이동 및 사용허용을 위한 당사국 내 또는 당사국간 단기적인 일방적인 조치 권고
 - LMES 자유이동 및 사용허용을 위한 결의안 채택 또는 장기적인 조치로서 국제협약의 초안 작성 등 역내 단일 해결책 수립이나 공동 접근방법 탐색을 위한 다자조치 모색 검토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7 / 1-96

정부는 1989.11.22.~28.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3차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 협의체) 관리위원회에 이인학 체신부 통신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각국의 전기통신 발전정책 및 아태지역 통신망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한국의 전기 통신망의 지속적인 개발·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회의 기간중 한국 통신기술 발전현황을 적절히 홍보하여 한국 통신산업의 아태지역 진출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함.
- 관리위원회 의당 및 부의장 선출: 회원국 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

2. 회의 결과(의장단 선출)

- 의장은 인도네시아 후보가 비밀투표를 통해 당선됨.
- 부의장은 신임 의장이 인도 후보를 지명함.
- 차기 APT 사무국장에 태국의 후보가 재선됨.

3. 1990.2월 체신부는 APT 세미나의 국내 유치계획을 밝히고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해 옴.

- 세미나 주제: 전기 통신망의 디지털화
- 개최기간: 1990.6.26.~29.
- 회의 규모: 참가인원 약 100여 명
 - APT 회원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등 21개 국가
 - APT 준회원국: 홍콩, 쿡아일랜드 2개국
 - APT 협찬회원: 13개 전기통신 운영회사
- 1989.11.28. 필리핀에서 개최된 APT 관리위원회는 상기 세미나의 서울 개최를 결정

109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약) 총회, 제5차. 북경, 1990.11.12.-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8 / 1-78

정부는 1990.11.10.~23.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약) 총회 및 제14차 관리위원회에 오의진 주칠리핀대사관 건설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협의체의 재무보고 및 예산심의
- 협의체의 일반정책과 원칙심의
- 연구반 활동 및 세미나 연구 등에 대한 발표
- 사무차장 선출

2. 정부 훈령

- APT 목적 수행을 위한 향후 3년간 일반정책 및 원칙심의에 한국입장 반영
- 참가 회원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및 관련 자료수집

3. 외무부는 제5차 APT 총회 및 제14차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일본 기존 우호관계 및 일본 측 후보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일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1990.10월 일본 측에 공식 통보함.

북한의 IHO(국제수로기구) 가입 신청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9 / 1-31

1. 주프랑스대사는 1986.10.14. 주프랑스 모로코대사관이 9.19.자로 북한이 IHO(국제수로기구)에 가입신청한 사실을 알리고 동 가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여부를 문의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6.11.4. 정부는 6.23 선언에 입각한 문호개발원칙에 따라 북한의 동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나 전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 가입에 대한 교통부의 입장을 문의함.
3. 외무부는 1986.11.7. 주벨기에대사에게 상기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한국입장을 통보함.
 -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북한의 IHO 가입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모나코 측에 가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방침임.

109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 제38차. Madrid(스페인), 1990.4.2.-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0 / 1-55

제38차 UN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가 1990.4.2.~4. 마드리드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20개 회원국, 17개 옵서버국, 국제기구(ILO) 대표

2. 참가 경위

- 1990.2.28. 주스페인대사, 동 회의 개최 문서를 송부
- 1990.3.12. 외무부, 교통부에 회의 개최 통보 및 참석 요청

3. 회의 의제

- 사무총장 보고
- 예산 및 재정문제
- 1990~91년도 주요 사업: 기술협력, 정보, 통계, 교육, 안전, 환경 등
- 지역위원회

4. 회의 결정사항

- 기술협력, 통계, 교육훈련 등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 제7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0.11.27.-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1 / 1-62

정부는 1990.11.27.~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에 홍순영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홍순영 주말레이시아대사 총회 의장 피선 추진
- 윤석범 사무국장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 관심 표명 및 노고 치하
- APDC 재정자립도 제고 등 APDC 운영 전반에 관한 토의 시 한국입장 적극 반영

2. 훈령

- 한국 수석대표의 총회 의장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번 회의를 계기로 APDC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함.
- 금번 총회가 윤석범 교수의 사무국장 피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점을 감안, 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의 APDC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
- 한국이 APDC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45,000달러에서 80,000달러로 증액시킨 사실을 환기 시키고 향후 APDC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할 것

3. 회의 결과

- 쟁점이 된 운영위 재정소위에서는 APDC의 재정난 타개 방안 협의
- 총회는 의장의 조정으로 각 대표가 자국 정부에 심각한 재정난을 보고하여 분담금 증액을 권고기로 하고 추후 사무국장은 분담금 증액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하기로 결정
- APDC 활동보고서, 자문활동보고, 연수사업 등 논란 없이 승인 또는 채택

4. 관찰

- 윤석범 사무국장의 신규 회원국 유치 및 사업활성화 노력 평가
- APDC 재정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 및 개선조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여금 증액에 소극적인 반응

109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새마을운동 연수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2 / 1-174

1986~90년 중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의 새마을운동 연수 관련 내용임.

1. 1986.10월 AARRO의 새마을 연수 요청사항

- 1985년 및 1986년 2차례 실시된 새마을 연수를 1987년 이후에도 매회 25명을 대상으로 실시
- 매회 2만 달러의 특별지원금 계속지원(목적: 연수생 왕복항공료 일부충당)
- 1987년 중 농촌경영 워크숍 개최

1096

2. 한·AARRO 간 새마을 연수의 정례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1986.12.12.)

- AARRO 새마을 연수 실시 목적
 -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개도국 및 미수교국들에 대한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전파
 - 새마을 교육을 통한 남남협력 증진 및 대미수교국 관계개선 기여
- 양해각서 주요내용
 - 1988년부터 격년제로 개도국 농업훈련생 25명 범위 내 새마을 연수 실시
 - 연수생 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는 한국 정부 부담(외무부 및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3. 양해각서에 따른 AARRO 새마을 연수 실적

- 제1차 연수(1988.11.7.~14.): 9개국 15명 참가
- 제2차 연수(1990.6.18.~24.): 8개국 13명 참가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 제10차. Accra(가나), 1990.3.12.-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3 / 1-207

정부는 1990.3.15.~20.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10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에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총회 개요

- 제10차 AARRO 총회: 1990.3.15.~20
- 제34차 AARRO 집행위: 1990.3.13.~14.
- 제35차 AARRO 집행위: 1990.3.21.

2. 참가국

- 22개 회원국 중 8개국 참석, 옵서버로 이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참석

3. 주요 회의 결과

- 기술위원회의 조직개편에 관한 권고안 토의
 - 총회 개최 및 기능, 사무총장의 지명, 집행위 역할은 현행대로 유지
 - 사무국의 기능 확대 필요, 정치적 자문 필요성은 인정, 공동기금설치 필요성 인정
- 회원국 참여강화 및 분담금 체납 해소방안 논의
- 1991~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가나 아크라에 서부아프리카지역 사무소 설치 결정
- 제11차 총회 개최지를 말레이시아로 확정

109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31-32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4 / 1-200

정부는 제31~32차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에 문희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31차 이사회(1989.5.30.~6.2., 서울)

- 참석자
 - APO 회원국 15개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총 64명 참석
- 주요 회의 결과
 - 1989.1.24.~27. 싱가포르 개최 제29차 워크숍 토의사항 심의 확정
 - APO 전략기획위원회 건의문 의결
 - 1990년도 및 1991년도 사업계획 확정(한국 주관사업은 연도별 4개씩)
 - 1991년 태국에서 국제생산성대회 개최 결정
 - APO 5개년 사업계획 확정

2. 제32차 이사회(1990.6.12.~15., 피지 Nadi)

- 주요 회의 결과
 - 1990.2.5. 태국 치앙마이 개최 제30차 워크숍 토의사항 심의 확정
 - APO 사무총장의 의무사항 강화 및 연임 승인
 - 한국대표 제1부의장에 피선
 - 1991년도 제33차 이사회에 소련의 옵서버 자격 참가 결정
 - 1991.9.3.~6. 태국에서 국제생산성대회 개최 결정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2차. Noordwijk(네덜란드), 1990.7.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77 / 15 / 1-181

정부는 1990.6.25.~7.7.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개최된 제42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하성환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9개 회원국, 1개 옵서버국, 5개 정부간 기구, 68개 비정부간 기구

2. 주요 의제

- 상업포경에 대한 5년간의 모라토리엄 조치 종료에 따른 포경 재개문제 협의
- 유자망 조업이 고래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연안서식 소형 경류에 대한 IWC 관할권 확대문제
- 원주민 포경 계속 문제, 인도적 포경법 개발문제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 그동안 한국이 포경국이 아니면서도 일본 등 포경국과 유사한 태도와 발언으로 반포경국들의 반감을 유발했던 점에 유의하여 한국 국익과 직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는 유보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반포경국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
- 소련, 중국 등 공산권 대표들 및 제3세계 대표들과 폭넓게 접촉, 상업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 해제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4. 결정사항

- 포괄적 자원평가 실시
- 과학조사를 위한 특별허가 신청
- 연안소형 포경문제 협의 지속
- 회원국들의 내년도 분담금은 기존 산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분담금은 18,336파운드임.

5. IWC 동향

- 현 IWC 체제하에서 상업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자원평가 결과 자원량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나 포괄적 자원평가를 위한 재정 및 인력확보 등이 어렵고 반포경국들의 평가지연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상업포경 재재 전망은 매우 어두운 것으로 사료됨.

109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분석 및 검체 채취방법 분과위원회, 제16차. Budapest(헝가리), 1988.11.14.-19.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7 / 16 / 1-144

정부는 1988.11.14.~19.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16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분석 및 검체 채취방법 분과위원회에 이재관 보건사회부 식품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7개국, AOAC 등 8개 국제기구

1100

2. 주요 의제

- CODEX 시료채취방법의 성격과 목적, 지침서
- 실중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계획
- CODEX 규격 중 시료채취 방법의 인증
- 오염물질의 일반분석 방법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및 건의사항

- 대표단 발표
 - 불량참기름의 분석을 위한 실험 결과
 - CODEX 시료채취 방법 관련, 개도국의 형편 감안 권고적 사항 필요성 강조
 - 국제기구 간 협의회 및 실무자 협의회에 개도국의 적극 참여 필요성 제기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간 유통이 빈번함을 감안, 이의 분석방법이나 검출방법 고려 필요
- 건의사항
 - CODEX 규격이 유럽 및 중동에서 널리 사용되고 향후 국제간 식품유통 확대 추세임을 감안, CODEX 규격 및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정보수집 필요
 - 국내에 CODEX 위원회 설치 운영
 -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 적극 참여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아주지역 조정위원회. 제6-7차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1 / 1-99

정부는 제6~7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아주지역 조정위원회에 백덕우 위생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6차 회의(1988.1.26.~2.1., 인도네시아 발리)

- 참가자
 - 11개국, 관련기관, 옵서버 등 67명
- 주요 의제
 - 식품통제 조직의 강화
 - 각국의 국제식품규격 및 잔류농약 수락 현황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의 식품안전성 상황보고
 - 각국의 식품안전성 상황보고 등
- 건의사항
 - CODEX 식품규격의 점진적 수락
 - 식품 중의 잔류농약 허용치에 대한 수락 등

2. 제7차 회의(1990.2.5.~12., 태국 치앙마이)

- 주요 의제
 - CODEX 규격 잔류농약 허용치 설정 문제
 - CODEX 사업에 대한 보완적인 FAO, WHO 사업에 관한 정보
 -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증제도
 - 국제교역에서 식품의 방사능 오염규제 방식 등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 제5차. Washington D.C., 1990.10.14.-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2 / 1-37

정부는 1990.10.16.~19.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FAO(세계식량농업기구) / WHO(세계보건기구)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에 송지봉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수의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 목적

- 동물약품 잔류 분과위원회 각 의제별 토의에 참석
 - 동물약품 잔류처리에 관한 국제간 협력 동향 및 자료를 파악 수집
- 세계 각국의 농약 잔류허용량 설정 및 규제에 관한 실태 파악
 -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에 적극 참여

2. 정부 훈령

- 동물약품 잔류에 관한 문제점 토의 및 동물약품의 사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
- 세부 훈령
 - 의제채택
 - 리포트 보고자 임명
 - 위원회 활동보고
 - 동물약품 최대 잔류 허용수준 초안에 대한 검토
 - 미국 정부의 동물약품 편람에 대한 진행 보고
 - 식품 중 동물약품 잔류 규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고
 - 시료 채취와 분석방법에 대한 보호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78 / 3 / 1-331

정부는 1990.10.22.~11.2.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9차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 총회 및 과학위원회 회의에 박주석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자원부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회원국(21개국), 옵서버(핀란드, 우루과이, 네덜란드), ASOC 등 협약가입국, 국제기구

2. 훈령 요지

-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엄격한 보존 조치 반대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규제 조치의 국내적 이행상황 설명

3. 주요 회의 결과 및 성과

- 과학위원회 회의 결과
 - 개별어류자원 및 동 자원의 총어획 허용량 평가 계속 이행
 - 크릴 어획 시 치어의 부수적 어획방지와 치어보호 노력 강화
- CCAMLR 회의 결과
 - 크릴 어획에 대한 예방조치 채택 저지(한국, 일본, 소련 반대)
 -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부수적 피해를 평가 및 제거(연승 어업, 유자망 어업)
 - 신규어업 관련 보존조치 채택 연기
 - 검사제도 이행에 대한 한국의 조치내용 설명

110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 번호 2020-78 / 4 / 1-20

1990년 중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관련 사항임.

1. 수산청은 1990.1.13.자 공문으로 ICSEAF 협정 개정안의 수락여부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해옴.

- 개정 조문
 - EC(구주공동체) 가입허용
 - EC 회원국 중 현 협정 체약국인 국가(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협정 탈퇴
 - 회계연도를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총 17개 회원국 중 개정안 수락통보 현황
 - EC 가입허용 조문: 7개국
 - 회계연도 변경 조문: 6개국

2. 외무부는 1990.2.21.자 공문으로 ICSEAF 협정 개정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검토 결과를 수산청에 통보함.

- EC 가입 건
 - EC가 가입할 경우 1개국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어획할당량은 EC 5개국의 합계를 주장하고 있어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분담금 문제에 관한 한 EC 측이 어획할당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여타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임.
 - EC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해서는 EC가 각종 국제수산기구에 단일가입을 추진 성사시켜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함.
- 회계연도 변경 건
 -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락 통보하여도 무방할 것임.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해체 및 청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78 / 5 / 1-145

1990년 중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해체 및 청산에 관한 내용임

1. ICSEAF 개요

- ICSEAF는 1971.10월 발족된 정부간 기구이며 아프리카 서해안 콩고강이남의 동남대서양 수역에 대한 어업자원 보호, 어획량의 국별 할당 및 규제업무 관장
 - ICSEAF 회원국(17): 한국, 일본, 이라크, 이란, 쿠바, 불가리아, 프랑스, 서독, 동독,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소련, 앙골라, 남아공
- 한국은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 신어장 개발을 위해 1981.1.9. ICSEAF에 가입하고 연간 11,000~13,000달러의 분담금 납부

2. ICSEAF 해체

- 1990.3월 나미비아 독립 후 ICSEAF 관할수역 중 핵심부분이 나미비아의 경제수역으로 선언됨에 따라 동 기구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자 회원국들은 5월 스페인에서 ICSEAF 특별회의를 개최, ICSEAF를 조기 해체하기로 합의하고 해체를 위한 의정서 초안 채택
 - 상기 회의에는 스페인, 한국,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대표 및 옵서버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EC(구주공동체)가 참가
- 주스페인대사는 7.19. ICSEAF 해체식에 참석하고 해체 의정서에 서명
 - 상기 해체식에는 16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여 해체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불참한 이라크의 추가 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명 시한을 1990.11.30.까지로 연장함.

110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하 실무위원회(W.G.)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6 / 1-101

1989~90년 중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실무회의가 개최됨.

1. 개최 개요

- 1988.11월 UNEP(유엔환경계획)와 WMO(세계기상기구)는 IPCC 설치
- IPCC는 3차례 본회의 개최, 1990.8월 제4차 본회의를 앞두고 산하 4개 실무위원회 소집
 - 환경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정보와 영향을 평가한 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의 초안 작업

1106

2. 제1실무위원회(1990.5.23.~25., 영국 원저)

- 회의 목적: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한 권위 있는 보고서 작성
- 주요 토의내용
 - 지구온난화 효과 공동인식, 기상관측에 대한 확신성 부여 및 각종 불확실성도 인정
 - 기후변화 모델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
 - 실무위의 기본관측 내용과 대책

3. 제2실무위원회(1990.5.28.~31., 모스크바)

- 회의 목적: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사회,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논의
- 주요 토의내용
 - 지구온난화 충격 시나리오의 과학적 입증 여부
 - 지구온난화 효과의 분야별 충격(농업 및 임업, 생태계, 수문학 및 수자원, 인간정주, 해양 등)

4. 특별위원회(1990.5.31.~6.1., 제네바)

- 회의 목적: IPCC 활동에 개도국들의 적극 참여 유도 방안 논의
- 주요 토의내용
 - 개도국의 IPCC 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
 - 특별위 보고서 수정 내용(개도국의 참여 저해요인, 필요한 조치 및 향후 계획)

5. 제3실무위원회(1990.6.5.~7., 제네바)

- 회의 목적: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충격을 근거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 주요 토의내용
 - IPCC 보고서 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발표, 3개 분야별 토의
 - 자원이용 및 관리소위 보고서, 기후변화 대처 위한 경제 조치, 기술개발 및 이전 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3차. Washington D.C., 1990.2.5.-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7 / 1-99

1990년 중 제3차 IPCC(기후변화정부간패널) 회의 및 제3실무위원회와 온난화 방지에 관한 세계과학·환경·경제 장관급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제3차 IPCC(기후변화정부간 패널) 및 제3실무위원회(1990.2.5.~9.)

- 대표단(옵서버 대표)
 - 진해술 주미국대사관 과학관
- 주요 훈령
 - 제3차 IPCC 회의 및 에너지 및 산업에 관한 제3실무위원회 내용 및 결과 파악
 - 1990.11월 제네바 세계기후회의 시 체결 예정인 “온난화 방지 국제협약” 초안 토의내용 파악
 - 미국 정부의 온난화 방지에 관한 세계과학·환경·경제 장관급 회의 개최 내용 파악
 - IPCC 내 선진·개도국 간 환경문제에 관한 입장차이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 파악 등
- 주요 회의 결과
 - 56개국 대표 및 16개 국제기구 대표 및 옵서버 참석
 - 1989년 20차례의 실무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 토의
 - 개도국의 의견 수렴 메커니즘 강조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지적

2. 온난화 방지에 관한 세계과학·환경·경제 장관급 회의(1990.4.17.~18.)

- 회의 목적
 - 지구환경변화에 관한 과학·경제·연구계의 상호이해 증진
 - 조직적인 국제연구 노력 제고 및 범세계적 정보교환 네트워크 형성 추진
- 회의 성과
 - 지구환경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학적 규명 및 연구에 기여
 - 지구환경변화 관련 경제적 요인 및 환경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이해하는 계기 제공
 - 과학·환경·경제·에너지 등 전문분야 인사들이 문제해결 모색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환경문제에 관한 주요 개도국 회의. New Delhi, 1990.4.23.-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8 / 1-176

정부는 1990.4.23.~25.,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주요 개발도상국 회의에 김형철 환경처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목적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특히 1990.6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회의와 1990.11월 세계기후회의 대비 주요 개도국의 공동입장 정립

1108

2. 참석국

- 인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니, 사우디, 브라질 등 22개국

3. 토의 의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 방향 및 개도국 입장
-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 생물학적 다양성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개도국간 상호협약 및 공동입장 정립

4. 주요 회의 결과 및 동향

- 환경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을 방조하는 개도국 간 환경문제가 새로운 남북 문제화
- 프레온, CO2 배출 규제에 대한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선진국들의 재정·기술지원 불가피
- 참가국들은 주요 개도국간 실무협의회 개최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은 차기회의 개최 제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Sundsvall(스웨덴), 1990.8.27.-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9 / 1-296

1990.8.27.~30. 스웨덴 순스발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회의 대비 관계부처 실무회의가 1990.8.10. 개최됨.

1. 참석자

- 외무부 국제기구과장(회의 주재)
- 환경처 대기제도과장, 동자부·상공부·농수산부·중앙기상대 관계관, 21세기 위원회 위원

2. 각 부처 입장

- 환경처
 - 현재까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의 주요 기여자인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강력 요청
- 동력자원부
 - 기후협약 채택 시 부정적 파급효과 막대
- 중앙기상대
 - 온실가스 관측과 한국 기후변화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조사하기 위한 정책 필요
- 농수산부
 -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적응 품종 개발에 과감한 투자 필요
- 상공부
 - 각국의 1인당 가스 배출량은 국가 간 차이 없이 균등 규제 필요

110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Sundsvall(스웨덴), 1990.8.27.-30.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10 / 1-179

정부는 1990.8.27.~30. 스웨덴 순스발에서 개최된 제4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회의에 주수영 환경처 대기제도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처 방안에 대해 IPCC 3개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채택
-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향후 IPCC 활동계획에 관한 보고서 채택

1110

2. 참가자

- 80여 개국 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대표 약 450명 참가

3. 파견 목적

- IPCC 최종보고서 채택 관련 기상변화 문제에 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공동 대처방안 논의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 문제에 관한 한국입장 적극 반영
- 1990.11월 제2차 기후회의에서 채택될 각료선언문 내용 및 세계기후협약 초안 내용 토의

4. 회의 결과

- IPCC 활동 종합평가 및 결론 문안 수정과정에서 선진·개도국 간 입장대립으로 원안 채택에는 실패
 - 4개 실무위원회 정책요록을 취합, 기존 4개 실무위원회 요록과 함께 최종보고서 채택
- 주요 쟁점
 - 기상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목표에는 같은 의견
 - 각국이 처한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이해 상충
 -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의 강조 여부
 -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필요성에 관한 표현
- IPCC 보고서의 구성
 - 기상변화에 과학적 평가
 - 기상변화의 잠재적 영향
 - 대응전략의 수립
 - 개도국의 참여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
 - 개관 및 결론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11 / 1-189

1984~90년 중 한국의 ICDO(국제민방위기구) 분담금 지불과 ICDO 가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ICDO 분담금 문제

- 1964년 대한적십자사가 국제민방위기구에 가입 후, 1972년 내무부에 인계
- 1972년 ICDO는 민간기구에서 정부간 기구로 전환
 - 한국은 1973년 동 기구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분담금 지불을 정지
- ICDO는 한국을 계속 회원국으로 간주하고 수시로 분담금 지불을 요구
 -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므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수차례 강력 항의
(한국은 1972년 신 헌장을 비준하지 않아 비회원국임.)
- 1982년 ICDO 사무총장은 미납된 분담금을 청산한 후 공식 탈퇴의사 통보 요청
 -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 기구에서 송부하는 서한 반송조치

2. 한국의 국제민방위기구 가입 문제 검토

- 1987.2.16. ICDO 사무총장 명의 서한으로 한국의 가입을 공식 요청
 - 1989년 현재 정회원국 42개국, 사무국은 제네바 소재
- 1989.12.22. ICDO 사무총장은 서한으로 한국의 가입을 재요청
- 1990.4월 정부(내무부)는 동 기구 가입의사가 없음을 ICDO 사무총장에게 회신

111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IOM(국제이민기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0-78 / 12 / 1-91

1989~90년 중 IOM(국제이민기구) 제59~61차 이사회 및 제76~78차 집행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59차 이사회(1989.11.28.~29.) 및 제76차 집행위원회(1989.11.27.)

- 주요 회의 결과
 - 소말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가나, 짐바브웨 5개국 옵서버 가입
 - 1989.11.24. 개정 헌장의 발효를 확인하는 결의안 채택
 - IOM의 효율성 증진 과제에 대한 토의
 - IOM 장래 역할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2. 제60차 이사회(1990.5.23.) 및 제77차 집행위원회(1990.5.22.)

- 주요 회의 결과
 - 캐나다의 정회원국 가입(IOM 정회원국 36개국)
 - 우간다 및 NIWANO 평화재단(일본 소재 비정부간 기구)의 옵서버 가입

3. 제61차 이사회(1990.11.27.~28.) 및 제78차 집행위원회(1990.11.26.)

- 주요 회의 결과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스웨덴의 정회원국 가입(총39개 회원국, 26개 옵서버국)
 - 한국은 걸프지역 사태 관련 IOM의 외국인 철수지원 사업에 50만 달러 지원 발표
 - 선별적 이민조정기금을 개발이민기금으로 전환하는 결의안 채택
 - IOM의 난민옹자기금과 비유럽지역 난민옹자기금의 합병 결의안 채택

IOM(국제이민기구) 세미나, 제9차. Geneva, 1990.11.4.-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0-78 / 13 / 1-253

1990년 중 제9차 IOM(국제이민기구) 세미나를 위한 준비회의가 두차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9차 IOM 세미나 개최 계획

- 개최일자 및 장소: 1990.12.4.~6., 제네바
- 세미나 주제: 선진·개도국 간의 이민(South-North Migration)

2. 제1차 준비회의(1990.6.29.)

- 세미나 준비상황: 1990.6월 현재 14개국에서 15개 논문 제출 예정
- 제9차 세미나 초청 대상: IOM 정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외 30개국
- 세미나 개최 비용 12만 달러에 대해 자발적 기여 요청

3. 제2차 준비회의(1990.11.6.)

- 세미나 준비상황
 - 현재 14개국 15개 논문 제출 예정이며, 9개국 정부에서 토의 참여
 - IOM 정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외에 25개국이 참석 통보
- 세미나 비용 12만 달러에 대해 미국,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등이 기여금 서약

111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ECPD(유럽평화개발센터)의 사업참여 요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8 / 14 / 1-34

1990년 중 ECPD(유럽평화개발센터)의 한국에 대한 사업참여 요청 관련 내용임.

1. ECPD 개요

- 코스타리카 소재 유엔 평화대학과 유고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 1984.10.22. 설립된 국제기구
- 유고 정부로부터 약간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나, 활동은 독자적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

2. ECPD의 요청 내용

- ECPD 국장은 1990.2.23. 김종휘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1세기 유엔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포괄적 전망제시를 위한 사업 참여 요청

3. ECPD 추진사업 및 회신 내용

- ECPD 추진사업: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 ECPD 측, 1990년 하반기 예정 원탁회의 참석 및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희망
- ECPD 추진사업이 확정되면 관계인사의 회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
 - ECPD 측, 1990.11월경 유고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인사 참석을 재차 요청

AIPO(ASEAN 의회기구) 총회, 제11차. Singapore, 1990.9.10.-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78 / 15 / 1-43

정부는 1990.9.10.~15.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AIPO(아세안 의회기구) 총회에 이응선 의원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아세안 6개국 의회 인사, 옵서버(대화상대국 5개국, 파푸아뉴기니, 구주 의회 등)

2. 의제

- 정치문제: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난민, 유럽, 중동, 남아공, G-15 정상회의, 부시·고르바초프 정상회담, 카시미르 문제 등
- 사회문제: 환경·공중보건·문화 및 가치형성 관련 협력, 마약, 약물남용 및 사회복지, 노동복지
- 경제문제: 아세안 경제협력, 아·태 경제협력 등
- 조직문제: AIPO 사무국 설치 문제 등

3. 제11차 AIPO 총회 시 아세안과 옵서버 국가와의 Dialogue(1990.9.12.)

- 호주, 캐나다, 한국과의 세션
- 의제
 - 지역 및 국제정치문제, 경제협력, 투자증진, 기술이전, 환경문제 등
- 옵서버국과의 대화보고서 첨부

111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3차. Nicosia(사이프러스), 1990.4.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16 / 1-205

정부는 1990.4.2.~7. 사이프러스 니코시아에서 개최되는 제83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정수 민자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국회사무처는 1990.3.5. 동 회의에 대비하여 외무부에 브리핑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3.9. 최근의 동구권 및 북한동정, 사이프러스 개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함.

2. 주요 의제

- 마약 밀매에 대한 조치
- 고용, 직업훈련, 신기술 등이 사회정의와 지속적 개발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세계 정치·경제·사회 정세에 관한 일반 토의

3. 정부대표단 주요 활동 내용

- 박정수 단장의 주최로 최근 국교수립한 동구권 6개국(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IPU 대표단을 초청하여 오찬
- 도영심 의원이 마약문제 연설을 실시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4차.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90.10.15.-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8 / 17 / 1-258

정부는 1990.10.15.~20.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제84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정수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북한의 IPU 총회 남북한 단일대표단 구성 제의

- Cornillon IPU 사무총장은 1990.1.16. 주제네바 북한대사가 제84차 IPU 총회의 북한 개최를 제의하고 남북한 단일대표단을 구성하여 공동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밝힘.
- 북한은 1.17. 국회의장 앞 서한에서 제84차 IPU 총회의 평양 개최를 희망하고 남북한 단일대표단 구성을 제안함.
- 한국 국회는 1.19. 북한 측의 단일대표단 제의를 아래와 같은 근거로 거부함.
 - 한국대표단의 평양 총회 참가를 저지하고자 하는 책략임.
 - 남북한이 별도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공동 대표성에 관한 남북한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주제네바대사는 1.19. IPU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장의 대북성명을 전달하고 설명함.

2. 제84차 IPU 총회(1990.10.15.~20.) 시 한국대표단의 활동

- 한국이 1991년 아태그룹 의장국에 피선됨.
 - 국회의장의 지명을 받은 박정수 단장이 아태그룹회의 의장으로 선임.
 - 박정수 의장은 1991년 아태그룹 춘계회의를 IPU 평양 총회 개최 직전 서울에서 개최되여 의치 않을 경우 평양에서 첫 회의 개최 예정임을 발표
- 남북대표단 오찬 회동(10.16.)
 - 박 의장은 IPU 대표단의 남북한 상호교환 방문을 제의
 - 남북 국회회담의 조기 재개에 대해 양측 대표단이 합의
- 박 의장은 10.19. 일반 토론 연설을 통해 남북한 총리회담의 성과를 위해 북한 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

111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8차. Stockholm(스웨덴), 1989.6.20.-2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79 / 1 / 1-301

정부는 1989.6.20.~22.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제18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에 박영숙 의원(평민당 부총재)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 현황

- 브란트 의장(전 독일 총리), 칼손 스웨덴 수상 등 41개국 100여 개 정당 대표
- 북한은 초청받지 않았으나 구주 순방 중인 김형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동신문 기자 등이 방청

1118

2. 주요 의제

- 동서 관계
- 군축문제 및 지역분쟁
- 인권 및 환경문제
- 세계경제(남북협력)

3. 주요 결과

- 주요 의제 결의안 및 S.I. 원칙 선언문 채택
- 신규회원 가입 승인
 - 정회원: 브라질, 튀니지, 터키 등 4개국 4개 정당
 - 준회원: 이집트, 파키스탄 등 7개국 7개 정당

평화민주당(평민당)의 CDI(국제기독교민주당연합) 옵서버 가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79 / 2 / 1-15

1989.9.18.~20.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CDI(국제기독교민주당연합) 총회에 평민당(평화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함.

1. 대표단

- 문동환 의원, 조순승 의원, 최낙도 평민당 의원 및 국회사무국 직원 등 7명

2. 대표단 활동

- 문동환 의원은 한국의 인권 탄압, 정보정치 비난 연설

3. 총회 결의 채택

- 결의 요지
 - 평민당 및 김대중 총재에 대한 탄압조치 규탄, 체포, 구속, 고문 등 인권탄압 및 국가보안법 남용 비판, 민주화를 위한 정부 및 여당의 노력 촉구, 평민당의 옵서버 가입 환영, 민주화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 지지
- 결의 채택 관련 조치사항
 - 주과테말라대사는 1989.9.22. A. Cabrera 기민당 사무총장 의원을 면담하여 CDI 총회에서 한국 내 사정을 왜곡한 결의안 채택에 유감을 표명

4. 평민당의 CDI 옵서버 가입

- 경위
 - 1989.2월 평민당 총재 구주 방문 시 옵서버 가입 신청
 - 1989.4월 브뤼셀 개최 CDI 정치위에서 옵서버 가입 승인
 - 1989.9월 과테말라 총회에서 옵서버 가입 확정

민주정의당(민정당)의 PDU(태평양민주연합)가입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서구2과

MF번호 2020-79 / 3 / 1-418

1982~90년 중 민정당의 PDU(태평양민주연합) 가입 추진 동향임.

1. PDU(태평양민주연합) 창립 총회(1982.6.26., 도쿄)

- 창립 목적
 - 일본 자민당,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 캐나다 보수당 등 4개국 보수정당들은 지역 내 사회주의 정당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보수정당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지역 보수 정당 간 협력기구인 PDU(태평양민주연합)를 세움.
-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2. 민정당(민주정의당)은 1982.7.19. 이재형 대표위원, 권익현 사무총장 명의로 민정당의 PDU 가입 협조 요청 서한을 호주 자유당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함.

3. PDU 측은 1987년 피지 특별총회 계기에 PDU 가입 적합 정당 초청계획에 따라 1986.5월 주호주대사관에 민정당에 대한 내용, 선거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주호주대사관을 경유하여 6.10. PDU 측 요청자료인 민정당 관련 자료 및 국회법, 정당법 등이 송부됨.

4. 민정당은 1989.4월 연내 PDU 가입 추진 의사를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PDU 회원국 반응 및 PDU 운영위원회, 총회의 옵서버 자격 참석 가능성 타진을 요청함.

5. 이태섭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자당(민정당 후신) 대표단은 PDU 가입교섭을 위한 PDU 총회 (1990.7.7.~12.) 참석을 위해 토론토를 방문함.

6. 상기 PDU 총회 시 민자당은 PDU 정회원으로 정식 가입함.

A.I.(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인권보고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9 / 4 / 1-228

1989~90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인권보고서 내용임.

1. A.I.는 1989.10.20. 1989년도 연례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10.24. '한국: 억압과 고문으로 회귀하고 있는가?' 제하의 한국 인권보고서를 추가 발간하고 대통령, 안기부장, 보안사령관, 치안본부장 앞으로 각각 송부함.

● 한국 관계 부분

- 제6공화국 이후 일련의 대통령 특별사면조치 및 국회의 민주화 추진 노력 평가
- 1960~70년대 일부 양심수가 계속 구금 중이며 친북성향 인사의 정치적 이유 구속에 대한 우려 표명
-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자의 석방 요구
- 고문사실이 보고된 바 없으며 사형집행 또는 사형연도 사실 없음

● 북한 관계 부분

- 반체제 활동자는 재판없이 변호권이 금지된 채 장기형으로 집단노동수용소에 구금
- 약 10만 명의 죄수가 사리원 등 8개 노동수용소에 수감
- 1988.6~7월 중 김책공대, 평양대학 교수 및 학생 40명,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비난 벽보 게시 이유로 구속

● 평가

- 전두환 정부에서의 권리남용 수사, 제한된 법령 개폐, 반정부인사 활동, 한국 통일문제, 대규모 구속사태, 국가보안법하의 투옥, 국가보안법상 양심수 사례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한국 인권상황의 진전을 평가
-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교수 및 학생 구속, 재판 및 사형제도 관련 자료 제공 기피 등 폐쇄성 비난

2. 정부는 1990.1.22. A.I.의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A.I. 측에 전달할 것을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3. 최근배 주영국대사관 공사는 1990.1.31. A.I. 사무총장 등 간부 4인을 면담하고 한국 인권보고서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함.

A.I.(국제사면위원회) 진정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9 / 5 / 1-346

1989~90년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 국민의 한국 인권 관련 진정서를 수록함.

1. 국별 건수

- 영국(43), 프랑스(33), 독일(49), 네덜란드(87)

2. 주요 대상

- 문익환 목사, 문규현 목사, 서경원 의원, 임수경 밀입북 사건
- 이부영 전민련 공동의장 등 북한접촉 기도
- 김용래 의원비서 등 불고지죄
- 김치선 학생 등 평양축전
- 고규태 언론인 등 북한서적
- 신맹순 교사 등 전교조 활동
- 김현장, 문부식 부산 미국문화원 사건
- 진두현 통혁당 사건 등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9 / 6 / 1-266

1990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발표 보고서 및 정부의 대응활동 관련 내용임.

1. A.I.는 1990.2.23. 한국 정부에 대해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한국 인권 관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A.I. 각국별 지부 및 언론에 배포함.

- 양심수 석방 촉구 성명 주요 내용
 - 양심수 석방 및 고문보고 조사 요청
 - 이시영(시인), 김성규(학생)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석방 요구
 - 방양균(서경원의원 비서관) 고문 조사 요청
- 비디오테이프 내용(1990.1.17. 발간, A.I.의 한국인권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제작)
 -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2년간 한국 인권상황 설명
 - 밀입북 및 전교조 관련 인사 구속 사례 집중 거론
 - 장기 좌익인사 구금 사실 지적

2. 정부는 1990.2.28. A.I. 측이 제작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부입장 논평을 발표하고, A.I. 측의 저의 및 배경 등을 파악·보고할 것을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 한국 정부는 헌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한 사상과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음.
- 6·29선언 이전 과거 민주화 요구와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들을 시국사범이라고 부른 적이 있으나 1988.12.21.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하였음.
- A.I.가 양심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시영은 국가보안법 위반, 김성규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임 (이시영은 1990.2.3.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

3. A.I.는 1990.7.11. 1989년도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한국 관계 부분
 - 양심수 100명 정도를 포함, 약 800명이 반체제활동으로 구속
 - 수천 명이 노조활동, 가두시위, 북한과의 접촉 등으로 일시 구금
 - 6명의 장기 양심수가 구속 중이며 이중 1명은 18년 이상 구금 중
 - 사회안전법으로 기소, 재판없이 행정구금된 죄인들은 전원 석방
 - 2명의 형사범이 경찰 감호중 구타로 사망
 - 1989.8월 7명의 형사범에 대해 사형 집행



- 평가

- 내용 일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에 기초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을 무시한 주장으로 편향적 시각에서 기술됨.
- 1990년 중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 등 현 상황 반영이 미흡
- 북한 관계 부분은 상세하지 않으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잘 지적함.

- 대응 조치

-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A.I. 측에 동 보고서 대응 정부 입장 설명
-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련 공관에 한국 입장을 통보, 필요한 대응조치 실행
- 향후 유엔 인권회의 시 북한 개방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거론 방안 검토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59차. Ottawa(캐나다), 1990.9.27.-10.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9 / 7 / 1-242

정부는 1990.9.27.~10.3.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59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김인수 경찰종합학교 교장(치안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NTERPOL의 실질적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입장 표명 및 의견교환
-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시찰 및 자료수집

2. 참석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3개 회원국 510명,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11명

3. 정부 훈령

- 제59차 INTERPOL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은 전 회의기간을 통해 실질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익증진과 국위선양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
- 각국 참가대표와 활발히 접촉하여 친선과 이해증진 도모 및 국제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한 업무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능률적인 국제범죄 대처방안에 기여하도록 할 것

4. 주요 의제 및 토의 결과

- 회원국 가입 신청안 처리
 - 소련, 폴란드,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마셜제도 신규 회원가입
- 국제경제 범죄
 - 국제경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 간 경찰, 금융기관, 세관, 관련회사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 강조
- 마약 범죄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서 생산된 아편을 유럽으로의 운반과 동남아에서 생산된 헤로인의 미국 및 유럽으로의 운반을 막기 위한 회원국 간 국제협조 문제 결의안 채택
- 국제테러
 - 사무총국 및 회원국 간의 대테러 지침에 의거한 각종 테러사건이나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교환의 절대 필요성 강조
- 통화 위조
 - 비용이 적게 들고 위조가 용이한 컬러복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통화위조범과 마약 거래자들과의 연계 경향이 있어 사무총국과 관련 국가 통보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강조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 제15차. 서울, 1990.6.11.-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9 / 8 / 1-191

1990.6.11.~15.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에 김영준 감사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이사국(7): 인도네시아(의장국), 말레이시아(사무총장), 중국(차기 의장국), 인도,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 감사위원국(2): 스리랑카, 태국
- 특별고문국(1): 호주
- 아랍어 검토위원국(2): 쿠웨이트, 필리핀

2. 주요 의제

- 회원국 상호간 공공감사분야에 대한 의견 및 경험 공유
- 감사요원의 감사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훈련 및 교육방안
- 공공분야 감사의 신기법 공동개발
- 아랍어의 ASOSAI 공용어 채택 검토(특별 의제)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79 / 9 / 1-188

1990년 중 제8차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의 서울 개최 준비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89.5월 워싱턴 개최 제7차 회의에서 신현확 전 총리가 제8차 회의 서울 유치를 제안
- 1989.11월 파리 개최 회장단 회의 시 1990년 IAC 서울 개최를 최종 확정
- 회의준비 주관: 준비위원회(삼성물산), 협의회 사무국
- 주요 의제: 1990년대 동북아 국제 정세, 동·서 유럽의 상황과 의미, 세계금융시장 변화와 의미

2. IAC 서울 개최 준비

- IAC 서울대회 준비위원회는 1990.1.23. IAC 사무국이 작성한 제8차 서울대회 준비계획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를 요청함.
- 외무부는 1.23. 1983년 이후 IAC 계기 정부 주관 또는 관여한 행사에서의 지원 내역 및 의전 예우 등을 조사·보고하도록 관련 공관(오스트리아, 일본, 프랑스, 말레이시아, 미국)에 지시함.
 - 타국 정부의 주관 또는 지원: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국제회의장 제공, 의전차량, 경호, 입출국 시 공항귀빈실 사용 등
- 외무부는 2.22. 동 협의회가 일본과 UNDP(유엔개발계획)의 공동제안으로 창립된 관계로 협의회 행정 및 예산은 UNDP의 후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UNDP 내 신탁기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 3.9.~11.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IAC 전문분과회의에 신현확 전 총리(삼성물산 회장) 일행이 참석함.
- 외무부는 3.22. IAC 명예회장인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이 외무부장관 앞 서한으로 제8차 회의 성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해 왔음을 삼성그룹에 통보하고 민간외교 및 국위선양차원에서 현금 20만 달러 상당의 기부 등 지원 요청에 관한 문서를 발송함.
- 후쿠다 명예회장 앞 외무부장관 명의의 답신을 3.28. 송부함.

112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2 영접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79 / 10 / 1-302

제8차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영접계획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소관 준비사항

- 국제회의 개최 신청
 - 국제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 승인 및 협조사항 조정
 - 국제회의 유치 사전승인 대상으로 개최 필요성, 목적, 규모, 참가국, 소요 경비 등 고려하여 승인 신청
- 회의 개최 준비 협조
 - 기본적으로 회의준비 및 운영을 IAC 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시행하고, 외무부는 정부차원에서 회의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협조를 제공
- 의전사항
 - 공항 영접 및 영송: 전직 정부수반급 예우 필요 시 의전 제공
 - 차량지원: 주요 VIP 입국, 출국 시에만 제공
 - VIP 경호: 개인별 경호, 숙소 경호
 - 대통령 연설(면담): 연설문, 면담자료 작성
 - 정부 측 리셉션(또는 만찬)
 - VIP 입국사증 발급 등

2. 관계부처 협조

- 1990.3.16.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분장을 결정
- 업무분장 내용
 - 외무부: 준비위원회와 정부 유관부처 간 업무협조 창구, 국제회의 운영 자문, 정부주관 만찬 등 준비 및 의전차량 지원, 회의 관계자료 준비
 - 청와대: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
 - 총리실: 개막식 연설, 총리 주최 리셉션 행사
 - 공보처: 언론 취재 및 홍보협조
 - 문화부: 한국 전통문화 관광일정 주선
 - 법무부: 출입국 수속 편의, 비자발급허가
 - 치안본부: 경호 등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80 / 1 / 1-115

1990.3.23.~26.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결과 및 제9차 회의 시 남북한 대표 초청 결정 관련 내용임.

1. 제8차 IAC 회의 결과

- 참석자
 - 슈미트 전 독일(구 서독) 수상 등 19개국 전직 정부수반 및 도브리닌 소련 대통령고문 등 10명의 특별초청인사
- 회의 내용
 - 동서문제 및 남북문제 등 세계의 주요문제 토의
 - 최종선언문 채택: 아시아에서의 정치발전, 유럽의 현상황 발전, 재정시장의 세계화, 환경, 인구, 발전 제하의 40개항으로 구성
 - 한국 관련사항: 남북한 정상 간의 무조건 회담,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과 통신의 자유 허용,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 합법화 촉구
- 언론보도
 - 중앙일보(5.17.): 새시대의 도전, 세계지도자 초청 대토론회
 - 조선, 한국일보(5.20.): 세계의 퇴역정상 서울로 집결한다, 전직 수뇌 30여 명 대거 내한
 - 중앙일보(5.21.): 정상경험 살려 세계현안에 조언
 - 조선일보(5.24.): 한반도 통일 독일서 교훈 얻어야

2. 제9차 IAC 회의 시 남북한 대표 초청 결정

- 1990.10.24. 도쿄에서 개최된 IAC 회장단 회의에서는 1991.5월 체코에서 개최되는 제9차 IAC 회의에 남북한 대표를 동시에 초청하기로 결정
-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이 신현확 회장에게 통보한 바에 의하면,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남한의 이흥구 대통령 특보, 북한의 이종욱 부주석(또는 허담 조평통위원장)을 특별 초청하기로 결정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4 회의 준비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80 / 2 / 1-148

제8차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가 수록됨.

1. 참고자료

- 남북한 관계
 - 남북한 관계현황 및 전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문익환 등 방북 관련 정부입장,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문제 비교,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의내용
-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
 - 유엔가입 문제, 남북한 유엔가입 추진 연혁
- 북방외교 추진
 - 동구권 개척, 독일통일 문제, 북방외교 현황
- 아시아지역 협력 관계발전
-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

2. 기타 자료

- 남북대화
 - 기본입장: 다각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평화정책의 기초 마련을 위한 당국간 대화를 적극 추진
 - 대화 전망 및 대책: 북한의 대남 정치공세로 인해 대화의 진전 전망이 불투명하며 동서화해 및 개혁개방 추세에서 포용적 자세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주요 특징: 자주, 평화, 민주주의 3원칙을 기조로 상호 실체 인정과 공존 공영의 토대위에서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통일과정을 거침.
 - 고려연방제와의 차이점: 단일국가의 통일형태를 추구하는데 반해 고려연방제는 1민족 2정부의 연방국가 추진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 건설제약(1988.10.18.)
 - 민족공동체 발전의 상징으로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구역' 설치 제약(1989.9.11.)
- 독일 통일 문제
 - 독일 통일 논의 부상 배경
 - 통일 추진에 따른 대내외적 문제점
 - 통일독일 추진동향
 - 향후 독일 통일 전망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8차. 서울, 1990.5.23.-26. 전5권 (V.5 연설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80 / 3 / 1-156

제8차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시의 주요 인사 연설문이 수록됨.

1. 제8차 IAC 최종 선언문 채택 시 신현확 전 총리 수락 연설문

-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특별의제로 채택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데 대한 감사 표시
- 결의문은 남북한 간 상호불신 및 적대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환영
- 남북한 간 이산가족 방문과 통신보장,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여행 합법화 등에 대한 현황과 한국의 입장 설명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통한 통일문제의 해결 필요성 강조

2. 대통령 만찬사

- 세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창 의적 인 조 언 과 구 체적 제 안 노 력 에 대 한 평 가
- 세계적 인 화 해 와 개 방 에 도 불 구 하 고 남 북 한 관 계 의 변 화 가 이 루 어 지 지 않 는 상 황 에 서 북 한 과 의 대 화 와 협 력 을 통 한 관 계 개 선 노 력 경 주
- 한국 의 북 방 정 책 성 과, 유 엔 동 시 가 입 필 요 성 등 강 조

3. 개막식 총리 연설문

- 정치, 경제, 환경 등 인류의 공통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세계평화와 국제경제의 안정발전에 기여한데 경의 표시
- 20세기 마지막 10년 범세계적인 자유와 화해의 물결이 미치지 않는 한반도의 북반부와 남북한 간의 대치상황은 최근 국제적 추세와 대조가 되는 영역으로 잔류
- 한국과 독일 상황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의 민족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에 일조 시도
- 한국 정부는 1988년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시책 추진과 함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대북정책과 평화적인 민족통일정책 추구
-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추진은 세계정세와 직결되는 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113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ISO(국제표준화기구)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80 / 4 / 1-73

1990년 중 개최된 ISO(국제표준화기구) 회의 관련 내용임.

1. 한자코드 국제표준화를 위한 한·중·일 3국 회의(1990.2.26.~28., 서울)

- 주요 의제: 동북아시아 문자의 컴퓨터 코드체계 검토
- 참가국 입장
 - 한국, 일본: 한글과 일본문자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 코드체계 유지
 - 중국: 현행 문자코드가 비경제적이므로 문자모양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방식으로 개정
 -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 오피서브 국가 및 북한: 중국 주장에 동조

2.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회의(1990.5.14.~16., 파리)

- 참가국: 한국, 북한, 일본, 프랑스, 소련 등 15개국
- 대표단(수석대표): 정수웅 공업진흥청 표준국장
 - 북한은 홍린택 규격화위원회 위원장 등 4명 참석
- 회의 결과
 - 한국대표단은 남북한 단일안 도출을 위해 ㄱ, ㅋ, ㆁ의 g, k, gg를 k / g, q, kk / gg로의 변경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남북 대표단은 1991.5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ISO / TC46 총회 이전에 단일안 마련을 위한 남북대표 협상 개최에 합의함.

UIT(국제사격연맹) 총회. Moscow, 1990.8.12.-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80 / 5 / 1-84

UIT(국제사격연맹) 총회가 1990.8.12.~16.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국제사격연맹 회장단 선거에 이우재 체신부장관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제2부회장 직위에 입후보함.

- 1990.8.1. 외무부는 관련 재외공관에 이우재 장관의 재선 지지교섭 활동을 지시함.
- 1990.8.14. 실시된 선거에서 이우재 장관은 4년 임기(1990.8~94.8월) 국제사격연맹 제2부 회장에 재선됨.

2. 한·소련 체신장관회담

- 이우재 장관은 국제사격연맹 총회 참석 계기, 한·소련 간의 체신장관회담을 갖고 한·소련 통신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함.
 - 한·소련 직통전화 회선 신설
 -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사업
 - 소련 통신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한국 통신기업 참여

11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가입 및 분담금 문제

생산연도 1978-1981

생 산 과 국제기구2과

MF번호 2020-80 / 6 / 1-42

1978~81년 중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가입 및 분담금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AIBD 가입 경위

- 1968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방송계 종사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72년 이후 말레이시아 방송센터와 아시아방송연맹은 UNDP(유엔개발계획)의 후원으로 각종 훈련을 실시
- UNDP 주관하에 AIBD 발족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1977.4.25.~27.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 동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Project Document에의 서명을 유보함으로써 1977.8.10.~12. 제2차 회의가 개최됨.
- 1977.8.10.까지 Project Document에 서명을 약속한 국가(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들로 이사회를 구성, AIBD 규약을 축조 심의, 수정함.

2. 한국 가입 경위

- 한국은 분담금(연 7,500달러)의 부담 대비 수혜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가입을 보류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가입 권고
- 한국방송협회의 명의를 가입 결정
- 동 협정은 1978.11.10. 설립협정에 서명하고 12.12. AIBD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 1981.3.6.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3. 분담금 납부

- 분담금은 방송협회 자담
- AIBD 집행이사회 사무국장은 1979.3.19.자 공한을 통하여 한국에 대하여 1978년도 및 1979년도 분담금 15,000달러의 지불을 요청한바, 주말레이시아대사의 교섭으로 1979년분 (7,500달러)부터 지불하기로 함.

국제라이온스대회 서울 유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80 / 7 / 1-41

1990년 중 국제라이온스대회의 서울 유치를 추진함.

1. 국제라이온스클럽 한국본부(의장: 김일윤 민자당 의원)는 1990.3.20. 라이온스 본부에 1995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라이온스대회 서울 유치 신청을 하였다고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지원을 요청함.

- 1990.4.10. 미국 애슈빌에서 개최되는 국제라이온스클럽 이사회에서는 1995년 국제라이온스대회 개최를 신청한 6개 도시(서울, 몬트리올, 뉴올리언스, 버밍햄, 싱가포르, 뮌헨)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90.3.21. 국제라이온스클럽 한국본부 요청에 따라 4.10. 라이온스클럽 이사회에서 1995년 대회 개최지 결정 비밀투표에 참여하는 국제이사 30명의 거주지 관할공관(13개국 21개 공관)에 지지 교섭 활동을 지시함.

3. 1990.4.10. 실시된 국제라이온스클럽 이사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득표 1위 도시인 서울을 1995년 대회 개최지로 결정함.

- 국제라이온스대회 방문자 수가 3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홍보효과 및 관광 산업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13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EAHC(동부아시아수로위원회) 회의, 제5차. 동경, 1990.10.8.-12.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80 / 8 / 1-71

1990.10.8.~12. 도쿄에서 개최된 제5차 EAHC(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회의에 김동영 교통부 수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회원국간 우호증진 및 수로업무 관계 자료수집
- 수로측량, 해양관측기술 및 항해용 해도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에 참여
- 한국 수로업무 홍보 및 회원국간 해양기술개발 자료교환

2. 주요 토의의제

- 회원국(한국, 일본, 태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국) 수로업무
- K구역의 중·대축적 국제해도 간행 계획
- 수로업무 기술·정보교환
- 서태평양해역의 해도제작 계획
- 북한의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가입

3. 대표단 활동내용

- 수로측량, 해양관측기술 및 항해지도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 참여
- 한국 수로업무 홍보
- 수로 및 해양기술개발 자료수집
- 중국과의 수로 관련 자료교환 등

외국 정부기관과의 합의문서 체결 현황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0 / 9 / 1-304

1985년 중 각 부처가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한 합의문서 관련임.

1. 과학기술처

- 한·독일 과학기술협력 합의록, 한·태국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 합의록 등 8건

2. 산림청

- UNDP(유엔개발계획) 임업 연수원사업, UNDP 경제림 경영사업

3. 특허청

- 대한민국을 통한 국제출원을 위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역할에 관한 한·오스트리아특허청 간 협정 및 의정서 등 4건

4. 철도청

- 산업선 전철화를 위한 차관 계약

5. 해운항만청

- 한·호주 해운실무회의 합의록

6. 수산청

- 한국 국립수산진흥원과 프랑스 수산해양연구소와의 자매결연 합의문 등 14건

7. 공업진흥청

- 한·일본 계량계측 표준협력위원회 설치 각서

8. 농촌진흥청

- 한·일본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등 8건

9. 체신부

- 전자우편 양해각서 다수

10. 환경청

- 한·미국 간 TDP(미국통상진흥계획) 무상지원 합의서

기관간 약정: 국방부, 1985-89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0 / 10 / 1-83

1985~89년 중 국방부의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사항임.

1. 한·미국 군사당국 간의 합의문서 체결 협의

- 국방부는 1985.7.24. 미국 교육사 장교의 한국육군 교육사 파견 등 3건의 합의문서 체결 관련, 국방부 재량으로 체결 가능성 및 국내법 절차에 관한 검토를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합의문서안은 국방부 당국 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국방부 권한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회신

1138

2. 한·말레이시아 간의 목록자료 교환 합의각서

- 국방부는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 보급목록자료 제공절차에 관한 합의문서를 1985.9.23. 외무부에 송부
- 목록자료 제공협정
 - 발효일: 1985.7.15.
 - 체결당사자: 한국 국가부호국과 말레이시아 국가부호국
 - 협정골자: 말레이시아의 청구자료를 한국목록국의 능력과 운영조건, 보안조건 충족에 한해 지원, 청구 및 지원서식은 NATO 부호제도 교범 적용

3. 한·독일 간의 목록자료 제공에 관한 합의문서 체결 검토

- 국방부는 독일과 보급목록자료 제공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과 관련, 1986.9.16. 외무부 의견을 요청
- 외무부는 국방부 당국 간의 기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이 가능하다고 회신

4. 한·스페인 간의 방위물자에 관한 산업 및 기술협력협정 초안 검토

- 국방부는 방산협력 양해각서 스페인 측 초안에 대해 1989.11.6.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문의

기관간 약정: 국방부,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 안보과

MF번호 2020-80 / 12 / 1-72

1990년 중 국방부의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사항임.

1. 한·영국 간의 방위물자 조달분야의 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국방부는 영국과의 방산협력을 위해 1990.10.15. 한·영국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협력기본원칙, 재정사항, 품질보증, 보안, 제3자 이양 및 공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2. 한·인도네시아 간의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검토

- 국방부는 1990.11.28.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의 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동 양해각서는 형식 및 내용상 양국 국방당국 간의 기관간 양해각서에 해당되므로 조약 체결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

3. 한·태국 간의 군수 및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검토

- 국방부는 1990.3.13. 한·태국 군수 및 방산협력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
- 추진 경위
 - 1986.8~10월 태국 최고사령부와 한국 방산국 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87.8~88.7월 양측 MOU 초안 검토
 - 1989.3~6월 협상창구 변경 요청 등
 - 1989.9~12월 태국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장관 태국 방문 초청
 - 1990년 국방장관의 태국 방문시 양해각서 서명
- 외무부 미주국은 양해각서 체결 추진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미국과의 협력에 마찰이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품목선정 등 유의 필요성 지적

113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각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 및 시행상의 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80 / 18 / 1-96

1989~90년 중 한국과 외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및 시행상의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적용문제

- 뉴질랜드 국세청은 1989.4월 한·뉴질랜드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5조에 의거, 뉴질랜드 한국 수산회사 주재원이 뉴질랜드 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주재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는 5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 2항(원천과세 면제요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측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 단, 법적 안정성과 과세관행의 존중을 위해 조세조약의 새로운 해석은 해석일 이후부터만 적용함이 각국의 통례이므로 소급과세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정을 교섭하도록 지시

2. 외환은행 민영화 관련 조세협약 적용 문제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9.12월 현재 추진 중인 외환은행 민영화 방침 관련, 인도네시아 소재 외환은행 사무소가 민영화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면세 제외되는지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국내법에 따라 외환은행이 민영화되는 시점부터 현행 협정의 변경 없이 제11조 상의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통보

3. 한·영국 조세협약 해석

- 영국 정부는 1989.8.31.자 서한에서 영국 주재 한국 정부 출자기관의 직원보수에 대한 한·영국 조세협약상의 '정부기능' 조항 적용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의견 문의
- 재무부는 1990.1.17.자 영국 국세청 앞 서한을 통해 한·영국 조세협약 제18조의 해석에 관련 된 입장 회신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28. 발효(외무부고시 제204호)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0 / 19 / 1-315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가 1990.11.28. 교환됨.

1. 추진 경위

- 1985.2월 제18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대만 측의 제의로 양국간 ATA Carnet제도 시행에 합의하고 양측 간 문안 협의를 진행
 - 한국은 1978년 ATA Carnet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발효되었으나, 대만은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동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국들과 개별적으로 쌍무협정을 체결, ATA Carnet제도 시행 모색
- 1988.6월 제21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동 협정의 조기 체결, 시행에 합의
- 1989.7월 제22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양국은 물품의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합의

2. 1978.7.3.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협약은 대한민국과 대만 간 상호 적용하기 위하여 1990.11.28. 주중화민국 명의의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이를 수락하는 동일자 외무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0.11.28.부터 발효됨 (외무부고시 제204호).

114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집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1990.4.1. 발효(조약 제995호) (V.1 1988-89.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1 / 1-281

1988~89.2월 중 한·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88.10.25. 주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 계기로 양국 경제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11.21. 헝가리 측에 협약안을 공식 제안한바, 헝가리 측은 11.30. 헝가리 조세 조약 모델을 전달함.

2. 제1차 실무자회담(1989.2.13.~17., 헝가리 부다페스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헝가리 측: C. Repassy 재무부 국제금융 부국장
- 회의 결과 및 의의
 - 협약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1989.2.16.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
 -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최초의 조약으로 한국기업의 동구권 진출 촉진

3. 후속 조치

- 공식 서명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필요
 - 헝가리 측은 1989.3월 Villanyi 재무장관 방한시 서명 희망
-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 필요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1990.4.1. 발효(조약 제995호) (V.2 1989.3월-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2 / 1-398

1989.3월~90년 중 한·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및 발효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8.11.21. 한국 측, 협약 체결 제의 및 초안 제시
- 1988.11.30. 헝가리 측, 초안 제시
- 1989.2.13.~17. 실무자 회의 개최 및 문안 합의

2. 체결 의의

- 동구권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조약으로서 앞으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조세조약 체결 시에 주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의 대헝가리 및 대동구권 진출을 촉진할 것임.

3. 주요 내용

- 사업이윤에 대해 소득원천지국 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 과세(귀속주의)
- 선박,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5~10%)에 따라 과세

4. 국내 절차

- 1989.3.8.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89.3.9.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9.3.16.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 5. 동 협정은 1989.3.29. 헝가리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Villanyi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1990.4.1.자로 발효됨(조약 제995호).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1986.12.26. 발효(조약 제907호) (V.1 1978-80)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3 / 1-178

1978~80년 중 한·룩셈부르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8.6월 한·룩셈부르크 경제협력위원회 룩셈부르크 측 의장이 주벨기에대사에게 협약 체결 제의
- 1978.10.25.~26. 한·룩셈부르크 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협약 체결에 원칙 합의
- 룩셈부르크 정부는 다수국가와의 협정 체결 교섭으로 협약문 초안 제시 지연

1144

2. 룩셈부르크의 협약문 초안 제안

- 룩셈부르크 측은 1980.10월 이중과세방지협약 초안을 제시하면서 양국간 제1차 실무자 회의 (1981.1~2월, 룩셈부르크) 개최를 제의
- 양국은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81.6.15.~19. 룩셈부르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1986.12.26. 발효(조약 제907호) (V.2 1981-83)**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4 / 1-227

1981~83년 중 한·룩셈부르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 관련 내용임.

1. 제1차 실무자회담(1981.6.15.~17., 룩셈부르크)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영택 재무부 세제국장
 - 룩셈부르크 측: Jean Olinger 재무부 직접세국장
- 회의 결과
 - 조문별 협의를 진행하여 23개 조문에 합의
 - Holding Company의 조약 적용 배제, 투자소득에 대한 tax sparing 허용 등 성과

2. 제2차 실무자회담(1982.7.19.~23.,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
 - 룩셈부르크 측: Jean Olinger 재무부 직접세국장
- 회의 결과
 - 미합의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여 1982.7.23. 협약 문안에 가서명

3. 서명을 위한 후속 조치

- 1983.3월 협약문 영문본을 정본으로 할 것에 합의
- 1983.4.8.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 요청
- 1983.4월 협약문 법제처 심사 완료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1986.12.26. 발효(조약 제907호) (V.3 1984-86)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5 / 1-311

1984.11.7. 한·룩셈부르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됨.

1. 교섭 경위

- 1978.10월 룩셈부르크 측은 협정 체결을 제의
- 1981.6~82.7월 실무자 회담 개최(서울, 룩셈부르크)
- 1982.7.23. 가서명(서울)

1146

2. 체결 의의

- 한·룩셈부르크 양국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룩셈부르크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룩셈부르크 진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등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귀속주의)
- 선박 및 항공운수소득은 거주국에서만 과세
-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 10% 또는 15% 이하, 이자의 경우 10% 이하의 제한세율을 원천지국에서 과세
- 이중과세회피 방법으로 외국세액공제방법 및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

4. 국내 절차

- 1984.8.31.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4.9.13.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84.11.7. 신정섭 주벨기에대사와 Jacques Poos 룩셈부르크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6.4.8. 제129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86.11.25.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86.12.26.자로 발효됨(조약 제907호).

한·피지 간의 대피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1990.5.1 Suva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1001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6 / 1-288

한·피지 간의 대피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가 1990.5.1. 교환됨.

1. 추진 경위

- 1988.1월 피지 측 사업지원 요청
- 1989.1월 한국 측,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 1989.7월 한국 측, 지원방침안 제시
- 1989.9월 피지 측, 한국 측 지원방침안 수락
- 1989.12월 각서교환안 합의

2. 체결의 의의

- 피지의 Ba와 Sigatoka의 교량 및 접근도로 건설사업을 지원을 통하여 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의 진출 기반 확보에 기여함.

3. 주요 내용

- 피지의 Ba와 Sigatoka의 교량 및 접근도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1억 9천 5백만 원 (621만 8천 달러 상당)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 사업실시 기관: 피지 체신교통건설부 공공사업국
 - 재원조달 계획: 총사업비용의 10%는 피지 정부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기금차관으로 조달
 - 상환기간: 5년 거치기간 포함 20년 상환
 - 이자율: 연리 4%

4. 동 각서는 1990.2.1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5.1. 피지 수바에서 김현진 주피지대사와 Kamikamika 피지 재무장관 간에 서명·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01호).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1016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7 / 1-165

한·일본 간의 제7차 한·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가 1990.9.11. 교환됨.

1. 체결의 의의

- 한국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본 차관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본은 아래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7년 거치 13년 또는 18년 분할상환, 연 4% 금리로 한국에 995억 9천만 엔의 차관을 제공함.
 -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 의료장비 확충사업
 - 수산·해운계 교육기관 실습 장비 확충사업
 - 배합 사료공장 건설사업
 - 유가공시설 확장사업
 -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 차관은 한국 정부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간에 체결되는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공됨.
- 차관은 상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됨.
- 차관에 의한 구매는 국제입찰절차를 규정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름.
- 한국 정부는 차관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공과금 및 세금을 면제함.

3. 동 각서는 1990.8.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9.11.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각서와 야나기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 명의의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16호).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81 / 8 / 1-53

1990년 중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절차 관한 내용임.

1. MIGA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 제시

-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는 대개도국 투자보증 계약 체결과 관련 법적보호 및 내국 통화사용에 관한 협약안, 한국의 투자보증 등의 절차에 관한 협정안을 제시함.

2. 재무부는 1990.3.28. 외무부에 상기 협약의 성격과 체결절차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 MIGA가 제안한 협약 이행과 관련된 한국 정부와 동 기구간의 3개 협정(투자자의 법적보호, 대위변제 시 내국인 화폐사용, 투자유치국의 MIGA 보증에 대한 동의) 체결 건에 대하여 국내 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한국 대표인사(외무부장관 또는 주미국대사)와 MIGA 관계자 간의 각서교환으로 동 3개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시함이 타당

3. 재무부는 1990.3.28. MIGA의 대한민국 투자보증과 관련하여 법적보호 및 내국 화폐사용에 관한 2건의 협약과 투자보증 동의 절차에 관한 서면합의는 아래 이유로 재무부장관이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간 합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데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본 협약은 상위조약인 MIGA 설립협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상기 협정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각 국제금융기구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외무부는 1990.5.11.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제1안) 국내절차는 외무부에서 처리하되 서명자를 재무부장관으로 지정, 재무부장관이 MIGA 측과 이행협정을 체결토록하고,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함(외무부고시).
- (제2안) MIGA 측과 협의하여 협정당사자 명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무부로 수정하여(협정 제목, 본문, 서명관 등) 재무부장관이 체결하고 그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서남아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9 / 1-290

1985~87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한·파키스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교섭

- 1985.1.28. 주파키스탄대사는 H.E. Beg 파키스탄 재무차관 면담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대한 주재국 입장을 타진함.
 - 1985.1.29. 주재국 외무성 측은 주재국 국세청과 협의 결과,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 협의를 제의함.
- 1985.3월 한국 측은 협정문 초안을 파키스탄에 제안
- 양국은 Zia-UI-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1985.5.6.~10. 방한 계기 협정 체결 추진
- 1985.7월 파키스탄 측은 수정안 제시
 - 내국민대우 조항 삭제, 수용시 보상 조항 표현 완화

2. 주요 쟁점 교섭과 협상 지연(1986~87년)

- 내국민대우 조항, 수용시 보상조항, 송금보장 방법 등 쟁점조항에 이견 지속
 - 한국은 투자자 보호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삭제 불가 입장
 - 파키스탄은 외국 민간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불가 입장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서남아과 / 조약과

MF번호 2020-81 / 10 / 1-237

1988~90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서명 및 발효에 관한 내용임.

1. 쟁점조항 협상 및 협정문안 합의 경위

- 1988.1월 파키스탄 측 수정안 제시
 - 내국민대우 조항 수락 조건으로 협정시행의 국내법규 적용 조항 추가
- 1988.5.16. 양국간 협정문안에 최종 합의
 - 한국 측은 파키스탄 측이 주장한 제5조 보상문제, 제10조 협정시행의 국내법규 적용을 수락하고, 파키스탄 측은 제4조 내국민대우 조항을 수락

2. 체결 의의

- 계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계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민간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 한국민의 대파키스탄 투자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파키스탄 경제진출 확대를 도모함.

3. 주요 내용

- 상대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향유
- 국유화 및 수용시 수용국의 법에 따라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
- 투자분쟁 시 중재재판소 이용
- 본 협정의 규정은 계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름

4. 국내 절차

- 1988.5.17.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88.5.1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8.5.19.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 5. 동 협정은 1988.5.25.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Hussain 공업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3.15.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외무장관 명의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90.4.15.자로 발효됨(조약 제1000호).

한·폴란드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1990.2.2. 발효(조약 제994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2 / 1 / 1-197

1989~90년 중 한·폴란드 투자보장협정 및 한·폴란드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폴란드 간의 투자보장협정

- 목적
 - 계약상대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상대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의 강화를 도모
- 주요 내용
 - 자국영역에서 행하여진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수용조치 시에는 보상지불일까지 이자를 포함한 투자에 대한 시장가액의 보상
 -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송금 보장
 - 투자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
- 체결의 의의
 - 미수교 동구권국가인 폴란드와 투자보장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상대국 영역내 투자를 증진하고 실질협력관계 기반 구축을 통하여 양국간 수교를 촉진하며 한국의 북방외교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동 협정은 1989.10.26. 국무회의를 거쳐 1989.11.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J. Sawicki 폴란드 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1990.1.2. 폴란드 정부의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통보에 따라 1990.2.2.자로 발효됨(조약 제994호).

2. 한·폴란드 무역협정

- 목적
 -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상호협력함으로써 교역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킴.
- 주요 내용
 -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물품 및 견본에 대한 관세, 부과금 면제
 - 공동위원회 설치



- 동 협정은 1989.11.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J. Kaczurba 폴란드 대외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1990.1.2. 폴란드 정부의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통보에 따라 한·폴란드 투자보장협정과 함께 1990.2.2.자 정식으로 발효됨.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1990.11.23. Taipei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02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2 / 2 / 1-244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에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가 1990.11.23. 교환됨.

1. 대표단(수석대표)

- 이현석 교통부 항공국장

2. 주요 의제

- 운항회수 증회, 복수항공사 제로협정 개정, 노선구조 변경

3. 정부 훈령

- 복수항공사 제로협정을 개정하되 대만 측 반응을 보아 탄력적으로 대처
- 운항회수 증회: 1991년까지 9회 증회 목표
- 노선구조 변경 및 대만 이원권 운항회수 조정

4. 회담 결과

- 복수항공사 지정: 현행 단수제를 복수제로 개정
- 목적 지점의 다양화: 출발, 목적지를 한국, 대만으로 개정
- 공급력 증대: 현행 주 16회 운항회수를 주 21회로 5회 증회
- 부속서 개정절차 간소화: 외교각서 교환 없이 항공당국 간 합의로 개정 가능

5.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는 1990.11.23. 타이베이에서 한철수 주대만대사와 치엔 푸 대만 외교부장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2호).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생산연도 1990-1991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2과

MF번호 2020-82 / 3 / 1-208

한·체코 간의 항공회담이 1990.9.17.~19. 프라하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2.27. 체코 측, 한·체코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체코 측 초안 송부
- 1990.4.26.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90.5.3. 양국간 항공회담 개최일정(1990.6.4.~5.) 원칙 합의
- 1990.5.17. 한국 측은 회담 성격에 관한 양측 의견차이로 회담시기를 추후 협의하도록 제안
- 1990.7월 양측은 1990.9.17.~19. 프라하에서 본회의 개최 합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체코 측: Domin 교통부 항공국장

3. 항공 대책

- 기본 사항
 - 향후 양국간 및 동구권과의 항공관계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항공협정 기본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 한국 측 안을 기초로 교섭 추진하되 체코 측 안을 기초로 하여도 무방
- 세부 사항
 - 항공사 지정: 복수제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단수제로 합의
 - 노선 구조
 - 노선 개설, 운수권 행사 및 공급사항(운항회수, 기종 등)

4. 합의 내용(협정문안 가서명)

- 양국간 상호 취항권 허용
- 지정항공사: 복수제
- 노선구조
 - 한국 측: 한국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명시)-프라하-이원지점(추후명시)
 - 체코 측: 체코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명시)-서울-이원지점(추후명시)
- 5자유 운수권 행사, 공급력(운항회수, 기종 등)은 추후 양국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당국이 결정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0호) (V.2 1990.9-12)

생산연도 1990-1991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2과

MF번호 2020-82 / 4 / 1-382

한·체코 간의 항공협정이 1990.10.26. 체결됨.

1. 체결 의의

- 한·체코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민간항공의 체코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고 한국 민간항공망의 동구권을 포함한 대구주지역 노선확장에 기여함.

2.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의 무착륙 비행, 비운수 목적 착륙 및 합의노선에서의 운수권 상호부여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 상호면세
- 양국 지정항공사 상호간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 송금권 부여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 한국 내 제지점과 체코 내 제지점을 출발지점으로, 프라하와 서울을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 지정

3. 동 협정은 1990.10.1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10.26.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20호).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1990.5.19. 발효(조약 제1003호) (V.1 교섭철, 1988-8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2 / 5 / 1-284

한·헝가리 간의 항공회담이 1989.5.18.~20.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8.11.15. 헝가리 측, 한·헝가리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
- 1988.11.21. 한국 측, 헝가리 측 제안에 동의
- 1988.12.27. 양측 협정문안 상호교환
- 1989.5.18.~20. 양국 정부간 항공회담 개최(협정문 합의 및 가서명)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동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헝가리 측: Banhalmi 교통부 국제국장

3. 주요 합의내용

- 양국이 각각 상대국 영토 내 운항 허용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헝가리 경유 동구권 등 운항) 취항문제는 장차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
- 헝가리는 현행 법령상 Malev 국영항공사만 외국항공사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나, 동 제한은 새로운 법령 발효 시 해제
- 복수항공사 지정: 헝가리 측은 1개사이므로 단수항공사 지정으로 합의
- 분쟁해결: 당사국간 합의 및 중재절차 규정

4. 평가

- 대동구권 취항의 교두보 확보
- 추후 동 협정 발효 및 항공기 취항 시 양국간 무역 및 인적교류증진에 크게 기여 기대

5. 동 회담에서 한·헝가리 간의 항공협정 본문 문안 및 부표에 합의하고 1989.5.19. 양측 수석대표가 동 협정에 가서명함.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1990.5.19. 발효(조약 제1003호) (V.2 체결철, 198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2 / 6 / 1-283

한·헝가리 간의 항공협정이 1989.11.22. 체결됨.

1. 체결 목적

- 한·헝가리 간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민간항공의 헝가리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물적교류 확대와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민간항공망의 대구주지역 노선확장과 동구지역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

1158

2.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의 무착륙 비행, 비운수 목적 착륙 및 합의노선에서의 운수권 상호부여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 상호면세
- 양국 지정 항공사 상호간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 송금권 부여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 노선구조는 서울과 부다페스트를 각각 출발지점 및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지정(부속서)

3. 동 협정은 1989.11.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11.22. 부다페스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안드라쉬 더어지(Andras Derzsi) 헝가리 교통체신건설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5.19.자로 발효됨 (조약 제1003호).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2 / 7 / 1-248

1988~90년 중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각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내용임.

1.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1988.4.27.)

- 경위
 - 1988.1.26.~30.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본 항공당국 간 회담에서 합의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상 한국 측이 취항할 수 있는 6개 노선에 하기 3개 노선을 추가함.
 - 부산-제주-나고야, 서울-삿포로, 서울-나가사키
- 동 각서는 1988.4.27.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야나이 신이치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57호).
- 동 협정부표의 개정으로 한국항공의 일본 취항이 확대됨으로써 한·일본 양국의 교류증대와 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한·일본 항공협정(1967.5월 체결)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1990.3.30.)

- 경위
 - 1989.8.28.~30.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본 항공당국 간 회담에서 합의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상의 한국 측 의 기존 8개 노선에 서울-부산-센다이 노선을 추가함.
 - 1967.5.16.자 부속서한 1항의 내용중 일본 측의 출입지점을 현 8개지점에서 9개지점으로 증설함.
- 동 각서는 1990.3.30.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가와시마 준 주한 일본대사대리 간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1호).
- 동 협정 개정으로 한국 민항의 일본취항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한·일본 양국간의 인적, 물적교류 증대와 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한·일본 항공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1990.11.20.)

- 경위
 - 1990.2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 항공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
- 주요 개정내용
- 한국항공기의 일본 내 출입지점을 현 9개 지점에서 12개 지점으로 확대



- 한·일본 간 기존 항공노선 증설

- 한국 측: 기존 9개 노선에 2개 노선 추가(히로시마, 오키나와)
- 일본 측: 기존 2개 노선에 1개 노선 추가(서울, 부산, 제주 이외의 1개 지점)
- 동 각서는 1990.11.20. 도쿄에서 이원경 주일본대사와 나카야마 타로 일본 외무대신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1호).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3호) (V.1 1980-86)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정책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82 / 8 / 1-268

1980~86년 중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교섭 경위

- 정부는 한국 민간항공사의 구주 및 중동 노선의 중간 지점 확보를 위하여 1985년부터 한·몰디브 간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함.
 - 1985.5월 대한항공 측은 몰디브행 전세기 취항을 희망
 - 1985.7월 몰디브 측은 전세기 취항 거부 및 항공협정 체결 제의
 - 1986.4월 몰디브 측은 항공협정 초안 제시

2. 한·몰디브 항공회담 개최(1986.10.20.~22., 몰디브)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조기일 주스리랑카(몰디브 겸임국) 참사관
 - 몰디브 측: M. Waheed 민항청장(Director of Civil Aviation Authority)
- 정부 훈령
 - 협정 본문은 가능한 한국안을 기본으로 하고 양측안 간에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례 범위 내에서 합의할 것
-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3. 몰디브 외무성은 1986.12.9. 주스리랑카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 10.22. 합의한 항공협정 문안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3호) (V.2 1989)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정책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82 / 9 / 1-177

1989년 중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8.7.24. 몰디브 국경일 행사 참석계기에 외무부 훈령에 따라 몰디브 측에 한·몰디브 항공협정의 체결을 제의함.
2. 몰디브 외무성은 1989.2.4. 주스리랑카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 한·몰디브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을 희망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9.7.26. 몰디브 국경일 행사 참석 계기에 Gameel 스리랑카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측 최종문안(국문 및 영문)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함.
4. 몰디브 측은 1989.8.3. 한국 측의 최종문안을 수락하고 8.15.~20. 사이에 서명을 희망함.
5. 외무부는 1989.9.21. 한·몰디브 간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항공협정의 체결을 신중히 추진 중이라고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함.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3호) (V.3 1990)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정책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82 / 10 / 1-252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1990.6.27. 체결함.

1.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의 몰디브 취항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몰디브 간 우호증진에 기여

2.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는 타방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할 권리,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적하할 권리를 향유함.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에 대해 상호 면세함.
- 양국 지정항공사는 타방국 내 지사 설치 및 영업 수익의 본국 송금 권리를 가짐.
- 양국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함.

3. 국내 절차

- 1990.5.15.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0.5.24.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0.6.27. 말레에서 김봉규 주스리랑카대사와 모하메드 샤리프 몰디브 항공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측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1990.8.20.자로 발효됨(조약 제1013호).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83 / 1 / 1-363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작업부에 1990.10.17. 가입함.

1. 가입 추진경위

- 1982.10월부터 동 작업부 비공식 전문가회의에 참석
- 1986.11월 동 작업부와 연락단(Liaison Group) 설치
- 1989.10월 미국, 한국의 동 작업부 가입을 제의
- 1989.12월 조선작업부, 가입 관련 한국 입장 문의
- 1990.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 한국의 가입추진 결정
- 1990.4월 OECD 이사회, 한국 가입 초청 결의

2. 가입 의의

- OECD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OECD 산하위원회에 정식 가입
- 현재 진행중인 세계 조선산업에 관한 새로운 규범제정 작업에 기존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한국 조선업계의 권익보호에 기여
- 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쌍무적 압력으로부터 보호 가능
- 세계 제2위 조선국으로써의 위치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인정받게 됨.

3. 조선작업부 활동 참여시 준수할 사항

- 일반약정
 - 장애요인 제거(금지사항):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 신용, 직접 건조지원,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장벽, 차별적 조세정책, 차별적 공적규제 또는 국내관행, 자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 및 자국 조선업 재구조화를 위한 특정의 원조
- 일반지침
 - 조선능력 삭감, 선박 덤핑규제, 조선능력 확대규제
- 선박수출신용에 관한 양해
 - 신용공여조건 제한: 선수금 20% 이상, 연불기간 8.5년 이내, 연리 8% 이상
- 분담금 납부
 - 약 15,000프랑(약 3,000달러)

4. 한국의 OECD 조선작업부 가입을 위한 제안각서를 1990.10.16. 장 끌로드 뻬이에 OECD 사무총장이 송부하고 1990.10.17. 노영찬 주프랑스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0.10.17.자로 발효됨(조약 제1019호).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1004호) (V.1 1965-66)

생산연도 1965-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3 / 2 / 1-316

1965~66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65.10.22. 한·일본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과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지침을 내무부, 농림부, 교통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2. 내무부는 1966.1월 외국선박의 긴급피난에 대한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해옴.
 - 외국선박의 긴급 피난은 내무부장관이 관장
 - 긴급피난의 사유는 악천후, 선체파손, 기관고장, 중병상, 기타 예기치 못한 위해에 한함.
 - 긴급피난의 항구 및 허용 척수를 제한
 - 긴급피난시 불법상륙,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는 금함.
3. 외무부는 1966.1.29. 상기 내부무의 입장을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에게 통보함.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1004호) (V.2 1967-71)

생산연도 1965-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3 / 3 / 1-237

1967~71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67.2.24. 한·일본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교섭을 3.13.부터 서울에서 재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수산청은 본회의 재개에 대하여 시일이 촉박함으로 6월경 한·일본 어업 공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후 개최가 가능하다고 통보함.
- 이에 대해 일본측은 지난번 회의를 토대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 필요 등의 이유로 3월 중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2. 주한 일본대사관 이다노 서기관은 1967.9.9. 외무부 동북아과장을 방문하여 한·일본 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교섭 회의를 10.9~12. 도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외무부는 10.10. 관계부처 의견을 참조하여 동 교섭 재개에는 이의가 없으나 예산관계로 일본이 희망하는 일자에 개최는 어려울 것임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함.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1004호) (V.3 1972-74)

생산연도 1965-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3 / 4 / 1-155

1972~74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내무부는 1971.12월 한·일본 간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을 조속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의 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일본 어업 공동규제수역은 물론 동중국해와 북태평양 등 원해에 출어하는 어선이 날로 증가
- 해난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는 경비함정 등 구조장비 부족으로 각 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난 선박을 신속히 구조하기 곤란한 실정

2. 외무부는 1972.2월 상기 내무부의 건의에 따라 한·일본 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 재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개최를 건의함.

- 1966~67에 양국은 약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나, 한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한·일본 어업협정이 체결된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어업은 상당히 신장하였으며, 향후 원양어업의 발전가능성을 염두하여 약정체결 문제 재검토가 필요함.

116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1004호) (V.4 1975-76)

생산연도 1965-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3 / 5 / 1-392

1975~76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 외무부는 1975.2.4. 한·일본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을 위하여 일본 측 제2차 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 내무부는 일본 측 안에 이의가 없으며, 동 협정의 조속 체결을 요청
 - 수산청은 제3조 무선통신 관련 의견 제출

통신 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 검토

생산연도 1983-198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4 / 2 / 1-84

1983~88년 중 통신 관련 기관 간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임.

1. 한·칠레 간의 아마추어 무선협약 체결 검토

- 1983.2.10. 주한 칠레대사관은 한·칠레 간 아마추어 무선사 면허 발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제의해옴.
 - 외무부는 4월 상기 칠레 측 제안이 한국의 국내법상 불가함을 통보함.
 - 칠레 측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외무부는 12월 추후 국내법 개정 후 동 협약 체결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

2. 한·미국 간 아마추어 무선기사 상호 면허인정협정 검토

- 1988.1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국 아마추어 무선사의 상호 면허인정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해옴.

3.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프랑스텔레콤 간의 전기통신기술협력 양해각서 검토

- 1988.7월 체신부는 한국과 프랑스 간 전기통신기술협력 각서를 8월에 체결하고자 한다며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8월 동 양해각서는 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의 체결할 것을 회신함.

4. 한국 해양경찰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간의 수색 및 구조업무 실무자 간 통신약정 검토

- 1988.3월 해양경찰대는 일본으로부터 조난선 수색과 구조에 대하여 한국 해양경찰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간에 통신을 설정하는 것을 약정하기 위한 초안 문서를 접수하였다며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옴.
 - 이에 외무부는 상기 약정이 조약체결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약정 형식으로 기관이 단독 체결할 수 있음을 회신함.

116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1989.4.1. 발효 (조약 제974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영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4 / 3 / 1-129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이 1989.2.1. 체결됨.

1. 체결 의의

- 양국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관계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1170

2. 주요 내용

-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입국하여 30일간 체류가 가능함.
-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증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함.
- 이 협정의 대상자들은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각 체약당사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3. 동 협정은 1989.1.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2.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호른 줄라 헝가리 외무담당 국무비서 간에 서명되고, 1989.4.1.자로 발효됨(조약 제974호).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0.2.19. Port-au-Prince에서 서명: 1990.3.21. 발효(조약 제996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영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4 / 4 / 1-217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협정이 1990.2.19. 체결됨.

1. 체결 경위

- 1988.12.15. 주아이티대사는 올림픽 개최 후 아이티 국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증대 및 주한 아이티대사관의 과다한 사증 수수료 부과 폐단 시정을 위해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건의
- 1989.2.8. 주아이티대사 주최 만찬에 참석한 Charles 외무장관은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동의
- 1989.2.21. 외무부는 한국 측 제안각서안을 송부하고 주아이티대사관에 교섭을 지시
- 1989.3.1. Charles 외무장관은 한국 측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
- 1989.12.5. 아이티 외무부는 수정안을 통보하고 국내절차를 취하기로 합의

2. 체결의 의의

- 한·아이티 간 사증면제협정의 체결로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뿐아니라 양국간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일방 체약국 국민은 사증 없이 타방체약국에서 90일 내 체류 가능
- 선원수첩 소지 선원은 타방체약국에서 15일 내 체류 가능
- 타방체약국에서 90일을 초과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 종사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필요

4. 동 협정은 1990.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2.19. 아이티공화국의 포르토프랭스에서 권인혁 주아이티대사와 Yvon Perrier 아이티 외무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0.3.21.자로 발효됨(조약 제996호).

117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1 1984-85)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영사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0-84 / 5 / 1-190

1984~85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3월 한·일본 사증 발급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전달함.

- 일괄 사증협정 체결 문제
 - 일본은 타국과 복수 재입국 허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나, 한국과 사증협정 체결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본 측 입장을 통보할 것임.
- 복수재입국 허가 문제
 - 한국 측이 일본 상사 주재원 전원에게 확대하면 일본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2. 법무부는 1984.12.4.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을 정하고 외무부 의견을 공문으로 문의함.

- 확대 범위: 30인 이상의 각종 일본인 여성단체
 -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 단체 등에 대하여 15일간 무사증 입국 허가
- 허가기간: 15일
 - 현행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는 행선지의 항공기 등에 좌석예약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5일간 무사증 입국 허가
- 외무부는 1985.1월 상기 법무부 계획에 대해 이견 없음을 통보함.

3. 일본 정부는 1985.3월 한국 대학교의 교수급 이상자, 학술원, 예술원 회원 등 학술·문화계 간부급 인사에 대하여 복수사증을 발급할 방침임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 외무부는 6.5. 일본 측이 제의한 문화 복수사증의 상호 발급보다는 한국 측이 제의한 일괄 복수사증협정을 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함.

4.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문화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1985.9.15.부터 시행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범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 국공립 연구소의 장, 국공립 미술관·박물관·도서관의 장 또는 연구자
- 발급 방법: 복수 1년, 체재기간 30일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2 1986)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영사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0-84 / 6 / 1-168

1986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일본 외무성 사증실장은 1986.1.31. 외무부를 방문하여 일본 정부의 한·일본 의원연맹 및 올림픽 관계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방침을 밝힘.

- 상용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확대에 의견일치

2. 한·일본 양국은 1986.2월 현재 한·일본 일부 인사에 대하여 실시중인 복수사증 발급을 한·일본 의원연맹 관계자 양국 각각 10명에 대해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함.

- 양국 올림픽 관계자(한국 측 109명, 일본 측 58명)에 대하여도 복수사증 발급을 실시하기로 합의

3. 외무부는 1986.12월 일본 측이 1983.6월 이래 제의해온 문화 복수사증 상호 발급과 외교관 여권 사증 유효기간 확대 문제에 관해 공문으로 관계 기관의 입장을 문의함.

-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한·일본 간 복수사증 발급의 점진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남북대치 상황 및 일본문화의 국내 수용태세 미흡을 들어 신중한 추진을 주장함.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일본 측에 상응한 조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
 - 상용여권의 경우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에 한정 발급이 타당하다는 입장

117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3 1987-90)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영사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0-84 / 7 / 1-322

1987~90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법무부는 1987.5.8. 일본 문화인에게 7.1.부터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지면서 주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대상

- 국·공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직
- 국·공립 연구소의 장, 국영기업체 부설 연구소의 장
- 국·공립 미술관·박물관·도서관의 장

● 사증 내용

-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60일

2. 주일본대사관은 1987.7.6. 한국의 일본인에 대한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현황을 통보하고,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상용복수비자 발급완화에 관한 호의적 검토를 일본 외무성에 촉구함.

- 일본 외무성은 7.18. 그간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8.1.부터 대폭적인 사증발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옴.
- 한국 정부도 1988.4.1.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를 대폭 완화함.
 - 관용여권 소지자: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 한국 주재 일본 상사원: 체류기간 및 갱신 제한을 철폐, 2회까지 갱신 가능

3. 주일본대사관은 1988.5월 급증하는 한·일본 간 인적왕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간 전면적 사증완화 교섭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4. 한·일본 간 사증 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 1989.3월 외무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안을 일본 측에 제시함.
- 1989.6월 일본 측 대안을 접수.
- 1990.2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90.5월 문안 합의
- 1990.5.25. 양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 교환
- 1990.7.1.부터 시행

한·중미 도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영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4 / 8 / 1-353

1990년 중 한·중미 도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7.7월 주바베이도스대사는 양국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검임 5개국(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다)과 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8.2월 외무부는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검임국 정부들과 협의한 결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이 동의함.

2. 주요 협정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상대국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
- 양국 선원은 선원수첩과 승하선명령서를 소지하는 경우 상대국에 입국하여 15일간 체류할 수 있음.

3. 협정 의의

- 인적교류 촉진을 통한 각국간 협력증진 및 기존 우호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함.

4. 한국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가 1990.2.27. 각각 교환되고 1990.3.30.자로 발효됨(조약 제997, 998, 999호).

- 한·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가 1990.6.6. 교환되고 1990.7.6.자로 발효됨(조약 제1011호).

117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주기구(OAS) 간 협력관계 설정 및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한·OAS 간의 양해각서 체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 조약과

MF번호 2020-84 / 9 / 1-222

한·OAS(미주기구) 간의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및 협력관계 설정에 관한 양해각서가 1990.12.3. 체결됨.

1. 체결 경위

- 1989.5월 미주기구 사무국은 콜롬버스의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에 즈음하여 동 사무국이 회원국 및 상임 옵서버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한·OAS 간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을 제의해 옴.
- 1989.11월 상기와는 별도로 OAS 간 기존협력 관계확대를 위해 한·OAS 간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을 추가로 제의해 옴.
- 상기 제안에 대해 외무부는 한·OAS 간 협력 관계 긴밀화와 미주지역 및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2. 양측은 동 각서를 협정이 아닌 외무부와 OAS 사무국 간의 기관약정 형식으로 체결을 합의함.

3. 양해각서 요지

- 대한민국 외무부와 미주기구 사무국 간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양해각서
 - 목적: 미주기구 상임 옵서버국으로서 한국의 동 기념사업 참여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 합의 내용: 한·중남미 관계 연구를 위한 장학금 지급, 학자파견 및 기념사업 관련 순회개최에 합의
- 대한민국 외무부와 미주기구 사무국 간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
 - 목적: 미주기구 상임 옵서버국으로서 한국은 그간 실시해온 한·OAS 간 협력사업을 더욱 발전시킴.
 - 합의 사항: 대한민국 외무부가 제시하는 협력희망사업 분야와 OAS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양측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결정하고, 외무부의 기여금과 OAS의 예산을 결합 시행함.

4. 동 약정은 1990.12.3.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Soares 미주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으로 체결됨.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0. Brussels에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80호)

생산연도 1978-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4 / 10 / 1-299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이 1990.1.10. 체결됨.

1. 체결 경위

- 1983.7월 주벨기에대사관은 한·벨기에 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승인에 관한 약정 체결을 건의함.
 - 한국 운전면허증은 주재국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 않아 까다로운 운전면허시험을 거쳐야만 취득가능
- 1985.9월 외무부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한국 측 제안 각서를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
- 1989.4월 주벨기에대사관은 수년간 주재국과의 문안 교섭 결과를 외무부에 송부함.
 - 주재국과 제3국과 교환한 유사 각서 문안을 토대로 잠정안을 작성
- 1990.1월 벨기에 정부는 외무장관 명의로 각서교환을 제의해 옴.

2. 주요 내용

- 일방체약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타방체약국의 상응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음.
- 일방체약국 면허증 소지자가 타방체약국에서 법령 또는 면허 발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발급받은 타방체약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각기 타방체약국 국민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발급은 양국간 운전면허 종류 구분표에 의하여 실시함.

3. 본 협정은 1990.1.10.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크 벨기에 외무장관과 정우영 주벨기에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0호).

한·캐나다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0.9.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17호)

생산연도 1970-1990

생 산 과 문화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1 / 1-370

한·캐나다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1990.9.19. 체결됨.

1. 교섭 및 서명 경위

- 1989.10월 캐나다 측 초안 제시
- 1990.1월 한국 측 대안 제시
- 1990.2월 캐나다 측 수정안 제시 및 양측 문안 합의
- 1990.5월 제20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90.9월 양해각서 서명 및 공포

2. 주요 내용(전문과 본문 15개조로 구성)

- 문화·교육 및 체육분야 등에서의 인적교류가 용이하도록 장려하고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사업을 개발하도록 함.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타방국 국민의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함.
- 타방국에서 자국의 문화에 관한 교육·연구 및 출판을 장려하고, 타방국 국민의 학술·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보급을 촉진함.
- 청소년 및 체육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3. 동 각서는 1990.9.18.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조 클라크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 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17호).

한·가나 문화교류 시행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85 / 2 / 1-167

1989~90년 중 한·가나 간의 문화교류가 시행됨.

1. 가나 정부는 1989.11월 한·가나 간의 문화협정(1987.5월 서명) 이행을 위한 아래 요지의 계획서를 한국 측에 송부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사업내용을 요청함.

- 시행년도: 1990~92년도
- 교육분야
 - 대학·기관 간 직접 접촉 장려를 위해 가나 측 사람들에게 교육훈련 제공
- 문화 및 예술분야
 - 가나 측은 한국에 2~3주간 연극계 인사 파견
 - 예술단 파견 및 예술전시회 개최
- 정보분야
 - 신문, 잡지, 영화, TV, 방송, 복사권 및 통신행정의 고위 대표단 교환
- 기술협력분야
 - 한국 측은 농지확장 용역, 관개사업 관리, 벼생산 등 각 코스에 연수생을 초청

2. 한·가나 문화교류 계획서 관련, 가나 정부는 1990.3월 한국 측 안(1월)의 재정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해 옴.

3. 한·가나 문화교육 및 과학협력 시행 계획서가 1990.6.14.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과 주한 가나대사 간에 서명됨.

- 1990~92년간 문화, 교육 및 과학 교류에 관해 아래 분야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합의
 - 교육분야: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1인 접수
 - 문화·예술분야: 가나 측은 극장관계 종사자 1인을 한국에 파견
 - 정보분야: 양측은 언론, TV, 방송, 정보분야의 강사 학생들로 구성된 고위 대표단의 상호 파견 장려

한·이라크 문화·과학·교육협력 계획 추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85 / 3 / 1-156

1987~90년 중 한·이라크 간의 문화·과학·교육협력 교섭을 추진함.

1. 이라크 정부는 1987.8월 주한 이라크영사관을 통해 1985.5월 체결된 한·이라크 문화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간 문화·과학·교육협력 추진계획서안을 제시함.

2. 외무부는 1987.11월 관계부처(문교부, 체육부, 문공부, 과기부, 노동부)와 협의 후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함.

- 상기 수정안은 1988.3월 이라크 측에 송부

3. 이라크 정부는 1989.8월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시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측 안을 재작성

4. 외무부는 1990.6월 한국 측 최종안을 주한 이라크대사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아래 자료를 첨부 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함.

- 이라크 측 초안 및 국문요지
- 상기 초안에 대한 1차 한국 검토의견서(1988.3월)
- 한국 측 제2차 안(1989.11월)
- 주한 이라크대사관 재요청 공한 사본(1990.5월)

한·파키스탄 문화교류 시행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85 / 4 / 1-57

한·파키스탄 간의 문화교류 시행 계획서가 1990.9.16. 서명됨.

1. 서명 경위

- 1990.3월 파키스탄 정부는 1990~91년 한·파키스탄 문화교류 계획서 파키스탄 측 안을 송부해옴.
- 상기 계획서는 1988.5월 서울에서 서명된 1988~89년도 문화교류 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임.
- 1990.5월 외무부는 상기 파키스탄 안에 대해 문교부, 문화부, 공보처, 체육부, 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파키스탄 측에 제시함.
- 1990.7월 양측은 상기 계획서 문안에 합의함.

2. 문화교류사업 이행합의분야

- 문화, 예술, 영화 및 체육
- 관광
- 교육
- 정보 및 방송
- 일반 및 재정조항

3. 동 계획서는 1990.9.16.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순규 주파키스탄대사와 Hussain 파키스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간에 서명됨.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5 / 1-101

1989~90년 중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관련 내용임.

1. KBS와 소련 언론기관 간 방송협력협정

- 공보처는 1990.1.20. 외무부에 아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문의함.
 - KBS는 소련 TV영화제작단, 국영 우즈베크방송위원회, Forum Video Studio와 방송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던 중 소련 TV영화제작단 및 Forum Video Studio 측에서 상호 보완협력 보다는 상업목적의 교류를 희망해 옴.
 - 공영방송인 KBS로서는 동 2개 방송 기관과의 방송협정 체결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교포 방송을 시행중인 소련 사할린 국영방송위원회 및 카자흐 국영방송위원회와의 방송협력 각서를 체결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함.
- 1989.6.29. 외무부 조약과 검토의견 통보
 - 정식조약 체결의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정부 당국이 승인하고 해당기관 당사자가 자국 내 시행 중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면 기관간 약정 체결은 무방
 - 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발효할 것임을 명기하고, Article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등 약정 문안상의 유의점 통보

2. 중앙일보사와 소련 Komsomolskaya Pravda지 간 기자교환 협약

- 공보처는 1990.6.2. 중앙일보사와 소련 'Komsomolskaya Pravda지' 간의 기자교환 계획의 협약에 가조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함.

3. 연합통신과 소련 Novosti통신 간의 뉴스협력 협약

- 공보처는 1990.7.2. 외무부에 연합통신이 소련 Novosti 통신과의 뉴스협력 협약 관련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동 협약 문안 중 제5조의 "양 회사는 상대 회사의 상주 특파원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는 구절은 한·소련 간 상주특파원 교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동 구절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함.

한·독일 간의 국립 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6 / 1-170

한·독일 간의 국립 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육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함.

1. 1983.8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국립 충남대학교 기술교육 대학교사 훈련사업 지원 연장을 위한 약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해 옴.

- 독일 측은 동 사업 연장지원을 위해 250만 마르크를 배정

2. 한·독일 간의 국립 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이 1987.5.25.과 7.2.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87.7.2.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36호).

- 협력내용

- 화학공학, 제조공학 전공 대학원생의 최대 33개월간 한국파견
- 한국인 과학자 총 68명 독일 내 훈련
- 부속 기자재 공급

3. 한·독일 간의 국립 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이 1990.9.19. 및 10.25.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90.10.25.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9호).

- 약정내용

- 화학공학 및 환경공학 전공 대학원생의 최대 36개월 한국파견
- 대학원생 및 객원교수 최대 14명 한국파견
- 한국인 과학자 등 독일 내 훈련
- 부속 기자재 공급

한·독일 간의 국립 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7 / 1-125

한·독일 간의 국립 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1. 한·독일 간 국립 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이 1987.5.25. 및 7.2.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90.4.13.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38호).

- 약정 내용

- 총 30인의 단기 전문가 한국파견
- 총 30인에 대한 장비 및 자재조달 및 기초 응용훈련
- 한국 측은 장학금 수혜자 국외여비 및 봉급 지불

- 동 약정은 한·독일 기술협력협정(1967.2.13.)의 시행약정임.

2. 한·독일 간의 군산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이 1989.12.28. 및 1990.4.13.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90.4.13.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4호).

- 연장기간: 1989.7~91.2월

- 사업 자금: 240만 마르크

- 사업 내용

- 독일 전문가 내한 자문 42명
- 한국인 독일 연수 32명
- 기자재 제공

기관간 약정: 환경청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5 / 8 / 1-34

1987~88년 중 환경분야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환경보호분야 과학기술협력의정서(1987년)

- 환경청은 1987.3.13. 한·미국 환경보호분야 과학기술협력의정서 초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3.19. 이는 정부기관 간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국 환경청이 동 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음을 통보

2. 한국 국립환경연구원과 일본 국립공해연구소 간의 환경보존기술시행약정(1987~88년)

- 일본 정부는 1987.9.22. 제1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1986.8월, 서울)에서 합의된 협력과제 중 “환경보존기술에 관한 연구”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한국 국립환경연구원과 일본 국립공해연구소 간의 시행약정을 체결하고자 일본 측 약정(안)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제시
- 외무부는 1988.1.4. 동 약정의 일본 측 안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양국 환경관계연구소 간의 실무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의 조약 체결절차를 요하지 않는 정부기관간 약정안으로 볼 수 있다고 통보

118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독일 간의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예방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9 / 1-204

1984~90년 중 추진된 한·독일 간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 예방사업에 관한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독일 간의 한국석탄산업에 신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 예방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이 1984.9.11. 및 11.15.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볼프강 예거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84.11.15.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03호).

● 약정 내용

- 채광. 광산기계 및 탄광법 전문가 3명 3개월간 한국파견
- 지하갱도 전문가 등 특별 전문가 6명 3개월간 파견
- 한국 측은 파견전문가에 대한 사무실. 집기 및 물자 제공

2. 한·독일 간의 한국석탄산업에 신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 방지사업에 관한 보완약정이 1987.10.7. 및 1988.2.23.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고, 1988.2.23.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55호).

● 약정 내용

- 1966.9.28. 체결된 한·독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 독일 기술협력공사는 한국 동력자원 연구소의 장벽식 채탄방식 추진을 위한 장비 및 물자를 지원함.
- 독일 측 지원: 동력자원연구소에 1,099,978마르크 제공
- 한국 측 지원: 동력자원연구소 소요예산 재원 할당

3. 한·독일 간의 신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 방지사업에 관한 보완약정이 1988.4.19. 및 1988.9.3.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88.9.3.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1호).

● 약정 내용

- 독일 측: 2,000,000마르크 부담
- 한국 측: 운영관리비 등 부담

4. 한·독일 간의 신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 방지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이 1990.9.18. 및 11.24.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90.11.24.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3호).



● 약정 내용

- 독일 측
 - 광산전문가 파견, 한국인 과학자 박사과정 연수
- 한국 측
 - 한국인 전문가 확보
 - 사무소, 실험실, 작업장 및 유지비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봉급 및 국외여비
 - 독일인 전문가 1인당 월 2,500마르크 부담

체육 관련기관 간 약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조약과 / 문화과

MF번호 2020-85 / 10 / 1-312

1983~90년 중 체결된 체육분야 기관간 약정 관련 내용임.

1. 대한체육협회는 1983.7월 이탈리아 체육협회와 한·이탈리아 스포츠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정 초안을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함.
2. 체육부와 캐나다 체육성 간의 체육교류에 관한 양해각서가 1985.3.21. 서울에서 양국 체육부장관 간에 체결됨.
3. 대부탄 양국 코치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가 1986.12.15. 인도 주재 양국 대사 간에 서명·체결됨.
4. 체육부와 이라크 청년성 간의 체육협력 의정서가 1987.7.10. 서울에서 서명됨.
5. 체육부와 스페인 체육청 간의 체육협력 의정서가 1988.11.16. 조상호 체육부장관과 자비에르 스페인 체육담당국무장관 간에 서명·체결됨.
6. 체육부와 폴란드 청소년 체육성 간의 체육협력 협정서가 1989.5.3.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서명·체결됨.
 - 협정서 요지
 - 각종 팀 선수 상호교류
 - 양국 개최 세미나, 회의 상호참석
 - 스포츠 학문분야를 포함한 스포츠과학 관련 각종 자료 정보교환

한·일본 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90.5.25. 동경에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93호)

생산연도 1990~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85 / 11 / 1-94

한·일본 간의 원자력 협력협정이 1990.5.25. 체결됨.

1. 체결의 의의

- 일본이 서방 선진국가 7개국 이외 국가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이 직접 원자로나 핵연료 공급국이 아닌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큼.

2. 협정의 항목별 합의사항

- 합의 형식
 - 각서교환 형식으로 하며, 대통령 방일시 양국 외상 간에 서명하도록 함.
- 고시류 조약 처리를 위하여 전문에 양국간 과기협정을 언급하도록 함.
- 협력분야
 - 핵 비상시 협력, 핵시설 안전 및 방사성 보호,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 및 응용 등
- 협력 방법
 - 한국 측 주장중 일본 측이 삭제를 희망했던 공동연구를 포함함.
- 협의회 설치
 -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명기함.
- 핵 사고시 원조
 - 양국이 비상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관련 2개조약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함.

3. 평가

- 동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의 제반협력, 핵 사고 시 상호지원, 정기적 협의 채널구축의 내용이 협정문에 전부 포함되고, 또한 한국 측 안에 근접하게 타결할 수 있었던 점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4. 동 각서는 1990.5.25. 한·일 원자력협정 체결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실무대표단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협정 문안에 원칙 합의함으로써 체결되고 발효시기는 한국의 IAEA 관련 2개 조약이 발효했음을 알리는 한국 정부의 외교공한을 일본 정부가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외무부 고시 제193호).

한국 특허청·소련 국가발명·발견 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12 / 1-130

1990년 중 한국 특허청과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7.26. (주)력키 초청으로 방한한 Torbenko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소련 간 특허업무 협력협정을 비공식 제의함.
- 1990.8.1 특허청장은 Torbenko 부위원장을 면담하여 한·소련 간 특허업무 협력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특허청장의 소련 방문을 협의함.

2. 협정 주요내용

- 특허, 상표, 의장에 관한 심사, 심판 관련 정보자료 및 심사기법과 업무경험의 교환
- 지적재산권 이전에 관한 업무 협조
- 양국간 특허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 양국간 연례 특허전문가 회의 개최
- 동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5년 단위로 연장

3. 협정 체결

- 1990.8월 초~9월 초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정 내용 검토
- 1990.9.5. 한국 측 작성 협정초안을 소련 측에 검토 요청
- 1990.9.20. 특허청장 소련 방문 시 Y.A. Bepalov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위원장과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4. 평가

- 동 협정은 한·소련 간 정식 수교 이전 양국 정부기관 간 최초로 체결됨.
- 항공과학, 물리학, 의학, 전자, 금속, 화공 및 파인세라믹 등 신소재분야에서 첨단기술의 이전 촉진을 기대함.
- 소련의 방대한 특허정보 자료를 입수하여 특허청 및 민간업계 활용의 계기가 됨.

한국 수산청·미국 Alaska 수산연구센터 간의 한·미국 과학자 옵서버 승선 관찰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85 / 13 / 1-288

1990년 중 수산청과 미국 Alaska 수산연구센터 간의 한·미국 과학자 옵서버 승선 관찰에 관한 약정 체결을 추진함.

1.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 관련 한·미국 합의사항 후속조치 경위

- 1989.9.8.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 관련 한·미국 정부간 협의
- 1989.10.26.~27 한·미국 유자망 실무협의회 개최(서울)
- 1989.12.18.~21. 한·미국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 개최(미국 시애틀)

2. 미국 측의 한·미국 유자망 합의사항 이행 관련 양국 수산청 간 추가 협정 제의

- 1990.2.7.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해상 한국 유자망 조업 관리에 관한 한·미 양국 수산청 간 협정을 제의함.
 - 1990년도 어기 전에 옵서버 승선, 자동수신기 설치, 과학자 옵서버 배치문제 등을 완결하기 위함.

3. 한국 측 조치

- 외무부는 1990.4.4.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측 수정안을 전달하고 4.6. 주미국대사관에도 전달하여 미국 측 반응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1989년 양국간 유자망 관련 합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협정 대신 한국 수산진흥원과 미국 알래스카 수산연구센터 간에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4. 양측 간 합의 및 타결

- 1990.5.15.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외무부에 한국 측 수정안을 수락하고 서명·작성한 약정 원본을 전달함.
 - 주요 내용: 1990년 어기 중 미국 과학자 옵서버 13명의 한국 유자망 어선 승선 관련, 승선 대상 선박을 결정하고 비용 발생시 지변 방법 등 세부계획을 확정함.

119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조약과

MF번호 2020-85 / 14 / 1-130

1986~90년 중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사업의 성격

- 한·독일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산림녹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독일 간 협력사업

2. 체결 경위

- 1974.7.31. 한·독일 산림녹화 사업지원 약정 체결
- 1978.9.1. 제1차 연장약정 체결
- 1978.8.24. 보완약정 체결
- 1981.12.30. 제2차 연장약정 체결
- 1984.9.5. 제3차 연장약정 체결

3. 제4차 한·독일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연장약정 체결

- 1986.5.23. 주한 독일대사관 공한으로 요청
 - 주요 내용: 강원도지역의 산림경영사업을 위한 협력 연장
- 동 약정안은 1986.5.23. 및 10.3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23호).
 - 1988.4.30.까지 연장

4. 제5차 한·독일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연장약정 체결

- 1988.6.29. 한국 측 공한으로 요청
- 1989.12.31.까지 연장

5. 제6차 한·독일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연장약정 체결

- 1989.12.14. 주한 독일대사관 공한으로 산림경영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체결 제안
- 동 약정안은 1989.12.14. 및 1990.4.13.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와 최호중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2호).

통상 관련기관 간 약정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5 / 15 / 1-32

1988~90년 중 통상 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모로코 상공부 간의 모로코산 인광석 도입 관련 의정서(1988년)

-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8.7.4. 모로코산 인광석 도입을 위해 모로코 측과 한국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의정서 문안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양측 정부대표 간 서명에 관한 국제기구 조약국의 검토 의견을 문의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7.11. 동 의정서는 조문의 내용으로 보아 양국간의 공식적인 조약 형식보다 양국 상공부 간의 기관간 약정 또는 1986.10월 제1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 합의의 사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충적 시행계획 등의 형식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통보

2. 한국 상공회의소와 미얀마 상공회의소 간의 협력 의정서(1990년)

-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1990.2월 주미얀마대사관을 통해 한·미얀마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을 위한 의정서 체결을 제의하는 김상하 회장 앞 서한 전달을 요청
- 대한상의 측은 3월 미얀마 연방 상의에 동 협력의정서 문안 송부
-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적절한 시기에 미얀마연방 상의 회장이 방한하여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초청하는 서한을 미얀마 상의 회장에게 송부

119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1990.2.2. 발효(조약 제993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2과

MF번호 2020-85 / 16 / 1-106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이 1989.11.1. 서울에서 체결됨.

1. 협정 주요내용

-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지원, 전시물품 및 견본에 대한 관세·부과금 면제, 자유태환 통화에 의한 지불 등

2. 협정 가서명

- 1989.9.19. 한·폴란드 무역협정 문안 가서명

3. 법제처 의견 조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 외무부는 1989.9.20. 법제처에 한·폴란드 무역협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바, 법제처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협정 시행을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견 회신
- 1989.10.26.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89.11.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야누스카츄르바 폴란드 대외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로 상호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인 1990.2.2.에 발효됨 (조약 제993호).

한·루마니아 간의 무역협정, 1990.8.7. Bucharest에서 서명: 1990.12.21. 발효(조약 제1025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1 / 1-259

한·루마니아 간의 무역협정이 1990.8.7. 루마니아 부차레스트에서 체결됨.

1. 경위

- 1990.3.28.~4.2. 방한한 루마니아 정부대표단과의 수교 교섭시(3.29), 양국은 양국간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무역협정 등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무역협정 주요 내용

-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간의 물품의 수입과 수출은 양국의 개인·법인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함.
- 양국간의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결제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행함.
- 양국은 현행법령의 범위안에서 견본 및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함.

3. 체결의 의의

- 한국과 루마니아 간의 교역규모를 확대하고 양국간의 통상교류를 증진하여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함.

4. 동 협정은 1990.7.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8.7.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최호중 외무부 장관과 아드리안 나스타세 루마니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0.12.21.자로 발효됨(조약 제1025호).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V.1 7-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86 / 2 / 1-193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1990.8.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추진 경위

- 1990.8.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련 경제회담에서 양측은 6개 경제관계협정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소련 측은 통상대표부 설치가 포함된 무역협정 연내 체결 제의

1196

2. 소련 측 문안 검토

- 소련 측 안은 양국에 통상대표부 상호 설치와 기능, 외교특권, 고용원 등을 협정 본문에서 규정
- 소련은 국가무역 독점제도에 따라 “대사관의 일부”라는 법적지위 하에 60여 개국에 통상대표부를 설치

3. 교섭 시 한국 측 입장

- 소련의 국가무역제도를 감안, 대사관의 일부(integral part of the Embassy)로서 통상대표부 설치를 허용
-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 통상대표부 설치는 불허
 - 통상대표부 우선설치 시, 한·소련 수교시기 지연 결과 초래 가능성 고려
- 소련 측 입장을 고려, 수교 후 통상대표부 설치를 확인하는 부속서한을 작성하며 무역협정 본문에는 통상대표부 조항을 삭제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V.2 9-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86 / 3 / 1-216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1990.9.13.~14.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국환 상공부 제1차관보
- 소련 측: Mardvinov 소련 대외경제관계성 차관

2. 주요 합의내용

- 양국간 무역과 관련된 세제, 절차, 규정 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무역공동위 설치, 연 1회 회의 개최
- 자유태환 통화 결제 및 주재상사 편의제공
- 견본품, 광고물품에 대한 상호면세
- 입출항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등

3. 관찰 및 평가

- 전체적으로 한국 측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됨.
 - 양측이 2차 초안을 사전교환한바, 한국 측 2차 안을 기본문서로 협의 진행
- 무역대표부 설치문제는 소련 측이 당초 예상보다 쉽게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여 수교 이후에 설치하기로 합의한바, 이는 수교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련 측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사료됨.
 - 소련 측 수석대표는 수차에 걸쳐 수교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견 피력
- 회담에 임하는 소련 측 태도는 정중하고 진지한바, 소련 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크게 신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감지됨.

4. 양측 수석대표는 1990.9.14.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5. 향후 조치계획

- 수교 후 무역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
 - 무역협정의 개정 또는 별도 협정
- 무역공동위 설치 문제
 - 소련 측은 장관 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할 것을 희망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한국 측 수석대표 및 주무부서 결정이 필요함.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V.3 11-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86 / 4 / 1-217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이 1990.12.14. 모스크바에서 체결됨.

1. 체결 목적

-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방식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활동과 관련,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향유함.
- 개별거래의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상거래는 각국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짐.
-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내에서의 재판소와 행정기관에 원고 혹은 피고 등의 자격으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하며 양국간 상사분쟁은 원칙적으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당사국인 제3국을 중재장소로 함.

3. 동 협정은 1990.1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12.14. 소련 모스크바에서 박필수 상공부장관과 콘스탄틴 페도로비치 카루셰프 소련 대외경제관계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1022호).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1 교섭철(198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5 / 1-80

1988년 중 미국산 특수강 수입규제 협의 기간연장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8.6.21. 미국산 특수강 수입규제 협의 기간을 1988.12.18. 까지 재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88.10.24.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제한조치의 경제적 효과 조사 관련 연방관보 발표문을 보고함.
3. 주제네바 USTR은 1988.12.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9조 제3항(A)에 근거, 미국산 특수강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의 기간을 1989.6.15.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공동 서명할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함.
 - 외무부는 12.27.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협의에 대한 기간연장 동의를 통보함.
 - 특수강은 한·미국 정부 간 시장질서유지 협정에 의해 1989.9.30.까지 규제하도록 기합의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2 교섭철(1989.1-7))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6 / 1-242

1989.1~7월 중 한·미국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체결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철강 VRA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수출자율규제협정)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철강 실무협의를(1989.3.22.~23.,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오 상공부 제철과장
 - 미국 측: Ludwig 미 상무부 아시아과장
- 협의 요지
 - 한·미국 철강산업 동향
 - 철강 Post-VRA: 미 행정부는 현 VRA 종료 이후의 미국 철강 수입정책 논의를 위해 USTR(미국무역대표부) 중심으로 상무, 재무, 국무, 노동부 및 예산실, 경제자문위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 중
 - VRA의 추가연장 및 보조금 등 외국의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4월 말까지 동 협의 결과에 따른 행정부의 입장에 의거 각국과의 협상 추진을 희망
 - 한국 측은 한국과 같은 공정무역국까지도 VRA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받아서는 안되며, 한국이 향후 어떠한 규제적 성격의 조치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2. 철강 VRA 연장 발표

- Hills USTR 대표는 1989.7.25.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철강무역 자유화 계획에 의거, 현 철강 VRA를 2년 6개월간(1989.9.30.~92.3.31.) 연장함과 아울러 동 기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 내용
 - 미국 총 소비 중 수입규제 목표: 18.4%
 - VRA 대상국가: 종전과 동일(29개국)
 - 협상대상품목: 종전과 동일
 - 철강조기공급제도 개선: 국별 한도량 폐지, 처리기간 단축(30일) 등
 - 반제품에 대한 규제 한도(종전 150만 톤)도 국내수요에 따라 변경
 - 미국 의회에서 미 철강 현대화 추진 관련 입법 지지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3 교섭철(1989.8-9.15.))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7 / 1-215

1989.8~9월 중 한·미국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989.7.26. 미 행정부가 현행 철강 VRA(수출자율규제협정)을 향후 2년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함.

2. 제1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8.8.~9.,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미국 측: Sidney Willi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 협의 내용
 - 철강교역 자유화에 관한 국제협정 문제
 - VRA 연장 문제
 - 미국 측: 신VRA의 각국별 쿼터량은 기존 쿼터량에 관계없이 새로 책정하여 강관 등 일부 품목의 쿼터량 삭감 설명
 - 한국 측: VRA 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포철과 미 USX사 간의 합작회사인 미 UPI사에 대한 공급물량을 대한국 쿼터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 요청

3. 제2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9.4.~5.,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Donald Philips USTR 대표보
- 협의 내용
 - 신VRA협정
 - 미국 측: 규제물량으로 미국 명목 소비량의 1.53% 수준을 제시, 물량수준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수정 제의를 요청
 - 한국 측: 미국 측 제안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물량협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수정 제의 요청에 대해서는 3차 협상 시 제의할 의사 표명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4 교섭철(1989.9.16.-10월))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8 / 1-190

1989.9~10월 중 한·미국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제3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9.21.~22.,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Donald Philip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평가
 -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측 의견 해소에 실패
 - 신 VRA 협정문에 대해서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물량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에 상당한 견해 차이 노정

2. 제4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9.28.~10.10., 워싱턴)

- 대표단: 제3차 협상과 동일
- 협상 결과(잠정 합의)
 - UPI 문제: 한·미국 합작 UPI사의 hot coil 소요량(연간 136만 6천 톤) 중 제1기(1989.10.1.~ 90.12.31.)에 53만 3천 톤, 제2기(1991.1.1.~92.3.31.)에 63만 6천 톤을 포항제철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별도로 처리, 대한민국 물량 책정
 - 신규 VRI 물량: UPI에 대한 공급분을 포함하여 제1기에 미국 소비량의 2.45%, 제2기에 2.62%를 대한민국 물량으로 책정(UPI에 대한 공급분을 제외하고도 현 1.8%에 비해 증량된 수준)
 - 양자협정의 기한: 양자협정은 1992.3월 VRA 종료 시까지만 존속
 - 양자협정 위반 시 제재: 명백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의 경우 선 제재 조치 후 중재패널에 회부하며 미국 측 위반 시 쿼터 증량
- 상기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미국 측의 각국과의 협상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

3. 1989.10.25.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과 Phillips 미 USTR 대표보간에 한·미국 철강교역상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협정안 및 VRA 2년 반 연장 협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함.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5 교섭철(1989.11월-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9 / 1-319

1989.12.12.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7.25. 발표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철강무역 자유화 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각국과의 2년 반의 VRA(수출자유규제협정) 연장 및 국제적인 컨센서스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협상의 결과를 아래 요지로 발표함.

1. 양자협정 체결

- 철강 무역상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양자협정을 EC(구주공동체), 일본, 한국, 브라질 및 멕시코 등 7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체결하였는데, 이는 향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다자간 규정(국제적인 컨센서스)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각국과 체결한 양자협정의 주요내용은 철강산업에 한정된 정부보조금 금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협정 위반 시 양자 간 중재절차를 통한 제재조치 결정 등임.

2. VRA 연장 협상 결과

- 1992.3.31.까지 2년 반 동안의 VRA 연장을 위한 16개국 및 EC와의 협상 결과 동 국가들의 총 쿼터는 제1기(1989.10~90.12월)에는 미국 내 철강 총소비의 19.1%, 제2기(1991.1~92.3월)에는 20.14%로 책정됨.
- 각국과의 협상 시 전체적으로 쿼터 소진율 제고를 위해 일본의 경우 쿼터량 삭감(기존 6.2%-제1기 5.0%), EC의 경우 과거와 유사(기존 6.7%-제1기 12개국 기준 7.0%), 기존 쿼터를 충분히 소진시켜 왔던 멕시코(기존 0.36%-제1기 0.95%)와 한국(기존 1.8%-제1기 2.45%)은 증량을 시키는 등 국간 쿼터량 조정을 행하였고 국제적 컨센서스에 협조해 준 EC, 일본, 한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동 대가로 총 1%의 보너스 내에서 증량을 시켜 주었음.
- 또한, 미국 내 철강품목별 상황을 감안하여 중간재(30%) 및 특수강(10%)은 전체적으로 증량 시켰고 유정용 강관은 40% 정도 삭감함.

3. Hills USTR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강무역의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국제적 컨센서스의 다자간 추진방식과 관련, 우선적으로는 UR의 관세, 비관세 및 보조금 협상을 통해 철강산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각종 산업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로서 관계규정을 개선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지만, 만약 동 일반적 접근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철강에 한정된 GATT Plus 방식(다자간철강협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V.6 체결철)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10 / 1-350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자유화협정 및 VRA(수출자율규제협정)을 1990.4.20. 체결함.

1. 체결 목적

- 철강교역을 위한 보다 자유로운 조건 및 철강교역에서의 교역 왜곡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을 위한 과도기를 제공하는 것
- 철강교역에 있어서의 교역 왜곡 관행을 경감하는 것
- 철강교역 상 교역 왜곡 관행이 없는 다자간 교역환경을 구축하는 것

2. 체결 의의

- 양국간 철강교역 왜곡 관행 제거 및 철강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정 체결의 환경조성에 기여

3. 주요 내용

- 철강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 제공 금지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철강시장 개방
- 철강플랜트 및 설비수출을 위한 금융보조 금지

4. 본 협정은 1990.4.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4.20. 워싱턴에서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Willi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간에 최종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02호).

한·미국 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85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0-86 / 11 / 1-100

한·미국 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이 1990.4.20. 체결됨.

1. 경위

- 1989.10.25. 가서명

2. 주요 내용

- 약정기간: 1989.10.1.~92.3.31.(2년 6개월)
- 규제품목: 14개 카테고리 및 12개 세부 카테고리
- 규제수준
 - 제1차 규제기간(1989.10.1.~90.12.31.): 미국 측 총소비량의 2.45%
 - 제2차 규제기간(1991.1.1.~92.3.31.): 미국 측 총소비량의 2.62%
- 융통성 조항: 전용, 조상, 이월 사용시 미국 측의 별도 동의 불필요

3. 동 약정은 1990.4.20. 린 윌리엄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박동진 주미국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5호).

120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9.12. 및 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1.1.1. 발효(외무부고시 제200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6 / 12 / 1-38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개정이
1990.11.3. 체결됨.

1. 경위

-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은 1990.9.12.자 공한을 통해 1987.10.22. 서명된 한·노르웨이 섬유협정을 개정하고자 제안각서를 송부해 옴.

1206

2. 주요 내용

- 쿼터 규제품목 및 규제물량 조정
 - CAT 3,4,6,8은 규제대상 품목에서 삭제
 - CAT 1,2,5 중 키 152cm 이하 소년, 소녀용 의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CAT 5의 쿼터증량
- 각서교환의 발효일: 1991.1.1.

3. 개정 의의

- 대노르웨이 섬유류 수출증대 및 쿼터 증량효과 기대

4. 본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은 1990.9.12.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1990.11.3. 외무부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1.1.1.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0호).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1 사전협상, 제1-3차)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1 / 1-276

1989.2~10월 중 제1~3차 한·미국 섬유협상이 미국에서 개최됨.

1. 제1차 한·미국 섬유협상(1989.2.16.~17., 워싱턴)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Steinberg USTR(미국 무역대표부) 섬유협상 대표대리
- 의제
 - 한·미국 섬유협정 연장, AVV(자동수출비자) 제도 운영 관련사항, HS(품목분류)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협의

2. 제2차 한·미국 섬유협상(1989.7.15.~16., 하와이)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Sorini USTR 섬유협상 대표
- 의제
 - 한·미국 섬유협정 연장 협의, 유아복 수출 물량 설정, HS 제도 시행에 따른 규제범위 확대 조정
- 관찰 및 평가
 - 미국 측은 미국 의회내 섬유수입 법안 상정 움직임 등 국내 정치적 어려움 등을 들어 한국의 미소진 쿼터 삭감과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방지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한국 측의 강한 반발에 따라 세부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신 협정 체결 시까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3. 제3차 한·미국 섬유협상(1989.10.25.~27., 워싱턴)

- 참석자(수석대표): 2차와 동일
- 의제
 - 한·미국 섬유협정 연장
- 관찰
 - 미국 측의 기본관심은 섬유제품 수입 급증 방지와 CBI 국가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미소진 쿼터를 삭감하고자 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198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전반적인 쿼터량 삭감제안을 1차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됨.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2 사전협상, 제4-5차)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2 / 1-172

1989.11~12월 중 제4~5차 한·미국 섬유협상이 개최됨.

1. 제4차 한·미국 섬유협상(1989.11.13.~15., 서울)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Sorini USTR(미국무역대표부) 섬유협상 대표
- 의제: 현행 한·미국 섬유협정 연장
- 평가
 - 현행 협정을 MFA(다자간섬유협정) IV 유효기간까지 연장한다는 금번 협상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신 협정의 적용기간을 1990~91년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
 - 미국 측이 쿼터량의 전반적인 삭감방안을 구체화할 의도로 제시한 쿼터구조의 대폭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 불합리성을 지적함으로써 현행 쿼터구조를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

2. 제5차 한·미국 섬유협상(1989.12.11.~14, 워싱턴)

- 참석자(수석대표): 4차 협상과 동일
- 의제: 한·미국 섬유협정(1986~89년) 연장
- 합의 내용
 - 협정기간: 1990~91년으로 합의(미국 측은 당초 1990~93년간 제의)
 - 협정구조: 현행대로 유지
 - 연 증가율 및 융통성: 현행 수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개별 품목별로 신축성 부여
- 평가
 - 한국 측은 지난 수년간 품목별 쿼터 소진 실적과 향후 대미 수출전망을 기초로 하여, 소진율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쿼터수준을 일부 삭감함으로써 미국 측의 미소진 쿼터삭감 요청을 수용하는 한편, 소진율이 양호한 인기품목(면제품 등)의 경우, 쿼터량, 연증가율, 융통성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한국 측의 실리 확보에 주력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3 문안교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3 / 1-230

1988~89년 중 한·미국 섬유협정 문안교섭 관련 내용임.

1. HS(품목분류제도) 시행에 따른 한·미국 섬유협정 문안 개정 제의

- 1988.12.20. 미국 측은 그간 양국간 합의결과를 근거로 동 협정 문안 개정을 제의
- 1988.12.27. 미국 측은 1988.11.7.~8. 개최된 양국간 섬유협상시 협의 결과를 근거로 동 협정 부속서 문안 개정을 제의

2. 한·미국 섬유협정문 개정안 송부

- 주미국대사관은 1989.3.7. 미국 측의 한·미국 섬유협정 수정안을 외무부에 보고
 - HS 시행을 위한 협정문 수정안 1부
 - 합섬과 면제품 간 교환을 위한 협정문 수정안 1부

3. 한·미 섬유협정문 개정안 동의

- 외무부는 1989.10.23. HS 시행 및 CAT 345 및 CAT 645/646 스웨터 특별조상 사용과 관련한 미 국무부 측의 섬유협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이의 없음을 통보
 - 각서교환 형식과 관련, 현 한·미국 섬유협정이 1인칭 각서교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개정안도 1인칭 각서교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

120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1990.9.14.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90.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전4권 (V.4 체결)**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4 / 1-285

한·미국 섬유협정이 1990.9.14. 워싱턴에서 체결됨.

1. 체결 경위

- 1990.2.20. 주미국대사관은 한·미국 섬유협상시 합의된 미국 측의 1990~91년간 양국 섬유 협정안 송부
- 1990.2.28. 주미국대사관은 HS(품목분류제도) 시행 및 스웨터 특별조상 관련, 미국 측의 협정문(안) 송부
- 1990.3.2. 주미국대사관은 유아복에 대한 MFL 한도조정 및 이에 따른 그룹II 와 CAT 한도 조정내용 및 이에 관한 미국 측 협정안 송부
- 1990.9.10. 외무부는 HS 시행 관련, 스웨터 특별조상 및 유아복 MFL 조정에 관한 미국 측 협정안에 이의 없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2. 협정 서명

- 외무부는 1990.9.11. 한·미국 섬유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측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미국 측 제안각서에 대한 주미국대사 명의의 회답각서를 상호교환 하도록 지시
- 주미국대사관은 9.14. 미국 측과 한·미국 섬유협정, HS 시행 관련 협정 및 유아복 MFL 조정 협정에 대한 서명 완료

3. 한·미국 섬유협정 발효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이 1990.9.14. 한·미국 양국 정부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고 1990.1.1.자로 소급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6호).
- 유효기간: 1990.1.1.~91.12.31.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5 / 1-155

1. 협정 연장 배경

- 한국 정부는 1987.4.5. 개발도상국가 간의 투자촉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와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이 1989.4.15.자로 종료 되는바,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처는 동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 협정을 연장하고자 함. 동 사무소 유지 예산에 관하여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으나, 예산협약이 지체됨에 따라서 4.15. 이전에 협정연장을 위한 국내절차 및 서명절차 완료가 불가능해짐.
- 협정 공백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UNIDO 측은 현행 협정의 수개월간 잠정연장 조치를 제시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처가 이에 동의하고 잠정기간 동안 집행할 예산을 확보, 그 집행계획을 통보해 옴.

2. 협정 연장

- 제1차 연장
 - 1987.4.15. 서명되어 시행되어 온 동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가 1989.4.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도밍고 엘시아존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1989.4.16.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7호).
 - 유효기간: 1989.4.16.~7.15.
- 제2차 연장
 - 상기 각서가 1989.7.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도밍고 엘시아존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1989.7.16.자로 발효됨(조약 제172호).
 - 유효기간: 1989.7.16.~10.15.
- 제3차 연장
 - 상기 각서가 1989.10.16.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도밍고 엘시아존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76호).
 - 유효기간: 1989.10.16.~92.7.15.

3. 동 각서교환으로 1987.4.15.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가 계속 존속하게 됨에 따라 현재 세계 주요 8개 도시에 설치된 UNIDO의 투자진흥사무소와 연계하여 국가 간의 투자 및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교환하거나 각종 기술이전 및 투자진흥회의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함은 물론 폴란드, 중국 등 미수교국과의 투자진흥전문가의 상호교류가 가능하게 됨.

121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과학기술협력 관련 기관간 약정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7 / 6 / 1-150

1987~90년 중 과학기술협력분야 기관간 약정 관련 내용임.

1. 한국 KAIST와 IMC(베네수엘라 과학연구소) 간의 약정(1987년)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5.19. 한·베네수엘라 과학연구소 간 약정안은 국가(또는 정부) 간의 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에 해당하므로, 동 약정안에 파견되는 과학자 또는 전문요원의 경비부담과 관련, 동 경비부담이 별도의 예산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KAIST의 경상경비로서 지출될 수 있는 경미한 부담인 경우에 한하여 양국 과학연구소 간의 동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통보

2. 한·파키스탄 과학기술처 간의 약정(1988년)

-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8.5.16. 파키스탄 정부가 1985.5.9. 서명한 한·파키스탄 과학기술 협력협정에 의거 1988~89년도 사업에 관한 의정서안을 제시해 왔다면, 국제기구조약국의 검토의견을 문의
- 국제기구조약국은 5.17. 시행할 협력내용의 성격상 양국 정부간 약정이 아닌, 양국 과학기술 처간 약정(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

3. 한국과학재단과 소련 과학아카데미간의 과학협력 및 과학자 교류에 관한 의정서(1990년)

- 과학기술처는 1989.11월, 10월 방한한 IMEMO(소련 과학아카데미) 마르티노프 소장 일행이 제시한 한·소련 과학협력 및 과학자 교류에 관한 의정서 초안과 동 의정서 체결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1.10. 소련 측에 성격이 유사한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 한국도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처보다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체결 당사자가 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
- 과학기술처는 1990.2.7. 동 의정서 체결 상대기관을 한국과학재단으로 변경 추진을 통보
- 2.13. Frolov 소련 IMEMO 부원장 방한 시 한국과학재단과 소련 과학원 간 과학협력 및 교류 의정서에 서명

한·불가리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0.3.23 Sofia에서 서명: 1990.11.15. 발효 (조약 제1021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87 / 7 / 1-124

한·불가리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1990.3.23. 소피아에서 체결됨.

1. 주요 내용

-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
- 산업협력의 강화 및 상대국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 촉진
-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및 공동연구 계획의 이행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추진

2. 협정 가서명

- 홍순영 본부대사의 불가리아 방문(1990.2.13.~15.) 계기 불가리아 차관과 회담 시 동 협정에 가서명하고, 3월 중 정식 서명에 합의

3. 법제처 의견 조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 외무부는 법제처에 가서명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의견조회 결과, 법제처는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회신
- 1990.3.9.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0.3.23.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디미트로프 불가리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11.15.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로 상호통보함으로서 발효됨(조약 제1021호).

121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독일 간의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조약과 /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87 / 8 / 1-100

1. 체결 경위

- 독일 측은 1986.12.15.자 공한으로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협정(1966.9.28.서명, 1967.2.13. 발효)에 따른 양국간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대한 약정 체결을 제안함.

2. 협력 내용

- 독일 측: 약 9억 880만원(200만 마르크, 약 112만 달러)
 - 단기 전문가 파견(총 44인 / 월)
 - 장비 및 자재의 공급 및 기초·응용훈련의 제공(총 83인 / 월)
- 한국 측
 - 한국인 전문가, 사무실 및 기술설비 등 제공
 - 장학금 수혜자 국외여비 및 월급 지불
 - 독일 전문가 1인당 월 약 113만5천 원(2,500마르크, 약 1,396달러) 부담

3. 본 약정은 1987.7.2.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39호).

4. 약정 연장

- 독일 측의 제안으로 한·독일 산업안전 자문사업약정이 1989.12.27.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가 보내온 제안각서에 대하여 1990.4.13.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연장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3호).

한·가나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90.6.14 서울에서 서명: 1990.8.20. 발효(조약 제1015호)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87 / 9 / 1-262

한·가나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을 1990.6.14.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86.12월 주가나대사는 한·가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과학기술·무역협정 체결 건의
- 1988.12월 문안 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무역의 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의 장려
- 무역관련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양국 기업 간의 자본투자 및 합작투자의 장려, 증진 등

3. 국무회의 심의·의결

- 1990.5.10.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0.6.14.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Ashmoah 가나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8.20. 양국 정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고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1015호).

121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11.9. 서울에서 서명: 1990.8.21. 발효(조약 제1014호) (V.1 1977-86)

생산연도 197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10 / 1-263

1977~86년 중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협정 체결 및 혼성위 설치 문제 협의

- 1977.5월 외무부,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원회 창설 관련 검토
- 1983.11월 멕시코 상공장관 방한 시 경제공동위 설치 제의
- 1983.12월 외무부, 주멕시코대사에게 경제협의체 설치 관련 의견 타진 지시
 - 주관부서, 설립시기, 설립 방법 등
- 1984.4월 멕시코, 한·멕시코 경제기술공동위 설치 의견 제시
 - 경제협력, 통상, 과학기술, 재정지원, 해운 및 관광 등 경제 제반사항 논의
 - 정기적으로 전체회의 개최, 필요 시 소위원회 구성
- 1984.9월 주멕시코대사, 공동위 구성을 위한 협정 체결 필요성 검토 요청
- 1984.12월 상공부장관 멕시코 방문 시 공동위 설립 협의

2. 양국의 협정문 초안 교환

- 1984.12월 한국 측,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의 초안 제안
- 1985.2월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의 멕시코 초안 제안(스페인어본)
- 1985.9월 멕시코 측의 영어본 대안 접수

3. 협정 문안 협상

- 1986.6월 외무부 미주국장의 멕시코 방문 시 한국 측 대안 제시
- 1986.9월 외무부 경제국장 멕시코 방문 시 협정 문안 공식 협의
 - 멕시코 외무부 양자경제국장, 국내부처와 협의 완료 후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약속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11.9. 서울에서 서명: 1990.8.21. 발효(조약 제1014호) (V.2 1987)

생산연도 197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11 / 1-250

1987년 중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멕시코 측의 협정문 수정안 제시 및 한국 측의 수정제안 전달

- 1987.1.20. 멕시코 측, 협정문 최종 수정안을 제시
 - 3월 멕시코 상공부장관 방한 시 협정 서명 희망
- 2월 외무부, 관계부처 및 외무부 각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대안을 작성, 제시

2. 양국의 협정 체결 경위

- 1987.3월 초대 주한 멕시코대사 부임인사 시 협정 체결 노력 표명
- 1987.5월 멕시코 측, 수정대안 제시
 - 협정 조항을 19개항에서 14개항으로 축소하고 한국 안을 대폭 수용
- 1987.7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87.8월 멕시코 측, 최종안 제시
- 1987.9월 한국 측, 멕시코 측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대안(최종안) 제시

3. 협정(안) 주요내용

-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 촉진
- 산업협력의 강화 및 제반 경제협력상의 상호 보완성 확대
-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11.9. 서울에서 서명: 1990.8.21. 발효(조약 제1014호) (V.3 1988-90)

생산연도 197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7 / 12 / 1-315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84.12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87.1월 멕시코 측 대안 제시
- 1987.8월 멕시코 측 최종안 제시
- 1987.10월 한국 측 수정대안 제시
- 1989.10월 최종문안 합의

2. 체결 의의

- 한·멕시코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함.

3. 주요 내용

-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 촉진
- 합작투자, 보세산업협력, 중소기업간 협력 등 산업협력의 강화 및 경제협력상의 상호 보완성 확대
-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 양국간 무역거래상의 지불은 자유태환 통화로 함.
- 세부 협력활동을 위한 보조협정 및 기관간 약정의 관계당국간 체결

4. 동 협정은 1989.11.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11.9.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와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1990.8.21.자로 발효됨(조약 제1014호).

한·루마니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0.8.7. Bucharest에서 서명: 1990.12.21. 발효 (조약 제1024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0-88 / 1 / 1-272

1. 체결 경위

- 1990.3.28.~4.2. 방한한 루마니아 정부대표단과의 수교 교섭 시, 양국은 양국간 통상 및 경제 협력증진을 위하여 무역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 및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3.29).

2. 교섭 경위

- 1990.3.26. 외무부는 한·루마니아간 경제과학기술협정 체결 교섭 개시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하고,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에 문안 검토를 요청함.
- 1990.3.29. 루마니아 수교대표단 방한 시 한국 측 초안을 전달함.
- 1990.6.24.~28. Ioan. E. Vasiliu 대외무역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루마니아대표단이 경제 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위해 방한함.
- 1990.6.25.~27. 한·루마니아 경제관계협정 체결 교섭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3개 문안에 합의함.

3. 주요 내용

-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력의 장려 및 촉진
- 특정협력활동을 위한 시행약정 체결 장려
- 세미나, 심포지엄의 개최 및 과학자, 연구원 등의 상호교환

4. 협정의 의의

- 양국간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규모를 확대시킴과 아울러 양국간 실질적인 유대강화에 기여

5. 동 협정은 1990.7.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8.7.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최호중 외무부 장관과 나스타세 루마니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0.12.21.자로 발효됨(조약 제1024호).

기관간 약정: 건설부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조약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88 / 2 / 1-101

1985~90년 중 체결된 건설부와 외국 정부기관 간의 기관간 약정 관련 내용임.

1. 한국 건설부와 방글라데시 관개·수자원개발 및 홍수조절부 간의 양해각서(1985년)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5.8월 한·방글라데시 정부의 관계부처 간 건설기술용역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이의 없음을 통보

2. 한국 건설부와 헝가리 교통·채신·건설부 간 건설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90년)

- 건설부는 1990.6월, 3월 헝가리 교통·채신·건설부장관 방한 시 제안한 바 있는 양국 건설부 처간의 양해각서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측 초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6.15. 한국 측 수정안에 이견 없음을 통보

3. 한국 건설부와 대만(구 중화민국) 내정부 간의 양해각서(1990년)

- 건설부는 1990.7월 건설부장관의 대만 방문기간(1990.7.30.~8.2.) 중 대만 정부와 건설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동 문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7.25. 동 양해각서안은 실무적인 협력만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간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인 건설부에서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선택 의정서 채택, 1989.12.1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3 / 1-15

1989.12.15. 사형제 폐지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채택 관련 내용임.

1.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채택 경위

- 1980.12월 유엔총회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초안 작성을 결의
- 1982.12월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철폐 및 소수민족보호 소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주관
- 1989.5월 유엔총회에 초안 제출
- 1989.11.10. 제44차 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 채택
- 1989.12.15. 제4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찬성 59, 반대 26, 기권 48)

2.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내용

- 명칭: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구성: 전문 및 11개조
- 의정서 요지
 - 관할권 내에서의 사형폐지(제1조)
 - 전시 군사적 성격의 중죄의 경우에만 유보 가능(제2조)
 - 사형제 폐지 관련 조치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제3조)
 - 의무위반에 관한 당사국간 문제제기권(제4조)
 - 개인의 청원권 인정(제5조)

122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1 1967-82)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4 / 1-277

1967~82년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대한 YWCA 연합회는 1973.9.4.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1973.9.15. 1966년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2개의 인권협정에 한국 정부는 현재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본건 협약가입 문제에 특별한 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 협약에의 가입문제를 검토 중임을 회신함.

1222

2. 일본의 국제인권규약 비준과 재일한국인의 지위 관련 검토(1978.1.13., 교민1과)

- 주일본대사는 최근 일본 법무성이 종래의 비준 반대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동 규약은 금번 일본 국회에 상정될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고함.
- 재일한국인의 지위에 대한 영향
 - 일본이 동 규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더라도, 한국이 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에 대한 시정을 동 규약을 근거로 한 법적권리로서 일본 측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금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에 관한 대일 교섭에 있어서는 한국 입장을 강화시키는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인권규약 가입 검토(1982.12.28., 국제법규과)

- 가입문제의 대두
 - 1982.7.1. 현재 A 규약 당사국은 73개국(서명국 10개국), B 규약 당사국은 70개국(서명국 11개국),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27개국(서명국 7개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과반수가 A, B 규약을 서명, 비준하고 있으며, 동 규약은 이미 1976년부터 발효 중에 있음.
 - 북한은 1981.9월 대외선전 목적으로 A, B 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하였는바, 앞으로 반한단체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헌법은 근본적으로 기본적 제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내정책의 추이는 인권 옹호를 적극 신장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국제인권규약 가입환경이 개선되었음. 또한 동 규약 규정의 실시는 인권보호 측면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가입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결론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가입문제에 있어 관계부처는 별 문제점(사형제도 제외)이 없는 것으로 회보해 왔고, 한국 국내법이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가 당사국인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입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2 1983-84)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5 / 1-246

1983~84년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가입 검토(1984.1.25., 국제법규과)

- 규약의 정식 명칭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 가입 필요성
 - 인권규약은 모든 인권협약 체계의 Magna Carta로서 대다수의 국가가 A, B 규약에 비준 또는 가입
 - 제5공화국의 인권존중 자세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필요
 - 북한의 한국에 대한 흑색선전 봉쇄
 - 언론, 각종 인권단체로부터의 가입 촉구 요청 증대
 - 금년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인권문제 거론 시 효과 감소
- 문제점 유무
 - 관계부처의 입장: 한국 헌법 및 관련 국내법 규정상 A, B 규약 가입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단, 사형제도 및 성년, 미성년 격리 수감은 검토 필요
 - 국회 동의 필요
- 외부부의 종래 입장
 - 보고서 제출 등 협약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서는 여타 선진국과 같이 가입 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국내법 정비 또는 유보 필요사항 상세검토 필요

2. 국제인권규약 가입 추진 상황(1984.11.21., 국제법규과)

- 8개 관계부처에 대한 1984.11.15.한 의견회보 요청 결과 11.21. 현재 내무부와 법제처 회보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 내무부: 규약가입에 이견 없음.
 - 법제처: 규약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의 제6조 5항(18세 미만 사형금지)과 제23조 4항(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양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은 국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법사항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요

122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3 1985)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6 / 1-310

1985년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가입 결재(1985.9.18.)

- 주요 내용
 - 기본권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
 - 시민적 및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유보조항
 - 제4조: 비상사태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 및 비상조치 내용의 타 당사국 통지
 - 제6조 5항: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금지
 - 제9조 3항: 체포, 억류자의 신속한 법관예의 회부
- 조치사항
 - 국무회의 상정, 국회에 가입동의안 제출(입법사항)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결재(1985.9.18.)

- 주요 내용
 - 기본권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기본권 보장
- 유보조항: 없음
- 조치사항
 - 국무회의 상정, 국회에 가입동의안 제출(입법사항)

3. 제4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상기 2개 국제규약 가입을 위해 1985.10.4.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하여 10.5. 결재를 득함.

4. 동 가입동의안은 1985.10.14. 국회에 송부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외무위)에 회부, 10월 말 현재 외무위에 계류 중임.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4 1986.1-87.5)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7 / 1-333

1986.1~87.5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가입 문제(1987.3.25. 국제법규과)

- 가입 지연 이유
 - 1986.4.2. 외무위, 4.3. 외무위 소위원회에서 특히 B 규약의 4개 조항에 대한 유보문제가 집중 거론됨.
 - 외무위 소위원회에서 6.18. 유보문제와 관련된 정재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으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동 가입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9월 이후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폐회됨으로써 동 가입안이 외무위에 계속 계류 중임.
- 결어
 - 동 가입동의안이 제12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바, 제12대 국회 통과는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정국 동향,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 측에서 결정하도록 함.

2.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추진 현황(1987.5월)

- 최근 여·야 간에 합의된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구속적부심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헌법이 발효될 경우, 제4조 및 제9조 3항에 대한 유보가 계속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가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B 규약에 대하여는 우선 4개 조항을 유보하고 가입한 후 신헌법 발효 시 신헌법하에서 유보가 불필요한 조항에 대하여는 유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헌법하에서 가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B 규약에 대하여는 신헌법 발효 이후 신헌법하에서 유보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하고 가입하도록 추진 예정임.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8 / 1-226

1987.6~88.6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1987.8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계류 3개 인권관계 조약 처리대책

- 관계 조약명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경위
 - 1985.10.14. 가입동의안 국회송부(제128회 정기국회)
 - 1986.4.2. 국회 외무위 심의(제129회 임시국회)
 - 1986.4~8월 국회 외무위 소위원회(제129회 임시국회) 토의: 야당 측은 비상조치 시 기본권 제한 등과 관련된 유보에 이의 표명, 여야는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
 - 이후 국회 외무위에 계속 계류 중
- 대책
 - 동 가입안에 대한 야당 측 태도 및 6.29 선언 등을 감안하여 개헌 협상 결과에 따라 문제되는 유보 조항(비상조치 시 기본권 제한, 인신구속연장제도 등) 재검토 후 처리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국회(민정당 등) 측의 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임시국회(제135회) 회기 중 심의는 보류하도록 요청함(금번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더라도 제12대 국회 존속기간 중 동 가입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음).

2. 국제인권규약 가입추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의 가입동의안은 제12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1988.5.29. 자동 폐기됨.
- 이에 따라 외무부는 상기 2개 규약에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다시 추진하되, B 규약에 대하여서도 A 규약과 마찬가지로 유보조항 없이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6.15.한 회보하도록 요청함.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6 1988.7-10)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9 / 1-454

1988.7~10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가입 문제점 및 대책

● 추진현황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의 가입동의안은 제12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1988.5.29. 자동 폐기됨.
- 외무부는 제6공화국 출범에 따라 유보조항 없이 A, B 규약에 가입하는 것이 규약 가입 취지에 부합함을 감안하여 재차 가입을 추진, 헌법 개정 및 관계법 개정추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급변 가입 시에는 어떠한 조항도 유보하지 않고 가입하기로 함.
- 상기 A, B 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B 규약 제41조 선언 문제 및 B 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문제가 대두됨. 즉 B 규약 제41조에 의하면 규약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인권 위반문제를 규약상 규정된 인권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는 이를 심리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제6공화국 출범과 새 국회 구성 판도 변화 등 정치상황의 변화를 감안할 때, B 규약 제41조 수락을 선언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A, B 규약만 가입할 경우, 야당이 다수인 국회 내에서 쟁점을 유발, 비준 동의에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사전 행정부 내, 여당과의 협의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동 규약 가입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및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2. 1988.10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가입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안기부: B 규약 제41조 수락 무방, B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보류
- 법무부: B 규약 제41조 수락 불요, B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불요
- 내무부: 법무부 의견과 동일
- 외무부: B 규약 제41조 수락 바람직, B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바람직

122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7 1988.11-89.6)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8 / 10 / 1-294

1988.11~89.6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Ian Martin A.I.(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은 1988.11.4.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 사본을 주영국 대사관에 송부함.

● 서한 주요내용

- A.I.는 각국에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옹호에 대한 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하기 주요 인권관계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 가입 시 유보조항 미유보 및 수락조항 수락 촉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고문방지협약

2. 1988.12.30. 국제인권협약 가입 관련한 관계부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 B 규약 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가능한 한 유보 없이 가입)
- 안기부: B 규약 41조는 수락, 다만 선택의정서 가입은 시기상조
- 법무부: 일체 유보 없이 가입 시 B 규약 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반대. 단 국내법과 저촉되는 협약규정 유보 시는 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가능
- 내무부: 제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찬성
- 고문방지협약은 아직 관계부처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음

3. 인권 관계 조약 가입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1989.5.18., 외무부)

- 참석부처: 안기부, 내무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 회의 결과
 - B 규약 중 4개 조항(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장,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결사의 자유, 혼인 중 및 혼인해소 시 배우자의 평등)은 유보하기로 함.
 - 고문방지협약 수락가능 조항(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국가 및 개인의 문제 제기권) 수락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이 상존함이 재확인되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함.

4. 1986.6월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의한 국제인권규약 가입방안은 아래와 같음.

- A 규약, B 규약 선택의정서는 유보 없이 가입
- B 규약은 4개 조항(상소권 보장,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결사의 자유,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배우자의 평등) 유보 후 가입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8 1989.7-10)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9 / 1 / 1-316

1989.7~10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정부는 1948.12.10.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1966.12.16.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6.1.3. 및 3.23. 각각 발효한 바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자 가입동의안을 1989.9.12.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989.10.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10.24. 국회에 제출함.

2. 국제인권규약 협약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 규약
 -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장
 - 규약상 제권리의 준수, 실현과 관련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 B 규약
 -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보장
 - 인권이사회의 설치
 - 규약상 제 권리의 준수, 실현과 관련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 당사국 간 인권문제 제기권 및 인권이사회의 관할 인정(선택조항)
- B 규약 선택의정서
 - 개인은 규약 당사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이사회에 청원 가능

3. 다만, B 규약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제14조 5항의 상소권 보장, 제14조 7항의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제22조의 결사의 자유 및 제23조 4항의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의 배우자 평등 등 한국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 조항의 한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함.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9 1989.11-90.3)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9 / 2 / 1-276

1989.11~90.3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국회심의 연기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4당 간사회의에서는 1989.12.8.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과 고문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1990년도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2. 국제인권규약 처리방안(1990.2.5. 국제법규과)

- 정부가 1989.10.24.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은 일단 원안대로 4개 조항 유보방식으로 처리하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자인 1991.1.1.자로 제23조 4항(배우자 평등)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 제147회 정기국회 시(1989.12.9.) 민법 중 친족·상속편 개정, 동법이 1991.1.1.부터 시행 되면 국제인권규약 가입 시 유보하기로 한 B 규약 4개 조항 등 배우자 평등조항의 유보 사유가 해소됨.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 1990.7.10. 전10권 (V.10 1990.3-12)

생산연도 196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89 / 3 / 1-317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1990.7.10. 가입함.

1. 외무부가 1989.10.24. 국회에 가입동의를 요청한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은 1990.3.8. 제148회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3.16. 제148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국제인권규약 B 규약 가입 시 유보사항

- 제14조 5항
 -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를 인정하는 헌법 제110조 4항,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저촉됨.
- 제14조 7항
 -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대한 이중재판 또는 처벌금지
 - 외국에서 받은 형은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7조와 저촉됨.
- 제22조
 - 결사의 자유
 - 노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저촉됨.
- 제23조 4항
 -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 민법 제777조, 제909조 1항 등 한국의 가족제도 및 법감정과 서구적 평등 인식차이로 인한 해석상 차이 가능 소지가 있음.
- 상기 제23조 4항은 민법 관계조항 개정예에 따라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전 철회 예정이며, 기타 3개 조항도 조항 전체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규약 규정이 한국의 현행 법규와 배치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선언 형식으로 유보함.

3. 국제인권규약 가입서 기탁 및 발효

- 한국 정부가 1990.4.10. 국제인권규약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 기탁함에 따라, 동 규약은 1990.7.10. 이후 한국에 대해 발효됨.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 번호 2020-89 / 4 / 1-205

1988~89년 중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동 협약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과 국제인도법 회의 및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 육전·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 1977년 추가의정서 I, II
 - 1949.8.12.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2.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동 협약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

- 1988.5.6.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는 1986.10월에 개최된 제25차 ICRC 총회 결의 제5호에 의거,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국내입법 조치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 1988.8월 ICRC 측이 요청한 국내입법 조치 현황자료를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전달함.

3. 국제인도법 관련 회의 및 세미나 개최

- 무력충돌 시 인도적 원조에 관한 국제회의(1988.6.22.~24., 네덜란드 헤이그)
 - 네덜란드, 벨기에 적십자사, 라이덴대학, 국제인도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ICRC가 후원함.
 - 한국은 최은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이 대표로 참석
- 제13차 국제인도법 세미나(1988.9.6.~10., 이탈리아 산레모)
 - 주요 의제: 이산가족 재회 문제
 - 국제인도법연구소가 대한적십자사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사정상 참가가 어렵다고 주최 측에 통보
- 1988년 인도법 자문위원회(1988.12.9., 대한적십자사)
 - 제10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기본계획 협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부속서 개정 자문 등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9 / 5 / 1-238

1990년 중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수락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MF 협정문 개정절차

- 총회에서 개정안이 총 투표권의 2/3이상 투표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승인되면 IMF는 전회원국에 개별 조회함.
- 총 가맹국수의 3/5이상, 총투표권 비율의 85% 이상의 동이가 있으면 IMF는 각 가맹국에 승인 되었음을 통보함.

2. 국내조치 절차

- 외무부에서 협정문 개정안 수락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 국무회의 의결후 대통령 재가
- 재무부장관 명의로 정부 수락서를 IMF에 기탁

3. 한국의 수락 조치

- 재무부는 1990.9.5. 외무부에 IMF 총회 서면투표로 채택(6.28.)된 IMF 협정문 제3차 개정안에 대한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국무회의는 12.20. IMF 규정 개정안 수락에 관해 심의 의결한 후 IMF 규정 개정안 수락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음.
 - IMF 한국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재무부장관 명의로 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락서를 기탁함.
 - 상기 수락서 기탁 후 동 협정개정안이 발효 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 외무부는 1991.1.4. 재무부에 재무부장관 명의로 수락서를 IMF 당국에 기탁할 것과 동 개정안 발효 시 공포조치를 위하여 발효일자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12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 (B1, B3, C1, D1, D2, E5) 한국가입, 1990.8.9. 전2권 (V.1 1988-8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9 / 6 / 1-120

1988~90년 중 한국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 가입을 추진함.

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개요

- CCC(관세협력이사회)는 각국의 통관절차 통일을 통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교토회의 (1973.5월)에서 상기 국제협약 및 30개 부속서를 제정함.
 - 발효일: 1974.9.25.
 - 가입 국가수: 48개국

2. 한국의 교토 협약 가입 현황

- 1983.7.15. 정부는 가입서를 기탁하고 아래의 4개 부속서 수락
 -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1983.7월)
 -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1984.6월)
 - 물품신고서 제출 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1986.12월)
 -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1986.12월)

3. 한국의 교토 협약 6개 부속서 가입추진 경위

- 정부는 1988.9월부터 수출입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로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세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격증하는 무역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래 6개 부속서 가입을 추진함.
 -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 동일상태 재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
 -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 1988.11.8. 외무부, 재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기 6개 부속서에 대한 의견조정 및 유보조항에 대해 검토함.
- 1989.7.13. 외무부는 상기 6개 부속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9.18.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동 건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과 저촉되므로 위 부속서의 관계 조항을 유보하지 않는 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 (B1, B3, C1, D1, D2, E5) 한국가입, 1990.8.9. 전2권 (V.2 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조약과

MF번호 2020-89 / 7 / 1-588

정부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에 1990.8.9. 가입함.

1. 정우영 주벨기에대사는 1990.5.9.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 (B1, B3, C1, D1, D2, E5) 수락 공한을 Hayes CCC(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바 동 부속서는 1990.8.9.자로 발효됨.

-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외무부고시 제187호)
- 동일상태 재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외무부고시 제188호)
-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외무부고시 제189호)
-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외무부고시 제190호)
-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외무부고시 제191호)
-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외무부고시 제192호)

2. 상기 부속서(국문 및 영문본) 첨부

123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HS) 개정 조치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9 / 8 / 1-19

1990년 중 HS(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 개정 조치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재무부는 1990.5.1. CCC(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3.2.자 공한을 통해서 HS협약 수정권고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외무부에 1992.1.1.까지 동 개정협약 시행을 요청하면서 관세율표, 수출입 및 산업통계 등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동 협약 개정안에 대한 국내수용 절차도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CCC 사무총장의 3.2.자 공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89.7.19. 동 협약 부속서 개정안(1989.7월 CCC 제73/74차 회의에서 채택) 회람조치 완료
- 협약 제16조 2항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체약당사국으로부터도 반대 통보가 없었으므로 협약 제16조 3항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이 동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 협약 제16조 4항(B)에 따라, 1992.1.1.부터 개정내용 발효 예정임을 통보

2. 외무부는 1990.5.24. HS협약 개정을 위한 국내조치 추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CCC 공한에 따르면, 한국이 동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미 수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
- 한국이 동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협약 개정안 수락에 필요한 사전 국내 절차를 결여한 채 대외적으로는 협약 개정 효과를 이미 발생시킨 조치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9 / 9 / 1-88

1988.12.9.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 협약 관련 내용임.

1.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 1987년 제20차 UNCITRAL(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서 동 협약안 작성
 - 1988년 제43차 유엔총회에서 동 협약안 채택에 관계 부처(재무부) 이의 없음 의견
- 1988.12.9. 유엔총회에서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 협약 채택

2. 협약안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각국 검토의견), 협약 인증등본의 사본(영문본) 첨부

123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개정안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9 / 10 / 1-176

1987~90년 중 국제박람회 협약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 수락과 관련된 내용임.

1. 국제박람회협약 채택 및 개정 경위

- 1928.11.22. 협약 채택(프랑스 파리)
- 1972.11.30. 전면 개정
- 1982.6.24. 부분 개정(한국: 1987.5.19. 동 협약 가입)
- 1988.5.31. 부분 개정안 채택

1238

2. 1988년 국제박람회협약 개정안 수락

- 수락 배경
 - 현행 협약에 따른 종합박람회 및 전문박람회 개최는 2001년까지 예약 완료
 - 협약 개정안 수락을 계기로 한국의 1993년 대전박람회 개최를 공인받고자 추진(개정안에 따른 인정박람회 개최)
- 개정안 요지
 - 국제박람회의 종류를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에서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변경하여 규정
 -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의 개최 기간, 주제, 전시관 운영경비 부담조건, 개최간격 등을 각기 별도로 규정
- 협약 개정안 수락
 - 1989.12.8. 주프랑스대사관 명의의 프랑스 정부(수탁국) 앞 공한으로 통보
 - 1989.12.14. 국제박람회 사무국 총회(파리) 시 공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조약 제1012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89 / 11 / 1-145

한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1990.7.27. 가입함.

1. 추진 경위

- 1988.2.24.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빈발하기 시작한 국제공항에서의 테러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산하의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1988.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 1986.9월 아시안게임 개최 직전에 발생한 김포공항 폭발사건 및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등을 감안, 당시 박상용 외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상기 회의에 파견하였으며, 1988.2.24. 동 의정서 채택시 당시 교체수석대표이었던 노재원 주캐나다대사가 서명한 바 있음.

2. 비준 의의

- 국제공항에서의 테러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기 의정서의 비준을 통하여 국제공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아래 2개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공항 체재자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
 - 공항의 시설물과 정지중인 항공기에 대한 파괴, 손상행위 및 공해업무 방해 행위
- 범죄인 소재국은 범죄인 처벌을 위해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권 확립의무를 짐.
- 1971.9월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약의 당사국만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

4. 동 의정서는 1990.5.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6.27.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ICAO에 기탁함으로써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1990.7.27.자로 발효됨(조약 제1012호).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0 / 1 / 1-26

1983년 중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과 관련된 내용임.

1.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채택

- 1983.6.13.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협약 개정안 채택
- 1983.11.1.까지 체약당사국 중 5개국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1984.1.1. 발효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발효

- 관계 부처 협의
 - 외무부는 1983.9.23. 협약 개정안에 대한 교통부 등의 의견 조회
 - 교통부는 10.20.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회신
- 외무부는 동 개정 협약의 1984.1.1.자 발효 사실을 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에 관한 제 문제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90 / 2 / 1-71

정부는 1983.11.14.~15.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Narragansett에서 개최된 해운관계 국제회의에 주미국대사관 해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기선동맹 행동규칙 협약

- 구성: 전문, 2부 7장 54개조
- 주요 내용
 - 해운동맹 가입 문호 개방
 - 화물 적취율 할당을 통한 당사국 취항선대에 일정량의 화물 선적 보장
 - 운임을 결정, 인상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화
 -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
 - 협약 효력 발생 요건
- 발효
 - 1983.10.6. 59개국 비준, 세계 선복량의 28. %로 발효
- 한국 가입 문제
 - 원양 정기선동맹 항로의 적취권 확보 등 유리한 측면과 근해 항로의 현 적취량 대폭 감소 등 불리한 측면 고려가 필요함.
 - 제정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세계 해운환경의 변화를 미반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2. 해운관계 국제회의(1983.11.14.~15.)

- 목적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Liner Code의 발효에 따라 이에 반대한 미국의 향후 대책 및 양자주의에 대한 기본입장 정립에 관한 미국 내 권위자 견해를 취합
- 협약 관련 미국의 입장
 - 자국선 적취율이 1982년 기준 27.2%에 불과하지만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철학, 하주(荷主) 단체의 압력 및 UNCTAD에서의 여타 국제규범 제정을 의식하여 국무부에서는 반대함.

IHO(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0 / 3 / 1-63

IHO(국제수로기구) 협약을 1988.7.26. 개정함.

1. 개정 경위

- 1987.5.5.~15.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제13차 IHO 회의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법 개정에 합의함.

2. 개정 요지

- 금번 개정으로 협약 제10조 2항에 규정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이 3회의 투표로 1회에 한명씩 당선자 3명을 선출한 후 3명중에서 관리위원장을 선출하던 것을 금후부터는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두위원을 2회의 분리된 투표로써 선출하게 됨.

3. 주프랑스대사는 한국 정부의 IHO 협약 개정 승인서를 1988.7.22. 주프랑스 모나코대사관에 기탁 하였으며 이에 동 대사관은 7.26.자 공한으로 한국의 승인서 무위 접수를 확인해 옴.

IMO(국제해사기구) 1974년 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London, 1990.3.26.-3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0 / 4 / 1-66

정부는 1990.3.26.~30. 영국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1974년 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목적

- 1974년 해상에서의 여객과 여객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을 개정함.

2. 참가국

- 회원국(46개국), 옵서버국(5개국), 준회원국(1개국), 정부간 기구 기관(4개)

3. 의제

- 진행절차, 규정·협약 개정의정서 및 각 위원회 보고서 채택

4. 정부 훈령

- 핵심의제인 아테네 협약 중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특히 여객의 사망, 상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 한도액 인상 관련 토의 시 한국의 국내법적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
- 기타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반대하지 말 것

5. 주요 결과

- 아테네 협약 상의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상하는 문제와 국제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상책임의 인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함.
 - 영국, 미국 등 해운선진국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책임 한도액의 대폭인상을 주장하고, 폴란드·이란 등 해운개도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여 타협안으로 배상한도액을 175,000SDR로 결정함.
 - 향후 배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의 개정 관련, 해운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안으로 당사국의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개정하기로 결정함.
- 본 개정 협약은 1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부터 90일 이내 발효되며, 발효 후에는 비준서를 IMO 본부에 기탁함으로써 가입 가능함.

6. 평가 및 건의

- 개도국 경우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국제여객선이 전무하며, 대형여객선 운항사업을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어 동 회의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됨.
- 북방외교의 성과로 앞으로 한국의 국제여객운송사업 진출 전망이 밝으며, 한국의 해운선진국 도약을 위해 한국의 동 협약 가입을 건의함.

1977년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의정서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 Torremolinos(스페인), 1990.10.15.-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0 / 5 / 1-56

정부는 1990.10.15.~19.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되는 1977년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의정서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 나형선 한국어선협회 기술원을 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의정서의 1993년 중 채택 및 1994년 중 발효 예상에 따라 한국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

2. 주요 의제

- 의정서 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발급절차, 비준 및 발효절차
- 의정서 채택 시까지의 일정 계획표

3. 한국 정부 입장

- 협약 채택 이후 주요 어선 보유국들의 수락 거부로 인해 10년 경과시점까지 미발효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일본, 소련,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추어 협약 의정서 채택 원칙을 지지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 가입. 전2권, 1990.7.9. 발효 (조약 제1009, 1010호) (V.1 1986-87)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조약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0 / 6 / 1-265

1986~87년 중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의 한국 가입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총회(1986.9.24.~26., 비엔나)

-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1986.4.26.)로 핵 사고시 국제협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총회가 개최됨.
- 회의 결과
 -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채택
- 협약 서명국
 -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58개 회원국
 -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57개 회원국
- 한국은 이시용 주오스트리아대사가 정부대표로 참석(협약 미서명)
 - 북한은 9.29. 2개 협약 서명 및 잠정 적용 선언

2. 외무부는 1987.1.20.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서명 및 비준 검토를 위한 관계 부처(과학기술처, 법무부, 국방부, 동력자원부, 환경청, 재무부, 안기부) 의견을 문의함.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 가입. 전2권, 1990.7.9. 발효 (조약 제1009, 1010호) (V.2 1988-90)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조약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0 / 7 / 1-282

1988~90년 중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가입 및 발효 관련 내용임.

1.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이 1986.10.27. 발효됨.

- 서명국: 72개국
- 당사국(비준국): 49개국(세계보건기구 포함)
- 북한: 비준하지 않음(1986.9.29. 서명)

1246

2.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이 1987.2.26. 발효됨.

- 서명국: 70개국
- 당사국(비준국): 42개국(세계보건기구 포함)
- 북한: 비준하지 않음(1986.9.29. 서명)

3. 외무부는 1990.4.26.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가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 가입추진 경위
 - 1986.9.26. 협약 채택 이후 한국의 원자력발전 현황을 감안, 협약 가입 긍정 검토
 - 과학기술처, 원자력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의 조기 가입 조치 요망
- 가입 의의
 - 핵 사고 발생시 관련정보의 신속, 원활한 통보와 상호지원에 의하여 방사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

4. 외무부는 1990.6.8.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된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조약 제1009호) 및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조약 제1010호)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동 협약 수탁자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상기 2개 협약은 1990.7.9.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1-2차. Vienna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0 / 8 / 1-430

1990년 중 제1~2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개정 위원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4.23.~27.)

- 참가자: 미국, 소련 등 57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 한국대표: 함명철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
- 토의 내용
 - 핵 사고 민사책임 문제의 구체화: 핵 사고 민사책임 규율기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핵 사고 피해 개념의 구체화, 배상한도액 확대, 배상수혜 시효의 피해대상에 따른 확장, 민사책임 보조로서의 국가기금 지원에 대한 제안
 - 핵 사고 국가책임 및 민사, 국가책임 상호관계: 핵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론 대립
- 평가
 - 핵 사고 책임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핵 사고 시 국가 역할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이견으로 국가책임보다는 민사책임 보조로서의 국가역할에 대한 의견 접근 노력 지속 가능

2. 제2차 회의(1990.10.15.~19.)

- 참가자: 57개 IAEA 회원국, 옵서버(정부간 기구(2개), 비정부간 기구(3개)) 대표
- 한국대표: 신연성 국제법규과 서기관
- 회의 진행
 - 전체회의, 문안기초, 제1, 2실무그룹으로 구분
 - 제1실무그룹은 핵 사고 보상을 위한 보충기금, 제2실무그룹은 배상청구의 해결절차 취급
- 토의 내용
 - 핵 사고 보상을 위한 보충기금
 - 배상청구의 해결절차
 - 지구상 인류공동재산에 대한 핵 피해문제
 - 군사적 시설물에 대한 협약의 적용문제
 - 배상금액의 한도 및 계산단위 등

124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약 수정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0 / 9 / 1-148

1990년 중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약 수정 관련 내용임.

1. INTELSAT 협약 제14조 D항 개정 문제

- INTELSAT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되어 온 독립위성의 승인 시 경제적 위해 (危害)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인 INTELSAT 협약 제14조 D항과 관련, 1990.2.26. 아래 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1989.12월 이사회에서 검토한 동 조항 관련 제기된 문제의 개요 및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독립위성 승인문제에 있어 주관적 판단 배제 곤란
 - 제14조 D항의 경제적 위해 판단에 관한 부문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사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 방침
 - 이후 이사회에서 검토,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1990.10월 총회에서 토의할 계획

2. INTELSAT 사무총장은 독립위성 승인에 관한 바베이도스 이사회(1990.6월)의 회의 내용 및 동 이사회를 전후로 이사회에 제출한 미국, 호주, 영국의 의견서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추가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제출을 요청함.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한국 가입, 1988.3.28. 발효(조약 제947호)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0 / 10 / 1-320

한국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1988.3.28. 가입함.

1. 구성

- 본문 20개조 및 규칙 15개조

2. 가입 목적

- 미생물 기탁자는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보증하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1회만 기탁하면 되므로 기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안전성 보장
- 미생물 관련 발명 보호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 제고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압력 감소

3. 주요 내용

- 동맹의 성립(제1조)
 - 체약국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동맹 형성
- 미생물 기탁의 승인과 효과(제3조)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체약국은 국제기탁기관에 대한 미생물 기탁 승인
- 수출 및 수입의 규제(제5조)
 - 체약국은 국가안보,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고려, 미생물의 수출 및 수입 규제 적용
-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취득(제7조)
 - 기탁기관은 체약국의 영토에 위치하고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보증 취득 의무

4. 동 조약은 1987.12.1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7.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 국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1988.3.28.자로 발효됨(조약 제947호).

특허협력조약 유보 철회, 1990.9.1. 발효(외무부고시 제194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0 / 11 / 1-114

1. 경위

- 1984.8.10. PCT(특허협력조약) 가입시 동 조약 제2장(국제예비심사) 유보
- 1990.1.13. 특허청 특허법 개정으로 국제예비심사제도 도입으로 유보 사유가 소멸
- 1990.2.26. 특허청은 외무부에 동 유보철회를 위한 절차진행을 요청

2. 유보철회 사유

-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국제화, 통일화에 기여
-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성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심사에 참고함으로써 심사부담의 경감 치 심사 적체해소에 기여
- 미국,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도 최근 유보를 철회

3. PCT 유보철회에 대한 조치 방안

- 동 조약 제64조에 따라 주제네바대표부 공한으로 유보철회 사실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 개정 특허법 발효 예정일이 1990.9.1.임을 감안하여 동 철회 통보가 가급적 6.1. 전후에 사무국장에 접수되도록 조치함(철회통보는 접수 3개월후 발효).

4. PCT 주요 내용

- 국제출원 제출: 특허, 실용신안의 수리관청
- 국제조사: 7개 기관이 관련 선행기술 조사
- 국제공개: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 및 국제조사보고서 공개
- 국제예비심사, 국내심사

5. 동 유보철회는 1990.6.1. 외무부장관 명의로 공한을 WIPO 사무국장에게 접수하고, 30일 후인 1990.9.1.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4호).

핵무기 해저설치금지조약(Sea-Bed조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9.9.19.-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0 / 12 / 1-150

정부는 1989.9.19.~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핵무기 해저설치금지조약(Sea-Bed조약) 평가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Sea-Bed조약 개요

- 공식 명칭
 -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 1972년 발효, 1989.4월 현재 81개국 가입(핵보유국 중 중국, 프랑스는 미가입)
- 한국은 1987.6.25. 동 조약에 가입(북한은 미가입)

2. 제3차 평가회의 준비회의(1989.4.24.~27.)

- 제3차 평가회의 개최 일정(1989.9.19.~29.), 의제, 의사규칙 등 합의

3. 유엔군축회의 Sea-Bed조약 비공식 회의(1989.7.18.)

- 40개 회원국 및 한국 등 11개 Sea-Bed 조약 당사국 대표 참석
- 제3차 평가회의 관련 해저 및 해상에서의 군비경쟁방지 문제 논의

4. 제3차 Sea-Bed조약 평가회의(1989.9.19.~28., 제네바)

- 참가국
 - 82개 조약당사국 중 53개국, 2개 서명국, 13개 비가입국(옵서버) 참석
- 회의 목적
 - 동 조약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해온 역할을 평가하고, 해저에서의 핵무기 등의 설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검증 체제 확립, 해양개발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조약의 운용상태 평가 및 개선방안 토의
- 회의 결과(최종선언문 채택)
 -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해양기술진보에 관한 보고서를 1992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 제4차 평가회의는 원칙적으로 1996년 이후 당사국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

125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 협약 이행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0 / 13 / 1-221

1987~90년 중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이행 관련 내용임.

1. 세균성무기금지협약 과학·기술전문가 특별회의(1987.3.31.~4.15., 제네바)

- 참석국
 - 39개국 참석(한국은 1986.6월 동 협약 가입, 전문가 회의에는 불참)
- 회의 내용
 - 세균성무기금지협약 제2차 평가회의(1986.9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최종문서에 따라 협약 가입국내 세균연구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상호교환 문제 협의
- 회의 결과
 - 정보 및 통계의 작성 방식 통일

2.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금지협약 이행 조치 요청

- 유엔사무총장은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90.2월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협약 이행에 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4.15.까지 제출하기를 요청함.

3.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금지협약 이행(각국의 정보 제출)

- 1990.4월까지 제출한 회원국 자료
 -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소련, 영국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자료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0 / 14 / 1-264

1983~89년 중 미국, 캐나다, 소련 등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내용임.

1. 캐나다(1983년)

- 캐나다는 1983.1.6. 캐나다 해안 관할권 등에 관한 시정책을 발표
 - 12마일 영해 범위 내 대륙붕 개발에 캐나다산 자재 사용권장
 - 캐나다 조선업계에 제공되는 보조금 9% 제공은 1985.7.1.까지 연장
 - 캐나다 선박에 의한 캐나다 연안무역 장려

2. 미국(1983~88년)

- 1983.3.10. 미국연안 200해리 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 선포
 - 미국연안 200해리 해역에 부존된 Polymetallic Sulhide에 대한 미국업계의 개발 희망 반영
- 1988.12.28.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연장 선포
 - 미국의 안전보장과 이익증진에 따른 조치

3. 소련(1984년)

- 소련은 1984.3.1.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 동 수역내 모든 천연자원을 탐사, 채굴, 보호하는 데 독점권 행사 및 동 자원 발굴, 탐사를 위한 참여권 결정도 단독행사할 것이라 함.

4. 동독(1985년)

- 동독은 1985.1.1.자로 영해의 범위 선포

5. 기타 국가

- 리비아는 1985.6.1.부터 항구 입항 및 접근에 관한 규정이 발효된다고 선포
- 멕시코는 1985.12.20. 해양법 공포
- 에콰도르는 1986년 대륙붕 연장 선언
- 칠레는 1986년 태평양 도서에 위치한 칠레 영해에 대해 350마일을 자국 영해로 선포
 - 이에 미국은 200마일 이상의 대륙붕에 대한 영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아랍에미리트는 1987년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연장 적용
- 아일랜드는 1988.9.1. 영해 범위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연장 적용
- 태국은 1988.7.18. 독점 경제수역 설정을 선언
- 모리타니아는 1988.8.31. 영해, 인접수역,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채택

125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관련 검토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1 / 1-266

1982~90년 중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관련 검토 내용임.

1.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경과

- 전통 해양법 체제 개편과 새로운 해양질서 수립 목적으로 1973년 개막한 유엔해양법 회의 제11회기(1982.3.8.~4.30., 뉴욕)를 끝으로 9년간의 협상 종결
- 1982.4.30. 신 해양법협약 채택
 - 전문, 320조항, 9개 부속서, 4개 결의문으로 구성

2. 유엔해양법협약 주요 골자

- 12해리 영해제도 확립
-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제도 확립
- 대륙붕 범위의 파격적 확장(최대 350해리)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확립
- 심해저 개발제도 창설
-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규범 확립
- 포괄적 해양분쟁 해결제도 확립

3. 국제해양기구 설립 준비위원회 77그룹 의장은 1986.7.10. 공식 서한을 통해 유엔해양법 협약 조기 비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988.2.3.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검토와 관련하여 내무부, 국방부, 재무부, 관세청, 법무부, 농수산부, 수산청, 보건사회부, 환경청, 동력자원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과학기술처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문의

4.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와 같은 비준대책을 마련함.

- 협약 발효 이전 비준 목표
 - 1995년 경 발효 예상(1990.1.1. 현재 42개국 비준, 60개국 비준 후 1년 경과 시 발효)
 - 한국은 1983.3.14.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한바, 심해저개발을 위한 선발투자자 등록 희망 시 발효 전 비준 필수적
- 영해법 개정
 - 외국군함, 공용선박의 영해 통과시 사전통고제 폐지 검토
 - 직선기선의 재조정 및 확대



- 대한해협 영해 폭 확대(현행 3해리에서 12해리)
- 접속수역 설치(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설치 가능)
- 경제수역 설치 관련법 제정 검토
 - 200해리 경제수역 채택에 따른 국내입법
 -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폐지 검토
- 대륙붕 관련법 개정(1970년 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기타 해양환경보존 및 과학조사 관련법 입법·개정 검토
- 심해저 광물 개발 참여
 - 선발투자자로서 광구 등록(최대 7.5만 km²)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관련 실무 대책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2 / 1-177

1989~90년 중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관련 실무 대책회의 및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 관련 내용임.

1.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대비 실무 대책회의(해양법연구회) 운영

- 1982.4.30.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 1989.9월 현재 42개국 비준(159개국 서명, 미국, 영국, 독일 등 미서명)
 - 60개국 비준 후 12개월 경과 시 발효
- 해양법연구회 구성 및 운영(회장: 외무부 조약심의관)
 - 해양법 협약 비준을 위한 세부사항의 실무적 토의 및 협의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
 - 관계부처(외무부, 법무부, 동자부, 과기처, 수산청), 학계인사, 해양연구소 전문가 등 10여 명
 - 1989.4.21. 제1차 회의 개최, 매월 1회
- 해양법연구회(외무부, 해양연구소 주관) 토의
 - 제2회(1989.6월): 해협통항제도(대한해협, 제주해협)
 - 제3회(1989.7월): 직선기선제도
 - 제5회(1989.10월): 해양법과 어업
 - 제6회(1990.1월): 1990년 운영계획 및 부문별 현안과제 논의
 - 제7회(1990.2월): 만(灣) 및 도서의 법적지위와 처리
 - 제8회(1990.4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전망과 비준 동향
 - 제9차(1990.5월): 심해저 개발과 해양법 협약
 - 제10차(1990.8월): 소련·북한 해양경계획정협정 및 북태평양 해양과학조사기구

2.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미국은 해양법 협약 제11장(심해저 개발제도)이 규정하고 있는 병행개발체제가 미국의 자유기 업주익과 상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에 반대(미서명), 재검토 가능성도 상존
 - 심해저 독자 개발기술능력을 보유한 영국, 독일(구 서독)은 미국과 공동보조를 위해 협약에 미서명
 - 유엔해양법에 대한 미국입장 관련 자료(Council on Ocean Law 발행)
- 1990.5.1. 미국 상원 외교위 청문회(미국의 해양법협약 가입문제 및 해양정책) 개최
 -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증인이 미국의 해양법 협약 가입 주장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0.3.5.-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3 / 1-171

정부는 1990.3.5.~30.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본회의에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성격

-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 시 발족하게 될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를 위해 1983년 이래 매년 2차례(본회의 및 속개회의) 개최

2. 참가 목적(훈령)

- 심해저 조기개발 여건조성(심해저 개발을 촉진하고자하는 선진국 입장에 근접)
- 심해저 개발 이익 배분 지지(인류공동유산 개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개도국 입장 지지)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모색(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안정적 공급원 확보)

3. 주요 결과 및 평가

- 심해저 개발 문제를 둘러싼 선진·개도국 간 이해 대립 지속
- 심해저 개발 투자실적을 보유한 선발투자자로 등록한 국가들이 국제심해저기구에 대해 부담할 의무의 이행문제에 관한 협상 타결 가능성 증대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의 운영을 위한 규칙 및 절차 제정 문제에 진전
- 심해저기업요원 훈련계획 시행안 채택
- 심해저 개발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 제8회기 속개회의는 1990.8.13.~31. 뉴욕에서 개최

12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0.8.13.-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4 / 1-190

정부는 1990.8.13.~31.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속개회의에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국

- 협약 서명국(82개국), 옵서버(6개국), 국제기구(5개)

1258

2. 주요 결과 및 성과

- 등록선발투자가 의무이행 문제 타결
 - 등록선발투자 4개국(프랑스, 일본, 소련, 인도)과 77그룹 간 3년간의 협상 타결
- 중국의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 각종 규칙 및 절차 제정 문제에 대한 논의에 진전
- 심해저 개발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 해양과학분야 전문가 12명이 참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여 환경문제 관심 제고
- 제9차 본회의 일정: 1991.2.25.~3.22., 자메이카 킹스턴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 협약 가입 검토. 전2권 (V.1 1987-88)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1 / 5 / 1-333

정부는 1988.1.5.~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연락망) 설립 정부간 전권회의에 박규석 수산청 자원조성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국(12개국)

- 한국(옵서버),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2. 회의 결과

- 아태지역양식센터연락망협약(Agreement on the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 and the Pacific) 채택
- Record of Adoption에 7개국 서명(중국, 홍콩,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 한국은 NACA 협약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서명 보류
- 중국·네팔·북한은 협약안에 서명

3. 제2차 NACA 임시 이사회(1988.1.12.~15., 태국 방콕)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양식어업(Sea Farming) 사업계획 수정 검토, NACA 사업계획 수정 검토 등

4. 한국의 NACA 협약 가입 검토

- NACA 협약 가입절차
 - 1988.1.8.~89.1.7.(1년간) 서명 및 비준서 기탁으로 가입
 - 1989.18. 이후 협정에 대한 공식가입서 기탁을 통해 가입
- 1988.10.6. NACA 협약 가입 결정
 -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식기술 협력 등 수산협력 증진 필요성을 감안하여 가입 결정

125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 협약 가입 검토. 전2권 (V.2 1989-90)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91 / 6 / 1-130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연락망) 제3차 예비 이사회 및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됨.

1. 제3차 예비 이사회(1989.1.10.~13., 태국 방콕)

- 참석국: 13개국, 16개 기관
 - 한국은 박규석 수산청 연근해 과장 참석
- 회의 결과
 - 1990~94년 사업계획안 작성
 - 분담금은 GDP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한국은 중국, 인도와 함께 최상위 그룹)
 - NACA 발족을 위해 각국 정부는 1989.8월 이전에 국내절차 완료

2. 제1차 이사회(1989.12.11.~14., 방글라데시 다카)

- 참석국: 한국 포함 13개국, 17개 기관
- NACA 협약 비준 / 가입현황
 - 홍콩, 스리랑카, 베트남이 가입절차 완료,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는 절차 완료 중
 - 인도, 인도네시아, 북한, 한국, 태국은 국내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NACA 협약은 발효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 NACA 협약의 발효로 1990.1.1.부터 독립적인 정부간 국제기구로 활동 개시 예정

3. NACA 협약 가입 검토

- 1989.9월 법제처는 NACA 협약이 과세권 면제, 불체포 특권 등 주권행사 제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
- 1990.1.1. NACA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동 기구 가입에 필요한 협약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
 - 분담금 문제, 특권과 면제 관련 국회 동의 필요 등 해결 추진
- 수산청은 3.7. 외무부와 NACA 사업조정관과의 업무협의

남극 광물활동규제에 관한 협약 비준문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7 / 1-319

1988~90년 중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서명 및 비준 관련 내용임.

1.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서명(1988년)

- 1988.6.2. 뉴질랜드 웰링턴 개최 제4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회의에서 채택
 - 주요내용: 특정지역에서의 남극광물자원 개발 활동규제, 남극광물자원 개발 절차규정
- 서명식: 1988.11.25.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한국, 브라질, 소련, 뉴질랜드 등 9개국 서명
 - 한국은 최필립 주뉴질랜드대사가 서명
- 1989.9월 기준 한국 포함 16개국 서명

2.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비준 문제

- 1989.5.23. 호주 정부는 동 협약의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
 - 남극 광물자원 개발활동의 전면금지 및 남극의 세계공원화 추구 입장
 - 남극환경보존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남극보존협약' 체결 제안
 - 호주 제안에 대해 프랑스, 벨기에는 호의적이나, 미국, 뉴질랜드는 반대 입장
- 1990.2.26. Palmer 뉴질랜드 수상은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비준 검토 중지를 발표
 - 남극의 공원화 등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입장
- 한국 정부는 남극개발과 환경보호 간 균형유지 입장으로 최종입장 추후 결정 예정

12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5차. Paris, 1989.10.9.-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8 / 1-277

정부는 1989.10.9.~20.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 회의)에 한우석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8개국(남극조약 당사국 중 파푸아뉴기니만 불참, 북한도 참가)

2. 주요 의제

-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

3. 훈령

- 한국의 조약협의 당사국 지위취득을 위한 외교활동 수행
- 각국의 남극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
- 남극기지 운영 협조국가와의 실무협의
- 북한대표단 방해 행동시 적극 대처

4. 주요 결정사항

- 신규협의 당사국 지위 부여
 - 한국, 핀란드, 페루 지위 획득(협의당사국 25개 국가로 증가)
-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
 - 프랑스, 호주 등은 남극의 자연보존지역화(wilderness reserve)를 목적으로 신규협약 채택 필요성을 강조
- 합의사항
 - 1990.6월 칠레에서 환경보호 관련 포괄적 조치 논의를 위한 남극환경특별협의 당사국 회의 개최와 1990년 남극광물자원협약 손해배상 의정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차기회의 일정
 - 준비회의: 1991.4월중, 서독 본
 - 본회의: 1991.10월중, 서독 본

5. 제15차 ATCM 시 프랑스, 호주 공동 권고문(안)의 주요 내용

- 남극을 자연보존지역으로 수립하기 위해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계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제도 채택 시급



- 당사국에 상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과학조사에 협조하고 환경과 관련된 과학연구 강화 촉구
- 1990년 특별협의 당사국 회의 개최 제의
 -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계의 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체제 하의 기존 조치 재고
 - 포괄적 제도 상세화
 - 상기 제도의 형식(협약, 의정서 등) 결정
 - 상기 제도의 논의를 위한 향후 계획 수립
 - 필요한 여타 조치 채택

1263

90-1195

ATCM(남극조약협약 당사국 회의), 제15차. Paris, 1989.10.9.-2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9 / 1-86

1989.10.9.~20.,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ATCM(남극조약협약당사국 회의) 관련 자료임.

- 한국대표단 수석대표(한우석 주프랑스대사) 발언문, TV Channel 4 인터뷰, Michel Rocard 프랑스 수상 개막 연설문, 제15차 ATCM 잠정 의제, 최종보고서 안 등

제3국의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 취득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1 / 10 / 1-48

1989~90년 중 제3국의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 관련 사항임.

1. 네덜란드의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 신청

- 1989.6.29. 네덜란드 정부는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신청함.
 - 1989.7.16.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 신청에 대한 지지 요청
 -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는 한국을 포함한 기존 당사국 25개국 전부 동의가 필요
- 1989.10월 파리에서 개최된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남극과학활동 실적 미비를 이유로 심의가 연기되어 1990.11월 특별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재론될 예정임.
- 한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당사국 지위 신청을 지지함.

2. 에콰도르의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지위 신청

- 1990.8.8. 에콰도르 정부는 1990.11.19.~12.7. 칠레에서 개최되는 남극광물자원 특별회의에서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 1989.10월 파리 개최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회의에서 에콰도르의 남극과학활동 실적 미비를 이유로 심의가 연기되어 1990.11월 특별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재론될 예정임.
-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의 당사국 지위 신청을 지지

126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검토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1 / 11 / 1-389

1984~90년 중 보사부·환경처·내무부의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와 업무 질의 관련 내용임.

1. 보건사회부는 1984.10월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특별한 의견 없음 통보

2. 내무부는 1985.9.24.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업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외무부 의견 문의

- 한국은 1969년 기름 오염사고 발생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름 이외의 해양오염 발생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의정서에 대하여 수락 서명만하고 아직 미 체결국인 상태로 있는바, 동 협약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국내법인 해양오염방지법에 그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동법 제3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외무부는 10.9. 동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보

3. 보건사회부는 1987.1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이의 없음 통보

4. 환경청은 1989.2월, 1988.12월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별다른 이견 없음 통보

5. 환경처는 1990.10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특별한 이견 없음 회신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OPRC) 채택 외교회의. London, 1990.11.19.-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2 / 1 / 1-230

정부는 1990.11.19.~30. 런던에서 개최된 유류오염의 대비와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외교회의에 최근배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89.10월 제16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에 따라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작성하고, 유류오염의 대비와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회의 준비회의(1990.5월)에서 1차 검토한 협약안을 논의, 채택하기 위함.

2. 외교회의 결과

- 회의 결과
 -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1990 및 10종의 회의 결의서 채택
- 관찰 및 평가
 - 본 협약의 목적 및 채택 필요성은 다수 발생한 대형 유조선 사고의 피해 경험에 비추어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
 - 본 협약의 국제적 발효는 1년 후 가능할 전망
 - 본 협약에서 규정한 지역간 지원협력체제 구축과 관련, 현재 일본 주도하에 한국,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 수립 제안 전망
 - 한국도 본 협약의 비준, 국내법 수용 및 필요한 조직, 장비, 제도의 수립이 필요

126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1990.5.23. 발효 (외무부고시 제186호)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조약과

MF번호 2020-92 / 2 / 1-280

1983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발의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안이 1990.5.23. 발효됨.

1. 발의 경위

-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은 1956.2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81.11월에 가입함.
- 1983.4월 제13차 총회에서 '중국 포함 개정안'과 '분담금 기탁에 관한 개정안' 발의

2. 주요 내용

- 아태지역의 지역 범위에 중국을 포함
- 동 협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태지역 식물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3. 한국은 1990.4.17. 동 협정의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수락서를 FA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회원국의 2/3가 수락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1990.5.23.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6호).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간의 Ogaden지역 분쟁

생산연도 1983-1988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92 / 4 / 1-83

1983~88년 중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간의 Ogaden지역 분쟁 관련 내용임.

1. 에티오피아·소말리아 Ogaden 분쟁 경위

- 1977.7월 소말리아 정규군이 에티오피아 Ogaden지역을 무력점거하면서 시발된 분쟁은 1982.7월 양국 국경지대 무력충돌, 1984.12월 에티오피아군의 소말리아 공격 등으로 격화됨.
- 1983.8.10.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은 Barre 소말리아 대통령의 비동맹 회의 연설 중 에티오피아 비난(군사적 침략 운운)에 반박함.
 - 소말리아 헌법의 영토확정 조항이 긴장의 원인
 - Barre 정권의 외국군에 대한 군사기지 제공은 에티오피아의 단결과 영토보전 위협 등
- 1984.1.31. UPI 통신은 에티오피아군의 공습으로 인한 소말리아 국방장관 등 65명 사망을 보도

2. 제3차 에티오피아·소말리아 합동 각료회의(1987.4.1.~3.,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동성명

- 양측은 양국 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염원 표명
- 지부티 정상회의에 의해 부여된 동 각료회의 위임권(Mandate)에 관한 다양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양측은 합의 의제 작성에 실패
- 양측은 제4차 동 각료회의를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양측은 진행 중인 대화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기로 결정

3.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관계 정상화

- 에티오피아 외무부장관은 1988.4.1.~2. 소말리아를 급거 방문하여 소말리아 외무부장관 및 부총리와 회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함.
- 주요 합의사항
 - 외교관계 재개
 - 국경지역 내에서의 군대철수(1988.5.15.까지 완료) 및 일정 거리 유지
 - 국가 전복활동 및 적대적 선전 중지
 - 전쟁포로 및 양측에 의해 구금된 국민 교환
- 평가
 - 외교관계 재개 등 관계 정상화의 극적 타결은 최근 에티오피아 북부 에리트레아 반군 대공세 및 정부군 궤멸 사태 등과 관련, 에티오피아 측의 인접국 관계 안정 및 북부 반군사태 평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 간의 국경분쟁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실

MF번호 2020-92 / 5 / 1-114

1980~90년 중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PNG) 간 국경분쟁 관련 내용임.

1. 인도네시아 서 이리안자야와 PNG 간 국경문제

- 위치: 뉴기니 섬 동경 141도를 경계로 동 측이 PNG, 서 측이 인니령 서 이리안자야
- 배경
 - PNG는 1975.9월 호주로부터 독립하여 서 이리안자야는 1969년 인도네시아에 귀속
 - 양국 국경중심으로 반인니 게릴라들이 OPM(자유파푸아운동)을 조직하여 서 이리안자야 분리운동을 전개
 - 1979.12월 인도네시아·PNG 국경협정 체결
- 문제 발단
 - 1981.10월 OPM이 서 이리안자야 소재 회사 종업원 58명을 PNG로 납치
- 양국 주장
 - PNG: 무장 인도네시아군의 1982.5월 수차례에 걸친 월경사실 주장,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 노트
 - 인니: 서 이리안자야 주민들이 납치된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월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PNG 항의 조치는 총선(1982.6월)을 의식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
- PNG·인도네시아 합동 국경문제위원회(1983.8월)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동 문제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PNG 측에 사과 의사를 표명
 - 국경지대 주민 및 토지 소유자 등의 전통적인 생활권을 인정하고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도록 인정함.
 - 다만 OPM 등 반란 단체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경선에 표지판을 증설하고 각각 검문소를 설치 운영함.

2. 인도네시아·PNG 간의 신국경협정 서명

- 1990.4.11. Atl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Somare PNG 외무장관은 이리안자야 국경문제 관련 양국간의 신국경협정에 서명
- 1990.10.29. 발효, 유효기간 10년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92 / 6 / 1-187

1990년 중 이스라엘·아랍 간 긴장 국면, 미국·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관계 등 중동지역 정세 관련 내용임.

1. 이스라엘과 아랍 간 긴장

- 소련계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 증가에 따른 아랍지역 국가의 우려, 1990.3.15. 이라크의 이란계 영국 기자 처형, 3.28. 핵폭탄 뇌관 밀반입 기도 사건(런던 공항에서 압류), 4.2. 이라크의 대 이스라엘 화학무기 사용 위협과 이스라엘의 격화된 반응 등으로 아랍지역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한때 고조되었으나, 이집트, 미국 등의 적극적인 냉각화 노력으로 진정 국면
-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을 종용하는 미국의 중동 평화안 수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스라엘의 리쿠드당과 노동당의 연립내각 붕괴(3.15.)

2. 긴급 아랍정상회담(1990.5.28.~30., 바그다드)

- 참가국: 16개국(시리아, 레바논 불참, 모로코, 알제리, 오만은 대표단만 파견)
- 공동성명 채택
 - 소련 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 중단 촉구
 - 이스라엘 편향주의적인 미국 비난 결의
 - 이스라엘 점령지역 내 유엔군 주둔 촉구

3. 미국·PLO 간 대화 중단

- 1990.5.30. PLO 내 분파인 PLF에 의한 이스라엘 해안기습 실패사건 발생
- 동 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에 친유대적인 의회로부터 PLO와의 대화중단 압력 가중
- 6.11. PLO 집행위는 동 사건 관련한 성명을 발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미국과의 대화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
- 6.20. 미국은 이스라엘 해안 기습사건 및 그 책임자들에 대한 PLO 측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PLO와의 대화중단 발표

4. 동예루살렘 유혈사태

- 1990.10.8. 예루살렘 통곡의 벽 부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여 팔레스타인 시위대 21명이 사망하고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인 300여 명 부상
- 일단의 유대인 광신도들이 회교도들이 통제하고 있는 통곡의 벽 부근 구 유대인 성전터에서 새로운 유대인 성전을 세우기 위한 집회를 갖던 중 팔레스타인 회교도들의 선제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경찰의 발포로 발생
-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12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각국의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1-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92 / 7 / 1-189

1981~90년 중 각국의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입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관련 내용임.

1. ICJ 판사 입후보 지지 요청(1981.7월)

- 세네갈 Keba Mbaye, 말레이시아 Tun Mohamed Suffian, 바베이도스 William Douglas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 동 요청 관련, 한국은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ICJ 판사선출을 위한 유엔총회 및 안보리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요지로 회신(1981.8월)
 - 1981.11월 유엔총회 및 안보리 투표 결과 프랑스, 영국, 세네갈, 인도, 아르헨티나 후보가 각각 선출됨.

2. ICJ 판사 입후보 지지 요청(1990년도)

- 세네갈, 가나, 스리랑카 정부는 각각 자국민의 ICJ 판사 입후보 사실과 한국의 지지 요청
 - 한국은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총회 및 안보리에서의 ICJ 판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을 적의 설명
- 1990.11월 유엔총회 및 안보리 투표 결과 베네수엘라, 프랑스, 영국,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후보가 각각 선출

세계 법률가대회. 전2권 (V.1 1986-87.8)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2 / 8 / 1-249

1986~87. 8월 중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서울 개최를 추진함.

1. 개최 목적

- 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 및 법조인 간의 유대강화

2. 추진 경위

- 1983.9. 제11차 카이로 대회 시 배명인 법무장관이 '법을 통한 세계평화본부'에 유치 의사 전달
- 1985.7. 제12차 베를린 대회에서 한국 개최 결정

3. 개최 의의

-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법률가대회
- 88 올림픽 직전의 대회로 홍보 교과
- 동구공산권 등 미수교국 인사 참석

4. 대회 주제

- The Contributions of Law to World Peace

5. 패널 주제

- 국제 테러리즘 등 21개

6. 대미수교국 인사 대책(안)

- 미수교국 참가자 중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동 대회 준비협의회 위원인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로 오찬 개최를 추진
- 초청 대상자(3인)
 - 유고(헌법재판소장), 잠비아(대법원장), 이집트(대법원장)

127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세계 법률가대회. 전2권 (V.2 1987.9월-1990)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2 / 9 / 1-243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가 1987.9.6.~11. 서울에서 개최됨.

1.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1987.9.6.~11.)

- 참가국수: 61개국 1,520명(한국 인사 590명)
 - 미수교국 중 이집트, 유고슬라비아, 중국 참가
- 미수교국 주요인사 초청 오찬
 - 박수길 제1차관보, 1987.9.7 유고 헌법재판소장, 이집트 대법원장 외 1인을 위한 오찬 개최
- 주요 일정
 - 9.6. 법의 날 선포 기념식, 법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 9.7. 개회식, 오찬(이스라엘 대법원장 연설), 국제테러리즘, 에너지, 항공 관련 주제 토의
 - 9.8. 인권, 법과 기술, 조세 관련 주제 토의, 오찬(태국 법무부장관 연설), 국제교역과 투자, 대중매체와 의사전달, 법학교육I 관련 주제 토의
 - 9.9. 핵무기와 군비축소, 가족법, 국제 부동산 관련 주제 토의, 오찬, 국제중재, 법학교육II, 은행법 관련 주제 토의, 모의재판
 - 9.10. 국제사법재판소, 보건 및 마약법, 헌법 관련 주제 토의, 오찬(로터리클럽 세계총재 연설), 국제환경법, 다국적기업, 신 국제질서 관련 주제 토의, 공식 연회(유럽인권재판소장 연설)
 - 9.11. 폐회식
- 회의 결과
 - 중국 측은 대만국기 게양, 국호호칭문제 등에 항의하고 동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의 도중 귀국 의사를 표명
 - 한국 조직위와 대회 본부 측의 협의에 의해 시정 조치

2. 1990.1월 워싱턴 소재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는 1990.4.22.~27.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와 관련하여 동 회의에 대한 한국 대통령 명의의 축하 메시지를 요청함.

-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에 즈음한 3월에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메시지를 동 회의 측에 송부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지역 상사중재센터 활동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2 / 10 / 1-317

1982~90년 중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용임.

1. ICC(국제상공회의소)·대한상사중재원 간 운영각서 교환에 따라 1982.1.1. 서울중재센터가 설립됨.

- 서울중재센터는 ICC 중재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할 경우, 판정단 구성 및 심문 진행에 필요한 시설과 협력을 제공하고 관리비용은 ICC 국제중재법원에 청구함.

2. AALCC 쿠알라룸푸르 상사중재센터와 도쿄 해사중재위원회 간의 협력협정이 1982.3.5. 체결되어 1982.4.23.자로 발효됨.

- 주요 내용
 - 도쿄 해사중재위원회는 쿠알라룸푸르 상사중재센터에 의뢰된 분쟁 중 해사(선박 및 해상운송) 관련 분쟁의 중재를 처리함.
 - 도쿄 해사중재위원회는 쿠알라룸푸르 상사중재센터 규칙에 따라 분쟁 처리
 - 협력협정의 적용 범위는 당분간 도쿄 및 쿠알라룸푸르에서 의뢰되는 중재에 국한함.

3. 한·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 간 상사중재협정이 1982.6.4. 체결됨.

- 피신청인이 한국상사인 경우의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중재법 및 상사중재규칙에 의거 해결하며, 피신청인이 인도네시아상사인 경우는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에서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의거 해결함.

4. AALCC 쿠알라룸푸르 상사중재센터의 AALCC 회원국 대상으로 국제상사중재제도 및 아시아·아프리카지역 내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1982.11.2.~3.(쿠알라룸푸르)
- 1984.3.12.~14.(뉴델리)
- 1986.1.20.~22.(카이로)
- 1988.3.28.~31.(카이로)

127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218-223차. New Delhi, 1990.1.25.-12.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2 / 11 / 1-341

제218~223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가 1990.1.25.~12.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북한, 인도, 일본, 중국, 이란,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등 아시아·아프리카지역 23~25개 회원국
- 한국은 제218~221차 회의에 김성환 주인도대사관 서기관, 제222~223차 회의는 김원수 서기관이 대표로 참석

2. 주요 논의내용

- AALCC 총회(1991.2.18.~23., 카이로) 준비
- AALCC 사무총장의 제네바(UNHCR), 뉴욕(제45차 유엔총회) 출장 결과보고
- AALCC 및 인도 정부 간 본부협정 체결 문제
- AALCC 재정상태 및 본부건물 임차계약 갱신 문제
- AALCC 총회 의제 선정
 - 해양법, 국제하천에 관한 법, 테러리즘과 민족해방투쟁 간의 법적 구별기준, 유엔환경 및 개발 회의,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사법공조, 무역법 등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9차. 북경, 1990.3.12.-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2 / 12 / 1-309

정부는 1990.3.12.~17.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9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조광제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40개 정회원 국가 중 36개국 대표 116명
- 23개 옵서버국가 대표 46명 및 7개 국제기구 대표 14명

2. 회의 의제

- 개도국 경제법 연구센터 설립
- 국제법 성문화 관련 활동보고
- 해양법, 난민의 처우 및 지위,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팔레스타인인 추방의 국제법 위반
- 테러리즘과 민족해방운동의 구별
-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우호친선 관계에 관한 법적체제
- 개도국 외채부담, 사법공고

3. 한국대표단 발언 요지

- 개도국 경제법 센터 설립관계
 - 한국의 조사비용 지원 적시
-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 선진국의 협력자세 촉구
 - 사무국의 적극적 연구활동 희망

4. 북한 대표단 발언요지

- 경제법센터는 현재로서는 시급한 의제도 아니고 계획도 미숙한 단계이니 토의연기를 요청
- 인접국가 간 우호친선관계에 관한 법적체제 관련 안전보장 및 비핵지대화 노력 필요

127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9차. 북경, 1990.3.12.-17.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1 / 1-445

1990.3월 외무부에서 작성한 제29차 AALCC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관련 자료임.

1. 회의 개요

- 회의 명칭, 회의기간 및 장소, 회의 일정

2. 대표단 훈령

- 주요 국제법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회원국의 입장 파악
- 남·북한 간 소모적 대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북한대표와 비생산적인 논쟁 지양
- 주요 의제별 훈령
 - 개도국 경제법연구센터 설립, 아프리카·태평양국가 간 우호선린관계에 관한 법적문서, 국제법상 평화지대의 개념 및 체계, 사법공조에 관한 상호협력, 팔레스타인인 추방문제, 테러리즘과 민족해방투쟁 간의 구별기준, 개도국 외채부담 등

3. 제29차 AALCC 총회 관련 수석대표 회의록 및 본 회의록, 참가대표단 명단 첨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11-12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3 / 2 / 1-120

19989~90년 중 제11~12차 UNI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가 개최됨.

1. 제11차 회의(1990.2.5.~16., 뉴욕)

- 참석자
 - 67명(상임회원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34명, 옵서버: 한국 포함 26개국, 국제기구 5개 단체)
- 대표단
 -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백지아 외무부 사무관, 노종일 재무부 사무관
- 의제
 - 국제표준조달법안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중인 법적 지침, 표준법 등의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입장 반영
 - 조달에 관한 표준법을 검토하는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적극 수집
- 주요 토의사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정부조달협정과외의 관계
 - 표준법(안)과 Commentary와의 관계
 - 표준법(안) 내용검토

2. 제12차 회의(1990.10.8.~19., 비엔나)

- 참석자
 - 39명(상임회원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20명, 옵서버: 한국 포함 12개국, 국제기구 7개 단체)
- 대표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서기관, 김근수 재무부 사무관
- 의제
 - 국제표준조달법안 제2차 시안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중인 법적 지침, 표준법 등의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입장 반영
 - 조달에 관한 표준법을 검토하는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적극 수집
- 주요 토의사항
 - 제2차 시안중 제1~27조를 조문별로 심의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3-14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3 / 3 / 1-71

1990년 중 제13~14차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회의가 개최됨.

1. 제13차 회의(1990.1.8.~19., 뉴욕)

- 참석자
 - 불가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소련 등 대표(21개국)와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국(17개국), 국제기구 대표(3개)
- 대표단 구성
 -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이종현 외무부 사무관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 중인 표준법, 협약 등 통일법 준비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입장을 반영
 - 한국은 해외건설공사와 관련 대금의 보증용으로 보증신용장을 수령하는 등 주로 보증신용장의 수익자 측이므로 보증인 측보다 수익자 측의 입장을 옹호할 것
- 주요 토의사항
 - 보증 및 신용장에 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한 통일법의 실질적 적용 범위
 - 당사자 자치와 그 한계 및 해석 규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4차 회의(1990.9.3.~14., 오스트리아 비엔나)

- 1990.8월 정부는 상기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회의 결과(회의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훈령함.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지불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9-22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93 / 4 / 1-150

1989~90년 중 제19~22차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지불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개최됨.

1. 제19차 회의(1989.7.10.~21., 뉴욕)

- 참석자
 - 미국, 일본, 영국, 소련, 중국 등 40여 개국 대표와, 국제통화기금 등 4개의 국제기구 대표
- 대표단
 -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이병기 법무부 검사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 중인 법적 지침, 모델규칙 등의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입장 반영
 - 국제 신용 이체에 관한 표준법은 한국에 새로운 금융결제제도 등 금융 산업과 국제지급제도에 큰 영향을 줄 규칙인바,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적극 수집
- 주요 토의사항
 - 국제적 신용 이체에 관한 표준규칙 준비

2. 제20차 회의(1989.11.27.~12.8., 비엔나)

- 참석자
 - 미국, 일본, 영국, 소련, 중국 등 30여 개국 대표와, 한국 등 옵서버 25개국, 국제통화기금 등 4개의 국제기구 대표
- 대표단
 - 허윤 외무부 사무관, 임정수 법무부 검사
- 주요 토의사항
 - 국제적 신용 이체에 관한 표준법 재수정 초안 검토

3. 제21차 회의(1990.7.9.~21., 뉴욕)

- 외무부는 본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유엔대표부 직원이 참석하여 회의결과(회의보고서)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4. 제22차 회의(1990.11.24.~12.9., 비엔나)

- 참석자: 임정수 법무부 검사
- 주요 토의사항: 국제적 신용 이체에 관한 표준법 최종문안 작성

ILA(국제법협회) 총회, 제64차. Gold Coast(호주), 1990.8.20.-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5 / 1-59

제64차 ILA(국제법협회) 총회가 1990.8.19.~25.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30개국 348명
 - 영국 부수상, 호주 대법원장, 전 호주총독, 전 유엔사무총장 법률 고문 등
 - 한국: 신호현 주인도네시아공사, 학계인사(최운상 박사, 동국대 백봉흠 교수 등)

1282

2. 회의 주제

-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과 전망

3. 토의 내용

- 국제법학계의 최신 동향
-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각국의 태도
- 인권법의 강제력
- 우주법의 최근 경향
- 이라크 규탄 결의안 채택
- 해양법 관계
- 치외법권적 관할권의 법적측면

4. 관찰

- 주요 국제법 문제 13개를 사안별로 선정하여 ILA 연구위원회를 구성, 사전 연구 후 보고서를 토대로 토의
- 각국 외무부 등 국제법 연구부서의 조직 및 활동을 파악하고 자료수집
- 국제법 최근 동향, 주권면제이론, 인권법의 강제력, 우주법의 최근 경향에 관해 중점 파악하고 자료수집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6 / 1-252

1988~90년 중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계획 발표

- 과학기술처는 1989.6.1. 태평양 심해저 탐사 및 심해저 광구 확보 계획을 발표함.
- 한국의 선발투자가 광구등록 문제 관련 외무부 입장
 - 한국도 3천만 달러를 투자(탐사선 구입 등 포함), 선발투자가 광구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우선 갖추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실제 광구등록 여부는 현재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토의되고 있는 선발투자가 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심해저 광업의 경제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
 - 탐사실적이 있는 경우, 선발투자가 광구등록을 하지않더라도 유보광구 개발참여 등 해양법 협약상의 다른 참여 방안 용이

2. 해양개발 실무위원회(1989.12.22., 과기처)

- 참석자
 - 외무부(신효헌 조약심의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국장급 및 학계 인사 등 30명(과기처차관이 회의 주재)
- 회의 결과
 - 해양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초안) 토의
 - 해양개발계획의 수립과 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관계기관의 조치, 협조사항 토의
 - 해양개발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연구소(KIST) 산하의 현 해양연구소를 육성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교환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현황에 관한 해양연구소의 보고

128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중국과의 광구중복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7 / 1-127

1990년 중 중국의 심해저 광구등록에 따른 한국과의 광구 중복 문제 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임.

1. 중국의 심해저 광구등록 신청

- 중국은 1990.8.22. 국제해저기구 설립준비위에 선발투자자로 광구등록 신청
 - 신청 구역은 하와이 동남방 Clarion-Clipperton지역 내 위치(북위 7°~13°, 서경 138~157° 사이)
- 한국이 1989~90년에 걸쳐 탐사한 구역도 동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간 광구중복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2. 한국의 심해저 광구 탐사 실적

- 1980년대 초 이후 심해저 광구개발에 관심을 갖고 1983년에 탐사활동을 한 바 있으나 1985.1.1. 시한 때문에 본격적 탐사활동 중단
 - 1982.12월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이후 관계 부처 간에 선발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막대한 투자부담, 경제성 확보 불확실, 경제성 있는 광구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 및 기술이전 기대안 등의 이유로 보류
- 1986.9월 뉴욕양해(New York Understanding)에 의거, 개도국에 대한 선발투자자 등록시한이 협약 발효 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광구탐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1989년부터 실효역 탐사 실시
 - 1989년과 1990년 2년에 걸쳐 태평양 C-C지역에서 15만 km² 탐사 완료 계획
 - 실효역 탐사에 300여만 달러 투자, 2500만 달러 상당의 탐사용 선박을 수주하여 1991년 말경 인수 예정

3. 중국과의 광구중복문제 대책회의(1990.11.10., 외무부)

- 참석자: 외무부, 동자부, 과학기술처, 해양연구소 관계자
- 주요 토의내용
 -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국제해저기구 설립준비위원회 및 해양법사무국과 협의한바, 유엔해양법 협약 결의II상 현 투자실적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장받을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이익신청보다는 향후 신청광구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 해양연구소는 외무부와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유엔을 통하여 이익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4.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참여방안 검토

- 중국과의 광구 중복문제를 계기로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방안에 대한 체계적 정비 요망
 - 추진계획, 예산확보, 관할부처 지정 등
- 광구확보 가능성, 경제성, 기한 내 등록요건 구비가능성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 선행 요망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8 / 1-206

1986~90년 중 외무부 작성의 아래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법 해석자료임.

1.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 조업구역 확장(1986.6월)
2. 소련 정부의 한국어선 불법어로 항의(1986.8월)
3. 한·일본 간 정기 여객선상의 공연행위(1987.4월)
4. 소련선박 입항문제(1987.7월)
5. 소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입국(1987.10월)
6. 올림픽 안전대책(1988.7월)
7. 오후츠크해 내 공해조업(1989.9월)
8.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관리해역의 범위설정(1989.11월)
9. 외국군함의 한국 해협 및 영해 통항제도(1990.5월)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전2권 (V.1 1985)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9 / 1-232

1985년 중 외무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5.3.20. 외무부는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2.25.자 공한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국재판소의 소송절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의해 왔다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1985.4.4. 법무부는 아래 요지로 회신함.
 - 한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외국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정부의 응소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정부는 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응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2. 정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 외무부는 1985.10.8.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싱가포르, 영국의 국가면제법과 유사한 주권면제법(Sovereign Immunity Act)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개도국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주권면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10.10. 주권면제법 제정 검토를 위해 주캐나다, 주파키스탄, 주싱가포르, 주벨기에 대사관에 주재국의 주권면제법을 입수하여 송부할 것을 지시함.
 - 주싱가포르, 주캐나다대사관은 주재국 주권면제법을 외무부에 송부함.

128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전2권 (V.2 1986-87)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3 / 10 / 1-179

1985~87년 중 외무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7.6.17. 정부가 별도의 주권면제법이나 관계법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권면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입증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관련 판례 송부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함.

2. 재외 교민의 정부 제소

1288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2.12.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한국 교민이 제기한 소송 피고인으로 총영사관 직원의 법원 출두를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 외무부는 2.23. 아래 입장으로 회보함.
 - 영사관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부 입장을 통보할 필요가 없음.
 - 상기 법원이 계속 출두를 요청할 경우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출두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미 국무부에 통보함.

중공 및 중국의 국호·국기·국가 사용문제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3 / 11 / 1-63

1986~87년 중 중국(구 중공) 명칭 및 대만(구 자유중국)의 국호·국기·국가 사용문제 등에 관한 내용임.

1. 중공 공식 국명 사용문제

- 외무부는 1986.9월 외무부장관 재가를 받아 시행함.
 - 경위
 - 중공과의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공에 대한 한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공은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한국인의 중공 방문여권에 목적지 추가시 중공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항의를 제기함.
 -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고, 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대한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중공의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중공 호칭사용을 지양하고 공식 국명 사용을 건의
 - 시행 방안
 - 정부의 공식문서, 간행물 및 발표문상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공식 국명 사용
 - 중공 방문 한국인 여권에 목적지 추가 시 현행의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
 - 기타 일반적으로 중공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중국'으로 호칭
 -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시 중공의 공식 국명을 사용하도록 권장

2. 국제행사에서 중국(대만)의 국호·국기·국가 사용문제 및 참가문제

- 제7회 세계검도 선수권대회, 88서울올림픽 참가, 제7회 세계연식 정구 선수권대회 등에 관해 관련 부서들이 외무부에 의견 검토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관련 규정 및 원칙 등에 입각하여 답변함.

표류 중공인(19명) 구조 및 중국 망명사건. 전3권 (V.3 언론대책 및 보도)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4 / 2 / 1-111

1986.6월 중 한국 근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중국(구 중공)인 망명사건 처리 관련 외무부 대변인 발표 및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임.

1. 표류 중국인 구조사건 처리에 관한 외무부 대변인 발표(1986.7.8.)

- 1986.6.17. 충남 서산군 인근 영해에서 표류 중 한국 해양경찰 당국에 의해 중국인 19명 구조
- 조사 결과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산동성을 출발하여 항해 도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
- 그간 해경 당국이 보호 중이며 목적지로 보내주기를 요청한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1986.7.8. 대만(구 중화민국)으로 출국 조치

2. 언론 보도

- 국내언론
 - 1986.6.18. 중앙일보: 표류 중 중공선박 승무원 19명 구조
 - 1986.6.18. 서울신문: 표류 중공선 서산에
 - 1986.6.18. 한국일보: 19명 탄 중공어선 서산 앞바다에 도착
 - 1986.7.9. 조선일보: 표류 중공인 19명 대만 보내
 - 1986.7.9. 한국일보: 표류 중공인 19명 어제 대만 보내
- 해외 보도
 - 1986.6.18. 홍콩의 성도일보, 명보, 성보, 신보,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 1986.6.17. 대만 4개 석간지에 서울특파원 또는 외신 인용 사실 보도
 - 1986.6.18. 모든 대만 조간신문이 1면 톱으로 경찰 당국의 발표문, 특파원 기고, 외신 등을 종합 대대적으로 보도
 - 신생보 사설: 자유 망명과 긴급피난의 혼동 등

남극기지 운영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8 / 1-96

1988~90년 중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관련 내용임.

1. 주칠레대사관은 남극기지용 보급 물품 수송 및 상주 연구대원 교체를 위하여 칠레 공군전세기를 임차함.

- 남극기지용 보급품(약 2톤) 이송 지원(1988.7.14.)
- 칠레 공군전세기를 임차하여 남극기지 상주대원 교체(1989.1월)
 - 선발대 6명, 화물 500kg 이송
 - 하계대원 14명, 화물 500kg 이송
 - 동계대원 13명, 화물 500kg 이송

2. 페루 남극연구선 'Humbolt호'는 1989.2.10.~25.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 협조를 요청함.

- 페루 정부의 킹조지섬 내 남극과학기지 건설 1단계 공사 관련 방문

3.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는 남극과학기지 건설(1988.2.17. 준공) 이후, 합리적 보급체계 및 장기적 대외협력체제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언론사 합동 현지 점검단을 아래와 같이 파견함.

- 파견 기간: 1990.1.13.~24.
- 파견자: 안재걸 경제기획원 상공예산과장, 조성용 외무부 국제법규과 서기관, 이상현 과학기술처 법무담당관, 박병권 해양연구소장, 배진 주칠레대사관 참사관, 최수묵 동아일보 기자
- 파견 목적
 - 남극기지 현지 상황 파악
 - 경제적 보급체계 수립 방안 연구
 - 합리적 예산지원 방안 연구
 - 타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129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남극학술심포지움, 제2차. 서울, 1990.9.17.-1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9 / 1-102

제2차 국제남극학술 심포지움이 1990.9.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주관

- 한국해양연구소

2. 참석자

- 미국, 영국, 소련, 일본, 폴란드, 칠레, 아르헨티나 등 국가의 남극 문제 전문가, 국내 해양 연구 학자

3. 제2차 국제남극학술 심포지움 관련 발표문, 회의 안내자료 등 첨부

통상대표부 유형 및 법적지위 검토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10 / 1-107

1983~90년 중 통상대표부 등 비외교공관의 법적지위와 미수교국가와의 대표부 설치 문제 등을 검토한 내용임.

1. 프랑스 정부의 북한 통상대표부 명칭변경 검토(1984.7.12., 국제법규과)

- 통상대표부(Mission Commerciale)를 일반대표부(Délégation Générale)로 변경
- 일반대표부와 통상대표부의 차이
 - 통상, 경제분야 이외에 외교, 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법적지위(특권면제)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달림.
 - 정식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아닌 국가에 대한 최고의 외교적 대우를 부여하는 셈임.

2. 미수교국가와의 대표부 설치 문제 검토(1990.3.26., 국제법규과)

- 대표부 설치 근거
 - 대표부의 지위 및 기능은 양국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국제관례
 -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의 준용 예상(한국은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비당사국)
- 대표부 설치와 외교관계 수립과의 관계
 - 대표부 설치의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외교관계, 영사관계 부재 시에도 가능
-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준용 시 대표부의 지위
 - 국기와 문장 사용 가능, 특권면제, 통신 및 이동자유 등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외교공관과 유사한 취급
- 결론
 - 과거 한국의 대표부 설치가 향후 외교관계 설정을 상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교한 전례에 비추어 전향적인 것으로 인식, 외교관계 수립은 대표부 설치와 별도의 합의 필요
 - 대표부 설치 시 지위 및 기능의 최대한 확대 교섭 노력 요망

3. 통상대표부 등 비외교공관의 법적지위, 제3국에 의한 이익보호제도(이익대표부), 일본의 주한 대표부 설치문제, 미국·중국 연락사무소 법적지위, 일본·중국 각서무역사무소 법적지위, 미 수교국 준외교공관 설치사례 등 검토자료 첨부

129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11 / 1-172

1984~90년 중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외국공증문서 확인면제협약 가입 검토(1985.3.21., 국제법규과)

- ‘외국공증문서 확인면제협약’에 한국의 가입 건의

2. 호주 유엔협회의 양자간 평화조약 제의 검토(1987.10월, 국제법규과)

- 호주 유엔협회의 양자간 평화조약 제안 자체는 이상적이나, 분단국으로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 특수상황에 비추어, 동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

3. 남·북한 우편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한 법적 검토(1988.8.12., 국제법규과)

- 남·북한 우편교류에 관한 협정(안)은 남·북한 간에 교류되는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요금, 중계 방법 등에 있어서 국내우편으로 취급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만국연합헌장, 만국우편협약 등 제 의정서의 취지에 부합

4. 한·미국 수호통상조약의 효력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1989.2월, 국제법규과)

5. 국제사법재판소에 휴전협정 위반 제소문제 검토(1989.4월, 국제법규과)

6. 국가통합 시 조약의 승계문제(1990.2월, 국제법규과)

7. 유보조항과 양해조항 간의 차이점 연구 검토(1990.4월, 국제법규과)

국제법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12 / 1-84

1987~90년 중 국제법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관련 내용임.

1. 주요국 국제법 업무전산화 현황 파악

- 외무부는 1987.7.27. 국제법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주재 대사관에 주재국 외무부 또는 국제법 연구기관의 관계업무 전산화 현황 파악을 지시

2. 조약, 국제법 전산화 시찰(1987.11.16.~21.)

- 출장자: 권영국 국제법규과 서기관 외 2명
- 시찰기관: 일본 외무성, 일본 국회, 니혼게이지아신문사 및 국제 데이터뱅크
- 시찰 내용
 - 일본 외무성: 조약용어 검색시스템 도입 경위 및 활용 현황, 컴퓨터를 이용한 조약용어 예집 편찬, 제3국 간 조약 체결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미국·일본 안전보장조약 관계 국회의사록의 전산관리
 - 일본 국회: 국회의사록 전문 전산입력 관리
- 건의 사항
 - 조약 업무 전산화 적극 추진: 업무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어 전산화 추진이 용이, 데이터 베이스 형성을 위해 조약분류, 코드화, 입력항목 선정 등 작업 필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문 번역 시스템 개발에 중점
 - 국제법 업무 전산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산화를 추진하되 자료의 방대성을 감안, 입력내용 선정에 유의
 - 다양한 정보활용을 위해 국내·외 데이터뱅크 등 활용

129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88-8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13 / 1-331

1988~89년 중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사례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관 신축과 관련된 법적 검토(1988.4.28., 국제법규과)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8.2.9.자 공한을 통해 서울시와의 한지교섭을 통해 확보될 부지(구 경기 여고 부지)에 공관을 신축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미국 측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할 계획임을 밝히고 미국업체가 시공할 경우 한국 국내법상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문의

2. 한·이라크 간 부지교환협정의 효력과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 문제 등과 관련한 검토 (1988.6.3., 국제법규과)

3. 미수교국 올림픽 연락관에 대한 준 영사기능 부여 방안에 관한 검토(1988.6.24., 국제법규과)

4.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청사 임대계약 해제 관련 분쟁 건 검토(1988.8.22., 국제법규과)

5. 유엔전문기구 집행기관 의장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 검토(1989.1.9., 국제법규과)

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직원 및 전문가의 특권면제 관련 검토(1989.1.26., 국제법규과)

7. 주토론토총영사 관저 배상소송 관련 검토(1989.2.21., 국제법규과)

8. 국제사법재판소에 휴전협정 위반 제소 문제 검토(1989.4.3., 국제법규과)

9. 중국 반체제 물리학자의 미국대사관 피신 문제 검토(1989.6.13., 국제법규과)

10. Korea Plaza 소송과 문화원의 특권·면제 검토(1989.6.17., 국제법규과)

11. 주미국대사관 고용원 부인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 포기 검토(1989.9.4., 국제법규과)

12. 주뉴욕총영사관 영사확인 관련 법적 검토(1989.9.23., 국제법규과)

13. 한·기니, 한·마다가스카르 관계의 법적성격 검토(1989.9.26., 국제법규과)

14. 영사방문권 제한에 관한 검토(1989.9.28., 국제법규과)

15. 주한 미국대사관저 난입사건 관련 국가책임 여부 검토(1989.10.17., 국제법규과)

16.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내 구주 의회 투표소 설치에 관한 법적 검토(1989.10.25., 국제법규과)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94 / 14 / 1-152

1990년 중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사례임.

1. 영사관원 체포문제 관련 국제법적 검토(1990.3.19., 국제법규과)
2.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리대사 부임 관련 검토(1990.4.30., 국제법규과)
3. 외국 군함의 한국 해협 및 영해 통항제도 검토(1990.5월, 국제기구조약국)
4. 주한 미국문화원 화염병 투척에 따른 국가책임(1990.5.10., 국제법규과)
5. 한·아프가니스탄 복교 문제 검토(1990.6.4., 국제법규과)
6. 주한 가봉대사관 전화요금 체납 문제 관련 검토(1990.7.16., 국제법규과)
7. 주한 외교관 반미활동 법적 검토(1990.8.3., 국제법규과)
8. 한국의 피지 내 인도 이익보호 역할 검토(1990.8.6., 국제법규과)
9. 코트라 주베이징대표처(가칭)에 대한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지정 문제 검토(1990.9.10., 국제법규과)
10. 주한 외국공관원의 주거용 택지 소유한도 제한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해석 문제 (1990.10.8., 국제법규과)
11. 동경 상주 이스라엘대사관 공관원(겸임 공관원) 장기체류 문제 관련 국제법적 검토(1990.12.24., 국제법규과)

129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서울평화상 제정 및 시상 추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4 / 15 / 1-222

1. 서울평화상 제정 및 시상 개요

- 서울평화상 위원회(위원장: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스포츠와 관련하여 인류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0.2.27. 서울평화상을 제정함.
- 서울평화상 시상 계획
 - 1990.3월 말 외국인 추천인 413명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의뢰서 발송
 - 1990.7.31.까지 추천인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8월 중 수상자를 확정
 - 1990.9월 또는 10월 제1회 서울평화상 수상 추진

1298

2. 서울평화상 관련 재외공관 협조

- 서울평화상 관련 자료수집 협조 요청
 - 노벨상(스웨덴), 노벨 평화상(노르웨이), 일본국제상(일본), 막사이사이상(필리핀), 유엔인권상(유엔), 네루평화상(인도) 관련 자료
- 서울평화상 추천인 위촉 수락 후보자 추천 권유
 - 민간단체인 서울평화상위원회에서 서울평화상을 주관하지만 제1회 서울평화상의 성공적인 시상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추천인 접촉 등 협조 제공
- 김용식 서울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의 해외출장
 - 서울평화상 홍보 및 수상후보자 추천 협조요청
 - 1990.6월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제네바, 뉴욕 방문
- 서울평화상 후보자 추천 상황파악 및 추천서류 전달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제1회 시상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문화과

MF번호 2020-95 / 1 / 1-110

1.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개요

- 세종대왕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과 상금(3만 달러) 출연으로 유네스코가 제정한 공로상
 - 1989.6월 유네스코 집행위에서 세종대왕상 창설 결정
-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매년 세계문맹퇴치의 날(9.8.)에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게 동 상을 수상

2. 제1회 세종대왕상 시상

- 1990.9.8. 제42차 국제교육회의 종료일에 5개 공로상 시상식을 거행
- 제1회 세종대왕상 수상자
 - 본상: 인도 Kerala Sastra Sahita Parishad(과학 대중화 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
 - 가작: 방글라데시 Pathakal Trust(빈민지역 근로아동을 위한 초등교육운동 전개 민간단체)
- 의의 및 평가
 - 유엔이 선포한 문맹퇴치의 해에 제1회 세종대왕상을 시상하여 국제 문맹퇴치 노력에 기여
 -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위업을 전세계에 홍보

129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US-Asia지 창간호 한국 특집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95 / 2 / 1-77

1989~90년 중 미국 US-Asia지 창간호 한국특집 발간 관련 내용임.

1. 발간 개요

- Lester Wolff 전 하원 아태 소위원장이 아시아지역과 미국의 이해관계 증진 목적으로 창간
- 월간지 US-Asia를 1990.1월부터 창간하여 미국 및 아시아지역에 비매품으로 배포
-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창간호는 한·미국 관계 특집 발행

1300

2. Lester Wolff 전 하원 아·태 소위원장 방한

- 1989.11.6.~10. US-Asia 창간호에 게재할 한·미국 관계 특집을 위한 자료 수집차 방한
- 방한기간 중 외무부차관, 법제처장 등 고위 정부인사, 국회의장, 기업대표 등 면담

3. 미국 US-Asia 지 창간호 한국특집

- 1990.3.20. US-Asia 창간호 발간
- 한국 소개 특집 게재
 - 노태우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국회의장 연설문, 상공부장관 기고문 등 게재

주한 독일문화원 운영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5 / 3 / 1-108

1988~90년 중 주한 독일문화원 활동내용임.

1. 우수고교생 독일초청 연수사업

- 목적: 한국 내 독일어 교육 지원 및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 방독 초청기간: 1988.7.31.~9.4.
- 선발인원: 고교생 14명

2. 주한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원장 서울대 출강

- 주한 독일문화원 원장은 서울대 요청에 따라 무보수 순수봉사활동 조건으로 1988년 1학기 서울음대 관현악 강사로 출강

3. 1988년도 독일어 교사 독일 현지연수 초청사업

- 초청연수 근거: 한·독일 문화 합동위원회 합의의정서
- 초청대상자: 전국 고교 독일어 교사 30명

4. 주한 독일문화원 주관 한국단편영화제 개최 문제

- 주한 독일문화원은 1989.1.31.~2.3. '민족영화를 위하여' 제하 한국단편영화제(6편) 개최 계획을 발표함.
- 한국 정부는 한국단편영화 상영 계획이 한·독일 문화협정 취지 및 문화원 활동 목적에 위배됨을 주한 독일문화원에 통보함.
- 주한 독일문화원은 1989.1.31. 한국단편영화 상영계획을 철회함.

130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일본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설치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95 / 4 / 1-67

1990년 중 일본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함.

1. 주니가타총영사는 1990.8월 니가타현이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해 한국은행에 사무소 설립허가를 신청 중이라며 조속한 설립허가가 발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90.9월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한국은행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니가타현 서울사무소의 주업무가 한국과 니가타현 간 상호이해와 우호관계 촉진, 인적교류 지원, 해외정보수립, 니가타 관광자원 소개 등 순수한 교류증진에 있음.
 - 서울사무소 설치에 한·니가타현 간의 제반 교류를 확대 증진 시키고 동북아시아 개발 및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기 한·일본 양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사무소 설치에 의의가 큰 것으로 보임.
3. 가네코 니가타현 지사는 서울사무소 개소식(10.16.) 참석차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16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1990.10.15.~18. 방한함.

한·독일 문화 공동위원회, 제7차. Bonn/Berlin, 1990.5.28.-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5 / 5 / 1-167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가 1990.5.28.~30. 독일 본과 서베를린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독일 측: Eberle 독일 외무부 공사

2. 회의 결과

- 1990~92년 시행될 문화교류의정서 채택(39개항 합의)
- 주요 합의내용
 - 독일어 전문가 3명 한국 내 활동 협조, 독일어 교사 30명 독일 연수
 - 한국은 독일대학 내 한국어 강좌에 예산지원, 독일은 독일대학의 한국어학과 설치 장려
 - 양국 교과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과서 오류 시정을 검토하기로 합의
 -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기관 협력

3. 평가

-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시행교류계획 수립
- 독일 측이 독일대학 내 한국어학과 설치 장려, 양국 통일문제 연구소 간 교류 장려 및 교과서 오류 시정 추진에 합의한 점이 중요한 의의

130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독일 문화 공동위원회, 제7차. Bonn/Berlin, 1990.5.28.-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5 / 6 / 1-148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임.

1.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준비자료

- 문화분야 제6차 한·독일 문화공동위 이행실적 및 제7차 회의자료
- 체육분야 제6차 한·독일 문화공동위 이행실적 및 제7차 회의자료
- 학술진흥재단 및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회의 관련 자료

1304

2.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 문화교류 의정서 독일안(독일어 및 한국어본)

3.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 교류계획서 한국안 요지

4.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 문화교류 의정서 독일 측 영문본(안)

한·헝가리 문화공동위원회, 제1차. Budapest, 1990.11.5.-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5 / 7 / 1-159

제1차 한·헝가리의 문화공동위가 1990.11.5.~6.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헝가리 측: 보르하 문화체육부 국제관계국장

2. 주요 합의사항

- 한·헝가리 대표단은 1991~93년간 시행할 교육, 문화, 예술, 방송, 체육 및 청소년분야 등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문화교류 계획서에 서명
- 양국은 교과서상에 오류기술 내용이 있을시 이를 상호 시정하기로 합의
 - 한국 교육개발원과 헝가리 국립교육연구소를 각각 담당기관으로 지정
 - 헝가리 측은 현행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6.25 북침설을 가까운 시일 내 시정할 뜻이 있음을 표명

3. 문화교류 계획서 합의문 요지

- 교육
 - 양측은 매년 1~2명의 대학교수 또는 교육분야 전문가를 2주간 상호 교류
 - 양측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권장
 - 양측은 한국학 또는 헝가리학 연구를 위해 매년 각각 1명의 장학생 교환
- 문화 및 학술
 - 양측은 학술, 문화, 고고학, 음악 및 역사분야에 관한 자료 교환
- 정보 및 대중매체
 - 통신사간 뉴스 자료 교환 장려
- 체육 및 청소년
 -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는 행사에 상호 초청하며 상세 교류조건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일반 사항 및 재정 조항

130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90.3.16.-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95 / 8 / 1-235

제4차 한·일본 간의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가 1990.3.16.~17.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일본 측: 오구라 가즈호 외무성 문화교류부장

2. 정부 훈령

- 교섭목표
 - 미래지향적인 한·일본 우호관계 수립을 위한 한·일본 문화교류 활성화
 - 대통령 방일 관련 양국간의 우호협력 분위기 조성
 - 양국간에 민감한 사안에 관한 일본의 협력 유도
- 추진방향
 - 문화 교류면에서 양국간 협력 긴밀화를 통하여 선린 우호관계 강화
 - 대통령 방일 관련 문화행사 적극 추진
 - 한·일본 양국 문화의 독창성,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국민 상호간의 이해심화를 위한 방안 모색

3. 주요 의제

- 한·일본 청소년 교류 등 인적교류
- 한·일본 교육·학술교류
- 상대국 국어교육

4. 외무부는 1990.3.12. 제4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

- 동 회의에서 한·일본 양측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본 선린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문화, 학술, 예술 및 인적교류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구체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90.3.16.-1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95 / 9 / 1-180

1990.3.16.~17.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및 자료임.

1. 참석자

- 한국 측: 신성오 정보문화국장과 관계 부처 실무자
- 일본 측: 오구라 외무성 문화교류부장 외 관계성청 실무자

2. 주요협의 결과

- 양국간 주요 문화교류 행사
 - 대통령 방일 관련, 양국간 친선우호 분위기 고조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방안 협의
- 청소년 교류
 - 한국 측은 한·일본 간 청소년 교류 원활화를 위해 대통령 방일 계기 양국내에 각각 한·일 및 일·한 청소년 교류센터 설립 방안 검토를 제의
- 연구소 설치문제
 - 한국 측은 일본 정부 또는 민간기관이 한국 사립대의 일본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 고려 요망
- 문화재 반환문제
 - 한국 측은 대통령 방일 계기 영친왕 및 왕비유물, 오구라 컬렉션, 북관대첩비 반환 요청
 - 일본 측은 동건을 비공식 요구로 받아들이며, 관계성청에 전달 표명
- 일본 통신위성 TV 한국 노출 최소화 제의
 - 일본 측은 방송내용 심의는 표현의 자유침해이기 때문에 곤란 표명
- 일본 영화 개방문제
 - 한국 측은 일단 검토를 표명하고, 일본 영화가 주한 문화원에서 공개 상영되고 있음을 지적

3. 제4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 자료 수록

130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영국 문화 혼성위원회, 제4차. London, 1990.11.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5 / 10 / 1-239

제4차 한·영국 문화혼성위원회 회의가 1990.11.1.~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대표 6명
- 영국 측: David Maler 영국문화원 미주·태평양 및 동아시아담당국장 외 관계기관 대표 6명

2. 주요 회의 결과

- 1990~92년간 시행될 문화, 예술, 방송, 영어학습, 한국학 진흥, 체육 및 청소년분야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함.
- 한국 측은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 한국학 진흥 및 영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시정방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함.
 - 영국 측은 국정교과서 제도 및 시정업무 담당기관이 없어 어려움은 있으나 가능한 협조를 언급함.
- 영국 측은 주한 영국문화원 영어교습 제한 완화를 요청함.
 - 한국 측은 국내학원계의 반발 등 완화조치 상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 기타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 방송 및 언론, 인적교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협의

한·영국 문화 혼성위원회, 제4차. London, 1990.11.1.-2.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5 / 11 / 1-221

1. 제4차 한·영국 문화혼성위 회의 관련 각 기관의 자료
 - 체육부, 문화부 및 관계기관의 자료 등
2. 문화혼성위 개최 관련 주한 영국대사 면담요록
 - 1990.7.10.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과의 주한 영국대사 간 면담요록
3. 영국 내 한국학에 대한 한국의 지원 현황
4. 제4차 한·영국 문화혼성위 회의 자료(정보문화국)
5. 제4차 한·영국 문화혼성위 회의의사록

130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중국 문화교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5 / 12 / 1-190

1989~90년 중 한·중국 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중국 예술단 방한 초청

- 주일본대사관은 1989.1.5. 중국 전영악단 측이 한국계 중국인을 통해 방한 초청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고 보고하고, 외무부는 문화공보부에 동 악단의 방한 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문화공보부는 동 악단 방한 초청이 한·중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기관 또는 관계자로부터 제의가 있을 경우에 협조하겠다고 회신함.

1310

2. 미수교국 공무 국외여행

- 문화재관리국은 신안 출토 목선의 복원 및 보존 그리고 한·중국 간 보존처리 기술교류를 위하여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목포보존처리장 직원이 1989.2.22.~3.18.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공무 국외여행 관련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동 계획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3. 중국 연변 교포 예술인 국내공연

- 문화공보부는 1989.8.4. 한국일보사가 중국연변 교포 예술인(가무단)을 초청하여 국내공연을 실시하고자 동 공연 가능여부를 문의해 왔다고 하면서, 외무부 의견을 요청함.
 - 동 가무단은 일본 오사카 교포 위문공연 후 국내 친지 방문을 겸하여 국내공연 실시 의향
- 외무부는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한하는 중국동포 예술인의 국내공연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국내 공연허가를 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보함.

4. 한국시집의 중국 출판

- 문화공보부는 1989.8.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중국어본 한국시선집(수록내용: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 79인의 155편)의 중국 현지 출판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알려오면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한·중국 간의 문화학술 교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동 계획 추진에 이의 없음을 회보함.

한·프랑스 문화교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 문화과

MF번호 2020-95 / 13 / 1-136

1988~89년 중 한·프랑스 간의 문화교류 관련 내용임.

1. 제9차 한·프랑스 문화공동위원회(1988.5.16.~18., 파리)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양세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프랑스 측: Beauvais 외무부 문화·과학기술 부총국장
- 주요 토의사항
 - 교육·예술분야, 과학·기술분야 및 체육분야 협력
 - 문화원 법적지위, 유학생 및 가족 비자 발급 문제
- 특기사항
 - 각 분야 협력사업의 대폭 증가로 양국의 교류 증대 및 긴밀화 추세 반영
 - 지적재산권 문제 제기
 - 주프랑스문화원 지위, 유학생 및 가족 비자 문제,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 등 구체적 협력 분야 협의
 - 합의의사록 서명

2. 제1회 한·프랑스 포럼(1989.6.23.,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

- 참석자
 - 프랑스 학계, 언론계 정부 및 금융 기업계 인사
- 주요 의제
 - 한·프랑스 양국관계 현황과 전망
 -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 등

131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제주도 - Bali주(인도네시아) 간의 자매결연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95 / 14 / 1-77

제주도지사는 1989.6.16.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리지사와 자매결연협정에 서명함.

1. 경위

- 제주도청은 1988.12.22.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리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발리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1989.1.27. 발리 관련 자료를 제주도청에 송부
- 내무부는 1989.1.30. 제주도와 인도네시아 발리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1989.2.10. 상호교류 증대 및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해 추진 필요성을 회신

2. 제주도와 발리 간 자매결연 체결

- 이근보 제주도지사는 Ida Oka 발리 주지사의 초청에 따라 1989.6.15.~17. 발리를 방문하여 6.16. 제주도·발리 간 자매결연협정에 서명
- 동 자매결연은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Oka 발리 주지사에게 자매결연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

3. 발리 지사 방한

- 제주도지사는 1989.8.14.자 서한으로 Oka 지사를 10월 한라문화제에 초청
- Oka 지사는 부인 및 14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1989.10.19.~25. 방한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 대책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95 / 15 / 1-154

1988~90년 중 일본 소재 문화재 반환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8.2월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반환문제 대책자료를 작성함.

- 문화재 반환문제 현황
 - 한일 교섭의 경우: 1958.4월부터 청구권과 별도로 반환 교섭
 - 문화재 반환에 관한 양국간 합의: 1965.12월 발효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는 문화재 359종 1,326점을 인도하기로 규정됨.
 - 문화재 반환 실적: 1971년까지 총 1,538점
- 미반환 문화재 반환 교섭
 -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회담을 통해 요청 중
 -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소장목록과 조사보고서 작성 제공 요청
 - 오구라(전 남선전기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수집하여 동경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재 1,060점
 - 북관대첩비
- 일본 측 입장
 - 1965년 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양국 정부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
 - 민간인 소장품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

2. 문화공보부는 1989.3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 대비하여 동경박물관 보관 한국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입장과 반환대상 문화재 목록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제출함.

-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문화공보부 입장
 - 금번 외무장관회담 시 동경박물관 소장 일부 문화재인 오구라 기증 문화재 1,047점과 영친왕 및 왕비유물 152점에 대한 전량 반환 촉구
 - 합의의사록에 의거 일본 개인소장 한국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정부에 기증하도록 권장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실천조치 요청
- 반환대상 문화재 목록

한·일본 문화교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95 / 16 / 1-120

1990년 중 한·일본 간 추진된 각종 문화교류 행사에 대해 일본 주재 공관이 보고한 내용임.

1. 조선시대 유학자 강항 선생의 일본 역류 시 일본 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을 기념하여 한·일본 각계 인사의 성금으로 기념비를 건립한바, 동 기념비 제막식이 1990.3.11. 일본 오즈시에서 거행됨(주교베총영사 보고).

2. 주일본대사관과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90.4월 주재국 정창원에 관한 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 8세기 중엽 국사인 동대사의 사보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그후 세이무 천황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19세기 말엽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일본 황실의 관리하에 있음.
- 소장품목: 무기류, 불교자엄류, 회화 등 9,020여 점
- 소장 한국문화재
 - 신라 가야금, 거문고
 - 신라 이두 설명문이 첨부된 색선 화선
 - 식기 놋그릇, 녹쇠 숟가락
 - 문서(신라 이두문)
 - 보자기

3.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90.10월 대마도 조선통신사 행사에 관한 의견과 행사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공관 검토의견
 - 행사에 사용된 의상 등 장비가 고증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시 영도구청과 나가사키현 대마도지청 간에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0.8월 쓰시마 아리랑축제로 진행되어 총영사가 정사로 시가 행렬 및 한일 양국 국서를 교환함.

4. 문화부는 1990.10월 대통령 방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을 외무부에 통보함.

- 기본방향, 단기추진사업, 장기계획사업 등

한·리비아 문화협력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95 / 17 / 1-99

1986~90년 중 한·리비아 문화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리비아 외무부는 1986.1.16. 한·리비아 간 스포츠 교류 제의

- 스포츠 대표단 교환
 - 양국에서 적용되는 스포츠를, 규정 및 프로그램 시찰을 위한 관계인사 교환
- 스포츠팀 교환(골프 및 탁구)
- 전문가 및 스포츠 자료교환

2. 한국 민속무용단 리비아 공연(1987.9.14.~10.1.)

- 리비아 혁명 18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에 맞추어 리비아를 방문, 8차례 공연
- 1980.12월 양국간 국교수립 이후 최초의 민속예술단 방문으로 양국간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리비아 진출 한국업체의 근로자들을 위문하여 노사간 협조 분위기 조성

3. 리비아 트리폴리주·서울시 자매결연 제안

- 리비아 트리폴리 주지사는 1990.6.6.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주리비아대사에게 트리폴리주와 서울시 간의 자매결연을 제안

131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오만 문화교류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96 / 1 / 1-66

1986~90년 중 한·오만 양국간 문화교류 관련 내용임.

1. 1986.11.25. 주오만대사관은 1986.11.25. 주재국 문화정책을 외무부에 보고함.

- 문화정책의 특징, 한·오만 문화협정 체결 등 한·오만 문화교류 현황
- 실질적 문화교류 가능분야: 체육, 문화사절단 파견, 청소년 사절단 파견, 학술 교류, 언론인 교환 방문, 미술·사진 전시회 등

1316

2. 오만 외무부는 1990.2.7. 외교 공한을 통해 오만 독립 20주년 국경일(1990.11.18.)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2차 무스카트 국제청년미술전에 한국의 참가를 요청함.

- 무스카트 국제 청년 미술전 개요
 - 취지: 미술작품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친선과 이해 도모
 - 전시기간: 1990.11월 중순부터 12일간
 - 참가 대표단 활동내역: 각국별 최소 1명 이상의 대표를 파견, 작품 및 자국 예술활동 소개
- 한국미술협회는 출품작품 5점을 제출하였으며, 그 가운데 강민 작 유화 <여인>이 2위에 입상

한·포르투갈 문화교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96 / 2 / 1-65

1990년 중 한·포르투갈 양국간 문화교류 관련 내용임.

1. 한국 문화주간 행사(1990.5.14.~18.)

- 신리스본대(Universidade de Lisboa) 동양학연구소 및 한국어 과정 학생 주관, 주포르투갈대사관 후원으로 개최
- 한국소개 강연회, 태권도 시범, 한국 문화영화 상영 등
- Diario de Noticias, Almada 방송 등 주재국 언론에서 보도

2. 국립예술단 포르투갈 공연(1990.9.27.~10.6.)

- 공연 일정
 - 10.1.~2. 리스본 문화재단 대극장 2회 공연
 - 10.4.~5. 북부 중심도시 포르토시 극장에서 2회 공연
- 공연내용은 주재국 국영 TV에 수차례 방영되고, 주재국 일간지들도 공연내용 대대적 보도

3. 포르투갈 최고의 민요(Fado) 가수 방한 공연(1990.6.15.~17.)

- 주포르투갈대사는 1990.4.6. 주재국 최고의 민요(Fado) 가수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Amalia Rodriguez 여사를 만찬에 초청하고, 동인이 1990.6.15.~17. 서울, 부산에서 공연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
- 동인의 방한 공연은 주재국 언론에 수차 보도되어 한·포르투갈 양국민 간 교류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함.

131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소련 문화교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96 / 3 / 1-126

1989~90년 중 한·소련 문화교류 관련 내용임.

1. 소련 문화공연단 한국 공연

- 중앙일보사, 소련 볼쇼이 발레단 초청 공연
 - 공연기간 1990.3.26.~4.3., 단원규모 약 250명
- 롯데쇼핑주식회사, 소련 레닌그라드 아이스발레단 초청 공연
 - 공연기간 1990.4.20.~5.13., 단원규모 105명
 - 프로그램 : 백조의 호수, 낭만의 시, 요정 등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문인교류 및 문학작품 번역, 한국문화 소개를 위해 소련 방문
 - 방문기간 1990.1.22.~2.5., 3명
- 극단자유, 소련 국립아카데미 말리극단 초청 공연
 - 공연기간 1990.5.17.~5.21., 단원규모 34명
 - 공연작품 : 벚꽃동산(체호프 작)
- 세계일보사, 소련 국립교향악단 초청공연
 - 공연 일시 1990.6.6.~6.8., 단원규모 123명
- 한국경제신문사, 모스크바 국립서커스단 초청 공연
 - 공연기간 1990.9.5.~10.16.
- 주식회사예음, 베오그라드 콩쿠르에서 1등 수상한 소련음악인 초청 공연
 - 공연 일시 1990.4.16.~18.

2. 한·소련 문화 및 언론 관계자 교류

- 주요 언론기관 기자단 소련 및 동유럽 방문
 -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등 7명
 - 방문일자 및 장소: 1990.2.11.~23., 모스크바, 알마티,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 바르샤바
 - 방문목적: 소련의 개혁정책 추진 현황 및 한·소련 관계 발전 전망 취재
- 한국관광공사, 공산권 인사 방한 초청
 - 초청 목적: 북방외교 정책을 관광측면에서 지원하고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광협력 분위기 조성
 - 초청 인사: Kononov 소련 Intourist 사장 외 1인, Zulev 불가리아 관광공사 사장 외 1인, Holub 체코 CEDOK 사장 외 1인
- 인사이드월드사, 소련의 인기 언론인이자 국제적인 작가 비타리 코로티치 방한 초청
 - 특기 사항: 고르바초프, 야코블레프, 옐친 등과 가까운 사이

세계 언론인 회의, 제11차. Moscow, 1990.4.9.-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96 / 4 / 1-110

제11차 세계 언론인 회의가 1990.4.9.~13.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제10차 세계 언론인 회의(1989.3월, 워싱턴)에 노보스티 통신사 편집장 등 참석 계기 세계언론 매체협회가 동 통신사와 접촉하여 금번 회의의 소련 개최에 합의함.

2. 회의 성격

- 통일교의 소련 진출 노력의 일환

3. 행사 내용

- 전 세계적인 통신과 협력의 증진(주제토론)
- 제3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각국 전직 정부수반 등 참가)
- 리틀엔젤스 특별공연(1990.4.12.~15.)

131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유고슬라비아 문화교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6 / 5 / 1-104

1990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임.

1. 체육부장관 유고 방문

- 김집 체육부장관은 1990.3.22.~25. 유고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3.18. 경질됨에 따라 후임인 정동성 체육부장관이 1990.5.20.~22. 유고를 방문, Drakulevski 유고연방 체육연합회장과 양국간 체육협력의정서에 서명함.
- 한·유고는 1989.12월 수교하고, 주유고대사관(1990.2월) 및 주한 유고대사관(1990.3월)이 각각 개설됨.

2. 유고 유력 언론인 방한

- 쿠르스파히치(Kemal Kurspahic) 유고 Oslobodjenje지 편집장이 외무부 초청으로 1990.10.28.~11.2. 방한함.
- 외무부 1차관보 및 구주국장 면담, 이홍구 대통령 특별보좌관 예방, 용인민속촌, 삼성전자 등 방문
- Oslobodjenje지는 1943년 창간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공화국 최대 일간지로서 발행부수는 6만 부
- Dragisa Boskovic 유고 Delo지 베오그라드 지국장은 공보처 초청으로 1990.10.28.~11.1. 방한, 이홍구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외경제정책위원장 및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대우중공업, 판문점을 방문
- Delo지는 1945년 창간된 유고, 슬로베니아공화국의 최대 일간지로서 발행 부수는 11만 부

3. 유고 현대 회화전 개최

- 안테 소리치 유고 국립중앙미술관 총관장이 정부의 초청으로 1988.6월 방한, 한·유고 교류전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1990.2.6. 양국간 문화교류전 개최 약정 체결
- 동 약정에 따라양국 수교기념 및 한국의 대북방 문화교류 활로 개척을 위해 1990.4.19.~6.2.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고 회화 100여 점을 전시

Stirn, Olivier 프랑스 관광장관 방한, 1989.9.8.-12.

생산연도 1989-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96 / 6 / 1-79

Olivier Stirn 프랑스 관광장관은 김창근 교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9.9.8.~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8.16. 주프랑스대사는 Stirn 프랑스 관광장관의 프랑스 관광안내소 개막식 참석차 1989.9월 방한을 보고
- 1989.8.2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공한으로 관광장관의 방한을 외무부에 통보, 면담주선 협조를 요청
- 1989.8.23. 외무부는 교통부, 한국관광공사에 면담주선을 요청
- 1989.8.24. 한우석 주프랑스대사는 방문중인 조경식 교통부차관과 함께 Stirn 장관을 면담
- 1989.9.1. 외무부는 김창근 교통부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 1989.9.6. 주프랑스대사는 Stirn 장관을 예방하여, 교통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전달하고 체한 일정을 설명

2. 방한 목적

- 한·프랑스 양국간 관광부문 협력증진

3. 주요 일정

- 9.9.
 - KOTFA(한국국제관광진흥전) 참관, 양산 통도사, 괴릉 시찰, 경주관광개발공사사장 주최 만찬
- 9.10.
 - 양동마을, 옥산서원 방문, 불국사 등 경주 관광지 시찰
- 9.11.
 - 교통부장관 예방 및 오찬, 한국관광공사사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 프랑스관광사무소 개소식 주재

4. 주요 성과

- 1989.10월부터 프랑스는 한국관광객에 대해 3개월 무사증 입국 허용
- 1990년부터 프랑스 관광성의 서울 사무소 개설 계획
- 한국의 문화재, 사적지에 대한 이해 제고

132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몽골 문화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6 / 7 / 1-127

1990년 중 몽골 문화 관계 주요 인사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Jantsannorov 문화부차관(1990.5.23.~6.2.)

- ‘한·몽골 친선의 밤’ 행사 참석차 방한
- 외무부장관은 동 차관 접견 시, 노태우 대통령이 1990.5.4.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었는바, 한·몽골 수교가 한·소련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1322

2. Tsevee, Horlooglin 공보방송국가위원회 위원장(장관급)(1990.8.28.~9.2.)

- KBS 사장 초청으로 방한한바, 한·몽골 수교 후 최초의 각료급 인사 방한임.
- 외무부장관은 동 위원장 접견시, 금년 3월 수교시 귀국 외무장관 방한을 초청하였음을 상기시킨바 위원장은 꼭 전달하겠다고 대답함.

3. Bayar 국영통신사 사장(몽골 국회 국무위원장 겸직)(1990.10.31.~11.6.)

- 연합통신사 사장 초청으로 방한한바, 방한 목적은 연합통신사와의 뉴스교환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등임.
- 외무부장관 면담 시, 동 사장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연합통신과 협력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계획 및 실적

생산연도 1982-1989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8 / 1-185

1982~89년 중 해외 유력언론인 초청사업 관련 내용임.

1. 방한 초청 경위

- 외무부는 재외공관 건의에 따라 해외공보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미수교국 및 비동맹 국가, 공보관 비주재지 국가 언론인을 중심으로 1982~89년 중 해외 유력언론인 초청사업 대상자를 선정함.

2. 초청사업 실적

- 1983년: 네팔, 케냐, 피지 등 11개국 언론인 13명
- 1984년: 베냉,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등 10개국 언론인 18명
- 1985년: 케냐, 페루,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언론인 7명
- 1986년: 쿠웨이트, 가나, 자메이카, 우간다 등 8개국 언론인 8명
- 1987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볼리비아, 이란 등 9개국 언론인 12명
- 1988년: 싱가포르, 가이아나, 몰타, 튀니지 등 12개국 언론인 12명
- 1989년: 파키스탄, 소련, 시리아, 말리 등 13개국 언론인 13명

3. 초청사업 성과

- 한반도 안보정세 설명 및 평화통일정책 지지 확보
- 해당국가 내 친한 여론조성
- 88 서울올림픽 등 한국 개최 국제행사 홍보

132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Mohamed ABDERRAHMANI 알제리 'El-Moudjahid'지 편집국장 방한, 1990.12.13.-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9 / 1-49

알제리 불어 일간지 El-Moudjahid 신문사의 Mohamed Abderrahmani 편집국장이 1990.12.13.~1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년도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 계획에 따라 주알제리대사관의 건의로 방한 초청

1324

2. 방한 일정

- 외무부 아중동국장, 정보문화국장 면담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주최 만찬
- 산업경제연구원, KOEX,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시찰

미얀마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0 / 1-109

1980~90년 중 미얀마(구 버마) 언론인이 방한함.

1. 미얀마 NAB(국영통신사) 편집국장 일행 방한 추진

- 주미얀마대사는 1980.5.15. 친한인사로서 홍보활동에 협력하는 국영통신사 외신 편집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동양통신 명의 초청 가능성을 동 통신사에 문의
- 외무부는 1982.5.27. 국영통신 간부 3인을 항공 및 체재비 부담조건으로 초청하기로 했음을 주미얀마대사관에 통보
- 주미얀마대사관은 U Kyaw Min 외신 편집국장 등 3명의 간부 명단을 보고
- 외무부는 1982.7.23. 국영통신 3인에 대한 김성진 연합통신 사장 명의 초청장을 송부
- 주미얀마대사관은 9.21. 편집국장 일행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기록 등으로 금년 중 여타국 방문이 어렵다는 서한을 송부해움을 보고
- 외무부는 1983.5.30. 국영통신 간부 3인의 방한 초청을 통보하도록 주미얀마대사관에 지시
- 주미얀마대사관은 NAB 측이 1983.9.9.~30. 방한 희망함을 보고
- 외무부는 상기 방한기간을 7박 8일로 통보
- 주미얀마대사관은 1984.7.11. 대통령의 방문 및 랑군사건 이후 양국관계 증진 등 감안, 1985년 중 언론인 3명의 방한 성사를 건의

2. 미얀마 외신기자클럽회장 겸 교토통신 특파원 방한(1990.4.18.~23.)

- 방한자: U Sein Win 외신기자클럽회장 겸 교토통신특파원
- 방한 경위: 정부의 외국유력언론인 초청 사업
- 주요 일정
 - 정보문화국장, 아주국장,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면담
 - 이상열 전 주미얀마대사 주최, 정보문화국장 주최, 홍보과장 주최 만찬 등
 - 판문점, 제3땅굴, 기아자동차 등 시찰

132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Katyal, K.K. 인도 'Hindu'지 New Delhi 지국장 방한, 1990.9.25.-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1 / 1-84

K.K. Katyal 인도 Hindu지 뉴델리 지국장이 1990.9.25.~30. 방한함.

1. 방한 경위

- 외무부는 1990.2.5. 1990년도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인 방한 초청을 건의하도록 주인도대사에게 지시
- 주인도대사관은 Radzan PTI 통신 부사장의 1990.9~10월경 방한을 건의
- 주인도대사관은 1990.8.16. Radzan 부사장이 유엔총회 취재관계로 금년 방한이 어려움을 감안, Katyal Hindu지 뉴델리 지국장 방한 추진을 보고
- 외무부는 동 지국장의 방한을 승인
- 주인도대사관은 1990.9.6. 동 지국장의 1990.9.25.~30. 방한 계획을 보고

2. 방한 결과

- 주요 일정
 - 정보문화국장, 아주국장, 산업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면담
 - 정보문화국장 주최 만찬 등
 - 제3땅굴 및 전망대, 중앙박물관, 비원 등 시찰

3. 성과

- Hindu지 10.15.자에 방한기 'Korea: End of Long Freeze' 게재
- Hindu지 10.16.자 사설면에 'Changing Equations with 슈퍼 Power' 게재

Naji AL-HADITHI 이라크 'Baghdad Observer'지 편집국장 방한, 1990.7.29.-8.3.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2 / 1-82

Al-Hadithi 바그다드 옵서버지 편집국장이 1990.7.29.~8.3.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이라크대사는 1989.11.21.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Al-Hadithi 바그다드 옵서버지 편집국장을 방한 초청하여 이라크 내 친한 인사로 활용할 것을 건의
- 외무부는 1990년도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사업으로 동인을 초청하기로 하고 정보 문화국장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2. 주요 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및 만찬, 아중동국장 면담, 경제기획원 관계관 면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면담, Korea Herald 방문
- 삼성전자 수원공장,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KOEX 시찰, 삼성종합건설 주최 만찬
-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용인 민속촌 및 서울 일원 문화사적지(중앙박물관, 창덕궁, 이태원) 관광

132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hmad, Zainon 말레이시아 'New Straits Times'지 편집부 국장 방한, 1990.11.18.-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3 / 1-56

Zainon Ahmad 말레이시아 New Straits Times지 편집부 국장이 1990.11.18.~23. 방한함.

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9.11.10. 한·말레이시아 간 유대강화를 위해 주재국의 최대 영문일간지인 New Straits Times지 Zainon Ahmad 편집부 국장의 방한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990년도 비동맹권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동인을 방한 초청함.
2. Zainon Ahmad 국장은 방한기간 중 한국의 통일정책, 경제발전 및 산업분야 취재를 위해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국토통일원 정책실장 및 동서문제연구소 소장을 면담하고, 판문점 및 땅굴,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및 포항제철 등을 시찰함.

Jobse, Rogier 네덜란드 국립응용과학연구소 사무총장 겸 자유기고가 방한, 1990.3.5.-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4 / 1-59

Rogier Jobse 네덜란드 국립응용과학연구소 사무총장 겸 자유기고가가 1990.3.5.~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네덜란드대사는 1990.1.4. Jobse 네덜란드 국립응용과학연구소 사무총장이 1990.3.5.~12. 서울에서 개최되는 WCC(세계교회협의회) 대회에 참가한 뒤 한국 소개글을 쓰기 위해 통일정책, 경제개발 등 관련인사에 대한 면담 및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해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2. 주요 일정

- 통일원 교육홍보실장, 경제기획원 대외조정1과장, 환경청 환경보건부장, 새마을운동 중앙회 홍보과장 등 면담
- 제3땅굴, 판문점 등 시찰

3. 성과

- 방한 후 NATO 보고서 'The World Convocation on JPIC Preparation, Course and Impact' 제출
 - 언론 기고문 'S. Kore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등 게재

132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Kanwar Iqbal 파키스탄 'Daily Aftab'지 Islamabad 지국장 방한, 1989.5.2.-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5 / 1-67

K. Iqbal 파키스탄 Daily Aftab지 이슬라마바드지국장이 1989.5.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외무부는 1989.1.21. 1989년도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계획에 따라 파키스탄 언론인 1명의 방한 초청을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지시함.

2. 초청 목적

-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선진문화 소개, 특히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제6공화국의 민주화 추진 상황을 취재하게 함으로써 동인의 친한 성향을 제고, 향후 친한 인사로 활용
- 파키스탄 국민에게 한국을 소개함으로써 한·파키스탄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심화에 기여

3. 주요 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경제기획원 대외협력관, Korea Herald 편집국장 등 면담
- 한국이슬람 중앙연합회, 판문점 및 땅굴시찰, 산업시찰

4.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과의 면담(1989.5.3.)

- 김삼훈 정보문화국장 언급요지
 - 한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자격과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파키스탄 측의 이해와 지지를 촉구
 - 기타 파키스탄 국내정세 및 양국관계 발전전망 등을 문의
- Iqbal 기자 언급요지
 -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으며, 남북 관계 현실을 실감하고 한국의 유엔 불가입 사실의 비현실성에 개탄
 - 아울러 부토 파키스탄 수상 취임 이후 양국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망

5. Iqbal 지국장은 1989.12.12. Daily Aftab지에 '한국과 한국인: 위대한 국민의 나라' 제하로 기고

- 한국민의 활력에 찬 모습 등 올림픽 직후의 한국사정 등을 상세히 기술

Aleksandrowicz, Piotr 폴란드, 'Gazeta Bankowa'지 부편집장 방한, 1989.5.21.-28.

생산연도 1989-1989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6 / 1-112

Piotr Aleksandrowicz 폴란드 경제주간지인 Gazeta Bankowa지 부편집장이 1989.5.21.~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외무부는 1989.1.23. 1989년도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폴란드 언론인을 추천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

2. 주요 일정

- 5.22. 구주국 심의관 면담 및 오찬
올림픽공원, 잠실주경기장 시찰
- 5.23. 문예진흥원장 및 한국언론회관 이사장 면담
제3땅굴 및 판문점 시찰
- 5.24. 정보문화국장 면담 및 만찬
코트라, 무역산업박람회 및 Business Korea 방문
- 5.25. 제2차관보 및 KDI 연구위원 면담
금성사 평택공장 시찰
- 5.26.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장, 해외공보관장 면담 및 오찬
KBS 방문
- 5.27. 울산 현대자동차 시찰, 경주 불국사 등 탐방

3. 주요 성과

- 발행부수 3만 부로 폴란드내 2번째의 언론사 유력언론인을 통한 한국 경제발전 등 홍보

Khelawan, Vernon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Guardian지 편집고문 방한, 1989.12.3.-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7 / 1-27

Vernon Khelawan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Guardian지 편집고문이 1989.12.3.~10.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9.11.22. 대주재국 홍보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유력 언론인 방한 초청을 건의함.

1332

2. 초청 목적

- 트리니다드토바고 최대 일간지의 원로 언론인에게 방한기회를 부여, 금후 공관 홍보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3. 주요 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미주국장, 중앙일보 관계관, KDI 관계관 면담
- 판문점, 국립박물관, 올림픽 경기장 등 시찰

4.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과의 면담(1989.12.6.)

- 정보문화국장은 북한 내부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노력, 북방정책 등을 설명
- Khelawan 고문은 북한내의 변화 가능성,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속화 등에 관심을 표명

5.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과장과의 면담(1989.12.8.)

- 국제과장은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 및 경기부양 노력 등을 설명
- Khelawan 고문은 침체된 한국경제 부양책 및 1990년대 한국경제 전망에 관해 문의

6. 주요 성과

- 동 언론인의 한국 경제발전상,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이해 증대
- 트리니다드토바고 최대 일간지를 통한 한국 관련 홍보활동

소련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8 / 1-185

1990년 중 소련 언론인들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Vladimir Koutchko Tass통신 도쿄지국장(1990.1.16.~22. 및 12.4.~11.)

- 연합통신과의 뉴스교환 계약연장 목적으로 1990.1.16.~22. 방한하여 판문점 남북체육회담 취재 및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등
 - 동 지국장은 김일성 신년사와 관련 콘크리트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남한에 있는 대전차 콘크리트 장애물의 경우 이는 북한에도 흔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언급
- 동 지국장은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계기 한국특집 취재를 위해 1990.12.4.~11. 방한하여 Pravda, Izvestia지 도쿄 특파원과 공동으로 대통령과 기자회견하고, 외무부장관을 면담함.

2. Alexandef O. Anichkin Izvestia지 기자(1990.6.25.~30.)

- 외무부 정보문화국 주관 1990년도 공산권 및 비동맹권 언론인 초청계획의 일환으로 방한함.
- 외무부 제1차관보, 구주국장, 정보문화국장, 상공부 통상국장 면담 및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등 시찰

3. Alexander Zhebin Tass통신 전 평양지국장(1990.9.12.~22.)

- Tass 통신사의 평양지국장으로 근무 중 김일성 체제 비판 문제로 북한에서 추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동인이 방한함.
- 안기부 방문, 지방 시찰, 북한실상 저술관계 협의, 외무부 동구1과장 및 정보2과장 오찬

13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Kurspahic, Kemal 유고슬라비아 'Oslobodjenje'지 편집장 방한, 1990.10.28.-1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19 / 1-86

유고슬라비아 Oslobodjenje지 Kurspahic 편집장이 1990.10.28.~1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년도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 계획에 따라 주유고대사관의 건의를 받아 Kurspahic 유고 Oslobodjenje지 편집장(외무부 초청, 10.28.~11.2.) 및 Delo지의 Boskovic 베오그라드 지국장(공보처 초청, 10.28.~11.3.)을 방한 초청

1334

2. 방한 일정

- 10.29.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구주국장, 이흥구 대통령 정치특보, 한승주 고려대 정경대학장 면담
- 10.30. 통일원 관계관, 정중문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적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달중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면담
- 10.31. 경제기획원 관계관 면담, KOEX 시찰,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 11.1. 용인민속촌
- 11.2. 박성상 산업연구원장 면담, 삼성전자 시찰

3. Kurspahic 편집장과 Boskovic 지국장은 귀국 후 각각 소속지에 한국 관계 특집기사 연재

- Kurspahic 편집장
 - '3단계 도약의 성공'(경제정책 해설), '오라, 보라, 그리고 사라'(경제현황 설명)
 - '상대적 소외계층의 문제'(사회문제 조명), '북방외교의 성과'(외교정책 평가)
 - '불필요한 해방자'(남·북한 관계 해설)
- Boskovic 지국장
 - '울타리를 경계하는 호랑이'(한·유고 경제 비교조명)
 - '야망과 성과'(한·유고 대외관계 비교 해설), '백만불짜리 의문'(남·북한 관계 평가)

외국 언론기관과의 방송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0-96 / 20 / 1-275

1989~90년 중 외국 언론기관과의 방송협력에 관한 내용임.

1. KBS(한국방송공사)와 캐나다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간 방송협력 추진

- KBS는 1989.11월 북한의 '라디오평양' 방송이 쿠바 및 불가리아에 중계소를 설치하여 유럽 및 미주지역에 대한 송출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방안으로 '라디오코리아'의 해외송출 기능 강화를 위해 캐나다 CBC와 단파송신시설 교환사용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 주캐나다대사관은 1990.11.27. 국가홍보 효과 극대화 및 한국 교민들의 조국애 함양에 도우며 된다면서 단파 송신시설 사용계약의 체결을 환영함.

2. KBS·해외 언론기관 간 방송협력협정 체결 추진

- 1990년 중 공보처는 KBS와 SLBS(시에라리온 국영방송사), 오스트리아 ORF, 스페인 국영라디오, PTTV(폴란드 국영방송사), NTV(네팔 국영방송사) 간 방송협력협정(각서) 체결에 대해 의견 조화를 한바,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회신

133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6 / 21 / 1-199

1988~90년 중 정부의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임.

1. 배경

- 외무부는 1989.6.13.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의 국력신장과 함께 한국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 한국에 대한 이해제고 및 국제 학술교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재외공관에 해외 한국학 연구, 장학생 초청, 교수 및 주요 학술인사 방한 초청, 한국 홍보책자 보급사업 등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

2. 정부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장, 해외 한국학을 지원하기로 결정

- 문교부: 해외 한국학 연구, 정부 장학생 초청, 한국관련 책자 및 자료보급
- 문공부: 주요 문화 인사 방한 초청, 한국관련 책자 및 자료보급
- 외무부: 해외 한국학 진흥활동 측면지원

3. 1988년 한국학 지원현황

- 정부지원 총액은 512,000달러이며 지역별로는 북미지역 275,000달러, 중남미지역 15,000달러, 구주지역 192,000달러, 아주지역 30,000달러
- 주요 실적으로는 세계 31개 대학에 한국학을 지원했고, 24개국에서 39명의 장학생을 방한 초청. 10개국에서 31명을 1개월 단기 연수생으로 방한 초청하고, 9개국에 한국 교수를 파견하였으며, Fulbright 사업에 따라 미국 내 한국학 교수 및 대학원생 18명을 1년 과정으로 방한 초청

태국 소재 한국학교 설립 지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96 / 22 / 1-38

1990년 중 태국 소재 한국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내용임.

1. 태국 한국학교 건립 모금

- 1986.11월 태국 교민회는 토요 한글학교가 1969.8월 개교 이래 20년 동안 독립건물이 없어 학교건물을 임차하고 있음을 감안, 한글학교 건립을 위한 태국 한국학교 신축모금위원회를 발족하고 모금한 결과 1990년 말 현재 약 4만 달러를 모금함.
- 1990.10월 말 토요 한글학교의 학생 수는 182명으로 유치부 24명, 초등부 139명, 중등부 19명임.

2. 주태국대사관 신축부지 내 한국학교 건립 추진

- 1987.9월 주태국대사관은 신축대사관 부지 내 100평을 한글학교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획득
 - 신축대사관은 1990.10.31. 완공하고 입주
- 1990.2.21. 주태국대사는 대사관 부지 내 한글학교가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신축비 지원을 건의
- 1990.3.29. 교육부는 공관장 주도하에 한글학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학교건립비 지원은 현지모금 대비 1대1 대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1991년 예산확보에 필요한 상세한 계획서 송부를 요청
 - 주태국대사관은 설립계획서를 외무부로 송부

133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미국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 문제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7 / 1 / 1-305

1985~90년 중 미국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임.

1. 미국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

- 조선일보 사설은 1985.6.14. 미국 교과서의 한국 및 한국인 왜곡 기술을 지적한 조영환 애리조나대학 교수의 논문을 보도
- KBS는 1989.3월 뉴욕 한국일보, 9월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미국 뉴욕 헌터고교의 세계사 교과서 등 미국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다고 보도
 - 미국 교과서들은 '왕건은 고구려 창건자이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된 것은 러·일 전쟁 직후이며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등 왜곡 기술

2. 왜곡 시정 추진

- 외무부는 1989.6월 미국 교과서가 중국과 일본 측의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사가 왜곡되었다고 보고 미국을 통한 한국 이미지의 국제적 확산, 한국역사에 대한 미국 젊은 세대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미국 교과서를 수집,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한국관 역사 왜곡 문제 시정을 추진함.
 - 문교부는 왜곡부분을 시정하도록 영문판 한국역사 교과서를 뉴욕 헌터고교에 전달
 - 주미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미국 교과서 출판사, 학교, 교육위원회에 시정을 촉구하고, 재미교포들도 교과서 출판사에 서신으로 시정 요청
 - 한국 역사 관련 자료를 미국 학술지에 발표 또는 미국 내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한국학 진흥 지원
 - 1982년 체결된 한·미 교육양해각서 부속사업으로 미국 사회과 교사 및 교과서 저자의 한국 방문 연수사업을 계속 추진(1982~88년 미국 교사 150여 명 방한 초청)

3. 주미 공관의 조치 사항

- 주미국대사관은 1981~84년 미국 사회과 교과서 438종을 수집하여 문교부에 송부. 동 교과서를 분석 검토한 내용을 1984.11월 신세호 박사가 미국 사회과목 협의 단체에서 발표하고 시정안을 제시
 - 미국 대학에 한국학과 개설 지원 및 한국학 전문교수 방한 초청 사업, 미국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한국 관련 도서 송부, 미국내 사회과 교사들 및 교과서 저자들의 한국방문 연수(매년 20여 명)사업 시행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한미 교육자 회의를 개최하고, 남캘리포니아지역 사회과 교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한국관 시정자료를 로스앤젤레스 교육기관에 발송함.

한·소련 학술교류. 전2권 (V.1 대학기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97 / 2 / 1-270

1990년 중 한·소련 대학 간 학술교류에 관한 내용임.

1. 연세대 초청 Anatoliy A. Logunov 모스크바대학 총장 방한(1990.2.26.~3.7.)

- 방문 목적: 1989.10월 체결된 연세대·모스크바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주요내용: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자료교환)의 이행각서 조인

2. 단국대, 소련학자 채용 및 학술대회 참가 추진

- 단국대는 러시아어 회화 교육 목적으로 소련학자를 6개월간 채용하고자 외무부에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채용에 이의가 없으나, 어학강습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교과 내용의 사전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신
- 단국대 미국·소련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1990.7.5.~7.)에 소련학자 5명 초청 관련, 승인을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회신

3. 공산권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유의사항

- 문교부는 외무부에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거, 동 훈령 공포 이후 대학에서 임의로 공산권대학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사후승인 및 새로이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고자 승인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동 훈령에 의거한 의견 문의
- 외무부는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상 여사한 협력사업은 사전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사항임을 주지시켜 사후 승인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 신청한 대학의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한·중국 학술교류 지침'상의 허가기준에 준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133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소련 학술교류. 전2권 (V.2 연구기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97 / 3 / 1-255

1990년 중 한·소련 연구기관 간 학술교류에 관한 내용임.

1. KISS(한국국제관계연구소)

- 최종기 이사장 초청 강연
 - 초청기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고급경영자 대학원
 - 방문기간: 1990.3.30.~4.10.
 - 강의내용: 한·소련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북방정책
- 한·소련 원탁회의 대표단 소련 방문
 -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IMEMO(소련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주최
 - 방문기간: 1990.12.2.~9.
 - 방문인사: 최종기 이사장 등 총 18명
 - 기대효과: 한국의 북방정책 및 통일정책 홍보 기회 기대
- 알타체제에 관한 국제회의(주제: 알타회담과 그 이후 동북아 안정과 평화)
 - 개최기간: 1990.9.3.~5.
 - 소련학자 4명 참석
- 한·소련 원탁회의
 - 개최기간 및 장소: 1990.12.2.~9., 타슈켄트

2. IRIMS(소련 국제경영과학연구소)

- 모스크바 소재 국제경영과학연구소는 주헝가리대사에게 서한을 송부하여 한국 연구기관과 협력 관계 수립 및 한국 연구기관이 동 연구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협조 요청
- 외무부는 주소련영사처장을 통해 동 연구소의 성격 및 활동내용을 파악한 후 관계 부처(경제기획원, 상공부)에 협력을 희망하는 상사나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를 파악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

3. 한국 국제퇴계학회 주최 제12회 퇴계학술회의

- 소련과학원 경제연구소가 소련 측 주관기관으로 1990.8.27.~29. 모스크바에서 개최

4. 국토통일원 주최 1990년대 동북아 새질서와 남북연합' 주제하 국제학술회의

- 개최기간 및 장소: 1990.9.5.~6., 서울
- 소련 측 학자: IMEMO의 Kunadze 일본·한국 정치문제연구부장, 미국·캐나다 연구소의 Nosov 박사

Ruiz B. Rose Marie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총장 방한, 1989.11.13.-18.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97 / 4 / 1-88

Rose Marie Ruiz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총장이 1989.11.13.~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주재국 내 친북학자 순화사업의 일환으로 Osacar Aguilar Bugarelli 코스타리카 국립대학 행정담당 부총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동인은 코스타리카내 친북세력의 중심인물인 Francisco Aguilar Bugarelli의 친제이며 통합당 내 Carazo파 정치인임.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동인의 초청과 관련, 학계초청 형식을 취할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경희 대학과 협의 후 동 대학 명의로 초청하기로 함.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Bugarelli 부총장이 선거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부총장직을 사임한바, 동 대학 Rose Marie Ruiz 사무총장을 대신 초청할 것을 건의함.
- Ruiz 사무총장은 1989.6.23. 실시된 대학 총장 선거에서 당선됨.

2. 방한 일정

- 경희대 총장 예방 및 만찬
- 정무2장관 예방 및 오찬,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 KEDE(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방문
- 고궁 참관, 올림픽경기장 시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찰,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13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Torres Moss, Alvaro Rolando 과테말라 Mariano Galvez 대학총장 방한, 1990.9.25.-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97 / 5 / 1-30

Alvaro Rolando Torres Moss 과테말라 Marian Galvez 대학 총장이 1990.9.25.~29.
방한함.

1. 방한 개요

- Moss 총장 특기사항: 종신 대법관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통령 고문
- 초청 기관: 이병익 주한과테말라 명예영사(주식회사 동방개발 회장)
- 방문 목적: 한·과테말라대학 간 친선교류
- 초청 효과: 한·과테말라 간 문화학술교류 및 우호증진

2. 주요 방한일정

- 문교부장관 예방, 외무부 미주국장 예방 및 오찬
- 대전전문대학 방문 방문, 자매결연 및 특강
- 수원 삼성전자 방문

Fuad HASSAN 인도네시아 문교부장관 방한, 1990.6.25.-2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97 / 6 / 1-35

Fuad Hassan 인도네시아 문교부장관이 1990.6.25.~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문교부는 1989.2.28. 외무부에 Fuad Hassan 인도네시아 문교부장관을 초청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 전달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89.3.7.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문교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9.4.26. 인도네시아 문교부장관 보좌관에 의하면 Hassan 장관 방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얻었다고 보고함.

2. 방한 준비

- 경남대학교는 1989.6.1. 외무부에 Hassan 장관 방한 시 명예박사 학위수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 송부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7.29.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동 자료 송부를 지시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90.1.29. Hassan 장관을 예방하여 방한시기에 관해 협의한바, 동 장관은 1990.6월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Hassan 장관이 6.25.~28. 방한을 희망함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3. 방한 일정

-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예방
-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방문
-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방문(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134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자메이카 문교부장관 방한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97 / 7 / 1-48

1985~90년 중 자메이카 문교부장관이 방한함.

1. Gilmour Mavis 문교부장관(1985.11.29.~12.1.)

- Mavis 장관은 1985.11.18. 주자메이카대사 면담시 일본에서 개최되는 UNDP(유엔개발계획) 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외무부는 동인이 자메이카 유력 각료임을 감안하여 체재비를 부담하고 문교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
- 문교부장관 예방, 올림픽종합경기장 및 건국대학교 방문

1344

2. Carlyle Dunkley 문교부장관(1990.3.15.~17.)

- Dunkley 장관은 1990.1.18. 주자메이카대사 면담 시 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주관 교육회의 참석 계기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외무부는 동인이 자메이카 유력 인사임을 감안하여 체재비를 부담하고 문교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
- 문교부장관 및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수원대학교 방문

Brucan, Silviu 루마니아 교수 방한, 1990.6.9.-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7 / 8 / 1-52

Silviu Brucan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학 교수가 1990.6.9.~16. 방한함.

1. 방한 인사 및 경위

- Brucanu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반파시즘 지하투쟁에 참가, 1956~59년 주미국 루마니아 대사를 역임했고 1989년 구소련의 해체기에 루마니아 공산정권을 붕괴시킨 구국전선 지도자로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
- 주일본 루마니아대사는 1990.4.13. 주일본대사 면담 시 Brucanu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학 교수가 울산대학교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에 한국 학자, 정치인의 면담 주선을 요청함. 주일본대사는 미수교국인 루마니아와 교류 증진을 위해 동 교수의 면담 주선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이를 수락
 - 울산대는 개교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체제 개혁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1990.6.5.~13.)를 개최

2. 방한 일정

-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 예방
-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및 럭키금성사 방문
- 한국 언론사와 기자회견

3. 방한 결과

- Brucanu 교수는 한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반김일성 조직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반체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Oxnam, Robert B. 미국 Asia Society 회장 방한

생산연도 1985-1988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97 / 9 / 1-118

1985~88년 중 Robert B. Oxinam 미국 Asia Society 회장이 방한함.

1. 제1차 방한(1986.2.1.~5.)

- 방한 목적
 - Asia Society 사업계획 설명 및 지원요청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예방
 -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미국 경제협의회 이사장 및 기업인 방문

2. 제2차 방한(1986.11.11.~16.)

- 방한 목적
 - Asia Society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조성운동에 한국 민간기업 참가 및 정부의 지원요청
- 수행원: Marshall Bouton 동 협회 공보부장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문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면담
 - 해외협력위원회, 코트라, 한·미국 경제협의회, 전경련 회관 방문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대우그룹 회장, 청와대 경제수석 면담

3. 제3차 방한(1988.3.22.~27.)

- 방한 목적
 - Asia Society의 한국 관련 사업 및 기금모금 문제 협의
- 주요 일정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제처장 예방
 - 해외공보관장 주최 오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 일해연구소 소장, 한·미국 협회 회장 면담

김영진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교수 방한

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97 / 10 / 1-81

1986~88년 중 김영진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교수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6년도 방한(1986.6.29.~7.3.)

- 방한 경위
 - 외무부는 김영진 교수의 방북(1986.5.2.~9.)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 초청
 - 동 교수는 미 조지워싱턴대학 중국·소련 문제 연구소장대리로서, 방북 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김충일 외교부 제1부부장 및 당 고위간부 등을 접촉
- 주요 방한 일정
 - 외무부차관 및 외교안보연구원장 면담(한·미국 안보 학술회의 관련 협의 및 교수들과 간담회), 허문도 대통령비서실 정무1수석비서관 예방, 외무부 세미나 참석
- 김영진 교수가 외무부에서 설명한 방북 시 북한 고위인사 면담 요지
 -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 측 태도: 작년에 비해 남북대화에 대한 태도 경직화, 남북대화 재개 용의 있으나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 있음을 강조(팀스피리트 훈련 규모 축소 및 기간 단축 등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남북한 및 4강 간 무역사무소 등 설치 문제: 북한 측은 무역사무소나 연락사무소 교차 설치에 대한 입장 타진에 대해 검토할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본다는 반응. 그러나 북한 측의 고려 기준은 한반도 통일에의 기여 가능여부임을 강조, 교차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면 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2. 1987년도 방한(1987.3.6.~13.)

- 김영진 교수는 외무부차관 앞 서한을 통해 1987.3.6.~13.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한 중 외무부장관 및 차관 면담을 희망함.

3. 1988년도 방한(1988.11.10.~14.)

- 주미국대사관은 김영진 교수가 1988.11.10.~14.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한 시 외무부차관 및 미주국장과의 면담 주선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134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Bouton, Marshall M. 미국 Asia Society 부회장 방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97 / 11 / 1-42

1988~90년 중 미국 Asia Society 회장 및 부회장이 방한함.

1. Asia Society 개요

- Asia Society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해증진을 위해 1956년 J.D. Rockefeller 3세의 재안으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재단(본부는 뉴욕)이며, 재단 자금, 아시아 각국 및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
 - 한국기업은 1979~89년간 협회 회관 건립을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국경제인연합회가 1988년도부터 미국여론 형성증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개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약 12만 달러를 지원

2. Asia Society 부회장 방한

- Marshall M. Bouton 부회장은 2차례 방한(1989.3.2.~7. 및 1990.10.30.~11.4.) 계기에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 아래 사항 협조 요청
 - Asia Society 주최 아태경제 전망에 관한 회의(1989.11월)에 노태우 대통령을 연설자로 초청,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1989년 유엔총회 참석 시 Asia Society 연설
 - 한국 미술 5000년 전시회 개최, 1990년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주요 강대국 관계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미국 주요 방송국에 한국 특별 프로그램 방영 등 Asia Society의 199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예산지원 요청
- 외무부 미주국장은 Asia Society의 사업이 한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요청 건에 대한 협조를 약속

3. Asia Society 회장 방한

- John C. Whitehead 회장은 1990.4.8.~11. 방한하여 최호중 외무부장관 예방 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등 Asia Society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최호중 장관은 남북한 정세, 북방정책 등을 설명

Dalai Lama 중국 티베트 종교지도자 방한 초청문제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7 / 12 / 1-19

1983~90년 중 Dalai Lama 티베트 종교지도자의 방한 초청문제 관련 내용임.

1. 대한불교 태고종의 달라이 라마 방한 초청

- 1983.7.15. 대한불교 태고종은 1983.11.1.~10. 개최 예정인 '호국안보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에 중국(구 중공)의 티베트 침공으로 인도에 망명중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를 방한 초청하고자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달라이 라마는 1959년 티베트 독립운동이 실패하자 인도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87년 이래 각국을 순회하면서 반중국 활동을 전개하였고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 외무부는 7.23. 한국 정부가 6·23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 초청은 한국의 대공산권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부처인 문공부를 통해 동인을 초청하지 않도록 태고종에 설명하도록 조치함.

2. 불교방송의 달라이 라마 방한 초청

- 불교방송은 1990.1.18. 불교방송 개국기념 학술 강연회(4.30.)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고자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2.4. 동인의 순수한 종교행사 참석을 위한 방한에는 이의가 없으나 티베트 독립문제로 중국·티베트 간 분쟁 중임을 감안, 동인 방한 시 티베트 독립문제나 중국 비난발언은 삼가도록 요청함.

134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Carrucho, Peter 필리핀 관광장관 방한, 1989.9.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97 / 13 / 1-11

Peter Carrucho 필리핀 관광장관이 1989.9.8.~9. 방한함.

1.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1989.8.30.자 공한을 통해 Peter Carrucho 필리핀 관광장관이 제4회 KOTFA(한국관광진흥전) 참관을 위해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한기간 중 김창근 교통부장관의 면담 주선을 외무부에 요청함.
2. Peter Carrucho 장관은 1989.9.8. 김창근 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관광분야 친선사절단 교환, 김 장관의 필리핀 방문 추진 등 양국간 관광 진흥방안에 대해 협의함.

1990년도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대이라크 참가 제재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8 / 4 / 1-117

1990년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 대이라크 참가 제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사우디 등 GCC(걸프협력기구) 회원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라크의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출전금지를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요구하기로 결의
- 메타 OCA 사무총장은 GCC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의 참가 허용여부 찬반을 묻는 전문(서면질의서)을 38개 회원국에 발송하고 각국의 입장을 전문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하진량 IOC 부위원장 겸 중국 NOC 위원장은 한국을 비롯한 OCA 유력 회원국들에게 이라크의 대회 참가 배제는 OCA 헌장 제3조의 위반이며, 전문통보에 의한 표결방식은 동 헌장 제20조의 위반으로 스포츠와 정치문제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송부함.
- 주사우디대사는 Al-Saad 사우디 청년복지청차관 겸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이 베이징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문제에 관한 GCC 및 OCA 움직임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문의하였다고 보고함.

2. 한국 측 입장

- 입장: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아시아인의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함. 회원국의 대회 참가 불허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IOC와 OCA 헌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 조치사항: 메타 사무총장의 우편 제안에 대한 회답 보류, 사우디 청년복지청차관이 방한하여 체육부장관 등 면담 시 한국입장을 피력함.

3. OCA 집행위원회, 이라크의 베이징대회 출전금지 권고안 채택

- OCA는 1990.9.8.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라크의 베이징대회 출전금지 및 OCA 회원국 자격 잠정 중지를 권고하고, OCA 특별총회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요청함.
 - 중국대표는 “이라크의 OCA 참여는 올림픽운동의 역할수행을 위한 정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고 발언, 입장변화를 시사

4. 한국 측 최종 입장

- 외무부는 1990.9.17. 체육부장관에게 9.20.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OCA 총회에서 회원국 표 대결 시 이라크 참가를 불허하는데 찬성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훈령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13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정동성 체육부장관 동구 및 모로코 순방, 1990.5.19.-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8 / 5 / 1-64

정동성 체육부장관이 1990.5.19.~30. 동유럽 및 모로코를 순방함.

1. 방문목적

- 동유럽 및 아프리카 스포츠 강국과의 정부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체육·청소년분야 협력증진 방안 협의

2. 방문 국가

- 유고(5.20.~21.), 불가리아(5.22.~23.), 체코(5.24. 경유국), 루마니아(5.25.), 모로코(5.28.)

3. 주요 일정

- 5.20. 한·유고 체육장관회의, 드라쿨레프스키 유고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 5.21. 부코티치 유고 정무장관 면담, 시모비치 유고 의회분과위원장 면담, 한·유고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기자회견
- 5.22. 한·불가리아 체육장관회의, 코세프 각료회의 부의장 겸 문교부장관 면담
- 5.23. 루카노프 불가리아 총리 예방, 한·불가리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기자회견, 불가리아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 5.24. 필니 체코 체육부장관 주최 오찬
- 5.25. 한·루마니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기자회견, 루마니아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 5.28. 한·모로코 체육부장관 회의, 모로코 청소년체육부장관 주최 오찬, 한·모로코 청소년 교류협정 체결

4. 방문 성과

-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전통적 스포츠 강국들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유럽 스포츠 강국들과의 협정 체결을 완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동 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대회 참가, 코치 교환, 전지훈련 실시, 각종 스포츠과학 정보교환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스포츠가 모든 종목에 걸쳐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불가리아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방한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8 / 6 / 1-123

1987~88년 중 불가리아 NOC(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함.

1. 불가리아 대표단 방한(1987.11.6.~9.)

- 단장: Ivan Slavkov IOC 위원 겸 NOC 위원장
- 방한 목적: 88 서울올림픽 관련 시설 시찰 등
- 주요 방한일정: 박세직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예방, 김운용 부위원장 면담

2. 불가리아 대표단 방한(1988.5.9.~16.)

- 단장: Stoil Sotirov NOC 집행위원 겸 체육성 차관
- 방한 목적: 88 서울올림픽 참가관련 업무협의 및 시설 참관
- 주요 방한일정: 박세직 SLOOC 위원장 예방, 김운용 부위원장 면담

3. 불가리아 선수단을 위한 전세기 입국 허가

- 주일본대사는 1988.8.15. 불가리아 선수단을 위한 전세 비행기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주한 불가리아대사관(도쿄 상주)의 구상서를 보고함.
- 주일본대사관은 1988.8.22.자 공한으로 불가리아 측에 동 전세기 입국허가를 통보함.

4. 불가리아 attache 한국 파견

- 주일본대사는 1988.8.31.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측에서 올림픽기간 중 Popova 불가리아 체육부 국제국장을 올림픽 attache로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한 외교관 신분인정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9.1. 불가리아 측의 외교문서를 통한 정식요청 사실을 감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양국 관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리아 측의 요청을 수락하도록 통보함.

135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소련 학생교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98 / 7 / 1-132

1988~90년 중 한·소련 학생교류에 관한 내용임.

1. 대공산권 학생 및 학술교류 추진계획에 대한 외무부 의견

- 일반 학술·학자교류와 학생교류를 구분하여 학술·학자교류의 경우 종래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의 없음.
- 학생교류는 한국과의 관계 현황 등 대상국별 여건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함.
 - 우선 공식관계가 수립되고 한국 상주대표부가 개설된 헝가리부터 시험적으로 시행
 - 여타 국가의 경우 공식관계 부재, 신변안전문제 등 정부레벨의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음을 감안, 향후 관계개선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대처
- 각종 대공산권 교류는 북방외교의 목적과 추진방향 등 큰 테두리를 항시 염두에 두고 그 일부로서 추진되어야 하는바, 외교적 측면의 고려를 위해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외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2. 외무부는 상기 원칙에 따라 대공산권 여행허가 요청 시 의견 제시

- 한국국제청년학생교류회 주관 대학생 및 기자단의 헝가리 및 소련 여행(1989.2.5.~26.)
- 학술진흥재단의 동계방학중 대학생 및 교수 해외연수 등

3. 인도 국방대학원 한국 연수생 소련 방문

- 주인도대사는 1989.5.12. 주재국 NDC(국방대학원)에 연수 중인 김병갑 대령이 4월 동 대학원 연수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 현장학습(Field Trip) 5개 코스 중 소련 방문 코스를 선택하였다면서 동인의 소련 방문 허가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
- 국방부도 5.23. 외무부에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5.24. 동인의 소련 방문에 이의 없음을 통보

아시아·태평양 어린이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98 / 8 / 1-185

1989~90년 중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2회 아시아태평양 어린이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회 회의(1989.7.28.~8.2.)

- 사업목적
 -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상호이해 촉진 및 국제 감각이 넘치는 청소년 육성
- 사업목표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30개국으로부터 1,000명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일본 전국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상호교류를 도모함.
- 행사일정
 - 7.28. 대면식, 7.30. 교류행사, 7.31. 기념식
- 한국 측 참석자
 - 어린이 100명, 인솔자 10명

2. 아시아태평양 어린이 회의 집행위원회는 1989.11.15.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 제1회 아시아태평양 어린이 회의에 한국의 참가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면서 제2회 회의(1990.7.26.~7.31.) 참가를 초청해 옴.

- 제2회 회의는 제1회 회의보다 3분의1로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할 예정인바, 한국 측에 어린이 8명, 인솔자 2명을 초청함.
- 문교부는 12.21. 제2회 아시아태평양 어린이 회의에 참석할 후보자 명단을 외무부에 송부함.

3.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90.6.21. 제2회 회의 참가일정 및 참고사항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외무부는 6.29. 관계 부처에 동 자료를 송부하면서 보험 관계 서류의 회신을 요청함.

135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소련 체육교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98 / 10 / 1-68

1989~90년 중 한·소련 체육교류에 관한 내용임.

1. 한·소련 체육교류

- 소련동포 태권도 연수단 방한 추진
 - 1989.12월 중, 17명 초청
- 한국권투위원회의 한·소련 복싱 교류와 프로모터 및 매니저 계약을 위한 인사 파견
 - 1989.12.29.~90.1.9. 2명 파견
- 재소련 동포 3명 태권도 연수를 위한 방한 추진
 - 태권도 연수 및 심판자격 획득, 한국 태권도 사범 3명 방소 초청 협의
- 소련 민스크에서 개최되는 1990 바이애슬론 세계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 파견
 - 1990.1.17.~2.28. 9명 파견
- 소련국립과학원 초청으로 김운용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소련 방문
 - 1990.2.17.~22. 스포츠과학세미나 참가 및 소련 주요 체육인사 면담
- 소련 극동국제무도대회에 선수단 파견
 - 1990.2.23.~3.3. 6명 파견
- 대한역도연맹 소련에서 전지훈련
 - 1990.2.28.~3.22. 14명(임원 4, 선수 10) 파견
- 대한산악연맹의 소련 산악인 초청
 - 1990.3.15.~21. 3명 초청
-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소련 초청 승마대회에 선수단 및 조사연구단 파견
 - 선수단: 1990.4.11.~22. 조사연구단: 1990.4.11.~30.
- 대한체조협회의 합동 훈련 및 한·소련 친선 체조대회 개최(1990.6.16.~17.) 추진
-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축구팀 초청
 - 1990.5.15.~21. 25명 초청

2. 소련 체육부장관 방한 추진

- 체육부장관 초청으로 한·소련 체육협정 의정서 체결을 위해 Rusak 소련 체육부장관 일행의 방한(1990.9.30.~10.5.)을 추진

한·잠비아 체육협력

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98 / 11 / 1-104

1986~88년 중 한·잠비아 간의 체육협력 관련 사항임.

1. 주케냐대사는 1986.4.21.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잠비아 축구대표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6.4.23. 1987년도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잠비아 대표팀의 초청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체육부에 요청함.
3. 체육부는 1986.5.8. 1986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일정으로 초청은 불가능하나 1987년도 대통령배 축구대회 초청은 검토하겠다고 회신함.
4. 외무부는 1988.2.16. 주케냐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8년도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잠비아 대표팀을 초청하여 주기를 체육부에 요청함.
5. 체육부는 1988.3.11. 1988.6월 개최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잠비아 축구대표팀의 참가를 초청하는 공문을 잠비아 축구협회에 발송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6. Phiri 잠비아 축구협회장은 1988.3.17. 제17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초청을 수락한다고 대한축구협회에 회신함.
7. 제17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1988.6.16.~28.)에 15개국 16개팀(한국A, B팀, 잠비아 등)이 참가함.
 - 잠비아는 기자 2명을 포함한 선수단 27명이 방한함.
 - 잠비아 축구팀에 대해서는 여비, 축구용품(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제공, 추가 경기(2회 주선), 녹화필름 제공 등을 지원함.

13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부의 사회단체 변경 등록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98 / 12 / 1-51

1988~90년 중 국제여성총연맹(구 국제부인회총연맹) 한국본회 관련 사항임.

1. 국제부인회총연맹 한국본부는 1988.3.21. 제10차 정기총회(1988.2.24.)를 개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함.

- 변경내용

- 명칭: 종전의 '국제총연맹부인회 한국본부'를 '국제부인회총연맹 한국본부'로 변경
- 사업: 종전의 '자선바자 개최 등 봉사사업'을 '자선바자 개최, 불우이웃돕기 봉사사업'으로 변경
- 부회장: 종전의 '부회장 2인'을 '부회장 3인 이상 5인'으로 변경

2. 외무부는 1988.4.6. 사회단체 명칭 및 정관을 변경등록하고 변경된 사회단체등록증을 발급함을 국제부인회총연맹 한국본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9.2.2. 단체의 명칭변경 및 소재지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사회단체 등록증을 발급함을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에 통보함.

- 명칭변경: 국제부인회총연맹 한국본부 →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4. 외무부는 1990.3.6.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사회단체등록증 발급을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에 통보함.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98 / 13 / 1-134

1983~90년 중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관련 사항임.

1. 외무부장관의 1983년도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연설 요지

-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위치
- 한국에 대한 아프리카의 중요성
 -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수적 우세
 - 북한의 반한 선전활동 주무대
 - 경제진출 대상으로서의 중요성
- 시대별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유형
- 1980년대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남남협력, 북한제압 외교, 아프리카와의 인도적 유대 조성

2. 1985년도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정기총회(1985.12.6.)

- 총회 내용
 - 1985년도 활동사항과 1986년도 사업계획보고
 - 감사보고, 감사패 수여
 - 총재 인사말씀, 외무부대표 축사
 - 아프리카의 실정과 진출 사례
- 1985년도 주요 활동사항
 - 아프리카 정세 발행
 - 정기총회, 이사회 개최
 -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 한·아프리카 경제 관계 세미나 개최
 - 아프리카 난민구호운동
 -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전국가원수 등 방한 초청

3. 1986년도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정기총회(1986.12.9.)

- 총회 내용
 - 1986년도 활동사항과 1987년도 사업계획보고
 - 감사보고, 감사패 수여
 - 총재 인사말씀, 외무부대표 축사
 - 아프리카의 실정 보고회

135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4. 1989년도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정기총회(1989.12.6.)

- 총회 내용
 - 1989년도 활동사항과 1990년도 사업계획보고
 - 감사보고, 감사패 수여
 - 총재 인사말씀, 외무부대표 축사
 - 아프리카 진출 투자관계 및 체험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비 전문인력 보강 검토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98 / 14 / 1-111

1986년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 전문인력 보강 및 협상대책 관련 내용임.

1. UR 대비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

- 1986.9월 우루과이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공식개시 선언으로 본격적 협상에 돌입
 - 2000년대의 신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 참여 필요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규범 형성에 한국입장 적극 반영 필요
- 최소 4년의 협상기간, 협상대상국 및 협상분야 확대에 따라 공식협상기구회의, 비공식 그룹회의 및 막후 교섭회의 참석은 물론 협상분야별 입장 및 전략수립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

2. UR 협상 인력보강 추진

-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 건의
 - 외무부 및 관계부처 UR 담당부서
 - 주제네바대표부의 UR 협상대책반(관계부처 주재관 파견 포함)
 - 관계 부처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치
- 주제네바대표부 통상전문가 채용 추진
 - 무역분쟁 대응, UR 협상 정세 파악, 무역협상 대책 수립에 활용
 - John Kraus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국장 채용 추진
- 무역협상 전문가 양성을 위해 GATT 연수 계속파견 추진

13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중국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98 / 15 / 1-238

1990년 중 중국의 경제 동향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합작경영 기업법 개정(1990.1.4., 주일본대사 보고)

- 합작기간은 최대 30년이었으나, 무기한으로 개정
- 합작비율에 관계없이 중국인만이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으나, 출자자 쌍방의 협의 또는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
- ※ 1991.3월 개최 전인대에서 정식 승인 예정

2. 보수노선 우위(1990.11.2., 주홍콩총영사 보고)

- 주홍콩총영사관 영사가 접촉한 경제보도사 주필은 중국의 기본구상(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경제조정 강화 및 광둥성, 푸젠성에서 상하이로의 개혁방향 변경 등)은 불변인바, 국가계획 공작회의 논의에 따라 중앙통제 및 개혁방향 추진범위 등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보수노선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함.

3. 중국 인민폐 평가절하

- 경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1990.11.17.부터 9.57%의 인민폐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대미 환율 1\$=4.73인민폐를 1\$=5.187인민페로 조정함.

4. 전국경제회의 개최 예상(1990.11.23., 주홍콩총영사 보고)

- 전국경제회의가 1990.11.25.~12.1.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제8차 5개년 경제 계획(8.5. 계획)과 향후 10년간의 경제계획에 관해 토의할 예정임.

5. 미국·중국 경제 관계 회복(1990.12.18., 주홍콩총영사 보고)

-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고 있으나, 1990.10월 EC(구주공동체)의 대중국 제재 해제 및 11월 전기침 워싱턴 방문을 전후하여 미국·중국 간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음.
- 천안문사태 이후 중단되어 온 제6차 미국·중국 경제무역위원회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됨.

EC(구주공동체)의 통신시장 개방 동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98 / 16 / 1-152

1989~90년 중 EC(구주공동체)의 통신시장 개방 관련 동향임.

1. 통신시장 개방 관련 EC 동향

- 1989.12.7. EC 통신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서비스, ONP(기술수준)에 대해 합의
 - 영국, 독일, 덴마크는 개방 지지, 프랑스, 벨기에, 지중해 연안국은 개방 반대
- 통신서비스 개방 지침
 - 합의된 New Services Directive는 1990.4.1. 발효 예정(발효와 동시에 미국기업들도 E-mail 등 VAS 제공 가능)
- ONP(Open Network Provision) 지침
 - 데이터 전송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접속하고 사용하는 기술수준에 관한 ONP 지침 합의
 - EC 회원국 내에서 사기업이 독점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망을 접속하는데 필요한 규정
 - 데이터 전송망 접속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원칙 및 ONP 지침 적용을 위한 회원국의 후속절차 규정

2. EC 집행위는 1990.2.26. 미국이 EC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재지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함.

- EC 측은 1986년부터 통신문제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협력을 위해 미국과 정보교환을 하였고 1989년에는 EC 통신시장 개방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UR(우루과이라운드) 통신 협상에 계속 참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EC를 계속 우선협상대상국에 방치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136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일본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98 / 17 / 1-152

1989~90년 중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경제 동향 보고임.

1. 일본 자민당은 1989.3.8. 일본의 대외경협에 관한 Asia Forum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대아시아 경협정책을 설명함.

- 참석자: 아세안, 중국 등 주변 국가 대표, 자민당 관계의원, 일본의 주요상사 직원 등 50명
 - 한국은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참석
- 한국대표 발언요지
 - 직접 원조보다 개도국 제품 수입 확대, 기술이전 등의 중요성 강조
 - 제품 수입시장으로서의 종래 미국역할 승계 요망

2. 주일본대사관은 1989.8월 새로 발족한 일본 가이후(海部) 신내각의 경제·통상정책 및 대한민국 영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신내각의 당면 통상정책 과제 및 정책방향
 - 소비세 제도 재검토: 동 제도는 존치하되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대응 예상
 - 농업정책: 쌀 수입 억제 등 농산물 개방정책 후퇴로 농산물 수출국의 반발 초래 예상
- 대외 통상정책
 - 일본·미국 간 무역마찰 해소노력 지속
 - UR(우루과이라운드) 입장 정립
 -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개별문제에 대해서는 실리에 입각한 냉철한 대응 예상
- 대한민국 영향
 - 쌍무관계보다 다자차원(아태 협력체, UR 등)에서의 협력 필요성 강조 예상

3. 주일본대사관은 1990.4.10. 일본의 엔화, 주가, 채권가 하락 동향 자료를 송부함.

4. 일본 대장성은 1990.10월 일본의 국제수지 상황을 발표하면서 8월 이후 경상흑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발표함.

- 감소이유는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 1990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정부 예상을 대폭 밑돌 것으로 전망함.

리비아 경제 정세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98 / 18 / 1-34

1986~87년 중 주리비아대사관의 리비아 경제 정세 동향 보고임.

1. 유가하락 관련 보고(1986.2.22.)

- 리비아는 일일 100만 배럴을 약간 상회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유 판매수입이 감소하여 외화보유고(6~7억 달러 추정)가 격감함.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외화사용 월별 사용한도액 책정, 외국근로자 송금액 제한, 무기 및 상품 구매대금이나 건설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원유로 지불함.
- 대우, 삼성, 동아, 현대, 한양 등 6개 업체가 진출하여 약 2만 2천 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총 공사수주액 110억 달러, 시공 잔액은 대수로 공사를 포함하여 약 48억 달러를 갖고 있는바, 원유하락에 따라 공사발주량 감소, 공사대금의 지불요건 악화 등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2. 화폐 평가절하 관련 보고(1986.3.20.)

- 1986.3.18. 대외환율을 1달러당 0.29600디나르에서 0.30972디나르로 약 4.64% 평가절하를 단행함.
- 이는 원유판매 수입감소에 따른 1986년도 예산 및 공사대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됨.

3. 서유럽지역 국가 및 일본상품 수입금지 관련 보고(1986.5.21.)

- 가다피 지도자는 1986.5.12. 알 베이다에서 개최된 지역인민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에서 개최된 서방선진 7개국 회의에서 리비아에게 보인 적대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서유럽 및 일본 상품수입 금지를 촉구하면서 국민의 자급자족체제 확립을 강조함.

4. 대시리아 제재조치에 경고 관련 보고(1986.11.11.)

- 리비아 외무성은 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들이 1986.11.10. 런던에서 대시리아 공동제재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리비아 주재 EC 회원국 대사들을 초치, 시리아에 대한 적대행위는 리비아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

136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중남미 경제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99 / 1 / 1-54

1989~90년 중 중남미 국가 경제 정세 동향임.

1. 아르헨티나 경제차관보 방한(1989.11.21.~24.)

- 방한 목적
 - Sanchez Arneo 외무부 양자경제차관보가 투자유치, 육류수출 등 경제협력 문제 협의

2. 제27회 칠레 Santiago 박람회 개최(1989.10.25.~11.5.)

- 32개국 참가
- 한국에서는 8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한바, Pinochet 칠레 대통령 부부 등 고위인사 다수가 한 국관 참관

3. 도미니카공화국 Lome협정 가입

- 1989.10.30.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Lome 협정 각료회의에서 선탕 의정서(Protocolodel Azucar) 적용을 배제하는 포기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제4차 Lome협정에 가입 승인됨.

4. 과테말라 자유무역지대법 통과

- 수출촉진, 고용증대 및 외화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법안이 1989.11.14. 국회에서 통과됨.
- 주요 내용
 - 자유무역지대는 공영 또는 민영으로 구분, 어느 지역에서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동 무역지대 입주 희망업체는 설치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유무역지대법이 지난 6.19. 국회에서 통과된 수출진흥법과 크게 다른 점은 주재국 수출입 관행상 어려움이 많은 외환관리규정과 물품 통관규정을 두고 있는 점임.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전3권 (V.1 1988-89.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99 / 2 / 1-301

1988~89.8월 중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임.

1. 한·중국 경제관계 민간협의회 설립 계획

- 외무부는 1988.7월 전경련으로부터 한·중국 경제관계 민간협의회 설립 계획에 관해 통보받은 후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 부처에 동 계획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목적 및 기능: 한·중국 민간경제협력의 창구역할, 중국 진출 관련 민간 경제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한·중국 경제교류 촉진 사업, 연구·조사 및 정보서비스 사업

2. 한·중국 경제관계 민간협의회 설치를 위한 대표단 방중

- 1989.7.19.~23. 황인정 IPECK(국제민간경제협력위) 부회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과장 등이 중국을 방문하여 CCPIT(중국무역촉진위원회)를 접촉하여 CCPIT와 IPECK를 중심으로 한·중국 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한국 경제계 대표단이 9.5. 방중하여 양국 경제계 대표단 간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하순 중국 경제계 대표단이 방한하여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창립함.

3. 관계 부처 대책회의 개최

- 1989.8.1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하에 외무부, 상공부 등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중국 민간경제협력위 설치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추후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4. 관계 부처 장관회의 개최

- 1989.8.18. 개최된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1989.9.5.~12. 사절단 방중을 추진하되 정부사절단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대통령 방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측 반응을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탐문한 결과에 따라 사절단 규모, 구성을 신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주미국대사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특히 대통령의 10월 방미 행사를 앞두고 동 대표단의 파견이 미국 의회 및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들어 금번 경제대표단의 중국 파견을 대통령 방미 이후로 연기함이 좋겠다고 보고함.

136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90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전3권 (V.2 1989.9-1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99 / 3 / 1-245

1989.9~12월 중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임.

1. IPECK(국제민간경제협력위) 경제대표단 선발팀 방중

- IPECK 경제대표단이 1989.8.23.~29. 중국을 방문하여 CCPIT(중국무역촉진위원회) 실무진들과 협의한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와 주요 인사 방문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중국 측은 1989.9.9. 한국재계 방문단의 방중 연기를 제안함.

1368

2. 북방경제협력 관련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1989.11.10.)

- 참석자
 - 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관
- 경제기획원 제의내용
 - IPECK와 코트라 기능 분담
 - IPECK의 인력보강 및 보조금 지원 확대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경제기획원이 각부처의 입장을 참고하여 경제기획원 측 안을 작성하여 차기 북방경제정책실무 위에 상정하기로 함.

3.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1989.12.22.)

- 경제기획원은 제13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아래 토의자료를 배포함.
 - 국가별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원
 - 중국과도 소련방식에 의한 관계개선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창구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대화창구로 활용
- 이와 관련, 외무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1989.12.30. 예정) 참석에 대비하여 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립함.
 - 정부간 합의 시에만 정부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기본원칙 견지하에 정부간 합의 이전 민간 기관의 정부기능 대행안은 반대함.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전3권 (V.3 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99 / 4 / 1-254

1990년 중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임.

1. 경제기획원은 1989.12.30. 개최된 IPECK(국제민간경제협력위) 기능정상화 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를 통보함.

-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는 수교여부에 관계없이 IPECK에 설치하고 IPECK가 사무기능을 수행함.
 - IPECK에 기 설치된 한·소련 협의회도 이 원칙에 따름.
 - 다만, 이미 대한상공회의소가 설치된 헝가리의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중국 민간창구설치 문제는 중국 측의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함.

2. 제14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1990.1.11.)

- 경제기획원차관 주재하에 외무부 제2차관보,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13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바, 외무부는 북방정책의 핵심은 공식관계 수립이며, 현재는 공식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피력함.
- 부처간 합의를 보지 못한바,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실무작업을 통해 합의를 구하기로 함.

3. 중국 측, 무역대표단 파견 요청

- 중국 CCPIT(중국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1990.5.27.자 이한빈 IPECK 회장 앞 서한을 통해 무역대표단 파견을 요청함.
- 6.23. 경제기획원 제4협력관 주재하에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7월 중순 소수 IPECK 실무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무역대표단 파견시기, 규모 및 주요협의 의제 등을 사전협의하고, 이한빈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방중은 8월말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함.

4. 민간경제대표단 방중

- 이한빈 IPECK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경제대표단(21명 및 수행원 9명, 김복동 IPECK 고문 포함)이 1990.8.26.~30. 방중하여 베이징 및 천진에서 한·중국 민간경제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공장시찰 등 일정을 가짐.
- 박일파 당 중앙고문위 부주석 겸 중국 CCPIT 명예회장, 오의 베이징 CCPIT 명예회장 겸 베이징시 부시장, 마홍 국무원 경제기술사회개발중심 총간사 등을 면담함.
- 중국 정계원으로 중 1인인 박일파와 여타 고위인사를 면담함으로써 한·중국 경제사상 최초의 공식·공개적 회합이자 한·중국 경제교류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

EC(구주공동체) 통합(경제) 대응방안. 전2권 (V.1 1989.11-90.3)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99 / 5 / 1-228

1989~90년 중 대외협력위원회 산하 EC(구주공동체) 통합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임.

1. EC 통합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경위

- 1989.12.5. 대통령은 EC통합에 대응하여 민관 공동대책위 구성을 지시
- 1989.12.14. EC통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경제기획원)
 - EC통합대책 추진방향 논의(실무위원회 설치)
- 1989.12.26. 대외협력위원회는 산하에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
 - 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 위원: 12개 정부부처 관계국장
 - 자문위원: 6개 민간단체 임직원
- 1990.3.2. 제1회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 개최
 - 실무위원회 산하에 EC통합의 세부과제별로 13개 실무대책반 설치

2. 실무위원회 산하 실무대책반 구성

- 1990.1.11. EC통합 실무대책반 회의(제1차 총괄대책반 회의)
 - 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EC 통합의 세부과제별로 13개 실무대책반 설치 협의
 - 3.2. 제1회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확정
- 외무부는 대외정책분야 실무대책반 담당(반장: 통상국장)

3. EC 통합 관련 자료

- EC 단일시장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1989.11월 통상국 자료)
- EC 통합의 진척상황과 우리의 대응(1989.12월 대외협력위원회 보고자료)
- 1992년 EC 시장통합 진척 현황(1989.12.21. 주영국대사관 보고자료)

EC(구주공동체) 통합(경제) 대응방안. 전2권 (V.2 1990.4-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99 / 6 / 1-220

1990년 중 EC(구주공동체)통합 대응방안 관련 제2~3차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1. 제2차 회의(1990.5.29.)

- 회의 결과
 - 13개 실무대책반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990.10월 말까지 소관분야 종합보고서 제출
 - 기업의 호응도는 미온적이며, 유럽진출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상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업의 EC 진출 전략에 직접 관련된 5개 실무대책반을 매월 개최하고 기업인 참여 확대
- EC의 대외정책분야 실무대책반 업무추진상황(1990.5월 외무부 제1차 진도보고서)

2. 제3차 회의(1990.9.4.)

- 회의 결과
 - 1990.10월말 산하 실무대책반별 종합보고서 발간 및 발간후 합동세미나 개최
 -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활동 강화
- EC통합 대응방안(제3차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 회의자료)
- EC의 대외정책분야 실무대책반 업무추진 현황(1990.8월 외무부 제2차 진도보고서)

3. EC 경제통합 현황자료

- 단일시장 추진동향, EMU(경제통화동맹) 및 EC 경제정책 동향, EC 경제통합의 확대

13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9 / 7 / 1-69

1990년 중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90.2.19. 재무부, 경제기획원, 수출입은행에 한·불가리아 수교협약(1990.3월)에 따른 대불가리아 EDCF(대외경협기금) 및 EXIM(미국수출입은행) 자금 등 경협지원방안을 문의함.
2. 재무부는 1990.3.8. 외무부의 대불가리아 경협자금 지원방침에 관해 회신함.
 - 동구권 국가에 대한 EDCF, EXIM 자금 등의 경협자금은 프로젝트가 제시될 경우 적극지원 한다는 방침
3. 외무부는 1990.4.2. 한·불가리아 수교 및 외무장관의 불가리아 공식 방문(1990.3.22.~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기구(20만 달러상당) 무상원조 제공방침을 결정함.
4. 주불가리아대사는 1990.8.22. Ichpekov 불가리아 외무차관이 주재국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한국 정부의 쌀 무상원조(15,000톤)를 요청했다고 보고함.
 - 향후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긍정검토를 건의
 - 주불가리아대사는 10.31. 쌀 지원이 FAO 규정 등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인도적 견지에서 농산물 이외의 성의표시 원조라도 공여해 줄 것을 재건의
5. 주불가리아대사는 1990.11.9. Gotzev 불가리아 외무장관과의 면담내용을 보고함.
 - Gotzev 장관은 불가리아의 개혁추진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약속한 EDCF 5천만 달러 지불과 EXIM 2억 달러 신용 문제 등을 조속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아울러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기체결과 방한희망 의사를 표시
 - 이에 외무부는 11.13. 주불가리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국은 EDCF 및 EXIM 대출건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언급한 바 없으며, 경험차관 제공은 불가리아의 단기차관 상환 동결조치(1990.3.30.)로 대외신용이 하락하여 관련 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6. 외무부차관은 1990.12.5. Tenev 불가리아 국회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함.
 - 부위원장은 제2차 한·불가리아 민간경협위원회(1991.3월, 소피아)에 다수의 한국기업 참여와 시장경제 도입 관련 정부정책 경험전수를 희망
 - 아울러 정부차원의 양국간 경제공동위 설치와 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제의
 - 동 차관은 긍정적 검토를 언급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 통상2과

MF번호 2020-99 / 8 / 1-112

1990년 중 한·볼리비아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사회사업용품 무상원조 기증식

- 사회사업용품 무상원조 기증식이 1990.1.11. 사회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재활교육기관 Eric Boulter 학교에서 주볼리비아대사, 대통령실 사업사업본부장, 대통령 여동생, 내무차관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Rozario Paz 사회사업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기증에 심심한 사의를 표함.

2. 잠업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 주볼리비아대사의 부임 인사 계기에 Ossio 부통령은 1990.1.16. 한국의 잠업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잠업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도를 요청
- 주볼리비아대사는 주재국 잠업도입개발의 효과적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의 잠업실태 견학을 위해 Montecinos 농민담당차관의 방한 초청을 3.19. 외무부에 건의

3. 한발 피해 지원

- 주볼리비아대사는 1990.4.9. 주재국의 극심한 한발 피해 지원을 위해 3만 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 지원 건의

4. 산타크루스 잠업연구소 기자재 기증식

- 산타크루스 잠업연구소 기자재 기증식이 1990.6.22. 코차밤바시에서 주볼리비아대사, Bertero 농민장관, 농민차관, 주지사, 시의회 의장, 노협대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Bertero 농민장관은 한국 정부의 기증에 사의를 표시하고 동 기증이 잠업개발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

5. 국제박람회 참가

- 한양무역은 산타크루스 소재 Munequitos Pati사와 합작으로 인형공장 투자진출계약 체결
- 상기 양 회사는 1990.9.17.~30. 산타크루스 개최 국제박람회에 공동 참가에 합의. 한양 측은 인형과 아동복을 출품 예정

137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1과 / 경제협력1과 / 통상1과

MF 번호 2020-99 / 9 / 1-76

1987~89년 중 한·캐나다 간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원전 건설 참여

- 캐나다 측은 원전 3호기(월성 1호기) 건설 시 중수로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를 공급한 바 있음.
- 1986년 원전 11, 12호기 입찰 시 캐나다 원자력공사 탈락
- 1988.12월 한국은 장기 원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원전 4호기(월성 1호기 복수화 사업), 13, 14호기 계획 발표

2. 대캐나다 구매사절단 파견

- 캐나다는 양국간 균형있는 무역확대를 위해 구매사절단 파견을 요망한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서 1989.5월경 구매사절단 파견을 검토

3. 보험시장 개방

- 미국 보험사의 한국진출 관련, 캐나다 측은 미국과 동등한 시장 참여를 요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MFN(최혜국대우) 규정에는 보험, 금융 등 서비스분야는 규율대상이 아니며 미국에 대하여는 정부간 협상에 따라 보험시장이 허용된 것임.
- 캐나다 보험회사의 진출문제는 양국간 협의에 의해 처리해 나갈 예정임.

4. 캐나다산 제분용 소맥의 수입문제

- 캐나다 측은 자국산 제분용 소맥이 여타국의 소맥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 한국의 제분용 소맥수입은 정부의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수입함
- 캐나다산 제분용 소맥은 고급용 강력분으로 국내수요가 많지 않고 가격면에서 불리하나, 사료용 소맥은 경쟁력이 높아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음.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9 / 10 / 1-99

1989~90년 중 한·중국 간의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대중국 물품지원

- 1988.5월 APSDEP(아태지역 기능개발사업단) 워크숍(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개최)에 참가한 중국대표는 한국산 컴퓨터 10대를 지원해 줄 것을 APSDEP에 요청하였으며, APSDEP 의장은 한국노동부장관 면담 시 중국 지원용 컴퓨터 기증을 요청
- 1989.2월 ILO(국제노동기구) 측은 내부규정상 APSDEP의 중재가 불가함을 사유로 한국 측에 물품지원 추진보류를 요청
- 외무부는 1989.6.19. 노동부에 동 물품지원에 관한 중국 측 입장이 불분명하고 APSDEP의 중재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으므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
- 다만, 중국 측이 양국간 직접 협력형태로 접수 용의를 표명할 경우는 무방

2. 중국산 제조담배의 수입판매

- 재무부는 1989.9.29. 외무부에 '경성인터내셔널'이 중국산 제조담배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중국연초수출입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중국산 제조담배의 수입·판매허용 등에 대한 의견문의
- 외무부는 11.3. 재무부에 중국산 담배의 수입판매는 현 한·중국 관계의 발전 단계 및 동 품목이 일반 대중생활에 밀접한 기호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허용하기에는 아직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회신

3. 중국산 천연우라늄 수입제의

- 주홍콩총영사는 홍콩의 중개상으로부터 중국산 천연우라늄 수입을 제의받았음을 보고하면서 추진 필요여부 및 추진 시 추가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문의한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동력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문의
- 동력자원부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방향으로 천연우라늄을 구매할 계획이며,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의견회신

137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지부티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99 / 11 / 1-137

1986~89년 중 한·지부티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교섭내용임.

1. 제9차 아랍권 상공회의소 총회(1986.2.24.~26., 지부티)

- 참석자: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명
- 총회주제: 경영, 관리, 숙련기술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아랍권협력
- 주요인사 면담
 - 지부티 외무장관 면담시 동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표단 파견에 사의 표명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표명, 1986.3.27.~31. 한국 방문 계획 언급

2. 지부티 건설사업 참여 요청

- 지부티 정부는 1986.2월 건설분야에 한국업체의 참여를 요청
 - 지부티 공항활주로 확장 공사: 10백만(1단계)+25백만(후속공사) 달러
 - 지열개발 사업: 12백만 달러
 - 주택건설: 한국의 연불차관 도입 희망
 - 항만확장 사업: 규모 미정
- 1984.12월 도로공사입찰에 삼환기업이 참여한바 있으나 유고건설업체에 낙찰

3. 지부티 외무장관 방한(1986.3.27.~31.)

- 지부티 지원협의
 - Farah 외무장관은 관광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차관 제공 등 대규모 협력을 요청
 - 한국 측은 동 지원이 불가함을 밝히고 대신 집차 10대(10만 달러 상당) 지원의사를 표명

4. 지부티 홍수 구호 지원

- 1989.4.4.~8. 지부티 대홍수로 8명 사망, 약 15만 명 이재민 등 피해 발생
- Aptidon 지부티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원조 요청
- 한국은 Farah 지부티 외무장관 앞 위로전 송부 및 수해구호금 15,000달러 지원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경제협력1과 / 서구1과

MF번호 2020-99 / 12 / 1-165

1990년 중 한·프랑스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대한민국 잔존 수입규제 철폐

- 프랑스 정부는 1988.1.20. 관보를 통해 1988년도 대한민국 잔존 수입쿼터를 발표. 이는 금액이나 물량에서 1987년도와 완전 동일함.
- 외무부는 2.9. 제5차 한·프랑스 공동위 등 계기에 프랑스의 수입규제 철폐를 제기한 바 있고, 프랑스 측은 Noir 통상장관 방한 등 계기에 점진적 철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 측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및 전망을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
- 주프랑스대사는 3.21. 경제부 대외무역총국장을 면담, 한국의 조치 등 경과를 설명하고 쿼터증량을 촉구한데 대해, 동 총국장은 작년 혼성위에서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 - 프랑스 측은 1988년도 하반기부터 라디오, TV의 수입쿼터 증량 결정 통보
- 1988.11월 파리 개최 제6차 한·프랑스 공동위 시 한국 측은 라디오, TV등에 대한 잔존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였고, 프랑스 측은 이의 점진적 철폐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989년도 대한민국 수입쿼터를 1988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결정함.

2. 프랑스 상표 도용문제

- 주한 프랑스대사는 1990.6.27. 특허청장을 예방하여 프랑스 상표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하고, David 경제부 총국장도 7.1.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 내 프랑스 상표도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함.

3. 한·프랑스 어업회담(1990.1.8.~10., 파리)

- 논의 및 합의내용
 - 어획허가 톤수: FP 4,600톤, WF 1,300톤
 - 입어척수: FP 72척, WF 50척
 - 양육의무량: 2,000톤
 - 한·프랑스 어업협정 부속약정 갱신(1.10.)

4. TGV의 한국 고속철 사업 참여

- 1989.10.6. Le Monde 신문은 1989.10.16.~22. 프랑스, 일본, 독일 3개국 참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고속철 심포지엄에 앞서 일본과 프랑스가 치열한 경합 중이라고 보도
- Delebarre 교통부장관은 9.21. 주프랑스대사 앞 서한에서 고속철 등 현안에 대한 면담 제의

137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5. 과기처장관 프랑스 방문

-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1990.9.13.~15.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국간 과기장관회담을 개최
- Curien 연구기술부장관과의 회담(9.14.)에서 원자력분야 협력, 과기훈성위 개최, 프랑스 고속철 사업 참여 등 논의
- 이외에 CNRS(국립과학기술연구소), CNES(국립우주연구센터) 방문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989.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9 / 13 / 1-183

1989.1~5월 중 한·헝가리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한·헝가리 합작투자

- 헝가리 MTI 통신은 1989.1.21. 삼성전자 대표와 Orion전자 대표 간에 비디오 합작생산에 관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공장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삼성전자와 Orion전자는 5.30. 총자본금 1,200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건설계약을 체결함.
 - 각 50%의 지분을 보유, 6월 중 착공 예정이며 초기에 연간 약 15만 대 컬러 TV를 생산

2. 헝가리 기업체 간부들의 한국 경제연수 방한(1989.2.14.~3.29.)

- 목적: 삼성물산 주최 '삼성 해외기술자 연수' 참가
- 연수단 구성: 헝가리 유수업체 9개사 간부 20명
- 연수일정: 삼성전자, 반도체통신 등 삼성 산하 각 사업장에서 현장중심 교육

3. 헝가리 주요 인사 방한

- Ferenc Szabo 농업식품부차관
 - 1989.3.3. 농업부차관을 면담하고, 농업 및 식품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
- Jozsef Cseh 공업부차관
 - 4.18. 상공부차관을 면담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증진 방안 논의

4. 헝가리 기업이 1989.4월 국내지사 설치 허가를 신청함.

- 기업명: 테크노 임팩스 헝가리안 포린트레이드 컴퍼니
- 업무분야: 국제무역업

137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989.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9 / 14 / 1-188

1989.6~12월 중 한·헝가리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헝가리 기술자협회 시찰단 방한(1989.8.14.~22.)

- 주관: 코트라
- 목적
 - 한국의 산업발전상 시찰,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외국과의 합작기업, 정부,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실태 견학
 - 한국기업의 대헝가리 투자 유치
- 주요 일정
 - 한국기술사회 주관 상담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방문, 반월공단 시찰 등

2. 헝가리 통신사업 참가

- 삼성물산은 1988.5월 헝가리 지점 개설 이래 통신망 확장 사업을 추진
 - 현지 Orion전자와 제휴하여 1989.8월 중 3개 Rural 통신망 프로젝트 참가 추진
- 주헝가리대사는 1989.8.8. 헝가리 정부가 통신시설 확장 및 현대화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1989년 추진하는 농촌형 교환시설(5만 회선) 프로젝트를 입찰 준비 중이며 동 프로젝트에 삼성이 TDX 교환설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 체신부는 1989.10.23. 외무부에 헝가리가 추진중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한국 정부가 국책 연구사업으로 개발 성공한 전자교환기 TDX-1B 수출을 지원하고자 함을 통보

3. 제1차 한·헝가리 정책협의회(1989.9.27.~28., 서울)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 헝가리 측: Laszlo Ivan 제3국장
- 의제
 - 한국의 북방정책, 헝가리 국내정세 및 동구정세, 한·헝가리 양자관계

4. 제1차 한·헝가리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1989.11.23., 부다페스트)

- 목적
 -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수립에 따른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모색
 - 동구권국가의 개혁·개방화 움직임과 향후 전개방향 파악



- 참석

- 한국 측: 강진구 한·헝가리 경협위원장, 한승수 상공부장관 등 48명
- 헝가리 측: Demjan 위원장, 무역장관, 상의회장 등 80여 명

- 내용

- 거래계약 서명식
- 양국경제현황 및 통상투자증대방안 논의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9 / 15 / 1-43

헝가리 체신·교통·건설부장관이 1990.3.5.~8. 방한함.

1. 방한 경위

- Andra Derzsi 헝가리 체신·교통·건설부장관이 체신부장관의 초청으로 한·헝가리 간의 전기통신 현대화 계획 참여방안 및 항공노선 개설문제 협의

2. 방한 일정

- 체신부장관, 교통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통신공사사장 면담
- 해화전화국 TDX 운영시설 시찰 등

3. 주요 결과

- Andra Derzsi 장관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으로 양국간 실질협력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체신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면담 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헝가리 경제발전의 최대 과제는 통신 현대화로서 향후 3년간 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헝가리와 한국기업 간의 합작투자가 바람직함.
 - 헝가리 철도 및 도로망이 노후화하여 신규 투자가 필요하며 철도차량, 버스 등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
 - 교통 현대화, 공항건설, 관광 개발 등 인프라분야 협력을 기대하며, 헝가리선박의 한국 수리 조선소 입항 등 해운협력과 양국간 과학기술협정 체결 희망
 - 삼성전자가 헝가리에서 컬러 TV를 생산 중이며, 팩시밀리, 통신기기 생산도 기대
 - 1995년 헝가리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박람회에 한국기업의 참여 희망
- 한국 측은 헝가리의 통신 현대화 사업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항공·철도·관광·교통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기대함.

한·이라크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0 / 1 / 1-253

1988~90년 중 한·이라크 간의 경제통상 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이라크 주요인사 방한

- R. Salman 이라크 석유판매공사 사장(1988.1.31.~2.2.)
 - 방한 목적: 한국정유회사와의 원유판매가 협의
- 이라크 701 공사 협상대표단(1989.10.25.~31.)
 - 방한 목적: 현대건설 측과 701 공사 협상

2. 대외기술공여과정 참가

- 1988년도 전자교환기 운영, 고위정책 입안자 연수과정에 각기 지방청, 기획성인사 1명 참가
- 1989년도 육림 및 산림보호, 전자교환기 운영, 자동차정비과정에 각기 고등교육성, 교체성 인사 1명, 교육성 인사 2명 참가

3. 제1회 바그다드 무기 및 방산품 국제전시회(1989.4.28.~5.2.)

- 참가국: 28개국 148개 회사
- 전시품목: 전투기 및 수송기의 에어쇼와 함께 미사일, 탱크, 박격포, 곡사포 등 무기 및 운송장비, 전자장비 등 군수품

4. 전후 복구 심포지엄(1989.11.18.~20., 바그다드)

- 참가국: 한국, 일본, 서독, 아랍, 아프리카권 등 30여 개 국가
- 한국 측 참가자(명지대 교수 2인)는 '전후 복구의 심리학: 한국 경험의 교훈' 등 발표

5. 한·이라크 간 경제통상 및 건설협력

- 이라크 주택건설장관은 1989.11.18. 주이라크대사에게 산업협력, 교역(원유, 보험 등 포함), 과학기술협력 등에 대한 메모렌덤을 제의
- 외무부는 1990.6.27.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라크 제의를 검토하였으나 민간주도 경제체제상 이라크의 제의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이라크 제의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적의 통보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주이라크대사관에 지시

138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0 / 2 / 1-95

1990년 중 한·이란 간의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한·이란 민간경협위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는 1990.9.28. 한·이란 간의 민간경협위를 1990.11.18.~21.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렸음.
- 주이란대사는 10.28. 동 회의에 참가할 이란 측 명단을 파악하여 보고함.
- 주이란대사는 11.13. 이란 측이 동 회의를 부득이 연기함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2. 한국 정부 개입 여부확인 및 주의 촉구

- 주이란대사는 주재국 정부산하 KTC 사장이 모 교포로부터 한국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시리아가 이란에 지불할 채무(약 5억 달러) 대신 한국이 시리아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처분할 대금으로 한국의 전자제품 등을 이란에 공급하겠다는 서신을 받았고, 이의 사실여부 확인을 의뢰하여 왔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에 이러한 합의사실이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1990.12.20. 주이란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에 어떤 공식적인 합의 사실도 없으며, 고려무역(주)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임을 표명하였다고 통보함.

3. 대이란 철강제품 수출

- 외무부는 1990.10.10. 주이란대사에게 한국철강협회가 이란 국적 선사의 배선지연 등으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진정하여 왔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 국적선 이용 및 수출 계약 시 C&F 조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당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 주이란대사는 1991.1.7. 주재국 외무부에서 대이란 수출 시 BUYER 에게 C&F로도 선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함.

4. 참고 자료

- 이란 중공업 현황 및 전망
- 대이란 수출여건 및 진출 확대방안

한·일본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0 / 3 / 1-222

1989~90년 중 한·일본 간의 경제·통상분야 협력사항임.

1. 풍산금속 일본 대장성 조폐국 입찰 지원

- 1989.6월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조폐국의 주화 발행 국제입찰에 한국 풍산금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기술심사 기간 단축 요청
- 1990.5월 풍산금속은 한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대장성 조폐국 입찰에서 100톤 낙찰에 성공

2.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일본 방문(1989.12.5.~8.)

- 일본 건설성 면담 인사
 - 건설경제국장, 스즈키 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도시국장
- 협의 사항
 - 한국기업의 대일 건설시장 진출
 - 한국 건설 기능공 일본 입국
 - 한·일본 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 등

3. 이우재 체신부장관 일본 방문(1990.4.18.~20.)

- 주요 일정
 - 후쿠야 일본 우정대신 예방
 - NTT 사장 면담 및 NTT 무사시노 연구센터 시찰
 - 체신기념일 전야제 참석
- 주요 협의사항
 - 방송위성 등 기술협력
 - 국제 통신 무역 마찰
 - 위성방송 한국 내 침투 문제
 - NTT의 국제분야 사업

4. 다카하시 일본 우정대신 방한(1990.9.10.~12.)

- 주요 일정: 김운용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체신부장관, 통신공사 사장 면담
- 주요 협의 사항
 - UR(우루과이라운드) 통신협정에 대한 한·일본 공동 보조
 - 재일교포의 무선택시사업, 아마추어 무선 상호허용 등

138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케냐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0 / 4 / 1-297

1988~90년 중 한·케냐 간 경제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지하수 개발사업

- 주케냐대사는 1988.2.24. 1988~89년도 무상원조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 주케냐대사는 3.8. 케냐 측이 한국 원조금액의 소규모성 등을 지적함을 보고함.
- 지하수 개발 장비는 1989.4월 초 몸바사항에 도착함.
- 지하수 장비 기증식이 10.19. 수자원성장관 등 참석하에 개최됨.

2. 압연용 고철 수입 문제

- 조달청은 압연용 고철 1만 톤을 케냐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1987.12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급회사인 일본회사가 케냐의 수출금지로 선적 불이행하는 문제를 1988.8.3.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주케냐대사 보고에 따라 케냐의 통제로 합법적인 수출이 어려운 사정임을 조달청에 회신함.

3. 박람회 개최

- 1985년부터 종합박람회로 변경, Nairobi International Show 매년 10월에 개최됨.
- 1988년도: 250개 상사 참가, 농기계류 등 전시
- 코트라 주관하에 주재 상사 중심으로 1989년도 박람회 참가를 결정함.
- 코트라 주관으로 5개 상사가 1990.10.2.~6. 개최된 박람회에 참가함.

4. 경제인 교류

- Kenya Times 회장 방한(1988.11.23.~29.)
- 대우가 추진 중인 한국경협에 의한 합작공장 설립 문제 협의
- 사절단 10명(1988.11.23.~26.) 케냐 방문
- IPC, 케냐상의, 제조업 협회 방문
- 케냐 금융자문위원회 사무총장(1989.12.4.~7.)
- 한국의 자본 및 증권시장 견학차 방한하여 증권감독원 등 방문



5. 한인경제협의회 개최

- 주케냐대사관은 1988.7.26.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한인경제협의회를 설립, 제1차 회의를 9.22.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및 투자증진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12.6. 제2차 회의를 개최함.

6. 기술훈련소 설립 지원

- 케냐 외무부는 1989.3.9.자 공한으로 한국 경험기금에 의한 기술훈련소 설립 계획을 통보함.
- 주케냐대사는 5.6. 케냐 정부의 제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파견을 건의함.
- 케냐 외무부는 7.26.자 공한으로 전문가 파견 시 체재비 한국 부담을 요청함.
- 정부는 1989.9.20.~10.18. 전문가를 케냐에 파견함.

한·몰타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0 / 5 / 1-120

1988~90년 중 한·몰타 간의 경제협력 교섭내용임.

1. 한·몰타 민간경협위 구성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

- 주이탈리아대사는 1988.1.12. 한·몰타 간 관계정상화로 몰타 경제계는 한국과의 통상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무역관 관할변경 및 민간경협위 구성에 관해 2.2. 외무부에 건의
- 코트라는 4.1.부터 대몰타 관할업무를 런던에서 밀라노 무역관 소속으로 이관조정하였으며, 전경련은 민간경협위 구성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2. 몰타 경제사절단 방한(1989.1.9.~13.)

- 대표단: John Dalli 산업성차관 등 7명
- 목적: 해외투자 유치차 한국, 일본, 홍콩 방문
- 기간 및 주요 일정:
 - 1.10. 코트라 방문 및 오찬,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 대우 방문
 - 1.11. 제2차관보 예방, 전경련 방문 및 오찬, 상공부차관 예방, 제2차관보 주최 만찬
 - 1.12.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및 오찬, 녹십자, 삼성전자 수원공장, 만도기계 방문
 - 1.13. 국제경제국장 면담, 금성사 방문

3. 대외기술공여 초청

- 1989년도 기술개발·이전 전략, 수출진흥시찰 과정에 각기 몰타 개발공사, 수출무역청 인사 1명 참가

4. 한국 경제계인사 몰타 방문

- 코트라 사장(1989.4.11.~13.)
 - 코트라·몰타 개발공사 간 상호협력약정 체결
- 대우 회장(1990.11.16.~17.)
 - 몰타 수상 등 면담

5. 투자촉진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

- 1989.1월 Dalli 몰타 산업차관 방한 시 한국 측이 몰타 측에 협정 초안 제시
- 몰타 외무성은 4.3. 주이탈리아대사관 앞 공한으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동 협정 교섭을 위한 한국대표단의 방문 가능성을 문의



- 외무부는 양측이 자국안을 교환하고 일정기간 검토 후 실무교섭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통보
- 몰타 측은 1990.3월 몰타에서 회담 개최를 제의

6. 몰타 산업장관 방한(1990.4.18.~21.)

- John Dalli 산업장관 일행은 양국간 경험 증진차 방한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및 코트라 사장 면담
 - 금성사, 삼성 및 쌍용 방문 등

한·멕시코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00 / 6 / 1-75

1990년 중 한·멕시코 간의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멕시코 은행 서울사무소 개설 문제

- 멕시코의 Banca SERPIN 은행은 1990.1.26.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재무부에 허가를 신청
- 주한 멕시코대사관은 4.16. 외무부 앞 공한으로 개설 요청 관련 신속한 조치를 요망
- 외무부는 4.18. 주한 멕시코대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이전에 사무소 개설을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재무부에 요청

2. 한·멕시코 잠업협력

- 주한 멕시코대사관은 1990.6.12. 멕시코 농업성과 기타 관련기관 간의 잠업 협력사항에 대해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8.8. 상기 사항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하고 향후 동 사업의 진척을 위해 관계 기관을 접촉하여 협의하도록 지시

3. 멕시코산 인광석 수입

- 1990.9.4. 주멕시코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멕시코 측은 한국이 연 2백만 톤의 인광석을 요르단, 모로코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을 감안, 한·멕시코 간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인광석 수출회사와 구매계약 체결을 의뢰해 옴.
- 외무부는 9.12. 멕시코 국영기업 ROFOMEX가 한국에 연 30만 톤의 인광석 구매계약을 제의한데 대해 상공부의 의견을 문의
- 상공부는 11.16. 국내비료업체가 ROMOMEX 인광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사 제품은 수분 함량이 과다하고 인산성분 함량이 낮아 비료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회신하는 한편, 1991년 하반기 준공되는 정제인산 공장에는 적합한 원료이므로 국내업체와 자율적으로 상담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첨언

4. 멕시코산 원유 도입

- 동력자원부는 1990.9.19. 호남정유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인 PMI로부터 호남정유와 PMI 간 1983.6월 체결된 원유장기도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일방적 통보와 향후 원유공급 재개에 대한 불분명한 의사를 접수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원활한 원유공급을 위해 주멕시코 대사로 하여금 당초 계약대로 원유도입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요청
- 외무부는 9.24. 기존 물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PMI 측과 교섭하도록 주멕시코대사에게 지시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0 / 7 / 1-50

1990년 중 한·나이지리아 간의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고속도로공사 수주

- (주)대우는 1990.1.3. 나이지리아 정부 발주 Benin-Warri 간 고속도로공사를 65백만 달러에 수주
- 장영수 대우 사장과 Kontagora 나이지리아 건설부장관 간 계약이 1.3.에 체결되었는바, 대우는 1992.6월까지 95Km의 도로를 완공 예정

2. ITTA 기부금 출연

- 나이지리아 소재 ITTA(국제열대농업연구소) 소장은 1990.2월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자신의 1989.6월 방한 시 국제경제국장으로부터 한국의 CGIAR(국제농업자문기구) 가입 및 기금 출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1990년중에 실현 되도록 협조를 당부
- 외무부는 7.14. 농업진흥청과 함께 1991년도 예산안에 CGIAR 분담금 50만 달러를 신청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통보

3. 1990년도 대외기술협력사업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90.3.30. 양국 공동위 제2차 회의(1989.12월)에서 한국 측이 연간 15명의 연수생 초청을 약속한 바에 따라 1990년도 연수초청을 1989년도 수준인 10명으로 5명을 증원 하여 주기를 외무부에 건의
- 나이지리아는 제2차 공동위에서 한국 측이 약속한 15명의 연수생 초청을 1991년도에 이행하여 주기를 요청

4. 중소기업육성 심포지엄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90.8.7. Association of Nigeri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주최 중소기업육성 심포지엄에 참석,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경험과 나이지리아에 대한 교훈' 제하로 발표
- 동일자에 면담한 Lawan Gwadabe 주지사는 Niger주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플랜트 수입 등 한국과 협력 강화 희망을 표명

139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5. 수출자유지역 설치 타당성 조사

- 나이지리아 주재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는 1990.10.10.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나이지리아가 추진 중인 수출자유지역 설치사업에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는 타당성조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수출자유지역 운영에 성공한 한국, 터키, 대만(구 중화민국) 등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국 전문가 1명을 파견, 현지답사 및 자문 등 협의를 희망하면서 추천을 요청
- 외무부는 상공부의 추천을 받아 마산 수출자유지역 관리소 근무자를 10.13.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통보
-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0.15. UNIDO 조사팀이 경제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하고 이론적인 토의가 가능하며 정책자문경험자를 추천하여 주기를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한충민 KDI 박사를 추천, 동 박사는 1991.1.14. 라고스 도착

한·네덜란드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00 / 8 / 1-115

1990년 중 한·네덜란드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이병기 농림부차관의 네덜란드, 덴마크 등 방문

- 네덜란드 방문(1990.2.3.~7.)
 - 유럽화훼전시회 참관, 간척지 시찰 등
- 덴마크 방문(1990.2.7.~9.)
 - 농업성 방문, 화훼단지 시찰

2. G.J.M. Braks 네덜란드 농업부장관 방한(1990.6.24.~26.)

- 주요 일정
 - 농림수산부장관, 환경처장관 면담
 - 부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3. 1990.2.9.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의하면 일본 미쓰이 상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총본부를 설치하여 유럽 각지역에 산재한 현지법인의 활동을 총괄 조정하게 할 예정이라고 함.

- 1992년 유럽단일시장 형성을 앞두고 일본의 대유럽 투자 특히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확대 전망

4. EURO-ASIA BUSINESS CENTER 추진

- 사업개요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대지 24,200평, 20층 빌딩 설립
 - 오피스텔, 특급호텔, 전시장, 기타 쇼핑아케이드 등
- 건설기간: 1990.10~93년 중 완공 예정
- 사업주체
 - KDI(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세모 등 20여 개 국내업체
 - 코트라, 암스텔담시에서 지원
- 배경
 - 1992년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대비, 현지진출기반 조성, 네덜란드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등
- 기대효과
 - 1992년 EC 시장통합을 앞둔 상징적 효과로 한국의 대EC 진출 이미지 고양 및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후의 가시적 효과
 - 한국기업들의 대EC 진출 촉진 계기

139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폴란드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00 / 9 / 1-127

1988~90년 중 한·폴란드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추진함.

1. 폴란드 인사 방한 초청

- 폴란드 통신현대화계획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체신부장관을 초청
- 1990.5.18. 체신부장관 명의의 초청장 전달

2. 폴란드 무상원조

- 폴란드 의회와 외무성에 각각 5대의 의전차(소나타)와 바르샤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료기기(초음파 진단기) 1대 기증
- 폴란드 외무차관 명의의 감사서한 전달

3. 폴란드의 특혜관세 폐지 동향

- 경위
- 코트라 바르샤바무역관은 폴란드 정부가 1991년부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주폴란드대사에 동건 관련 보고를 지시한바, 주폴란드대사는 주재국 대외경제성을 접촉하여 폴란드 측 입장을 보고함.
- 특혜관세 폐지 검토는 한국 등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관세구조의 종합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현행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4. 폴란드 내 한국기업 지사 설치

- 삼성전자(주)는 정부에 특수지역인 폴란드 바르샤바 및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지사 설치 승인을 요청한바, 1990.2월 외무부는 양국간 통상 및 경제분야 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지사 설치에 이의 없다고 회신함.
- 현대전자는 12.3. 폴란드 민영 SELKO사와 현대전자 제품의 판매, 조립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함.

한·포르투갈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0 / 10 / 1-106

1987~90년 중 한·포르투갈 간 경제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경제세미나 등 참석

- 1987.11.25.~26. 포르투갈 개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무역증진 및 성격 등 관련 발표를 함.
- 동 세미나에는 EC(구주공동체), 중국(구 중공), 홍콩 등 참석
- 주포르투갈대사는 7.19. 한·포르투갈 상공회의소 주최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함.
- 동 대사는 9.29. 리스본 세계무역센터 초청되어 한·포르투갈 경제설명회 오찬에 참석,
‘한·포르투갈 간의 점증하는 동반자 관계’ 제하로 연설함.

2. 주한 포르투갈 무역사무소 개설

- 1988년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개설에 이어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988.2월 관계관이 방한 예정임.

3. 경제인 방문

- 정몽헌 현대전자 사장은 1989.11.16.~17.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상공장관, 포르투갈 해외무역 공사 인사 면담을 함.

4. 합작회사 설립

- 한국의 카스사와 포르투갈의 Portel사는 전자저울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1989.10.18.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함(자본금 60만 달러, 투자비율 51:49).
- 삼성전기는 1990.5.8. 리스본에서 TV 및 비디오 부품공장 건설 조인식을 개최함.
- 투자금액: 31백만 달러
- 생산개시: 1991.5월
- 고용: 700명

139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00 / 11 / 1-108

정부의 1989~90년 중 페루의 홍수·지진 등 재난에 대한 지원과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페루 남부지방 홍수 피해 지원

- 주페루대사는 페루 남부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989.2.10. 군경을 투입,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무상원조 배정액 중 1만 달러의 원조를 건의
- 외무부는 1만 달러 지원 결정

1396

2. 1989년도 무상원조 기증식

- 페루 정보부 청사에서 1990.3.21. Diaz 정보부장 등 참석하에 1989년도 무상원조품(차량2대) 전달식 거행
- 동 정보부장은 한국 정부의 호의에 감사를 표시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

3. 긴급 식량지원 요청

- Cox 페루 총리겸외무부장관은 1990.5.14. 주페루대사 등 17개국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 각국의 긴급식량 지원을 요청
- 1989.9월부터 지속된 한발로 인해 농산물이 극심한 타격을 받아 식량난을 초래한데 연유
- 페루 정부는 6.22. 17개 주요국 대사를 외무성에 초청, 재차 협력을 요청

4. 지진 발생

- 1990.5.29. 동북부 아마존지역에 진도 6의 강진으로 120여 명의 사망자와 1천 명의 부상자 발생
- 외무부는 6.1. 강영훈 총리 명의의 위로전을 발송하고, 주페루대사의 건의에 따라 텐트 140세트를 지원

한·세네갈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0 / 12 / 1-104

1987~90년 중 한·세네갈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추진함.

1. Diop 세네갈 산업개발장관 방한(1987.9.13.~19.)

- 방한 목적
 - 세계에너지 회의 참석
- 동 장관은 귀국후 주세네갈대사 앞 서한을 통해 방한 중 베풀어준 배려에 사의 표시

2. 아프리카 특사활동

- 노재원 특사는 1988.7.13. Diouf 세네갈 대통령을 예방하여 대통령의 문안 인사와 친서를 전달하고, 7·7선언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과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 동 대통령은 7·7선언 지지를 전제하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함.

3. 한·아프리카연맹 사절단 방문

- 김종락 한·아프리카연맹 총재는 1990.7.7.~10. 세네갈을 방문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보건부장관, 경제재무장관, 공업개발장관 등을 예방함.
 - 세네갈 보사부는 앰블런스 1대 기증을 요청

4. 다카르 국제박람회(1990.11.29.~12.10.)

- 참가국: 31개국(200여 개 업체 참가)
- 주세네갈대사관은 출장 온 아비장 주재 무역관 직원과 협조하여 소규모 홍보 및 카탈로그 전시관을 설치·운영하였고, 5개 업체는 국산의류, 완구류, 가전제품 및 일상잡화 등을 직판함.
 - 북한은 대성상사 명의로 공예품, 인삼제품 등을 판매

139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수단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0 / 13 / 1-89

1990년 중 한·수단 양국간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체육용품 지원

- 주수단대사는 1990.1.23. 수단 하르툼 시장으로부터 청소년 체육교육의 개선을 위한 체육용품 지원을 요청받고 지원 건의
- 주수단대사는 4.7. Eidam 청년체육장관에게 체육용품을 전달한바, 동 장관은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수단 외무성도 체육용품 지원에 사의 표명

2. 한국 산업소개 필름 방영

- 수단 TV는 1990.5.1. '한국의 섬유산업 소개' 필름을 방영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단 시청자들은 한국의 산업과 선진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3. 타이어 생산 합작공장 조업문제

- 한·수단 타이어 생산 합작공장인 ITMD는 수단의 원·부자재 및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환배정 조치 미진으로 1990.4.13.부터 조업 중단
 - ITMD는 수단 내 타이어 수요의 60% 공급
- 주수단대사는 5.13.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 ITMD는 지난 10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업 하여 왔는데 원료구입 문제로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하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
- 주수단대사는 6.26. Abdalla 공업장관을 방문, ITMD 조업재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 동 장관은 ITMD에 대한 전액배정은 불가하나 조만간 3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할 계획을 언급
- 정부의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외화배정으로 7.17. 공장 조업을 재개

4. 한·수단 어업협력

- 홍해 연안 Port Sudan항에 자본금 160만 달러 규모의 한·수단 합작수산회사를 1990.10.1. 설립
- 수단 연안 및 홍해어장에 한국 수산업체의 최초 진출로 수출가능어종을 개발할 경우 잠재성이 기대

5. 차량 기증식

- 1989년도 무상원조 차량 13대 전달식이 1990.6.16. 외무부차관, 차관보, 아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 Abu-Haj 외무부차관은 한국민과 정부의 우의에 감사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00 / 14 / 1-62

1990년 중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국인투자법 제정

-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1990.8.17.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기존의 외국인 토지소유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 및 주식 소유 등 투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 외국인투자법 요지
 -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가 구 외국인토지소유법상의 외국인에 비해 확대
 - 외국인 투자자는 일정 한도 내의 토지 소유 또는 회사주식 소유를 위해 규정된 사항을 관계 부처에 신고 의무(구법에서는 허가 의무)
 - 허가 불요 사항: 1에이커 이하의 거주용 토지 취득, 5에이커 이하의 업무용 토지 취득, 사기업체의 주식 취득 및 양도, 외국인의 회사대표 취임, 저당 설정
 - 1년 이하 토지 소유에는 신고 불필요
 - 배우자가 'CARICOM(카리브공동체)' 회원국 시민이거나, 영주권 소지자일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 가능

2. 철강 및 스테인리스강 제품 생산공장의 합작건설 운영 참여업체 물색

-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90.11.16. 주재국의 Complete Information System and Services(컨설팅 회사)가 농기구, 식탁용구, 파이프 플랜트 등 철강 및 스테인리스강 제품 생산공장의 합작건설 운영에 참여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고
- 외무부는 상기 사항을 코트라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통보, 관련업체에 홍보하여 업체의 관심을 유도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
- 대한상공회의소는 12.12. 철강제품 생산합작투자 관련, 농기구, 식탁용구 등 무역업체 및 제조업체 명단을 외무부에 송부

139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국제법학회 심포지엄: 한·소련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법적 제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100 / 15 / 1-54

한·소련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국제법학회 심포지엄 개최 관련 내용임.

1. 대한국제법학회는 외무부의 지원으로 '한·소련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법적 제문제'라는 주제하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990.9.24., 대한적십자사 4층 회의실
- 발표자: William E. Butler 영국 런던대학 교수, 미와 요시히코(三和義彦)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 장효상 한양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 참석자: 약 70명(외국인 5명 포함)
- 심포지엄 내용
 - 한·소련 무역·투자 분쟁해결
 - 일본·소련 경제관계 경험의 교훈
 -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 경제관계의 법적 제문제-한국의 관점
 - 소비에트 투자보장시스템의 법적체계

2. 결과보고서 송부

- 대한국제법학회는 외무부에 국제법학회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등 자료 송부
- 장효상 교수가 발표한 영문 자료 첨부

한·소련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0 / 16 / 1-194

1990년 중 한·소련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함.

1. 국제 극한지 건설기술 세미나 개최(1990.2.21.~23.)

- 개최 목적: 극한지 건설기술의 현황과 개발전망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극한지 진출에 대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극한지 개발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방안 모색
- 특이 사항: 4명의 소련학자 발표

2. 한·소련 경제협력 자금

- 경위
 - 1990.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 시 논의가 시작된바, 한국 측은 소련 측이 협력을 요청해 온 41개 소비재와 22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2차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합의함.
 - 두차례에 걸친 한·소련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증진이 양국관계 강화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12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제2차 정부대표단 회의를 1991.1월 중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를 타결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유리 마슬류코프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소련 정부대표단이 1991.1.16.~23. 방한하여 제2차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를 개최한바, 1991년부터 향후 3년간 소련에 대해 총 30억 달러의 경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문제를 마무리함.
 - 경험자금 내용: 한국상품의 소련 시장 개척을 위한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 차관 15억 달러, 자본재 수출용 연불 수출자금 5억 달러 및 소련의 외채상환, 국제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업베이스 은행 차관 10억 달러임.
 - 차관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 구체적 조건은 2~3월 중 개최될 양국 은행 간의 실무회의에서 약정서를 체결, 결정될 사항임.

3. 양국 경제관계 교섭 현황(제2차 한·소련 각료회의 후속조치)

- 1990.9.14. 항공협정 및 무역협정 가서명
- 자원조사단(1990.8.18.~9.3.) 및 전자통신조사단(9.8.~17.) 등 소련 방문

140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0 / 17 / 1-128

1989~90년 중 한·베트남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베트남 국영선사 정기취항

- 해운항만청은 1989.6.7. 베트남 국영선사 VOSCO의 한·베트남 정기선 취항신고(1989.7.1. 개시 예정)를 받고 외무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외무부는 양국간 정기선 취항에 이의 없음을 회신
-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선의 정기선 취항보장, 여타 문제발생 시 양 당국간의 협의 채널 마련이 우선

1402

2. 베트남 통신관계 정부고위인사 방한(1989.11.28.~12.2.)

- Nguyen Ba 호치민시 체신청장 외 2인
- 금성반도체는 호치민시의 디지털 교환기 설치사업에 관해 1989.8월 호치민시 체신청과 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세부사업의 추진을 위해 체신청장 방한을 초청
- 동 청장은 방한 중 체신부차관을 예방하여 한국의 통신발전 현황과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교환

3. 대베트남 경제정책 관련 관계 부처 회의(1990.2.5.)

- 참석: 경제기획원 제4협력관 주재,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과장
- 협의 내용
 - 대베트남 경제정책 재검토 배경 및 경제정책 설명
 - 서방권의 베트남 경제 진출현황, 지사 설치 및 무역사무소 개설문제
- 합의사항
 - 민간기업의 현지지사 설치, 소규모 합작투자, 무역사무소 개설 등 대베트남 경제정책 안건을 북방경제정책실무위에 상정, 심의

4. 베트남의 대한민국 정책

- 주태국 베트남대사는 1990.2.26. 주태국대사에게 양국간의 접촉창구를 방콕 주재 양국대사로 하며, 베트남 정부는 양국간의 경제관계 증진에 비중을 두고 양국간의 일반협력을 진행하는 방침이라고 설명
- 주베트남대사는 4.26. 주태국대사에게 삼성물산의 베트남 제1부수상 방한 초청, 캄보디아 문제의 포괄적 해결전망, 한국의 베트남 진출 장애 등 관련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제의



5. 베트남 기업체 직원 상주 문제

- 외무부는 1990.7.11. 베트남 측이 한국상사직원의 베트남 주재 허용을 들어 베트남 기업체 수출입종사원의 한국 내 상주 허용을 요청하는 문제에 관해 경기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8.23.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베트남 기업체 직원의 한국 주재 허용을 결정

6. 경제인 등 인사교류

- 베트남 국가계획위원회 수석경제고문 등 9명이 1990.9.24.~25.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차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 베트남 자원조사단이 1990.12.10.~20. 베트남 방문

1403

한·유고슬라비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00 / 18 / 1-123

1990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간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세계자동차 전시회 참가

- 1990.4.1.~8. 베오그라드에서 개최
- 450여개 자동차 관련 회사 참가
-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Excel, Sonata 전시

2. 경제사절단 방문 언론 보도

- 유고 발간 Politika지는 1990.4.14.~21. 경제면에서 'New Agreements and Plans' 제하로 한국의 동구경제사절단 유고 방문 성과 및 양국 경제발전을 전망하는 해설 기고문을 게재
 - 동 기고문은 Miloje Popovic 유고 대외경제성 차관보가 작성한 것으로 금번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합작투자 및 제3국 공동진출 증대, 무역역조시정 등 경제 및 통상분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한 성과를 지적

3. 유고 대외경제무역부장관 방한 초청

- 주유고대사는 1990.7.5. Franc Horvat 대외경제무역부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증진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9~10월 중 방한을 희망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의 방한 초청 문익에 대해 상공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국회 일정 등으로 10월 말 이후를 선호한다고 회신
- 박필수 상공부장관 명익의 초청장을 8.22. 발송

4. 제81차 자그레브 국제박람회 참가(1990.9.17.~23.)

- 1,400개의 유고 국내업체, 1,600개의 외국업체 참가
 - 한국에서는 코트라 주관 하에 삼성전자, 금성사 등 30여 명 참석

5. 경제사절단 유고 방문

- 력기금성 시장 일행은 지점설치차 1990.5.22. 베오그라드 방문하여 부총리,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예방
- 15명의 한국 금융대표단은 5.22. 베오그라드를 방문하여 유고 중앙은행 등 금융계 인사를 면담
- 김건기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외 19명은 유고를 방문하여 9.5. 베오그라드 박람회 전시장에서 한국자동차 부품전시장을 개관
- 포철 대표단은 1990.12.8.~14. 유고를 방문하여 에너지산업부장관, 연방 상의 관계자 면담 등 활동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제23차. 과천, 1990.8.30.-9.1.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0 / 19 / 1-240

제23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이 1990.8.30.~9.1. 과천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의 재무부장관
- 대만 측: 샤오 완창 대만 경제부장

2. 회담 성격

- 한·대만 간 유일한 경제 각료급 경제회담으로서 대만 측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수교국인 한국과의 각료급 회담에 큰 비중을 두어 왔음.
- 특별한 현안과제 해결보다는 전통적인 쌍방간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친선을 도모하는 회의
- 1966년 이래 지난해까지 22차에 걸쳐 매년 상호방문 형태로 개최(1979, 1984년에는 미개최)

3. 주요 일정(안)

- 8.28.~29. 실무 전체회의
- 8.30. 각료회담, 경제부장 및 상공부장관 예방, 부총리 오찬
- 8.31. 산업시찰, 대통령 예방, 경제부장 주최 만찬

4. 주요 의제(안)

- 세계경제 추이 및 이에 대한 공동협력방안과 양국간 교역확대 등 일반적인 상호 공동 관심사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140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제23차. 과천, 1990.8.30.-9.1. 전2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1 / 1 / 1-185

1990.8.30.~9.1. 과천에서 개최된 제23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결과임.

1. 샤오 완창 대만 경제부장 외무부장관 예방 결과(1990.8.29.)

- 샤오 완창 대만 경제부장 언급 요지
 - 대만은 APEC(아태경제협력체) 참가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희망하며 한국 측의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한국은 1991년 APEC 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대만, 중국, 홍콩이 모두 APEC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의 참가를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한국은 원칙적으로 대만의 GATT 가입을 지지함. 다만, 최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에 회원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GATT 내에서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한 합의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

2. 제23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1990.8.30.~9.1.)

- 주요 합의내용
 - 한국 측 요청사항에 대한 합의: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량, 인삼류, 미역, 오디오테이프의 관세인하, 수입제한 해제(자동차 및 래디얼 타이어, 제조담배)
 - 대만 측 요청사항에 대한 합의: 우롱차 수입자유화, 고량주 및 오가피주 수입개방(1991.1.1.부터), 인삼류 수입지역 제한 폐지
 -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제3국에 대한 무역적자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을 발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개선 위해 노력
- 경제협력
 - 3개 분야(산업개발정책, 중소기업,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와의 협력) 세미나 개최 및 3개 전문분야(경제전문가, 세무공직자, 농어민 후계자) 인적교류 실시
 - 한국의 대대만 건설시장 참여에 공정한 대우 및 지원
 - 대만의 GATT, APEC 가입 관련하여 한국은 대만의 GATT 가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지지입장 공식표명은 신중히 검토. APEC 가입은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

3. 샤오 완창 대만 경제부장의 한국 대통령 예방(1990.8.31.)

- 대만 총통의 친서 전달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01 / 2 / 1-118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가 1990.7.10.~11.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EC 측: Giola EC 집행위원회 대외부총국장

2. 주요 의제

- 통상, 투자 및 금융, 과학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문제 등

3. 회의 시 주요 논의 사항(1990.6.8., 주EC대사관 보고)

- EC 관심사항
 - 시장개방: 수입자유화 및 세이프가드, 무역업 면허,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offer agent) 및 수입금융 제한, 안전규격, 관세평가, 수입가격 표시, 동식물 검역, 주류, 자동차, 다이아몬드, 소비재상품 수입억제운동
 -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업종, 금융제한 및 은행업 규제, 고정 사업장에 대한 과세, 보험
 - 해운
 - 지적재산권
- 한국 측 관심사항
 - EC 시장접근: 반덤핑, 프랑스 잔존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제한
 - 과학기술협력
 - 통신분야 협력
 - SEM(단일유럽시장)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01 / 3 / 1-148

1990.7.10.~11.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결과임.

1. EC 측 제기사항

- 지적재산권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지적재산권은 Package 협상으로 하며, GSP 복구 및 보상이 어려운 경우, 본 건은 새로운 차원에서 재협의를 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에 EC 측이 동의함. 한국 측의 성의 표시 문제는 귀국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EC에 통보하기로 약속
- 시장개방
 - EC 측은 일부 품목 수입제한 철폐, 무역업 면허 자유화, EC 안전규격 인정, 수입가격 표시제 중지, 외국인 차별 과세 시정,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운동 중지 등 요구
 - 한국 측은 일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시장자유화 및 자유무역주의 원칙 불변 강조
- 외국인 투자
 - EC 측은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축소, 영업자금 도입 제한 완화, 한국지사 등에 대한 과세차별 시정 요구
 - 한국 측은 제반조치의 비차별적 성격 및 필요성 설명
- 주류
 - EC 측은 종가세제의 종량세제 전환 및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주세상 차별 시정 요구
 - 한국 측은 전반적 세법 개정 시 검토 예정으로 구체적 입장은 7월 말까지 EC 측에 통보하기로 약속

2. 한국 측 제기사항

-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촉구
 - 한국 측은 EC의 반덤핑제소 남발 자제 및 차별적 운영 시정 요구, 프랑스 잔존 수입규제 철폐 요구, 한국산 자동차(기아자동차) 수입제한 시정을 촉구
 - EC 측은 반덤핑은 자의적, 산업보호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자동차 문제 등은 관련 회원국과 협의하기로 약속
- 과학기술협력
 - 양측 관계자 회의 개최 합의(1990.10월, 브뤼셀)
- 통신분야 협력
 - 정보교환, 공동연구 추진 합의



3. 평가 및 전망

-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EC 측의 강경한 입장이 재확인된바, 가까운 시일 내 EC 측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4. 한·EC 모니터링 회의 토의 요약(Agreed Summary)

- EC 측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EC 측이 수락함으로써 종결(1990.11.23.)

90-1332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01 / 4 / 1-231

1990.7.10.~11.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관련 자료임.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관세협력소위원회, 제1차. Budapest, 1989.12.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1 / 5 / 1-103

한·헝가리 관세협력 고위실무자회의(1989.10.21., 서울) 및 제1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 관세협력소위원회(12.8., 부다페스트)가 개최됨.

1. 한·헝가리 관세협력 고위 실무자 회의(1989.10.21., 서울)

- 개최 경위
 - 제1차 한·헝가리 경제협력공동위원회(1989.6.5.~7., 부다페스트) 시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서 1989년 하반기 관세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
 - 헝가리 측: Major 헝가리 무역부 국장
- 주요 의제
 - 양국간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 우루과이라운드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CCC(관세협력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
 - 양자간 관세인하 협상 지속 및 차기 실무자 회의 개최

2. 제1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 관세협력소위원회(1989.12.8., 부다페스트)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
 - 헝가리 측: Bela Szentamary 무역부 국장
- 주요 의제
 - 한·헝가리 관세협력소위원회 신설
 - 양국 관세인하 관심품목 교부
 - 비관세 품목 토의
 - 무역정보교환 및 차기회의 개최 일정
- 주요 결과
 - 양국은 한·헝가리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인하를 통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관세협력소위원회를 신설 합의함.
 - 헝가리 측은 소고기, 버터, 치즈, 소세지, 주스, 포도주 등 20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를 요청하고 동 문제의 구체적 토의를 요청한바, 한국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추후 입장을 표명하기로 함.



- 헝가리는 현재 점차적인 수입자유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1991년까지 HS(국제통일상품분류)를 도입 시행할 것임.
- 차기회의는 1990년 상반기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개최 시 회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요청품목에 대해 구체적 관세인하협상을 하기로 함.

한·이란 공동위원회, 제3차. Tehran, 1990.2.17.-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1 / 6 / 1-350

제3차 한·이란 공동위원회가 1990.2.17.~19. 테헤란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 이란 측: Aghazadeh 석유장관

2. 주요 의제

- 전후 복구사업 참여, 중공업 및 방위산업분야 협력 토의, 각종 협정(비자면제협정, 이종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체결 추진 등

3. 회의 결과

- 경제협력
 - 한국기업의 이란 전후 복구 및 개발계획 참여 환영
 - 한국 정부의 과도한 신용공여를 기대하지 않도록 설득
- 통상협력
 - 한국 상품에 대한 이란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 박람회 상호 참가
 - 1988.7월 이후 구속 중인 AFKO사 한국 선장 2명 조기 석방 합의
- 협정 체결 추진
 - 사증면제, 투자보장 및 이종과세방지,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3개월 이내 회담 개최
 - 30일 이내 이란 체류 사증에 대한 본국 청훈제도 폐지, 주한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약속

4. 성과

-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 강화(대통령, 외무장관 면담)
- 이란 전후 복구사업에 한국 업체 참여 기반 구축
-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하여 협정 체결 추진, 사증발급 간소화 등 정부차원의 협력 환경 조성

90-1335

한·이란 공동위원회, 제3차. Tehran, 1990.2.17.-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1 / 7 / 1-248

1990.2.17.~19.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이란 공동위원회 관련 자료가 수록됨.

- 제3차 한·이란 공동위원회 관련 의제별 관계부처 검토의견 및 주이란대사관 참고자료
- 후속조치 대책회의 자료(1990.3.23. 중동아프리카국)

한·모로코 혼성위원회(자료), 제1차. 서울, 1986.10.29.-31.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1 / 8 / 1-100

제1차 한·모로코 경제기술협력 혼성위원회가 1986.10.29.~3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 모로코 측: Rafiq Haddaoui 외무부 국제협력차관보

2.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및 오찬, 외무부 제1·2차관보 예방, 제2차관보 주최 오찬, 상공부 제1차관보 예방, 수산청 차장 면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시찰

3. 주요 협의사항

- 새로운 이중과세방지협정안 제안 약속
- 투자보장협정 초안 제안
- 주한 모로코 상주공관 개설 결정 통보
- 모로코산 인광석의 상호 유익한 조건하의 안정적 공급의사 재확인
- 어업협력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 문화·과학기술 협력: 연수생 접수 및 전문가 파견 등 통한 문화·과학기술협력 강화 희망
- 제2차 한·모로코 혼성위원회의 1987년 중 개최 합의

4. 평가

- 경제, 기술, 통상, 수산 및 문화 등 제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광범위하게 토의함으로써 양국관계 심화발전의 계기 마련

141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제2차. Islamabad, 1990.3.13.-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1 / 9 / 1-201

제2차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가 1990.3.13.~15.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2. 주요 의제

- 통상, 산업협력 증진, 한국 경험기금지원, 과학기술협력, 농업분야 협력, 항공협정

3. 회의 결과

- 통상 및 산업협력
 - 양측은 교역액이 4억 달러 선에 도달한데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 무역의 균형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교역증진의 일환으로 한국회사 설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완화를 요청
- 경제개발협력기금 지원
 - 그간 파키스탄 측이 협력대상으로 신청한 4개 사업 중 1,000만 달러 규모의 '국가개발 리스회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 측의 조사단을 조속 파견하도록 함.
- 항공협정 체결문제
 - 파키스탄 측은 오랜 기간 동안 현안으로 남아 있는 양국간 항공협정을 조속 체결할 것을 촉구 하였으며, 한국 측은 오는 6월에 개최될 양국 항공사간 회담결과를 토대로 재협의하자는 입장을 취함.
- 과학기술 및 사회분야에서의 협력
 - 양측은 제3차 과학기술협정의정서(1990~91년도)를 조속 체결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파키스탄 측은 교육, 가족계획 및 노동 분야(특히 제3국 진출 한국 건설업체의 파키스탄 인력 고용)에서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
-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
 - 파키스탄 측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금년도에 30만 달러 상당의 차량 등 물품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함.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제2차. Islamabad, 1990.3.13.-1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1 / 10 / 1-212

1990.3.13.~15.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2차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관련 자료가 수록됨.

- 제2차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실무회의 주재 자료
 - 공동위원회 회의 일정, 양국 대표단 명단, 실무회의 자료(통상, 산업협력증진, 한국의 경험 기금지원, 과학기술협력, 농업분야 협력, 항공협정), 제1차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 결과(요약)
- 제2차 한·파키스탄 외무장관회담 자료
 - 파키스탄 방문 일정, 파키스탄 외무장관 인적사항, 한·파키스탄 외무장관회담 자료(인사교환, 국제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아시아태평양 협력, 양자 관계), 공관 현황, 파키스탄 개관
- Korea-Pakistan Foreign Ministers' Talks(외무부 영문자료)
- Talking Points(The Second Pakistan-Korea Joint Commission Meeting)(상공부 영문 자료)

141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4차. Tunis, 1986.6.16.-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1 / 11 / 1-178

제4차 한·튀니지 간의 공동위원회가 1986.6.16.~19. 튀니지 튀니스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통상협력, 합작투자 등 산업협력, 기술협력, 문화·체육협력
- 튀니지 측의 경제개발 참여
- 이중과세방지협정

1418

2. 양국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
- 튀니지 측: Amar 외무성 국제협력 총국장

3. 주요 협의 결과

- 통상협력
 - 한국 측: 국제입찰 시 튀니지 측의 Counter Purchase 조건완화 요청
 - 튀니지 측: 인광석 등 튀니지 상품 수입 요청
- 합작투자
 - 제강 및 강관분야 한·튀니지 합작투자사업에 한국 측 금융지원 제공 요청
- 튀니지 측 경제개발 참여에 한국 측 기업 참여 권장
- 이중과세방지협정
 - 1986.9월 서울 회의에서 동협정 체결 노력
- 기술협력
 - 한국 해사기술과 Socomena 조선소 간 기술협력관계 확대와 한국 자수전문가 파견에 합의
- 문화·체육교류 증대
- 제5차 공동위는 양측 합의시기에 서울에서 개최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4차. Tunis, 1986.6.16.-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1 / 12 / 1-187

제4차 한·튀니지 간의 공동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임.

1. 의제별 관계부처 의견접수

- 건설부(1985.1.17.)
 - 튀니지의 국내 합작 진출과 제3국에서의 인력 공동진출 및 건설기술 협력강화로 양국 건설 협력 분위기 조성을 주장
- 상공부(1985.5.1.)
 - 양국간 산업 및 통상의 상호보완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남남협력이 강화되고 실질적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특별히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
 - 튀니지 인광석 구매가능성 검토 결과 1987년 이후에나 일부 수입선 전환이 가능
- 체육부(1986.5.1.)
 - 88 올림픽 준비상황 및 전망
- 과학기술처
 - 1986년도 대튀니지 기술공여계획
- 동력자원부(1986.5.20.)
 - 교역증대 및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품목 다양화와 무역사절단 상호교환
- 재무부
 - 합작투자 증진을 위한 사업성 있는 투자사업 허가 및 금융지원을 시행

2. 1986.6월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 의제에 대한 제4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회의 자료를 작성함.

- 한국 경제 소개
- 우호관계증진 및 합작투자증진
- 이중과제방지협정 체결
- 교역증대, 경제개발계획 협조
- 민간경험위 합동위 개최
- 기술협력증진, 양식어업분야 협력
- 88 올림픽 참가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02 / 1 / 1-349

1989.12.7.~8.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를 위한 교섭 내용임.

1. 개최 시기 협의

- 1989.2.27. 외무부는 6월 초 한·미국경제협의회 개최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파악을 주미국 대사에게 지시
- 1989.3.1. 미 국무부 아태국 경제담당부차관보는 6월에는 G7 경제정상회의 개최 일정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바, 3.9.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9월 중순이나 10월 초순 개최 희망을 전달
- 1989.7.26.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12.11. 주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 국무부는 8.7. 주미국대사관에 12.14.~15. 개최를 제의한바, 외무부는 12.14.~15. 개최안을 수락
- 1989.11.8. 미 국무부 경제차관특보는 미국·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및 G7 정상회의 준비 회담 등 사정으로 12.7.~8. 개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의
- 1989.11.10. 외무부는 12.7.~8. 개최를 수락(무역실무위원회는 12.6. 개최)

2. 의제 결정

- 1989.11.13. 미 국무부 경제차관특보는 미국 측 의제를 제의
 - 미국경제, 무역보고서, 양자경제문제, 경제구조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 1989.11.15. 주미국대사관과 국무부 실무자간에 의제, 회의 진행 등 협의. 미국 측은 금융, 투자, 조선 등 의제안에 대해 설명
- 1989.11.17. USTR(미국무역대표부) 측은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의제안을 제의
- 1989.11.18. 외무부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농산물, 서비스분야 등 관련 무역실무위원회 의제를 조정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 1989.11.20.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USTR 부대표보와 무역실무위원회 의제를 협의
- 1989.11.27. 주미국대사관 측과 USTR은 UR 협상을 제외한 미국 측 제안에 동의, 무역실무위원회 의제를 확정

3. 일정 및 진행

- 1989.11.16. 주미국대사는 준비 중인 일정안을 보고
 - 12.5. 에너지실무위원회 회의
 - 12.6. 대책회의, 무역 및 에너지실무위원회 회의
 - 12.7.~8. 경제협의회



- 1989.11.20. 외무부는 회의를 진행 요령을 미국 측에 제의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동일자 및 11.22.에 주미국대사관 직원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및 경제담당관과 일정 및 의제를 협의
- 1989.11.24. 주미국대사관 측은 의제에 항공문제를 추가하는 방안과 12.1. 대외발표를 제의하고 대외발표시기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11.25. 발표시기를 11.30.로 조정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2 부내 및 관계부처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02 / 2 / 1-359

1989.12.7.~8.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준비를 위한
부내 및 관계 부처 자료임.

1. 외무부 자료

- 경제 관련
 - 한국경제: 최근 경제운용 실적 및 전망,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 국제경제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유럽단일시장 추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ANICs (아시아신흥공업국) 대화, 아태 경제협업체 문제
 - 자본시장: 증권, 보험, 은행, 외환
 - 기타: 제3국 공동진출, 대전박람회, 대형 프로젝트
- 기타 자료: 아태 각료회의, 한·미국 관계, 동구권국가의 국제경제체제 내 통합

2. 관계 부처 자료

- 에너지 자원분야 의제 및 자료
 - 부문별 내역: LNG 도입, 원유 도입, 유연탄
- 특허청 관련
 - 공업소유권 시행 및 보호강화, 공업소유권법 개정 문제, 신지적재산권 보호
- 교통부분
 - 기본입장, 항공운송, 육상운송업
- 상공부 관련
 - 조선, 전기용품 표준제도, 투자 및 자본이동
- 재무부 관련
 - 은행 및 금융, 투자, 구조조정문제, UR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02 / 3 / 1-478

1989.12.7.~8.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결과보고 내용임.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원 외무부차관
- 미국 측: McCormack 국무부 경제차관

2. 의제

- 경제현황 및 구조조정
- 양국간 개별경제현안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3. 주요 협의내용(한국 측 주안사항 및 미국 측 반응)

- 1990년 슈퍼 301조 협상 수락불가 강조
 - 미국 측은 신분야 슈퍼 301조 발동 자제 시사
- 한국 경제의 어려움 설명
 - 미국 측은 한국의 경제악화에 대한 이해 표명
- 농산물시장의 점진적 개방 이해 촉구
 - 미국 측은 차후 개방계획 수립 시 미국 측 관심사항 최대한 반영 요망
- 소고기 수입쿼터제 유지 불가피 강조
 - 미국 측은 슈퍼 301조 조치 시한 내 진전 희망
- 한국산 배 통관보류 강력 항의
 - 미국 측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양국 협조 제의
- BIE(국제박람회기구)의 대전박람회에 대한 공인지지 요청
 - 미국 측은 최고위층에 보고 및 성의있는 재검토 약속
- 기타 협의사항
 -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감 표명, 통신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개방 방침 설명 등

4. 평가

- 1989.10월 한·미국 정상회담 시 통상현안의 호혜적 해결 합의에 기초한 협력관계발전에 기여
- 한국입장을 의연한 자세에서 표명

142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1990



- 구조적 전환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미국 측 이해 제고
- 지역협력 등 국제경제 정세변화에 대한 공동대처 및 UR 협상을 통해 세계자유무역체제 유지
신장을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합의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4 회의자료 1(경제협의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02 / 4 / 1-456

1989.12.7.~8.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회의 자료임.

1. 회의 개관

- 세부 일정
- 양측 대표단
- 의제

2. 의제별 진행요령 및 말씀자료

- 개회 및 대표단 소개
- 개회사
- 한·미국 경제현황
- 구조조정문제
- 실무위원회 협의결과보고
- 양국간 경제문제
- 전략물자수출통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기타 문제
- 폐회

3. 의제별 말씀자료

- 항공
- 전략물자수출통제
- UR
- 1993년 대전박람회
- 구주단일시장
- 아태 협력문제

142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5 회의자료 2(무역실무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02 / 5 / 1-221

1989.12.7.~8.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무역실무회의의 자료임.

1. 회의 개관

- 양측 대표단
- 회의 의제
- 일정

2. 의제별 자료

- 농수산물
 - BOP 협의결과 이행, 소고기, 슈퍼 301조 합의이행
 - 식물검역, 수입제한, 농약잔류검사
 - 기타 통관보류 문제
- 서비스
 - 슈퍼 301조 서비스 투자분야 합의이행 및 시장접근
- 표준
 - 화장품, 전기용품, 의료기기
- 조선
- 투자 및 자본
 - 슈퍼 301조 투자분야 합의 이행
 - 자본시장
 - 수입금융 및 신용장
 - 시장접근

3. 영문 자료

- Agriculture / Fisheries
- Phytosanitary Issues
- Services
- Standards
- Investment

미국 지역 민·관 경제협의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02 / 6 / 1-55

1989~90년 중 미국에서 개최된 미주지역 민·관 경제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제1차 협의회(1989.1.27., 주미국대사관)

- 참석자: 주미국대사, 미국지역 총영사관 경제담당영사, 무역관장, 무역협회 대표, 지상사협회 회장 등 주요 업계대표, 대사관 관계관 등 60여 명
- 토의 내용
 - 민간단체 및 업계 대표가 대거 참석, 특히 구매사절단 파견, 홍보자료 제공, 홍보관련 각종 행사 개최 등 민관 합동 경제홍보활동 효율화 방안에 대한 건설적 의견교환

2. 제2차 협의회(1990.2.22., 로스앤젤레스)

- 참석자: 주미국대사, 미국지역 총영사관 경제담당영사, 무역관장, 무역협회 대표, 지상사협회 회장 등 주요 업계대표, 대사관 관계관 등 60여 명
- 토의 내용
 - 1990년도 한국 경제·통상정책, 미국 경제전망, 한·미국 통상현안, 대미 경제홍보 강화방안, 대미 무역확대 균형방안 등 토의

142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5차. 서울, 1990.10.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중미과

MF번호 2020-102 / 7 / 1-48

제15차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90.10.30.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멕시코 측: Sanchez 멕시코 상공차관과 Garza 한·멕시코 민간경협위 멕시코 측 위원장 등
- 한국 측: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김상용 한·멕시코 민간경협위 한국 측 위원장 등

2. 주요 논의사항

- 양국경제현황 검토
- 각 분야별 경험증진방안 논의(석유화학, 전자, 건축자재, 어업, 광업, 섬유 등)
- 멕시코 투자진출 세미나(자유무역지대, 금융지원, 세제, 법규 등 투자환경 전반 설명)
- 제16차 합동회의: 199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멕시코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3. 회의 결과

- 동 회의에서 멕시코 측은 최근 양국 교역량의 대폭 증가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점증하는 멕시코 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한국 측의 전자, 기계, 타이어, 철강제품과 동광, 원유, 커피 등 멕시코산 원자재 간 구상무역 추진을 제의

4. Sanchez 멕시코 상공차관과 상공부장관 면담시 주요 협의사항

- 현재 멕시코는 멕시코내 외국은행의 영업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멕시코 은행금리가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할때 향후 금융시장 개방 예정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금융, 농업,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개도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조를 약속
- 멕시코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라 멕시코에서의 사업기회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경제사절단을 멕시코 측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

한·소련 경제인 합동회의, 제2차. 서울, 1990.3.22.-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2 / 8 / 1-247

제2차 한·소련 경제인 합동회의가 1990.3.22.~2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단장)

- 한국 측: 정주영 한·소련 경제협회장
- 소련 측: Golanov 소련 연방상의 수석 부회장(소련·한 경제협회장)

2. 주요 행사 및 활동

- 3.23.~24.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 한·소련 간 교역·경험 증진방안 토의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예방
- 부산항,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수원), 럭키금성(안양 제1단지), 대우자동차(부평) 시찰

3. 주요 토의 및 상담 내용

- 합작 및 상담
 - 섬유, 경공업, 전자, 조선, 임업, 금융업 등 합작 추진
 - 선박, 화물차, 승용차 등 대소련 수출
 - 48개 업체 120여건 상담
-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 소련 측은 정보데이터뱅크 제공 용의 표명
 - 14개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요청
 - 소련의 기초과학 상업화에 한국 참여 요청
- 금융 협력
 - 한국 측 은행 소련 내 지점 개설문제 진전
 - 소련 측은 대금결제를 위한 Business Consortium 결성 방안 제시

4. 의의 및 평가

- 한·소련 경제협력 기반 조성
 - 구체적 상담 진행, 경험대상분야 가시화
 - 양국간 경제협력 장애요인 확인 및 시정 노력
 - 국내기업의 대소련 투자 촉진
- 과학기술 교류 증진
 - 소련의 선진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계기 마련

미국·한 협회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02 / 9 / 1-256

1986~90년 중 USKOS(US-Korea Society, 미국·한 협회)의 활성화 대책과 활동 관련 내용임.

1. USKOS 활성화

- USKOS는 1983.6월 뉴욕에 비영리단체로 등록(1973년 설립 미국·한 경제협의회를 확대개편)
 - 한·미국 간 경제분야 교류촉진 및 문화·예술·교육교류 사업증진을 통한 유대증진 목적
 - 약 110개 회사 참여
- USKOS의 활성화 대책
 - 뉴욕 일대에 국한된 활동영역을 전국으로 확대
 - 문화기능을 배제하여 순수한 경제유관 진흥단체로 변경 검토
 - 획기적인 USKOS 지원 및 한·미국 간 이슈 해결에 USKOS 활용도 제고

2. 1988년 USKOS 활동

- USKOS 세미나 개최(1.29.)
 - 한국 대선이후 한·미국 경제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국내정치, 한·미국 안보관계, 남북한 관계 토의
- USKOS 초청 Yeutter USTR(미국무역대표부) 통상대표 만찬 연설(1988.3.2.)
 - 한·미국 통상관계, 특히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한국 소고기 수입관행, 담배 수입문제, 지재권 문제 등에 대해 연설

3. Korea Society(한국협회)로 확대 개편 추진

- USKOS 이사회는 1990.3월 협회의 명칭을 Korea Society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 중
- Korea Society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USKOS를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
 - 최소 200만 달러의 안정된 기금 조성, 회원 및 조직의 확대, 지명도 있는 임원 물색 등 필요
 - Korea Society 재원지원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설립 추진

한·미국 재계 총회, 제3차. 서울, 1990.6.17.-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103 / 1 / 1-319

1990년 중 제3차 한·미국 재계회의 운영위원 합동회의와 총회가 개최됨.

1. 제3차 한·미국 재계회의 운영위원 합동회의(1990.1.21.~23., 하와이)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남덕우 무역협회장(한·미 재계회의 한국 측 공동위원장)
 - 미국 측: David Roderick 공동위원장
- 주요 의제 및 회의 일정
 - David Roderick(미), 남덕우(한) 공동위원장 개회사
 - 미국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Lionel Olmer)
 - 한국의 정치현황(정세영 현대그룹 회장)
 - 한국의 경제현황(김각중 경방 회장)
 - 한·미 통상현황(John Hinds, 구평회 럭키금성 회장)
 - 지적재산권위원회 활동(Robert Malott)
- 주요 합의사항
 - Staff Liaison Group 신설
 - 시장접근 실무위원회, 모델벤처(Model Venture) 실무위원회, 기술 실무위원회 신설

2. 제3차 한·미국 재계회의 총회(1990.6.17.~19., 서울)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남덕우 한국 측 위원장
 - 미국 측: David Roderick 미국 측 위원장
- 주요 일정
 - 한국 경제와 정치 및 미국 경제와 정치 현황 조망(김경원 전 주미국대사, Lionel Olmer 변호사)
 - 한·미국 경제·통상 문제, 발표 및 질의응답(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Berman 미 상무부장관 자문관)
 - 이승윤 경제부총리, Gregg 주한 미국대사 연설
- 분과위원회별 토의내용
 - 제조업 소위원회: 통관절차와 관행, 동구시장 합작 진출
 - 서비스·금융 소위원회: 항공, 반덤핑 관행
 - 기술 소위원회: 지적재산권, 기술 및 정보 교환

한·미국 동남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5차. Charleston(미국), 1990.11.17.-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3 / 2 / 1-48

제5차 한·미국 동남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90.11.18.~20.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남덕우 무역협회장,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 유득환 상공부 무역정책실장, 주애틀란타 총영사,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이경훈 대우중공업 사장 등 50명
- 미국 측: Campbell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Harris 조지아 주지사, Martin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Wilder 버지니아 주지사 등 각 주정부 및 업계 대표 270명

2. 주요 협의내용

- 한·미국 통상관계
 - 한국 측: 제반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꾸준한 시장개방정책 추진으로 양국간 교역이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
 - 미국 측은 양국간 교역발전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원칙의 중요성 강조
- 기술이전
 - 한국 측: 미국의 고도기술 및 한국의 축적된 제조능력 간의 상호보완성을 지적하고, 미국 업계의 적극적인 대한국 기술이전을 촉구
 - 미국 측: 폐기물 처리, 목재가공, 통신분야 기술협력 가능성 제시
- 투자증진
 - 한국 측: 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자유화 조치,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투자 노력을 설명
 - 미국 측: 미국 동남부지역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설명하면서, 한국기업의 동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

3. 한편, 이훈구 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은 동 회의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1990.11.19. 오찬 시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함.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최 소련 및 동구권 경제관계 세미나. Brussels(벨기에), 1990.4.4.-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3 / 3 / 1-230

1990.4.4.~6.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최 소련 및 동유럽권 경제세미나,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 전망 분석자료와 동유럽 경제 관련 미국 CIA 보고서 관련 내용임.

1. NATO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 체코슬로바키아 경제현황(1989~90년)
- 동·서독 화폐 통합
- 헝가리 시장경제체제 전환 동향
- 폴란드 경제개혁 동향 및 전망
- 폴란드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서유럽 지원 전략
- 루마니아 경제 전망(1990년)
- 1990년대 초반 동서무역 전망

2. EC 집행위원회가 1990.5.14. 발표한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 전망 분석자료와 5.16. 미국 상하 양원 합동 경제위원회에 제출된 동유럽 경제 관련 미국 CIA 보고서 수록

14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남남협력위원회(The South Commission)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3 / 4 / 1-103

1989~90년 중 남남협력위원회(The South Commission) 회의 개최 동향임.

1. 제6차 남남협력위원회(1989.11.11.~14., 뉴델리)

- 주요 토의 의제: 개도국 교육, 농업 문제 및 남남무역 등 경제협력

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남남협력위원회 회의(1990.9.16., 제네바)

- 주요 토의 의제
 - South Commission 업무 추진실적 평가
 - 1990.10월 남남협력위원회 활동중단에 따른 대책 및 입장(남남협력위원회는 3년 한시적 조직으로 1987.10월 개최 비동맹회의에서 창립)
 - 남남협력위원회를 대체할 South Secretariat 설립 문제

3. 제10차(최종) 남남협력위원회 회의(1990.10.7., 탄자니아)

- 주요 토의의제
 - 남남협력위원회 최종 보고서(The Challenge to the South) 채택
 - 걸프만사태 선언문 채택

WEF(세계경제협력회의) 세계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90.2.2.-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03 / 5 / 1-259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협력회의) 주최로 세계경제지도자 회의가 1990.2.2.~4.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각국의 대통령, 총리, 각료급 인사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총재, 기업인, 학자, 언론인 등 1,200여 명
- 한국은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사정으로 참석 취소

2. 토의 의제

- 1990년대 세계경제 전망
- 투자 경쟁으로 야기된 세계경제의 유동성
- 유럽 재정립에 따른 미국·유럽 관계변화
-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개방정책
- 아·태지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경쟁과 협력문제 등 17개 주요 세계경제현안

143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Hawaii, 1990.2.20.-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03 / 6 / 1-85

정부는 1990.2.20.~22.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 CSIS(전략문제연구소) 산하 Pacific Forum에서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학술회의에 이한빈 전 경제부총리를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아태지역 14개국 학자, 정부인사, 경제계인사 등 28명

2. 주요 토의내용

1436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제도화(근거, 목표 및 형태)
- APEC의 당면과제
- APEC 참가국 확대문제
- APEC의 미래 및 추구해야 할 협력사업

동해 연안국 경제협력 심포지엄, 제1차. Vladivostok(러시아), 1990.4.9.-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3 / 7 / 1-164

제1차 동해 연안국 경제협력 심포지엄이 1990.4.9.~12.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됨.

1. 참가 경위

- 1990.3.6. 상공부 및 코트라는 동해 연안국 경제협력 심포지엄 초청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1990.3.14. 외무부는 동 심포지엄 참가가 한·소련 실질협력관계 증진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회신
- 1990.3.20. 외무부는 동 심포지엄 개최를 주모스크바영사처장에게 통보
- 1990.3.23. 주일본대사는 심포지엄에 대한 일본 측 입장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보고
- 1990.3.26. 상공부는 참가단 구성 계획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1990.4.4. 외무부 주관 참가단 회의 개최

2. 주관기관 및 참가자

- 주관기관
 - 소련 대외경제관계부, 소련 상공회의소, 소련 대외경제연구소, 소련 과학원 극동지부
- 참가자
 - 한국: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등 11명
 - 소련: 주관기관 인사 100여 명
 - 일본: 소련·동구무역회 부소장 등 14명
 - 북한, 중국 불참

3. 참가 목적

- 금번 제1차 회의에서 동해 연안 5개국간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 방안 모색
- 북한, 중국의 불참으로 주로 소련 극동개발계획에 대한 한국, 일본 양국의 참여 문제 협의

4. 주요 활동내용

- 경제특구, 합작투자, 무역 분야 등에 대한 한·일본 양국의 대소련 진출 및 협력방안 협의
- 소련 공산당 연해주지역 집행위원장 면담
- 소련 정부인사 및 경제관련 연구소 인사 등 접촉, 경제특구, 합작투자 여건 조사 등 제도적 문제 등 파악
 - 수산 및 건설분야 등의 상담 활동



5. 평가

- 한·소련 경제협력 가능성 및 실질협력 모색
- 소련 측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
- 경제특구, 합작투자 관련 소련 내 여건의 미비로 현 단계에서는 진출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IPAC(국제공공센터) 최고경영자 회의. 서울, 1990.5.10.-1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03 / 8 / 1-331

IPAC(국제공공센터) 최고경영자 회의가 1990.5.10.~11.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위

- Battaille IPAC 회장은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대사 면담 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및 경제 발전상 등 감안하여 1990.4~5월경 서울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한국 고위인사 면담 주선을 요청
 - * IPAC: 유럽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독립 비영리기관
- 1989.8.3. 외무부는 유럽 기업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향후 한·EC 경제관계 강화차원에서 동 제의 수락

2. 회의 진행

-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중역진 40여 명이 참석, 관계장관들과 면담 형식으로 한국의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교환

3. 주요 일정

- 경제부총리, 동자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대리 면담
-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전경련 주최 리셉션
- 외무부장관 면담
 - 외무부장관이 북방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 후 질의응답을 가진바, 참석자들은 한·소련 관계, 한·중국 관계, 유엔가입, 남북대화, 투자환경 등에 관해 관심 표명

4. 자료

-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제기된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한 영문자료

중소기업국제회의(ISBC), 제17차. 서울, 1990.9.16.-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03 / 9 / 1-59

제17차 ISBC(중소기업국제회의)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1990.9.16.~19.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각국 중소기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금융계 인사, 중소기업인 등 50개국 400여 명

2. 주제

- 중소기업-세계번영을 위한 협력(Small Business-Partnership for Global Prosperity)

3. 제17차 ISBC 서울개최 의의

- 중소기업간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
- 88 올림픽 개최 이후 제고된 국제위상 및 성과를 활용한 수출증대 및 경제협력 기회 모색

경제사절단 동구 순방, 1990.3.31.-4.15.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3 / 10 / 1-178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90.3.31.~4.15.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순방함.

1. 폴란드 측 사절단 파견 요청

- 폴란드 외무차관 및 대외경제차관 일행의 방한 중 상공부장관 면담 시(1989.11.2.) 정부 및 관련 업계로 구성된 사절단 파견 요청

2. 민간기관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폴란드 방문

- 황인정 IPECK 부회장은 1989.11.18.~23. 폴란드를 방문하여 폴란드 대외무역회의 소장과 한·폴란드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의향서를 교환하고, 12월 폴란드에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계획을 추진

3. 대폴란드 경험 관계부처 회의 개최

- 1989.12.1.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안기부 등 관계 부처 회의에서 투자사절단 파견문제 협의
 - 방문국이 체코, 유고로 확대

4. 상공부는 대동유럽 경제사절단 파견 계획을 통보

- 1990.3.5. 상공부는 외무부에 통상진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동유럽 경제사절단 파견계획을 통보해오면서 폴란드, 헝가리 방문시 인사면담 주선을 요청
- 외무부는 주헝가리대사, 주유고대사, 주폴란드대사대리에게 사절단 파견을 통보하고, 주재국 인사면담 주선을 지시

5. 동유럽 경제사절단 파견 대책회의 개최

- 1990.3.15.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주재하에 사절단 활동계획, 국별 사절단 참가 등 협의 및 비자신청 관련 공지

14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경제사절단 동구 순방, 1990.3.31.-4.15.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3 / 11 / 1-260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90.3.31.~4.15.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순방함.

1. 방문국

- 폴란드(4.1.~4.), 체코(4.4.~8.), 헝가리(4.8.~12.), 유고슬라비아(4.12.~14.)
- 사절단 구성
 - 단장: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출국장
 - 단체 및 업계
 - 폴란드: 이한빈 IPECK 회장(단장) 등 26명
 - 체코: 이한빈 IPECK 회장, 이선기 코트라 사장(공동단장) 등 41명
 - 헝가리 및 유고: 이선기 코트라 사장(단장) 등 29명

2. 국가별 주요일정

- 한·폴란드 민간경협위 개최
- 한·체코 민간경협위 개최
- 체코 브르노 박람회 한국관 개관
- 한국산업주간 및 한·헝가리 경협 세미나 개최
- 삼성전자 헝가리 현지공장, Tungsram 공장 방문
- 유고연방 상공회의소와 정기협의회

3. 관찰 사항

- 동유럽 각국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민영화, 사유재산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는 형편이 상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 방한, 1990.10.15.-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03 / 12 / 1-309

Henri 룩셈부르크 대공세자를 단장으로 하는 룩셈부르크 관민 경제사절단이 1990.10.15.~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8.22.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도쿄 상주)은 Henri 대공세자 및 Wohlfart 외무·통상·경제협력담당국무상 겸 국방담당국무상 등 관민 경제사절단의 방한 일정(1990.10.15.~19.)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
- 당초 Poos 외무장관이 방한 예정이었으나 국내사정으로 Wohlfart 국무상으로 교체

2. 주요 일정

- 대통령,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예방
- 한·룩셈부르크 정무협의회 개최(유종하 외무부차관·Wohlfart 국무장관)
- 제3차 한·룩셈부르크 경험위 합동회의(전경련 주관) 개최
- Trefil Arbed Korea Co.(한·룩셈부르크 합작회사) 부산공장 시찰

3. 한·룩셈부르크 정무협의회(1990.10.16.)

-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유엔가입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설명을 통해 차기 EC(구주공동체)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지지 확보
- 유럽의 교통요지이며 금융·경제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와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대 가능성 타진

144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루마니아 경제사절단 방한, 1990.6.24.-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3 / 13 / 1-59

Emil Vaciliu 대외무역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루마니아 경제사절단이 1990.6.24.~28. 방한함.

1. 방한 목적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체결 실무 교섭
- 경제부처 및 코트라, IPECK(국제민간경제협력위), 한국관광공사 등 국영기업체 방문

1444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재무부차관 및 과기처차관 면담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3차 실무회의 개최
- 코트라, IPECK, 한국관광공사 방문
- 력기금성, 대광산업(연마기 제조업체), 고려무역, (주)대우 방문

3. 방문 결과

- 1990.6.27. 이기주 외무부 2차관보와 Emil Vaciliu 대외무역부차관 간 한·루마니아 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르완다 경제사절단 방한(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3 / 14 / 1-27

1990년 중 르완다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추진함.

1. 경위

- 르완다 정부는 1990.6.28. 주르완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경제부처 고위관리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르완다 경제사절단의 1990.10.7.~18. 방한 일정 주선을 외무부에 요청함.

2. 방한 목적

- 생산기술 이전 가능성 타진 및 교역시장 조사
- 경제단체 방문 및 중소기업인 면담
- 산업시찰

3. 외무부는 1990.10월 확정된 외빈접수 일정상 르완다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11월로 연기 추진할 것을 주르완다대사관에 지시함.

144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솔로몬제도 경제사절단 방한, 1990.4.21.-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03 / 15 / 1-41

Paul Daokalia 솔로몬제도 수상특별보좌관(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솔로몬제도 경제사절단이 1990.4.21.~25. 방한함.

1. 방한 목적

- 목재처리 과정 견학
- 과일, 수산식품 및 닭, 돼지 등 육류포장 과정 견학
- 도서(島嶼)간 선박운송 사업, 플라스틱용기 생산투자 진출 협의

1446

2. 주요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대통령 앞 수상 친서 전달)
- 수산청 방문(수산물 가공 합작투자 협의)
- 현대종합목재, 한국냉장, 이건산업, 동산토건 견학

통가 경제사절단 방한, 1990.7.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04 / 1 / 1-79

Daniel Oh 통가 국왕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통가 경제사절단이 1990.7.1.~9. 방한함.

1. 방한 목적

- Baron Vaea 통가 부수상 방한 준비
- 정유공장 합작 설립 협의
- 정기항로 개설 및 관광개발 투자 협의
- 어업협력 협의

2. 주요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양국 경험 증진 방안 논의)
- 교통부 방문(정기항로 개설 및 호텔건설 협의)
- 수산청 방문(어업협력 협의)
- 동력자원부 방문(정유공장 설립 협의)
- 경제기획원, 상공부, 전경련, 상공회의소 방문

3. 통가 노동상공부차관 면담자료, 통가 국왕 특사 및 노동상공부차관 면담요록 등 수록

144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권영각 건설부장관 중화민국 방문, 1990.7.30.-8.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4 / 2 / 1-75

대만 내정부장(장관) 초청으로 권영각 건설부장관이 1990.7.30.~8.2. 대만(구 중화민국)을 방문함.

1. 방한 목적

- 타이베이시 지하철공사 한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문제 협의
- 리덩휘(李登輝) 대만 총통 등 대만 정부 주요인사 예방
- 삼성건설, 대우(주) 타이베이시 지하철공사 현장 시찰
- 한·대만 건설협력 양해각서 체결 교섭

2. 주요 일정

- 리덩휘(李登輝) 총통, 행정원장, 외교부장, 교통부장 예방, 타이베이시장 면담
- 한국기업 지하철공사 현장 시찰, 토지개척훈련소 방문

3. 방문 결과

- 대만 지하철, 고속전철, 고속도로, 항만 등 대규모 교통망 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대만 건설시장 진출 확대 협의를 위한 허수덕(許水德) 내정부장의 방한 초청을 결정

Dunn, Dame Lydia 홍콩 무역발전국(TDC) 회장 방한, 1990.4.19.-2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4 / 3 / 1-134

Dame Lydia Dunn 홍콩 TDC(무역발전국) 회장이 1990.4.19.~21.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1.9. 주홍콩총영사는 1990.4월 홍콩 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Dunn TDC 회장의 방한을 보고하고 주요 인사 면담을 건의
- 1989.12.4. 주홍콩총영사는 Dunn 회장의 정치경제적 비중에 비추어 주요인사 예방 주선을 건의
- 1990.1.25. 주홍콩총영사는 홍콩 TDC의 1990.1.1. 주서울 연락사무소 개설을 보고
- 1990.2.18. 외무부는 재무부장관 등 예방 협조를 요청
- 1990.4.3. 외무부는 외무부장관, 상공부차관 예방 일정을 주홍콩총영사관에 통보

2. 방한 목적

- 홍콩 상품전시회 개최 및 무역증대

3. 주요 일정

- 4.20. 대우그룹 부회장 예방, 기자회견 무역협회 주최 오찬, 코트라 사장, 상공회의소 회장, 외무부장관 예방, 리셉션, 홍콩 패션쇼, 현대백화점 주최 만찬
- 4.21. 상공부차관 예방, 홍콩 상품전시회 개막식

Ghurburrun, Beergoonath 모리셔스 부총리 겸 경제기획개발장관 방한, 1990.1.17.-2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4 / 4 / 1-109

1989~90년 중 Beergoonath Ghurburrun 모리셔스 부총리 겸 경제기획개발장관이 방한함.

1. 제1차 방한(1988.8.7.~11.)

- Beergoonath Ghurburrun 모리셔스 부총리 겸 경제기획개발장관은 UNDP(유엔개발계획)에 의거, 직업훈련제도 연구시찰을 목적으로 4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한
- 방한 주요일정
 - 경제기획원 차관, 노동부차관 면담,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
 -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연구소, KAIST, KDI 방문
- 방한 결과
 - 경제기획원차관 면담 시, Ghurburrun 장관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조획득을 위하여 UNDP의 주도로 1990.3.21.~22. 제네바에서 원조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이 원조국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으나 인력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경제정보센터 설립사업에 20~30만 달러 정도의 원조를 요청함.

2. 제2차 방한(1990.1.17.~20.)

- Ghurburrun 장관은 1990.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모리셔스를 위한 인력자원개발 원조국 회의(UNDP 및 세계은행 후원)에 앞서 한국 측과 인력자원개발 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4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재차 방한
- 방한 주요일정
 -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만찬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직업훈련관리공단, KAIST, KDI 방문

Hjelm-Wallen, Lena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장관 방한, 1990.10.9.-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04 / 5 / 1-128

Lena Hjelm-Wallen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장관이 1990.10.9.~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스웨덴대사는 1990.9.13. 주재국 국제개발협력장관이 1990.10월초 아시아국가 순방기회에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아래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희망해 왔다고 보고
 -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결정 관련 국제개발 협력
 - 한국의 대외원조계획
 -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에 대한 입장

2. 방한 주요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및 만찬
- 경제기획원, 재무부, KDI(한국개발원) 방문

3. 주요 인사 면담시 언급내용

- 외무부장관 예방 시, 동 장관은 경험규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나 개도국 발전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경제발전 경험이나 개발기술의 이전도 매우 중요한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고 언급
- 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면담 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짧은기간 내 경제부흥의 기적을 이루었으므로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

14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베네수엘라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04 / 7 / 1-54

1990년 중 베네수엘라의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Leopoldo Scure Figarella 베네수엘라 산업담당국무장관(국영광업공사 사장 겸임)
(1990.1.13.~15.)

- 산업담당국무장관 및 기업인 등 7명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경제사절단이 세창물산 초청으로 방한
- 외무부장관 예방 및 한·베네수엘라 경험증진방안 협의

1452

2. CISNEROS 그룹 Gustavo Cisneros 회장(1990.6.17.~20.)

- Cisneros 회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초청으로 방한
- 외무부장관 예방(노태우 대통령 앞 Perez 대통령 친서 전달) 및 삼성그룹 방문(석유화학, 조선, 전자통신, 알루미늄 부문 합작투자 협의)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원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4 / 8 / 1-29

1989~90년 중 파키스탄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원조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및 원조 필요성

- 1989.1.15. 주파키스탄대사는 아프간 난민 구호사업의 계속 추진을 건의
 - 2.15.까지 아프간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철수 등 아프간 사태가 급속히 타결 단계에 있으므로 아프간 난민 구호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아프간 무자히딘 신정부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 조성 등에 긴요

2. 아프간 난민 무상원조용품 기증식 거행

-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청에서 1989.6.21. 1989년도 난민 무상원조용품 기증식을 거행
 - Diljan Khan 파키스탄 변경·캐시미르 국무장관, 아프간 난민청장, WHO(세계보건기구) 대표 등 각계인사 50여 명 참석
 - Pakistan Times지 등 주요 일간지 보도
- 파키스탄 외무부는 9.19. 외교단과 유엔기구 대표부 등 약 50개 외국공관을 초청하여 아프간 난민구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으며, 파키스탄내 아프간 난민청은 한국 측이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원조품목을 제시
 - 밀, 쌀, 설탕, 식용유 등 식품류
 - 앰불런스 등 의료용 차량, 다목적 차량(Utility Vechicles)
-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청에서 1990.11.26. 1990년도 난민 구호품(국산차량 25대) 기증식을 거행
 - Diljan Khan 변경·캐시미르 장관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외국 정부와 UNHCR(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주재국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

145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원조(무상원조), 1982-88

생산연도 1982-1988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4 / 9 / 1-196

정부의 1982~88년 중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2~83년 무상원조

- 국영 Ethiopian News Agency(ENA) 사장이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과 면담 시 암실 기자재 지원(15,000~20,000달러 상당)과 사진기술자 2명에 대한 방한 훈련을 요청
- 외무부는 암실 기자재 비용을 지원

1454

2. 1984년도 무상원조

- 에티오피아 노동자 당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국방위원장인 Fisseha 사무총장은 멩기스투 의장의 지시라고 전제하면서 혁명 10주년 기념식에 동원될 공수부대 2개 사단용 작업복 약 5만 벌 등을 요청함.
- 외무부는 공수부대용 위장복 및 장비(상하의, 베레모, 요대, 권총요대, 수통 및 커버, 군화)와 보병부대용 작업복 3만 벌(상하의, 요대, 모자) 및 민병대용 1천 벌(상하의, 요대, 모자)을 지원함.

3. 1986년도 무상원조

- 에티오피아 공업부장관은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원조(재봉틀 160대를 포함한 기자재 33만 3천 달러 상당과 농기구 68만 7천 달러 등)를 요청
- 에티오피아 외무부는 공한을 통해 10대의 스텔라 자동차 기증에 사의를 표한 후, 1대가 엔진 작동 잘못으로 파손되었다면서 필요 부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4. 1987년도 무상원조

- 외무부는 동아일보사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난민구호금을 구호기관에 전달하도록 주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지시

5. 1988년도 무상원조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시청각 기자재 구입을 포함하여 한국촌 학교 지원 사업 등 한국전 참전용사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원조(무상원조), 1989-9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4 / 10 / 1-60

정부의 1989~90년 중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가뭄 구호 지원

- 에티오피아 구호부흥청은 1989년도 주요 농산물 작황에 대한 검토 결과, 1990년 185만 명에 대해 33.3만 톤의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고 사전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 식량원조 공약을 호소하는 공한을 각국 공관에 발송
 - 에티오피아 소재 UNEPPG(UN Emergency Prevention & Preparedness Group)도 같은 내용의 공한 발송
 - 에티오피아 구호부흥청은 영양학자 팀의 권고에 따라 33,300톤의 콩과 11,100톤의 오일 추가원조를 호소하는 공한을 각국 공관에 발송
- 외무부는 대한적십자사에 에티오피아 가뭄 구호 지원을 요청한바, 대한적십자사 측은 에티오피아 적십자사에 5,000달러를 지원

2. 차량 관련 지원

- 에티오피아 구호부흥청은 원조물자를 적기 수송하기 위해 운항 차량의 과도한 사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동 수송 트럭의 적절한 관리, 유지를 위한 자동차 품목 지원을 요청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국 사무차장이 마이크로버스 1대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면서, OAU와의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상원조 일환으로 특별 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

145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국의 대가나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4 / 11 / 1-101

정부의 1989~90년 중 가나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9년도 무상원조

- 1.11. 언론연수원에 버스 기증
- 4.4. 31ST Dec.Women's Movement에 태권도복 60벌 전달
- 4.14. 청년체육부에 스포츠용품(테니스볼, 탁구공, 베드민턴 셔틀) 기증
- 4.19. South Labone 소녀직업훈련원에 버스 1대 및 버스와 재봉틀용 부속품 기증
- 5.19. 농업부에 양수기 5대, 6.28. 경운기 15대 기증
- 8.22. 체육청소년부에 전국체전용 메달 기증
- 9.19. 경찰본부에 스포츠용품(태권도복 100벌, 몸통보조대 10세트, 헤드기어 20개, 축구공 25개 등) 기증
- 11.8. 국영 TV 라디오방송국 GBC에 12인승 미니버스 1대 및 수동식타자기 4대 기증
- 11.16. 전국 민주주의 추진위원회(NCD: National Commission for Democracy)에 미니버스 1대, 컴퓨터 2대, 복사기 2대, 전동타자기 7대 기증

2. 제5차 가나 원조국 회의

- 세계은행은 재무부에 1989.2.28.~3.1. 파리에서 개최되는 대가나 경제협의체 참석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 재무관이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지시

3. 1990년도 무상원조

- 2.6. 국가원수 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31ST Dec.Women's Movement에 베스트 미니버스 1대 기증
- 4.3. 문화부에 25인승 버스 1대, 토목 및 주택부에 12인승 미니버스 1대 기증
- 4.18. 소방서에 태권도용품 기증
- 8.28. GNA 통신사에 차량부품 기증
- 10.4. 31ST Dec.Women's Movement에 1톤 트럭 기증
- 10.11. Highway Authority에 미니버스 Besta 1대 기증
- 10.17. 청년체육부 및 전국민주주의 추진위원회에 미니버스 Besta 각 1대 기증
- 10.25. 외무부에 소나타 차량 6대 기증

한국의 대기니비사우 원조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4 / 12 / 1-109

정부의 1988~90년 중 기니비사우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8년도 무상원조

- 주세네갈대사는 1988.1.18. 주세네갈 기니비사우대사와 접촉하여 2월 포르투갈어 사용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사용될 국산 차량의 부품지원 문제 협의를 계속함.
- 주세네갈대사관은 4.2. 주세네갈 기니비사우대사관 앞 공한으로 차량부품이 국경세관에 유치되어 있음을 통보하고 조속 통관조치를 요청

2. 한·기니비사우 간의 경제과학기술협정 서명

- 1988.12.26. 주세네갈 기니비사우대사관저에서 주세네갈대사와 Batista 주세네갈 기니비사우 대사는 한·기니비사우 경제과학기술협정에 서명한바, 동 협정은 1989.4.3. 발효

3. 1989~90년도 무상원조

- 주세네갈대사는 1989.1.16.~20. 기니비사우에 출장하여 대통령·부통령·외무부장관 등을 면담하여 무상원조 등을 협의한 후 2.17. 1989년도 기니비사우 무상원조 품목으로 7만 달러 배정 범위 내에서 군용트럭 2대, 스텔라 5대 지원을 건의
- 주세네갈대사는 1990.3.29. 1990년도 기니비사우 무상원조를 요청(컴퓨터, 자동차)
- 주세네갈 기니비사우대사관에서 11.5. 1990년도 무상원조(차량 4대 및 컴퓨터 2대 등) 기증식을 거행

14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이란 지진 피해 지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4 / 13 / 1-180

1990.6.21. 이란 북서부 지방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에 대한 한국의 지원 및 조치 관련 내용임.

1. 이란 북서부지방 지진 발생

- 1990.6.21. 이란 북서부 Zanjan주에 진도 7.7의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 발생
 - 피해 상황: 약 35,000명 사망, 10만 명 부상, 130여 마을 폐허
- 이란 정부는 3일간의 애도기간 선포

1458

2. 한국 지원 및 조치

- 1990.6.22.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명의의 위로전문 발송
- 긴급 구호자금: 정부 5만 달러, 대한적십자사 2만 달러
- 구호품 지원: 55만 달러 상당(6개 이란 진출 건설업체 15만 달러, 쌍용정유 30만 달러, 삼성 3만 달러, 기타 각급단체 약 7만 달러 상당)
- 구호품목
 - 1회용 주사기, 채혈백 등 의료 소모품, 의료장비, 의약품, 텐트, 의류, 식품 등 약 36톤

3. 이란 피해 관련 제44차 유엔총회 속개회의

- 1990.6.28. 유엔총회가 속개되어 이란 대표의 지진피해 상황 및 파키스탄 대표의 결의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결의안을 무투표 채택
 - 결의안 요지: 이란에 대한 지원 다짐, 기 지원국에 대한 사의 표시, 추가 지원 호소 등

4. 외국의 지원현황

- 소련: 적십자사를 통해 270명의 의료진, 식료품 등 1만 톤의 구호품
- 중국: 11만 톤의 구호품
- 일본: 280만 달러 상당의 구호금 및 구호품, 22명의 구호요원
- 미국: 76만 달러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단체 170만 달러 구호품
- UNHCR(유엔난민기구): 3,600만 달러 등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4 / 14 / 1-48

정부의 1988~90년 중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9년도 무상원조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9.2.6. 주재국이 전국적인 방역을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 중인 만큼 앰블런스 및 지방순회 이동진료차 각 5대 지원을 건의했으나 미반영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2.17. 배정액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이동진료차 지원 건의
 - 대당 2만 달러 범위에서 5대 제작 건의
- 코트디부아르 보건부 약품조달청에서 12.20. 1989년도 무상원조(앰블런스 5대, 이동진료차 5대) 기증식 거행
 - 보건장관, 외무장관 등 주요인사, 정파의 2명 등 참석
 - 일간지, TV 등 언론 보도

2. 무상원조 부품공급

- Koulibali 코트디부아르 외무부 대사(장관자문관)는 1989.5.29. 1987년 한국 정부가 기증한 경운기 50대가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고장난 상태이고 1985년 기증한 트랙터 100대도 부품 소진으로 방치되어 있다면서 부품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부품 관련하여 현지회사 측이 6월 방한, 대동공업 측과 대리점 계약 상담 예정임을 보고

3. 학교 건립 등 지원 요청

- Banny 국방장관은 1989.9.21.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60개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간이 건물 또는 100만 달러의 원조를 요청
- Ake 외무장관은 12.12.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1990.3월 초 예정된 장관의 출신지역 보건소 신축을 위해 앰블런스 1대 지원을 요청

4. 코트디부아르 내 라이베리아 난민 지원

- Miremont 공보장관은 1990.1.3. 약 1만여 명의 라이베리아 난민이 지난 연말 발생한 무력 충돌사태를 피해 국경지역으로 피난, 수용되어 있다고 발표
- Ake 외무장관은 1.19. 외교단을 초치, 라이베리아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우방국의 원조를 요청
- 동 외무장관은 1.22. 외교단 회의를 재차 소집, 우방국의 긴급 지원을 호소. 현재 난민이 5만 5천 명에 이르며 미국이 차량 1대 및 2만 5천 달러, EC가 14만 달러 및 식량 250톤 지원 등 언급
- 대한적십자사는 2.16. 5,000달러 지원을 결정하고 송금

레바논 지원 국제기금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4 / 15 / 1-73

1990년 중 한국의 레바논 지원 국제기금 참여 요청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90.5.28.~30. 바그다드 개최 아랍 특별정상회담 시 레바논 지원 국제기금 설립 결의
 - 레바논 경제재건을 위한 금융지원 목적
 - 각국 출자금 20억 달러 모금 목표
- 1990.6.26.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 동 기금 참여 요청
- 1990.8.18. 한국 재정사정상 동 기금 참여가 곤란함을 통보

2. 사우디 국왕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 접수

- 1990.9.15. 상기 기금 설립에 참여를 요망하는 Fahd 사우디 국왕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 접수

3. 사우디 국왕 앞 대통령 친서 전달

- 외무부는 1990.10.8. 주사우디대사관에 레바논 지원 국제기금 설립 참여를 요청한 사우디 국왕 친서에 대해 제반 사정상 참여가 불가하며, 한국능력 한도 내에서 레바논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명의의 회신을 송부하고, 사우디 정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난민 원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4 / 16 / 1-57

정부의 1990년 중 라이베리아에 대한 난민 원조내용임.

1. 코트디부아르의 라이베리아 난민 원조 요청

- 주코트디부아르 대사는 1990.1.19. 주재국 외무부장관이 1989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자국에 피난해온 라이베리아 난민구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긴급 지원을 건의함.
- 외무부는 1.23. 라이베리아 난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바, 대한적십자사 측은 2.16.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5,000달러 지원을 결정함.

2. 시에라리온 및 유엔의 라이베리아 난민 원조 요청

- 시에라리온 정부의 NRCC(피난민 대책위원회)는 1990.7.20. 자국에 피난해온 3만 명의 라이베리아 난민구호를 위한 식량, 의류,약품 및 기금 지원을 요청함.
- 유엔사무총장은 12.7.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기아 및 식수난 등 생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긴급 구호사업에 필요한 1,38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지원 요청함.

3. 대한적십자사의 난민 지원

- 대한적십자사 측은 1990.2~9월 2회에 걸쳐 민간차원에서 라이베리아 난민구호사업으로 총 8,000달러를 지원함.

146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국의 대모리타니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4 / 17 / 1-46

정부의 1989~90년 중 모리타니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대모리타니아 기술공여 건의

- 1989.1.31. 주모리타니아대사는 1989년도 대외기술공여사업의 일환으로 선박기관 전문가 및 어로전문가 각 1명의 파견을 건의
- 1989.12.30. 모리타니아 외무성은 모리타니아 수산인력 자국화정책의 일환으로 해양직업훈련원 실습선에서 기술지도할 교관요원의 파견을 요청
- 1990.2.20. 주모리타니아대사는 1990년도 대외무상원조의 일환으로 선원훈련을 위한 교관요원 4명(어로기술 2명, 선박기관 2명)의 파견을 건의

2. 농약 살포기 기증식

- 농약 살포기 950점 기증식을 1989.11.7. 거행
- 주모리타니아대사 및 농촌개발부차관 참석
- TV 및 신문 등 언론의 취재 및 보도

3. 승용차 기증식

- 외무부에서 1990.4.8. 소나타 5대 기증식 거행
- 외무부차관, 중동아국장 등 참석
- TV, 라디오 및 신문 보도

4. 방송차량 기증식

- 국영 TV방송국에서 1990.5.6. 방송용 차량 기증식 거행
- 국영 TV방송국 총국장, 라디오 방송국 총국장 등 참석

5. 체육용품 기증식

- 서울올림픽 2주년 기념행사로 1990.9.17. 체육용품 기증식 거행
- 모리타니아 올림픽위원장 등 참석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4 / 18 / 1-60

정부의 1989~90년 중 니제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니제르 가뭄 피해 구호원조 집행 결과

- 1986년도 니제르 가뭄 피해 구호를 위한 무상원조 자금 11만 달러 집행
- 가뭄 피해 대책 주관부서인 니제르 축산수자원부는 우물공사 시공업체를 선정, 시행
 - 1987.5~88.9월간 11개소에 착공하여 2개소 수맥 미발견, 9개소는 완공
- 니제르 정부기관 안내로 주니제르대사관 측이 우물현장을 답사, 9개의 우물이 촌락 주변에 위치해 있고 식수난 해결에 기여함을 확인

2. 1989년도 무상원조 차량 지원

- 니제르 외무성은 1989.1.31. 1989년도 무상원조를 요청
 - 요청사항: 지프차 2대 포함 차량 20대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신임장 제정 계기 겸임국인 니제르 방문 시(1990.5.5.) 차량 기증식을 거행
 - 포니엑셀 18대, 지프차 2대

3. 의료용품 기증

- 의료용품 16상자를 1989.5.31. Niamey 병원에 기증

4. 차량 기증식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겸임국인 니제르에 출장하여 1990.11.14. 차량(소나타 13대) 기증식을 거행
 - 동 기증식에는 니제르 외무부차관 등 참석

146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국의 대파키스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4 / 19 / 1-42

정부의 1990년 중 파키스탄에 대한 농업장비 및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지원 관련 내용임.

1. 농업장비 지원

- 1990.6.28. 파키스탄 농림부장관은 1990.6.28. 주파키스탄대사에게 농업관계 사업 중 관개, 농산품 보존, 농약합작 등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 희망 의사를 표명
 - 특히, 관개면에서 인더스강을 이용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3만 평 규모의 시범농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성능을 시험하여 주기를 요망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약 15만 달러가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의 지원을 건의

2. 경제 지원

- 파키스탄 측은 1990.9.13. 중동위기로 인해 국제수지의 적자, 외환보유고 부족 등으로 대파키스탄 경제협력국의 긴급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11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요청
- 외무부는 9.25. 파키스탄 측의 경제 지원 요청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IOM(국제이민기구)에 50만 달러 공여 예정임을 주파키스탄대사에게 통보
- 파키스탄 외무성은 11.1. 브리핑을 통해 걸프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선진우방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

한국의 대소말리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4 / 20 / 1-28

정부의 1987~90년 중 소말리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소말리아의 원조 및 투자 요청

- 1987.11.24.~25. 한·소말리아 실무회담에서 소말리아 측은 의전차량 40대 지원을 요청함.
-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부장은 1989.9월 제44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소말리아 외무장관회담에서 1988년 한·소말리아 수교 시 한국 정부가 1천만 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음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한국의 무상경협 액수 배증 및 민간기업의 투자 요청 - 한국 측은 정부차원에서 기술훈련과 무상공여분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민간분야 협력 사업 증진을 위해서는 소말리아 측이 한국 기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경주 필요
- 소말리아 정부는 1989.10월 주소말리아대사에게 무상원조로 승용차, 복사기, 사무용 컴퓨터, 영문 타자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990.10월에는 차량보다는 민생경제에 중요한 쌀, 식용유, 설탕 등 식품 지원을 요청함.

2. 정부의 무상원조

- 주소말리아대사는 1988.5.14. 한국 승용차 40대를 소말리아 정부에 기증함.

146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국의 대수단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4 / 21 / 1-134

정부의 1986~90년 중 수단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6년도 무상원조

- 수단 정부는 1986.7.3. 주수단대사관을 통해서 하르툼시에 픽업차량 60대와 덤프트럭 5대 지원을 건의함.
 - 1987.4.19. 수단 농업성에서 픽업차량 60대 기증식이 거행되었으며 4.25. 수단 외상이 한국 측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2. 1987년도 무상원조

- 수단 문교장관은 1987.5.9. 수단의 노후화된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복구사업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옴.
 - 주수단대사는 6.16. 수단 경찰대학에 태권도복 150벌을 전달하고 7.8.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10대의 앰볼런스 차량 지원 기능을 통보함.

3. 1988년도 무상원조

- 수단 청년체육부장관은 1988.6.25. 스포츠 용구가 없어 청소년 교육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수단 외무차관은 7.20. 수단 외무성 건물의 화재로 제반 집기나 사무기기가 못쓰게 되었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주일본대사는 주한 수단대사(도쿄 상주)가 8.4.~5. 수단에 내린 폭우로 큰 홍수피해를 입었었다며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는 구상서를 외무부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 주수단대사는 12.31. 수단 보건장관에게 수해 관련 지원 의약품 내용과 도착을 통보한바, 동인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주)대우는 25,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수단 정부에 무상지원함.

4. 1989~90년도 무상원조

- 유니세프 주한대표는 1989.5.8. 외무부를 방문하여 유엔의 수단 난민구호활동과 관련, 트럭 20대 지원을 요청하는 유니세프 사무처장 서한을 전달함.

한국의 대우간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4 / 22 / 1-9

정부의 1990년 중 우간다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90년도 무상원조 물품 기증식

- 무상원조 기증식이 1990.4.4. 우간다 농업부에서 거행
 - 원조품: 경운기 42대, 적재함 20대, 펌프 15대
 - 동 기증식에는 Kidekka 우간다 총리를 비롯한 농업부 인사 등이 참석
 - 국영 UTV는 저녁 뉴스 시간에 동 총리의 시운전 장면 등 거증식 거행을 보도
- 무상원조 물품 추가 지원 기증식이 4.11. 주우간다대사관저에서 거행
 - 원조품: 담요 1900매
 - 주우간다대사는 Atubo 외무담당국무상에게 물품을 인계

2. 1990년도 무상원조 건의

- 주우간다대사는 1990.9.28. 1990년도 무상원조를 건의
 - 원조품목: 경운기 30대, 트레일러 15대, 경운기 부속품
 - 금액: 10만 5천 달러
- 주우간다대사관에 대한 1990년도 무상원조 배정액은 13만 5천 달러로서 차액 3만 달러는 10월 중 방한 예정인 외무장관의 원조 요청에 대비, 유보

3. 1990년도 무상원조 잔여분 집행

- 1990.10.24. 서울에서 개최된 한·우간다 외무장관회담에서 1991년도 무상원조로 국산 승용차 제공을 협의
 - 우간다 외무성은 11.20. 무상원조로 국산차량(1991년도 및 1992년도 각기 소나타 6대 및 베스타 미니버스 2대)을 수령하기를 희망한다는 공한을 주우간다대사관에 송부
- 외무부는 1990년도 집행 잔액이 3만 달러로 승용차 2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주우간다대사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

146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1990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4 / 23 / 1-26

정부의 1989~90년 중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9년도 무상원조

-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88.12.20. 1989년도 대부르키나파소 무상원조를 건의
 - 원조 품목: 승용차 4대, 복사기 5대, 전동타자기 5대, TV 3대, VTR 3대, 오토바이, 워키토키
- Zongo 부르키나파소 진흥부장관은 1989.2.24. 주부르키나파소대사 면담 시 국산물품 지원을 요청
 - 지원요청 물품: TV 3대, VTR 3대, 녹화카메라 3대, 카세트 50개
-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5.29. 부르키나파소 경제진흥부에 TV 3대, VTR 3대, 비디오 카메라 1대를, 대통령실에 TV 3대, TVR 3대 전달함을 보고

2. 1990년도 무상원조

- Somda 부르키나파소 외무차관, 재무차관, 외무부 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0.6.28. 무상원조 기증식이 거행
- 이광재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서기관이 동 기증식에 참석하여 기증사를 하고 부르키나파소 재무차관이 답사한 후 물품을 전달
- 국영 TV는 동일자 정규 뉴스시간에 약 2분간 기증식을 보도

헝가리 및 폴란드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G24 회의 참여문제. 전2권 (V.1 1989.7-1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4 / 24 / 1-158

1989년 중 헝가리와 폴란드 경제원조계획 논의를 위한 제1~2차 G-24 고위급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제1차 고위급 회의(1989.8.1.)

- 참가국(24)
 - EC(구주공동체) 회원국(12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6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 개최 목적
 - 폴란드 및 헝가리 경제개혁지원을 위한 서방 각국의 원조방안 조율
- 토의 내용
 - 폴란드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
 - 폴란드에 대한 중기 식량원조 계획 및 농산물판매 배급구조 개혁
 - 헝가리 및 폴란드와의 경제, 무역, 협력 등 3개분야에서 각국별 조치사항 검토(무역협정 체결 등)
- 합의 조치사항
 - 1억 2천 5백만 ECU 상당 대폴란드 긴급 식량원조 계획 채택
 - 헝가리와의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시행(EC 측은 동 협정 양허리스트에 농산물 포함 및 공산품 분야 수량제한 철폐 일정 촉진을 위한 협정 개정 가능성을 검토중임)
 - 폴란드와의 무역경제협력협정 교섭 완료

2. 제2차 고위급 회의(1989.9.26.)

- 참가국(24)
 - EC 회원국(12개국), EFTA 회원국(6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및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 등 옵서버로 참석
- 주요 원조계획 확정내용
 - EC 집행위의 6억 ECU(약 6억 5천 달러) 지원
 - 헝가리, 폴란드의 대EC 수출 특혜 부여
 - BEI(유럽투자은행), 유럽 석탄 및 철강위원회 차관의 대헝가리 및 폴란드 투자에 대한 Venture Capital 금융 지원
 -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
 - 환경보호 및 유적지 보존을 위한 협력 강화
 - 폴란드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146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헝가리 및 폴란드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G24 회의 참여문제. 전2권 (V.2 1989.11-90.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4 / 25 / 1-197

1989~90년 중 헝가리와 폴란드 경제원조계획 논의를 위한 제1~2차 각료급 회의 및 제4~5차 G-24 고위급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제1차 각료급 회의(1989.12.13.)

- 참석자
 - EC(구주공동체) 회원국(12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6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외무장관 및 헝가리, 폴란드 외무장관
 - 옵서버: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 등
- 주요 토의내용
 - 동독, 체코, 불가리아, 유고 4개국의 G-24 원조대상 포함(민주화 및 시장경제 체제 도입 등 필요한 정치경제개혁 추진 조건)
 - 대폴란드 통화안정기금 10억 달러 및 대헝가리 국제수지개선 지원 10억 ECU 차관 공여
 - 동유럽개발은행 설립 계획

2. 제4차 고위급 회의(1990.2.16.)

- 참석자
 - EC회원국(12개국), EFTA회원국(6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 24개국 대표
 - 옵서버: IMF, 세계은행, OECD 대표 등
- 주요 토의내용
 - 동독, 체코, 불가리아, 유고, 루마니아 5개국의 G-24 원조 대상국 확대
 - * 5개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개혁 추진 계획 및 구체적 지원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 동유럽개발은행 설립 사전대책

3. 제5차 고위급 회의(1990.5.22.)

- 주요 토의내용
 - EC 집행위의 중·동유럽 국가 대상 G-24 경제원조 행동계획 검토
 - 5개 우선 지원분야 설정(시장접근 개선, 식량원조, 기술훈련, 환경보전, 투자증진)
 - 제2차 각료급 회의에 중·동유럽 7개국 각료 초청



4. 제2차 각료급 회의(1990.7.4.)

- 주요 결정사항

- 동독, 체코, 불가리아, 유고 4개국에 대한 G-24 원조계획 적용(루마니아는 제외)
- EC 집행위원회의 G-24 지원 행동계획 승인

5. EC 집행위원회는 1989.12.14. 헝가리·폴란드 지원을 위한 G-24 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헝가리, 폴란드 정부와 이미 약속한 경험지원 이행문제로 인해 신규기여 없이 정회원국 가입이 가능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EC 집행위원회 측에 통보

1471

대개발도상국 원조공여국 회의 참석 요청 및 대응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4 / 26 / 1-186

1989~90년 중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각 개도국 정부들이 대개도국 원조공여국 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 옴.

1. 대개도국 원조공여국 회의 개최내역

- 대가이아나 Support Group 회의(제1차: 1989.11.30., 워싱턴, 제2차: 1989.12.21., 파리)
- 대우간다 철도개선사업 협조옹자 회의(1989.4.3.~4., 런던)
- 대기니 Garafir유역 개발사업 원조공여국 회의(1989.12.18.~19.)
- 대나미비아 원조공여국 회의(1990.6.21.~22., 뉴욕)
- 대모리셔스 원조공여국 회의(1990.3.21.~22., 제네바)
- 대모리타니아 원조공여국 회의(1989.7.26.~27., 파리)
- 대모잠비크 원조공여국 회의(1989.4.26.)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개발 원조회의(1990.7.2.~4.)
- 대앙골라 원조공여국 회의: 미정
- 대세네갈 원조공여국 회의(1989.5.10.~12.)
- 대에티오피아 원조공여국 회의(1990.12월, 아디스아바바)
- 대카메룬 차관공여국 회의(1990.2.27.~28., 파리)
- 대케냐 원조공여국 회의(1989.10.18., 나이로비)

2. 대개도국 원조공여국 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 온 데 대해 한국 정부는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입단계에 이르거나 경제협력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가 있을 때까지는 다자간 원조 공여국 회의 불참 원칙을 정립하고 대응하기로 함.

대기니비사우 원조공여국 회의. Lisbon(포르투갈), 1984.5.21.-23.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20-104 / 27 / 1-56

정부는 1984.5.21.~23.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대기니비사우 원조공여국 회의에 김기수 주포르투갈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UNDP(유엔개발계획)가 파리에서 개최된 저개발국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이 기니비사우 정부의 경제 안정화 및 제1차 개발계획(1983~86년)에 필요한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원조공여국 회의를 1984.5.21.~23. 포르투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원조공여국 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요청해 온바, 이에 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함.

2. 참가국

- 미국, 한국, 스웨덴, 네덜란드, 북한, 프랑스 등(33개국) 및 유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33개)

3. 정부 훈령

- 한국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발경험을 나눌 용의가 있으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분의 협력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
- 기니비사우 측이 제시할 개발 계획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 방안을 연구

4. 주요 결과

- 기니비사우 정부는 19개 분야 60개 사업에 소요되는 4억 달러의 자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
 - 미국 1천만 달러, 네덜란드 1천 3백만 달러, 브라질 8백만 달러, 서독(독일) 5백만 달러, 스웨덴 1천 8백만 달러의 지원검토를 약속하고 독일, 일본 등은 식량지원 검토를 공약함.

5. 한국 대표단 활동

- 대표단은 남남협력의 기본 원칙하에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의사를 밝히고 기니비사우 정부의 프로젝트를 검토 예정이라고 발언함.

147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중화민국의 해외경제협력 발전기금 설립 및 운영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5 / 1 / 1-116

1987~90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의 IDCF(해외경제협력기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임.

1. 대만 IDCF(해외경제협력기금) 파악 지시

- 외무부는 1987.8.24.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에 참고하기 위해 대만 정부의 IDCF 규모 및 운용 방법 등의 파악을 지시

2. IDCF 주요 내용

- 설립 및 조직
 - 대만 경제부는 1988.2.4. 관계 기관 회의에서 IDCF 창설계획 초안 확정 후 10.5. IDCF 설립
 - 경제부가 IDCF를 주관하며 기금심사위원회는 경제부, 외교부, 재정부, 중앙은행 총재 등 7명
- 기금 조성 및 운용
 - 5년간 10억 4,800만 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며 1990년도 2억 2천만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
 - 기금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무역증진, 대만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기술협력에 지원 될 예정이며 지원분야는 인프라, 농업, 공업 개발사업 등임.
 - 기금은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개도국에 대부, 직접 혹은 간접 투자, 투자의 보증, 국제금융조직과 공동 대부 등으로 운용 예정
- 실적
 - 1989.10.31. 현재 22개국으로부터 30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코스타리카 및 파나마에 가공수출단지 설립 등 5건(1억 1,754만 달러) 지원

국내기업 중국 투자 및 지사 설립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5/2/1-92

1987~90년 중 국내기업의 중국 투자 및 지사 설립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광저우시 투자유치단 설명회

- 광둥성 광저우시 투자유치단이 1988.1.25.~2.3. 홍콩을 방문하여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캐나다, 독일그룹과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

2.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 한두수산은 홍콩 소재 등보산 자문공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등보산 어업공사를 설립하고 중국연안에 출어 조업을 함.
- 조선무역은 홍콩 POTECKA LTD사와 합작하여 선전에 완구제조공장을 설립함.
- 대우는 푸저우시(福州市)에 냉장고 합작법인을 설립, 공장을 건설함.
- 제일제당은 홍콩회사를 통해 중국 측과 계약, 조미료 플랜트를 수출함.

3. 중국 내 지사 설치

- 상공부는 외무부에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지사 설치에 대해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통보
 - 력키금성상사, 포항종합제철, 코오롱상사, 금성사, 현대종합상사, 중정상사, 동남상사, 진우 피혁공업 등 기업의 베이징지사 또는 사무소

147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중국계 기업 한국지사 설립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5/3/1-130

1988~90년 중 중국계 기업의 한국지사 설립 및 관계자의 비자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만업실업 유한공사

- 만업실업 유한공사는 1988.9.6. 상공부에 서울지사 설립을 신청
 - 설립 목적: 중국 심양시의 대외경제 무역창구 역할 및 한·중국 경제교류 기여
- 상공부는 9.21. 동 기업의 한국 내 지사 설립 관련하여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0.4. 이의 없음을 회신

2. 중대 주식회사

- 고려합섬(주)는 상공부에 중국이 출자한 일본 현지법인인 중대(주)의 한국 내 지사 설립을 신청
 - 설립 목적: 기술교환의 증대, 한·중국 간의 방직무역분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일본 및 홍콩을 통한 한국과의 중계무역을 위함.
- 상공부는 1988.11.4. 동 설립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1.8. 이의 없음을 회신

3. 중요 유한공사

- 중요 유한공사는 1988.10월 한국은행에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를 신청함.
 - 설립 목적: 한국산 공업제품을 다량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동시에 한국에 중국산 각종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
- 상공부는 12.1. 중국계 홍콩기업 중요 유한공사의 한국 내 지사 설립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2.7. 이의 없음을 통보

4. 중국계 무역상사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만업실업 유한공사 직원 2명
 - 법무부는 1989.1.31. 외무부에 홍콩 소재 만업실업 유한공사 직원인 중국인 2명이 전자부품 합작 공장설립 관련 협의 및 상담차 1988.7.4. 입국한바, 서울지사 설립준비를 위하여 1년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3. 법무부에 상기 2인의 한국 내 활동이 한·중국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체류기간 연장에 이의 없음을 통보

- 중요 유한공사 직원 3명 및 길죽 유한공사 직원 2명
 - 법무부는 1989.2.3. 외무부에 중국자본 홍콩법인인 중요 유한공사 및 중국·볼리비아의 합작 투자회사인 길죽 유한공사 직원 5인의 한국 내 지사 설립 준비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8. 법무부에 상기 5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에 이의 없음을 통보

5. 체류연장 불허조치

- 법무부는 1989.2.25. 상기 만업실업 유한공사 등 중국계 무역상사원 7명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체류연장 불허조치를 내림.
 - 상기 7인은 무역상담 목적으로 단기사증(기간 30일)을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며, 사증 신청 당시 방한기간 중 무역사무소 개설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함.
 - 그러나 입국 후 국내회사들과 무역상담 외에 한국은행에 지사 설립 신고를 하는 등 무역 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함. 지사 설립 허가에 대해서는 상공부 등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음.
 - 동인들은 지사 설립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임대한 후 지사 개설업무를 위해 1989.2.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함.
- 이에 법무부는 동일자로 상기 7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내 지사 설립 허가가 유보된 상태이며 단기사증 발급시 방한기간 중 무역사무소 개설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3.2.까지 출국하도록 지시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5 / 5 / 1-301

1989~90년 중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임.

1. 운용방향 및 계획

- 재무부는 EDCF 중장기 운용방향(안)을 마련하고, 1989.2.10. 외무부 의견 회시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3.10. 동 운용방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보
 - 미수교국에 대한 지원방법은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간 협정 체결 전제하에서만 가능
 - EDCF 결정과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실리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및 정치·외교적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EDCF 전담 법인체 등 신설 논의는 시기상조임.

2. 중점지원국 선정 및 분류

- 재무부는 1989.4.7. EDCF 지원대상 및 중점지원국 선정방안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함.
 - 지원대상국을 A, B, C 3등급으로 분류하고, A국에 비중을 두어 지원하되 지역 안배를 기한다는 데 합의
 - 미수교국은 관계개선 등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상국 분류기준을 떠나 별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합의
 - 지원대상국 분류기준 평가 시 외교적 고려는 평정으로 할 성격이 아니며, 별도의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운용하도록 합의
- 재무부는 1989.6.2. 대외협력기금 중점지원국 선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실무회의 개최
 - 그룹운영은 융통성 있게 하되 A그룹에 대하여서는 적극적 사업 발굴노력 및 사전약속도 가능하도록 운영
 - 우선지원국은 아주(4), 중동·아프리카(2), 남미(2)로 선정

3. 관계규정 개정

- 운용관리규정 개정내용 및 신설된 대외경협기금 지원조건 운영지침은 1989.12.26. 대외경협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방글라데시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요청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5 / 6 / 1-311

1987~90년 중 방글라데시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요청에 관한 내용임.

1. 메탄올 플랜트 수입

- 방글라데시 기획부는 1988.12.4.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앞 공한으로 메탄올 플랜트 수입을 위한 EDCF 자금 4,5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함.
 - 렉키엔지니어링(주) 측은 4월 채산성 악화로 가동을 중단한 메탄올공장을 대외수출하고자 방글라데시 측과 협의를 개시
- 외무부는 1989.1.30. 방글라데시 측의 메탄올 플랜트 수입을 위한 EDCF 지원 요청 건은 관계 부처에 의뢰, 검토 중임을 통보

2. 교량 건설

- 사업명: 한·방글라데시 우정의 다리 건설(브리강가 제2교량 건설)
- 사업내용 및 규모: Dhaka시 남서부 Babu Bazar지역에 1,500만 달러 상당 교량건설
- 지원요청 경위
 - 1987.7월 Syedizzaman 방글라데시 재무장관은 주방글라데시대사 면담 시 우정의 다리건설을 위한 기금지원을 정식으로 요청
 - 1987.8월 Choudhury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이 공식 방한 중 외무장관회담 및 공동위원회 석상에서 동 교량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
 - 대통령 예방 시에도 요청한바,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
- 건설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 비용이 당초 계획시 1,550만 달러에서 6,360만 달러로 대폭 증대함에 따라 협조용자 확인 시까지 보류하기로 결정
- 사업 포기
 -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환사정 악화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77개 사업계획을 연기 또는 보류 조치한바, 브리강가 제2교량 건설사업은 포기하기로 결정

147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대미얀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 번호 2020-105 / 7 / 1-417

정부는 1990년 중 미얀마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미얀마 정부는 1987.1월부터 EDCF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1988.8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다가 1989년 이후 아래 4개 사업에 대한 4,520만 달러의 EDCF 지원을 재차 요청함.
 -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750만 달러, 송배전망 개선사업 1,490만 달러
 - 철도차량 구입사업 1,880만 달러, 일반전화기 구입사업 400만 달러
- 1990.4.3. 재무부 주최 관련 부처 회의 결과, 미얀마는 외채상환능력이 취약하고 한국과의 경험실적이 미미하나 최근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체제도입 등을 고려하여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및 송배전망 개선사업은 추진하고 철도객차 수송력 증강사업은 보류, 지방통신시설 확충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4월 중 정부조사단을 미얀마에 파견하기로 함.

2. 정부조사단 파견(1990.5.2.~9.)

- 단장: 재무부 경제협력과장
- 목적: EDCF 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관련 사항 조사 및 협의
- 일정: 미얀마 외무부차관 주재 하에 기획재무부, 체신청, 전력청 관계자와 협의, 미얀마 발전소, 변전소, 전환교환국 시찰
- 건의사항
 - 전화통신망 확충사업(750만 달러) 및 송배전망 개선사업(1,500만 달러)을 연리 2.5%, 상환 기간 25년으로 지원 건의

대코모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 번호 2020-105 / 8 / 1-226

1987~90년 중 대코모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내용임.

1. 금융지원 요청 배경

- 코모로 정부는 1987.4월 자국 유일의 도서간 운반선이 침몰되어 선박 1척(LCT 250톤급)을 (주)대우로부터 긴급 구매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청
- 1987.4.9. 압달라 코모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차중 대화에서 금융지원을 요청한바, 동 대통령은 동 문제를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2. 코모로 측 요청 및 대응

- 코모로 외무부장은 1987.7.2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참석차 파리 경유 시 주프랑스대사를 면담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7.24. UNCTAD 총회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에게도 요청함.
- 압달라 대통령은 7.31. 한국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송부, 선박구매를 위한 차관 지원을 재차 요청함.
- 한국 정부는 1988.6월 코모로에 EDCF 조사단을 파견한바, 동 조사단은 압달라 대통령, Kafe 외무부장관 등을 면담함.
- 외무부는 8.27. 주프랑스대사에게 8.26. 개최된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동 기금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최종 결정에 참고하도록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

3. 대코모로 선박지원사업 종료

- 주프랑스대사는 1989.3.31. 주재국 외무부 관계자로부터 코모로가 프랑스, 벨기에와 각각 선박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면서, 코모로에 대한 지원은 신중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 재무부는 5.4. 외무부에 코모로 측이 이미 프랑스, 벨기에와 각각 1척의 LCT 선박 지원 약속을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대코모로 선박지원사업의 종료를 통보

148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대에콰도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5/9/1-72

1988~90년 중 에콰도르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에콰도르 정부의 EDCF 요청사항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8.6.21. 주재국 외무부의 EDCF 차관 요청내용 보고
 - 1,000만 달러 규모의 선박엔진, 어로장구, 어항 개축, 관개용 펌프(제1안), 준설선, 경찰 및 체신용 모터사이클, 트랙터 등(제2안)
 - 규정에 따른 신청 지시 및 EDCF 차관 집행 원칙 안내
- 1990.3월 에콰도르 외무차관은 병원건설 및 Azuay 판유리공장건설에 EDCF 공여 요청
 - 병원건설은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상 지원 불가
 - 판유리공장건설 지원은 에콰도르 정부의 공식 지원요청서 접수 후 검토 가능

2. Azuay 판유리공장건설에 EDCF 자금 공여 요청

- 에콰도르 정부는 1990.4.23. 판유리공장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요청
 - 총사업비 22.7백만 달러 규모 사업, 기금 요청 금액은 미정
- 주에콰도르대사는 공장건설에 한국기업이 기술참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750만 달러 지원을 건의
- 수출입은행은 7.5. 에콰도르 판유리공장사업에 대한 예비심사조서서 제출

대피지(Ba / Sigatoka 가교 및 접근도로 건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전2권 (V.2 1989-90)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5 / 11 / 1-522

1989~90년 중 피지의 Ba-Sigatoka 가교 및 접근도로건설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내용임.

1. EDCF 정부조사단 파견(1989.1.13.~28.)

- 파견국: 피지, 파푸아뉴기니
- 대표단(단장): 박상조 재무부 경제협력과장
- 관찰 및 평가
 - 재정위거나 외채위기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과 단교한 바 있어 외교적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사업이 최근 각의에서 의결한 4대 최우선 사업임을 확인함.
- 건의
 - 동 사업에 대한 EDCF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출입은행 실무팀 파견

- 수출입은행은 1989.3.24. 외무부에 피지의 Ba-Sigatoka 교량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심사팀을 파견하고자 협조를 의뢰한바, 외무부는 동일자로 주피지대사에게 정준모 수출입은행 경협기금 부부장의 Tukituku 피지 공공사업성차관 앞 서한, Legal Questionnaire 및 Project Questionnaire을 송부함.
- 수출입은행 EDCF 실무팀은 1989.4.12.~24. 피지를 방문함.

3. EDCF 지원방침 통보

- 재무부는 1989.7.10. 외무부에 피지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확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이를 해당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청함.
- 외무부는 7.22. 주피지대사에게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방침을 주재국에 통보하도록 지시한바, 주피지대사는 주재국에 이를 통보하고 외무성이 회신한 수락 공문을 송부함.

4. 백영기 주피지대사와 Josefata Kamikamica 피지 재무경제기획원 장관은 1990.5.1. Ba and Sigatoka Replacement Bridges 사업 관련 EDCF 제공에 관한 정부간 협정(exchange of note)에 서명함.

148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대온두라스(지방도시 식수정화사업 등)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 번호 2020-106 / 1 / 1-63

1989~90년 중 온두라스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온두라스 정부의 EDCF 요청

- 1989.4.19.~23. Carlos Lopez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시 2건의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요청
 - 온두라스 국립문서보관소 건립사업: 총 286만 2천 달러 지원 요청
 - 산페드로 솔라시 식수정화사업 및 도시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123만 달러 지원 요청

1484

2. 온두라스 EDCF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

- 산페드로 솔라시 식수정화사업 및 도시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요청에 대해, 1989.6.19. 주에콰도르대사는 현 정부 임기가 5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아 신정부가 재요청할 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보고

대인도네시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 번호 2020-106 / 2 / 1-90

1987~90년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인도네시아 전력청 발주 공사

- 송전설비 및 발전소 공급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조건 완화 요청(1987.9월, 삼성물산)
- 북수마트라지역 변전설비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EDCF 차관 요청(12월, 현대종합상사)
 - 4.21. 시행 입찰에 참가 1위로 낙찰(약 1,500백만 달러 규모)

2. Batam섬 개발 계획(Hang Nadim공항 3단계 사업)

- 1990.5월 인도네시아 과기처장관은 Batam섬 Hang Nadim공항 3단계 사업에 EDCF 요청
- Hang Nadim공항 3단계 사업은 1억 3천 7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이 중 5천만 달러의 EDCF 차관 요청

3. 향생물질 생산 프로젝트

- 1990.4월 인도네시아 과기처 및 기술평가응용청은 향생물질 생산 프로젝트에 EDCF 차관 요청
 -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모든 기술은 한국 4개 제약회사가 이미 보유 중
- 프로젝트 규모는 총 2천 5백만 달러 규모(5천만 달러 규모로 변경)

148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대이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6 / 3 / 1-28

1990년 중 이란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대이란 통신분야 협력사업 제안

- 주이란대사관은 1990.2월 정보통신분야의 대이란 진출을 위해 2건의 협력사업 건의
 - 한·이란 공동통신연구·조사개발사업: 195만 달러 규모
 - TDX Pilot Project(테헤란내 1만 회선의 TDX 교환기 시범운용): 400만 달러 규모
- TDX Pilot Project 사업은 EDCF 자금으로 지원 검토 건의

1486

2. 대이란 통신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의견

- 이란은 1인당 국민소득이 3,590달러로 EDCF 기금 지원 부적격 국가에 해당(재무부)
 - 주이란대사는 실질환율 적용시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0달러에 불과하다는 의견 제시
- 한·이란 공동통신연구·조사개발사업은 체신부의 TDX 대외수출 등과 관련하여 검토
- 이란 정부의 전자교환기 생산 및 설치에 관한 각국의 제안(한국 포함) 비교검토 및 결정 후 EDCF 자금 신청 추진

대코트디부아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6 / 4 / 1-40

1988~90년 중 코트디부아르 및 니제르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경험자금 지원 요청

- 1988.11월 행정수도 Yamoussoukro 소방서 건립(1천만 달러 규모)에 자금지원 요청
 - EDCF 기금은 경제안정과 산업발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소방서 건립지원은 부적합하다는 입장
- 1989.10월 도로건설사업(90km)에 EDCF 자금 신청(약 1,800만 달러) 검토

2. 니제르 정부의 교량공사 건설지원 요청

- 1990.12월 니제르 수도 Niamey 제2교량 건설사업에 3,360만 달러의 EDCF 차관 요청

148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요르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요청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6 / 5 / 1-62

1987~90년 중 요르단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아카바 발전소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 한국중공업과 미국회사 공동으로 1987.3월 아카바 발전소 2단계 공사 스팀발전기 입찰에 참여
 - 요르단 전력자원부 장관은 5월 한국기업 수주를 위해 EDCF 금융 제공 요청

2. 요르단 정부의 EDCF 차관 신청

- 요르단 정부는 1987.10월 North Ghors Conversion Project 지원 요청
 - 총 사업비 2,600만 달러 중 1,800만 달러 지원 요청
- 주요르단대사는 1988.1월 North Ghors Conversion Project 지원 재건의
 -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요르단에 대한 건설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금 요청액이 과도해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1990년 요르단 정부의 EDCF 차관 신청

- 1990.11월 요르단 기획성장관은 요르단 WADI-ES-SIR지역의 폐수수집처리공장 등 지원 요청
 - 12.11. 요르단 기획성은 폐수수집처리공장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 1991.2.1. 대요르단 EDCF 지원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 개최

케냐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요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6 / 6 / 1-186

1989~90년 중 케냐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케냐 정부의 EDCF 기금 사업 지원 요청

- 버스 200대 구입사업 지원 요청
 - 1989.7.21. 케냐 정부는 수도 나이로비지역 대중 수송문제 해결을 위해 EDCF 자금에 의한 200여 대 대형버스(현대자동차) 구입 의향과 EDCF 자금 요청(1,300만 달러 규모)
 - 9.13. 신청서류 제출, 케냐 정부의 우선순위사업
- 기술훈련원 설립사업 요청
 - 1989.9~10월 기술훈련원 설립 사업 타당성 조사단 파견(타당성 조사 보고서)

2. 현대버스 구입 지원 사업 검토

- 1990.4.3. 관계 부처 실무회의에서 버스구입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검토 유보
 - 버스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운영가능한 수익성 사업으로 ODA(공적개발사업)로는 부적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개발금융기구 및 일본도 버스구입사업에 대한 지원기피 경향
- 케냐 정부는 5월 Moi 케냐 대통령 방한 전 버스구입사업 확정을 위해 대안 제시
 - 구입 대수를 140대로 축소하고 기술이전을 강화하는 방안 제안

3. 케냐 대통령 방한과 기술훈련원 사업 추진

- 1990.9.17.~20. Moi 케냐 대통령 방한 관련, 케냐 정부에 버스구입사업을 기술훈련소 설립에 대한 EDCF 지원 사업으로 대체 유도
 - 9.13. 케냐 외무성은 한국의 EDCF 자금에 의한 기술훈련소 설치에 관한 제안서 제출
 - 총사업비 약 2천만 달러, 사업기간은 2년(1991.6~94.6월)
-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사업에 대한 EDCF 지원에 관해서는 적극 추진하기로 관계 부처 간 합의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전2권 (V.1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6/7/1-188

1989~90년 중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관련 내용임.

1. 경위

- 농림수산부는 1989.12.12. 풍작으로 쌀 재고보유량이 늘어나 약 40만 톤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쌀 교역에 관심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희망조건, 교역 희망 물량 등을 파악하여 화신 요청함.

1490

2.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각국 입장

- 인도: 한국이 쌀 수출을 원할 경우 1kg의 시험용 쌀(최소 40부대의 쌀에서 조금씩 모은 복합 견본)을 명세, 등급 및 가격조건, 인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제시 요청
- 이란: 통일벼 계통 수입 가능성 검토동의, 수입 조건은 현물 차입, 장기차관, 구상무역방식을 희망, 수입가능성 검토를 위해 국산 쌀의 명세, 견본, 판매조건, 가격 등 제시 희망
-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쌀 자급자족 또는 기타사정으로 한국산 쌀 수입 불원
- 미국 측은 한국산 쌀 수출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생산가가 비싼 한국산 쌀의 국제시장 진출은 수출 농산물 보조금 문제와 덤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

3. 쌀 수출 신중 입장 통보

- 외무부는 1990.2.16. 미국 측이 국내시세가 국제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점을 들어 쌀 수출 혹은 대여는 수출보조금 및 덤핑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쌀 수출 추진 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야기 등을 고려,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주인도, 주이란대사에게 통보

4. 쌀 수출 지침 검토

- 1991.2.22. 개최된 대몽골 식량지원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대외 쌀 수출 및 지원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음.
 - 쌀 수출은 대내외 사정 감안 시 불가능
 - 장기 대여 및 현물차관 형태의 따라 제공도 현실적으로 곤란
 - 원조지원 문제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등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전2권 (V.2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6/8/1-182

1989~90년 중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0.2.7. 주필리핀대사는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20만 톤의 쌀을 긴급 수입하도록 필리핀 대통령이 승인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필리핀 농무부 차관보가 쌀 무상원조 혹은 장기저리 현물 차관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
- 1990.2.9.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필리핀에 장기저리 차관 제공 시 미국 측 반응을 타진하도록 지시
- 1990.3.27. 필리핀 정부는 쌀 차관 교섭을 위한 협상단 파견을 제의하고 견본 쌀 송부를 요청

2. 미국 측 입장

- Crowder 미 농무부차관은 1990.4.20. 방한 중 농림수산부 차관 및 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면담 시 반대의를 표명
 - 세계 쌀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뿐만 아니라 미국 농민에게도 타격
 - 한국 국내가격이 높은 쌀을 국제 시장가격 이하로 차관을 제공하려는 것은 덤핑으로 간주
- 1990.5.4. 주미국대사는 관련 부처 인사를 면담하고 결과를 보고
 - 백악관 Paal 보좌관: 한국의 쌀 제공이 미국 쌀 재배 농가를 자극하여 중간선거에 불리한 영향 초래 우려
 - Adam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한국이 대필리핀 쌀 차관을 강행한다면 미국업체가 틀림없이 미 통상법 301조를 청원하여 USTR 조사가 불가피

3. 쌀 수출 및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지침

- 경제기획원은 1991.3.5.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쌀 수출 및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을 통보
 - 쌀 수출은 대내외 여건 고려시 불가능
 - 쌀의 장기대여 및 현물차관 공여도 불가능
 - 다만, 긴급지원 및 소량원조 등의 무상지원 방식은 가능
 - 대북한 쌀 지원 문제는 북 측 제의가 가시화될 때 별도 추진

대페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개발협력2과

MF번호 2020-106 / 9 / 1-268

1987~88년 중 페루어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관련 내용임.

1. 페루어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EDCF 추진 경위

- 1987.8월 페루 외무부는 어선 현대화계획 추진노력의 일환으로 주페루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기금지원 요청 공한을 발송
- 1987.10월 Correa 페루 수산장관이 방한하여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어선구입을 위한 기금 지원을 요청
- 1988.5월 정부조사단이 페루를 방문하여 페루 측 지원요청 규모의 적정성 및 지원 시의 기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1988.8월 수출입은행 심사팀이 페루를 방문하여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
- 1988.12.3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 위원회 심의 의결

2. 페루어선 현대화 사업 EDCF 주요 내용(1988년도)

- 차관액: 980만 달러
- 이자율: 연 3.5%
- 상환기간: 20년
- 차주: 페루 정부
- 적격구매대상국: 한국

대소말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6 / 10 / 1-282

1988~90년 중 소말리아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사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87.11월 한·소말리아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수교에 합의하고, 한국 측은 EDCF 차관으로 1,0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함.
- 1989.4월 소말리아 정부는 주소말리아대사관을 통해 Hombay지역 농업개발사업에 1,000만 달러 및 바데르담 건설사업에 3,0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함.
- 1990.1월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소말리아 정부의 외채 과다 및 원리금 상환 전망의 불투명으로 EDCF 차관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주소말리아대사관에 통보함.
- 1990.7월 외무부는 소말리아 경제사정 및 한·소말리아 외무장관 간 합의내용을 감안하여 소말리아 정부가 적절한 사업을 제시할 경우 3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기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1990.9월 주소말리아대사는 1,000만 달러 공여 대신 1988년부터 매년 소말리아 정부에게 제공해 온 무상원조 액수(25만 달러)를 상향 조정하여 향후 30만 달러씩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함.

2.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한 바데르담 건설사업 관련 예비조사 보고서 책자 첨부

149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6 / 11 / 1-182

1989~90년 중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관련 동향임.

1. 리비아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1989.12.26., 주리비아대사관 회의실
- 참석자: 대사관, 건설업체, 무역업체, 현지법인, 금융기관 대표 등
- 논의내용
 - 리비아 정세 및 경제 전망
 -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상정 의제 토의
 - 리비아 혁명 20주년 기념일 호응 방안
 - 위해(危害) 발생 시 비상대책

2. 리비아 제2차 대수로 공사

- 대수로 공사 2단계 입찰 관련 중동관계 전문지 MEED는 1989.5.26. 및 6.9. 프랑스 DUMEZ 또는 Bouygues사가 유수 유럽업체와 컨소시엄을 결성, 낙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도
- 주리비아대사관은 리비아 외교계에서도 한국업체가 경쟁대상이 되고 있으나 프랑스회사의 교섭력, 리비아의 대서방 접근노력에 비추어 유럽회사에 낙찰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보고
- 리비아 발주처는 1989.8.7.~16. 뱅가지에서 공사의 최종낙찰가격 협상회의를 개최. 초청 참석대상은 동아, 대우, 프랑스 2개 회사 및 인도회사 등 5개사임.
 - 8.31. 동아건설은 총공사비 53억 달러 규모의 제2차 대수로 공사 수주에 성공
- 주리비아대사관은 1990.6월 중 대수로 2단계 공사 선수금 수령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공사 착공 계획이라고 보고

3. 기타 공사 수주

- 라스라누프 석유화학공단 2단계 공사
 - 시공사: 현대건설
 - 공사내용: 연산 8만 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공장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공장 건설
 - 공사비: 1억 3,300만 달러
- 건강연구소
 - 시공사: 대우건설
 - 공사내용: 트리폴리 외곽지역에 실험실 및 부속건물 5개동 건축
 - 공사비: 3,300만 달러

페루 Lima시 전철 건설사업 참여문제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06 / 12 / 1-68

1986~87년 중 한국업체의 페루 Lima시 전철 건설사업 참여문제에 관한 내용임.

1. 페루 정부의 한국업체 참여 요청

- 김만제 특사가 1986.7.31. 페루 방문 시 Wagner 페루 외상은 리마(Lima)시 전철 건설사업 (38km, 공사비 약 5억 달러)에 한국업체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김 특사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함.
- 페루 대통령은 12.2. 주페루대사 면담 시 한국이 유리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전철 장비를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상기 전철사업 참여를 요청함.

2. 정부의 참여방안 검토

- 경제기획원은 1986.12.9.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전철건설 관련 기자재 공급은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민간기업들은 사업내용 및 조건, 입찰방법 등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검토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정보입수를 페루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
- 외무부는 12.10. 페루 전철사업 참여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경제 및 투자진출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고 페루 측의 자금제공 조건, 정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의사 표명 시 한국 업체와 수익계약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주페루대사관에 지시함.
- 외무부는 1987.3월 주페루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상기 전철사업 관련 자료를 경제기획원에 송부함.

149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 전3권 (V.1 1986-87)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6 / 13 / 1-272

1986~87년 중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에 관한 내용임.

1. PAC-Togo사의 토고 진출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6.10월 한국계 미국 섬유기업인 PAC(Pen Africa Textile Corp, 자본금 1200만 달러)가 미수교국인 토고 정부로부터 2개의 섬유공장을 인수하여 운영 예정이며 한국 기술자 180명의 현지 송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함.
- PAC는 1987.2월 토고 정부로부터 국영 섬유공장 2개를 9백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PAC-Togo사를 설립함.

2. 한국 근로자의 토고 송출

- PAC는 1986.11월 외무부에 한국 기술자 토고 송출을 요청하였는바, 외무부는 1987.1월 토고가 북한의 단독수교국이고 북한의 한국 근로자 납치 가능성을 감안하여 토고 정부의 한국 근로자에 대한 신변보장 대책 없이는 송출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결정함.
- PAC는 1986.12월 한국 내 지원업체인 덕성무역과 함께 한국 근로자 신변보호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증하였고, 1987.2월 토고 Djondo 국영기업장관은 한국 근로자 신변안전을 보장함.
- 한국 근로자 72명이 4월부터 토고 입국을 시작하여 7월 현재 123명이 PAC-Togo사에서 근무함.

3. 한국 근로자의 철수

- 1987.12월 PAC-Togo사가 263만 달러의 노임을 체불하자 한국 근로자 123명의 5~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에 1987.10월부터 한국 근로자 일부가 철수함.
 - 주토고 미국대사는 12.11. PAC-Togo사가 토고 국영 섬유공장 2개 인수를 위한 선수금 3백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동 섬유공장의 인도협정 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 전3권 (V.3 1989-90)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06 / 15 / 1-197

1989~90년 중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근로자의 철수 교섭

- 토고 정부는 1989.1월 한국계 미국 섬유기업 PAC-Togo사의 공공요금 미지불 이유로 공장 폐쇄와 파산을 선고하고 한국 근로자의 철수를 요청함.
- 이수혁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참사관이 3.21. 토고에 출장하여 토고 PAC-Togo사 청산위원장인 Nana 판사와 협의한 결과 동 판사는 PAC 동결자금(7만 달러) 및 청산위 운영보관자금(4만 달러)으로 한국 근로자 35명의 귀국 항공료 부담 및 1인당 월급 1천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함.
- 한국 잔류 근로자 35명 전원이 3.27. 토고에서 철수함.

2. 체불임금 청산

- 상기 PAC-Togo사 청산위원회는 1989.8월 외국인 및 한국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총액을 청구액 12.87%에 해당되는 7천만 세파프랑(CFA)으로 결정하였다고 한국 측 Dovi 변호사에게 통보함.
- 이광재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서기관이 1990.7.31. 토고에 출장하여 상기 Dovi 변호사로부터 한국 근로자의 체임에 해당되는 약 5천만 세파프랑(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약 20만 달러)을 수령 하였으며, 9.28.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동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함.

149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국내 기업의 소련 내 지사 설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7 / 1 / 1-237

1989~90년 중 국내기업의 소련 내 지사 설치에 관한 내용임.

1. 코트라의 외무부에 대한 국내업체 소련 내 지사 설치 관련 의견 문의

- 1989.8.16. 현대중합상사(주)의 모스크바 및 블라디보스토크, (주)진도의 모스크바지사 설치
- 1989.8.28. (주)대우의 모스크바지사 및 럭키금성상사(주)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지사 설치
- 1989.9.6. 삼성물산(주)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지사 설치
- 1990.9.20. 효성물산(주)의 모스크바, 삼양물산(주)의 타슈켄트지사 설치

2. 상공부의 외무부에 대한 국내업체 소련 내 지사 설치 관련 의견 문의

- 1990.1.31. 코오롱상사(주), (주) 선경의 모스크바지사 설치
- 1990.3.7. 삼성전자(주) 모스크바지사 설치
- 1990.4.14. (주) 쌍용의 모스크바지사 설치

3. 외무부의 의견 회신 및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설치 금지 관련 내용 통보

- 외무부는 1989.9.9. 코트라에 럭키금성상사(주), (주)대우, 삼성물산(주)의 모스크바지사 설치 신청에 이의가 없으나, 블라디보스토크지사 설치는 동 지역이 아직 외국인에게 폐쇄되어 있는 지역임을 유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회신
- 코트라는 9.25. 모스크바무역관을 통해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측에 타진한 결과, 블라디보스토크는 자국민에게만 개방되었고, 아직까지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미개방 상태로 지사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고 통보함.

4. 소련 진출 기업 현황·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파악

- 외무부는 1990.5.11. 주요 기업체에 소련 진출 현황·계획과 애로사항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
- 삼환기업, 현대중합상사, 럭키금성상사(주), (주)대우, 효성, 삼성물산(주), 한성기업(주), 동원산업(주), 고려합섬, 고려원양어업(주), 롯데, 대한항공 등 기업체, 소련 진출 현황·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자료를 송부해 옴.

대중국 기술공여 사업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7 / 2 / 1-137

1988~90년 중 대중국 기술공여 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기술자 초청 훈련

- 건설부는 개도국 건설기술자 초청훈련에 중국 기술자를 초청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초청 필요성에 대해 문의한바, 외무부는 아래 의견을 회신함.
 - 기술경험 전수를 통해 한·중국 간의 기술협력 증진과 한국 건설업체의 대중국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의 없음.
 - 현 단계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차원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부는 1989.2.27. 외무부에 중국 건설부로부터 훈련 참가를 희망하는 답신이 왔으므로 초청장을 송부할 계획임을 통보함.

2. 임업 관계자 초청 훈련

- 외무부는 중국 임업관계자 2명의 초청 훈련 계획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 훈련 기간: 1989.4.27.~6.6.(6주)
 - 경비 부담: 과학기술처, 과학재단

3. 약물검사 과정 훈련

-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에서 추진하는 약물검사 훈련과정에 중국인 3명을 초청하고자 하는 과기처의 계획에 대해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
 - 훈련기간: 1989.8.24.~9.13.
 - 경비 부담: 한국과학재단(정부대외기술공여 예산)

4. 중국 건설부 국장급인사 방한초청 훈련

- 대통령 동남아순방 후속조치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연수를 1989.10.10.~19. 실시할 예정이며, 동 연수에 중국 건설부 국제협력국장을 초청코자 하는 건설부의 계획에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회신

한·일본 기술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통상2과

MF번호 2020-107 / 3 / 1-132

1989~90년 중 한·일본 기술협력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일본 파견 연수계획 통합 시행

- 1988.12월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9년부터 일본 파견 연수계획을 종래 2회에서 1회로 통합하여 8월부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해 옴.
 - 일본기업 측이 회계연도가 4월에 개시되는 관계로 초기의 보조금 지불에 애로사항을 호소함.
- 1989.8월 주일본대사관은 1989년도 기능인력 방일 연수 관련, 연수가 확정된 150명의 명단을 외무부에 송부함.

2.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 내 건설업 허가

- 1990.2.28. 도쿄 도지사는 극동건설(주)에 건설업 허가를 통지함.
- 1990.3월 오사카 부지사는 한국의 한일개발(주)에 대한 건설허가를 통지함.
 - 외국기업이 관서지방에서 허가를 득한 것은 동 회사가 최초임.

3. 대우조선, 일본 스즈키 자동차와 기술도입 계약 체결

- 1990.1월 대우조선은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경자동차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스즈키 자동차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함.
 - 대우조선 측은 생산직 근로자 1,276명을 스즈키 측에 연수 파견하기로 합의함.

한·미국 해양지질연구 협력사업 추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107 / 4 / 1-184

1989~90년 중 과학기술처 산하 KORDI(한국해양연구소)의 한·미국 해양지질 공동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영사확인 등 외무부의 지원내용임.

1. 과학기술처는 1989.7.21. KORDI가 1989.9~10월간 미국 국립지질조사소와 공동으로 수행 예정인 태평양 심해저에 대한 실험역 탐사 공동연구 수행계약을 외무부에 송부함.
2. 과학기술처는 1990.1.18. KORDI와 미국 EWC(동서문화센터) 간 공동연구사업 양해각서의 영사 확인을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요청함.
3. 과학기술처는 1989.7.10. KORDI와 미국 지질조사소 간 해양지질연구 협력에 관한 사업 협정문의 영사확인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요청함.

150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베네수엘라 간의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7 / 5 / 1-69

1987~90년 중 한·베네수엘라 간의 과학기술협력약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베네수엘라 과학기술협력약정 체결 제의

- IVIC(베네수엘라 과학연구소)는 1987.2월 한·베네수엘라 간의 기술협력 추진을 위해 IVIC·KAIST (한국과학기술원) 간 기술협력약정 체결을 제의함.
- 베네수엘라 측이 제안한 약정안 요지
 - 우선 협력분야
 - 교환계획의 시행방법
 - 유효기간: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3년마다 자동 갱신, 종료희망 시 6개월 전 통보

2. 한국 측 검토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89.6월 한·베네수엘라 과학기술연구소 간 협력약정 관련 IVIC 측 약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 과기처 검토의견을 8월 베네수엘라 측에 전달함.

3. 협력약정안 합의

- KAIST와 IVIC는 1990.3월 협력약정안의 상호대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함.
- 동 약정 서명과 관련, IVIC 원장은 10월 방한하여 서명하고자 한다고 통보함.

한·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0.12.4.-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7 / 6 / 1-139

정부는 1990.12.4.~8.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헝가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90.6월 헝가리 과학기술조사단이 방한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제1차 한·헝가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1990.10~11월경 개최하기로 합의
- 헝가리 측은 개최 전 합의록 초안의 사전 작성을 제의
 - 헝가리 측이 제시한 합의록 초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의 완료

2. 개최근거

-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협정 제4조(2년마다 공동위 개최 및 협력 계획서 작성)

3. 협의 의제

- 한·헝가리 기술협력 개관
 - 1991~92년도 한·헝가리 기술협력 프로그램 채택
- 한·헝가리 기술협력센터 설립 협의
- 제2차 한·헝가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시기 및 장소 결정

4. 회의 결과

-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서명
- 한·헝가리 기술협력센터 설립 합의
- 한·헝가리 기술협력 교류의 구체적 방안 협의

150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일본 도시개발 협력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7 / 7 / 1-93

1989~90년 중 제7~8차 한·일본 도시개발 협력회의가 개최됨.

1. 제7차 회의(1989.6.22.~2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경환 건설부 도시국장
 - 일본 측: 마지마 가츠오 건설성 도시국장
- 의제
 - 도시개발, 도시교통, 공원·녹지, 하수도
- 훈령
 -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지자체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할 것
 - 도시규모나 성격 등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 교통체계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하수처리 방법의 개선, 하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2. 제8차 회의(1990.8.27.~9.1., 도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류원규 건설부 도시국장
 - 일본 측: 이치카와 건설성 도시국장
- 회의 목적
 - 도시문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증진
- 훈령
 - 분과위원회별 연구 및 토의를 통해 산하기관 및 지자체 간 도시개발분야에 관한 상호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토의 내용
 - 토지 공개념법
 - 대도시의 정비와 주택지 공급 촉진
 - 분과회의: 도시개발 분과, 도시교통 분과, 공원·녹지 분과, 하수도 분과

세계과학장관회의 개최추진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107/8/1-118

1990.6월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이 제의한 세계과학장관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과학기술처장관, 제1차 세계과학장관회의 개최 제의

-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1990.6.13.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면담 시 제34차 IAEA 총회(1990.9.17.) 직전 세계과학기술장관회의의 비엔나 개최를 제의함.
- 회의 목적
 - 21세기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범세계적 과학기술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
- 회의 의제
 - 국가간 기술협력 이전 문제
 -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공해 문제
 - 기술이전이 이끌어갈 사회 발전 방향
- 개최시기
 - 매년 IAEA 총회 개막 직전
- 개최 장소
 - 비엔나에서는 2년마다 개최하며, 비엔나에서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는 회의 유치 희망국의 수도에서 개최

2. 주오스트리아대사 견해와 외무부 입장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90.7.26. 상기 세계과학장관회의가 아래 사유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함.
 - IAEA는 과학기술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동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세계과학장관회의라고 부르는 곤란함.
 - 실제로 총회에 참석하는 각료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참석 대표의 현지 체재일정은 대개 자국의 기조연설 일자에 맞춘 짧은 일정임.
- 외무부는 7.30. 기 제안된 세계과학장관회의를 제34차 IAEA 총회 개최기간 중 여타국의 참석 장관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과기처에 전달함.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07 / 9 / 1-186

1990.8월 대일본 무역불균형 시정과 한·일본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과 교섭 중인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조정·지원하기 위한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임.

1.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내용

- 기본 구상
 - 경제기획원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일본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대내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
- 목적 및 기능
 - 한·일본 간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대내적 업무 조정 지원
 -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의 경제분야 의제선정 및 기본입장 조정
 - 기존 한·일본 경제협력 협의체의 활성화 지원
 -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관련 정보의 모집분석 및 교환
- 구성
 - 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
 - 위원: 10개 관련부처 차관보 및 관련업계 기관, 학계 전문가
 - 실무대책반: 동 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 국장급의 국제협력반 등 12개 반으로 구성

2. 상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1990.8.10.)

- 시기적으로 대내위원회 설치에 일본 측과 교섭이 타결된 후 검토할 사항
- 위원장의 격은 한·일본 간 위원회의 격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사항
- 실무위원회 대책반 수,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대내적 업무 조정 협의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최형섭 산업과학기술연구원 고문 미얀마 방문, 1990.2.19.-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7 / 10 / 1-28

최형섭 산업과학기술연구원 고문이 1990.2.19.~22. 미얀마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89.3.3. 및 5.9. 주미얀마대사의 쏘몽 미얀마 총리 예방 시 동 총리는 한국의 개발경험 관련 최형섭 박사 초청 계획을 언급
 - 랑군대학의 연구기관 일부를 한국모델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소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최 박사의 자문과 지도 요망
- 1989.10.4. 미얀마 보건 및 교육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
- 1990.2.15. 미얀마 정부 측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방문일정을 주미얀마대사관에 통보

2. 주요 일정

- 총리, 공업부장관, 기획재무부장관 겸 무역부장관 예방
- 세미나(주제: 미얀마의 과학, 기술의 장래) 참석
 -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3. 면담 및 활동내용

- 쏘몽 총리는 미얀마의 경제개방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강화를 희망
- 세미나에는 정부 관리, 대학교수, 과학자 등 50명이 참석, 한국의 개발경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문의

4. 언론보도

- Working People's Daily지는 1990.2.21. 최형섭 박사팀의 방문 동정 보도에 이어 2.24. 사설에서 '미얀마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제정책과 성장과정을 배워야 하며, 최 박사의 세미나 개최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는 요지로 보도
- TV는 2.25. 주간 뉴스에서 톱뉴스로 보도

150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산업·기술협력 실무협의단 일본 방문, 1990.12.10.-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07 / 11 / 1-272

이석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기술협력 실무협의단이 1990.12.10.~13. 일본을 방문함.

1. 주요 일본 인사 접촉

- 일본 정부 관계자
 - 외무성 아시아국장, 과기청 과학기술진흥국장, 통산성 통상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기계정보 산업국장
- 일본 민간기업
 - 도시바 국제본부, 미쓰비시 자동차
- 주일본 한국종합상사 대표

2. 협의내용

- 협력증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최근 세계경제 정세는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의 확대 요구
 - 최근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정세관과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협의
- 민간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
- 기술협력 확대방안
- 일본 측이 대한민국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한국 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
 - 한국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연구투자 대폭 확대

과학기술조사단 소련 방문, 1990.9.23.-10.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7 / 12 / 1-170

최영환 과학기술처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조사단이 1990.9.23.~10.1. 소련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소련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시받은 소련 기술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소련 간 협력 가능분야 발굴
- 소련 과학기술 현황 파악 및 상세정보 획득

2. 주요 방문일정

- GKNT(국가과학기술위원회), GOSPLAN(국가기획위원회), 원자력 및 산업부, 자동차 및 농기계 공업부, 금속부, 과학아카데미, 연방과학기술정보연구원, 쿠르차토프 핵에너지연구소 등

3. 방문 결과

- 1990.9.28. 최영환 과학기술처차관과 M.G. Kruglov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소련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함.
 - 10월 말 서울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소련 경제각료회담에서 동 협정을 정식 서명하기로 함.
 - 1991년부터 한·소련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소련 측이 한국 측에 제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검토함.
- 한·소련 간의 원자력 및 산업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Record of Discussions을 작성, 서명함.

150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소련 수자원 개발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07 / 13 / 1-75

1989~90년 중 한·소련 간의 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소련 측 제의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 근무하는 소련 전문가는 1989.5.30. 임홍재 주태국 대사관 서기관에게 수자원분야 협력 추진을 제의
 - 원거리 탐사와 Space Technology 등 소련 측 연구의 상업화, 수자원개발 장비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및 제3국 공동 진출
 - 구체적인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한국 관계기관과 기술교류 희망, 한국 전문가를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초청 용의
- ESCAP 회의에 참가한 소련 토지개발 및 수자원관리부 차관은 1989.10.13. 한국 수자원 전문가 초청 용의를 대표명
- 소련 측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안규홍 박사를 통해서도 한국 수자원 전문가 초청 용의를 희망

2. 공관 통보 및 소련 측과 협의

- 외무부는 1989.11.29. KIST를 한·소련 수자원분야 한국 측 협력창구로 지정하여 우선 양국 전문가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가능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시행여부는 협의 추이를 보아 사안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주태국대사관에 통보
- 주태국대사관은 12.11. 상기 내용을 주태국 소련대사관 직원에게 통보하였으며, 1990.1.5. 동 직원 접촉 시, 동인이 12월 공문으로 외무부에 보고하였음을 확인함.

한·소련 자원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동구1과 /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7 / 14 / 1-181

1989~90년 중 한·소련 간의 자원협력 관련 내용임.

1. 제7차 외국 무연탄 도입 심의위원회(1989.12.29.)

- 의결 내용 중 시행방안
 - 장기·안정 공급처 유지
 - 탄질관리 및 저가구매 유도를 위해 미수교국으로부터의 도입 병행
 - 통상·외교측면 고려 미국과의 장기 계약분 중 적정량 도입
 - 경제성 확보: 저가공급 및 국내탄과의 혼합률이 높은 무연탄 구매
 - 북방정책 및 대응무역 추진을 위해 일정량 확보

2. 현대그룹, 연해주 삼림개발 합작투자 계약서 체결

- 체결 일자: 1989.12.28.
- 한·소련 양국정부의 승인 획득 조건으로 체결
- 투자규모: 향후 3년간 6천 9백만 루블(1억 1천만 달러) 투자
 - 현대와 소련 측이 50:50으로 투자
- 향후 30년간 소련 연해주 스페틀라야(블라디보스토크 북방 550Km 동해 연안지점)지역 삼림 벌채, 원목·나뭇조각(wood chip)·제재목 및 가구생산 해외수출

3. Margulov 소련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 제1차 방한(1990.5.25.~30.)
 - 현대 측과 야쿠트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Memorandum 체결 등 업무협의, 동력자원부장관 예방
- 제2차 방한(1990.11.30.~12.4.)
 - 현대 측과 자원공동개발 및 에너지·자원협력에 관한 2건의 합의서 서명·교환

151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에너지 실무협의회, 제7차. 서울, 1990.12.12.-13.

생산연도 1990-1991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 번호 2020-107 / 15 / 1-41

제7차 한·미국 에너지 실무협의회가 1990.12.12.~13.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10.31. 미 국무부 한국과 담당관은 1990.12.12.~13. 서울에서 제7차 실무협의회 개최 희망을 언급
- 1990.12.5. 동력자원부는 회의 개최 관련 외무부에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
- 1990.12.6. 외무부는 정부대표 임명

1512

2. 개최 결과(1990.12.12.~13., 서울)

- 양측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장석정 동자부 자원정책실장
 - 미국 측: Arlen Erdahl에너지부 국제협력담당부차관보
- 회의 의제
 - 세계에너지 현황
 - 양국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 양국간 에너지 교역 및 협력
 - 에너지분야 정보 및 의견교환
- 협의사항
 - 페르시아사태의 유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 평화적인 해결을 통한 유가하락 희망 및 유가 전망과 대응방안 논의
 - 양국의 에너지 정책 및 현황: 한국의 에너지 안정과 경제적 공급 및 다원화 정책 설명, 미국의 국가에너지전략 설명
 - 석탄, LNG, 석유, 원자력 등 4개분야에 관한 교역과 협력문제 협의

유엔 신·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위원회 회의, 제5차. New York, 1990.3.26.-4.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07 / 16 / 1-16

정부는 1990.3.26.~4.4. 뉴욕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신·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위원회 회의에 박쌍용 주유엔대표부대사를 정부대표로 하는 파견함.

1. 토의 동향

- 에너지 개발 관련 1981년 나이로비 계획 이행이 부진하다는 데 참석대표들의 의견 일치
- 신종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증대 필요 및 유엔 역할 강조
- 개도국들은 에너지 문제의 경제개발 전반 문제와의 연계, 에너지 관련 기술이전 및 정보교환 추진, 개도국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 개발 문제에 관심 표명
- 재래식 에너지자원에서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삼림 황폐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우려 표명

2. 회의 결과

- 결의안 채택
 - 유엔 활동강화 촉구
 - 나이로비 10주년 기념 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권고사항 채택
 - 나이로비 계획 이행 관련 유엔 재정지원, 에너지 관련 유엔기금, 개도국 농촌에너지개발 관련 세계 및 지역단위 협의 추진 포함
- 제6차 회기 잠정의제 채택
 - 나이로비 계획의 이행점검 및 재정지원문제, 실질토의 주제선정

151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제1차 자원조사단 소련 방문, 1990.8.18.-9.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7 / 17 / 1-228

이원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자원조사단이 1990.8.18.~9.2. 소련을 방문함.

1. 방문 지역

- 모스크바, 야쿠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

2. 주요 활동

- 자원개발 관련 소련 연방부처 및 관련 기관(9개) 방문(1990.8.20.~22.)
 - 자원조사단 방소 경위와 목적 설명 및 소련 측 제시 11개 자원 관련 프로젝트 내용 재확인 및 개발 계획 청취
- 주요 자원 산지인 야쿠츠크(야쿠티아공화국 수도) 및 사할린 방문(1990.8.23.~30.)
 - 야쿠티아공화국 및 사할린내 지하자원 산지에 대한 탐사와 개발현황 청취 및 관련 자료 입수
- 자원 관련 부처 관계관과의 전체회의(1990.8.30.)
 - 소련 측 참석자: Margulov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석탄성장관 등 10명
 - 원유 및 석유제품(등유 등) 도입 가능성 타진
 - 가스 및 석탄개발 관련 문제점 및 양측 역할분담 관련 협의

3. 향후 대책

- 우선 단기적으로 자원분야에서의 협력 가시화를 위해 석유·석탄·우라늄 등 자원도입 및 도입량 증대 추진
- 한국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4개 프로젝트에 대한 입수자료를 토대로 개발의 타당성 및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이라크·쿠웨이트사태에 따른 원유수급 대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7 / 18 / 1-100

1990.8.2.~4.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사태에 따른 원유수급 대책 관련 내용임.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1990.8.4., 국제경제국 보고)

- 현황
 - 현물시장 가격변동 추이: 두바이유는 17.20달러에서 19.80달러로 인상
 - 한국의 원유도입 현황: 쿠웨이트 70만 BD, 이라크 3만 9천 BD
- 분석
 -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 계기 유가상승 추세에 전쟁발발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급등 현상 발생
 - 사태가 인접국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OPEC 내 이란, 이라크 등 고유가 주도세력이 대세를 장악할 경우 고유가 시대 조기 도래가 가능

2. 이라크·쿠웨이트사태가 원유수급 및 유가에 미치는 영향(1990.8.9., 국제경제국 보고)

- 한국의 원유도입 현황
 - 쿠웨이트, 이라크 원유 도입: 14만 6천 BD(90년 상반기)
 - 기타 지역 도입: 78만 2천 BD
 - 1990년 원유도입계획: 총 3억 990만 배럴
-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 공급량
 - 450만 배럴(자유세계 총 공급량의 약 10%)
- 분석 및 전망
 - OPEC 총회 계기로 유가상승 추세에 전쟁발발이라는 심리적 급등현상 발생
 - 이라크, 쿠웨이트 공급량 약 450만 BD가 전면 봉쇄될 경우에 대비, 유가는 단기간 급등현상을 보였으나 여타 원유생산국의 증산 동향에 따라 급등세는 정지
 - 급변사태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유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나 세계 원유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대책
 -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도입 부족물량에 대한 대체 확보 가능
 - 국산석유제품 수출 중단
 -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151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대우(주)의 미얀마 가스개발사업 참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7 / 19 / 1-55

1989~90년 중 (주)대우의 미얀마 가스개발사업 참여 관련 내용임.

1. 미얀마 Offshore 석유개발 입찰

- 미얀마 외무부는 1989.10.27. 주미얀마대사관 앞 구술서로 석유개발을 위한 국제입찰 사실 통보(입찰서류는 11.30. 제출 마감)
 - 1990.1.29. 4개 광구에 대한 제2차 석유개발계획 실시 통보
 - 7.31. 수도 양곤의 서부지역 2개 광구에 대한 입찰 안내서 통보

1516

2. 미얀마 가스개발사업 참여

- 김우중 대우 회장은 1990.3.28.~29. 미얀마를 방문하여 총리 및 에너지장관을 면담하고, 가스개발 사업 관련 협의를 함.
 - 대우 측은 해상 가스 개발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미얀마 정부의 원칙적인 동의를 구함.
 - 미얀마 측은 가스 매장량이 약 7조 큐빅 피트인 가스전의 탐사와 개발을 위해 일본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면서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우 참여를 환영
- 대우 측은 5.7. 미얀마 정부에 가스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함.
 - 8.15. 입찰 마감 결과, 참여 회사는 대우, 유공 등 7개 회사
- 미얀마 정부는 1990.9.10.~10.13. 대우 등 4개 회사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

KODECO ENERGY(주)의 인도네시아 서Madura 유전사업 현황보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8 / 1 / 1-186

1. KODECO 에너지사 사장 해외여행 제한 완화 진정

- 최계월 KODECO 에너지사 사장은 1989.1.7. 주인도네시아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 회사가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가스 전지역 가스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12. 동 사업의 중요성 및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왕래 허가를 건의함.
 - KODECO사는 1988.12.19. 인도네시아 Guna Nusa사와 가스생산시설공사 간 계약 체결, 1989.1.7. 동 시설공사 기공식 거행

2. KODECO 서마두라 광구 개발 사업보고서

- 1988.12~90.11월 월간 보고서 제출
- 1990.11월 사업현황 보고
 - 제1유전 운영: 월간 생산량(19,066배럴)
 - KE-5 가스전 생산시설 공정: 전체 공정도(68%)

151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리비아 원유 도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08 / 2 / 1-44

1990년 중 한국의 리비아 원유 도입 추진 및 유전개발 참여 관련 내용임.

1. 한·리비아 공동위원회에서 1990.2.4. 한국은 리비아로부터 10~15천 BD의 Brega 원유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유공이 리비아 국영석유회사 산하의 석유수출회사인 BIMC(Brega Int'l Marketing Co.)와 원유의 가격과 수입 조건 등 협의하기로 합의함.
2. (주)유공은 1990.2.19.부터 영국 런던 소재 BIMC 지사 측과 리비아산 원유의 가격과 수입조건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별 진전이 없었음.
3. 주리비아대사는 1990.4~9월간 리비아 석유장관, 수상, BIMC 측을 면담하고 한국 측에 원유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리비아 측은 9월부터 하루 2백만 배럴까지 증산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측의 원유구매량 증대를 요청하고 (주)유공이 1989년부터 리비아석유공사와 교섭해 온 유전개발의 참여여부 결정을 촉구함.
4. 한국석유개발공사는 1990.10.10. 리비아석유공사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함.

Hisham M. NAZER 사우디 석유광물부장관 방한, 1990.1.22.-2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8 / 3 / 1-100

Hisham M. Nazer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자원부장관이 1990.1.22.~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는 한·사우디 간 고위인사교류 및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를 위해 동력자원부장관 명의로 Hisham M. Nazer 사우디 석유광물부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2.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3. 주요 결과

- 한·사우디 양측은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갖고 사우디산 원유 도입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사우디 측은 풍부한 매장량을 토대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할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 측의 원유구입 확대를 요청함.
- Nazer 장관과 동력자원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면담 시 언급요지
 - 한국 측: 향후 유가 전망을 문의하면서 최근 한국의 사우디산 원유수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 기업의 사우디 합작투자 진출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희망함.
 - 사우디 측: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경상가격 배럴당 18달러 이하의 가격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안정적인 유가가 예상됨. 사우디는 일본, 미국 등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을 합작투자의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함.

151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캐나다 원자로(CANDU형: 월성 2호기) 도입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 번호 2020-108 / 4 / 1-73

1985~90년 중 캐나다 원자로(CANDU형: 월성 2호기) 도입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전력공사 측은 1990.1.25.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캐나다형 중수로 700MW급 1기, 총공사비 8,366억 원) 건설 관련 입찰안내서를 AECL(캐나다원자력공사) 측에 송부하고 7월 AECL의 응찰서를 접수하였으며 1990년 말 계약서 체결을 추진함.
2. 주한 캐나다대사는 1990.11.16.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원자로 건설사업에 캐나다 CANDU 원자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함.
3.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는 1990.12.28.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 CANDU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계약액은 플랜트 종합설계와 원자로 설비공급 등 3,800억 원임.
4. 캐나다 언론은 CANDU 구매계약이 1981년 루마니아에 CANDU를 판매한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대외판매로서 향후 캐나다 경제에 2천 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함.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 제1차. Canberra(호주), 1990.2.26.-3.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8/9/1-130

제1차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가 1990.2.26.~3.2.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9.8월 호주 정부는 한·호주 원자력협정에 의거, 제1차 원자력정책협의회를 1990.2월 호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영성 과기처 원자력국장
- 호주 측: Kim Jones 외무무역부 군축안보 및 원자력국장

3. 주요 의제

- 한·호주 원자력협정 운영 평가, 핵비확산정책,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양국 협력방안
- 핵수출통제제도, KAERI(한국원자력연구소)와 ANSTO(호주원자력연구소) 간 협력약정 체결 추진 등

4. 주요 결과

- 양측은 원자력 발전현황, 우라늄 수요 및 공급, 원자력 대중홍보 및 환경문제 등 협의
- 한국 측은 한·호주 원자력협정 제6조 및 제14조 개정을 제의하였으며, 호주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검토의견을 통보하기로 함.
- 양측은 핵물질 도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호주 행정약정에 의한 선적별 통고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IAEA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은 IAEA 이사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함.
- 한국 측은 최근 수립된 한국의 핵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호주 측은 기술전수를 희망하였으며 호주 측은 한국의 Zangger 위원회 가입을 지지할 것을 약속함.
-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호주원자력연구소 간 협력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회의, 제1차. 동경, 1990.3.12.-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8 / 12 / 1-307

정부는 1990.3.12.~14.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지역 원자력 회의에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최 배경

- 일본, 아시아지역 원자력 이용 개발협력증진 협의를 위해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원자력분야 장관 및 원자력위원회 관계자 초청

1522

2.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8개국)

3. 회의 의제

- 각국의 원자력 개발·이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기조연설
-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증진 문제 토의

4. 회의 결과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 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기술벨트와 동남아시아의 자원벨트를 결합하여 아시아지역 경제기술벨트를 구축할 것을 제의
 - 이와 관련 제3차 오일쇼크에 대비하여, 아시아지역 원자력기술협력기구 설치를 제의하고 동 기구내에 원자력안전분과, 방사성동위원소이용분과 및 정책분과위원회 설치를 제창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NPT(핵비확산조약) 서명 후 5년이 지나도록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동 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공동노력 촉구

5. 한·일본 과학장관 회의(1990.3.12.)

- 주요협의 내용
 - 한·일본 원자력협정, 한·일본 기초과학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 협의, 원자력 안전행정을 위한 한·일본 핫라인 설치 협의 등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핵심과제로서 과학기술협력을 중점적으로 제의함.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수역 내 조업문제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8 / 13 / 1-169

1984~90년 중 한국어선의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수역 내 조업 관련 문제임.

1. NAFO 개요

- 북서대서양 수역 내 어족자원 보존 및 합리적 개발을 위해 1979.1월 발족하였으며, 1988년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고 회원국에 대해 어획쿼터를 배정함.
- 한국은 1977년 캐나다의 200해리 선포 후 NAFO 수역에서 1987년 약 2만 M/T의 가자미, 대구, 가오리를 어획함.

2. 캐나다 정부는 1986.11.6.자 공한을 통해 NAFO 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중단을 요청함.

3. NAFO 사무국은 1987.7월 주캐나다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어선의 NAFO협약 수역 내 조업을 위한 NAFO 가입을 종용함.

- 정부는 9월 한국도 NAFO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필요한 쿼터 보장이 없는 현 여건에서는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NAFO 측에 전달함.

4.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9.5월 공한을 통해 NAFO 수역 어획량은 전량 회원국에 할당되고 있어, 한국어선의 조업은 초과 어획이라고 하고 한국 측이 조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해 태평양 민대구 공동사업을 계속 불허 할 것이라고 통보함.

5. NAFO 가입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문의에 대해 수산청은 1989.5.29. NAFO에 가입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어획쿼터는 현 어획량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양이며, 한국이 캐나다와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캐나다 수역에서 2만 톤 이상의 어획쿼터를 배정받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 NAFO 가입이 가능하다고 함.

152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 번호 2020-108 / 14 / 1-399

1989~90년 중 공해상 유자망 어업규제에 관한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9년 미국은 자국 기원 연어 혼획 방지 및 해양동물 보호를 위해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과 각각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유자망 어업 규제 및 감시 조치에 대해 합의함.
- 1989.11.2. 미국은 캐나다, 호주와 함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남태평양상 유자망 조업의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함.
- 이에 대해 1989.11.2. 일본은 공해상 뿐만 아니라 경제수역 내 유자망 어업도 포함하는 결의안을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12.11. 미국과 일본은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제출함.

2. 한국의 입장

- 한국 대표단은 1989.12.15. 유엔 제2위 결의안 심의에 참가하여 아래 요지로 발언함.
 - 유자망 어업문제는 충분한 과학적 조사와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일시중단(Moratorium) 설정은 부당함.
 - 유자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해는 물론 연안 수역에서의 유자망 어업도 고려해야 함.
 - 유자망 문제는 국제협력이 크게 필요한 환경 문제인 만큼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처리되어야 함.

3.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 참가국들의 협의를 통해 유엔 제2위 회의(1989.12.15.) 및 제44차 유엔총회(12.22.)에서 아래 요지의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
 - 1992.6월까지 공해상 유자망 어업 Moratorium에 합의함. 단,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보존과 관리조치가 취해질 경우 Moratorium 해제가 가능함.
 - 남태평양상에서의 유자망 조업을 1991.7.1.까지 완전 중지하기로 결정
 - 북태평양 및 기타 공해상에서 유자망 어업확대를 즉각 중지함.

4. 대책

- 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이 선 과학적조사 후 규제조치라는 한국입장과 완전 상응하지는 않으나 1989년 9월 미국과 유자망 어업 확대 중지에 합의하였고 자원 및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동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5차 유엔총회 결의안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조약과

MF번호 2020-108 / 15 / 1-211

1990년 중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유엔보고서 내용임.

1.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업 전문가 협의회(1990.4.2.~6., 로마)

- 개최 목적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태평양, 인도양 등 전 세계적인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획과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토의
- 참석국
 - 한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태국 등 총 19개국
 - 한국은 박영철 국립수산업연구원 수산연구관 참석
- 한국대표는 시험조사 결과 연어, 해양포유동물 및 물새 등 부수 어획물의 혼획율이 매우 낮으며, 유자망 어업의 영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 주요 결과
 -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업이 해양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규모 유자망 어업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및 유엔총회 결의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유자망 어획량 자료수집을 권고하고, 부수 어획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구를 개선하며, 지역적으로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공동협력조사 및 정보교환 추진하도록 함.

2.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유엔사무국 보고서

- 주유엔대사는 1990.10.15. 유엔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 제128항에 한국 유자망 어선 6척이 아조레스 동북방향 공해상에서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정보가 명기되어 있다고 하면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정보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고 동 항의 삭제를 요구하도록 지시함.
- 동 보고서 제128항은 10.23. 주유엔대표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이 아조레스 해상에서 유자망 어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라고 수정하여 명기됨.

베링공해 조업 규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국제법규과

MF 번호 2020-109 / 1 / 1-235

1990~91년 중 베링공해 조업 규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베링공해 조업 현황

- 1990년 41척 조업으로 명태 약 26만 6천 톤 어획, 1991년 41척 조업으로 명태 약 12만 톤의 어획을 예상

2. 조업규제 동향

- 베링공해 연안국인 미국과 소련은 어족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1988.5월 양국간 어업 협정 체결 및 1990.6월 양국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아래 요지의 베링공해 조업 규제를 추진함.
 - 베링공해상에 규제되지 않은 대규모 명태 어업 중지
 - 해양생물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상 대규모 유자망 어업 금지
 - 북태평양 소하성 어종에 관한 새로운 협약 체결 추진

3. 정부의 대책회의

- 수산청은 1990.9.20. 미국과 소련의 어업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외무부, 해양연구소, 수산청, 원양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참석
- 회의 결과
 - 미국·소련 간 베링공해 규제협약안을 검토하고 한국 대응안을 작성하기로 함. 미국·소련이 일방적으로 협약안을 확정하기 전에 미국과의 접촉이 필요함.
 - 베링공해 명태에 대한 자원조사가 세계적으로 미흡하고 한국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해양연구소 및 수산진흥연구소가 외국과 함께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 베링공해 대체어장으로 아르헨티나 어장 확보 방안을 추진함.
- 한국 측 입장
 - 공해 자유조업권을 고수하고 공동이용자원의 국제관리 원칙을 존중하며, 자원보존 관련 제도에 있어서 연안국과 조업국의 동등한 참여

4. 연안국·조업국 간 국제회의 개최

- 1991.1월 미국 제의로 개최된 연안국(미국, 소련)과 조업국(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 간 국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조업 활동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적 자원관리 제도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함.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2/1-104

1990년 중 한·아르헨티나 간의 어업협력에 관해 주아르헨티나대사의 보고내용임.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0.3월 아르헨티나의 어업법 개정 동향을 보고함.

- 한국업체의 대주재국 진출은 직접투자자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 직접 입어허가를 획득 조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0.5월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등 남대서양 수역 내에서 한·아르헨티나 간의 어업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신어업법 제정 동향
 - 아르헨티나 수산청은 정부 단일안을 1개월 내에 마련, 개방주의적 입장을 취한 어업법을 1년 이내에 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문제
 - 한국 교포들이 주재국 정부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한국 원양업체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정부차원의 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건의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0.9월 아르헨티나 수산정책 동향을 아래 목차로 보고함.

- 수산업 일반
- 외국어선 입어관계
 - 조업허가는 국내 회사에만 주어지며 허가 기간은 무기한이나 1988.9월 이후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는 어종 및 조업수역이 제한됨.
- 신어업법 제정 동향 및 외국어선 입어 관련 내용
- 아르헨티나 수산업 동향
- 한국어선 진출 가능어종 및 방법
 - 공신력 있는 주재국 수산회사를 대방사로 선정, 공동투자를 통해 조업실적을 점차적으로 쌓아 주재국의 신어업법 제정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외국어선 조업현황
 - 현재 외국 국기를 게양한 채 조업하고 있는 나라는 소련뿐이며 15척이 조업 중임.

152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얀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09 / 3 / 1-63

1987~89년 중 한·미얀마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주미얀마대사가 1987.7.31. Mg Mg Win 미얀마 수산축산부장관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어업협력을 협의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어업협력을 호혜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의견일치
- 근래 미얀마의 어업은 외자도입 등 투자에 비해 생산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생산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외국과의 협력도 고려 예정임.
- 외국과의 협력을 개시할 시 우선적으로 한국과 협력할 것임.
- 한·미얀마 간의 어업협력은 한국이 미얀마 어장에서 생산, 수입해 갈 만한 어종(새우와 바다가재는 제외)과 그 수량 및 가격을 제시하면 미얀마가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주미얀마대사는 상기 관련 한국 수산회사 간의 충분한 사전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계에서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우려함.

2. 미얀마 정부의 사회주의적 폐쇄경제체제로 인해 한국 수산업체가 어업분야 진출에 애로를 겪는 중 1987.12.29. 한국의 화인상역이 미얀마 수산청과 어묵생산공장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진출이 시작됨.

3. 네윈 정부가 1988.9.18. 군사 쿠데타로 붕괴되고 소마웅 군사정부가 수립됨. 이에 군사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하여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자 미얀마 어로사업 진출에 관심을 가져온 동원산업 등 한국 원양어업 회사들은 미얀마 영해 12마일 밖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권 획득에 성공하여 11월에 2개 기업, 1989년 2개 기업의 진출 계약을 체결함.

4. 한편, 한국 정부는 미얀마 진출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기업 소속 어선이 허가된 구역 외에서의 어로작업 혐의로 미얀마 해군선에 나포되어 벌금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미얀마대사관은 외무부에 미얀마 진출업체에 대한 지도를 건의함.

한·칠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09 / 4 / 1-37

1984~90년 중 한·칠레 간의 어업분야 협력 동향임.

1. 칠레의 냉동어선 조업구역 확대조치 시행

- 수산청은 1985.3.7. 연근해 어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칠레 정부의 냉동어선 조업구역 확대조치 시행 관련, 칠레 어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어선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조업수역의 현행유지 교섭을 요청
 - 1984.12월 방한한 칠레 수산청장은 조업수역 현행유지 건의 의사를 표명
- 주재국 수산차관(수산청장)은 5.2. 주칠레대사관 참사관 면담 시 조업구역 확대 조치는 국내의 모든 어선에 적용되는 조치로서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2 칠레 투자진출 업체인 대림수산(주)의 어선 추가 투입

- 주칠레대사관은 1987.11.13. 칠레에 진출 중인 대림수산이 어선 추가투입을 위해 Perla호를 용선, 공해상에서 시험 조업 중에 있다면서 추가 투입 허가 시까지 한국 수산청의 용선 및 어업 허가기간(1986.11.28.~87.11.27.)을 연장하여 주도로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수산청은 12.3. 상기 Perla호에 대하여 용선 및 어업허가를 1987.11.28.~88.6.30.까지 연장 조치하였음을 통보

3 칠레 항만청장 방한

- 주칠레대사는 1989.10.9. Fernando Lazcano Jimenez 칠레 항만청장(해군소장)과 E. Opazo 해운선원국장(해군 대령)이 원양협회회장 초청으로 1989.11.2.~5. 방한 예정이라고 보고함.

4 칠레 정부의 칠레 어업법 개정(1989.12.4. 및 12.30.)

- 개정내용
 - 어족자원 보호, 조업구역 재설정, 어획 쿼터제 등을 골자로 주로 영세한 연안어선을 보호
 - 조업구역을 남위 47도 이남으로 변경하여 냉동장비 어선은 47도 이남에서만 조업이 가능하고, 47도 이북지역에서는 빙장어선에 대해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변경
 - 이와 같은 조업변경은 연안어민이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빙장선 어업을 용이하게 하고, 냉동장비 어선은 47도 구역 외로 밀어냄으로써 한국(대림수산), 일본, 스페인 등의 주요 외국투자회사들에게 불리한 조치임.

한·콜롬비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5/1-24

1986~90년 중 한·콜롬비아 간의 어업분야 협력 동향임.

1. 원양어업 조업관계 조사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6.3.19. 콜롬비아의 수산관계 규정 및 덕수물산의 콜롬비아 조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

2. 남태평양 상설위 외무장관회의 선언문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7.12.22. 제3차 남태평양 상설위 외무장관회의(1987.12.9.~10., 에콰도르 키토) 선언문을 외무부에 보고

3. 수산업 전시회 및 심포지엄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90.1.5. 콜롬비아 SANA(국립기술연구원)이 1990.1.30.~2.4. 콜롬비아 Buenaventura 항에서 개최되는 “21세기 어업” 제하 수산업 전시회 및 세미나에 한국의 참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해 오고 있다면서 한국 수산업계 등의 참가여부를 조속히 회보해 줄것을 외무부에 요청

한·캐나다 간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조업문제 협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6/1-253

제2차 한·캐나다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담이 1990.4.25.~2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캐나다 측: Perron 외무부 북아태국장

2. 의제

-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규제 및 양국간 수산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캐나다 측: 자국 과학자 옵서버 한국어선 승선 요청
 - 한국 측: 어업협정, 합작투자, 공동사업, 수산관계 기술협력 등 요청

3. 어업회담 결과(합의내용)

- 어업협정 조기체결 추진 합의
- 공동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교류 강화(어군식별법, 해면양식, 수산해양학분야)
- 1991년부터 양국 해양과학자 각 1명 조사선 교환승선 및 연구소 상호파견
- 캐나다 과학자 옵서버 1명 어업훈련선에 승선

4. 어업회담의 의의 및 평가

-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앞두고 수산분야 현안 해결 및 협력 강화
- 어업협정 체결 및 제반 수산현안 타결을 위한 노력 및 추가 협의 약속 확보
- 캐나다 과학자 옵서버 1명을 한국 유자망 어선 대신 어업훈련선에 승선 허용
- 어군식별법 등 최첨단 유전공학기법 제공 약속 등 수산분야 과학기술교류 강화

153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덴마크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8/1-37

1985~90년 중 한·덴마크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원양업체 삼원어업(주)는 1985.6월 주민의 70%가 어업에 종사하는 덴마크의 Greenland 수역에서 시험조업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교섭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덴마크대사관은 7월 주재국 외무부에 확인한 결과 Greenland 근해에 작년 어획량이 대폭 줄었으며, 주재국은 EC(유럽공동체) 국가들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Greenland 근해 조업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함.

1532

2. 원양업체 대왕수산(주)은 1990.6월 덴마크의 Faroe Island 수역에서 오징어 신어장 개척을 위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한바, 이에 외무부는 11.9. Faroe제도 근해 수역에서의 어로활동은 동 제도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어선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며, 한국은 Faroe제도와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대왕수산 측에 통보함.

한·멕시코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9/1-39

1990년 중 한·멕시코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정양수산(주)은 1990.2.16. 멕시코 Industrial Pesquera De Guayamas S.A.와 205톤급 트롤어선 6척을 5년간 용선하여 멕시코 수역에서 조업하는 조건의 어업협력 계약을 체결함.
 - 수산청은 2.16. 동 계약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승인여부와 동 선박에 한국선원이 승선하여 조업 가능한지의 여부 등 확인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멕시코대사관은 4.4. 멕시코 정부를 통해 확인 결과, 동 계약은 멕시코 Simaloa주 정부의 승인을 득했고, 6척의 용선 선박에 대해 한국 선원의 승선은 40%로 제한하며, 총어획량의 20%는 현지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출 가능하다고 보고함.
2. 주멕시코대사관은 1990.5.22. 멕시코 어업부를 접촉하여 한국의 멕시코 어업합작 진출방안에 대해 문의한바, 멕시코 측은 외국인 투자비율은 49%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멕시코 영해 내 조업을 위해서는 제3국 선박의 용선은 불가하며 멕시코 국적으로 기국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함.

153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니카라과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0 / 1-14

1990년 중 한·니카라과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90.9.5. 최근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니카라과 정부가 미국과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기업의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W. Nickerson 변호사(미국 재무부 및 관세청 부차관보 역임)가 니카라과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새우 트롤어업 진출을 제안하였다면서 동 제안에 관심이 있는 한국 수산회사를 선정하여 현지 확인 조사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534

2. 수산청은 1990.11.2. 니카라과의 정세 불안과 새우어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니카라과 새우어업 진출은 어렵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1 / 1-71

1989~90년 중 한·파푸아뉴기니(PNG) 어업협력 동향임.

1. 한국어선 PNG 수역 참치 조업 입어로 협상

- PNG 측은 입어로의 대폭 인상 등 1989.6.20. 합의한 입어조건을 파기함.
- 수산청은 1990.3.14. 그동안 개별업체가 입어로 협상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원양협회와 일괄협의 예정이며 PNG 측과 입어조건 협의를 위한 어업회의 개최 주선을 요청함.
 - 1982년부터 한국어선들이 PNG 수역에서 참치 조업 중이며, 1988년에는 20척의 어선들이 PNG 수역에서 114만 3,106달러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30,887톤의 참치 등을 어획함.
- 주PNG대사는 4.4. 주재국 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한국어선에 대한 입어로 인하를 요청함.
 - 동 장관은 입어로는 양보 불가하고, 입어 기간은 기존대로 60일이며, 한국수산회사가 PNG와 합작하여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면 입어로 지불 없이 조업 가능하다고 함.

2. PNG 수산부장관 방한 결과

- 한국원양협회는 입어조건 협의를 위해 Allan Ebu PNG 수산부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동인은 1990.8.5.~9. 방한하여 수산청장, 한국원양협회장을 면담함.
- 한국원양협회와 PNG 정부는 8.6. 어업회담을 개최하여 입어로 계산방식, 입어약정, PNG 고원지대에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기금모금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어업협정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 측은 선원임금 대폭 인상, 어로경비 과다 발생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입어로 인하를 요구함.
 - PNG 측은 양국간 입어약정 체결 시 조업기간과 입어허가 발급기준 관련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함.
 - 또한 PNG 측은 수산 부문의 장기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자국의 경제발전 기여도에 따라 입어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김재철 한국원양협회 회장과 Allan Ebu 수산부장관은 1990.8.6. 어업에 관한 협의각서에 서명함.

153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페루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2 / 1-55

1990년 중 한·페루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페루 경제수역 내 한국어선 오징어 조업

- 수산청은 신어장 개발을 위해 1990.6월부터 페루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들이 오징어 시험조업을 개시하였으며 8월 현재 세양수산 및 광양수산 등 한국어선 6척이 오징어 조업 중에 있다고 함.
- 주페루대사관은 8월 한·페루 간 어업협력 방안으로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어선단 진출, 어분 회사 합작투자 등을 건의함.
 - 한국어선 간의 오징어 입어 관련 과당경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협상창구 일원화를 요청함.
 - 수산청은 8.20.부터 한국어선들이 한국 원양어업협회를 통해 페루 정부에 입어를 신청하도록 단일화했다고 함.

2. 어업조사단 페루 파견 추진

- 수산청은 1990.12.5. 페루 경제수역 내 한국 오징어 어선의 증척 협의를 위해 주홍장 한국 원양어업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업조사단의 페루 파견(1990.12.10.~16.)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페루 수산부, 항만청, 해양연구소 방문주선 등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한·소말리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09 / 13 / 1-36

1990년 중 한·소말리아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한국 해외수산물주식회사와 소말리아 정부 간 입어 재계약 체결(1990.2.7.)

- 소말리아 연안 조업 기존의 4척 외에 추가로 2척을 투입하여 총 6척이 10년간 조업
- 소말리아 수산부장관이 해외수산(주) 초청으로 1990.11.27.~28. 비공식 방한

2.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민간어업 교섭단 소말리아 파견(1990.2.20.~22.)

- 1990년도에 18개 회사 55척, 연 입어 월수 118개월로 소말리아 정부와 합의

153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Falkland 주변수역 조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4 / 1-228

1990년 중 영국령 포클랜드 주변수역 조업금지에 관련 내용임.

1. 포클랜드(영국령) 주변수역 조업 금지

- 영국 정부는 1987.2월 포클랜드 주변수역 150해리 지역을 임시보존 및 관리수역(FICZ)으로 선포하고 매년 동 수역 입어척수 규제 및 입어료를 징수함.
 - 한국어선은 1985년부터 포클랜드 주변 공해조업에 참여했고 1989년 현재 FICZ 내 한국 조업 어선 수는 총 27척임.
-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90.11.24. 포클랜드 주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12.26.부터 FICZ 이원 50마일 수역 내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양국간 남대서양 어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함.
- 주한 영국대사관은 12.5.자 공한을 통해 상기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합의사항을 알려오면서 포클랜드 주변수역 조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어선은 포클랜드 정부에 의해 나포 및 기소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한국 등 조업국에 대한 영향

- 외국어선들에 대한 조업금지 수역을 현행 150마일에서 200마일로 확대하여 그동안 150마일과 200마일 내에서 조업해 온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일본, 폴란드 등이 타격을 받음.
- FICZ 내 조업허가를 득한 한국 오징어 어선 35척은 조업이 가능하나 1991년 어업시기에 포클랜드 인접 공해상에 출어 예정이었던 한국어선 26척의 타격이 예상됨.
- 공해상 조업 타격으로 FICZ 내 입어료 상승 및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
 - 1989년 한국의 오징어 총생산량은 34만 6천 톤이며 이 중 14만 5천 톤은 남대서양에서 어획함.
- 정부는 상기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합의가 한국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수역 내 입어를 추진하기로 함.

한·소련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09 / 15 / 1-189

1990년 중 한·소련 어업협력 동향임.

1. 동원산업의 1990년도 소련 수역 내에서의 공동어로사업

- 1989.12.30. SEAPRIMFICO와 선상원어 수매사업 계약 체결
- 계약내용
 - 1990.1.25.~4.10. 소련 오후츠크해에서 선상원어 수매사업 실시
 - 수매량: 포란명태 2만 톤
- 외무부는 1990.1.22. 수산청에 동원산업이 소련 측과 공동어로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으나, '북방 4개도서'는 일본과 소련 간에 분쟁이 있음을 감안하여 한·소련 간 공동어로사업이 한·일 본간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2. 대림수산 대소련 어업사업

- 소련 측 계약상대: SOVRYBFLOT(전 소련 어업공단)
- 계약내용
 - 1990.2.1.~3.30. 소련 경제수역 내에서 소련으로부터 명태원어 수매
 - 수매량: 명태 1만 1천 톤

3. 고려원양 대소련 어로사업 계약내용

- 1990.2.1.~4.10. 소련 측으로부터 2만 톤 원어 구매
- 1990.8.3. 비포란명태 1만 5천 톤 추가 어업협력 계약 체결

4. 수산청은 1990.6.12. 외무부에 척양수산(주)의 소련 Tinro 측 관계자 초청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소련 수역 출어협의를 위해 Nikolaevich 부국장외 3명 방한 초청(6.25.~7.2.)
- 한국 측(척양 / 대왕 / 성동)과의 의정서 작성, 교환

5. 해운항만청은 1990.7.23. 외무부에 아신해운(주)의 소련 수산청 관계자 초청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냉동화물 수송을 위한 시장조사 및 대리점 업무 협의를 위해 Borisovich 소련 수산청 운송담당 국장 외 2명 방한 초청(8.17.~23.)

153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미국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6 / 1-125

1987~89년 중 북태평양어업관리 평의회 회의가 개최됨.

1. 제79차 북태평양어업관리 평의회 회의(1987.12.8.~11.)

- 나라별 쿼터는 1987.12.4. 현재 일본 10만 1,446톤, 한국은 29,900톤임.
 - 북태평양어업 총 허용어획량은 1988년 221만9천 톤이며, 한국의 1987년 북양 어획쿼터는 1,614톤, 공동사업 45만1,950톤, 공해조업 16만6,000톤임.
- 미국의 '어업자원 보호 및 관리법' 위반 건수는 일본 2, 한국 2, 소련 7, 중국 6건임.
- 베링 공해상 조업 어선 수는 일본 34척, 한국 34척, 소련은 6척 등이며, 북해 공해상 조업 어선 수는 일본 95척, 한국 1척 등임.
- TALFF(외국할당량) 어종의 국가별 배정은 국가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본은 77%, 한국은 22%, 중국은 1%로 함.
- 각국이 신청한 어업허가(일본 343척, 한국 49척, 중국 5척, 폴란드 61척 등)는 모두 허가조치됨.

2. 제88차 북태평양어업관리 평의회 회의(1989.9.26.~29.)

- 동 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의 어업현황 및 관리보고, 단속 및 감시보고, 1990년도 외국어선의 입어허가 문제, 기름유출 문제, 입어제한 문제, 어업자원의 완전한 활용방안, 낚치 및 연어 어업관리 계획 등을 협의함.
- 미국 EEZ 수역에서의 나라별 규정 위반 현황(1989.9.15. 기준)
 - 일본: 규정위반 8건, 경고 3건, 납치 1건
 - 한국: 규정위반 4건, 경고 1건, 납치 2건
 - 소련: 규정위반 5건, 경고 3건, 납치 1건
- 미국 정부는 1989년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조치 시 미국 지원업체(운반선, 기름구입 등) 활용도, 미국 수산업계에 대한 투자규모, 베링공해에서 명태와 기타 어종의 어획고 제출 등을 고려함.
- 명태의 TAC는 61,400톤으로 설정함.

한·미국 간의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7 / 1-176

1990.1~5월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 합의

- 한·미국 양국은 1989.9.8.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에 합의하고, 10.26.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1989년도 한국어선 15척(10%)에 자동위치발신기 설치, 1989년도 미국과학자 옵서버 1명 승선 등에 합의함.

2. 수산청의 한·미국 합의사항에 따른 조치

- 1989.11.28.~12.5. 미국인 옵서버 R. Petrykowski가 한국 유자망 어선에 승선하여 투망폭, 어획량, 해양 포유동물 및 물새 포획여부 등을 관찰함.
- ARGOS PTT(자동위치발신기)를 설치한 한국 유자망 어선 명단과 1989.9.26.~12.31. 중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획물 양육검사 실적, 유자망 어획물 운반선 명단, 한국 유자망 어선 표준 선형과 재원(길이, 톤급, 색깔 등) 등을 미국 측에 통보함.

154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간의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18 / 1-145

1990.6~12월 기간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수산청은 1990.6.8.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 합의(1989.9.8.) 사항에 따라 한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허가어선의 명단 변경사항, 유자망 어획물 운반선 명단, 오징어 어획물 전적 허가사항 등을 미국 측에 통보함.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90.8.23.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 관련 캐나다 어업해양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아래 요지로 보고함.

- 1989년도 미국, 캐나다, 일본 과학자 옵서버가 22척의 일본어선에 승선하여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조사한 결과 돌고래 914마리, 바닷새 9,173마리를 포획함.
- 캐나다 어업해양부는 상기 포획비율을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등 전체 유자망 어선에 적용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동 결과를 유엔 당국에 제출할 예정임.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어업관리협의 회의. 제2-3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20 / 1-147

1990년 중 제2~3차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어업관리협의회의가 개최됨.

1. 제2차 회의(1990.3.2.~7.,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 정부 대표: 김성채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장
- 주요 의제
 - 남태평양 수역의 날개다랑어 자원 실태점검 및 동 관리문제 논의
- 정부 훈령
 - 동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것
 - 국제기구의 규제 동향과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의 대응 동향 등을 파악하고 한국의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 등 타 수역의 유자망 어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처
- 회의 결과
 -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제 창설 문제 토의
 - 본회의에서 관리제도에 포함될 공통사항을 채택하고 잠정적으로 Albacore 자원평가를 위해 과학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결정

2. 제3차 회의(1990.10.17.~20.,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 정부 대표: 박기철 수산청 원양개발담당관
- 주요 의제
 - Albacore 자원보존 관리방안 협의
 - 자원관리를 위한 기구 창설문제 협의
- 정부 훈령
 - 동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것
 - 제2차 회의 시 합의한 관리제도에 포함될 공통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이므로 일본, 미국, 기타 태평양 연안국가 등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

154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식물위생조사단 칠레 파견, 1990.3.3.-18.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09 / 21 / 1-126

1544

1. 파견 경위

- 1986.8월 제2차 한·칠레 합동회의 시 칠레 측은 농산물, 특히 포도의 한국수출을 위해 양국 간 식물위생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칠레산 농산물 수입 시 병충해인 지중해 광대파리(Medfly)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은 FAO(식량농업기구) /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당사국으로서 체결이 필요함을 칠레 측에 통보함.
- 칠레 측은 자국의 위생검역현황 소개를 위해 한국 식물검역 전문가를 초청해 왔으나, 5.29. 한국 측은 칠레가 여전히 공인된 지중해 광대파리 발생지역으로서 전문가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함.
- 주칠레대사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협상 시 칠레 측의 지지 확보를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농림수산부는 6.17.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

2. 한국 식물위생조사단의 칠레 파견(1990.3.3.~18.)

- 한국 조사단(3명)
 - 박창용 국립식물검역소 농업기좌, 구충완 국립식물검역소 농업기사보, 이문홍 농업진흥청 농업연구관
- 조사단은 칠레를 방문하여 농업성 농·가축 사무소 방문, 칠레 식물검역현황 청취, Arica 조사지에서 조사 활동을 전개함.

Chit Swe 미얀마 농림수산부장관 방한, 1990.11.29.-1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10/1/1-39

Chit Swe 미얀마 농림수산부장관이 1990.11.29.~1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8.20. Chit Swe 미얀마 농림수산부장관은 주미얀마대사와 면담 시 한·미얀마 간 축산, 수산, 임업,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경비부담으로 방한을 희망한바, 이에 정부는 동인을 농림수산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기로 함.

2. 방한 일정

- 농림수산부장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산림청장, 농촌진흥청장 면담, 식품개발연구원, 대우중공업, 새마을 연수원, 수목원 등을 방문함.

154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금융기구의 대중국 차관 중지 조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10/2/1-85

천안문사태 이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중국 차관 제공 중단조치 동향임.

1. 1989.6.22. 개최된 ADB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천안문사태와 관련, 중국의 사업수행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ADB의 대중국 신규차관 제공 무기한 중지를 제의하고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함.

- 한국 정부는 8.12. 국제금융기구의 대중국 차관 중지와 관련 대중국 신규차관 심의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나 한·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대중국 신규차관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동 내용을 IBRD 및 ADB 주재 이사에게 훈령을 통해 지시함.

2. 1989.9월 중순 이후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국가 등 서방국들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모색을 시작함에 따라 IBRD와 ADB는 대중국 차관 제공 재개를 검토함.

- IBRD는 10.18. 발생한 중국 북부지역 지진피해 긴급 복구를 위한 IDA(국제개발협회) 차관 3천만 달러 공여계획을 1990.1.30. IBRD 이사회에 상정

IDA(국제개발협회) 제9차 자원보충을 위한 회의. 제2-6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0/3/1-148

제2~6차 IDA(국제개발협회)-9 자원보충 회의 개최 동향임.

1. IDA는 저개발회원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장기무이자 차관공여 자원보충을 위한 IDA-9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제2차(1989.5.15.~18., 런던), 제3차(1989.7.5.~7., 코펜하겐), 제4차(1989.9.21.~22., 워싱턴), 제5차(1989.11.1.~4., 교토), 제6차(1989.12.13.~14., 워싱턴)
- IDA 회원국: 137개국(선진국 22국, 개도국 115국)

2. 정부는 제2~6차 IDA-9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에 대한 훈령을 발령하고 IDA 자원보충 규모, 국별 출연분담금, 수혜자격, 자원배분 문제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에 대한 대폭적 출연 증대요구와 관련, 출연비율(0.15%) 또는 조정 GNP(국민총생산) 비중(1987년 기준 0.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출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한국입장을 표명할 것을 지시함.

3. 제2~6차 IDA-9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결정됨.

- IDA-9 시행기간: 1990.7.1.~93.6.30.
- IDA-9 자원 전체 규모: 116.79억 SDR(약 150억 달러)
- 한국 출연금: 기본출연금 17.5백만 SDR, 특별출연금 11.5백만 SDR

154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몽골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0/4/1-60

1989~90년 중 몽골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 동향임.

1. 몽골이 1989.9월 ADB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바, 이에 ADB 사무국은 몽골의 가입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 한국 정부는 몽골이 ADB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여 찬성입장을 결정하고 10월 몽골가입 지지 의견을 ADB에 통보함.

1548

2. 1990.1월 한·몽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몽골 측은 ADB 가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 정부는 가입지지 의사를 1989.10월 기 통보한 바 있음을 상기함.

마셜군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0/5/1-85

1989~90년 중 마셜제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관련 동향임.

1. ADB 사무국은 1988.6월 마셜제도의 ADB 가입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 한국 정부는 1989.1.17. 마셜제도가 아직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관할하에 있는 미국 독립국가
이나 국제법상 분쟁과는 별개로 동 국가의 ADB 가입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ADB
사무국에 회신

2. ADB는 1989.12.18. 이사회 및 1990.1.30. 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42개 회원국 중 39개국의
찬성으로 마셜제도의 ADB 가입을 결정함(ADB 총회결의 제201호).

- 한국 정부는 마셜제도에 대한 국가승인이나 외교관계 수립을 보류하고 있으나, 경제협력 등
한·마셜제도 간 실질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총회 표결 시 가입을 지지

154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터키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0/6/1-41

1989~90년 중 터키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관련 동향임.

1. 터키 정부는 주한 터키대사관(1989.3.13.) 및 주터키대사관(1989.4월)을 통해 터키의 ADB 가입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 외무부는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터키의 ADB 가입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될 경우, 역내외 주요 회원국 동향 및 한·터키 관계를 고려하여 최종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결정

1550

2. ADB 이사회에 상정된 터키의 ADB 가입 신청안에 대해 1990.5.31. 한국은 터키의 가입 지지를 결정하고 찬성 투표함.

- 터키는 총회 표결을 거쳐 1991년 ADB에 가입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31차. Montreal, 1990.4.2.-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0/8/1-105

정부는 1990.4.2.~4.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31차 IDB(미주개발은행) 총회에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DB 가입 교섭활동 전개
- Iglesias IDB 총재 및 Pedro Aspe 멕시코 수석대표 등을 면담하여 한국의 IDB 가입 지지를 요청

2. 참석자

- 44개 회원국(역내 27, 역외 17) 및 3개 옵서버국(한국, 도미니카, 루마니아)

3. 의제

- 1990~93년 225억 달러 상당 대출계획
- 7차 자원 보충 문제
- 환경오염 문제
- 중남미국가들의 외채 문제

4. 결과

- 한국의 IDB 가입 전망은 찬성 28개국, 태도 미결정 15개국, 반대 1국(브라질) 등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확인된바, 한국 정부는 경제력 신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 및 IDB 재원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0년대 중반경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15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제26차 총회 및 제6차 자원보충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 번호 2020-110/9/1-210

정부는 1990.5.29.~31.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되는 제26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에 김명호 한국은행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75개 회원국(역내 50국, 역외 25국) 및 옵서버국가

2. 주요 의제

- 1987~91년 AFDB 제4차 일반증자 65억 BUA(약 87억 달러)에 대한 평가
- 1988~90년 AFDF 제5차 자원보충에 대한 평가
- 1991~93년 AFDF 제6차 자원보충 문제
- AFDB 및 AFDF 총재 선출

3. 훈령

- 자원보충 논의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규모는 역내 개도국의 경제여건, 외부자원 이전규모, 역외 회원국의 출연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수석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AFDB /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차관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 모색

4. AFDF 제6차 자원보충(1991~93년) 준비회의가 제1차(1990.6.1.~2., 아비장), 제2차(1990.9월, 워싱턴), 제3차(1990.11.7.~9., 로마), 제4차(1990.12.12.~14., 리스본)에 걸쳐 개최된바, 정부는 재무부와 한국은행 직원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파견, 훈령을 통해 아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 자원보충 규모는 가급적 소규모로 책정하여 역외국 부담을 최소화
- 국별 출자비율 기준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 출자비율을 가능한 한 제5차 자원보충시 출자비율로 (0.6962%) 유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9차. Paris, 1990.5.30.-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10/ 10/ 1-55

제29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외무, 재무, 통상장관 참석 연례회의가 1990.5.30.~31. 파리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업보조금 철폐
- 동구국가 지원
- 외국인투자 자유화
- 환경·경제 정책

2. 회의 결과 및 특기사항

- 우루과이협상 관련 주요국간 이견 해소 실패(농산물 보조금 철폐에 관한 미·EC(구주공동체) 간 대립 지속)
- 동구국가에 구매받지 않는 대개도국 개발원조 합의
- OECD-DAEs(아시아 신흥공업국) 워크숍 등 대화 지속
- 유고의 정식 가입신청서 접수

3. 한국 관련 사항

-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이 세계경제 발전에 유익함을 인정
-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진전 평가

4. 평가

- 경제의 세계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제적 협력강화 필요성 인식 계기 및 이를 위한 OECD 역할 강조
- 주요 회원국간 참여한 이해대립 관계 표출 및 적극적 해결 수단 부재 노정
-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의 세계경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155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조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10 / 11 / 1-61

1990년 중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검토 동향임.

1. 외무부는 한국의 경제력 신장, 국제사회 비중 증대에 따라 1990년대 OECD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OECD 가입 검토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1990.3.27. 주요 재외공관에 지시함.

- OECD에 대한 각국의 인식 및 평가
- OECD 의무사항 관련, 각국의 유보 내용, 배경, 협상결과 및 대책
- 회원국 확대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한국의 가입 전망에 대한 평가

2. 주미국, 주일본, 주영국대사관 등 주요 공관들은 OECD가 국제경제 발전 및 중·동구권 국가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과학·사회분야 공통문제에 대한 선진국간 컨센서스 형성 및 시장경제체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보고함.

- 회원국 가입은 OECD 2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2개국 정도가 신규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외무부는 국내경제적 고려에 따른 부분적 OECD 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개방 노력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결정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3권 (V.1 Liaison Group 회의, 1989.1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0 / 12 / 1-161

정부는 1989.10.16.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 Liaison Group 회의에 임대택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외무부 통상국장과 Lennkh OECD 조선분과위 의장과의 면담 요지(1989.9.29.)

- 미국 측의 OECD 조선분과위 통한 조선문제 해결 구상 평가
 - 미국이 OECD 조선분과위를 10년전에 탈퇴하였다가 1989.6월 복위한 것은 동 위원회 기능을 약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 측의 언급에 대해 Lennkh 의장은 미국이 동 위원회를 이용(use)하려는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 개념 설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1990.3월까지 다자간 합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2. OECD 조선분과위 Liaison Group 회의 결과

- 목적: 미국 측의 조선문제 다자간 해결 제안 토의
- 미국 측 제안설명(1989.10.23.~24. 개최된 OECD ECSS 회의에서 아래 요지의 성명 채택 추진)
 - 1983.2월 채택된 OECD '조선업 공정조건 장애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일반협정' 준수 재천명
 - 동 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관한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을 약속
 - 새로운 조선 추가지원을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 비상상황에 따른 조선지원의 경우에는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조선분과위에 통보,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데 동의
 - 상기 ECSS 협의를 기초로 국별 보조금 철폐계획 수립 및 Overall Framework 도출
- 한국 측 발언요지
 - 한국은 일반협정 참여국은 아니나 그간 Liaison Group 회의를 통해 동 협정시행에 적극 협력해 왔음.
 -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모든 관련국이 수락한다면 미국 측 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관련국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 한국은 보조금 제도가 없으며 보조금 철폐문제는 보조금 정의에 대한 다자간 컨센서스가 선행되어야 함.

3. OECD ECSS 회의(1989.10.24.)에서 미국 측의 조선문제 해결 제안에 대한 토의 내용

- 회의 의장 결론
 - 모든 참가국이 미국 제안에 동의
 - ECSS는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데 노력할 것임.
 - 참가국들의 의견제시만 있었으며 동회의 성격상 성명문 채택 등은 없었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3권 (V.2 Liaison Group 회의, 1989.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 번호 2020-110 / 13 / 1-196

정부는 1989.12.19.~20. 파리에서 개최된 제5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Liaison Group 회의에 장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철폐논의 대상 보조금 및 지원조치 리스트 확정

- 1989.12.7.~8.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하여 조선지원 현황 매트릭스 작성을 위한 리스트를 확정짓고, 각국은 동 리스트에 따라 조선지원 현황 자료를 작성, 1990.1.19. OECD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결정

2. 조선문제 다자간 협정의 성격

- 미국 측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enforcement 메커니즘을 갖춘 다자간 협정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동 관련 제안을 추후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결정

3. 향후 회의 일정

- 미국 측이 1990.3월 말까지 합의도출이라는 목표 아래 다소 무리한 일정을 제시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우선 1990.2.12.~14.간 전문가 회의 및 제6차 Liaison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일정은 동 회의에서 토론하기로 결정
- 한편 한국 측은 비OECD 멤버로서 회의자료 송부 등 관련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OECD 사무국 측은 차후에는 외교채널을 통한 송부와 별도로 관련 부처에 자료송부를 약속

4. 한국의 조선분과위원회 가입 문제

- Lennkh 조선분과위원회 의장은 한국 측에 OECD 비회원국인 한국이 조선분과위에 권리, 의무 양면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서를 수교하고 동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검토 요청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동 문제가 한국으로서는 정책상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 간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동 결과에 관계없이 조선분과위에서의 조선 문제 토론에 적극 참여함이 한국의 기본입장임을 재강조

5. 조선업계의 협상 참여 문제

-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결정
 - 미국 측은 정부간 협상이라는 견지에서 반대하고, 서독, 노르웨이 등은 업계 전문가 없이는 협상 진행이 비효율적임을 들어 찬성
 - 한국 측은 참여시키되 발언권을 주지 않는 협상안 제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3권 (V.3 보조금전문가 및 양자 협상, 1989.12-90.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0 / 14 / 1-107

1. OECD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1989.12.7.~8., 파리)

- 참석자(수석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 회의 결과
 - 철폐논의 대상 보조금 및 지원조치 리스트 작성
 - 새로이 작성된 리스트는 당초 미국 측 안(10.16. 제4차 Liaison Group 회의에서 제시)과 대동소이(계획조선과 관련된 Home Credit Scheme 포함 문제는 한국, 일본 측이 반대하여 1989.12.19.~20. 개최될 Liaison Group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
 - OECD 조선분과위원회에 기 제출한 조선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금번 회의 시 작성된 리스트에 따라 국별 조선지원 현황 매트릭스를 조속히 작성하기로 결정
- 업계대표 조선경기 전망 청취
 - 한국은 1989.8월 발표된 조선합리화 조치는 조선시설, 신·증설 억제, 수출 추천제를 통한 저가수주 방지 등 세계 조선시장의 안정과 공정경쟁 도모한다고 언급

2. 제1차 한·미국 조선회의(1989.12.18., 파리)

- 참석자(수석대표):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3. 제2차 한·미국 조선회의(1990.1.15.~16., 서울)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국무부 운수담당부차관보
- 토의내용 요지
 - 미국 측: 결과적으로 보조의 효과가 있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고자 하며 각국별 예외를 인정하면 금번 조선문제 해결 노력은 의미 상실, 한국은 최근의 조선합리화 조치에 대해 사회, 정치적 고려를 내세우는데, EC(구주공동체) 국가들도 그들의 직접보조에 대해 동일한 논리 제시, 따라서 관련국들은 의미 있는 합의도출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 한국이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은 현상고수적 접근, 조선업에 관한 한 한국은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 정부보조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바,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기대
 - 한국 측: 미국 측이 진정으로 합의도출을 원한다면 완벽한 조건보다는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 한국이 조선업에 관한 한 선진국이지만, 조선업과 관련된 여타 산업(금융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달인바, 이러한 특수상황 고려 요망

155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1 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0 / 15 / 1-200

정부는 1990.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제6차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1990.2.12.)

- 조선지원 matrix questionnaire에 대한 각국 답변서 검토
-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은 한국의 조선보조금 특혜금융, 선박수출 공적신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금융제도, 조세정책의 특수성 및 고유성을 설명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우대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

2. Liaison Group 회의(1990.2.13.~14.)

- 정부 훈령
 - 조선지원조치 철폐 시한과 관련, 실현 가능성 및 각국별 사정이 고려되고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조선업에서의 공적수출신용제도는 세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조선소에 대한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출자는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기존 출자 조선소에 대한 운영손실 보전, 선박가 보조 등 추가 지원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등 신흥조선국가의 협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력 제기
 - 미국 조선업계의 부진 관련, 미국 업계 자체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 요망
- 회의 결과
 - 한국의 OECD 조선분과위 정식 가입 추진의사 표명
 - 미국이 제의한 철폐 대상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조치 검토
 - 선박수출 신용공여에 대한 시장금리 적용
 - 국영조선에 대한 지원 동결 제시
 - 보조금 철폐대상 선박 중 내항선 제외 제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2 3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0 / 16 / 1-309

정부는 1990.3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의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제7차 Liaison Group 회의에 장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1990.3.5.~6.)

- OECD 조선보조금 철폐 회의를 통해 각국 지원제도 검토
 - 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미국 제안 조선지원 철폐 국제협정안 검토 회의로 분할 개최

2. Liaison Group 회의(1990.3.26.~27.)

- 정부 훈령
 - 협정위배 기존 조치의 철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협정 발효전에 이루어진 계약 및 관련 금융, 정부의 특정 공약조치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협정적용 대상 선박은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하며 국내항행 선박은 원칙적으로 포함, 정부 소유 군용 선박은 제외하되 톤 수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
 - 분쟁해결절차 관련, 처벌 성격의 구제조치 도입에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안 제시
- 회의 결과
 - OECD 사무국이 주요국(한국, 일본, 미국, EC(구주공동체))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작성, 본격 협상을 위한 협정 초안 토의
 - 각국은 조선지원 조치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155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3 4월-5.1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0 / 17 / 1-353

1990.4~5월 중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가입과 관련한 EC(구주공동체) 집행위 회의 개최 내용임.

1. OECD 이사회는 1990.4.6. 한국의 OECD 조선분과위 가입 초청안을 의결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함.

-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동 분과위 가입에 따른 아래 의무사항을 통보하면서 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GNP(국민총생산), 인구수, 환율 등) 제공을 요청

2. EC 집행위는 1990.5.2. 제6차 조선보조금 지침을 199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주EC대사관을 통해 아래 주요 지침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함.

- 보조금 지급한도: 현 20% 수준 유지
- 적용대상 국가: 91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도 적용
- 조선소 폐쇄 보조금 지원 조건 강화
 - 보조금 수혜 조선소는 최소 5년간 폐쇄 및 동 기간 중 조선 관련 여타 조업활동 금지
- 개도국 주문 선박 건조 보조금은 상기 20% 상한선 불적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4 5.11.-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0 / 18 / 1-224

정부는 1990.5.14.~15.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협정위배 기존조치의 철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협정 발효 전에 이루어진 계약 및 관련 금융, 정부의 특정 공약조치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협정 적용대상 선박은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하며 국내항행 선박은 원칙적으로 포함, 정부소유 군용선박은 제외하되 톤 수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
- 분쟁해결절차 관련, 처벌 성격의 구제조치 도입에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안 제시

2. 회의 결과

- EC(구주공동체)의 선박가 덤핑규제 제안, 미국의 정부보조시 제재조치 및 연구개발 지원규제 수정안 검토
 - 한국, 일본은 EC의 선박가 덤핑규제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 견지
- OECD 사무국 작성 협정안에 대한 각국 입장 확인
 - 각국은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고수, 실질적 진전사항 없이 회의 종료
- 5월 말 개최 예정인 OECD 각료회의 공동성명에 각국은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협조를 재확인하였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결정
- 미국은 당초의 6월 중 타결 목표를 포기하고 시한없이 가능한 한 조기타결 방침으로 전환

15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5 6-7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 번호 2020-111 / 1 / 1-192

정부는 1990.6.18.~21. 및 7.30.~31. 파리에서 개최된 제9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Liaison Group 회의에 장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협상 지연의 근본 원인이 EC(구주공동체)의 협정지침 미확정 및 민간의 가격 관행 규제 제안(반덤핑)에 있다는 인식 조성
- 공적수출 신용조건 관련, 현행 양해조건 유지
-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관련, 협정 발효 전 체결 계약 및 정부 약속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되는 조치는 Annex II에 반영
- 산업은행의 대조선사업 대출금지는 조선산업에 대한 차별이므로 철폐대상에서 제외
- 타국이 계획조선제도를 철폐할 경우, 한국도 국내조선 연계제도 철폐 용의 표명
- 협정 적용대상은 1,000G / T 이상으로 하되 내항선 포함 및 군용선박 제외 입장 견지
- 신조선 및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 철폐 관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양허하도록 하여 1996년까지 매년 0.5%씩 관세율 인하 검토 가능
- 민간의 불공정가격 관행 규제 관련, 불공정여부 판정절차가 수입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GATT 반덤핑협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

2. 회의 결과

- EC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EC의 제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특히 GATT의 반덤핑 코드와 전혀 다른 제도의 도입에 반대함으로써 EC는 차기 회의 전까지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기로 합의
- 각국의 조선산업 지원제도와 관련, 각국 지원제도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하고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은 수정자료, 한국은 추가설명 자료를 제출
- 회의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1990년 내 협상타결 전망은 요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6 8-9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1 / 2 / 1-209

정부는 1990.9.24.~28.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Liaison Group 회의에 장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협상 지연의 근본 원인이 EC의 선박에 대한 반덤핑제도 도입에 있으므로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 제시
- 반덤핑제도 도입, 공적수출신용, 기존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인정, 대출금리의 보조여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고수
-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관련, 협정 발효전 정부 약속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되는 조치는 Annex II(철폐계획)에 반영
- 산업은행의 대조선 사업 대출금지는 조선산업에 대한 차별이므로 철폐대상에서 제외
- 타국이 계획조선제도를 철폐할 경우, 한국도 국내조선 연계제도 철폐 용의 표명
- 협정 적용대상은 1,000G / T 이상으로 하되 내항선 포함 및 군용선박 제외 입장 견지
- 신조선 및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 철폐 관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양허하도록 하여 1996년까지 매년 0.5%씩 관세율 인하 검토 가능
- 공적소유 관련, 대우조선 정상화 후 주식을 매각하여 산업은행 출자지분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EC가 역내 국유조선소를 5년 내 민영화한다면 한국도 산업은행 지분을 5년내 처분
- 인간의 불공정가격 관행규제 관련, 불공정 여부 판정절차가 수입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GATT 반덤핑협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

2. 회의 결과

- 주요 쟁점별 전문가 회의, L.G. 회의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견과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사무국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 분쟁해결절차, 연구개발 지원 및 Annex I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 의견이 제시됨
- 불공정 선거 규제 문제가 한국업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경주
- 회의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1990년 내 협상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나 미국이 통상법 301조 청원과 관련, 국내 조선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내 협상타결 강력 추진 가능성도 있음.

156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199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7 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1 / 3 / 1-137

정부는 1990.10.1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에 가입함.

1. 경위

- 1989.12월 OECD 조선분과위원회는 한국가입 입장을 타진
- 1990.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한국가입 추진을 결정
- 1990.4월 OECD 이사회는 한국가입을 초청
- 1990.10.17. 노영찬 주프랑스대사와 Paye OECD 사무총장 간 각서교환으로 정식 가입
 - 한국의 OECD 조선작업부와의 Liaison Group 관계 종료

2. 의의

- OECD 비회원국 최초로 OECD 산하위원회 정식 가입
- 진행중인 세계 조선산업 새규범 제정 작업에 기존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한국 조선업 권익보호에 기여
- 세계 2위 조선국으로서의 위치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음.

3. 회원국 준수 의무

- 조선분과위원회의 일반협정 및 일반지침 수락
- 선박수출 신용양해의 수락
- 분담금 납부(연간 13,900프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전8권 (V.8 11-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 번호 2020-111 / 4 / 1-264

정부는 1990.12.10.~24. 파리에서 개최된 제12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보조금 협상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1차 회의 결과(1990.11.5.~9.)

- 사무국이 작성한 2차 수정안을 기초로 협정 본문, Annex I(제거대상 정부지원 조치), Annex II(지원 조치의 철폐 계획), Annex III(불공정 선거 규제)에 대해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인,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별도의 법률전문가 그룹에서 협정안의 초안을 추진하기로 함의

2. 제12차 회의

- 정부 훈령
 - 협상지연의 근본 원인이 EC(구주공동체)의 선박에 대한 무리한 반덤핑제도 도입에 있으므로 협상의 종결을 위해 EC의 불공정 선거 규제방안으로 오로지 원칙만 본 협정에 포함하고 구체적 규제방안은 향후 계속 논의 입장 제시
 - 협정타결에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협상 결렬 시 미국업계가 한국을 선별적으로 301조 등 일방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명분을 최소화
 - 조선계획과 관련, 국내조선 연계제도 철폐를 위한 법개정 추진 용의 표명(각국의 철폐계획과 균형을 맞추어 법개정 추진)
 - 연구개발지원 관련,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이용 가능한 경우와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결과가 개방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추진
 - 공적소유 관련, 대우조선 정상화 후 주식을 매각하여 산업은행 출자 지분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EC가 역내 국유조선소를 민영화한다면 한국도 산업은행 지분을 처분
 - 민간의 불공정 가격 관행 규제 관련, 불공정 여부 판정절차가 수입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협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
- 정부의 향후 대책
 - 협정안 전반에 대해 변호사, 업계 등을 활용한 쟁점사항 입장 정립
 - 협정 사안별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입법조치 필요 여부,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수립

156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DAC(개발원조위원회) Tidewater 회의, 제24차. 고덴바(일본), 1990.7.14.-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11 / 5 / 1-90

정부는 1990.7.14.~15. 일본 고덴바에서 개최된 제24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DAC(개발원조위원회) Tidewater 회의(개발협력문제 회의)에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개요

- 목적: 개발협력문제 전반에 대해 원조국, 국제기구 및 수원국의 고위책임자가 자유롭게 의견교환
- 참석자: OECD / DAC 위원장(의장), 세계은행 총재, OECD 사무총장, 각국의 장차관, 국장급 경험관계 고위관계자
- 배경
 - 1968년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계기 미국 메릴랜드주 Tidewater Inn에서 최초로 개최됨.

2. 초청 경위

- 회의 주재: 일본 JICA(국제협력기구) 총재 및 외무성 경제국장 공동 주재
- 한국 초청: 4.12.자 DAC 위원장 명의의 이기주 차관보 앞 초청장 접수
 - 이기주 차관보는 1990.7.13.~17. 방일함.
- 토의의제
 - 민간부문 진흥에 있어서의 자금원조의 역할
 - 원조의 역할, 원조는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 민간부문 진흥에 있어서 기술원조의 역할
 - 환경문제, 동구지원, 경제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세계빈곤 문제, 군비지출 등

3. 1990.6.22.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이기주 제2차관보를 면담, 동 회의 관련 공동의장인 JICA 총재의 관심사항과 토의 의제를 설명함.

- 8월 JICA 총재는 이기주 차관보 앞 감사서한 발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관계 전문가 회의. Paris, 1990.9.10.-1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11 / 6 / 1-5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관계 전문가 회의가 1990.9.10.~11. 파리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범위

- OECD 회원국의 정부, 중앙은행, 업계 금융관계 전문가
-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전문가 및 관계관
- OECD 사무국 관계관
-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EEC(유럽경제공동체),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2. 한국 측 참석자

- 임대택 OECD 연락관
- 김종태 한국은행 파리 사무소장
- 강영주 주프랑스대사관 재무관
- 이영기 KDI 연구관

3. 회의 의제

- OECD 회원국 내에서의 최근 금융시장 및 금융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교환
 - 민간 금융기관의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가 자유토론에 참가

4. 주요 토의 사항

-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내용
 - 금융 자율화의 진전과 영향
 - 금융 국제화의 진전과 영향
- 금융 집중화의 경향과 영향
- 최근 금융규제에 관한 논의
 - 금융규제의 성격
 - 금융 감독방법 및 방향
 - 거대 복합 금융기관에 관한 논의

156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P. Vinde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방한, 1990.3.29.-4.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11 / 7 / 1-55

P. Vinda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DAEs(Dynamic Asian Economic) 사무차장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초청으로 방한함.

1. OECD DAEs 워크숍 개요

- 참가국
 - OECD 회원국 24개국
 - DAEs 측: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 회의 성격
 - 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비공식, 비공개 토의
 - 주제에 따라 경제학자, 업계인사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여 OECD 측, DAEs 측을 포함한 3원 토의

2. 방문 목적

- 1990.4월 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OECD / DAEs(Dynamic Asian Economic) 워크숍 회의 참가 직전 KDI 주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기 위함.
 - 주제발표 제목: The Global Economy in 1990s: Some Issues in Economic Policy
- 한국의 관계, 학계인사 면담
 - 유종하 외무부차관
 - 이진설 기획원차관
 - 환경처 기획관리실장
 - KDI 양수길 박사 등

UR(우루과이라운드)/고위급 비공식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8 / 1-66

정부는 1990.2월 및 4월에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급 비공식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R / 고위급 비공식 회의(1990.2.8.~9., 스위스 뉴사텔)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14개국 UR담당 정부고위관리(차관보급) 및 주제네바대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관계관 등
- 차기회의: 1990.4.9. 개최 예정인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직전 개최(스위스가 계속 주최)
- 관찰 및 평가
 - 7월까지 각 협상분야별 타결 방안 마련 및 연내 협상타결이 긴요함에 공동 인식(4월 및 7월의 TNC 회의가 각 분야별 협상 타결에 중요한 계기가 됨)
 - 주요 쟁점별 이견 지속에 비추어 최종 단계에서의 Trade-off 및 일괄타결 불가피성 증대
 - 선진·개도국 간 기본입장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분야에서 선진국의 의도대로 협상 강행 가능성 증대

2. UR / 고위급 비공식 회의(1990.4.8., 제네바)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본국 고위 실무자 및 제네바 협상대표, GATT 사무차장 2인
- Mathur 사무차장은 4~7월 기간 동안 모든 그룹, 특히 입장 차이가 현격한 농업, 섬유분야에서 진전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면 협상의 전망은 비관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 참가국들은 7월까지 브뤼셀에서 합의할 Package의 대체적인 윤곽이 필요하며, 이러한 윤곽은 단일 협상문서를 의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한국을 비롯한 다수 참가국들은 7월까지 각 분야별로 각국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협정신을 갖고 야심을 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156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개도국 비공식그룹 회의 및 평화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9 / 1-222

1570

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개도국 공동성명

- 목적: UR 협상과 관련한 개도국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 선진국의 양보 촉구
- 경위
 - 1990.2.7. 개도국 비공식 회의에서 거론
 - 1990.2.16. 개도국 비공식 회의에서 초안 기초
 - 1990.2.23. 개도국 비공식 회의 전체회의 소집, 채택
 - 1990.2.26. 던켈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언론에도 발표
- 성명 요지: 협상의 불균형 시정 촉구(미, EC(구주공동체) 등 주요 선진국 관심분야의 급진전, 반면 개도국 관심분야는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무 진전)

2. UR / 개도국 우대 평가회의(1990.11.12.~13., 제네바)

- 정부대표단: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장석환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
- 1990.11.12. Dunkel 의장 주재하에 개도국 우대 평가를 위한 GNG(상품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브라질이 전체 개도국을 대표하여 현 상황 하에서는 개도국 우대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평가를 다시 하도록 제의함에 따라 다시 평가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종료됨.
 - 브라질은 11.8. 개도국 비공식 회의 시 합의에 따라 전체 개도국을 대신한 발언을 통해 상기와 같이 추후 평가회의 재개를 제의하면서 개도국 우대에 관한 분야별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시장접근분야에서 완전한 또는 과도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규범제정분야에서 새로운 의무의 신축성 있는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에서도 개도국의 개발 측면 및 신축성 있는 규범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3. UR / 평화그룹 협의(1990.9.17.)

- 회의 참가국(13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우루과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헝가리
- 정부입장: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과 UR 협상 진전의 저지(특히 신분야) 내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도, 브라질, 유고, 이집트 등의 강경개도국의 중간 입장에서 UR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 모색
- 회의 결과
 - 브뤼셀 각료회의가 7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나, 1990.8.27.부터 시작된 중반단계 협상에서도 전반적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섬유협상 관련 신축성을 보인 것과 같이 EC도 조속히 섬유 및 농산물 분야에서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10 / 1-266

1990.7~12월 중 작성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방안 관련 내용임.

1. UR 협상과 대응방향 대통령 보고(1990.7.18.)

- 참석자: 보고자(경기원, 외무부 등 장관 7명) 및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18명
- 보고 내용
 - UR 협상의 배경 및 의의, 협상동향,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 분야별 대책: 농산물, 섬유, 금융, 건설, 통신
 -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전략

2. UR 협상 종반단계 협상전망과 대책방안(1990.8.3., 주제네바대표부)

- 15개 협상분야별 협상전망 및 대책
- 시장접근분야(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물), 섬유, 농산물 등 분야별로 주요쟁점, 향후 협상 계획 및 전망, 한국입장 등 정리

3. UR 협상 진행 상황과 전망(1990.11.3.)

- 협상 연혁 및 진행상황
 - 1986.9월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 및 UR 협상 출범
 - 1988.12월 및 1989.4월 중간평가 실시(몬트리올 각료급 및 제네바 고위급 TNC(무역협상 위원회) 회의)
 - 1990.10.8.~22. TNC 회의 상시 소집 앞두고 분야별 미결사항 절충 노력 전개
 - 1990.11월 말까지 전체적 조정 및 분야별 미결사항 협상 지속
 - 1990.12.3.~7. 브뤼셀 각료급 TNC 회의에서 최종타결 모색
- 주요 분야별 협상전망
 - 농산물, 섬유, 셰이프가드, 서비스 등이 최종 순간까지 난항 예상
 - 특히 농산물협상 성공이 UR 협상의 관건으로 작용
 - 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 등에서 선진·개도국 간의 이해가 대립하나 선진국 주도하에 타결 전망
- 협상 실패 시 예상결과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약화와 양자주의의 강화

15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당·정협의 및 토론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11 / 1-18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당·정협의 및 각종 토론회 관련 내용임.

1. 제1차 UR 대책 특별위원회(1990.8.14.)

- 참석자: 한승수 민자당 의원 등 의원 8명, 경제기획원장관 및 6개 부처 관계관
- 토의 내용
 - UR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
 - 농산물분야의 이익확보 방안 강구
 - UR 종료 후 국내산업 조정 및 대국민 홍보방안 수립

2. 평화민주당 의원 세미나(1990.8.30.)

- 참석자: 김대중 총재 등 평민당 의원, 경제기획원 및 외무부 관계관
- 토의 내용
 -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이 UR 협상 동향과 대응방향 설명

3. 민주자유당 농산물 협상 대책회의(1990.9.4.)

- 참석자: 한승수 민자당 의원(UR대책특위위원장) 등 의원, 농림수산부장관, 경제기획원 등 관계관
- 토의 내용
 - NTC(비교역적기능) 관련 한국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 및 농정보완대책 수립
 - 대국민 홍보 추진 방안

4. UR 농산물 협상 대응방안 수립 공청회(1990.10.16.)

- 참석자: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등 농민대표, 학계 인사
- 토의 내용
 - C/L(국별 현황자료) 작성방향 및 향후 협상대책, UR 타결 이후의 국내 농업정책 방향

5.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1990.10.12.)

- 참석자: 농림수산부장관, 위원 24명
- 토의 내용
 - NTC 대상 품목, 협상대책, 국내대책



6. 농업단체를 위한 UR 농산물협상 설명회(1990.11.10.)

- 참석자: 농림수산부장관, 농축수협 등 관계자 38명
- 토의 내용
 - GATT/UR 제출 Offer List 설명, 특강, 토의

7. UR 대책 특별자문위원회(1990.11.7.)

- 참석자: 농림수산부장관, 농협, 축협 등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참석
- 토의 내용
 -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외 출장결과 설명, GATT/UR 제출 Offer List 설명

157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전2권 (V.1 9-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12 / 1-124

1990.9~10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관련 내용임.

1. 주요국 수석대표 만찬 협의회(1990.9.19.)

- 협상 촉진을 위한 각국의 주요 관심사 논의
 - 농산물 협상의 어려움 표명
- 미국의 농산물 및 섬유협상에서의 신축적인 입장으로 전진 기대

1574

2. 비공식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90.10.9.)

- 동 회의에서 Dunkel 사무총장은 UR 협상을 3개 그룹으로 구분, 협상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
 - 10.19. 협상시한분야: 원산지 증명, 선적 전 검사, 기술장벽협정, 수입허가협정, 정부구매협정, 관세평가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분쟁해결
 - 10.26. 협상시한분야: 시장접근,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무역관련 투자, GATT 기능
 - 11.2. 협상시한분야: 섬유류, 농산물,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 서비스분야는 11.12.까지 시한 설정

3. UR / 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1990.10.24.)

- 1990.10.19. 및 10.26. 협상시한분야 및 시장접근분야의 협상진전을 평가하고 대책 논의
 - 10.19. 협상시한분야: 브뤼셀 회의 시 공식 채택 가능한 분야로 수입허가 절차, 관세평가, GATT 2조1(B)항 등 언급
 - 10.26. 협상시한분야: 감시기능, 금융 및 통화에서의 진전 가능하나, 무역투자, 반덤핑, 보조금 등에 대한 우려
 - 시장접근분야: Offer List 미제출 문제, 기 제출된 Offer List의 문제 지적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13 / 1-193

1990.11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관련 내용임.

1. UR 협상 분야별 회의 및 평가

● 회의

- 11.1. 회의: 그린룸 협의, 시장접근분야 합동회의
- 11.2. 회의: GNS(서비스협상그룹), 지적재산권협상그룹
- 11.2.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 시장접근, 규범제정 등 분야별 현황평가
- 11.3.~5. 회의: GNS, 보조금 등 협상그룹, 섬유협상그룹 등

● 사무총장의 평가

- 시장접근분야: 농산물협상은 교착상태
- 규범제정 잠정합의분야(GATT 조문 일부 개정, 관세평가협정), 합의된 협상기초 분야(원산지 증명, 선적 전 검사, 위생 및 검역, 세이프가드), 합의된 협상기초 부재 분야(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국제수지 조항 등)
- 서비스: 법률 전문가의 의견반영 및 기본협정 수정 필요

2. TNC(무역협상위원회)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 및 분야별 회의

- TNC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는 EC(구주공동체)의 농산물 Offer 지연 등으로 야기된 UR 협상위기 타개 차원에서 1990.11.6. 소집되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각국의 종전 입장 반복 주장
- 11.8.부터 그린룸 협의를 통해 농산물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절충 시도
- 11.7. 이후 각 분야별 회의

3. 미국·EC 간 고위절충 작업

- 1990.11.13.~19. 일련의 회의(정상간, 각료회의, CSCE 회의)를 개최했으나, 타협안 도출 실패

4. 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1990.11.19.)

- 브뤼셀 각료회의 운영계획 제시
- 12.3.~7. 개최되는 각료회의는 UR 협상 타결에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기술적 마무리 작업은 각료회의 후 계속

5. UR 협상 최종의정서 문안 토의

- 1990.11.23.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협의 개최, UR 협상 결과를 수록한 최종의정서 문안 논의
- 1990.11.26. TNC 고위급 공식 회의를 거쳐 브뤼셀 TNC 각료급 회의에 제출

157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1 / 14 / 1-303

정부는 1990.12.3.~7. 브뤼셀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에 박필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R / 브뤼셀 각료회의 운영계획 및 전망(1990.11.15., 통상기구과)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언급 내용
 - 브뤼셀 각료회의는 예정대로 1990.12.3.~7. 개최
 - 각료회의는 UR 협상 종결에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각료회의 후 계속
 - 실무협상 기간을 11.23.에서 11.26.까지 연장, 이견 해소 계속
- 평가 및 전망
 - 현재까지 협상상황에 비추어 브뤼셀 회의에서의 완전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브뤼셀 회의에서의 정치적 절충 성패 여부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전망 가능
 - 정치적 절충 성공 시 기술적 마무리 작업만 각료회의 이후로 이월
 - 실패 시 UR 협상기한 연장여부를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결정
 - 이제까지의 협상상황에 비추어 11.26.까지 이견해소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각료회의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므로 원만한 정치적 절충 성공 여부 불투명

2. 한·미국 양자협의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주최 만찬이 1990.12.2. 주EC(구주공동체) 미국대표부대사 관저에서 개최되고 미국 측은 상공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을 동 만찬에 초대함.
- Mosbacher 미국 상무장관은 12.5. 브뤼셀에서 상공부장관 일행을 오찬에 초대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1/1-238

1990.12.3.~7. 브뤼셀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참가 현황

- 95개국 및 국제기구(5개), 총 117명의 각료급 대표 참석

2. 회의 결과

- UR 협상 타결의 관건인 농산물 협상에서 미국 케언즈 그룹과 EC(구주공동체) 간 타결 실패
- 농산물협상의 교착으로 기타 분야 협상도 부진
- 내년 초까지 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제네바에서 집중적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3. 외무부는 1990.12.8. 동 회의에서의 농산물협상 타결의 실패 배경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대폭적인 보조감축을 요구하는 미국과 소폭의 점진적 감축을 고수하는 EC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 EC 내부 입장 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결여
-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EC 강경 대응의 한계
- 독일 통일, EC 통합으로 인한 EC의 협상입장 강화

4. 향후 대책

- UR 협상에 계속 참가
- 국내정책 조정 등 UR 협상 보완 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쌍무차원의 개방 압력에 다각적 대처

157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3 회의 자료 및 향후 전망)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2/1-283

1990.12.3.~7. 브뤼셀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자료 및 향후 전망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12.13. UR 협상 전망 및 분야별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2.13. Dunkel 사무총장은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급 회의 폐회 시 Gros-Estiell 의장이 언급한 바에 따라 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를 1991.1.15.에 개최한다고 통보
 - 상기 비공식 회의에서는 Dunkel 사무총장(TNC 고위급 의장)이 UR 협상 각 분야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추진할 '집중적인 협의' 방식과 내용에 관하여 밝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UR 협상의 분야별 쟁점을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핵심 쟁점과 기술적 작업 및 실무협의를 계속 해야 할 사항으로 구별함.

2. 향후 협상 전망

- 현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두 가지 협상 진행방식
 - 미국이 fast track procedure 시한(1991.2월 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 도출
 - 상기 시한까지 타결되지 못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기되는 상황
- 정치적 타결 선행 필요성
 - 농산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각료회의에서도 타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네바 실무협상에서 해결하게 될 가능성 희박
 - 미국과 EC 일방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타결 불가능하나, 양측 모두 국내 사정상 단시일 내 입장 조정은 어려운 형편

3. 참고자료

- 협상 종합평가와 전망, 각 협상분야별 주요쟁점 및 대책
- 수석대표 연설문 초안
- 협상 결과의 득실전망(안)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1 1-4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3/1-261

1990.1~4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일정에 대한 합의문 채택

- 1988.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각국은 공산품에 대한 저율의 균등한 관세율 체계가 달성 되도록 1986.9월 관세율 기준으로 수입액 가중평균 33% 이상의 관세율 인하에 합의함.
- 1990.1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이 개최한 관세협상그룹 회의 결과 관세인하 방식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아래와 같이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한 의장 타협안이 채택됨.
 - 3.15.까지 각국은 IRP(관세인하계획)을 GATT 사무국에 제출, 4.18. GATT 사무국은 동 계획 평가회의를 개최, 4.30.까지 각국은 Request List를 GATT 사무국에 제출
 - 1990.5~10월 양자간 품목별 협상 후 1990.12.3.~7. 브뤼셀 최종각료 회의에서 UR 협상 종결

2. 한국 정부의 조치

- 한국은 GATT 사무국에 IRP(1990.4.2.)와 Request List(4.30.)를 제출함.

3. 제1차 UR / 관세협상 다자간 평가회의(1990.4.18.)

- GATT 사무국은 각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1차 평가 및 향후 협상일정, 관세협상 자료의 교환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제1차 평가회의를 개최함.
- 한국 대표단: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심달섭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등 3인
- 정부 훈령
 - 각국의 관세인하계획을 파악하고, 각국의 관세 및 무역자료를 입수할 것
 - 1986.9월 이후 관세율 대폭 인하 등 한국의 관세양허계획을 설명할 것
 - 중국은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는 최저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최저관세보다 5~30% 높은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바, 한·중국 간 관세협정 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주요 결과
 -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일본 등 총 28개국이 IRP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관세인하율은 미국 67%, 캐나다 40%, 스위스 29%, 일본 34.3%, 이집트 10%, 아르헨티나 35%임.
 - 미국, 일본, 헝가리, 페루, 한국 등 21개국이 관세양허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함.

157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집



- 한국 대표단의 발언 내용

- 한국의 양허계획은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협상그룹의 결정에 따를 것임.
- 한국은 공산품의 약 30%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가중평균 약 10% 관세인하를 달성하였으며 관세양허범위는 현재 19%에서 79%로 대폭 확대하여 UR 관세협상에 크게 기여함.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2 5-7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4/1-241

1990.5~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1990.5월 기준 주요 쟁점별 입장

- 인하율 및 양허범위의 확대
 - 일본 등 선진국은 33% 관세인하, 양허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나 한국, 홍콩 등 개도국은 개도국 우대라는 몬트리올 합의정신에 따라 각국의 경제개발,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양허 가능하다고 주장
- 농산물 포함 여부
 -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도 관세협상에 포함시켜 일괄적인 협상을 주장하나,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산물의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산물협상 그룹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관세·비관세 통합협상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관세·비관세 통합협상을 주장하나,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비관세 통합협상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별도 분리협상을 주장함.
- 인상한계세율(Ceiling Binding)
 -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Ceiling Binding은 관세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관세양허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 아세안 국가들은 몬트리올 합의대로 Ceiling Binding을 관세양허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제2차 UR / 관세협상 다자간 평가회의(1990.5.3., 제네바)

- GATT 사무국은 각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제2차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UR / 관세협상에 참가한 96개국 중 34개국만 관세양허계획을 제출했다고 보고함.
 - 상기 34개국 중 이미 평가가 끝난 21개국을 제외한 13개국이 자국의 관세양허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함.
 - 한국, 홍콩 등 개도국은 Ceiling Binding의 확대와 자발적인 관세인하는 개도국의 UR 협상에 주요한 기여라고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함.

3. 제1차 UR 시장접근분야 양자협의(1990.6.5.~12., 제네바)

-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스위스, 핀란드 등 11개국
- 대다수 국가들은 한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바, 한국은 관세양허계획의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은 한국의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식량안보상 추가적인 양허가 어렵다고 함.

158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3 7-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5/1-288

1990.7~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UR / 시장접근분야 제2차 양자협의 결과(1990.7.23.~27.)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고, 스위스, 핀란드 등 10개국
- 한국은 UR 시장접근분야 제1차 양자협의 결과(1990.6월)를 반영하여 작성한 관세양허 수정안을 설명하였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한국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1582

2. UR / 관세협상그룹 회의(1990.9.19.)

- 제출된 45개국의 관세양허계획 가운데 32개국의 관세양허계획을 본 협상그룹에서 검토함.
- 한국 대표는 한국의 관세양허 수정안이 평균 관세율을 33.4%로 인하하고 양허범위도 현행 23%에서 81%로 대폭 확대하여 1988.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정한 관세협상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호주는 이를 환영함.
- 브라질, 짐바브웨, 필리핀 대표는 자국의 경제개발에 상응한 관세기여를 설명함.

3. UR / 시장접근분야 합동회의(1990.9.21.)

-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품 협상그룹 합동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상이한 입장으로 큰 진전이 없었음.
 - 미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분야별 무세화 주장을 하였으며, 브라질은 무세화 주장이 몬트리올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를 반대함.
 - EC(구주공동체)는 미국의 무세화 주장을 비판하고 천연자원에서 수출규제 철폐와 열대산품에 있어서 부담의 분담을 주장함.
 - 일본은 2000여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철폐를 주장함.

4. UR / 시장접근분야 양자협의(1990.9.18.~24.)

- 한국 정부는 핀란드, 홍콩, 스위스, 스웨덴, 미국, 호주, 일본 대표자들과 관세양허 관련 양자 협의를 함.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4권 (V.4 10-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 번호 2020-112/6/1-277

1990.10~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UR / 시장접근분야 양자협상 및 관세그룹 회의(1990.10.29.~11.2.)

- GATT 사무국은 관세협상그룹 회의(10.31) 및 양자관세협상(10.29.~11.2),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10.29.~12.2.)을 개최함.
- 한국 대표단: 정기수 상공부 수입과장, 심달섭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등 7인
- 정부 훈령
 - 정부의 관세양허계획, 방위세 철폐, 자발적 관세인하 등을 설명하고 추가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
 - 미국이 제의한 분야별 무세화 방안은 국내 산업여건 상 수용 곤란함을 설명하고 각국의 대응방안을 관찰하여 대응책을 강구할 것
 -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관련 한국 경제정책의 신축성을 위해 가능한 한 보조금 허용 가능성 확대에 노력할 것
 - 관세양허계획 미제출국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할 것
- 주요 결과
 - 48개국이 관세양허계획을 제출하고 미국 등 17개국이 수정된 관세양허계획 제출
 - 미국 측은 평균 40%를 관세인하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무세화 분야에 수산물, 맥주, 의료장비를 추가함.
 - 미국이 제안한 수산물 무세화 방안에 대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는 지지하고, 일본은 반대,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전면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2. UR / 시장접근분야 합동회의(1990.11.13.)

-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품 4개분야 협상그룹 합동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간의 상이한 입장으로 큰 진전이 없음.
 - 스웨덴은 미국의 분야별 무세화협상에 결론이 아직 없다고 하고 미국의 Offer개선이 협상 타결의 관건이라고 한바,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동의함.
 - 말레이시아는 무세화 제안이 개도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몬트리올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반대함.
 - 미국은 일본, 캐나다도 분야별 무세화와 유사한 제의를 하고 있다면서 무세화협상 참가를 촉구함.
 - 한국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 Offer 내용을 설명하고 동 Offer가 협상진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158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3. 한국은 1990.11.2.~20. 핀란드, 헝가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주요국들과 미국의 무세화 방안, 섬유분야, 수산물분야에서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큰 진전은 없음.
- 미국, 호주, 뉴질랜드, EC(구주공동체) 등은 한국의 수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은 1997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7/1-317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2.13.~15.)

- 대표단(대표): 김상훈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논의사항
 - Request / Offer 방식 적용: 향후 협상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
 - 원산지 규정의 제정: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개도국들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칙 및 절차 수립에 찬성, 협정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이견 노정,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조화(harmonization) 문제 대두
 - 선적 전 사전검사: 미국 등 각국의 제안서 제출, 주요 쟁점 미부각

2. 제2차 회의(1990.5.1.~2.)

- 한국대표단 활동 및 논의사항
 -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 선적 전 사전검사: 북유럽의 선적 전 검사 규범 정립 입장 제출
 - 원산지 규정: 미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에 의한 적용가능 언급, EC는 차별교역에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 불가 주장
 - 양허보장, 비관세협상 Rollback 등

3. 제3차 회의

- 6.6. 회의: 다자간 규범 정립방식, 양자간 Request / Offer 방식 등 논의
- 7.16. 회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협정 초안 확정
- 9.19. 회의: 다자간 규범 정립방식, 비관세 협상결과의 양허 논의
- 10.26. 회의: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논의

4. UR / 시장접근분야(비관세분야) 양자협상

- 1990.10.20. 현재 34개 제출국 중 12개국이 한국에 Request List 제출
- 한국은 5.1. 1차 Request List 제출 이후 2차례 추가 제출
- 양자협상의 결과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위스 등과 협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한국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수의 요구 제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수산물 수출국이 한국의 비관세 조치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EC는 미국의 분야별 비관세화 협상제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1차 협의 이후 양자협약에 소극대응

158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각국의 대한민국 Request List)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8/1-16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협상그룹 회의 관련 자료임.

1.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협상그룹에서 합의한 협상절차에 따른 EC(구주공동체),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의 대한민국 Request List

2. 여타국의 대한민국 Request List

- 캐나다, 일본, 스웨덴, 우루과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 천연자원 관련 EC 및 호주의 Request List
- 일본의 추가 리스트, 호주의 Offer List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9/1-247

1990.1~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1990.2.20.~21.)

- 수석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한국제안 관련 토의시, 제소패소(부정판정) 시 제소자의 소송비용 부담문제에 대해 미국, EC (구주공동체) 등의 신중한 입장과 개도국의 적극 지지 입장이 상반되었는바, 한국은 소송비용 부담이 상계관세 제소비용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함.

2. UR /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0.3.27.~28.)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회의에 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하도록 지시함.
- 개도국 우대문제 관련, EC는 최빈국, 개도국, 선발개도국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바, 대부분의 개도국이 반대하였으며, 한국도 개도국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본 협상의 권능 밖의 사항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3.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0.4.23.~5.2.)

- 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서는 한국의 GATT에 대한 보조금 통보내용 중 특히 양곡수매 제도의 국제무역 왜곡효과에 관한 호주 측 질의가 있었는바, 한국은 아직 쌀의 수입자유화가 되지 않음을 설명함.

4.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1990.5.31.~6.1.)

- 한국은 금지보조금 정의, 새로운 관행, 수량 기준, 세이프가드 중복 규정 등에 대한 유보적 의견을 표시함.

5.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1990.6.20.~21.)

- 의장이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관행(NewPractices)에 대한 토의를 요청한바, 미국은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Targeting과 국내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천연가스 등의 이중가격 체제를 통한 저가공급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58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2 / 10 / 1-185

1990.7~12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비공식 협의(1990.7.2.~11.)

- 한국은 상계대상 보조금은 무역왜곡 효과를 유발할 경우에만 규제대상인바, 구체적인 무역왜곡 효과의 검토없이 일정율의 보조율을 기초로 심각한 피해를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주장함.

1588

2.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비공식 협의(1990.9.25.~26.)

- 미국은 보조금 규율강화의 필요성 특히, 수량기준 도입의 타당성을 적극 강조하였으나, 한국은 수량기준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3.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의(1990.9.27.~28.)

- 공식회의(9.27.)에서 미국은 금지대상 국내보조금과 수량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국 수정안을 배포하고 설명하였으며, 비공식 회의(9.28.)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및 시장 경제로의 전환국가에 대한 특별대우에 대해 토의함.

4.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1990.10.16.~26.)

- 수석대표: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
- 한국은 금지대상인 수출보조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내보조금을 red category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5.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0.10.25.~26.)

- 참석자: 김동진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보
- 한국의 양곡수매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한국의 답변내용에 대해 호주가 재차 질문하였으나, “한국입장은 종전과 같다.”고 답변하자 호주는 “알겠다.”고 대답한바, 의장은 한국의 상계관세 법령심사는 끝났음을 확인함.

6. UR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1990.10.29.~11.2.)

- 정부대표: 강석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 한국은 GNP(국민총생산) 기준에 의한 개도국의 분류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일로서 실무선에서 논의되거나, 토의 의제가 제한된 본 협상그룹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님을 지적함.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1/1-95

1990년 중 시행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및 관련 보고서 내용임.

1. UR / 농산물협상 용역의뢰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7월 UR / 농산물협상 대책수립에 참고하고자 농산물 교역전문가에게 특별용역 의뢰
 - 전문가: Rosine Plank(미 농무부 출신으로 UNCTAD / UR 농산물 문제 자문관 역임)
 - 용역과제: 1990.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Framework Agreement 초안 관련 대안과 제안 검토
- 농림수산부는 용역 수행 시 한국에 부여된 유예기간 및 UR 협상 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 의장 초안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기를 요망

2. UR / 농산물협상 용역보고서 요지

- BOP(국제수지) 협의 결과와 UR 협상과의 관계
 - 상호 별개(separate)이나 연관(inter-connected):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교섭 기회 부여, 특별 셰이프가드제도 등 여타 UR 결과 활용 가능
- BOP 품목의 UR 관세화 제외 및 포함 시 장단점
 - 관세화 제외 시: 관세율 결정상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나, 자유화 시점부터는 쿼터 부과가 불가하며 관세로만 해당품목 보호
 - 관세화 포함 시: 관세화 적용 시의 세부 기술적 제반방안이 활용 가능하나, TE(관세상당치) 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저하 우려
- 결론
 - 일부 BOP 품목을 금번 UR에서 관세화하는 방안이 유리

158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1 1-3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2/1-181

1990.1~3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 / 농산물협상 관련 5개국 농무장관 회의(1990.1.3.~5., 미국 올랜드)

- 참가국: 미국, 일본, 캐나다, EC(구주공동체), 호주
- 회의 결과
 - 식품안전 비상사태 대비 Protocol 마련
 - 농가수입 감소 없이 화학비료 사용 감축방안 연구 합의
 - 미국, 일본, EC는 식량안보, 보조금, 관세화 등에 대한 이견 표출

2. 제19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2.13.~16., 제네바)

- 정부대표: 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 각 그룹별 입장
 - 미국, 케언스그룹(Cairns Group) 등 수출국 입장: 농산물 교역의 완전 자유화
 - 수입국 입장: 식량안보, 수량규제,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등 농업의 특수성 주장
 - EC 국가: 농업 보호 및 지지 수준의 재균형을 통한 점진적 감축 주장
 - 개도국: 포괄적 개도국 우대 강조
- 한국 정부 협상 목표 및 대책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반영을 통한 국내 농업기반 유지
 - 수량규제 등 비관세조치 조항 개선으로 수입 제한 근거 확보
 - 운용 가능한 농업보조금 범위 확대로 국내 장기 농업정책 지원
 - 개도국 우대 반영을 통한 구조조정 유예기간의 최대한 연장

3. 제5차 UR / 농산물협상 위생 및 식물위생규제 작업단 회의(1990.2.19.~20., 제네바)

- 한국정부 기본입장
 - 각국의 위생검역 규제와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성 및 명료성 확보 원칙 지지
 -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큰 실정임을 감안, 국민건강 보호 측면을 우선하고 교역장벽 제거 측면도 반영
 - 각국의 기술 수준, 국내검사 체계, 각종 질병해 예방조치로서의 국가권리 유보 인정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2 4-5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3/1-272

1990.4~5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0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4.2.~6., 제네바)

- 정부대표: 김정용 농림수산부 UR 협상대책반장
- 한국정부 협상 목표 및 대책
 - 국민생존에 필수적인 기초식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가격하에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국내생산 유지가 필요
 - 수출국의 안정적 시장접근은 최소시장접근율을 통해 보장하되 수입국에 대하여는 최소자급율 허용을 통해 비교역적 목적 달성을 보장
 - 수출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 특히 수출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철폐하되 수입개도국에 대한 양허 판매나 식량원조 등을 위한 보조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
 - 각국이 시행하는 농업지원 및 보호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지원 및 보호수준의 점진적 감축 이행 수단으로서 특정 정책별 접근보다는 AMS(농업보조총액) 접근이 바람직
 -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 수행, 개도국 농업 구조조정 등에 요구되는 비관세 조치 허용
 - 비관세 조치 철폐대상 품목은 종전의 수입제한 효과에 상응하는 고율관세 유지 인정 등

2. UR / 농산물협상 개도국 원탁회의(1990.4.26.~27., 칠레 산티아고)

- 참가자: 19개 주요 개도국 대표(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농무관 참가)
- 토의내용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준비회의 의제에 기초하여 UR 협상 진전사항 평가 및 전망
 - 농업보조금 지원 및 제한 조치사항
 - 개도국 우대조치의 구체화 방안

3. 제21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5.3.~8., 제네바)

- 정부대표: 윤장배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농업의 NTC(비교역적기능) 관련, 한국 정부 기본입장
 - 국민기초식량을 대상으로 식량안보, 지역개발, 고용유지, 환경보존 등 농업의 비교역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경 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보호 조치 시행
 - NTC를 보다 효과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국영무역,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 등의 검토 필요

159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집



- 각국의 NTC를 위한 최소자급 수준은 식량안보, 지역개발, 고용유지, 환경보존 등과 같은 비교역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최소자급 수준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주권적 판단사항
- NTC 관련 정책 중 최저자급을 유지에 필요한 국경 조치 및 국내보호 조치는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상품목은 해당국의 기초식품 위주로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 범위는 국가별 식생활습관, 작부체계, 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3 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4/1-182

1990.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2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및 제20차 열대산품그룹 회의(1990.6.11.~15., 제네바)

- 정부대표: 최용규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회의 의제
 - 관세화 방법 및 대상품목 범위
 - 국내보조정책의 분류기준과 방법, 국내보조의 감축방법, 약속이행 및 감시 방안
 - 수출보조의 감축 및 폐지 방안, 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 방법
 - NTC(비교역적기능) 협상 요소별 반영 방법, NTC 대상품목 및 정책예외 인정 범위, NTC 감시 및 규제 방안
- 한국 대표단 기본입장
 - NTC: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 한국농업 보호의 최후 근거확보를 위해 NTC의 관세화 대상 제외 및 NTC 관련 정책 허용 등에 관한 기존입장 고수
 - 국경보호: 기본적으로 관세화에 반대입장 표명하되 관세화에 대비한 보완 방안(대상품목 최소화 등) 제시
 - 국내보조: 신호등식 접근방식에 있어 철폐대상 카테고리 설정 반대, 허용대상 카테고리에 포함된 국내정책(NTC, 생산조절 등) 최대한 확보
 - 수출경쟁: 향후 한국 농산물의 수출보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보조 철폐에 소극적 입장 견지 등

2.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의장 합의문 작성(1990.6.27., 제네바)

- 합의문 작성 배경: 농산물협상 논의 및 의장 주관 비공식 회의 결과를 반영한 4개 쟁점분야(국내 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 위생·검역규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기본 골격을 마련

159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4 7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5/1-256

1990.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 / 농산물협상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1990.7.2.~4., 제네바)

- 정부대표: 조남인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관, 조일호 국립식물검역소 농림기좌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 입장 대책
 - 위생 및 검역기준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제시된 국제기구 기준에 조화시키되 국가별 지리적·생태적 환경과 조건, 식생활 관습, 기술수준의 격차를 고려하여 적용
 - 부실농산물의 유입방지 과학성 거증책임은 수출국에 귀속
 - 병해충 및 질병 안전지역은 지리적·생태적 조건, 병해충 분포, 감염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국가단위 또는 대륙과 분리된 도서 단위에 국한
 - 위생 및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제기구 기준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장기 유예기간 부여 및 시설, 장비, 기술지원 확대

2. 제23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7.9.~13., 제네바)

- 정부대표: 김정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NTC(비교역적기능)의 명시적, 구체적 반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수입·수출국, 선진·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새로운 합의문 작성이 필요
 - 농업발전 단계를 고려한 개도국 우대를 구체적으로 반영
 - NTC 목적 수행을 위한 이중가격제 및 품목 특정성이 있더라도 수입자유화에 따른 작목전환 지원정책 등은 허용대상으로 분류
 - 전면적인 관세화 수용 불가 및 수출보조금의 급속 감축

3. 제23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속개, 1990.7.19.~20., 제네바)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 유예기간 부여, 개도국 농업정책에 대한 허용조건의 삭제 또는 완화 등 농업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강조
 - NTC 관련한 국내농업정책의 허용범위 확대 및 적용요건 완화, NTC 대상품목의 관세화 대상 제외 등 NTC에 의한 농업보호 근거의 최대한 확보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5 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6/1-336

1990.8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4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8.27.~29., 제네바)

- 정부대표: 최용규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관련 조문 작성 시 신호등식 접근방식에 따른 감축 기본원칙과 아울러 NTC(비교역적기능)에 대한 특별 고려원칙 등을 규정
 - 상기 원칙에 따른 세부사항(감축, 허용 보조금 범위 및 조건 등)은 Code 형태별 협정 제정을 원칙으로 설정
 - 국경보호 관련, NTC 목적 수행을 위한 예외적 수입제한 근거 명문화
 - 특별 세이프가드 관련, 관세증액과 아울러 수량제한도 인정
 - 수출경쟁 관련,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금지 또는 감축대상 보조금리스트를 양허표 형식으로 부속서에 첨부
 - 감축원칙 관련, NTC 관련 품목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 발전단계에 따른 차등 감축 원칙 적용 및 유예기간 인정
 - CL(Country List) 및 OL(Offer List) 작성과 관련, 협상원칙에 대한 미합의 상태에서 OL 제출은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크므로 협상원칙에 대한 선행과 CL 및 OL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

2. UR 대책회의(1990.8.27.)

- 한국 정부는 UR / 농산물협상에 대한 불안감, 위기의식에 따른 농어민 집회 관련 대책 및 대농 어민 홍보 대책수립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UR 대책회의를 개최
- 참석자: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부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장
- 회의 내용
 - 농산물협상 정부 노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검토
 - 농산물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유도방안 마련
 - 농산물협상 관련, 주요국 입장 및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전달방안 마련

159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6 9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7/1-286

1990.9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 / 농산물협상 위생·검역 작업단 회의(1990.9.13.~14., 제네바)

- 정부대표: 주제네바대표부 농무관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국제기준 부재 시 거증책임은 수출국 부담
 - 질병 제한지역 개념은 수입국에 위험 초래가 가능하므로 인정 곤란
 -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조건 등이 상이함을 감안, 엄격한 내국민대우 조건 배제
 - 수출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는 위생·검역조치의 목적에 비추어 인정 곤란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및 보상의무 불요(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 절차 적용으로 충분)

2. UR / 농산물협상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1990.9.19., 제네바)

- 1990.9.19. Dunkel GATT 사무총장 주최 UR 주요국 비공식 협의에서 주제네바대사는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함.
 - 농업의 특수성 및 정치적 민감성에 비추어 UR의 농산물협상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며 비교 역적 요소 등 한국 특별관심사항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Dunkel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13위 교역국으로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한국 측의 특별 관심사항에 대한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고 언급함.
 - 예외 인정 시 도미노 효과에 의해 협상 전체 성공에 악영향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7 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8/1-258

1990.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5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10.4.~5., 제네바)

- 정부대표: 김정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주요 의제
 - 농업보호 및 감축약속 대상품목의 범위
 - 관세, TE(관세상당치),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의 감축목표
 - 관세 및 TE 감축방법(Formula 방식 또는 Request / Offer 방식)
 - 관세화 과정에서의 최초 관세쿼터 설정방법
 - 국내보조 정책 중 허용대상 정책의 범위와 조건
 - 농산물 교역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특별규정 개정 또는 별도협정 체결
 -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개도국 우대조건
 -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양허판매보장 등 특별고려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자유화 확대원칙에 따라 국내농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방할 것은 개방
 - 식량안보·농가소득·고용·환경·지역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 동안의 작목은 지속적 지원과 보호 유지
 - 농업의 NTC(비교역적기능)을 GATT 규범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필수 농산물은 자유화대 상에서 제외하고 국내지원 시책도 지속할 수 있는 허용근거 확보
 - 농업 개도국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2. UR / 농산물협상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1990.10.15.~17., 제네바)

- 정부대표: 조남인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관, 조일호 국립식물검역소 농림기좌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대책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권리 명문화, 질병 무발생 여부의 과학성 입증 요구
 -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특별대우 배제, 동물복지, 환경, 소비자 선호 및 정보 등의 규정화 배제
 - 질병 제한발생지역 개념은 수입국에 대한 많은 위험요소가 내포되므로 인정 곤란
 -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및 동식물 건강 저해방지차원에서 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 자율성 강조

159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집



3. 제26차 UR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10.22.~26., 제네바)

- 정부대표: 최용규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주요 의제
 - C/L(국별현황자료) 및 OL(감축계획) 제출현황 점검
 - 협상 대상품목, 감축목표, TE 감축방법, 관세화 허용대상 보조정책 범위와 조건, 개도국 우대방안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8 11-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9/1-338

1990.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 동향임.

1. 한국의 비교역적 고려 품목 설명자료 송부

- 외무부는 1990.11.1. 한국의 15개 NTC(비교역적기능) 품목 중 하나인 감귤의 제주도 농업에 서의 비중 등을 설명하는 협상자료를 주체네바대표부, 주미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에 송부함.

2. 한국 농업보호 및 보조금 현황에 관한 Country List 송부

- 외무부는 1990.11.2. UR / 농산물협상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한 한국 농업보호 및 보조금 현황에 관한 Country List를 주일본대사관, 주EC(구주공동체) 대표부 등 10개 관련 공관에 송부함.

3. UR / 농산물협상 관련 한국 Offer List 설명자료 송부

- 외무부는 1990.11.3. 대주재국 교섭에 활용할 한국입장 설명자료를 주멕시코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등 29개 관련 공관에 송부함.
- 10.29. 제출한 한국 Offer List 요지
 - 수입제한 등 현행 모든 비관세조치를 1991~97년간 7년에 걸쳐 품목별로 단계적 관세화
 - 관세상당액은 관세화된 시점부터 10년에 걸쳐 최대 30% 삭감
 - 쌀, 보리, 콩, 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수입제한 유지
 - 농산물 국내보조금은 1997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진 후, 1997년부터 10년에 걸쳐 최대 30% 삭감 하되, 쌀, 보리, 콩, 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대상에서 제외

4. UR / 농산물협상 각료회의(1990.12.3.~7., 브뤼셀)

- 브뤼셀 각료회의 농산물협상그룹 의장(Hellstrom 스웨덴 농무부장관)은 협상 타개를 위한 Non-paper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감축 대상품목의 국내보조를 1990.1.1.부터 5년 동안 30% 감축하되 개도국은 우대를 위해 감축폭을 15~30%, 감축기간 최대 10년 부여
 - 1991.1.1.부터 5년 동안 모든 품목에 대해 국경조치 30% 감축하되 최소 시장접근은 1990년 수입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1991/ 92년부터 현 국내소비의 최소 5% 보장
 - 수출보조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수출보조 대상품목의 생산량을 5년 동안 30% 감축
 - 한국, 일본 등 수입국이 주장하고 있는 NTC 불반영

159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9 한국의 농업보호감축계획(Offer List) 제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 / 10 / 1-100

1990.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에 제출한 한국의 농업보호 감축계획(Offer List)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Offer List 확정을 위한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1990.10.22.) 및 장관급회의(1990.10.24.) 개최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담당국장
- 주요내용
 - 15개 NTC(비교역적기능) 품목(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참깨, 우유, 콩, 옥수수, 감귤, 고구마, 감자, 양파) 확정
 - 15개 NTC 품목에 대한 보조금 허용 및 수입제한 인정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화 및 국내보조 감축을 허용하되, 농업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 요구(일정 유예기간 후 관세화, TE(관세상당치) 및 국내보조금 감축기간과 감축율에 있어서의 특별고려 등)

2. 한국의 Offer List 제출

- 한국은 1990.10.29. UR / 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1990.10.24. 관계 부처 장관회의 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작성된 아래 요지의 Offer List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함.
 - 모든 수입제한 철폐 및 관세화(단, 15개 NTC 품목은 제외)
 - 관세화는 1991~97년간 품목별로 단계적 이행
 - TE는 품목별 관세화 시점부터 10년간 최대 30% 감축
 - 1991년부터 아래 물량을 최초 쿼터(TQ)로 부여
 - 수입이 있던 품목: 1986~88 평균 수입량
 - 수입이 없던 품목: 국내소비량의 1%
 - NTC 품목에 대한 보조는 계속 허용(감축대상에서 제외)
 - 감축대상 보조금은 1997년부터 10년 동안 30% 감축
 - 1997년까지는 감축 유예기간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전10권 (V.10 각국의 Offer List 제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3 / 11 / 1-192

1990.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관련 주요국의 Offer List 제출 내용임.

1. 미국 Offer List(1990.10.15. 제출)

- 수출보조금 90% 감축, 국경보호조치 및 국내보조금 75% 감축
- 감축기간은 10년

2. 캐나다 Offer List(1990.10.15. 제출)

- 신규 보조금 금지, 기존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기하되 이행기간 초기에 집중 삭감
-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기존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 1/3 감축
-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전환 및 이행기간 내 50% 또는 20% 이하 수준 유지
- 소고기 수입제한 법령 보유국가는 동 법령을 폐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항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의존

3. 일본 Offer List(1990.10.15. 제출)

- 1986~96년간 국내보조 30% 감축
 - 단, 쌀의 경우 생산통제비율, 밀, 보리, 사탕, 낙농제품의 경우 수입비율을 보조금 감축 시 고려하고, 콩의 경우 보조금 감축에서 제외하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 국경보호 조치에서 해결
- 국경보호 조치 감축기간 및 감축률 불명시
- 쌀, 밀, 보리, 사탕, 주요 낙농제품 등 9개 품목 수입제한 계속

4. 노르웨이 Offer List(1990.10.17. 제출)

- 1988~96년간 국내보조 20% 감축
- 관세화를 원칙적으로 수용(우유, 유제품 및 순록, 사슴 고기 제외)
- 비양허품목인 동물, 육류, 계란, 감자에 대한 가변부과금제도 도입
- 1996년까지 수출보조 철폐

5. 스웨덴 Offer List(1990.10.19. 제출)

- 1988~96년간 국내보조 30% 감축
- 환경보존, 지역특성, 일과성 투자보조 등 허용
- 수출보조 철폐(식량원조 및 가공산품에 투입된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제외)

6. 1990.11.16. 현재 상기 국가 외 한국을 포함하여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인도가 Offer List를 제출

160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산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 / 1 / 1-29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분쟁해결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1990.2.7. 회의

- 패널보고서 채택방식: 일본 및 EC(구주공동체) 등은 컨센서스 고수, 미국은 컨센서스-2 방식 찬성
- 중재절차 도입: 미국은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 도입 주장, 일본 및 EC는 분쟁당사자만 구속 입장
- 제3국의 권리업무: 미국은 패널보고서중 조사결과를 모든 체약국에 적용

2. 1990.4.5. 회의

- 제3국 권리강화: 미국, 인도 등 대다수 국가 W/38 지지
- 패널절차, 권고이행, 보상 및 보복: EC의 W/39 제안 설명, 미국의 W/40 제안 설명

3. 1990.6.6.~8. 회의

- 패널 위원 선임: EC의 전문적 비정부인사 주장, 일본 등 다수는 현행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합의 추종 제의
- 상소제도: 미국, EC는 상소제도 도입 필요성 제의
- 패널권고 이행: 미국은 합리적 이행기간 설정 강조
- 보상 및 보복: EC 등은 보상 문제 협상 필요 주장

4. 1990.9.12.~13. 회의

- 패널과정 재검토: 미국, EC 등 대다수 국가지지 표명
- 패널보고서 검토: 미국, 스위스 등 다수국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고서 채택 보장
- 상소제도: EC 등 다수국은 보고서 채택 저지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상소제도 도입 지지
- 보상 및 보복: 보상의 자발성 지지

5. 1990.9.24.~25. 회의

- 이사회 패널보고서 채택, 상소 재검토 절차, 이행 문제 논의
- 중간평가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논의용으로 의장 초안 작성
- 초안작성 경위 및 논의
 - 1990.10.5. 및 10.10. 회의 등을 거쳐 분쟁해결 결정문 초안 작성
 - 1990.11.19. 사무국이 중간평가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통합문안 논의
 - 1990.11.21. Dunkel 사무총장 주재로 논의하였으나 미합의, 일부분안 수정 후 브뤼셀 각료회의 제출 예정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2/1-234

1990.2~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1990.2.5.~7. 회의

- 미국이 총량 쿼터제 제안으로 협상의 활기 유도
- 미국의 총량 쿼터제에 대해 캐나다만 호응하고 EC(구주공동체), 일본, 북유럽 등 선진국 및 개도국은 반대

2 1990.3.5.~7. 회의

- 총량 쿼터제 논의
- 의장 제안으로 1990.7월까지 Framework 합의 도출 목표 설정

3. 1990.4.4.~5. 회의

- MFA(다자간 섬유협정) 폐지 및 여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불일치 제한 폐지 Modality
- 과도기간 중 세이프가드, 감시기구

4. 1990.5.14.~15. 회의

- 미국의 제안 변경: 종래의 총량 쿼터제를 무차별 방식으로 수정
- GATT 복귀시한: 현 MFA가 종료하는 1991.8.1.
- GATT 복귀 Modality

5. 1990.6.12.~15. 회의

- ITCB(섬유수출개도국) 제안, EC, 일본, 아세안 제안 및 논의
- 잠정기간 세이프가드, 감시기구, 강화된 GATT 규칙 및 원칙 논의
- 1990.6.25. 협상그룹 의장이 협상결과를 토대로 협정문안 작성

6. 1990.7.10.~13. 회의

- Framework 초안 토론: 잠정 세이프가드, 추가적 규제 금지, GATT 복귀감시, 기구 및 분쟁해결
- 의장 협정문안 토의

160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7. 주요국 입장(1990.7월 기준)

- 미국, 캐나다: 총량 쿼터제 도입(통합시한 10년 등으로 하고 2002년 이후 자유화)
- ITCB(한국 포함): 현 MFA의 점진적 철폐(통합시한 6년 등으로 하고 1998년 이후 자유화)
- 일본, 북유럽: 현 MFA의 점진적 철폐(통합시한 8년 등으로 하고 2002년 이후 자유화)
- EC: 현 MFA의 점진적 철폐(통합시한 미정,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3/1-270

1990.9~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1990.9.17.~27. 회의

- MFA(다국간 섬유협정) 규제 철폐방안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의를 통한 이견 축소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여러 요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및 원칙의 강화

2. 1990.9.19.~20. 회의

- 품목대상에 대한 기술그룹 회의

3. 1990.10.15.~19. 회의

- 소규모 그룹 설치 논의: 선진국 및 개도국 각기 4개국으로 구성
- 주요 이슈별 drafting group 설치
- 협상의 쟁점으로 GATT 복귀시한, MFA 철폐방안, 잠정 세이프가드 지적

4. 1990.10.23.~27. 회의

- drafting group 논의동향 보고: 품목 coverage, 규제 철폐, 잠정 세이프가드, 우회 수출 등
- GATT 규정 및 원칙의 강화, 다자 및 양자협정 규율

5. 1990.11.5.~17. 회의

- 의장안 배포 및 논의
- 11.5. 오후부터 11.16.까지 비공식 논의 진행
- 11.17. 공식회의 개최, 의장 Text 배포하고 협상그룹 차원의 회의 종결

6. UR / 섬유협상그룹 회의 평가

- 예상보다 협상의 성과 거양
 - 양자협정을 규율할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부분 다자협정으로 규율
 - 당초 선진국이 주장한 과거 3년간 실적을 기초로 한 Base Level 대신 양자협정상의 쿼터량으로 결정, 규제 철폐, 잠정 세이프가드 대상을 현 MFA 품목을 기준으로 한 점 등
- 향후 협상 진행
 - 브뤼셀 각료회의의 시까지 협상은 Dunkel 총장의 그린룸 협의를 개최, 의장 Text의 미결 이슈에 대한 정치적 타결 시도

160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4/1-284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협상그룹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1990.1.29.~2.1. 회의

- 2차 의장안에 대한 협의
 - 일반규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정의, 시한성, 국경조치), 발동요건(수입증가, 수입증가와 피해자 간의 관계,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 등)
- 선별 적용 관련 EC(구주공동체) 제의 검토

2. 1990.3.12.~15. 회의

- 2차 의장안에 대한 협의 계속
 - 통고 및 협의(긴급수입제한 위원회를 통한 통보, 통고내용, 협의 등), 대응조치(보상, 보복 및 보상면제), 개도국 조항, 정부 및 비정부 조치, 영업비밀, 감시 및 분쟁해결

3. 1990.4.24.~26. 회의

- 3차 의장안에 대한 검토
- 세이프가드 조치의 수준, 발동기간, 연장, 총기간, 점진적 철폐, 구조조정, 의무균형 회복을 위한 수출국과의 협의, 긴급상황 등

4. 1990.5.29.~30. 회의

- 4차 의장안 협의
 - 협정 범위, 피해조사, 관세동맹의 산업정의, 관세인상 상한율, 발동기간 및 연장조건, 점진적 자유화 및 산업동향 재조사 등

5. 1990.7.3.~5. 회의

- 5차 의장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 지속

6. 1990.9.11.~12. 회의

- 의장안, 미국 제안 및 기타 각국 서면 제안 등 협의



7. 1990.10.1.~3. 회의

- 8차 의장안 배포 및 예비적 토의

8. 1990.10.22.~26. 회의

- 8차 의장안 검토
 - MFN(최혜국대우) 원칙 및 선별 적용, 회색조치 철폐, 보상 및 보복면제기간, 구조조정 등
- 9차 초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

160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5/1-168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협상 관련 내용임.

1. UR / 열대산품협상 회의

- 1990.2.6.~9.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 지속
 - 의장 초안은 비가공산품의 관세 철폐, 반가공품 및 가공품의 관세 철폐 또는 상당폭 삭감 등 포함
- 1990.2.13. 회의에서 협상절차 합의
 - 3.15.까지 각국의 관세, 비관세 철폐 또는 감축 Offer List 제출(양허품목, 양허세율, 비양허품목, 실행세율, 기준시점: 1986.9월)
- 1990.4.25.~26. 열대산품 Offer 평가회의
 - 4.27. 회의에서 의장은 제출된 28개국의 제안서를 설명하고 1차 Request는 의장 합의문에 따라 4.30.까지 제출 요청
- 1990.6.11.~12. 회의
 - 한국 대표단은 한국의 제안내용을 설명, 한국의 경제 및 농업발전 수준에서 최대한의 기여를 강조, 통계국의 분석 및 평가가 한국의 자발적 기여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의장은 7월 TNC(무역협상위원회)까지 시간이 부족하므로 참가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하고 열대산품협상의 중요성 및 우선타결 필요성을 강조
 - 6.12. 현재 한국 포함 32개국이 Offer 제출

2. UR / 열대산품협상 현황

- 관세인하 및 비관세 철폐방식, 참가국 범위 등 관련 선진국과 열대산품 수출국 간의 의견대립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수입 선진국: 온대성 농산물 제외 및 개도국의 기여 주장
 - 아세안 등 수출개도국: 대상품목 확대, 선진국의 추가 기여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상응한 기여 주장
- 한국 입장
 - 1989.7월 열대산품 회의에 제출한 한국의 자발적 기여안(1989~93년간 관세인하 및 1989~91년 수입자유화계획)은 열대산품 수입국으로서의 최대한의 내용 포함
 - 1990.4.19. 한국의 Offer List 제출

3. UR 열대산품그룹 의장 방한

- Paul Leong 의장은 1990.6.24.~26. 방한, 외무부 제2차관보 및 농림부 제2차관보를 면담, 열대산품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여 확대 요청
- 한국 측은 현 단계에서 최대한의 기여임을 설명하고 여타 협상분야에서의 협상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기여가 용이하지 않다고 대응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 회의. 전2권 (V.2 7-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6/1-101

1990.7~11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협상 관련 내용임.

1. UR / 열대산품협상 회의

- 1990.7.9. 회의
 - 각국 제안 평가: 37개국 제안 제출
 - 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보고서 잠정 합의: 7월 TNC 회의 제출
- 1990.7.19.~20. 회의
 - 협상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 미제출 국가의 기여 촉구
 - 기 제출 국가도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제거 또는 감축 양허수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장 보고서 채택
- 7.23. TNC에 의장보고서 제출
- 1990.9.24.~25. 회의
 - 48개국 제안 제출
 - 의장은 최선의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4개 대안 제시: 제안의 확대, 제안의 개선, 농산물협상 그룹 및 여타 시장접근그룹과의 연계, 브뤼셀 회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
 - 한국의 수정제안 설명: 4.20. 제출한 당초 제안 시보다 양허확대 등 협상촉진을 위한 개선된 수정 제안
- 1990.10.24.~25. 비공식 평가회의
 - 개선 Offer 제출: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개선 Offer 제출 의사 표명
 - 향후 협상과제 검토: Offer 개선 가능성, 농산물협상그룹에 제출된 Offer의 취급 등
- 1990.11.12. 비공식 평가회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통계국 작성 열대산품협상 Offer 전체 평가 보고서 3차 수정판 배포 및 논의

2. 제23차 UR / 열대산품협상 공식회의(1990.11.15.)

- 일본 등 개선된 Offer 제출
- 협상 진전에 대한 평가
 - 말레이시아, 페루 등 개도국은 각국 Offer가 푼타델에스테 선언 및 중간평가 합의사항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 미국은 자국 제안이 여타국과 비교시 삭감폭이 큰 것이라고 주장
- 조기 이행문제
 -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은 열대산품 삭감 약속의 이행기간 단축문제에 신축적 입장을 표명
 - 말레이시아 등은 개도국의 조기 이행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 회의. 전3권 (V.1 1-5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7/1-214

1990.1~5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 / 지적재산권 협상(1990.2.5.~6.)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정책1과장, 손찬현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자문역)
-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익보호 간의 균형적 접근에 대해 지지함.
- 한국은 경과규정 관련, 선진·개도국 간 이익균형에 기초하고 있는 점, 경과규정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 제안이라는 점에 환영함.

2. UR / 지적재산권 협상(1990.3.6.~9.)

- 정부대표: 주순식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 사무관
- 외무부는 분쟁해결 절차, 경과규정, 기본원칙 등 회의 의제에 관한 입장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함.
- 협상결과의 국제적 이행 관련, 한국은 무역관련 분쟁은 다자방식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어느 경우나 일방적인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EC(구주공동체)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UR 잔여기간을 고려할 때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해결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경험을 활용하되 기존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임을 주장함.

3. UR 대책 지적재산권 실무소위원회 개최

- 경제기획원은 4.17.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측 입장을 결정하여 외무부에 통보한바,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동 내용을 활용하도록 송부함.

4. UR / 지적재산권 협상(1990.5.14.~16.)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통상조정3과장
- 금번 회의에서 각국 제안에 대한 토의를 모두 끝마치고, 6월 회의부터는 실질협상에 진입하게 되는바, 주제네바대사는 6, 7월 회의 시 양보가 가능한 사안, 12월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양보할 사항, 끝까지 고수할 사항으로 한국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함.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 회의. 전3권 (V.2 6-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 번호 2020-114/8/1-264

1990.6~10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6.25.~29.)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제5차 지적재산권 협상대책을 송부함.
- 한국은 영업비밀이 등록되지 않고 공표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지적재산권과는 상이하고, 각국이 민법, 형법, 불공정거래 방지법 등 자국법에 의해 보호되고 TRIPs 협약의 보호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지역경제 공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예외는 무역장벽을 형성하므로 관세동맹, 자유무역 지역, 지역경제 공간 등은 MFN(최혜국대우)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2. UR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7.9.~13.)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각국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데 합의함.

3. UR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9.10.~21.)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제7차 지적재산권 협상대책을 송부한바,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한국 대표단이 지참할 것임을 통보함.

4. UR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10.8.~19.)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의장 수정안 중 주요쟁점에 대한 한국입장을 통보하고 적의대처하도록 지시함.

161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 회의. 전3권 (V.3 10-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9/1-270

1990.10~11월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TRIPs MFN(최혜국대우) 원칙 및 경과 규정 검토

- 외무부는 소급보호 등 1986.8월 한·미국 지적재산권 양해사항과 MFN 원칙 등 예상되는 지적 재산권협상 결과간의 관련사항들을 분석하고 EC(구주공동체)와의 양자간 현안에 대한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1990.10.15. 주제네바대표부에 MFN 원칙 적용문제 등에 관한 의견보고를 지시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MFN 예외조항 중 세번째항 원용 여부, 유예기간 및 MFN 관련 유용성 여부, MFN 예외에 대한 반영 가능성 여부, 주요국 협상 대표들의 입장과 동향에 관해 보고함.

2. UR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10.29.~11.2.)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관련, 한국은 MFN 원칙이 채택되더라도 소급 효력을 갖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3. UR / 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11.12.~20.)

- 정부대표: 김성기 특허청 심사관
- MFN(제4조) 관련, 한국은 내국민대우 이외에 MFN에 의해 결정되는 차별대우는 자국민 이상의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동 제안은 자국민에 불리한 조약의 확산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함.

UR(우루과이라운드)/EPG(저명인사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 / 10 / 1-35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EPG(Eminent Persons Group, 저명인사그룹) 관련 내용임.

1. UR / EPG 설치 경위

- 1990.3.29. UR / 평화그룹 비공식 협의 시 세계통상에 관한 저명인사그룹 설치를 논의함.
- 목적: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신장과 UR 협상의 성공 촉진
- Moore 뉴질랜드 통상장관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 우선 10인으로 구성하고 추후 확대

2. 제1차 EPG 회의(1990.4.16., 런던)

- Lamdsdorff 전 독일 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선출
- UR 협상 성공을 위해 7월까지 협상결과 윤곽 도출

3. EPG 확대회의(1990.10.31., 프랑크푸르트)

- 회의 주제
- UR, 성장과 번영의 열쇠
- 참석자: 저명인사그룹 15명, 김철수 상공부장관 등 기타인사 포함 총 45명
- 주요 회의 결과
- EPG는 서방선진국 정상들이 협상에 직접 개입하여 성공적인 타결에 책임질 것을 촉구
- 1990.12월 협상시한 준수, 하나의 패키지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협상 추구 주장
- 농산물, 섬유, 서비스, 세이프가드, 시장접근, 지적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상) 강화가 협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함.

161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강화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 / 11 / 1-209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강화 관련 회의 동향임.

1. UR / GATT 기능강화협상의 주요 쟁점분야

- 체약국 무역정책 감시기능 강화
 - 국별 무역정책 검토회의, 국내정책 결정상의 명료성, 통고절차 개선
- GATT의 전반적 효율성 향상: 소규모 각료급 회의 설치, MTO(다자간무역기구) / WTO(세계 무역기구) 설치 및 사무국 강화
- 국제통화금융기구(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의 관계 강화 등

2. UR / GATT 기능강화협상그룹 회의(1990년도 협상회의)

- 2.19.~20. 회의
 - EC(구주공동체) 측 포괄적 제안, 향후 협상일정 제시
- 4.2.~3. 회의
 - 1990.5.22.~23. 회의 등을 통해 EC 제안, 스위스 제안, 사무국 안 등 토의
- 6.25.~26. 회의
 - EC는 MTO 정식 제안, 스위스 포괄제안 검토
- 7.20. 회의
 - 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최종 검토
- 9.26.~27. 회의
 - 7월 TNC 앞 의장보고서를 중심으로 협의
- 10.22.~26. 회의
 - 각료회의 결정안을 채택하여 TNC에 회부 결정, 협상그룹차원 회의 종료

3. UR / 평화그룹 비공식 회의(GATT 기능강화 문제 협의)

- 한국이 참여하는 UR / 평화그룹에서 GATT 기능강화를 위한 공동 보조방안 협의
- 6차례 비공식 회의 개최
- 통화, 금융, 무역정책 간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평화그룹 공동안 작성

4. UR / GATT 기능강화 각료회의 결정안

- 1990.10.26. 개최 UR / GATT 기능강화 협상그룹 회의에서 TNC에 상정 결정



- 주요 합의사항
 - 감시기능 강화: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국제무역환경 검토, 국내정책 결정상의 명료성 제고, 통고제도 개선(통고의무 강화)
 - 기구적 측면의 GATT 강화: GATT 각료급 총회를 2년에 1회 개최
- 미합의 쟁점
 - 기구적 측면의 GATT 강화: 소규모 각료회의 설치문제, MTO / WTO 설치문제
 - 통화, 금융, 무역 간의 일관성 강화: IMF, IBRD, GATT의 정치적 합동각료선언 문제, 사무국 간 실용적 협력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4 / 12 / 1-222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1990.2.27.~3.1. 회의

- 17조, 24조 등 구체 제안이 나온 6개 조문과 가입의정서에 근거한 모든 조부조항과 25조에 근거한 모든 웨이버 조치에 대해 시한을 정하여 철폐하자는 EC(구주공동체) 제안을 논의하였음. 동 논의 결과 일부 진전사항도 있었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여 차기 회의 시 재론하기로 함.

2. 1990.3.29.~30. 회의

- 2, 18(B), 25(5), PPA 조항 및 24조에 대해 논의

3. 1990.5.3.~4. 회의

- 17조, BOP(국제수지) 조항(12, 18조), 가입의정서상의 조부조항 문제 논의
- 차기회의 일정: 5.21.~23., 6.19.~21., 7.17.~19.

4. 1990.5.21.~23. 회의

- 2조, BOP 조항(18조 B, 12조), 17조, 28조를 논의
 - 28조 및 17조 결정문안을 집중 검토한바, 결정문안을 수정하여 차기 회의 시 재검토하기로 함
- 25조 5항(웨이버) 관련 타협상그룹(농산물) 협상 결과를 보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PPA, PA(가입의정서 및 잠정 가입의정서상 조부조항)
 - PA상 여타 예외까지도 일괄 철폐하기로 할지 여부는 여타 협상그룹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함.

5. 1990.6.19.~21. 회의

- 17조, 24조, 28조, 25조 5항, PPA, PA, BOP조항 논의

6. 1990.7.17.~19. 회의

- 금후 협상 추진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앞 의장 보고내용을 논의하고, 주요국 비공식 회의를 통해 17조(국영기업) 및 28조(관세양허재협상)와 관련하여 TNC에 제출할 결정문에 대한 합의를 시도

**7. 1990.9.3.~5. 회의**

- 28조 및 BOP 조항에 대한 논의 진전이 없고, 35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4조에 대해서는 5.21.자 의장 초안에 대해 검토

8. 1990.10.1.~3. 회의

-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4조에 대한 의장 초안 재작성

9. 1990.10.16.~19. 회의

- 모든 조문에 대한 그룹차원의 협상을 일단 마무리함.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1 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 번호 2020-115 / 1 / 1-196

1990.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1.16.~19. 회의

- 1990년도 협상일정을 공식 채택
 - 2.26.~3.2. 서비스교역 자유화구조, 통계 및 타국제협정의 역할
 - 3.26.~30. 서비스교역의 정의, 제도적 규정, 최초공약 및 자유화 이행장치, 개도국 무역비중 증대
 - 5.7.~11. 서비스교역의 정의,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제도적 규정, 통계 및 타국제협정의 역할, 부문별 주석의 성격 및 필요분야, 각국의 점진적 자유화 약속의 최초 제시
 - 6.18.~22. 서비스교역의 정의,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제도적 규정, 부문별 주석의 성격 및 필요분야에 대한 추가논의, 각국의 점진적 자유화 약속에 대한 추가 논의
 - 7.16.~20. 잠정협정안제정의 완료
- 의장은 상기 협상일정을 상정하면서 동 일정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며, 계속하여 개발개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함.

2. 1990.2.26.~3.2. 회의

- 금번회의 역시 1월 회의에 이어 공식 회의보다는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 치중,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과제의 성격으로 보아 향후 회의도 주로 주요국 비공식 협의가 많이 활용될 것임.
- 선진국들은 역할그룹 협의를 통해 협정구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연내에 실질적인 자유화 약속까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협정문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수출보조금지, 독점기업의 서비스공급에 있어 내·외국인 차별대우금지, 기타 제도적 규정 등의 의무사항이 협정 규정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각국별로 독자적인 법적규정 초안작성과 아울러 동 협정 규정적용의 수정, 보완, 해석이 필요한 개별분야에 대한 주요 선진국 간 비공식 협의를 통한 분야별 주석 초안작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국내대책 작업 방향
 - 많은 개도국의 이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최초 자유화 약속으로 제시할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2 3-4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2/1-162

1990.3~4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3.26.~30. 회의

- 미국, EC(구주공동체)가 협정구조 공동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정구조를 선결하고 이를 기초로 framework과 분야별 주석을 제정하는 한편 UR 기간 내에 실질적 자유화까지 추진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공식적으로 가시화되었음.
- 미국, EC는 강경개도국 등의 참여여부에 개의치 않고 역할그룹 협의를 통하여 양국 공동안을 수정, 보완하고 상기 방식에 따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협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간 양허교환 협상에 대비한 Request List 작성
 - 건설 등 우리 비교우위에 대한 Annex 제출
 - 항공, 해운 등 우리의 해외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협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Annex 또한 분야별 주석에 관한 토론자료 작성 제시

2. UR / 서비스협상 진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검토의견

- 경기원 자료 요지
 - 진전상황: 자유화 추진방식(Negative System 방식), National Schedule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양허교환 협상, 분야별 주석 논의동향
 - 향후 대응방향: 기본방향(서비스협정 가입을 전제로 대응), 세부방향(National Schedule 수립, Request List 작성, 분야별 주석서에 대한 입장 정립, 대국민 홍보제고 및 민간업계 참여확대)
- 검토의견
 - 다수 개도국의 참여가 없을 시 개도국 시장에 대한 한국 진출 확대 기회는 부여되지 않는 반면, 한국 시장의 대선진국 일방개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협정 가입 실익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건설 등 한국 해외진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 주석서 작성 검토
 - 국내 관련 법규검토 및 보완

161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3 5-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3/1-164

1990.5~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5.7.~11. 회의

- 금번회의는 의제 I, II, III, IV(정의 / 범위, 개념, 원칙 및 규칙, 통계, 관련 국제기구 및 협정, 제도적 규정)에 대한 논의는 종전 입장의 반복에 불과하였으며, 의제 IV(최초의 자유화 약속 제시)은 토의되지 않았으나 분야별 주식의 성격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한 것이 최대 성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6월부터 분야별 주식 제정이 최대현안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각 분야에 대한 한국 측 제안의 제출여부, 분야별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한국 측 관심사항의 반영을 위한 국내 검토 작업 및 협상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1990.6.18.~22. 회의

- 6월 말~9월 초까지 아래 분야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회의 일정 확정
 - 노동력 이동, 건설, 해운, 육운, 항공, 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관광, 영화
- 향후 GNS 협상 진행계획과 관련, 의장은 지난 1월에 7월 개최예정인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Framework 초안과 분야별 주식 1차 초안 골격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의장 자격으로 Framework 초안작성 작업의 기초가 될 안을 작성 배부하겠다고 함.
- 이에 따라 7월 GNS 회의는 주로 TNC에 제출할 협정 초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3. UR / GNS 협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주제네바대표부 의견(1990.6.29.)

- 점진적 자유화 추진 방식
 - 다수 개도국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무역규모 및 국제적 인식, 대외지향적 경제 전략, 양자간 압력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협정 가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시장접근이 협정상 의무로 될 경우 보완장치 강구 방안
 - 시장접근 의무 부담 이전에 일반적인 유보가 허용되는 Qualified Obligation(제한된 의무)이 될 것이므로 최초 양허협상에 있어서는 Positive Approach와 큰 차이가 없음.
- MFN(최혜국대우)
 - 제한된 MFN의 수용여부 및 수용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요망됨.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4 7-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 번호 2020-115 / 4 / 1-252

1990.7~8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7.16.~20. 회의

- 금번 회의에서 상정된 협정 초안은 사전에 4개국(미국, EC(구주공동체), 인도, 멕시코)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정의 및 포괄범위, MFN(최혜국대우) 등 주요 쟁점과 기타 세부적 문제들에 대한 이견은 상존하지만 협정구조(자유화 추진방식)에 대하여는 4개국간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GNS(서비스협상그룹)에서도 대세를 결정지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도는 7.19. GNS 회의에서 제19조 3항 중 유보와 관련, 사무국에 대한 유도성 질문을 통하여 초안의 협정구조가 Negative Approach와 Positive Approach 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음.
 - 한국 입장에서 동 초안의 자유화 추진방식의 수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협정구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세가 결정됨으로써 향후 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및 하반기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아래 사항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 정의: 3개 기준(목적의 특정성, 거래의 불연속성, 제한된 기간)의 포함여부
 - 포괄범위: Universal Coverage 여부
 - MFN: Qualified MFN의 적용여부, 특정분야에 대한 MFN의 배제여부, 서비스협정 비가입국에게만 제공한 혜택의 포함여부
 - 개발개념: 개발개념의 구체적인 조문화 방법
 - 양허교환 시기: UR 기간내(1990년)의 양허협상 실시여부

2. 1990.8.29.~31. 회의

- 의장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5부 및 6부와 서문분야를 보완하여 GNS / 35를 단일문서로 작성, 9월 GNS 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고 동 회의 이전에 비공식 협의를 가지겠다고 함.
- 또한 9월 회의를 통하여 법률적 일관성을 검토할 Legal Drafting Group을 설치할 계획인바 관심있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들이 사무국과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함.

162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5 9-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5/1-306

1990.9~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9.17.~21. 회의

- 의장은 노동력 이동, 건설, 금융, 통신 작업반 의장의 작업 경과보고를 낭독하는 한편, 그 동안의 협상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10월 중순까지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10.8.이전에 사무국에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것인바,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표가 제네바에 상주할 것을 요청함.

2. 1990.10.22.~26. 회의

- 의장은 협정 시행을 위해 I.C.(Initial Commitment)가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요약하면서, I.C. 추진과 관련한 용어와 절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한국의 연내 I.C. 참여 시 장단점
 - 장점: 본격적인 자유화 협상이 1991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브뤼셀 각료회의 이전에 제출된 제안이 일부 타결된다면 상당한 Credit이 인정되므로 1991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에 제안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안준비가 불가피함.
 - 단점: 너무 짧은 시일 내 준비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위험이 있음.
 - 건의: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어차피 제안준비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11.20.경을 목표로 제안작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되 최종 제출시기는 향후 수립된 절차 및 다른국가의 동향을 보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전6권 (V.6 11-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6/1-230

1990.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11.12.~16. 회의

- 심야까지 협의를 계속하여 Framework 제4부, 5부, 6부까지 1차 토의를 마쳤으며, 동 토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이 11.21.까지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Framework 제2부 중 일부 조문(국내규제, 독점, BOP(국제수지) 조항, 지급 및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도 11.19. 오전 재토의할 계획임.
- 11.16. GNS 전체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의장은 그간의 비공식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TNC(무역협상위원회) 제출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21. GNS를 소집하겠다고 함.

2. 1990.11.22. 최종 공식회의

- 의장은 Framework과 분야별 부속서, Initial Commitment 협상지침을 한데 묶은 가칭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초안을 배부하면서 이는 의장 개인 책임하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고, 현 단계에서 동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재검토하거나 추가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한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가 브뤼셀에서 각료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괄호가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특히 MFN(최혜국대우)과 관련 미국이 새로이 제시한 대안은 진정한 다자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강한 MFN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162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 (건설/노동력 이동)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7/1-226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노동력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회의 관련 내용임.

1. UR / GNS 노동력 이동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6.25.~27.): 멕시코 제안, 인도 등 8개국 공동제안서 중심 토의
 - 제2차 회의(1990.9.3.~4.): 미국 제안 비공식 문서 중심 토의
 - 제3차 회의(1990.10.8.~9.): 작업반 의장보고서 토의 및 채택
 - 특별작업반회의(1990.10.24.~25.): 선진·개도국 간 기존입장 반복
- 주요 쟁점사항(선진·개도국 간 대립)
 - 노동력의 이동범위: 노동력 숙련도에 따른 서비스 공급인력의 범위
 -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접근방법: 부속서 규정(개도국)과 양허협상(선진국) 간 대립
- 노동력 이동과 관련된 문제의 다양성, 민감성 및 선진·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 작업반 의장보고서도 양측의 입장을 나열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

2. UR / GNS 건설·엔지니어링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6.28.~29.): 한국의 건설부문 주석서 비공식 문서 제출
 - 제2차 회의(1990.9.4.~5.): 한국 제출 문서 토의, 정부조달과의 문제 등 토의
 - 제3차 회의(1990.10.10.~11.): 작업반 의장보고서 중심 토의
 - 특별작업반회의(1990.10.24.~25.): 회원국간 입장 반복, 시장접근은 양자 양허협상에서, 정부조달은 별도 규범협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
- 주요 논의사항
 - 건설 주석서 필요성 여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정의 규정 필요성
 - 건설의 특성 관련 문제: 공개주의, 시장접근, 정부조달, 개발개념, 인력이동 등
- 한국은 건설부문 주석서,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부속서에 대한 제안서 제출 등 토의에 적극 참여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 (관광, Audio / Visual)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8/1-14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관광분야, Audio·Visual 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UR / GNS 관광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8.1.~2.)
 - 관광분야는 서비스 협상그룹에 없던 분야이나 1990.5월 GNS 회의 시 이집트 제의로 추가
 - 일반 토의: 관광의 범위 및 정의, 관광분야 주석서 필요성 문제 등 토의
 - 원칙 및 규칙에 관한 토의: MFN(최혜국대우) 적용문제, 공개주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
 - 제2차 회의(1990.10.1.~2.)
 - 주석서 및 부속서 필요 여부, 시장접근 및 MFN 토의, 의장보고서 검토
 - 특별작업반 회의(1990.10.31.)
 - 한국은 1991.1월부터 미국에 개방되는 여행업의 MFN 적용 제외 혹은 최소 5년간 유예기간 확보, 문화적 가치 보호상의 예외 인정 필요 입장

2. UR / GNS Audio·Visual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8.27.~28.)
 - 미국 제안서 제출, 유보허용, 분야별 주석서 제정, 일반적 예외조항 등 토의
 - 제2차 회의(1990.10.5.~6.)
 - EC 제안서 중심 토의
 - 제3차 회의(1990.10.18.)
 - GNS(서비스협상그룹)에 제출할 작업반 의장보고서 채택
 - 특별작업반 회의(1990.11.1.)
 - 주요 쟁점(문화적 가치, 주석서 제정 등) 토의
- 한국은 한·일본 간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일본에 대한 MFN 적용 배제 추진
 - 일본 대중문화상품 수입제한 조치 유지 입장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교통)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9/1-172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교통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7.2.~6.), 제2차 회의(1990.7.24.~28.), 제3차 회의(1990.10.18.~20.)

2. 특별작업반 회의(1990.10.29.~31.)

- 16개국 GNS 비공식 협의회(1990.11월) 참석
- 분야별 부속서 초안 마련, 브뤼셀 각료회의에 제출 예정
 - 운송분야 전반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미형성됨.

3. 분야별 쟁점사항

- 해운분야
 - 부속서 제정 필요성 합의 형성, EC(구주공동체) 등 대부분 국가가 한시적 MFN(최혜국대우) 일탈 규정 주장
 - 미국은 해운분야 제외 가능성 유보 입장
- 육상운송분야
 - 특정원칙의 일탈 필요, MFN 일탈 세부분야, 미래의 양자협정 인정 필요 여부 등 논란
 - 부속서 필요성에 입장 대립, 서비스협정 대상 포함에 대해서도 반대의견 일부 표명
 - 다수 국가가 육상운송분야 MFN 일탈 희망
- 항공분야
 -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항공분야 전체 제외 입장 표명
 - 한국과 EC 등 대부분 국가는 항공분야 MFN 일탈은 필요하나 협정대상에 포함 주장

4. 한국의 입장

- 해운분야
 - 연안 해운은 포괄범위에서 제외, 내수로 운송은 점진적 자유화
 - 국가안보 관련 중요화물에 대한 유보정책은 예외로 인정
- 육상운송분야
 - 국가간 운송대상인 철도와 버스는 협상대상에 포함되고, 순수 국내운용 철도, 버스, 택시는 제외
- 항공분야
 - 항공운수권은 보조서비스분야도 포괄 범위에 포함하되 국내운항은 제외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전2권 (V.1 3-9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 / 10 / 1-250

1990.3~9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금융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UR / GNS 금융분야 작업반 비공식 회의(1990.3.21.~23.)

- 참석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구, 아시아지역 개도국 등 32개국(한국 포함) 대표
 - 강경개도국 인도와 브라질 불참
- 주요 토의내용
 - 적용범위: 모든 금융서비스 활동 최대한 포함에 견해 일치, 구체적 방안에는 이견
 - 금융정책 당국의 은행감독규제: 각국의 규제가 불가피하나 최소화 필요
 - 국경 간 이동, 외환규제에 대한 협상대상 여부에 이견 존재

2. 제1차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6.11.~16.)

- 공식회의 주요 토의사항
 - 정의 및 적용범위(공급형태), 원칙의 적용문제(내국민대우, 시장접근, MFN(최혜국대우)), 금융시장 규제, 점진적 자유화와 개도국 참여 촉진방안에 대해 일반적 논평 중심 토의
- 한국이 참여하는 12개국 비공식 협의회에서는 미국 초안을 중심으로 토의

3. 제2차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7.9.~14.)

- 비공식 협의에서 의장은 주요 이슈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금융규제, 지급과 영수 제시
- 공식 회의에서는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의 제안서 토의, 6월 회의 시 토의가 미진했던 개도국 참여 촉진, 금융시장 규제, 지급과 영수 등 중점 토의
 - 미국은 별도의 금융서비스 협정안 제출

4. 제3차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9.10.~14.)

- 비공식 협의에서는 미국과 EC 간 협의를 거친 수정안과 SEACEN(동남아중앙은행기구, 한국 포함) 소속 국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토의
- 공식 회의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수입제한, 지급 및 영수에 대해 중점 토의

162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전2권 (V.2 10-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 / 11 / 1-240

1990.10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금융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UR / GNS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10.9.~20.)

- 비공식 협의(1990.10.9.~16.)
 - 3차에 걸친 금융전문가 비공식협의 내용을 종합한 금융분야 주석서 초안 축조심의
- 금융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10.9.~18.)
 - 14개국 금융전문가들이 금융주석서(부속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축조심의하여 금융주석서 초안을 캐나다의 Non-Paper 형식으로 작성
- 공식 회의(1990.10.19.~22.) 결과
 - 캐나다 제안서를 기초로 각국 입장 발표 후 금융그룹 의장이 GNS에 제출할 의장보고서 작성

2. 금융분야 특별작업반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협의(1990.10.26.~28.)

- 주요국 비공식 회의(10.27.)에서는 공식 회의(10.26.)에서 제기된 금융부속서 주요쟁점을 사무국이 작성한 분류표를 기초로 토의
 - 범위 및 제외활동, 공개주의, 국내규제, 조화 및 인정, 특정약속, 정부구매, 분쟁해결, 금융 서비스 기구 등 주제 토의
- 전체 공식 회의(10.28.)에서 의장은 금융분야 쟁점별 분류표 배포
 - 사무국은 Framework 보완 및 부속서 제정에 필요한 초안 작업 예정

3. 각국 정부의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사례 조사

- UR 금융서비스 협상 관련, 한국 양허안(Offer List) 작성을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국은행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시장진입, 영업활동, 감독규제, 인사상의 제한)을 조사
- EC(구주공동체),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태국, 필리핀, 사우디 사례 보고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전문직 서비스)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5 / 12 / 1-83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전문직 서비스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작업반 회의(전문가 회의, 1990.7.30.~31.)

- 회의 의제
 - 주요개념에 대한 검토: MFN(최혜국대우), 공개주의, 개도국 무역증대, 국내 규제 조치, 세이프가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등
 - 포괄 범위, 자격기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 추진 방법
- 주요 쟁점사항
 - 자격기준의 조화 문제
 - 상호인정협정의 성질, 상호인정의 방식 및 기준 등

2. 제2차 작업반 회의(1990.10.3.~4.)

- 주요 회의 결과
 - 미국 제안(회계서비스, 법률서비스) 토의
 - 상호인정, 조화의 추진방법에 대한 작업반 의장 제안 토의
 - 작업반 의장보고서를 GNS에 제출하기로 결정

162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통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 / 1 / 1-278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통신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작업반 회의(1990.6.5.~6.)

- 한국, 미국, 일본의 통신분야 제안서 제출 및 토의
- 통신분야 부속서의 형식, 실질적 자유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

1630

2. 제2차 작업반 회의(1990.7.9.~11.) 및 한·미국 통신 협의(1990.7.13.)

- 한국 정부의 입장
 - 작업반 회의: 한국의 통신부속서 초안 제출(서비스 범위의 positive list 방식, 회선이용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동등규제, 통신사업자 관리제도 유지 등)
 - 한·미국 양자협의: UR 협상 종료 후 양자협의 재개 원칙, UR 협상 및 한·미국 통신회담(1990.2월) 양해록 이행 관련 양자회의는 가능 입장
- 회의 결과
 - 9개 의제 중심 토의: 서비스 공급양식, 공개주의, 표준, 요금, 통신망 공급/이용 조건, 기본/비기본 서비스, 프라이버시, 불공정 행위, 개도국의 참여 증대
 - 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4개국 제안에 대한 공통 타협안으로 협상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 등 4개국이 공동 제안한 개도국의 입장 반영 문제가 다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제3차 작업반 회의(1990.9.10.~12.)

- 사무국에서 정리한 쟁점별 비교표 및 비공식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토의
- 주요 토의사항
 - 서비스 공급양식으로서 통신, 공중통신망, 기본/고도 서비스 구분, 공개주의, 공중통신망 서비스 수급조건, 표준 및 단말장치 부착, 정보 관련 문제, 불공정 행위 등

4. UR / GNS 통신부속서 초안 작성 실무자 회의(1990.10.1.~3.)

- 각국 제안서 비교 검토, 통신부속서 초안 작성에 한국대표단 참석
- 1990.10월 제4차 작업반 회의에 동 통신부속서 초안을 의장 초안으로 상정



5. 제4차 작업반 회의(1990.10.15.~17)

- 의장 작성 통신부속서 초안을 중심으로 토의

6. 합동 회의(1990.11.2.) 및 초안작성 회의(1990.11.5.~12.)

- 기본통신에 관한 한국 포함 9개국 비공식 회의 개최(11.18.)
- 브뤼셀 각료회의에 상정할 통신부속서 초안 검토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그룹 회의.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2/1-335

1. 제15차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회의(1990.1.31.~2.2., 제네바)

-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2. UR / 반덤핑 소그룹 회의(1990.2.16, 제네바) 및 제16차 MTN 회의(1990.2.19.~20., 제네바)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1632

3. 제17차 UR / MTN 회의(1990.3.21.~23., 제네바)

-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동 회의 의장직 수행 예정이었으나, 국내회의 참석 등으로 출장을 취소
 - 한국 대표: 신동오 상공부 제철과장,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4. 제18차 UR / MTN 회의(1990.5.1.~2.,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5. 제19차 UR / MTN 회의(1990.6.1.,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6. UR / MTN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6.18.~21., 제네바)

- 한국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7. 제20차 UR / MTN 회의(1990.7.16.~20.,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 GNG 회의에 제출할 반덤핑, 기술 장벽, 수입허가, 정부조달 및 관세평가 등 5개 협정의 의장 보고서에 대해 논의, 합의함

8. 주요 의제

- 반덤핑협정
- TBT(무역기술장벽)협정
- 정부조달협정



9. 회의 결과

- 대부분 의제에 관해 미국, EC(구주공동체), 캐나다 등 서방국가와 한국을 비롯한 홍콩,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간 의견 충돌
- 협상 시한이 촉박함을 감안, 합의가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작성한 문서를 흡수하여 합의안으로 사용하기로 함.
- 의견이 분분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6월 중순까지 합의안에 대한 non-paper를 작성하여 6월 및 7월 회의 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며 7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16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그룹 회의.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3/1-303

1634

1. UR(우루과이라운드) /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9.3.~5., 제네바)
 - 정부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협력부
2. 제20차 UR / MTN(다자간무역협상) 회의(1990.9.17.~18.,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우리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등
 -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 없이 협상 중인 5개 코드의 비공식 회의 진행상황을 의장이 간략히 보고함.
3. UR /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9.19.~21., 제네바)
 - 정부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4. UR / MTN 회의(1990.10.18.~19., 제네바) 및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10.15.~26., 제네바)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5. 제23차 UR / MTN 회의(1990.10.29.~30.,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6. UR / MTN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11.12.~16., 제네바)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7. UR / 반덤핑(그린룸) 회의(1990.11.24., 제네바) 결과
 - 던켈 사무총장은 각료들이 세부 기술문제를 다루도록 할 수 없으며, 사무국이 11.26. 12:00까지 1페이지의 의견서를 작성하되 브뤼셀에서 각료들이 토의할 4개 내지 5개의 기본 쟁점을 포함 시키며,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함.
8. 의제: 수입허가, 관세평가, 정부조달, TBT(무역기술장벽) 등 반덤핑 관련 협정 체결 전반에 관한 문제



9. 회의 결과

- 수입허가절차협정: 의장은 단일안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언급한 바 공식 채택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관세평가협정: 3가지 이슈에 관한 단일안이 관련국 협의로 마련되었는 바 차기 공식 회의에서 합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정부조달협정: 의장은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고 언급함.
- TBT 코드: 지역정부의 표준활동에 관한 문제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덤핑코드: 의장은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가 계속 중임을 알리면서 10.26.까지 만족할만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을 촉구함.

1635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 / 4 / 1-234

정부는 1990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12차 UR(우루과이라운드) / 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1차 회의(1990.4.9.~11.)

- 회의 성격
 - UR 협상 전반에 관한 분기별 검토 회의
 - 금년도 최초 회의(1/4분기 협상 결산)
- 회의 결과
 - 모든 국가가 협상진전 부진에 강한 우려 표명(7월까지 전체협상 윤곽마련의 절대적 필요성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각 협상 분야별 현격한 입장차이 재확인)
 - 특히 개도국의 불만표출 노골화(개도국 비공식그룹 명의 공동성명 발표, 협상의 심한 불균형 현상 강력비난 및 협상실패 가능성 경고)
 - EC(구주공동체), 일본은 일방주의 억제 필요성 재차 강조
 - 한국은 협상 불균형 시정 노력 필요성 지적, 신분야 등 협상 결과에 많은 국가 참여 희망, 농산물분야 협상 타결에 각국의 필수적인 이익 반영 필요성 강조

2. 제12차 회의(1990.7.23.~26.)

- 회의 목표: UR 협상 연내 종결을 위한 전체적인 협상 윤곽 도출
- 회의 결과
 - 15개 분야 협상그룹 의장 보고서를 실질 토론없이 접수(당초 목표(최종 윤곽합의 도출)에는 미달, 향후 협상의 기초는 아니지만 사실상 협상의 기본 문서화)
 - 협상분야별 향후 과제 및 핵심 쟁점 확인
 - 향후 협상일정 합의
 - 8.27.~10.7.: 분야별 협상 가속화
 - 10.8.~11.22.: TNC 상설화를 통한 고차원 절충 시도
 - 11.23.: 전협상분야에 대한 합의문안 작성 완료
 - 12.3.~7.: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합의문안 채택
 - 한국은 기초연설을 통해 협상부진 및 불균형에 대한 우려 표명, 연내 협상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 및 기여 촉구, 주요 협상분야별 한국의 기본입장을 표명(특히, 농산물분야 강조)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5/1-242

1.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회의(1990.1.29.~30., 제네바)

- 정부 대표: 태응렬 재무부 사무관 등

2. 제18차 UR / TRIMs 회의(1990.5.17.~18., 제네바)

- 정부 대표: 김교식 재무부 사무관 등

3. 제19차 UR / TRIMs 회의(1990.6.13.~15., 제네바)

- 정부 대표: 김종창 재무부 투자진흥과장 등
- 회의 결과
 - 과거 각국 제안을 기초로 종합 정리된 의장 초안을 검토
 - 미국, EC(구주공동체), 북유럽,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장 초안이 선진·개도국안을 절충한 협상안으로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인도, 브라질 등 강경개도국은 의장 초안이 선진국 입장을 주로 반영한 점을 들어 이를 토대로 한 논의에 반대 표명
 - 선진·개도국 간 심각한 이견 대립 계속(금지개념 도입 문제, 개발측면 고려 문제)
 - 7월 TNC 회의 보고를 목표로 차기 회의(1990.7.12.~13.)까지 비공식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4. 주요 의제 및 한국입장

- 의제
 - TRIMs에 관한 북유럽 제안 및 EC 제안 토의
 - 무역과 관련 있는 TRIMs의 제재 및 무역과 무관한 TRIMs의 제재
 - 보조금 관련 문제
 - 여타 분쟁조정 및 개도국 우대조항 등
- 한국 입장
 - TRIMs의 규율은 현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및 원칙에 따라 가능
 - 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상계 관세협상 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역과 관련 있는 TRIMs의 규제를 위해서는 GATT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 도입이 필요함.

163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7-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6/1-217

1. 제20차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회의(1990.9.10.~14., 제네바)

- 정부 대표: 김교식 재무부 사무관 등

2. TRIMs 협상그룹 회의 종료

- UR 협상의 15개 협상그룹 중 TRIMs협상그룹 회의가 1990.10.26. 공식 회의를 끝으로 종료됨.
- 지금까지 4년 동안 총 22차 공식 회의를 개최
- 의장 최종 안을 작성, 배포
 - 1, 2차 의장안에 각국 의견 반영, 최종 작성
 - 투자조치의 금지개념 도입 등 선진국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개도국 입장도 비교적 많이 반영된 중립적 문안 도출
- 향후 그린룸 협의를 거쳐 TNC 보고 후 각료회의에 회부 예정
 - 한국 입장: 기본적으로 의장안은 수락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3. 주요 토의 의제

- 그동안 토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 초안에 대한 토의: 의장은 중재안, 미국안, 개도국안을 단일 초안에 나열한 토의 문서 배포
- 미국안(선진국안): 각종 투자 제한조치 철폐를 골자로 함.
- 개도국안: 국내산업 보호 및수출 촉진을 위해 투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의장 중재안: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나 대부분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한국은 의장 중재안 지지

4. 토의 결과

- 격론이 벌어졌으나 선진·후진국 간 입장을 좁히는데 실패함.
- 의장은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추후 토의를 계속하기로 함.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6/7/1-98

1990년 중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관련 내용임.

1. 배경

- 1990.4.11. Crosbie 캐나다 통상부장은 제네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창설을 제의하고, 주제네바 캐나다대표부는 배경설명 문서를 배포함.
- 1990.5.15. Denis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관은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 WTO 창설제안 취지 및 추진계획을 설명함.

2. 캐나다 측의 제안 내용

- 동구권 변화, 개도국의 역할변화 등 세계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에 즈음하여 다자간 무역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WTO는 UR 협상 결과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를 수용하는 포괄적인 무역 기구로서 각국 무역정책의 명료화, 상호 감시제도를 도입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제도화함.
 - UR 협상 종료 시 WTO 창설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3. 각국의 반응

- 미국은 UR 협상의 성공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찬성함.
- 일본은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함.
- EC는 UR 협상의 성공을 전제로 소극적인 찬성 입장임.
-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진국들의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함.

4. 한국 정부 입장

- UR 협상 종료 후 WTO 창설방안에 대한 논의에 찬성하며, 선진국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WTO 창설을 경계하고 각국 반응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함.

163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전3권 (V.1 1980-86)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0-116 / 8 / 1-144

1980~86년 중 중국(구 중공)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 중국은 1985년도부터 GATT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오고 있으며, 1986.6월 GATT 특별이사회에서 GATT 가입 의사 및 New Round 협상 참여 희망을 표명하고, 7월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GATT 복귀 의사를 공식 통보함.
 - 1950.5.5. GATT를 탈퇴한 대만(구 중화민국)은 GATT의 원회원국
 - 한국은 1967년 GATT 가입

2. 한국 정부의 평가

- 중국이 GATT 가입을 통해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GATT 회원국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교역상의 최혜국대우와 양허관세 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서방 경제질서 편입으로 한국과의 교류 가능성 증대 및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으나, 중국이 GATT상의 최혜국대우와 양허관세 수혜로 국제경쟁력 제고 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예상됨.

3. 한국 정부의 입장

- 현재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GATT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바 중국의 GATT 가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중국 관계개선 및 경제교류를 위해 중국의 GATT 가입 방안에 찬성을 표명하도록 함.
- New Round 협상 참가문제 관련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의 참가를 지지하고 있는바, 한국 정부도 중국의 참가를 지지함.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전3권 (V.2 1987)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0-116 / 9 / 1-157

1987.2~12월 중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의 GATT 복귀 신청

- 1986.7월 중국은 GATT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87.2월 관련 토의 기초자료로서 중국의 대외무역체제에 관한 각서를 제출함.
 - 중국은 대만(구 중화민국)이 중국이란 이름으로 1948년 GATT에 가입했고 1950년 대만의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GATT 가입신청은 신규가입이 아닌 복귀라고 주장함.
 - 대만은 중국(Republic of China)이란 국호로 중국의 본토지배 이전인 1948.5월 GATT 원가맹국으로 가입하였으나 1950.5.5. 탈퇴함.

2. 중국의 GATT 가입 관련 작업반 설치 및 절차

- 1987.3월 GATT 이사회는 중국의 가입검토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결의함.
 - 미국, 일본 및 인도 등 개도국들이 중국은 복귀가 아닌 신규가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규가입 절차를 적용함.
 - 제1차 작업반 회의가 10.22. 개최되어 작업계획 및 일정을 검토함.
- 중국의 GATT 가입 절차
 - GATT 작업반이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검토 및 관세양허협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작업단 보고서를 채택하며, 체약국단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중국의 참가여부를 결의함.

3. 한국 정부 입장 및 중국의 가입전망

- 중국의 GATT 가입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역을 포함한 한·중국 간의 통상관계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한국에 대해 GATT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노력함.
 - 중국은 GATT 특정체약국에 대해 GATT 협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GATT 제35조 규정을 발동할 수 있음.
- 공산권 국가인 헝가리의 경우, 1969년 작업반이 구성되고 GATT 가입이 1973년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GATT 가입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전3권 (V.3 1988-90)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0-116 / 10 / 1-239

1988~90년 중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의 GATT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1987~90년)

- 1987.10~89.4월 간 8차례의 작업반 회의
 - 중국 대표는 1950년 대만(구 중화민국)의 GATT 탈퇴는 무효이며 중국은 신규가입이 아닌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외환보유제도 및 환율, 관세정책, 농산물가격, 투자여건, 개도국과의 무역정책, 무역통계 등을 설명함. 중국이 GATT 지위를 회복하고 최혜국대우 및 개도국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은 복귀가 아닌 신규가입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하고 중국의 경제 및 무역제도가 GATT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지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함.
- 제9차 작업반 회의(1989.12.12.~13.)
 - 중국 측은 개방정책에 따른 경기과열, 고인플레이 시정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작업단 회의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대해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 경제정책의 GATT 합치 여부에 의문을 표명함.

2. 1990년 GATT 작업반 회의 개최(1990.9.20.~21.)

- 중국 대표는 중국 경제개혁의 진전상황 및 개혁의지를 설명하고 중국의 GATT 가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함.
- 미국, EC,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1989.6월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를 위한 개방 노선에서 후퇴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기존 경제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가입절차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3. 한국 정부 입장

- 중국이 GATT 부적용 조항(제35조)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국의 가입을 찬성함.
 - 한국 정부는 중국의 GATT 가입 검토를 위한 제2차 작업반 회의 시(1988.4.19.) 중국의 GATT 참가를 환영하며, 한·중국 간 교역에 GATT 원칙의 적용을 희망한다고 발언함.

소련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추진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16 / 11 / 1-124

1983~90년 중 소련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82년 소련은 GATT 옵서버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회원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취소됨.
- 1989.11월 Ivanov 소련 대외경제관계위원회 부의장은 Dunkel GATT 사무총장 면담 시 소련의 GATT 가입의사를 재차 표명하고 우선 옵서버 가입 방안을 협의함.
- 1989.12월 미국·소련 몰타 정상회담 시 미국은 소련의 GATT 옵서버 참가에 지지 의사를 표명함.
- 1990.3.8. 소련은 GATT 총회 및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 신청서를 제출함.
- 1990.5.14. GATT 사무총장은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 소련의 GATT 옵서버 가입 관련 5.16. GATT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
 - 옵서버 가입여부는 GATT 이사회에서 체약국의 컨센서스로 결정함.

2. 한국 입장

- 1990.3.15.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소련의 GATT 옵서버 가입은 한·소련 관계진전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련에 대한 옵서버 지위 부여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지시 하였으며, 3.23. 주제네바대사는 Dunkel 사무총장 주재 비공식 회의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함.

3. 소련의 GATT 옵서버 가입 결정

- 1990.5.16. GATT 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소련에 GATT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함.
 - 미국대표는 소련의 옵서버 가입을 환영하고 소련이 GATT 무역체제에 적합하도록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소련대표는 자국의 경제개혁의 내용을 GATT에 계속 통보하겠다고 언급함.

164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 Geneva, 1990.7.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 번호 2020-116 / 12 / 1-105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가 1990.7.12.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
- 미국 측: Lavorel USTR(미국무역대표부) UR담당대사

2. 협의 요지

- 전반적 사항
 - (미국 측)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 제고를 희망, 1990.7월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의 의미있는 합의의 윤곽 도출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 희망
 - (한국 측)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UR 협상의 성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금번 협의가 양측의 특별한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 제고 희망
- 섬유
 - (미국 측) 섬유 교역을 강화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칙과 기율하에 GATT로 복귀시키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항, 섬유 교역의 GATT 복귀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섬유협상을 여타 협상그룹보다 빨리 진전시킬 수는 없음. 어떤 형태든 섬유협상 결과를 미국 의회에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등 수출국이 섬유제품의 관세양허 등 상당한 수준의 GATT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보여야 함.
 - (한국 측) 섬유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협상인바, 한국은 ITCB(개도국섬유수출회의)의 일원으로서 MFA(다자간섬유협정)에 근거한 복귀 양상을 지지함. 강화된 규칙과 기율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이는 다른 협상그룹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봄.
- 농산물
 - (미국 측) 의장안은 그간의 협상을 정리하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협상그룹이 앞으로의 협상기초로 수락하기를 희망
 - (한국 측) 식량안보를 포함한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협상을 위해 의장안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나 협상 기초로 지지하지도 않을 것임.
- 세이프가드
 - (한국 측) 의장안이 협상 진도 보고에 불과하고 기본쟁점에 대한 향후 협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우려됨. 세이프가드 협상이 실패할 경우 GATT 체제의 허점을 남겨두게 될 것이므로 동 협상이 UR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



● 반덤핑

- (미국 측) 의장안은 TRACK II, III에서는 미국 측 의견을 사소한 정도로 반영한 반면, 여타 부분에서는 반덤핑협정의 실질적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바, 그린룸 협의에서의 신사협정에 의거 협상기초로서 거부하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고 평가함.
- (한국 측) 반덤핑은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의장안의 TRACK II, III 관련 불만은 있으나 협상기초로서 수락할 수 있다고 봄.

164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미국 내 동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통상1과

MF번호 2020-117 / 1 / 1-116

1646

1.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1990.4.17. North Texax Commission에서 행한 '2001: A Trade Odyssey' 제하 연설을 통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힘.

- 전후 세계경제는 GATT의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급속한 교역량의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오늘날 세계 교역의 1/3(1조 달러)은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GATT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많은 개도국들은 GATT 규칙으로부터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교역량도 5천억 달러에 달함. 이러한 분야의 무역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무역분쟁이 무역 전쟁화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UR 협상의 성패여부는 미국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음.

2. 4개국(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비공식 통상장관회담(1990.5.4.~5., 캘리포니아 나파)

- UR 협상을 단일 의제로 하여 금후 협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집중 교환하였으나, 대체로 기존 입장이 반복되고, 새로운 진전은 없었음.
- GATT 규범 강화 분야
 - EC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선별적용 도입 제의와 미국의 선별적용 가능성 검토 용의, 일본의 반대 등 기존 입장의 반복
 - 미국은 금지보조금 정의 등 보조금 규범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EC는 무역과 관련된 보조금 정의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로 대응(일본도 EC와 유사한 입장)
 - 반덤핑 관련 일본은 가격비교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규범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회덤핑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여타국은 종전 입장 반복

3. 미국경제전략연구소는 1990.10.23. UR이 타결될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미국 경제는 GNP(국내총생산)의 감소 및 무역적자 증가를 경험할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함.

- UR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는 140억 달러 증가 예상
 - 농산물과 서비스분야 수출이 다소 증가할지 모르나, 제조업분야는 301조 폐기에 의해 수출이 감소되고 기존의 관세, 비관세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해야 하므로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임.



4. 미 하원의원 95명은 1990.10.29. 부시 미국 대통령 앞 서한에서 미 행정부가 UR의 시한 내 종결을 위하여 농산물분야에 협상력을 치중한 나머지, 미국 경제의 근간인 공산물분야 협상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반덤핑과 보조금조항 및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중요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함.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2/1-88

1989~90년 중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관련 내용임.

1. 베네수엘라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참여 문제

- 1986.9.20. 푼타델에스테 선언상의 비회원국 중 UR 협상 참여 가능국가
 - 1986.9.20. 이전에 회원국 자격에 관한 협상개시 의사를 표명한 국가(중국(구 중공))
 - 개도국으로서 1987.4.30. 이전에 가입절차를 개시한 국가
- 베네수엘라는 1989.6월 회원국 가입 신청 및 UR 협상 참여 의사 강력 표명
 - 베네수엘라의 UR 협상 참여는 푼타델에스테 선언에 반하나, 개도국그룹은 지지 입장
 - 한국도 베네수엘라 입장 지지

2. 베네수엘라의 UR 협상 참가 문제 협의

- 1989.9.29. 및 10.4.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그린룸 회의) 결과
 -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UR 협상 정식 참가를 위해 가입절차를 촉진하도록 노력
 - 가입절차 종료 즉시 UR 협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반의 작업이 개시되는 대로 베네수엘라에 UR 협상 파악의 기회 부여 및 제반 UR 협상문서 제공
- 1990.12.19.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3. 베네수엘라의 GATT 가입을 위한 관세협상

- 베네수엘라와 관세협상을 희망하는 국가는 1989.12.30.까지 의사표명 및 조속한 시일 내에 양허요청안을 제출
-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와의 관세양허협상 유보
 -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한국의 대베네수엘라 대규모 무역흑자 등 고려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기타 회의 및 일반사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7 / 3 / 1-134

1988~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부(祖父)조항 및 기타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GATT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통보

- J. Weeks UR(우루과이라운드) GATT 조문그룹 회장은 1988.7.8. 주제네바대표부 앞 공한을 통해 GATT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제1조(조부조항)에 해당하는 각국의 국내 법규 및 조치현황 통보를 요청
- 외무부는 9.30. 조부조항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고, 자료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되, 한국 농수산물 및 무역관계 법령 등에서 조부조항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이 있다는 수준에서 대처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1989.2월 UR GATT 조문그룹의 요청에 따라 국내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하여 무역거래법(제6조1항 및 제9조1항), 대외무역법(제18조1항, 제19조1항), 농약관리법(제7조) 등 7개 조항을 조부조항으로 GATT 사무국에 통보
 - 외무부는 한국의 GATT BOP(국제수지) 졸업에 따라 부담하게 될 농산물 수입규제 철폐, 수입 규제품목에 대한 개방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조부규정의 원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정립
 - * 조부조항: GATT 설립 이후의 체약국의 경우 가입의정서에 의거, 국내 법령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입제한의 철폐를 규정하는 GATT 제III부를 수락하는 편법이 인정됨. 이 조문이 바로 GATT에 우선하는 'grandfather clause'라고 부름.

2. GATT 노동권 작업반 설치 문제

- GATT 이사회에서 1990.10.4. 미국 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 설치안을 제안했으나 다수국가의 유보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노동권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결사의 자유, 단체 조직 및 교섭의 자유,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 등 3개의 기본권에 대한 작업반 설치 요청
- 이에 대해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일본, 헝가리 등은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하나, 인도, 탄자니아, 칠레, 체코, 이집트 등 대다수 개도국들은 반대하였으며, 한국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3. 태평양지역 GATT 회원국 제1차 협의회(1989.12.18., 제네바)

- UR 협상의 성공을 위해 1989.11월 아태지역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캐나다 주최로 제1차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이 참가
- 참가국들은 UR 협상에 대비하여 관세, 농산물,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싱가포르가 1990.1월 중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164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1 사전준비(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4 / 1-202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1990.9~10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GATT / BOP위원회 협의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 자료(1989.8.10., 외무부 통상국)

- 목적: 1989.6월 BOP 협의 결과 점검 및 10월 속개 BOP 협의 대응방안 강구
 - 한국입장: 당분간 BOP 개도국 조항 원용 지속이 바람직하나, 수입자유화 유예 보장 등 조건으로 BOP 조항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 표명
 - 각국 반응: 선진국, 대다수 개도국은 BOP 조항 원용 계속에 부정적 반응,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한국 농업의 어려움 감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 인정
 - 대부분 국가는 의장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최종 결의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미국 양국은 10월 말 협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 대응방안
 - BOP 조항 원용 중단을 전제
 - 국내 정치적 부담은 있으나 유예기간 확보 시 실익을 고려, 최대한의 자유화 유예기간 획득
 - 사전준비 철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사전 막후 접촉 추진

2. BOP 협의 대책 경제장관 회의(1989.9.8.)

- 참석자: 경제기획원장관(주재), 외무, 재무, 농수산, 상공장관 등 5개 부처의 장 참석
- 논의 결과
 - BOP 졸업과 동시에 자유화 유예기간을 받는 연계방식 수락
 - 자유화 유예기간은 10년 정도를 제시, 교섭에 임하되 가능한 한 장기간 확보
 - 자유화 계획 수립 일정, 범위 등 상세한 메커니즘을 실무회의를 통해 교섭안 성안, 장관회의에 회부, 결정

3. 1989.10월 BOP 협의 대책안 정립

-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9.27.): 쟁점별 협의 대안 및 단계별 협의 전략
- 기본 입장
 - GATT 국제수지위원회를 통해 다자적으로 해결
 - 한국의 기본입장은 상당기간 자유화 유예기간을 받는 전제로 BOP 원용 중단 수락



- 협상 전략

- 회원국 설득 노력 지속
- 자유화 계획 제시 시기 단축 등 선진국의 관심을 수용하지 않고는 협의 타결이 어려울 전망
- 선진국의 관심을 어느 정도 수용한 타협안 마련, 대처

16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2 사전준비(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5 / 1-153

정부는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 (국제수지)위원회의 대한민국 BOP 협의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수립 관련 내용임.

1. GATT / BOP 10월 협의 대책 관계 부처 장관회의(1989.10.13.)

- 참석자: 경제기획원장관(주재), 재무, 농림수산, 상공장관, 외무차관, 대통령 경제비서관 등
- GATT / BOP 협의 최종대책안 전반적 협의 및 점검
- GATT / BOP 한국 방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 유예기간: 미국(5년 이상은 곤란), EC(구주공동체)(5~10년 범위내 수용), 일본(5년 이상 신축적 고려)
 - 자유화 계획 제시방법: 미국(일시, 전체 계획 제시, 제시시기 앞당김), EC(매년 추진계획 및 실적 GATT 보고)
 - 사전협의: 미국(사전협의 통한 관심품목 반영), EC(다자협의 주장, 양자협의를 반대)
 - 권리행사: EC(권리행사 유보 양해 가능)

2. GATT / BOP 10월 협의(1989.10.23.~27., 제네바)

- 훈령
 - 자유화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주장하고 협의과정에서 신축성 부여
 - 자유화 계획은 3개년 계획 형식 등으로 단계적으로 제시
 - 자유화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조건은 수용 곤란
 - 자유화 유예기간 중에는 회원국의 권리행사 유보
- 수석대표 발언문(영문) 및 대표단 회의자료(주제네바대표부) 수록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3 BOP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6/1-158

1989.9~10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대비,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내용임.

1.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 외무부는 1989.9.25. 한국입장을 주재국에 설명, 지지 교섭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 주요국 반응내용
 - 일본: 한국입장에 대한 공식 지지는 어려우나 최대한 호의적 검토 가능. 1991.3월 자유화 발표 시 자유화 대상품목과 GATT 규정에 따른 수입제한 품목 구분 제출 필요
 - EC(구주공동체): 5~10년의 유예기간 중 자유화 추진방식과 조건이 만족스러울 경우 10년 유예도 검토 가능
 - 미국: BOP 유예기간 등 부대사항 합의가 어려울 경우 BOP 개도국 조항 원용중지만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BOP 밖에서 논의
 - 영국: 한국의 자유화 계획 실천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 유예기간 설정 지지
 - 프랑스: 유예기간은 5~7년 정도로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특정 농산물 등에 대해 개방 지연 교섭 시도 가능
 - 호주: 유예기간 10년은 너무 장기간. 자유화 계획 제시 방법 및 자유화 유예기간 중 회원국의 GATT 제소 권리행사 유보문제 논란 소지
 - 캐나다: 유예기간 필요에는 동의하나 10년 또는 12년은 너무 장기간으로 기간보다는 자국의 관심품목 반영문제가 중요
 - 이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필리핀, 칠레, 아르헨티나, 헝가리, 말레이시아, 가나 등의 반응 파악

2. 한국 교섭단 인도 및 이집트 방문(1989.10.14.~23.)

- 대표단: 이병기 농림수산부차관 등
- 활동내용
 - 10.16. Varma 인도 상무차관 면담 및 오찬 시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 지지 약속
 - 10.18. Mustafa 이집트 경제 및 해외무역장관 면담 시 이집트 측은 농업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개도국으로서의 공감대를 표시하고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약속

165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4 회의참석 및 결과)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7/1-134

정부는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 (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협의 성격

- GATT 제18조 B항에 의거, BOP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정례적 협의
- 1967년 GATT 가입 이래 동 조항에 의거, 수입제한을 시행해온 한국의 동 조항 원용 중단 관련 문제 협의
- 1989.6월 협의 시 타결 실패로 연기된 후 속개

2. 협의 타결 경과

- 1989.10.24.~26. 3차에 걸친 비공식 협의에서 의장의 중재안 마련으로 타결 도달
- 1989.10.27. 공식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3. 협의 내용

- 한국의 GATT 제18조 B항 원용중단 대신 자유화 유예기간 허용
-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8년 부여(1989.7.1.~97.7.1.)
- 자유화 계획은 3개년 단위로 단계적 추진
- 매년 자유화 추진상황을 GATT에 보고
- 유예기간 중 회원국의 GATT 상의 권리행사 자제

4. 평가

- 상당기간의 자유화 유예기간 확보
- 다수국의 이해,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입장 관철
- 개도국 제18조 B항 원용중단의 중요 선례 형성

5. 향후 대책

- 자유화 추진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필요
- 수입제한방법을 GATT 규정에 합치시킬 품목 및 해당 규정 검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8/1-116

198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개최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1989년도 GATT 이사회 개최 결과

- 2.8.~9. 이사회
 - 미국산 소고기 수출 관련 EC(구주공동체)와 미국의 보복조치, 브라질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대브라질 보복관세조치 문제 등 협의
- 3.6. 이사회
 - 미국의 한국, EC에 대한 통신분야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 문제, 일본의 농업정책에 대한 호주 측 연구보고서, 미국의 캐나다산 아이스크림 수입규제, 일본의 반도체 교역 등 토의
- 4.12. 이사회
 - 연어 및 청어 관련 무역조치, 미국의 대EC 일부제품 관세인상조치, 국내금지품목 수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토의
- 4.27. 이사회
 - 칠레는 자국산 포도에 대한 독극물 주입 사건 관련 국민보건 보호를 위한 수입국의 권리와 부당한 수입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출국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6.21.~22. 이사회
 -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의 미국 종합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 문제, 튀니지·네팔·베네수엘라·불가리아의 GATT 가입 문제, 노르웨이 사과, 배 수입 관련 패널보고서, 칠레산 사과 수입제한 패널보고서 채택

2. 1990년도 GATT 이사회 개최 결과

- 2.20. 이사회
 - 튀니지·불가리아·폴란드의 GATT 가입 문제, 미국의 설탕 수입제한 패널보고서 채택문제 협의
- 4.3. 이사회
 - 소련의 옴서버 신청, 캐나다의 대EC 곡물수출 관련 패널설치 문제, 베네수엘라 GATT 가입 협의
- 5.16. 이사회
 - 소련의 옴서버 지위 부여, 볼리비아의 GATT 가입 의정서 비준시한 연장, EC의 부품수입 규정에 대한 패널보고서 채택

165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집



- 10.3. 이사회

- EC는 10.3. 동서독의 통일 관련 동독이 동구국가와 체결한 1990년 및 1991년도 무역의정서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 보고
- 노동권 작업반 설치문제, 건포도, 키위, 복숭아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토의

- 11.7. 이사회

- 독일 통일 관련 EC의 동독에 대한 의무면제 연장 요청, 미국의 설탕 및 설탕함유제품 수입 제한 패널보고서, 태국의 담배수입 및 내국세 부과 패널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고, 캐나다산 냉동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부와 패널보고서는 미국의 반대로 미채택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9/1-127

1990.4월과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GATT / 반덤핑위원회 회의(1990.4.23.)

-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재무부 직원 등
- 각국의 법령토의: 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호주 등 법령
 - 한국 법령: EC, 캐나다, 호주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제출, 일몰조항 도입을 통한 법령 운용의 안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주의 환기
- EC의 한국 및 일본산 CDP에 대한 반덤핑조치 반박
 - 일본은 자국산 및 한국산 CD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가격 비교의 균형을 잃고 기타 수출자에 대해 불리한 요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데 대해, 한국대표단은 일본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신규 수출자 등에 대한 가장 불리한 덤핑율 적용은 불합리하고 규정에 위배됨을 강조

2. GATT / 반덤핑위원회 회의(1990.10.23.~24.)

-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 재무부 직원
- 훈령
 - 한국 관세법령 심의 시 EC 등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설명
 - EC, 미국 등 개정 반덤핑 법령 심의 시 GATT와의 일치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 전문가 회의 개최 시 동 회의에 적극 참여
 - 한국이 덤핑조사하고 있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폴리아세탈 건에 대한 EC, 미국의 질문 및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대처

165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0 / 1-110

1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TBT 개요

- GATT의 TBT는 1980.1.1. 발효했으며, 동 협정은 각국의 기술규정, 규격, 검사제도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
 - 동 협정 제2조 5항은 특정당사국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기술규정, 규격, 검사(inspection) 및 인증제도(certification) 등의 기술적 내용이 국제규격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타 당사국과의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타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의 기술적 내용을 밝히도록 규정
- 한국의 경우, 동 협정은 1980.10.2. 발효했으며, 1988.9월 현재 회원국은 39개국

2. 1990년 TBT위원회 개최

- 1990.3~5월간 제네바에서 TBT위원회를 수차례 개최, 규격일치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명료성 증대, 무차별 및 내국민대우, 2차 의무부과(second level of obligations), 분쟁해결 방안 등 의제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

3. 한국의 TBT 준수여부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9.12. 공한을 통해 미국산 대형냉장고 변압기, 자동차 배기가스, 농산물,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건포도, 팝콘 등 12개 항목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함.
- 외무부는 10.10.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제네바대사에게 송부하고 미국 측의 문의 시 활용하도록 지시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참가국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7 / 11 / 1-94

1987~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 (참가국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CPC 개요

- 개도국간의 특혜에 대한 양허를 목적으로 1971년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 되어 1973년 발효하였으며, 1988년 현재 가맹국은 18개국
- GATT는 동 의정서 이행을 위해 GATT 내 참가국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은 1972년 6개 품목을 양허하기로 하고 동 의정서에 서명

2. 1987~90년 간 CPC 주요 토의내용

- 1987.2.1. 방글라데시는 '선 양허품목 제시, 후 협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칠레는 동 제안이 CPC 회원국간 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 표명
- 1988.7.22. 터키의 일방적인 양허품목 확대안을 양허세율표에 추가하기로 결정. 한국 정부가 제출한 HS(국제통일상품분류) 양허세율표는 이견 없어 확정
- 1989.7.11. 이스라엘은 1989.7.1.부터 면사, 가죽제품, 신발류 등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무세로 추가 양허하되,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철회 혹은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 루마니아, 칠레, 우루과이 등 환영
- 1990.9.26. 우루과이는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도국 간 무역확대 의정서 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동 의정서상 양허확대 협상을 차기 회의의 추가 의제로 제의한 바 대부분 참가국은 이에 동의

165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참가국 위원회. Geneva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2 / 1-257

1989~90년 중 제1~3차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참가국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GSTP 참가국위원회(1989.7.25.~26.)

- 한국 대표(수석대표)
 - 이상욱 주제네바대사
- 회의 결과
 - 각국 간의 논란이 예상되었던 사무국 설치, 각국 부담금 배분, 잠정예산 조달방안 문제 등을 모두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정사항은 없음.
 - 잠정예산 관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GSTP 지원을 위한 예산이 남아 있으며, 페레즈 게라로 기금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함.
 - 예산 및 기금문제 협의를 위한 소위원회는 9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임.

2. 제2차 GSTP 참가국위원회(1989.11.22.)

- 1989.11.22. 현재 29개국이 비준서 기탁
- 제2라운드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통인식이 있었으나,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조기 추진보다 기존의 GSTP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GSTP 재정문제 관련, 회원국들로부터 부담금 조기 납부방식 등의 자발적 기여를 검토하는 한편, 타 국제기구로부터 보조를 받는 방안도 계속 추진함.

3. 제3차 GSTP 참가국위원회(1990.7.17.)

- 의장은 GSTP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속히 제2라운드 출범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재정문제 관련 소위원회 작성 보고서를 수정 없이 채택함.
- 각 회원국은 부담금 선불의사를 표명함(말레이시아 1.5만 달러, 인도네시아 1만 달러, 싱가포르 1.5만 달러 등).

4. GSTP 소위원회(1990.10.30.)

- GSTP 제2라운드 출범에 관한 준비사항, GSTP 재정 문제, GSTP 통계 수정 문제 등이 논의됨.
- 특히 GSTP 부담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장은 소수국(5~6개국) 대표가 별도 비공식 회의를 갖고 부담금 산출 기준안을 마련한 후 동 안을 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함.

CCC(관세협력이사회) 기타 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3 / 1-220

1989~90년 중 CCC(관세협력이사회) 산하 위원회 및 기타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차 CCC 과학자 소위원회(1990.1.29.~2.2., 브뤼셀)

- 참가국: 31개국
 - 한국 수석대표: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정부 훈령
 - 무역상품의 과학적 분석에 따른 HS(국제통일상품분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각 의제 별로 한국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CCC 및 회원국의 물리화학적 분석기술 동향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책 수립에 기여 도모
- 규제약물, 전구(前驅) 물질 및 필수 화공약품의 유용, 수지산에 관한 해설서 개정, 대개도국 기술 지원 방안, 유엔환경계획에 의한 HS 개정 문제, HS 분류 물품을 위한 정량분석 방안 등 협의

2. 제9차 CCC 감시위원회(1990.2.19.~23., 브뤼셀)

- 참가국: 65개국
 - 한국 대표: 임옥군 관세청 심리기획담당관
- 정부 훈령
 - 세관감시 행정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 장비, 수사요원 훈련기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것
- 참가국들은 국제마약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국제 협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3. 제7차 CCC 상임기술/감시 합동 전문가 회의(1990.3.5.~9., 브뤼셀)

- 참가국: 23개국
 - 한국 대표: 이병근 재무부 사무관, 조용만 관세청 사무관
-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하여 최종통관이 종료되는 통제 과정, 내수용 물품신고서의 제출과 처리 과정, 화물검사에 적용되는 통제과정 등 협의
- 한국대표단은 향후 국제화, 자유화 추세로 물품의 수출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세관행정의 전산화 도입과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책 마련 건의

4. 제2차 CCC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 해외연락관 회의(1989.11.20.~21., 홍콩)

- 참가국: 16개국
 - 한국 대표: 이형승 관세청 사무관
- 불법마약거래에 대한 유엔협약상의 협력방안, 마약밀수 방지를 위해 정보교환, 우범자가 홍콩 세관을 통과할 경우 해당국 세관에 통보하는 방법, 마약밀수 협의가 있는 선원 및 승무원 명단 자료화, 마약단속을 위한 항공사와 선박회사와 협력방안 등 논의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5-6차.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4 / 1-165

1990년 중 제5~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제5차 회의(1990.4.2.~12.)

- 대표단(대표)
 -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훈령: HS(국제통일상품분류) 제도 시행 관련 품목분류에서 한국정책 최대 반영 노력 등
- 회의 결과
 - 참가국: 한국 등 36개 회원국 및 EEC(유럽경제공동체), 옵서버
 - 논의 및 결정사항
 - HS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품목분류규정: 시행준비기간 2년 경과후 국내품목 분류규정 교환
 - HS 제도상 수량에 관한 표준단위 도입: 국제협약표준단위 외에 국내행정당국의 필요에 따른 추가 수량단위 사용 가능
 - 품목분류 관련 논의 및 결정: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를 받는 물질의 국제적 이동 자료수집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통계품목표 삽입권고, 국제무역 거래상의 용어 등 관련 해설서 수정 등

2. 제6차 회의(1990.10.22.~11.2.)

- 대표단(대표)
 - 류종호 관세청 서기관
- 훈령: HS 도입 및 시행상 품목분류분야에서 한국정책 최대 반영, 국제협력증진 및 회원국 정보 수집
- 회의 결과
 - 참가국: 한국 등 41개 회원국, EEC, 옵서버
 - 논의 및 결정사항
 - 아침식사용 곡물제 Musli 분류, 코코아 함유 특정 밀크조제품 분류, 음료베이스 분류 등 논의
 -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HS 품목분류표 및 동 해설서, 분류의견서 수정

CCC(관세협력이사회) 단일신고서식(SGD) 전문가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5 / 1-73

1990년 중 CCC(관세협력이사회) SGD(단일신고서식) 전문가그룹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제6차 회의(1990.2.26.~3.2.)

- 참석: 27개 회원국, EC(구주공동체)
- 대표단(대표): 손병조 관세청 통관관리국 사무관
- 의제
 - 세관행정사안에 대한 해설서 초안 검토
 - 단일신고서식의 구성과 양식 결정
- 단일신고서식 제정 관련 CCC 권고안 초안 검토
 - 단일신고서식 양식 토의: One Sheet와 Separate Sheet 방안 검토 후 One Sheet 방안 채택 등 기술적 사항의 검토
 - SGD에 관한 CCC 권고안 검토: 다수국은 SGD가 범세계적으로 채택, 운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2. 제8차 회의(1990.11.12.~16.)

- 참석: 27개 회원국, EC
- 대표단(대표):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의제
 - SGD협약 초안 검토
- 회의 내용
 - 1990.6월 이스탄불 총회의 SGD 채택에 관한 권고내용을 근거로 협약 초안을 작성, 검토
 - EC는 SGD와 유사한 SAD를 개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SGD의 당장 적용이 어려우므로 향후 발전단계를 보아 적용할 의사 표명. 미국 및 일본은 SGD가 ADP, EDI와의 병행 발전의 효율성을 지적. 개도국은 국별 통관절차의 상이, 관세행정의 미비 등을 이유로 협약의 단순한 조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
- 평가
 - 1992.1월 말까지 각국은 우선 시험결과를 CCC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협약 발효 시기의 순연 전망

166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9-20차.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6 / 1-50

정부는 199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9~20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에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9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90.3.12.~16.)

- 참가국: 23개 회원국, 20개 옵서버국
- 과세가격에 공제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 은행지불 보증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로열티 및 복제권의 의미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1990.10월)에서 재차 협의하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EC(구주공동체) 등이 회의를 주도하고, 각국은 서면에 의한 의사개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추후 회의 시 한국도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 제시의 활성화를 건의

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1990.3.20.)

- 제19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법령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한국의 개정관세평가 법령에 대해서는 심사 종결
 - 한국은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등 4명 참석

3. 제20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10.8.~12.)

- 참가국: 회원국(18개국), 옵서버국(18개국), 국제기구(3개)
- 7개 안건 중 구매수수료, 보증 보험료 등 3건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로열티 및 복제권 등 3건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나머지 1건(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된 재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은 관련 협약규정의 해석에 있어 미국, EC 등 선진국은 과세대상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며 개도국은 반대로 확대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하고, 보증 보험료, 은행지불보증 수수료 등은 새로운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사례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정책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7 / 1-159

정부는 제75~7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제23~24차 정책위원회 회의에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3차 CCC 정책위원회(1990.6.20.~22., 터키 이즈미르)

- 주요 토의내용
 - 동구권 변화와 관세행정 지원(문헌상 대표는 한국도 이미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관세행정분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의향임을 피력)
 -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및 통일작업
 - 관세행정의 자동화를 위한 국제협력
 - 한국을 이사회 부의장 겸 정책위원회 위원국으로 총회에 추천

2. 제75~76차 CCC 총회(1990.6.25.~28., 터키 이스탄불)

- 주요 토의내용
 - 관세평가, 품목분류, 세관기술, 감시, 훈련 및 협력, 재정, 기타 정책사항(동구권 지원문제 등)
 - 총회 의장으로 스페인, 부의장으로 캐나다, 한국, 프랑스가 선임됨.
 - 기술국장에 미국의 Ms. Rigdon이 3차 투표결과 당선되고 평가국장에는 현 평가국장인 Mr. Douabi(코트디부아르)가 당선됨.

3. 제24차 CCC 정책위원회(1990.12.10.~12., 브뤼셀)

- 주요 토의내용
 - 동유럽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CCC의 관세행정 지원 결정
 - 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의 협력방안 승인
 - CCC 납입금 연체로 인한 회원국 자격정지 국가 구제방안 논의
 - 91/92 예산계획 논의 및 기본방향 결정

166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6-9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17 / 18 / 1-112

1989~90년 중 제6~9차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가 개최됨.

1. 제6차 이사회(1989.5.16.~24.,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 대표단(대표): 김영웅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재무관
- 참가국: 한국 등 23개 회원국, 옵서버
- 논의 및 결정사항
 - 국제열대목재협정의 2년 연장
 - 한국이 제안한 2개 프로젝트 논의를 차기 회기로 연기

2. 제7차 이사회(1989.10.30.~11.7., 요코하마)

- 대표단(대표): 한갑준 임업연구원 부장
- 참가국: 한국 등 39개국 및 30개 국제기구
- 논의 및 결정사항
 - 한국 제안 등 포함 11개 사업 승인
 - 1990년도 예산 및 부담금 결정
 - 1990년도 의장단 선출

3. 열대산림행동계획 원탁회의(1990.4.2.~4.,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레스비)

- 논의: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보고서 'PNG The Forestry Sector: A Tropical Forestry Action Plan Review'

4. 제8차 이사회(1990.5.16.~23., 인도네시아 발리)

- 대표단(대표): 김용한 주인도네시아 임무관
- 참가국: 한국 등 47개국
- 대표단 활동
 - 본회의, 임산공업위원회, 조림위원회, 경제시장정보위원회 참석
 - 한국 합판공업현황 발표

5. 제9차 이사회(1990.11.16.~23., 요코하마)

- 대표단(대표): 이준재 주일본대사관 서기관
- 논의 및 결정사항
 - 22개 신규사업 승인, 사라와크 결의안 채택
 - 네팔 및 콩고민주공화국 신규가입으로 회원국은 48개국으로 증가

주요국의 수출자율규제 현황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7 / 19 / 1-21

1989~90년 중 주요국의 수출자율규제 현황에 관한 내용임.

1. 상공부는 1989.11.4.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함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상의 Grey Area인 수출자율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요 교역국의 수출자율규제현황 파악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90.2.28. 관련 공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상공부에 통보함.

- 일본(품목/대상국/규제물량/규제형태 순)
 - 승용차/미국/연간 230만 대/수량규제
 - 특수강/미국/미국시장 점유율(5.89~10.47%)/수량규제
 - 철강/미국/미국시장 점유율(5.55%)/수량규제
 - 포크리프트/EC(구주공동체)/최저수출가격규제/가격 및 수량규제
 - 공작기계/미국, EC/규제수량 미공개/가격 및 수량규제
 - 도자기/미국, 영국, 캐나다/규제수량 미공개/수량규제 등
- 대만(구 중화민국)
 - 구두, 방직면신발/영국/9,968,900쌍(1989년도)/순수자율수출규제
 - 공작기계류/미국/품목에 따라 217~2,653대/정부간협정
 - 철강류/미국/33만 톤(1989년도)/순수자율수출규제
 - 비금속지퍼/스페인/1,280만 대(1989년도)/순수자율수출규제
- 홍콩 및 싱가포르: 수출자율규제 시행하지 않음.

166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국의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 순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8 / 1 / 1-108

1990.12.31. 방위세법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세손 보전방안으로 1989~93년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 시행함.

1. 재무부는 1990.9.4.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안건 상정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주요 개편내용: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의 1년 순연 적용 등

2. 외무부는 1990.9.5.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재무부에 송부함.

-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국제적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으나, 한국 정부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동 5개년 예시제를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인정하도록 주장한 전례 등에 비추어 방위세법 실효에 따른 세손보전을 위해 예시제를 1년 순연하는 것은 대외적 신인도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한국 정부는 1990.9.21. 국무회의에서 1989~93년간의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 적용하기로 결정함.

- 결정 내용
 - 5개년 예시제상의 1990년도 세율(평균 11.4.%)을 1991년도에도 그대로 적용
 - 1991년에는 방위세가 폐지되므로 수입물품에 금년대비 2.5% 부담이 경감되며 1992년 이후에는 당초 인하 예시제가 1년씩 순연 적용
 - 예시제를 1년 순연하여도 수입분 방위세를 관세에 통합하여 관세율을 인상한 경우보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담이 완화

4. 외무부는 1990.9.24. 한국 정부의 상기 결정사항을 미국 등 주요국 소재 공관에 통보함. 이어서 동 조치의 배경, 효과 및 내용 등에 관한 참고자료를 11.6. 재외공관에 송부, 주재국 정부 및 업계의 문의에 대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미국 슈퍼 301조에 대한 인도의 대응방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18/2/1-55

1989년 중 인도의 미국 슈퍼 301조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주인도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불공정 무역국 지정 배경

- 인도의 대미국 흑자폭 증가 가능성
 - 현재 인도의 대미 흑자액은 크지 않으나, 향후 흑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사회에서 미국 경제정책 공개 비판
- 미국 제약업계의 로비 작용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지원한 제약업계가 BULK 품목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인도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어 대인도 제재를 강력히 요청함.
- 인도 정부의 미온적 협상 태도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인도 민간사절단이 방미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협상으로 처리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도 측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이에 미국 측은 인도 측이 성의가 없다고 평가함.

2. 미국의 대인도 주요 요구내용

- 관세율 인하: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37.6%로서 이러한 관세율로서는 미국기업이 인도시장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함.
- 특허권 보호
 - 인도는 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인도특허법에 의해 외국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기간이 짧음(외국은 14년, 인도는 7년).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의 시정과 특허 침해에 대한 무혐의 입증 문제에 관해 인도는 피제소자 측이 이를 행하도록 요구함.

3. 불공정무역국 지정 후 인도 반응(인도상연합회 회장의 언론발표)

- 인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도를 슈퍼 301조 및 Special 301조의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다수 인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것임.
- 인도 정부는 지난 4년간 괄목한 만한 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기술제휴가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사실이 USTR에 제대로 인정되지는 않음.
- 지적재산권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며, 식량, 제약 등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긴요한 품목이므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

166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일본의 소고기 수입 자유화 문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8/3/1-29

1988~90년 중 일본의 소고기 및 오렌지 수입자유화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일본의 수입자유화의 영향

- 소비자(일본 국민) 측 영향
 - 가격하락 및 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져 수요증대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생산자 측
 - 축산농가: 국내 우육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7만 5천 낙농가에 타격
 - 감귤농가: 대폭적인 가격인하 예상, 타 작물로의 전환에 장시간 소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

2. 보상대책

- 우육
 - 단기대책: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대책 확충, 농가부채의 장기저리 전환
 - 장기대책: 재정예에 의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차액보전제도 도입
- 오렌지: 감귤농원 전작 대책 강화, 가공공장 설비 근대화 등
- 자원: 금후 5년간 1조 엔 소요 예상

3. 1990.6.20. 미국과 일본의 소고기 협상타결에 따른 한국의 영향 및 대책

- 미국 측은 대일본 교섭에서의 자유무역주의 관철 실적을 토대로 한·미국 양자협상에서 압력을 가중해 올 가능성 증대
- 6월 중 소고기 수입재개 계획에 관한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대외협상대책 마련이 필요

4. 주일본대사관은 1990.2.28. 일본 소고기 수입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 호텔용 소고기 수입제도
 - 1969년부터 500톤의 특별수입이 인정된 후 수요의 증대로 1987년도 4,000톤까지 확대됨.
- 1989년도 국별 수입현황
 - 1989년도 상반기 수입된 6,500톤 중 미국산은 4,378톤 (95.5%), 호주산은 158톤으로 비율은 매년 비슷함.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및 한국의 대응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20-118/4/1-264

1985~86년 중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더몬드 법안) 처리 동향 및 한국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미국 상원의 섬유수입규제법안 가결(1985.11.13.)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 표명
- 한국 정부는 1985.11.15. 섬유규제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Aide-Memoire를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및 관계 기관에 전달
- 국회의 미국 하원의원에 대한 서한 발송
 - 윤국로 국회 상공위원장 명의 미 하원의원 앞 서한(11.28.자) 전달
 -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외 12명 명의 미 하원의원 앞 서한(11.30.자) 전달

2. 미국 하원은 1985.12.3. 상원의 섬유수입규제법안 무수정 가결

- 하원은 12.4. 동 법안을 대통령에게 이송
- 미국 대통령의 비토 기간은 12.5. 개시되어 12.16. 종료

3.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레이건 대통령은 1985.12.18. 섬유수입규제법안에 대한 비토 메시지에 서명
 - 섬유수입규제법안의 높은 경제적, 인적 비용 때문에 동 법안을 거부한다고 발표
 - 상기 거부권 행사는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무역 철학을 재확인하고, 의회의 지나친 보호무역 주의 경향에 대한 견제조치로 평가
- 금진호 상공부장관은 거부권 행사 촉구 상원의원(21명)에게 감사서한(1985.12.18.자) 발송
 - 금 장관의 감사서한을 미국 재무장관 상무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전달
-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1985.12.19.자) 전달

16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 법안 추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8/6/1-90

1990년 중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법안 관련 사항임.

1. 섬유류 및 비고무화류 수입규제법안 미국 의회 제출

- Hollings 미국 상원 섬유위원회 의장 및 Lloyd 하원 섬유위원회 의장이 1990.4.4. 각각 상, 하원에 제출
- 주요 내용
 - 섬유 및 비고무화류 수입의 총량쿼터제 실시(캐나다, 이스라엘은 제외)
 - 스웨터류는 별도 수입한도 설정, 총량쿼터 내에서 국별 쿼터 배정(농산물 수입국은 배려)
- 미국 행정부는 섬유류 교역자유화를 포함한 UR(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종결에 장애가 되며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

2.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 및 대응

- 1990.7.17. 미국 상원은 섬유 및 의류 수입규제법안을 가결(68:32)
 - 총량규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에 연동시켜 각국 쿼터 배정
 - 섬유 및 의류수입의 연증가율을 1퍼센트로 제한, 신발류 수입은 1989년 수준 동결
 - 1991년부터 총수입액의 20% 범위 내 쿼터경매제 실시
- 9.11. 미국 소재 섬유수출국 대사와 연명으로 주요 하원의원에게 섬유 및 비고무화류 수입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함(한국 등 24개국 대사 참여).
- 미국 하원은 9.18. 섬유류 및 비고무화류 수입규제 법안을 가결(271:149)

3.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하원의 재가결 실패로 법안 폐기

- 미국 대통령은 1990.10.5. 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미국 대통령은 1985년 및 1988년 유사 수입규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미국 하원은 10.10. 대통령 비토법안에 대해 재표결하였으나 실패로 법안 폐기

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조치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8/5/1-108

1988년 중 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농산물 수입제한 관련 작업단 회의

- 미국의 일부 농산물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체약국단의 Waiver 부여 결정(1955.3.5.)에 따라 미국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 검토를 위한 제1차 작업단 회의가 1988.2.11. Lacarte 의장 주재로 개최됨.
 - 미국은 권고를 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EC(구주공동체)는 권고를 행하는 것이 작업단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지적한바, 의장은 적절한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유권해석함.
 - EC는 Waiver와 미국의 농산물수출 간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1933년도 농산물 조정법 제2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1988.7.5. 작업단 회의 시, 호주는 미국의 농산물 수입규제를 위한 Waiver와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과의 관계 및 Raw Sugar에 대한 쿼터 적용 근거에 대해 문의한바,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11조에 의한 것은 아니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입규제 제22조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Raw Sugar에 대한 쿼터 및 과징금 부과도 Sugar Beets 생산능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조정법에 의거 대통령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함.
- 1988.9.16. 작업단 회의 시, 미 농산물 조정법에 의한 Waiver 운용상황 및 추진대책에 대해 토의한바, EC는 Waiver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정책 변동내역에 대한 해명과 함께, 설탕에 대한 Loan Program과 CCC(관세협력이사회) 자금 운용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2. 미국 설탕 수입쿼터

-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1989년도 국별 설탕 수입 쿼터 배정과 관련, 1985년도 제정된 식량 안보법 제9편 제902조에 의거, 한국이 쿠바로부터 수입한 설탕을 미국에 재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해 오면서, 동 확인이 없으면 쿼터배정 배제는 불가피하다고 통보함.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제902조에 의한 차별적 쿼터제도가 GATT 규정상의 의무면제 조항 등 관련 조항에 의해 GATT상 용인되었는지를 문의, 회신하도록 지시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년 니카라과·미국 간 패널 케이스에서도 미국의 차별적인 쿼터제 운영이 GATT 제13조 위반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현재 호주도 미국과 유사한 사례로 패널설치를 요구하여 합의한 바 있다고 보고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미국의 설탕 쿼터의 역사, 실시현황 및 쿼터 운용의 GATT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미국대사는 미국의 농업보조정책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송부함.

167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8/7/1-110

1989년 중 한국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관련 내용임.

1. 미국 상원의원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 요청

- 주미국대사관은 1989.3.24. 미국 상원의원들이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발송한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서한을 입수 보고함.
 - 수입금지 해제 희망품목: 오렌지, 혼합야채주스 등
 - 관세인하 희망품목: 아몬드, 레몬, 건포도, 아보카도 등

1674

2.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보완대책

- 농림수산부는 1989.4월 '1989~91년도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함.
 - 1989~91년 중 총243품목 단계별 수입자유화
 - 쌀, 보리, 콩, 옥수수, 소고기, 오렌지, 사과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농어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보완대책 수립
 - 대두박, 옥수수가루, 유채, 양조용 포도의 경우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 보상
 - 황도, 양조용 포도과원 폐원 시 기대수익 산정 보상
- 외무부는 미국 측 요청품목 반영상황 및 설명요지를 미국지역 공관에 통보하고 홍보활동을 지시함.
 - 미국 측 요청품목 반영사항: 금번 수입자유화 계획에 의거 미국 측 요구 119개 품목 중 62개 품목 반영
 - 설명요지: 쌀, 보리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 보호 및 식량안보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임.

국내 산업보호제도 관련 해외사례 조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8/1-41

1990년 실시된 국내산업보호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임.

1. 주요국 탄력관세 운용현황

- 재무부는 1990.6.23.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탄력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주요국의 탄력관세제도 내용 파악을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미국, 일본, 독일, EC(구주공동체), 대만(구 중화민국) 등 주요 국가공관을 통해 동 내용을 파악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 무역위원회는 1990.6.27.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참고 하기 위해 산업피해구제기관의 결정 사례를 미국, 캐나다, EC 주재 상무관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3.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 관계자 미주국가 방문

- 경제기획원은 1990.6.28. 약관심사위원회의 업무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미국 및 캐나다 등 미주국가의 행정관청 및 위원회 방문 추진을 위한 외무부의 협조 요청
- 외무부는 해당 공관을 통해 면담추진 및 숙소예약 등 협조 제공

4. 상공부 무역위원회 시찰단 방미

- 상공부는 1990.10.22. 무역위원회 산업조사관 등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제도 및 반덤핑조사 세부운영실태 조사 목적으로 ITC(국제무역위원회) 등 통상 관련기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동 방문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 ITC 관계관 면담 주선 등 협조 지시
 - 주미국대사는 동 무역위원회 일행이 ITC 및 상무부 관계관 면담 시 위원회 및 공청회 운영현황과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련 산업피해 조사방법, 특허권 침해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을 청취 하고, 무역위원회와의 업무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보고

167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통상관계 전망 및 대책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8 / 10 / 1-121

1989~90년 중 한·미국 통상관계의 전망과 대책에 관한 자료임.

1. 1989년도 대미국 통상협상 기본 방향(1989.3월)

- 한·미국 간 주요 통상현안
 - 농산물 시장개방, 소고기, 관세인하, 통산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문제 등
- 기본 대응방향
 - 한·미국 간 무역마찰 계속 발생 불가피, 미국 신종합통상법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긴요
 - 각종 쌍무교섭에 성의있게 대처, 합의사항의 엄격한 시행으로 이해 및 신뢰성 증진
 - 대미무역흑자의 적정수준 관리, 한국실정에 맞는 자체 시장개방 장기계획 조기 수립·시행
 - 우루과이 다자협상에서 기본이익을 보호해 나가면서 미국과 적극 협조

2. 1990년도 대미국 통상정책 기본방향(1990.1월)

- 1989.12월 주요국 주재 대사(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중국, 브라질, 인도)에게 1990년도 대미통상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및 주요 경쟁국의 동향 등 파악 지시
- 1990.1.17. 경제장관회의에서 1990년도 한·미국 통상 종합대책 논의
- 1990년도 대미국 통상정책 기본방향
 - 미국은 1990년 말 시한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종료에 최우선하면서 쌍무적 시장 개방 협상 추진
 - 1989년 한·미국 간 슈퍼 301조 합의 및 대미무역흑자가 감소되었으나, 슈퍼 301조 적용 문제와 1990.4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결정 등 문제 예상
 - 통상현안 중 소고기, 통신 등 협상시한이 있는 문제는 가급적 시한 내 원만한 타결 노력
 - 조선, 정부구매문제 등 다자간 성격의 현안은 가급적 다자차원 해결 유도
 - 주요현안: 슈퍼 301조 이행문제, 통신(우선협상대상국), 지적재산권(감시대상국), 소고기 협상, 농산물 수입자유화, 환율조작국 지정, 조선보조금 문제, 정부조달협정, UR에서 상호협력 등

3. 한·미국 통상현안 대책(1990.10월)

- 통상현안 처리 관련, 한·미국 통상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인식 확산
- 1990.10.18.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서 일부 분야 미국 측 요구 수용에 합의
 - 피칸, 딸기류의 수입 허용, 메리어트사 기내식공장 설치 허용 등
- 한·미국 통상관계 비공식 협의 추진

한·덴마크 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12/1-37

1990년 중 한·덴마크 간의 통상분야 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덴마크 농업부는 1990.2.27. 한국이 덴마크산 햄 등 수입육 가공품에 대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수입규제로 여기고, 이를 한·EC(구주공동체) 협의의 시의제로 채택하도록 EC 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음을 주덴마크대사관에 통보해옴.
2. 외무부는 1990.3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설명자료를 주덴마크대사관에 송부함.
 - 상공부는 3.10.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덴마크 동향에 대한 한국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해옴.
3. 덴마크 농업부장관 및 농업사절단이 1990.5.23.~26. 방한함.
 - 주요일정
 -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 면담
 - 농수산장관 예방
 - 양국 경제인 회담
 - 1990.5.28.자 덴마크 BORSEN 신문은 상기인들의 방한 시 한국 정부가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도함.
 - 농림수산부는 6월 상기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다만 한시적으로 육가공 원료육으로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함.

167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 과세에 대한 EC(구주공동체)의 개선요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 / 13 / 1-41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89.2.23. 한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제상의 불합리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Aide-Memoire를 주EC대표부에 전달해옴.
 -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30%의 관세를 포함하여 총 200%의 세금이 부과되고, 국내산 자동차는 총 67%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함.
2. 외무부는 1989.4월 수입자동차 관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주EC대표부를 통해 EC 측에 설명함.
 - 한국은 1989.1월부터 관세, 특별소비세의 인하 및 취득세제의 개선을 통해 수입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를 폐지함.
 - 상기 입장은 5월 주독일대사관을 통하여 별도로 독일 정부에도 설명함.

일본·EC(구주공동체) 간의 반덤핑 분쟁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18 / 14 / 1-142

1989~90년 중 일본·EC(구주공동체) 간의 반덤핑 분쟁에 관한 내용임.

1. 분쟁개요

- 1987.6월 EC는 외국계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역내조립품에 대하여 기존 반덤핑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함.
- 1987.6월 EC는 일본계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전자저울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개정법령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함.
- 1988.10월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는 동 분쟁해결을 위해 패널 구성을 결정
- 1989.3월 패널조사 종결 및 보고서 제출
- 1989.4.3. GATT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채택여부 논의

2. 패널보고서 결론

- EC의 개정법령에 따른 역내조립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GATT 제3조 2항 위반임.
- 일본산 부품사용을 제한하는 약속수락에 따른 조사중지는 GATT 제3조 4항 위반임.
- 패널은 EC가 개정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GATT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함.

3. 패널보고서 평가

- 반덤핑 관세에 관한 모법인 GATT 제6조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기각됨.
 - 패널이 EC의 역내조립품에 대한 규제가 반덤핑 조치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거나 현행 GATT 제6조에 의해 정당화됨을 의미
- EC 개정법령이 그 자체로는 GATT 위반이 아니고 구체적 적용 시 GATT 의무준수를 권고하고 있어 EC 개정법령을 인정함.

4. 외무부는 1990.4.2. 일본·EC 우회덤핑 패널보고서가 4.3. 이사회에서 채택될 수 있게 지지 발언을 하도록 지시함.

- 주제네바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등 17개국 대사관에 4.3. 이사회에서 동 보고서 채택에 지지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함.

독일의 한국 신발류 수출자율규제 요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 15/ 1-25

1. 독일의 한국 신발류 수출자율규제 요청 내용

- 독일 정부 요청사항(1989.8.29.)
 -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한국산 신발류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대독일 수출물량 급증
 - 독일 신발업계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유사한 수입규제를 요청 중이나,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수입규제 추진의사는 없음.
 - 독일업계의 불만을 고려, 한국 신발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출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
- 독일 신발업계 요청사항
 - 독일의 주종 생상품인 혁제드레스화의 생산감소 및 수입증가 추세
 - 이탈리아, 프랑스의 수입규제 및 대영국의 자율규제로, 한국산 혁제드레스화의 대서독 수출 집중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업계의 수출자제 조치가 필요

2. 한국 정부의 입장

- 1988년 중 한국산 신발의 대독일 수출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였으나 1989년에는 현저한 감소세임.
- 혁화류도 전년대비 감소세이며, 원화절상 및 높은 임금인상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수출자율규제 조치 실시는 어려움.
- 한국산 혁화류 90%는 운동용 혁화로 독일의 주종목인 드레스화와 직접경쟁대상품목이 아님.
- 다만, 독일 측의 입장을 감안, 대독일 수출급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예정임.
 - EC(구주공동체) 집행위에서 1988.8월 이후 한국산 신발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EC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피해조사가 진행 중임도 감안한 조치

한·인도 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18 / 16 / 1-84

1990년 중 한·인도 간의 통상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1990년도 주인도대사관 무역진흥경제협의회 개최

- 1/4분기 무역진흥경제협의회(1990.2.20.)
 - 인도경제 4~5% 성장 예상, 1989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소폭 감소, 수입은 50% 이상 증가
 - 1990년도 인도 정부는 관세인상, 수입규제 등 수입억제정책 계속 예상
 - 한국기업들은 인도에 원자재를 공급, 상품을 생산하여 해외수출하는 방안 개발, 현지에 봉제공장 설립 추진, 직물류 등의 제3국 수출 등 사업 다변화 추진 예정
- 2/4분기 무역진흥경제협의회(1990.5.31.)
 - 인도는 외환부족상태 지속에 따라 수출촉진과 수입규제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1990.5.21. 뉴델리에서 제8차 한·인도 EEC(유럽경제공동체) 개최
 - 한국기업은 인도·파키스탄 전쟁 발발여부에 관심
- 3/4분기 무역진흥경제협의회(1990.9.10.)
 - 1990.3월 말로 종료된 인도의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5.3% 성장 기록
 - 인도의 만성적 외환부족으로 인한 수입규제, 중동사태의 발생으로 한국기업의 수출에 어려움

2. 인도경제와 한·인도 통상 심화 방안(주인도대사관 보고서)

- 인도 성장잠재성, 교역다변화 대상국으로 발전가능성, 대동구권 및 서남아 진출기지 역할 고려
- 무역의 확대균형,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확대, 민간부문과 협력강화를 중점 추진
 - 인도 정부의 60억 달러 WB차관 사업 국제입찰의 적극 참여, 철강재 등 원자재 시장개척
 - 새로운 개척분야로 경공업부문 투자확대, 인도의 수출용 원자재시장 개척, 인도산 제품의 제3국 수출마케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이용한 진출, 수산분야 진출 등

3. 기타 한·인도 경제통상 관계

- 포철의 Orissa주 제철소 건설 구상
 - Orissa주 정부는 포철에 연간 3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제안
 - 1990.9~10월 포철대표단은 Orissa주를 방문하여 인도 측 구상 제철소 건설 관련 협의
- 1991년도 대인도 수출입 전망(1990.11.9. 주인도대사관 보고)
 - 1990년도 4억 달러 수출 전망(인도의 외환보유고 급격한 감소, 중동사태로 합성수지 수출 중단 등)
 - 1991년도 대인도 수출 4억 달러, 수입 3억 달러 전망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문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 / 17 / 1-43

1987~89년 중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과 관련하여 주일본대사관이 보고한 내용임.

1. 일본 정부의 10억 달러 긴급수입계획과 관련, 한국제품 구매 요청

- 1987.8월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통산성에 한·일본 양국간의 만성적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제2의 적자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요청
- 일본 측, 한국과 같은 대일 적자국가에 혜택이 다소라도 돌아가야 하겠으나, 구매품 대부분이 실제로 선진국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

2. 대일 무역역조 개선 추진계획 보고(1987.8월)

- 한국의 대일 역조개선 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 방향
 - 일본 측은 한국의 대일 역조 개선계획이 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통보
- 일본의 시장폐쇄 시정 노력
- 일본의 시장폐쇄 사례
 - 제분, 설탕 수입제한, 가죽신발 수입제한, 솔빈산 검사, 조선사 담합, 반도체 국내가격 덤핑
 - 조선수주 국내가격 덤핑, 외제차의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

3. 대일 무역역조 개선조치 관련 정부입장 통보(1989.12월)

- 수입처 다변화 제도
 - 한국은 막대한 대일 무역역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대상품목 축소
- 수입처 다변화 가능 품목
 - 특정국가에 의존이 지나친 품목을 선정,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의 공급처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음.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약(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전2권 (V.1 사전협약)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 / 18 / 1-267

1989.7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우노 일본 수상은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협의를 갖기로 합의함.

1. 개념

- 일본·미국 간 무역의 구조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의 경제정책, 산업구조, 상거래 관행 등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의미

2. 추진 경위

-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 없이는 일본·미국 무역 불균형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1989.7월 부시 대통령이 협의를 제안함.
 - 5월 슈퍼 301조 대일 발동을 압력수단으로 활용
- 미국의 대EC(구주공동체) 무역적자는 개선된 반면, 대일 무역적자는 별무개선

3. 중간보고서 요지(1990.4.6. 발표된 일본의 구조개선 조치)

- 유통제도
 - 대규모 소매점포법 규제완화
- 저축 투자 균형
 - 향후 10년간의 종합적인 공공투자계획을 책정, 동 지출 총액을 1990.7월 최종 보고서에 명시
- 토지 정책
 - 대도시 주택, 택지공급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 배타적 거래 관행
 - 독점금지법 운용 강화
 - 일본기업 계열사 간 거래시정
- 가격 메커니즘
 - 52개 항목의 내외가격차 시정책 실시, 내외가격차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 등

168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약(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전2권 (V.2 협의결과 및 최종보고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18 / 19 / 1-313

일본과 미국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조조정 협의 제5차 회의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협의를 종료함.

1. 일본·미국 구조협약의 경과

- 만성적인 일본·미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협이가 시작됨.

1684

2. 주요 협의내용

- 미국 측 요구사항: 투자증대, 토지공급 촉진, 유통제도 개선, 배타적 거래 관행 시정, 국내외 가격차 시정 등
- 일본 측 요구사항: 구체적인 재정적자 해소책 마련, 설비투자 증강, 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등

3. 최종보고서 요지

- 일본 측 구조개혁 조치
 - 공공투자 확대: 향후 10년간 430조 엔 투자
 - 토지이용 촉진: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유휴지 이용 촉진제도 마련
 - 유통제도 개선: 대형점포 개선 절차완화
 - 배타적 거래관행 시정
 - 계열사 간 거래제한: 계열거래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 가격 메카니즘: 52개 항목의 내외가격차 시정책 실시, 내외가격차 실태조사 및 사후 점검 등
- 미국 측 구조개혁 조치
 - 재정적자 해소책 강구: 1993년까지 예산 균형을 요구하는 법률제정, 국방비 절감, 조세 증가 등 구체적 조치 시행
 - 기업의 투자활동 보장 및 경쟁력 강화
 - 연구개발 촉진, 대일 수출 진흥책 강구, 노동력 질적향상 도모

한·몽골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18 / 20 / 1-65

1990년 중 한·몽골 간의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민·관 경제사절단 몽골 방문(1990.8.18.~27.)

- 방문 개요
 -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주관으로 파견
 - 대표단(수석대표): 윤억섭 대사(교체수석대표: 권영순 주몽골대사)
 - 정부 훈령: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실시
- 방문 결과
 - 투자보장협정 및 경제·과학·기술협정은 몽골 측의 내용 추가 및 변경으로 문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차기 몽골 경제사절단 방문 시 가서명하고, 몽골 외무장관 방문 시 정식 서명 하도록 합의함.
 - 몽골 측은 무역협정도 함께 서명하기를 희망함.
 - 몽골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전수 외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재정지원 및 국제금융 조달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민간대표들은 개별상담을 통해 5개 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함.
 - 양국 기업인 간 민간경험위 설치 및 기타 협력확대를 도모하는 MOU에 서명함.
- 방문의 의의
 - 몽골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국가로, 수교 후 최초로 한국사절단을 접수하여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함.

2. 기타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

- 이리시 부시장 등 대표단 몽골 방문 추진
 - 귀금속 원석 수입 및 가공기술 제휴 목적
- 한·몽골 통신망 개설
 - 1990.8월 개설된 울란바토르-홍콩 간 직통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공사는 한·몽골 간 회선 개설
- 1991년 대몽골 대외기술공여사업 수요조사

168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한·미국 간의 수입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협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8 / 21 / 1-67

1987~88년 중 미국산 맥주 등 주류에 대한 유통구조 변경 및 개선 관련 내용임.

1. 미국 맥주 수입규제 조치 해명

- 미국 측은 국세청이 미국 맥주 수입에 대한 신규 규제조치를 마련, 일부 회사에만 외국산 맥주 국내독점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맥주회사에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
- 상기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1987.9.18. 미국 측에 한국입장을 설명
 - 일부 회사에 독점판매권 부여는 사실이 아니며, 10월부터 포도주 수입개방을 계기로 그간 미국 측의 유통구조 자유화 요청 등을 감안,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구조를 국산주류와 동일하게 확대 개방, 국산주류와 차별없이 유통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한 것임.
- 주미국대사관은 9.24. Kristoff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에게 맥주 유통구조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 Kristoff 부대표는 한국의 성의있는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 맥주회사가 제기한 문제점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

2. 주류 수입시장 개방 요청

- 1987~88년 중 Donald Riegle Jr., Wendell Ford, John Warner 등 미국 상원의원들은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수입맥주 유통구조 변경 조치에 항의하고 미국산 맥주, 증류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및 수입관세 인하 등 요청

3. 수입주류 유통구조 개선

- 정부는 1988.1.27. 수입주류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87.8월 수입주류의 일반 도매상 및 슈퍼, 연쇄점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1988.1.23.부터 수입주류 전문 도매상 22개소를 허가, 수입주류에 대해 국산주류에 비해 추가적인 유통체제를 갖도록 조치하고 동일자로 관보 게재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상기 조치를 미국 관련 정부기관 및 업계에 통보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8 / 22 / 1-217

1988~90년 중 한·미국 간의 통상협력에 관한 내용임.

1. 1988.8월 한·미국 농산물 협상 후속조치

- 한·미국 농산물 협상 후속조치 대책회의(1988.8.24.)
 - 농산물 관세인하 계획, 식품표시 기준변경, 목재류 사용증대를 위한 공동연구, 수입감시제 폐지 후 대책, 혼합야채주스 개방문제, 알팔파 문제, 혼합사료 원료의 쿼타증액 문제 등

2. 미국 농산물 수입문제

- 캘리포니아산 건포도 수입관세 인하 요청(1988.7.26.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 연서 서한)
- 캘리포니아산 특수농산물 시장개방 요청(8.2.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 서한)
- 마카다미아 너츠 수입개방 요청(5.31. 하와이 출신 상원의원)
- 발암 옥수수 수입 문제
 - 1988년산 옥수수가 가뭄으로 인해 예년보다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에 의해 더 오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옥수수와 섞어 한국, 일본, 소련에 수출된 것으로 보도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 진행

3. 미국계 보험회사 Alico Korea 노사분규

- 1989.1월부터 보험모집사원들이 노조결성 후 월급제를 요구하며, 사무실 점거 및 이전 방해
- Alico 측은 노조의 정상적인 영업방해를 이유로 노조결성 취소를 신청했으나, 노동부 등은 보험 모집사원들의 노조결성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

4. 한·미국 경제관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1990.9.18.)

- 참석자
 - 미국 측: Porter 대통령 경제보좌관, Solomon 국무부 차관보, Hamilton 하원경제위원장 등
 - 한국 측: 김인호 경기관 대조실장, 이봉서 전 동자부장관 등
- 한국의 사치품 소비억제정책의 문제점, UR(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보다 큰 기여와 적극성 요청, 한국의 시장개방 후퇴문제 등이 제기됨.
- 이와 관련,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최근 미국의 시각(1990.10월)' 자료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5. UR 관련 한국대표단의 방미 활동

- 농협회장 등 농민대표단이 1990.10월 초순 미국을 방문하여 각계에 UR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설명
- UR 관계 국회사절단(한승수 단장)이 1990.10.15.~16. 미국을 방문하여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상무장관, 농무장관 등을 면담
 - UR에서 한국농업을 특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한·미국 간의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품목 협의. 전3권 (V.1 1988-89.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 / 1 / 1-217

1988~89년 중 물질특허 미시판물질(Pipeline Products)에 대한 한·미국 간의 협의 내용임.

1. 제2차 한·미 고위실무협상(1989.4.25.~26., 워싱턴)에서 미국 측은 미시판물질 협의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고, 1989.5월 개최되는 TPRG 회의 이전에 한국 측 최종입장 제시를 요청함.

● 5.4. 한국 측 최종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

- 미국 측이 요청한 11개 품목의 추가와 1개 품목의 대체를 인정하되, 해당품목이 의약적 효능을 갖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
- 가축약품 중 기시판된 형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등

2. 외무부는 1989.7.6. 한·미국 지적재산권 회담 시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1989.6.16)된 미시판 물질 합의문에 첨부될 최종 품목리스트 및 품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 측의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통보함.

● 미국 측은 7.19. 미합의 품목에 대한 입장 및 합의문에 포함될 부속서류에 관한 의견 통보

3. 외무부는 1989.8.30. 상기 합의문 부속서 중 조성물 명세서에 관한 미국 측 수정안이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문안으로 사료되어 수락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상공부에 통보함.

한·미국 간의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품목 협의. 전3권 (V.2 1989.10-90.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2/1-313

1989.10~90.2월 중 한·미국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서한 서명 문제 관련임.

1. 한·미국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서한 서명 문제

- 외무부는 1989.10.6. 아래 사유로 워싱턴에서 주미국대사와 Hill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합의서한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통보
 - 미시판물질 특허보호에 관한 합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1986년도 한·미국 합의에서 파생된 문제에 관한 일종의 부수약정(sub-arrangement)에 불과하므로 각료급 수준에서 서한을 교환하는 것은 부적절
 - 동 건은 보호대상 품목수에 관한 양측 이견으로 2년간이나 협의를 거친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대언론 관계 등을 감안 할 때 Hills 방한을 계기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 합의 부속서 서명

- 1990.2.20. 주미국대사관 상무관과 USTR 법무관보가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 부속서에 서명함.

168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간의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품목 협의. 전3권 (V.3 합의서한 및 부속서(서명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3/1-284

1990.2.23. 한·미국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서를 교환함.

1. 한·미국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 관련, 1990.2.23. 주미국대사와 Hill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명의의 서한을 교환함.

- USTR 측은 금번 합의서한 교환 관련,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기로 했으며, 미국 내 개별업체에는 업체별 해당사항만을 USTR이 통보하고, 한국 내 미국업체에 대해서는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합의서 교환사실을 통보 예정

1690

2. 미시판물질 합의사항 및 부속서 수록

미국 수출 한국산 배 통관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4/1-81

1989~90년 중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배의 통관 문제 관련 사항임.

1. 한국산 신고배 통관 거부

-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1989.10월 LA지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신고배 농약잔류검사에서 Chlorothalonil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보류 조치
 - 배에 대한 EPA의 농약잔류허용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FDA는 배에 대한 Chlorothalonil 허용치를 제로(0)로 간주
- FDA 측은 일본, 칠레산 배가 통관 거부된 적이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수입 과일, 채소류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서 한국산 배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

2. 한국 정부의 입장

- 미국의 통관거부는 국내 배 재배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배에 대한 Chlorothalonil의 잔류허용치가 미설정이어서 허용치로 0을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배와 비슷한 과종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해주기를 희망
- 내년부터 국내 수출배 재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임.

3. 미국 FDA의 조치 및 한국 정부의 조치

- FDA 측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당초 “0” tolerance에서 0.02 ppm까지 잠정적으로 허용 하였으나, 미국에 압류된 한국산 배는 동 허용한계치를 넘어 계속 통관이 불허된 상태임.
-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선적될 예정에 있는 배의 다코닐 잔류검사를 미국 FDA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실시할 방침임(1990.2월).

169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미국산 자몽 발암물질 검출 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5/1-335

1989~90년 중 미국산 자몽(Grape fruit)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Alar)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 단체의 발표로 국내에서 미국산 자몽 불매운동이 촉발됨에 따라 미국 업계 및 미국 의회의 대응 내용임.

1. 소비자단체의 자몽 잔류농약 검사 결과 오인

-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1989.6.17. 농수산부 산하 농약연구소 실험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미국산 자몽에 유해화학물질(Alar)이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함.
- 이에 미국 농무부 등은 자몽에 Alar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청
 - 농수산부와 보사부(국립보건원)는 정밀조사 결과 Alar가 미검출된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외무부는 동 발표내용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통보
- 일부 소비자 단체가 자몽 불매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미국 업계 및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

2. 자몽 문제 관련 미 의원 방한

- Connie Mack 미 상원의원과 Andy Ireland 미 하원의원은 1989.8.19.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통일원장관, 농림수산부차관 및 법제처장을 면담함.
 - 외무부장관은 동 문제의 발생경위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동 사태가 진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수입 및 판매에 있어 조만간 종래의 수준을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함.
 - 양 의원은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응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함.
- 동 의원들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및 플로리다주 출신 상하의원 명의로 한국 대통령 앞 서한(1989.8.4. 한국 정부의 조속한 시정조치 요망내용)을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함.

한·미국 금융협력. 전3권 (V.1 1989-90.3)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6/1-267

제1차 한·미국 금융정책 회의가 1990.2.26.~27 서울에서 개최됨.

1. 일시 및 장소: 1990.2.26.~27., 재무부

2.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Dallara 재무부 차관보

3. 의제

- 양국의 거시경제 전망
- 한국의 금융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 외국은행의 국내영업
- 환율동향 및 외환시장 자유화

4. 의제별 회의결과

- 한국은 금융산업 구조 및 규제현황과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실적 등에 대해 설명한바, 미국 측은 1988년 금리자유화 조치를 환영하나 더 많은 부분의 정책금융 축소가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은 1992년 증시 개방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은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됨을 설명
- 미국 측은 외국은행의 국내은행과의 동등대우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은 환율절하를 통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거나 환율이 부당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새로운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 외환당국 개입을 통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

169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미국 금융협력. 전3권 (V.2 1990.4-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7/1-188

1990년 중 한·미국 금융협력과 관련된 내용임.

1. 1990.3~4월 은행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결과 SEPAC 등 일부 외국은행이 외국환 부당매각, 선물환, 연장거래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함.

- 1990.7월 한·미 외무장관회담 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행 한국지점 직원이 조사를 받고 귀국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적절한 협조를 요청함.
- 재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규 위반행위를 설명하면서, 제재조치가 결정되기전 직원 귀국 조치 등 사실무근 내용이 전달되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SEPAC 등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 기관 경고만 하고 직원에 대한 개별적 제재는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음을 1990.8.20.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함.

2. 미 National Treatment Study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재무부는 1990.9월 미 재무부 작성 National Treatment Study 초안의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 재무부에 통보함.
 - Korea's Comments to the U.S. Treasury's National Treatment Study

한·미국 금융협력. 전3권 (V.3 1990.10-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8/1-242

제2차 한·미국 금융정책 회의가 1990.11.9.~1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Charles Dallara 미 재무부 차관보

2. 주요 내용

- 미국 측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억제 효과를 갖는데 우려를 표함.
 - 한국 측은 과소비 억제운동은 근검절약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있음을 강조
- 시장개방과 관련, 한국 측은 외국은행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991년 중 외국은행에 대한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을 설명
 - 미국 측은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를 위한 내국민대우를 요망

169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세관분야협력 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9/1-307

1989~90년 중 미국산 육류가공품, 초콜릿 통관 지연 등 한·미국 간 세관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미국산 육류가공품 통관 지연

- South Dakota 출신 Thomas Daschle 상원의원 측은 1990.5.2. 동 주 소재 John Morrel & Co.가 한국에 수출한 육류가공품(meat franks)의 통관 지연 사유를 문의함.
- 국내 수입업자(한미교역)에게 확인 결과 동 상품은 5.9. 통관됨.
 - 3월 말 부산항 도착, 4월 중 수입식품검사 관련 지연(보사부), 5.3. 동물검역신청(농림수산부), 5.7. 검역증명서 교부(농림수산부), 5.9. 통관(관세청)

2.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문제

- 주미국대사관은 1990.6.1. 한국의 교역량 확대 및 교역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관업무처리를 위한 세관업무 선진화 방안 건의
 - 세관행정의 전산화 및 수출업체를 위한 전문통관법인(Customhouse Brokerage Firm)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

3. M&M 초콜릿 통관 지연

-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는 1990.11.21. 한국세관이 그간 샘플검사를 해오던 미국산 M&M 초콜릿, 레몬 및 자몽에 대해 갑자기 전수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업계의 진정이 있다면서 동 진정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함.
- 관세청은 미국 측 요청을 감안하여 1990.12.3.부터 초콜릿에 대해 컨테이너 내장통관검사를 승인하도록 조치함.
 - 한편, 관세청은 레몬 및 자몽의 경우에 전수검사 전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함.

4. Von Raab 전 관세청장 방한 추진

- Von Raab 전 관세청장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1990.8.29.~30. 방한 계획임을 알려오면서 체한 중 정부인사 면담주선 요청함.

5. 기타

- 미국 세관 통관상의 문제 관련 기업체 명단 등 수록

미국산 pecan 수입 규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19/10/1-57

1990년 중 미국산 피칸 수입규제 관련 사항임.

1. 미국산 피칸 수입금지 문제

- 농수산부는 미국산 피칸 및 딸기가 한국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상 코드린 나방의 숙주라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2.9. 피칸과 딸기가 호두과 및 장미과에 속하나 모든 호두과 및 장미과 식물이 코드린 나방의 숙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면 수입 금지 문제해결을 희망
 -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2.9.자 주미국대사 앞 서한으로 피칸 수입금지 문제해결 촉구
 - 미국 피칸 수출업자들은 7.11. 주미국대사관에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에 미국산 피칸 수출에 문제가 없음을 들어 해결을 주장

2.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조치 사항

- 검역당국은 피칸 통관불허에 대한 미국 측 관심 증대를 감안, 식물방역법상 코드린 나방의 기주범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및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기로 함.
 - 국내외 전문기관 의견 및 자체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피칸 및 딸기의 코드린 나방 기주 취급 여부 결정
- 농수산부는 1990.10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상의 코드린 나방 기주식물 리스트에서 미국산 피칸 및 딸기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 관계규정 개정절차를 진행 중임.

169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 동향. 전3권 (V.1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업체 의견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1 / 1-342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동향 중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업체 의견서 내용임.

1. 슈퍼 301조 개관 및 적용동향(1990.1월, 통상1과)

- 슈퍼 301조 개요 및 특징
 - USTR(미국무역대표부)로 하여금 포괄적인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도록 규정(1989~90년 한시법)
 - 종래의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품목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으나, 슈퍼 301조는 해당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한국 교섭현황
 - 1985년 이래 미국업체 청원 또는 USTR의 자체조사에 의한 슈퍼 301조 발동에 따라 한국 내 시장개방과 관련한 각 분야별 협상 전개
 - 한국은 외교·안보상의 한·미국 우호관계 중요성, 한국의 통상 전반에 있어서 미국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분야에서 보복조치 발동 이전에 합의
 - 대한민국 보복조치 사례는 없으며, 현재 소고기가 슈퍼 301조 계류 중
 - 기 타결사항: 영화, 보험, 지적재산권, 담배, 포도주
 - 현안사항: 소고기, 통신, 지적재산권, 조선

2. 스페셜 301조 업계 의견서 송부(주미국대사관 보고)

- 스페셜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위한 업계 의견서 6건 송부(1990.2.17.)
- 스페셜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위한 업계 의견서 추가 접수분 7건 송부(3.2.)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 동향. 전3권 (V.2 미국 업계 청원내용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2 / 1-249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미국업계 청원내용을 검토함.

1. 미국업계의 301조 관련 의견서 제출에 대한 대책회의(1990.2.28., 경제기획원 주재)

- 회의 결과
 - 미국업계 의견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으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소관부처별로 동 내용의 사실여부, 현황, 입장 등을 정리하여 1990.3.9.까지 경제기획원에서 취합하기로 함.
 - 미국 측의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초안 작성 후, 내용 확인을 요청해올 경우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대응입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은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
- 경제기획원은 동 건과 관련하여 향후 농산물 추가개방, 관세인하, 검역·식품위생기준 개선 등이 금년도 주요 문제로 대두할 전망으로 분석함.
- 대책
 -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관세인하계획, BOP(국제수지)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 추진
 - 검역·위생식품안전문제와 관련하여 1.17. 경제장관회의 시 결정사항인 양국 실무자 간 기술적 협의 창구(한·미국 검역 실무회의)를 조속히 설치

2. 외무부는 1990.3.16.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운용 동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각계 의견제출 현황
 - 총 39건 중 한국관계 언급 업체 및 단체 21건
 - 식품위생 기준 및 고관세 등 농·임산물 관련 17건, 공산품 3건, 일반의견 1건
 - 일본 15건, EC(구주공동체) 10건, 인도 8건, 대만(구 중화민국) 7건, 브라질 7건, 캐나다 4건 등
- NTE 보고서 초안(비공개) 내용
 - 상기 각계 의견을 수입제한, 표준, 정부구매, 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작성한 결과, 일본-캐나다-한국(브라질, 인도와 비슷한 수준) 순으로 장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한국의 1989년도 분야별 진전사항 긍정적 기술
- 평가 및 대책
 - 한국에 대한 의견 숫자는 많으나, 분야별로는 농·임산물 고관세, 식품위생 기준 문제 및 수입 제한 문제가 주종이며, 이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BOP 협의결과 이행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 USTR(미국무역대표부) 측도 금년도 미국 내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심 약화 언급
 - 전반적인 한·미국 통상관계로 보아 미국 측이 금년도 슈퍼 301조 관련 협상을 제기하여 올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협상을 제기해 오는 경우 수락 불가 입장 견지

169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 동향. 전3권 (V.3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3 / 1-163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4월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1990.3.30. 의회 제출) 중 한국 관련 내용과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한국관계 요지

-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사항 이행, 지적재산권 및 통신분야 진전사항 평가
- 한국의 무역장벽으로서 고관세, 농산물 수입제한 및 식물검역 3개 분야를 주로 거론
- 조선 수출보조금 및 석탄 생산보조금도 거론

● 평가 및 대책

- 1989년도 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
-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 이후 양국간 통상현안 문제의 대부분 타결 반영, 1989년 중 대미국 무역흑자 대폭 감소
- 한국 무역장벽으로 거론된 사항은 불공정 무역관행은 아님.
- 관세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 문제는 1989.10월 BOP(국제수지) 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으로 해결될 사안이며, 식물검역은 GATT 규정(제20조)에 의거하여 각국이 실시 중임.
- 미국이 슈퍼 301조에 의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전무
- 한국 측은 1989년도 대미국 협조사항을 거론하면서 금년도 슈퍼 301조 협상에 불응 자세를 기 표명한 바 있음.

2. 경제기획원은 1990.4.9. 미국 USTR의 1990년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 및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한 '1990 무역장벽보고서 검토'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한국무역협회 발간 '미국의 대한국 불공정 무역사례 보고서' 관련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4 / 1-126

1990년 중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된 '미국의 대한국 불공정 무역사례 조사보고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조치 내용임.

1. 미국의 대한국 불공정 무역사례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는 제3차 한·미국 재계회의(1990.6.17.~19., 서울) 토의에 대비, 내부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불공정 무역사례 조사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 내용이 국내 언론에 유출되어, '미국, 한국상품에 화풀이, 덤핑제소 등 불공정 규제 일삼아'(6.20 .서울경제), '한국상품 관세 최고 7배 올려'(6.19. 한겨레) 등 제하로 보도
-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90.6.29. 동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동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여 추후 적절한 기회에 미국 측에 제기하는 방안 검토 중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2. '미국의 대한 불공정 무역사례 보고서' 재정리 영문본 송부

- 무역협회는 1990.6월 발간한 상기 보고서 중 미국 측에 제기하기에 부적절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영문으로 재정리하였으며, 상공부는 이를 7.18. 상공부 통상협력관 명의 Nancy Adam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앞 서한으로 송부

170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협정 운영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5/1-121

1990년 중 한·미국 간의 철강 VRA(수출자율규제협정) 운영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철강 협정상 HTS 번호 조정

- 미국 상무부는 1990.3.12. 1990년도 미국의 HTS 번호조정에 따라 한·미국 철강 VRA 상에도 동 조정사항을 반영했음을 언급하면서 동 협정상 신HTS 분류에 따라 수정된 부록(Appendix)를 한국 측에 송부

1702

2. 대미 철강 수출 인증

- 미국 상무부는 1990.4.14. 한·미국 간의 철강 VRA 연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대미 철강수출 시 인증서류상 인증번호가 여섯 자리에서 일곱 자리로 변경된 사실 및 특수강의 분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

3. 철강 Collated Nail 추가 물량

-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90.5.30. Senco-Korea에 대한 연간 2천 톤의 Collated Nail 추가배정을 공식 제의하고, 6.4. 미 상무부는 1989.1~9월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통계에 대한 정산 내용을 통보해 오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
 - 한국 측은 7.2. 상기 추가배정에 동의함을 통보하고, 미국 측의 대미철강 수출통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송부

4. 대미 열연강판 수출

- 미국 상무부는 1990.9.7. 미국 정부에서 UPI용 열연강판(Hot Band) 수출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해오면서 제2차 VRA상 한국에 배정된 열연강판 수출 쿼터 중 현재 한국이 전용원천 쿼터를 사용하여 열연강판을 수출할 경우 수출인증 서류상 이를 명기해 줄 것을 요망
 - 포항제철의 UPI용 열연강판 수출 관련 10.31. 미국 측 요청에 대한 상공부 제철과장 명의의 답신 송부

5. 대미 Wire Rope 수출

-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입업자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Wire Rope with Fittings의 수출서류에 Fittings의 중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 문제는 원칙적으로 Fittings의 중량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한국 관련 업계에 알려주도록 요청



6. 대미 핫코일 미소진 물량의 UPI 물량 전환

- 미국 상무부는 1990.12.20. 한국의 대미 일반 수요용 핫코일 미소진 물량을 UPI용으로 전환
사용 기능을 통보

170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한·미국 간 섬유쿼터 운영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6 / 1-292

1990년 중 한·미국 간의 섬유쿼터 운영 관련 내용임.

1. 1990년 대미 섬유수출 쿼터 확정 발표

- 미 상무부는 1990.1.19. 한·미국 섬유협상(1989.12월)에 따른 한국의 1990년 대미 섬유수출 쿼터 확정 발표

2. 섬유쿼터 초과분 공제 면제 방지 및 수입통계 정정 요청

- 외무부는 1990.5.29. 미국 측이 1989년도 쿼터 품목 중 일부 쿼터 초과분을 1990년도 쿼터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검토 결과 미국 측의 한·미국 섬유협상 합의사항 불이행 등으로 양국통계 간에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0년도 쿼터 삭감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외무부는 7.20. 미국 측의 통계착오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 대한 1990년도 쿼터량이 부당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삭감분이 정정될 수 있도록 적의조치 지시

3. Play Tent에 대한 신규 쿼터 규제

- 외무부는 1990.9.10. Play Tent가 종전과 같이 비쿼터 품목으로 운영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지시

4. 미소진 대미 섬유쿼터 대터키 할애 문제

- Sorini USTR(미국무역대표부) 섬유협상 대표는 1990.9.17. 상공부 통상협력관 방미 시 한국의 미소진 대미 섬유쿼터를 터키에 할애 요청
 - Brady 미 재무부장관은 9.25. 워싱턴 개최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기간 중 한국 재무부장관에게, 또한 10.11. 재무부 Dallara 차관보는 페르시아만 주변국 지원을 위한 한·미국 간 협의 시 권병현 외무부 본부대사에게 같은 요청을 함.
- 외무부는 10.18. 상기 미국 측 요청 관련, 상공부 및 섬유업계는 쿼터 미소진 품목일지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수출호조 가능한바, 쿼터 부족으로 수출을 못하는 경우 발생 우려 등으로 쿼터 할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유고슬라비아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0/7/1-13

1990년 중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의 한국산 컬러 TV,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규제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산 컬러 TV 수입규제

- 유고 연방정부(대외경제관계부)는 1990.9.1. 한국산 컬러 TV 및 VTR에 대해 수입규제조치 시행
- 주유고대사관은 동 조치는 대량의 한국산 제품이 일시에 수입되고, 저렴한 가격, 확립되지 않은 사후 서비스체제로 인해서 시행하게 됨을 보고

2. 대유고 자동차 수출

- 주유고대사관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입규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면서, 현대 측으로 하여금 슬로베니아 이외 여타 공화국 상사들도 현대차를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판매 총물량을 제한하고, 또한 각 공화국별로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판매 하도록 건의

170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제1차. 서울, 1990.8.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20/8/1-29

제1차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이 1990.8.9. 서울에서 개최됨.

1. 스웨덴 대외무역장관 방한

- 목적: 박필수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제1차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참석
-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동자부장관 및 체신부장관 면담
 - 옥포 대우조선 및 판문점 시찰

2.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결과

- 스웨덴 측 발언 요지
 - 수입자유화: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지속 희망, 한국의 까다로운 수입절차로 대한국 수출 곤란, 사치품 수입억제 움직임 등 수입품에 대한 차별대우 없도록 희망
 - 경제협력: 한국 시장에 관심 크며, 기술연수계획 등 기술이전에 적극적 입장
 - UR(우루과이라운드): 최근까지의 협상결과는 실망적(특히 관세분야), 스웨덴, 한국 등 작은 국가들은 UR에서 실패할 경우 큰 타격 예상,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입장 지지를 희망, 이는 한국에도 큰 도움 될 것
 - 기타(기업인 제기): 대한국 투자기업의 국내 금융확보 어려움, Volvo 등 자동차의 수입절차 및 판매상 차별 폐지 요망
- 한국 측 발언 요지
 - 수입자유화: 사치품 수입억제 움직임은 민간차원의 근검·절약운동으로 정부의 개입은 없음. 사치품은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 미만으로 규모도 적어 정부가 개입하여 수입 규제할 실익이 없으며, 정부의 수입규제는 오해임. 정부는 자본시장, 서비스시장 개방 및 수입자유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
 - UR: 한국도 선진,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UR에 적극 참여 중. 최근 싱가포르 APEC (아태경제협력체)회담에서도 참가국의 UR 적극 참여 및 아세안을 포함한 기타 개도국에 대한 적극 참여 촉구 방안 논의

한·미국 통상장관회담, 제13차. Washington D.C., 1990.2.12.-13. 전2권 (V.1 1988-8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9/1-180

1988~89년 중 한·미국 간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함.

1. 상공부장관의 국회출석 관계로 1988.6.21.~22. 개최예정이었던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이 연기됨.
2. 상공부는 1988.8.22.~26. 기간 중 동 회의 개최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타진을 외무부에 요청함.
 - 동 기간은 미 상무장관의 분주한 일정 및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1988.8.15.~19.) 이후 대부분의 미국 정부 관리들의 휴가계획 등으로 동 회담 개최가 어려운 실정임.
3.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 개최
 - Severance 미 상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는 1989.12.14.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을 1990.2.12.~13.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함.
 - 외무부는 12.28. 주미국대사관에 동 회담 개최에 동의함을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170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통상장관회담, 제13차. Washington D.C., 1990.2.12.-13. 전2권 (V.2 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10 / 1-173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이 1990.2.12.~13.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수 상공부장관
- 미국 측: R. Mosbacher 상무장관

2. 주요 일정

- 2.12.~13.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워싱턴)
- 2.14. 미국 의회는 학계 및 언론기관 접촉(워싱턴)
- 2.15. 미국 유엔협회 주최 만찬 연설(뉴욕)
- 2.1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주최 오찬 연설(뉴욕)

3. 회의 결과

- 미국 측 의제
 - 공산품 및 수산물,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다자간 통상현안, 전략물자에 관한 통상현안, 통상협력
- 한국 측 의제
 - 통상·산업협력 강화방안, 아태지역 경제협력, 아크릴스웨터에 대한 반덤핑제소
- 한·미 양국간의 장기적인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 상무부와 상공부 간에 한·미국 통상 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3개월 내 구체적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우루과이라운드,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등 다자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국 간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일치
-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협정,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한·미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협의

한·미국 간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 Washington D.C., 1990.3.13.-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11 / 1-201

한·미국 간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가 1990.3.13.~14.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상기 외무부 통상1과장
- 미국 측: Howard M. Krawitz 국무부 동서교역담당관

2. 주요 의제

-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국 양해각서(1989.5월 발효)의 이행문제 협의

3.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그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의 조직정비, 인원보강,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수입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방지를 위한 수입 및 통관증명 발급제도를 가급적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정비 작업이 진행 중임을 설명
- 미국 측은 이와 관련 한국의 IC/DV 제도 도입 시, 미국산 low-level 기술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수출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 외에 미국의 고급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것을 약속
- 양측은 금번 회담에서 최근 동구권 개혁이 가져다 준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COCOM 통제완화의 가능성에 유의하고, 향후 통제완화 품목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함.

4. 미국 측은 1990.3.27.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170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9.9.6.-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12 / 1-105

제5차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가 1989.9.6.~8.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형 관세청장
- 미국 측: Michael H. Lane 관세청장

2. 회의 의제

- 무역통계의 교환
- 관세법의 통일된 적용, 해석문제
- 양국 세관에 대한 통관 애로사항을 상호해결하기 위한 협의
-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및 변경내용
- 부정무역 방지
- 마약밀수 방지

3. 정부 훈령

- 관세행정 분야에 있어 양국간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노력할 것
- 방문국 관세청 뿐만아니라 방문국 지역세관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

4. 의제 토의 및 합의사항

- 무역통계의 교환
 - 통계 차이로 인한 한·미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현재 한국이 유엔에만 제공하고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를 교환하고 양국의 통계차이 및 원인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함.
- 관세법 적용 및 해석상의 통일문제
 - 한국 측은 기계부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상세히 설명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 미국 측은 한국의 통관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함.
-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교환
 - 양국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수입업자와 세관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국세관 협력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1차적으로 세관과 수입업자가 협의).



5. 한국 대표단 여타 활동

- LA 및 뉴욕 진출 무역상사 및 현지 교포 무역계와 간담회 개최
- 미국 통상절차 전산화 시찰, 세관 컴퓨터센터를 방문하여 ACS(통상절차 자동화제도) 및 TECS(수사정보교환제도)의 개발·운영에 대한 경험을 청취함.

171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6차. 서울, 1990.9.13.-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0 / 13 / 1-99

제6차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가 1990.9.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수휴 관세청장
- 미국 측: Carol Halett 관세청장

2. 협의 내용

- 전년도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 미국의 자산분배제도의 한국 측 도입 검토
- 양국 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관 분쟁사례 검토 및 해소방안 협의
- 마약밀수 동향 및 방지대책 협의
- 위조상품의 밀수출입 동향 및 방지대책 협의
- 전략물자 부정교역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 돈세탁(Money Laundering) 적발을 위한 협조
- 세관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를 위한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지원

3. 회의 평가

- 양국 세관당국간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협력증진
-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협력강화
- 한국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 지원모색
- 세관협력회의의 내실화 및 양국 관세청 유대강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관련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상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0 / 14 / 1-168

1989.11.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에 따른 한·호주, 한·뉴질랜드 및 한·캐나다 소고기 개방협상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

- 협상일정: 1989.12.18.~19. 뉴질랜드(웰링턴), 12.21.~22. 호주(캔버라)
- 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호주 측: Darren Gribble 외교무역부 아주국장,
 - 뉴질랜드 측: Dick Nottage 외무부 경제수석차관보
-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 현 단계에서 소고기 수입자유화는 고려할 수 없으며, 연도별 쿼터증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2. 제2차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서울)

- 협상일정: 1990.2.20. 호주, 2.23. 뉴질랜드
- 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협상 결과
 - 자유화일정 관련. 한국 측은 현 단계에서 일정 제시 곤란 입장 고수, 호주 및 뉴질랜드는 대략적 자유화일정만이라도 제시 희망
 - 쿼터증량 관련. 한국은 기본쿼터 5만 톤을 기초로 1990년 53,600톤 제시, 호주는 1990년도 7만 톤에 매년 2~3만 톤 증량 희망, 뉴질랜드는 약 10만 톤 희망

3.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 타결

- 1990.4.25. 한·호주 소고기 협상 타결, 5.31. 합의문 최종 서명(캔버라)
- 1990.6.26. 제3차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 타결, 7.10. 합의문 최종 서명(웰링턴)

4. 한·캐나다 소고기 협상

- 1989.12.22.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소고기 양자협상 희망 통보
- 1990.1.15. 외무부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형식의 양자협상을 캐나다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국과 개최하기는 어려우며 외교경로를 통해 이행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함을 전달

한·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 제5차. Taipei, 1989.8.22.-2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 번호 2020-120 / 15 / 1-66

제5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이 1989.8.22.~25.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희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 대만 측: 오동권(吳同權) 행정원 농업위원회 기획처장

2. 훈령

- 한·대만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선린관계를 고려하여 우호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하여 한국 측이 제안하는 사항을 대만이 수용하도록 성의있게 촉구
- 대만 측이 제안하는 사항 중 훈령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및 정책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견지에서 검토
- 회담의 미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대사관을 통해 교섭타결하기로 함.
- 제6차 회담은 1990.8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3. 주요 합의내용

- 배·바나나 구상무역: 1988년 대비 250톤 증가한 2,750톤의 한국산 배 수출 및 동 금액의 대만산 바나나 수입(단, 품종비율은 신고(新高) 90%, 만삼길(晩三吉) 10%)
- 사과·바나나 구상무역: 1988년 대비 500톤 증가한 5,500톤의 한국산 사과 수출 및 동 금액의 대만산 바나나 수입
- 사과 일반쿼터: 1988년과 동일한 3,600톤의 한국산 사과 수출
- 대만산 열대과일(리치, 망고 등) 검역: 대만 측이 검역자료를 제공하고 한국 측은 검토 결과를 6개월 이내 통보하기로 합의
- 1991년 한국의 바나나 수입개방 이후 양국과실 교역문제와 관련, 한국 측은 대만 측에 한국산 과일 수입개방을 요청한바 대만 측은 사과, 배 수입 개방은 문제점이 있어 교역증진방향으로 한국 측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당분간 구상무역을 견지 입장)

4. 후속조치

- 외무부는 1990.1~3월 농림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대만 측의 일반쿼터분 사과 수입창구가 결정되지 않아 수출에 따른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생산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고, 1989년산 사과, 배의 생산 과잉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일반쿼터분의 수입창구 조속 지정과 사과, 배 수출 증량이 될 수 있도록 주대만대사관에 교섭을 지시

한·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 제6차. 서울, 1990.9.11.-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20 / 16 / 1-78

한·대만(구 자유중국) 과실교역회담이 1990.9.10.~1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성봉 농림수산물부 농산물유통국장
- 대만 측: 오동권(吳同權) 대만농업위원회 기획처장

2. 회담 의제

- 1991년 한국의 바나나 수입자유화 이후 과실교역문제
- 국산 사과, 배와 대만산 바나나와의 구상무역
- 한국 사과 킬러량 증량 문제
- 바나나와의 구상무역 불가 시 대만산 감귤과의 구상무역
- 대만산 과실에 대한 식물검역문제

3. 회담 결과

- 구상무역
 - 한국산 신고배 2,800톤을 대만에 수출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바나나를 대만에서 수입
 - 한국산 사과 5,500톤을 대만에 수출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바나나를 대만에서 수입
- 한국의 1991년 바나나 수입자유화 이후 과실교역 안정을 위해 바나나 가격 적정선 유지 합의
- 한국산 사과수입 제한조치 철폐 요청에 대해 사과킬러 3,780톤 유지 및 킬러 증량 고려 검토

3. 사과 수출을 위한 후속조치

- 과실회담에서 합의한 사과 구상무역분 5,500톤과 킬러분 3,780톤의 교역방법과 가격결정을 위해 1990.10.29. 타이베이에서 한국 농림수산물식품조합과 대만성 청과운소합작사(靑果運銷合作社) 간 협상 개최
 - 청과운소합작사 측은 킬러분 수입창구로 지정받은 바 없어 협상 불가 주장
- 대만 정부가 수입창구를 지정하여 11.5.~8. 수출조합 측 대표단과 협상이 가능하도록 주대만 대사관에 조치를 지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협상. 전3권 (V.1 1987-88)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1 / 1-235

1987~88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EC의 대한민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공여 정지 결정

- EC 각료이사회가 한국에 공여해 온 GSP를 1988.1.1.부터 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관세(추정)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한·EC 간 지적재산권 현안은 일단 종결됨.
- 한·EC 지적재산권 전문가 회의(1987.11.2.~3., 서울)
 - 한국 측은 EC 측 4개 요청 사항(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미시판물질, 계류 중인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 중 보정을 제외한 3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으나, EC 측은 보정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등한 대우 허용을 주장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C 각료이사회는 1987.12.18. 보정 불인정을 이유로 1988.1.1.부터 대한민국 GSP 수혜 공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 한국 측이 보정에 양보해 오는 시점부터 GSP 수혜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2. 외무부는 1988.3.11. EC의 대한민국 GSP 정지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 평가
 - GSP 수혜여부 보다는 원화의 환율절상이 대EC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GSP 정지로 인해 대EC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임.
 - GSP 정지로 인한 추가 관세부담액(약 6천만 달러)은 양측 수출입상 간 분담하게 되며, 부담액 만큼 GSP 수혜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불리해 질 것임.
- 대책
 - EC 측의 보복조치로 한국은 한·EC 간 지적재산권 현안이 종결된 것으로 봄.
 - 한·EC 간 지적재산권 교섭 재개는 EC 측이 GSP 정지를 철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 하에 응할 방침임.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협상. 전3권 (V.2 1989)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2 / 1-169

1989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1989.4.21. EC와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보호품목리스트 제출시한
 - 제출시한은 1990.9.30.으로 1회에 한해 제출함.
 - 제출시한이 늦어지면 보호대상 품목수는 줄어듦.
- 보호대상 품목
 - 300개 이내
 - 혼합물(composition) 제외
 - 보정대상 품목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함을 명시
 - EC 측 제출 품목리스트를 미국과 동일한 14개 기준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것만 보호
- 보호기간
 - 1997.6.30.을 초과할 수 없음.

2. 외무부는 1989.11.1. EC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입장을 정리함.

- 1989.7월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동 문제를 재협의한 바 있으나, 양측간 기본적인 입장 및 인식 차이로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특히 정지된 GSP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하여 EC 측은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었음.
- 또한 EC 업계의 경우 EC 측 요구의 전면 수용이 아닌 한·EC 간 타협안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난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EC 측의 입장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관심은 한국이 시장개방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이상 미국과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EC 측은 스페셜 301조 합의내용의 무차별 적용원칙에 관한 한국입장에 대해 만족하였음.

171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협상. 전3권 (V.3 1990)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3 / 1-228

1990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EC대사는 1990.2.7.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한·EC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아래 요지의 EC 측 수정안을 담은 Aide Memoire를 전달함.

- 보호품목수
 - 한국 측이 보호품목리스트 제출시한을 1991.12.31.까지 허용할 경우 축소 가능
 - Gehart Jaschek EEC(유럽경제공동체) 비즈니스그룹 부회장은 1989.11월 보건사회부 측에 약 350개 품목을 비공식 제시한바 있음.
- 보호품목리스트 제출시한
 - 1991.12.31.까지
- 보호기간
 - 1997.6.30.까지로 하되, 6.30. 이후 제조회가 신청 시에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 지도함.
- 기 투자품목
 - 1987.6.30.이전 기 투자 품목만 제외

2. 한·EC 모니터링 협의 시 협의내용

- 1990.7.9. 사전회의 시 한국 측은 국내외 여건상 EC에 대한 소급보호 부여의 어려움을 강조 하고, 본 건을 현 상태에서 종결할 것을 주장함.
- 1990.7.11. 양측 수석대표 간 별도 협의
 - EC 측: 동 문제의 미진전에 대한 EC 회원국들의 강한 불만 표시가 있으며,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은 추가 제재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의 성의 있는 입장표시 요망
 - 한국 측: GSP 보복으로 package 협상은 일단 무효화 되고 새로운 차원에서 재협의 되어야 함. 한국 측의 성의 있는 입장표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속히 통보할 것을 약속

3.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90.10.29. 주한 EC대사를 면담하고 대EC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통보함.

- 지난 7월 Giola 수석대표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이 최근 EC 측에 의해 부인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EC측의 입장 명확화를 요청함. UR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협상되고 있는 만큼 동 협상 종료 시까지 본 건 논의를 연기함이 바람직함.

한·EC(구주공동체)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 서울, 1990.5.30.-6.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4 / 1-10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가 1990.5.30.~6.1. 서울에서 개최됨.

1. 한·EC 주류 관련 실무회의(1990.5.30.~31.)

- 대표단(대표)
 - EC 측: 한국과장
 - 한국 측: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 회의 목적: 주류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의견교환
- 주요 협의내용
 - 조세체제의 변경 문제, 관세 인하, 수입주류에 대한 동일한 관세부과 요구, 주류 분류상의 개선, 위스키에 대한 제세부과 문제, 수입주류에 대한 과표산정 시 차별대우 문제
 - 한·미국 간 포도주 협상 결과의 동등대우 요구, 리큐어 수입개방, 방위세 폐지, 가짜 위스키 단속

2. 한·EC 위조상품 실무회의(1990.5.31.~6.1.)

- 대표단(대표)
 - EC 측: 한국과장
 - 한국 측: 상공부 구주통상과장
- 토의 결과
 -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조치, 형사 제재, 민사 제재, 경찰의 직권 조사·제재 조치 등 의견교환

171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5 / 1-282

제22차 한·일 무역회담이 1990.1.29.~30.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다니노 사쿠다로 외무성 아주국장

2. 의제

- 국제경제면에서의 양국간 협력
- 한·일본 양국간 경제·통상문제
 - 무역 관계, 산업·기술협력 관계, 건설협력, 지적재산권

3. 회의 결과 (양측 주요 제기사항)

- 한국 측
 - 연 40억 달러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일 수출 촉진활동과 일본의 적극적인 대한 수입확대 촉구
 - 관세인하 요청: 85개 품목
 - 특혜관세 수혜품 확대 요청: 14개 품목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개최 요청
 - 한국 건설업체의 대일 건설 진출방안 및 건설인력 일본진출 문제 제기
- 일본 측
 -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 한국의 수입제도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위반 거론 철폐 요구
 - 한·일본 해운의 불공평 운송 해소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과의 동등 대우 요청 및 협의 개최
- 상호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 재확인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6 / 1-442

1990.1.29.~30.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일 무역회담 관련 자료임.

1. 제22차 한일 무역회담 참고자료(주일본대사관 보고)

- 1989년도 대일 무역 현황 및 90년도 전망
- 1989년도 대일 수출활동 현황 및 평가
- 대일 수출촉진 대책
- 일본의 수입확대 정책 및 한국의 대책
- 일본 향만 운영협회의 향만 운영기금 설치문제

2. 제22차 한·일본 무역회담 자료

- 대표단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대표단: 이순우 상공부 통장진흥국장 등 관계부처 관계관, 주일본대사관 직원 총 23명
- 의제
 - 국제회의에서의 양국 협력
 -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의 평가 및 협력
- 주요일정 및 회의 진행순서
- 훈령
 - 기본 훈령
 - 세부지침: 국제경제면에서의 협력,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 일본 측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
- 부처별 개별 회의

172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1990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서울, 1990.5.8.-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1 / 7 / 1-138

1990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이 1990.5.8.~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통상국 심의관
- 일본 측: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2. 협의 사항

- 협의대상은 생사, 견연사, 견직물 등 3개 품목
- 일본 정부가 1976년 자국 내 양잠농가 및 잠사업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양국 정부가 수출 물량 결정
- 대일 수출 물량은 일본 측 요청에 의해 감소되어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일본은 전년대비 대폭 삭감 주장
 - 생사 및 견직물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견연사는 전년대비 10% 증가된 물량으로 합의

3. 1990년도 합의 물량

- 생사: 5,500표
- 견연사: 7,500표
- 견직물: 595만 평방미터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1 / 10 / 1-145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회의가 1990.4.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태담당부대표보

2. 합의된 의제

- 담배, 포도주, 국산화, 농산물분야 등 합의사항 이행문제
- 식물검역, 식품위생, 전기용품 등 표준문제
- 보험, 전기통신 자문업, 투자자유화, 영화 스크린쿼터,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문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협력 문제
- 기타 긴급관세조치, 수입자유화 정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

3. 기본 훈령

- 한·미국 정부간 대화를 통해 슈퍼 301조 합의, 소고기 협상타결 등 양국 통상현안 대부분 타결
 -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측 현실이 반영된 균형있게 반영된 통상현안 해결 노력
-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전달 및 UR 타결 협력 강조
- 식물검역, 식품위생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는 별도의 전문가 기구에서 협의 제안 청취
- 무역실무회는 통상현안 타결과 미국시장 확충을 위한 통상협력 창구로 활용 노력

172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1 / 11 / 1-247

1990.4.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회의의 결과와 동 회의 개최 평가 및 의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결과

- 합의사항 이행 점검
 - 미국 측, 담배, 포도주, 국산화, 투자 등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족 표명
 - 한국 측, 수입담배의 불법광고 행위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 촉구
- 정부조달 문제
 - 한국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절차를 취하고, 미국은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을 않기로 양해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미국은 무역왜곡 가능성에 우려 표명
 - 한국은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시적 경기부양책이며 수입자유화 정책은 지속 추진 강조
- 검역 및 식품 위생
 - 미국은 한국산 배의 대미 수출문제는 양국 전문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분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약속
- 서비스 시장 개방
 - 한국은 보험중개업 개방, 국산영화 스크린쿼터 철폐 등 불가입장 표명

2. 평가 및 의의

- 1990.3월 소고기 협상 타결 이후 한·미국 양국간 원만한 통상관계 재확인
 - 검역·식품위생 등 기술적 문제가 통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호협의 채널 마련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등 관련,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미국의 이해 제고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다자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 재확인

3. 후속 조치

- 한국의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시행 관련 미국의 문의사항 답변 조치 필요
- 정부조달 관련, 한국은 1990.6월까지 offer list를 GATT에 제출할 것이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추진을 확인하는 한국 수석대표 명의의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
- 통신장비 관세율 인하 조치의 조속 시행
- 한국산 배와 사과의 대미 수출 관련 자료제공, 미국 농산물 수입 관련 조치, 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협의회 설치 등 조치
-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문제 관련 조치
- 대형냉장고 표준관련 각국 사례조사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3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 / 1 / 1-191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회의 관련 회의자료임.

1.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자료(외무부 통상국 작성)

- 회의 개요
 - 양측 대표단, 회의 의제, 일정
- 의제별 자료
 - 합의사항 이행: 담배, 포도주, 국산화, 투자,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수입관리대책
 - 표준: 식물검역, 전기제품·가전제품·의료기기, 식품위생·농약잔류검사, 실무협업체 설치 제안
 - 서비스: 보험, 전기통신자문업, 투자자유화 계획, 영화 스크린쿼터
 - 통신(1990.2월 한·미국 통신회담 합의내용,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한·미국 통신회담 자료 포함)
 - 정부조달(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문제 포함)
 - UR 협상 협력(UR 협상 분야별 한·미국 양국 입장 자료 포함)
 - 기타: 돼지고기 긴급관세조치, HS(품목분류제도) 이행, 수입자유화정책,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2. 기타 회의자료

- 수석대표 개회사
- 분야별 의제 말씀자료(talking point)
- 회의 진행순서 및 좌석배치
- sub-group meeting 회의 순서 및 의제 등

172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서울, 1990.5.23.-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2/1-131

1990.5월 중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1. 한·미국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1990.5.23.)

● 참석자

- 한국 측: 심성섭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장 등 6명
- 미국 측: Robert Hashimoto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지역담당관 등 5명

● 관찰 및 평가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파파야 처리방법 검토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여사한 문제취급에 있어서 향후 시한설정을 주장
- 피칸(미국산 견과류) 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에 충분한 이해 표명

2. 한·미국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1990.5.24.~25.)

● 참석자

- 한국 측: 임인철 보건사회부 위생제도과장 등 10명
- 미국 측: Patricia Stolfa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부 국제담당 부과장 등 5명

● 관찰 및 평가

- 미국 측은 금번 회의에서 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한국 측이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에 불명료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 향후 일선기관의 시행과정에서 마찰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 배(pear)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향후 통관거부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협조의를 표명하면서도 굳이 협정을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국 측이 농약사용에 신중을 기할 경우, 향후 수출 관련 우려할 것이 전혀 없다고 언급)

한·미국 무역통계 실무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90.7.12.-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3/1-111

제2차 한·미국 무역통계실무회의가 1990.7.12.~1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수웅 관세청 자료관리관
- 미국 측: Don Adams 통계국 해외무역과장

2. 주요 의제

- 한·미국 무역통계차이 원인검토 및 통계조정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

3. 주요 협의내용

- 양국 무역통계차이 확인: 미국 통계는 한국 수출의 4.5%, 한국 수입의 20.5% 과소
- 양국 통계차이 원인검토: 계상기준이 한국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로 수입통계를, 미국은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가격)로 계상범위에서 차이, 통계지역에 미국은 미국속령을 포함하여 원산지 분류에서 차이
- 향후 무역통계 조정 협력방안: 양국 통계자료 교환, 일부 통계조정 방안 합의 등

4. 회의 평가 및 의의

- 미국 측은 미국 측 수출통계의 부정확함을 인식하여, 통계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수입 통계를 미국의 수출통계로 사용하도록 조정
- 1989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국통계로는 47억 달러, 미국통계로는 65억 달러인데, 양국 통계차이를 분석 조정할 경우 미국통계에 의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 전망

5. 한·미국 무역통계 관련 자료

- 1989년도 한·미국 간 무역통계차이 분석자료(미국 측 통계)
- 1989년도 한국의 대미 수출입 통계 관련 미국 측 질의와 한국 측 답변자료
- 병기 및 군수물자수입 무역통계 계상문제
- 한·미 무역통계차이 원인 검토 보고
- 1988년도 한·미국 상품무역 통계 비교자료(미국 상무부 통계국)

172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SOM(고위관리회의) 계기 한·미국 통상관계 협의. 서울, 1990.10.23.-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 번호 2020-122 / 4 / 1-152

정부는 서울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준비 고위실무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미측 인사와 1990.10.23.~25. 한·미국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함.

1. 방한 인사

-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Fauver 국무부 부차관보
- Cashman 상무부 동아태담당국장

2. 주요 일정

- 10.23.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 10.24. 소고기 협의(농수산부 축산국장), 담배 협의(재무부 국고국장)
- 10.25. 상공부 통상협력관 및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면담, 포도주 협의(재무부 경험국장)

3. 한·미국 간 통상 현안

- 무역불균형 개선, 사치품 과소비 자제 운동
-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 계획 연기, 포도주 주세율 인상
- 외국산담배 소비세 배분방식 및 광고 판촉활동
- 소고기 SBS 판매제도, 지적재산권, 은행 및 자본시장, 화장품 수입절차, 통신 개방
- BOP(국제수지) 원용중단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약속 이행
- 조선포조금, 농산물 검역
- Cargills사 식용유 정제업 투자 및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건설

4. 미국대표단과의 협의(면담) 시 한국 정부 대응 내용

- 미국 측 입장 적극 수용
 - 수입품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소고기 SBS 판매제도 개선
 - 담배 잡지광고 횡수규제 완화, 외국은행 신탁업무 범위 확대, 화장품 수입 관련 서류 간소화
 - Cargills사 외국인 투자허가,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건설
- 이행계획 추진 표명
 - 포도주 관세인하, 화장품 수입허가제도 개선, 통신 VAN사업 외국인 투자개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입법



- 점진적 개선노력 입장표명
 - 차별적 담배소비세 제도개선, 금융산업 경쟁 촉진
 - 자본시장 국제화, 소비유통업 개방
- 한국입장 설득
 - 포도주 주세율 인하
 - 관세율 인하계획 연기(30%에서 25%로 인하)

172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 / 5 / 1-52

1990년 중 한·미국 간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JCCC, Joint Committee on Commercial Cooperation) 설치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2.12.~13.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에서 구성 원칙에 합의
- 1990.4월 상공부는 미국 상무부 측에 상공부 안을 제시하여 협의
- 1990.6.4. 미 상무부는 미국 측 수정안 제시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한국 상공부장관 및 미국 상무장관이 공동위원장
- 기능
 - 무역 및 투자협력 기회 개발
 - 상호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 기타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

3. 문제점

- 한·미국 연례 통상장관회담 기능과 중복
- 한·미국 경제협의회 기능과 중복
- 관련 부처 소관업무와 중복(상공부 측 초안)

4. 외무부 검토의견

- 한국 상공부와 미국 상무부 간의 소관업무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이의 없으나, 명칭, 기능 및 소관분야 조정 필요
 - 영문 명칭은 '한·미국 상업협력 공동위원회'이나 상공부 측은 '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로 지칭
- 관련 부처 간 협의 필요

세계통상장관회의. Puerto Vallarta(멕시코), 1990.4.18.-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2 / 6 / 1-278

정부는 1990.4.18.~20.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시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통상장관회의(Ur(우루과이라운드) 비공식 각료회의)에 박필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8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C(구주공동체) 집행위 및 이사회

2. 회의 성격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상황 점검 및 성공적 타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국 각료급 비공식 회의

3. 토의 의제 및 주제 발표자

- 시장접근: 섬유(인도네시아), 농산물(호주)
- GATT 규칙 강화(우루과이): 세이프가드, 보조금 침 상계관세
- 신분야(스웨덴): TRIPS, 서비스

4. 참석 결과

- 토의 내용
 - UR 협상 15개 분야를 시장접근 개선, GATT 규율 강화, 신분야로 대별하여 논의
 - UR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WTO(세계통상기구) 창설 문제 최초 논의
- 한국대표단의 활동
 - 농산물, 섬유, 반덤핑협정, 원산지규정, 관세, 지적권, 서비스에 대한 한국 기본입장 표명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 미국의 슈퍼 301조 자체 촉구
 - 일본 외상, 캐나다 무역부장관, 멕시코 상공부장관 면담
- 비공식 각료회의 평가
 - UR 협상의 시한내 성공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 재확인
 - 농산물분야의 미국과 EC(구주공동체) 간, 섬유분야의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이 현저

5. 참석 자료

- UR 관련 세계통상장관회의 자료(1990.3월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 각 분야별 협상현황, 주요국 입장, 한국의 대응방안 분석자료
- UR협상에서 외무부 담당분야에 대한 분석자료
 - GATT 조문, GATT 기능, 분쟁해결절차, MTN협정, 동결(Standstill) / 철회(Rollback) 감시기구

환태평양지역 관세청장회의, 제2차. 서울, 1990.9.10.-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통상1과

MF번호 2020-122 / 7 / 1-197

정부는 1990.9.10.~12.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환태평양지역 관세청장 회의에 이수휴 관세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13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피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1732

2. 주요 의제

- 여행자 및 물품의 신속한 통관
- 세관절차의 전산화 및 무역통계의 표준화
- 역내국가의 밀수 동향 및 효과적 단속방안
- 역내국가 간 세관협력 증진방안

3. 주요 회의 결과

- 서울공동발표문 채택
- 주요 토의결과
 - 급증하는 무역량 및 여행자 처리를 위해 세관절차의 자동화 및 EDI(전자방식 자료교환) 추진
 - 국가간 무역통계 불일치 해소 및 정확한 무역통계 작성을 위한 상호협력 경주
 - 마약거래 확산 및 무기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근절을 위한 세관차원의 국제적 공동노력
 - 세관절차 표준화 및 기술지원 확대 등

4. 회의 성과 및 의의

- 환태평양지역 국가간 여행자와 물품의 신속한 통관 방안 강구로 무역교류 증진에 기여
- 무역량 신속처리 및 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EDI 추진을 위해 공동결의 채택
- 마약 총기류 불법 수출입 품목에 대한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등 협력 강조
- 세관절차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와 협력으로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 도모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1 1990.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 / 8 / 1-232

1990.1~5월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미국 대공산권 수출 규제완화 방침 결정

- 1990.1.22. 미 국가안보회의는 고성능 컴퓨터, 통신장비, 기계 공구 등에 대한 대동구 수출규제 완화 결정을 함.
- 미국은 동 완화 방침을 1990.2.14.~15.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COCOM 실무회의에 제안 예정

2. COCOM 실무회의(1990.2.14.~15., 파리)

- 참가국: 17개 COCOM 회원국(아이슬란드를 제외한 NATO 회원국 및 일본, 호주)
- 회의 목적: 소련의 개방정책 및 동구권의 민주화 추세에 따른 대동구권 COCOM제도 완화문제 검토
- 합의사항
 -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심사기간 단축(12주→8주)
 - 동구 경제개혁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공작기계, 통신장비 등 3개 분야의 대동구권 수출통제 완화 방침 결정
- 협의사항
 - 미국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일부 국가들이 대소련 유출방지를 마련할 경우 이들에 대한 특별대우 적용을 제안하고 독일(구 서독) 등 유럽 국가들은 소련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게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
 - 일본 등 일부국가는 동구권 국가들에게 대중국 우대조치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보다 보수적 입장을 견지

173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2 미국, 일본 COCOM 관계자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9/1-109

1990년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미국 COCOM 자문위원단 방한(1990.2.20.~23.)

- 방문단 명단
 - 단장: Dr. Ronald Schmitt 물리학 박사
 - 단원: Mr. Goodman 애리조나대학 교수 등 4명
- 방한 경위 및 목적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각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현황 파악을 위한 아시아지역 국가 순방의 일환
 -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이행현황 관련 의견교환 희망
 - 1988년 미국 종합통상법에 의거,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결과를 미국 의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파악
- 주요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 상공부 상역국장, 과학기술처 기술정책개발실장 면담
- 방한 시 협의사항
 - COCOM 비회원국인 한국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미국이 COCOM 내부의 변화 동향을 신속히 한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2. 한·일본 COCOM 관련 협의

- 스니모토 일본 외무성 경제안전보장실장은 1990.2.27. 방한하여 외무부 통상1과장과 면담함.
- 주요 협의내용
 - 양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제도에 관한 의견교환
 - 1990.2.14.~15. 파리 개최 COCOM 실무회의 결과 논의
 - 소련, 동구권 개혁 이후 소련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평가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일본 외무성 역할 강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3 1990.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 / 10 / 1-228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고위회의가 1990.6.6.~7.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가국: 17개 COCOM 회원국(아이슬란드를 제외한 NATO 회원국 및 일본, 호주)
- 협의사항: 동구권의 개혁, 민주화에 따른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문제

2. 회의 결과(규제완화 내용)

- 규제 품목의 대폭 축소
 - 현행 116개 품목 중 1/3 축소
 - 1990.7.1.부터 진공펌프, 전기로 등 30개 품목을 삭제하고 수출의 자유화
 - 8.15.까지 8개 품목 추가 삭제
- 규제 수준의 완화
 - 1990.2월 COCOM 실무회의 시 합의한 통신, 공작기계, 컴퓨터 3개분야의 16품목에 대해 성능에 따라 규제 해제 또는 완화
- 일부 동구국가에 대한 우대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구국가에 대해서는 개혁 추진정도 및 재수출 방지장치 실시를 고려하여 호의적 배려
- 동독에 대한 특별 조치
 - 1990.7.1. 동·서독 화폐·경제 통합과 동시에 동독에 대한 규제품목을 대폭 삭감하여 16개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 특별 포괄수출 허가제도 확대 검토
 - 개별적으로 회원국 간 실시중인 특별 포괄수출 허가제도를 한국을 포함한 COCOM 협력국에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

3. 평가

- 최근 동·서독 관계의 근본적 변화 정세를 수용한 COCOM제도의 개편으로 향후 대동구 수출증가 전망
- 코어 리스트 작성 시 각 COCOM 회원국은 자국의 경쟁력 보유품목의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173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전4권 (V.4 1990.7-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2 / 11 / 1-293

1990.7~12월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동향임.

1. 삼성전자와 소련의 전자교환기, 광케이블 시스템 공동개발 문제

- 외무부는 1990.7.25. 미국 측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TDX 사업은 반드시 삼성이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만일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라 할지라도 실행시기인 1992년 이후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실시될 것이므로 동 품목이 시행시점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의한 수출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2. 미국 대외수출통제 효력 연장 대통령 행정명령(1990.9.30.)

- 행정명령 내용
 - 미국 상품과 기술에 대한 외국의 무제한적 접근 가능성 초래로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재화와 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 조치내용
 - 수출관리법의 효력 연장
 - 미국 상무장관이 발표한 수출관리법 시행 관련 규칙의 효력 연장
 - 동 행정명령은 폐지 발표 시까지 계속 유효

3. 미국 COCOM 코어리스트 미국 측 안 발표

- 경위
 - 급격한 동구권 정세변화로 인한 공산권 위협의 재평가에 따라 COCOM 회원국은 1990.6월 파리 COCOM 고위회의에서 대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1990년 말까지 코어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
- 미국 측 안 개요
 - 대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을 8개 분야로 분류하고 품목수를 대폭 축소: 각 분야별로 20~75% 축소
 - 금번 코어리스트에서는 8개 분야 중 6개 분야의 품목만 발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협의회, 제7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0.5.28.-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2 / 12 / 1-128

정부는 1990.5.28.~2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아태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에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10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및 아세안 5개국

2. 회의 결과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 가속화 필요성 재확인
- 시장접근 분야의 광범위한 자유화 조치 필요성에 대체적 의견 접근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범 관련, 반덤핑 규정 강화 필요성 공감, 보조금 규율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 표출
- 서비스, 지재권, 투자조치 등 신분야에 대한 입장교환
-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UR 협상 종료 이후 검토 필요

3. 회의 준비자료

- 1990.5월 주제네바대표부 작성자료
- 16개 분야별 협상현황 및 한국의 대응방안 분석

173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협의회, 제8차. Hong Kong, 1990.9.6.-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2 / 13 / 1-231

정부는 1990.9.6.~7. 홍콩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에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참가국(8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옵서버)

2. 회의 결과

- 토의 내용
 - 1990.9.10.~12. 캐나다 밴쿠버 개최 APEC(아태경제협력체) /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 대비 분야별 입장 정리
 - UR 협상의 시한 내 성공적 타결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여방안 논의
- 한국대표단 활동 내용
 - 농산물분야에서 모두발언으로 한국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 쌀 등 일부 기초식량의 자유화 대상 제외 및 충분한 국내 구조조정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 강조
 - 호주 등 참가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농산물 등에 관한 한국입장 설명
- 회의 평가
 - 밴쿠버 APEC / UR 각료회의에 대비, 미국, EC 등 협상주도국에게 아태지역 공동입장 전달
 -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재차 이해시키는 계기로 활용

3. 회의 자료

- 제8차 아태지역 무역 고위실무회의 자료(1990.9월, 외무부 통상국 작성)

투자 및 통상사절단 캐나다 방문, 1990.6.13.-2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22 / 14 / 1-179

임인주 코트라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 및 통상사절단이 1990.6.13.~25. 캐나다 주요 5개 지역(토론토, 몬트리올, 위니펙, 에드먼턴, 밴쿠버)을 방문함.

1. 파견 경위

- 1989.9.21. 주캐나다대사가 민관 투자사절단의 캐나다 파견을 건의함.

2. 파견 목적

- 대북미 시장 진출 확대, 대캐나다 직접투자 및 경제사절단 교류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3. 주요 방문활동

-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정책 설명회 개최
- 주요 산업지역 및 관련기관 방문
- 총 16건 투자 및 수출입 상담 진행

4. 주요 방문성과

- 상담 성과(16건), 주별 업종별 타당성 조사
- 주요 투자장려제도 및 하부구조 조사
-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캐나다 입장 분석
-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173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3 / 1 / 1-119

1990년 중 한·일본 경제협회는 박용학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일본 수출촉진단을 5차례 일본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대일 수출 저변확대를 통한 대일 무역 불균형 해소

2. 제1차 수출촉진단(1990.2.26.~3.3.)

- 방문 지역: 오키나와, 가고시마, 사가지역
- 참가자
 - 단장: 박용학 한·일 경제협회 회장
 - 단원: 이두선 해운통상 사장 등 소비재, 섬유, 농산물 관련 30개사 32명

3. 제2차 수출촉진단(1990.5.20.~26.)

- 방문 지역: 도쿄, 오사카, 기타큐슈, 후쿠오카, 히로시마, 니가타
- 참가 기업: 116개사 149명

4. 제3차 수출촉진단(1990.7.16.~21.)

- 방문 지역: 삿포로, 아오모리, 아키타
- 참가 기업: 38개사 40명

5. 제4차 수출촉진단(1990.9.16.~22.)

- 방문 지역: 나고야, 도쿠시마, 시모노세키
- 참가 기업: 31개사 33명

6. 제5차 수출 촉진단(1990.11.12.~17.)

- 방문 지역: 시즈오카, 센다이, 모리오카
- 참가 기업: 26개사 28명

투자조사단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파견, 1990.9.6.-1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23 / 2 / 1-139

정부는 1990.9.6.~11.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신국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조사단을 파견함.

1. 방문 목적

-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및 정책 조사
- 교포인력 및 자원 활용 방안 모색

2. 카자흐스탄(1990.9.6.~8.)

- 주요 활동내용
 - 대외경제관계위원회를 비롯하여 경공업성, 농업위원회, 상공인협회, 면사, 육가공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 투자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
- 결과(합의사항)
 - 경공업분야 및 식품가공분야의 중소규모 합작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 양측이 제시한 상호수출희망 품목리스트를 중심으로 교역 증진 노력
 - 상호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
 - 한국 측은 Abishev 카자흐스탄 대외경제위원회 회장을 방한 초청

3. 우즈베키스탄(1990.9.9.~11.)

- 주요 활동내용
 - 수상, 상무성, 지방공업성, 수출입공단, 상공회의소, 외국인합작공장 등을 방문하여 상호교역 및 투자협력 문제를 협의
- 결과(합의사항)
 - 양측은 경공업, 식품, 농업, 기계, 전자 등 분야의 합작투자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
 - 상호 수출입 관심품목의 교역 확대 노력
 - 상호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

17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통상사절단 소련 방문, 1990.6.2.-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23 / 3 / 1-228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1990.6.2.~16. 소련을 방문함.

1. 접촉 인사

- 정부 인사
 - 대외경제관계성차관, 재무성차관,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외무부 아시아사회주의국장, 레닌그라드 시장, 하바롭스크 시장
- 상의·연구소 인사
 - 연방상의 수석 부회장, 레닌그라드 상의 부회장, 하바롭프스크 상의 회장, IMEO 부소장

2. 한·소련 경험 관련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소련 측 입장

- 한국 수출 및 지사 진출 애로사항
 - 수입대금 연체: 수입대금 결제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우려할 문제는 아님.
 - 지사개설 협조: 지사설치 승인지연은 주택난, 사무실 난에 기인하며 곧 해결될 것임.
- 과학기술협력
 - 과학기술협력 전시회: 1991.1월 중순 혹은 상반기에 개최 가능
 - 한·소련 경제협회주관 과학기술협력 세미나: 1990.11월 개최 가능
 - 한·소련 과학기술장관회담: 1990.9월 한국 과기처장관을 과학원에서 초청 예정이고, 동 시기에 한·소련 과학기술회담이 가능
- 경험 관련 정책 방향
 - 교역보다는 협작을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원자재 가공, 소비재 생산분야에 협작 희망
 -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은 금년 내 체결 가능

3. 관찰 의견

- 소련 정부는 경제개혁 관련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어 금후 경제학자, 경제인사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소련 간 정상회담 이후 금번 사절단의 각계 고위인사 접촉 시 우호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양국 기업인 간 적극적인 협작 가능성을 협의함.

민간 무역사절단 소련 및 동구 순방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3 / 4 / 1-65

1990년 중 민간 무역사절단의 소련 및 동유럽 순방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사절단 동유럽 방문

- 방문 기간: 1990.1.13.~28.
- 대표단 : 황인정 IPECK 부회장 외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실무자
- 방문 국가: 체코, 불가리아, 유고, 동독
- 방문 목적: 경험 증진을 위한 인맥 형성, 투자환경 실무조사단 파견 사전협의
- 방문 기관
 - 정부: 대외경제, 외무, 공업, 재무 등 관련 부처
 - 기타: 상공회의소, 경제 단체, 은행, 연구소 등
- 문건 서명
 - 유고, 체코, 동독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불가리아와는 합의서(Agreement) 서명

2. 대동유럽 통상사절단 파견 추진

- 추진기관: 한국무역협회
- 기간: 1990.10.20.~11.3.
- 방문 국가: 소련,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동독
- 인원 구성: 무역협회 부회장, 업계 대표 등 12명
- 목적
 - 수출입 및 합작투자를 위한 현지 개별상담 주선
 - 수출입 및 투자환경 파악을 위한 현지 브리핑 청취, 산업시설 시찰
 - 경제협력 창구 개발

174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3 / 5 / 1-223

1990년 중 대미국 수입확대를 통한 한·미국 무역 확대균형,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및 무역마찰 해소를 위해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함.

1. 기계류 구매사절단(한국기계공업중앙회 주관, 1990.1.28.~2.15.)

- 사절단 구성: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19개 업체, 정부 및 유관단체 대표 31명
- 파견지역: 6개주 8개 도시(밀워키, 인디애나폴리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휴스턴 등)
- 구매 품목: 자동차 부품, 건설장비, 리액터, 드릴링머신 등

2. 중소기업 통상사절단(한국무역대리점협회 주관, 1990.3.25.~4.8.)

- 25개 업체대표 등 총 29명으로 구성, LA, 시애틀, 네바다, 워싱턴, 휴스턴에 파견

3. 중소기업 통상사절단(코트라 주관, 1990.3.28.~4.5.)

- 20개 업체대표 24명으로 구성, LA, 시애틀, 시카고, 뉴욕에 파견

4. 종합무역사절단(한국무역협회 주관, 1990.5.30.~6.15.)

- 사절단 구성
 - 단장: 금진호 무역협회 상임고문
 - 종합상사 포함 15개 업체 대표
- 파견지역: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루이빌, 워싱턴

5. 전자통상사절단(한국전자공업진흥회 주관, 1990.6.3.~14.)

- 사절단 구성
 - 단장: 구자학 전자공업진흥회장
 - 업체 대표 등 16명
- 파견지역: 워싱턴, 시카고, 산호세, 콜럼버스
- 파견목적: CES 참가, 구매처 조사활동, 제2회 한·미국 전자업계 정례협의회 개최 등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 중남미 파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23/6/1-180

이동훈 상공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중남미 민·관 경제사절단이 1990.10.23.~11.3.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90.6월 로드리게스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시 대한상의 회장에게 사절단 파견 요청
- 파라과이,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에 중남미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계획
- 동 계획은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투자환경조사단 파견으로 조정되었으나, 로드리게스 대통령 방한 시 요청임을 감안, 상공부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재구성하여 파견

2. 사절단 구성

- 사절단 구성: 이동훈 상공부 제2차관보(단장)과 한합산업, 포철, 인천제철, 동부제강, (주)대우 등 8개 기업, 상공부, 외무부, 대한상의

3. 사절단 주요 일정

- 파라과이(1990.10.25.~30.)
 -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및 건설체신교통부장관 면담
 - 공업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방문 등
- 볼리비아(1990.10.30.~11.1.)
 - 대통령 예방, 상공부장관 및 공업부장관 면담
 - 상업회의소 및 공업회의소 방문 등

174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일본 수입촉진단 방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3/7/1-173

1988~90년 중 일본 상공인들로 구성된 수입촉진단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일본 아오모리현 상공인들로 구성된 수입촉진단 방한(1988.6.6.~11.)

- 방한 경위
 - 1987.9월 한·일본 시장협의회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 방한단 규모
 - 구도마사오(工藤正男) 구도시트 사장 등 아오모리지역 상공인 17개사 21명
- 방한 목적
 - 개별기업 간의 샘플 전시상담회 실시
 - 일본 시장에 적합한 신규 상품의 발굴
- 방문 지역
 - 서울, 대구, 부산

2. 일본 통산성에서 파견한 수입촉진단 방한(1990.10.22.~27.)

- 파견단 규모
 - 마쓰오 다이이치로(松尾泰一郎, 마루베니 상담역) 일·한 시장협의회 회장 등 82개사 167명
- 상담지역
 - 서울(전품목), 부산(소비재), 대구(섬유), 창원(기계), 구미(전자, 전기), 여수(농수산)
- 활동사항
 - 상담: 612건 상담, 213건 성사
 - 공장견학: 9개 업체
- 정부 및 경제계 인사 예방
 - 정부: 대통령, 부총리, 상공부장관, 부산시장
 - 정계: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 경제계: 경제4단체장, 코트라 사장, 지방상의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평가
 - 특정업체, 특정품목에 대한 지정 상담으로 성약 가능률이 1987년도 30%에서 35%로 제고되어 실질적인 구매효과 기대 가능
 - 총 상담 건수 중 기계 및 전자분야의 구성비가 1987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

토고 투자유치사절단 방한, 1990.2.12.-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23/8/1-83

Djondo 토고 공업·국영기업장관 겸 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사절단이 1990.2.12.~16.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89.12월 토고 측은 김승호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토고 출장 시 Djondo 장관의 방한 의사 표시
 - 1990.1월 한승수 상공부장관 명의의 방한초청장 전달
- 방한 목적
 - 토고 정부의 역점 사업인 '로메 수출자유지대' 설치에 따른 투자 유치

2. 주요 일정

- 상공부차관 예방 및 오찬,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만찬
- 코트라 부사장 예방 및 투자설명간담회, 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수출입은행 전무 예방

3. 외무부차관 면담 시 토고 측 주요 언급내용(1990.2.16.)

- 금번 방한 중 접촉한 한국 경제인 및 관리들의 대토고 협력 용의를 확인하였고 양국간 외교관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 동 사절단이 고위급 수준이라는 점을 각별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양국간 신뢰구축 및 토고의 실정을 직접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측 투자사절단의 토고 파견을 요청

4. 코트라는 1990.3.17. 동 사절단의 코트라 방문 결과보고서를 외무부로 송부함.

- 동 사절단은 2.14. 코트라를 방문하여 부사장 면담 및 토고 자유무역지대 투자간담회를 실시함.

174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통상사절단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3 / 9 / 1-275

1990년 중 미국 통상사절단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마이애미 Beacon Council 투자유치단(1990.6.23.~28.)

- 구성: Burton Landy 변호사(단장) 및 단원 7명
- 목적: 대한민국 투자유치 활동, 한·플로리다주 간 교역증진문제 협의
- Beacon Council 성격: 마이애미 포함, 플로리다주 Date County의 경제개발을 위해 1986년 동 County와의 계약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1748

2. William Sutton 플로리다주 상무장관(1990.6.13.~15.)

- 목적: 대한민국 투자유치 활동, 한·플로리다주 간 교역증진문제 협의
- 주요 일정
 - 주한 미국대사, 외환은행장, 외무부 제2차관보, 상공부 제1차관보 면담, 현대전자, 대한항공, 코트라, 한미 경제협의회(Korea-US Economic Council, KUSEC), 반도스포츠 방문

3. James Robinson AMERICAN EXPRESS 회장(1990.7.11.~13.)

- 목적: AMEX 계열인 3개 회사의 한국지사 운영 시찰
-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대한항공 사장, 은행감독원장
 - 포철회장 현대회장, 선경회장 등 면담

4. Steve Cowper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1990.6.17.~20.)

- 목적: 한·알래스카주 간 경제협력 증진
- 주요 일정: 동력자원부장관, 상공부장관, 대한상의 회장 등 면담

5. 기타

- 미국 전자협회(AEA) 대표단(1990.1.18.~19.)
- 오클라호마사절단(1990.3.29.~30.)
- 서울·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 위원장(1990.3.18.~25.)
- 텍사스주 무역 및 투자유치사절단(1990.4.23.~26.)
- 미시시피주 투자사절단(1990.5.1.~6.) 등

박필수 상공부장관 멕시코 방문, 1990.4.17.-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3 / 10 / 1-132

박필수 상공부장관이 UR(우루과이라운드) 비공식 각료회의 참석차 1990.4.17.~25. 멕시코를 방문함.

1. UR / 비공식 각료회의(1990.4.19.~20.,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

- 참석자
 - 한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개도국 28개국 각료, EC(구주공동체) 대표 및 집행위원,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 회의 내용
 - UR 협상 15개 분야를 GATT 규율 강화, 시장접근 개선, 신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
 - UR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문제 최초 논의
- 한국 대표단 활동
 - 농산물, 섬유, 반덤핑협정, 원산지규정, 관세, 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 회의 참석 및 한국입장 피력
 - Carla Hill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주요국 대표 면담
- 평가
 - UR 협상의 시한 내 성공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 재확인
 - 주요 쟁점별 선진·개도국, 수출·수입국 간의 의견대립은 상존

2. 멕시코 방문(1990.4.21.~25.)

- 면담 인사
 - Zedillo 기획예산부장관, Caso 교통체신부장관, Serra 상공부장관, Solana 외무부장관, Gonzales 수산청차장 등
- 협의 내용
 - 양국간 어업협력협정, 경제기획협력협정의 조기 타결
 - 대통령 멕시코 방문준비 관련 분야 협의

174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조순 대통령 특사 미국 방문, 1990.12.11.-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3 / 11 / 1-327

한·미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조순 대통령 특사(전 경제부총리)가 1990.12.11.~20. 미국을 방문함.

1. 방미 목적

- 개방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전달
- 한국 사회와 경제 현황 및 통상문제에 대한 입장 설명
- 미국 측의 의견청취 및 현지상황 분석

2. 활동 내용

- 미 행정부, 의회, 언론, 업계의 주요 인사 면담
- 각종 연구소 및 단체 등을 통한 연설 및 간담회 개최

3. 방미 시 주요활동

- 행정부 인사 면담
 - USTR(미국 무역대표부) 통상대표, 상무장관, 국무부 경제차관, 국무장관 보좌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장, 대통령 경제고문, 재무차관보
- 의회
 - Luger 상원의원, Danford 상원의원, Frenzel 하원의원, Gradison 하원의원
- 언론
 -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통신, 내셔널저널 인터뷰
- 재계
 - 미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한미 재계회의 회장 면담

4. 방미 결과

- 최근 양국간 통상관계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와 있음을 확인
 - 수입규제운동 등으로 미국 각 계층 모두가 한국 불신
 - 특히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패로 한국에 대한 불만과 비난 가중
- 미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1990.12~91.1월 말이 양국 통상관계의 중요한 고비
 - 쌍무간 현안의 적극적 해결 및 UR 전략에 대한 검토 긴급

Denis, Germain A.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차관보 방한, 1990.5.14.-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3 / 12 / 1-71

Germain Denis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 차관보가 1990.5.14.~15. 방한함.

1. 방한 개요

- 아태지역 주요교역 상대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순회 협의 일환
- 한국 정부 관계자와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 협의

2. 주요일정

- 재무부 관세국장·상공부 제1차관보·외무부 통상국장·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면담
- 특허청장 주최 오찬

3. 방한 결과

- 협의주제
 - UR 일반, 분쟁해결, WTO(세계무역기구)
-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 협의내용
 - 농산물: 캐나다 측은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많고 시장접근에 있어 미국과 동등한 기회 부여 희망. 한국 측은 비교역적 정책수행상 최소한 자급 유지 필요 강조
 - 관세, 비관세: 캐나다 측은 장벽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에 관심 경주. 한국 측은 1990.4월 제출한 양허계획이 33% 관세인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나 구속력 수준은 20%에서 70%로 확대
 - 섬유: 캐나다 측은 MFA(다자간섬유협정) 철폐문제에 있어서 섬유수출 개도국이 합리적 과도조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국의 영향력 행사 기대
 - 세이프가드: 한국 측은 세이프가드에서 MFN(최혜국대우) 원칙 준수 필요성 언급. 캐나다 측은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세이프가드 범위 밖의 Grey Area 방지 문제 제기
 - 분쟁해결: 캐나다 측은 분쟁해결절차의 단일화 등 새로운 방안을 제안. 한국 측은 캐나다 제안은 훌륭하나 상소기구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경우 지나친 사법화 가능성 우려
 - WTO: 캐나다 측은 Crosbie 통상장관의 WTO 제의 취지가 무역분쟁해결의 향상 필요성에 있다고 언급. 한국 측은 무역기구 창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진행 중인 UR 협상에 지장 초래는 곤란

17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Shannon, Gerald E. 주제네바 캐나다대사 방한, 1990.11.10.-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3 / 13 / 1-109

Gerald Shannon 주제네바 캐나다대사가 양국간 통상협력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협의를 위해 1990.11.10.~14. 방한함.

1. 방한 목적

- UR 관련 시장접근분야 협의
- 한·캐나다 간 통상증진방안, Candu 원자로 2호기 문제 협의

1752

2.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외무부차관, 재무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 특허청장, 무역협회장 면담
- 외무부차관·주한 캐나다대사 주최 만찬

3. 주요 협의내용

- UR 협상
 - 캐나다 측은 한국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캐나다 측 관심분야 중 시장접근 개선이 미흡하다면서 양국간 균형있는 시장접근 개선 요구
 - 한국 측은 관세협상 목표(33%이하)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1994년까지 자발적 관세인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간 시장접근 개선에 있어서의 균형유지 제안에 원칙적으로 지지
- 한·캐나다 간 경제현안
 - 캐나다 측은 한국의 대미국·캐나다 간 차별적 관행 시정 촉구
 - 한국 측은 농산물 차별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 캐나다 측 관심사항을 전달하기로 하고 외국 은행 복수지점 설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허가하고 있으며 캐나다 은행의 기준 미달이 문제라고 답변
- 양자문제 관련 캐나다 측 요청
 - 캐나다의 관세철폐 제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의 적극 배려, 사료용 보리 수입금지 해제, 미국산 옥수수과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차별관세 시정 등
 - 한국 측은 이미 한국의 제안에 수용된 사항도 있으며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응

Lamarche, Roberto L. 도미니카공화국 상공부차관 방한, 1989.11.16.-1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23 / 14 / 1-51

Roberto Lamarche 도미니카공화국 상공부차관이 1989.11.16.~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9.27. 주도미니카대사의 방한 초청 건의를 수용하여 10.21. 한국 정부의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

2. 주요 일정

- 상공부차관, 외무부 제2차관보, 코트라 부사장,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한창공장 사장, 축산물 가공회사 사장 면담
- 상공부차관 주최 오찬, 군자산업 사장 주최 오찬, 한창공장 사장 주최 만찬, 한창공장 시찰

3. 방한 결과

- 한·도미니카 상공부차관 면담 요지
 - 한국 측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에 사의 표시, 도미니카에 대한 기술자 파견 등 원조제공, 한국기업의 의류분야 투자진출 등 언급
 - 도미니카 측은 상공부차관의 초청에 대한 사의 표명,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및 한국기업의 도미니카 투자 희망, 도미니카의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설명
- 후속조치
 - Lamarche 도미니카 상공부차관은 1989.12.8. 주도미니카대사에게 한국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측이 도미니카산 대리석 개발수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관련 업체의 투자추진 및 진출에 협조 요청

175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Cresson, Edith 프랑스 유럽담당장관 방한, 1990.9.23.-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3 / 15 / 1-59

Edith Cresson 프랑스 유럽담당장관이 미테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90.9.23.~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3.30. 박필수 상공부장관 명의 초청장 송부

2. 주요 일정

-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교통부장관 주최 오찬,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외무부차관 면담시 구주통합 현황 및 전망, TGV 진출문제, 프랑스의 수입규제, 한국산 자동차 수입제한 등 논의

Five, Kaci Kullmann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90.9.24.-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23 / 16 / 1-22

Kaci Kullmann Five 노르웨이 상무해운부장관이 1990.9.24.~28. 방한함.

1. 방한 목적

- 박필수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한·노르웨이 통상장관회담 및 제11차 한·노르웨이 민간 경험위 참석

2. 주요일정

- 상공부장관 및 해운항만청장 면담
- 건축자재 세미나, 자동차부품 세미나 등 참석 및 현대조선소 시찰

3. 한·노르웨이 통상장관회담 시 노르웨이 측 논의 희망사항

-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문제, 다자관계(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협력문제

175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Ridley, Nicholas 영국 상공장관 방한, 1990.5.7.-1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2과

MF번호 2020-123 / 17 / 1-60

Nicholas Ridley 영국 상공부장관이 1990.5.7.~10. 방한함.

1. 방한 개요

- 1989.11월 대통령의 영국 방문 후속조치 일환
- 한·영국 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방안 협의
- 기업인 9인을 동반한 민관 경제사절단 성격

1756

2.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한·영국 통상장관회담),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 및 재무부차관 면담
- 전경련 주최 한·영국 민간경험위 세미나 참석
- 코트라 주관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

3. 주요 협의 내용

-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UR(우루과이라운드) 성공적 종결을 위한 한·영국 협조
- 장기간 논의되어온 한·EC(구주공동체) 지적재산권 문제 조속타결 희망
- 자본시장 개방(영국계 은행의 국내영업 편의), 위스키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요청
- 유럽통합 진전과 독일의 통일에 대한 영국 측 설명

미국 의회 통상관계 보좌관단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3 / 18 / 1-146

1990년 중 미국 의회 보좌관단이 2차례 방한함.

1. 방한 개요

-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
 - 대미 경제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1982년 이래 연2회 방한 초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 외무부 경비 부담하에 방한
 - 주미국대사관과 워싱턴 소재 KEI(한미경제연구소)가 현지 초청 교섭 등 담당
- 주요 일정
 -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정부인사 및 국회 방문
 - 관계부처 과장들과의 한미통상 관련 토론회 개최
 - 농촌, 경주, 판문점 방문 및 산업 시찰 등

2. 1990년 상반기 미국 의회 보좌관 방문단 방한(1990.5.27.~6.2.)

- 방문 보좌관 (7명)
 - Heflin 상원의원 정책자문 보좌관, Moynihan 상원의원 무역소위 보좌관
 - McCurdy 하원의원 과학·에너지 보좌관, Flake 하원의원 금융·국방 보좌관, Olin 하원의원 노동관련 보좌관, Gradison 하원의원 자문 보좌관, 행정위 수석전문위원
- 주요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주한 미국대사관 방문
 -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판문점 방문

3. 1990년도 하반기 미 의회 보좌관 방문단 방한(1990.12.2.~8.)

- 초청대상: 상원 통상과학위, 군사위, 하원 외무위, 세출위 소속 의원 보좌관 8명
- 주요일정
 - KIEP 원장 예방 및 간담회
 - 외무부 통상국장 주최 오찬, 조순 전 부총리 주최 오찬, 이홍구 대통령 특보 주최 만찬, 서상목 국회의원 주최 만찬
 - 주한 미국대사관, 판문점, 포항제철,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등

175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4. 현대 아산재단 초청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 사업 개요: 1988.11월, 1989.8월에 이어 1990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1990.1.7.~13., 4.7.~14.)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 사업 추진
- 주요 일정: 경제관계 인사 면담, 산업 시찰 및 관광

미국 통상관계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4 / 1 / 1-221

1990년 중 미국 통상관계 인사가 방한함.

1. Richard Crowder 미국 농무부 국제문제 및 상품프로그램담당 차관 방한(1990.4.19.~20.)

- 방한 일정
 - 농림수산부 차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 방한 주요 협의사항
 -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
 - 국산 쌀의 대필리핀 차관

2. Warren Lavorel USTR(미국무역대표부) MTN(다자간무역협상)담당대사 방한(1990.8.24.~26.)

- 방한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만찬, 상공부 국제협력관 면담,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면담 및 오찬, 특허청장 주최 만찬
- 주요 협의사항
 - 한국 측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섬유 문제를, 미국 측은 관세, 분쟁해결, GATT 조문 중 BOP 조항, 지적재산권·서비스 등 신분야에 대한 입장 개진

3. Nancy Adams USTR 아태담당 부대표보 방한(1990.8.23.~29.)

- 방한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특허청장 주최 만찬,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상공부 제1차관보,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재무부 국고국장,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 외무부 인사 면담 시 애덤스 부대표보 언급요지
 - 사치성 소비재 자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업체의 반발, 미국 의회의 부정적 시각 등 전달
 - 담배문제와 관련 한국 국내법규 시행의 일관성 결여 주장
 - 재무부의 관세인하 5개년 계획 지연 검토에 우려 표명 등

4. Murkowski 미국 상원의원(알래스카 주) 방한(1990.11.26.~29.)

- 1990.11.26. 외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통상관계와 알래스카주와의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

5. Alan Wolff 미국 반도체협회 고문변호사가 1990.3.20. 외무부 통상국장대리 면담 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논의

175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미국 간의 초콜릿 관세 인하 문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4/2/1-185

1987~90년 중 미국산 초콜릿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율관세 부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미국 의회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의 미국산 초콜릿 고율관세 부과 및 미국상품 모방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 Bradley 미 상원의원(1987.3월), Leahy 농업위원장(6월)은 초콜릿 관련 아래사항 제기
 - 30%의 고율관세 인하, 수입 검역기간 단축, 롯데제과의 미국상품 모방 시정
-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0월 발효)으로 수입 검역기간 단축, 롯데제과의 상표변경(5월)으로 모방 시정조치

2. 미국 문제제기 수입식품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 정부는 1987.3.28. 식품표시(labeling) 시행규칙 개정 시 1년간 유보기간을 두어 1988.3.28.부터 시행예고
 - 미국은 개정된 사항의 시행을 연기하여 미국 측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
 - 시행 유보기간 중 미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반영
- 1988.4월 미국 초콜릿 회사 MARS는 자사제품 수입통관 시 한글표시 사항 점검에 문제 제기
 - MARS가 상기 시행규칙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문제로 통관 후 한글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

3. 미국 의원들의 미국산 초콜릿 제품 고율관세 인하 요청 대처

- Bradley 상원의원(1987.3월), Dixon 상원의원(1988.2월), Bronker 하원의원(6월)은 한국의 30% 관세는 일본(10%), 미국(5~7%), 싱가포르(5%), 홍콩(0%)에 비해 고율임을 주장
 - 한국의 전면적인 관세율 인하 계획에 따라 1988년부터 초콜릿제품 기본관세율을 점진적 인하 계획(1988년 20% → 1993년 8%)
- 1989.2월 뉴저지주 출신 상·하의원 16인은 연서 서한으로 초콜릿 수입관세(20%) 인하 요청
 - 3월 할당관세로 초콜릿 과자 기본관세율 20%를 16%로 인하
- 1990.5월 Bill Archer 미국 하원의원 등은 현행 16% 초콜릿 관세율을 1990.7.1.부터 7% 수준으로 인하 요청
 - 5개년 관세계획에 따라 초콜릿 관세율은 1993년 8%까지 인하 예정임을 설명

수입 농산물 검역 시행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4/3/1-86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9.19. 미국산 레몬이 9.2. 아래 부산검역소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통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부의 협조를 요청함.
 - 동 레몬은 부산검역소에 의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시행이 공고된 9.5. 이전인 9.2. 부산항에 도착함.
 - 국내산 농산물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차별 대우임.
 - 상기 통관지연은 신속하고 일률적인 통관규정, 통관절차를 시행하기로 한 한·미국 슈퍼 301조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임.
2. 코니 맥 미국 상원의원실은 1989.9월 국립 부산검역소가 9.5.자로 시행하기로 한 수입 농산물 검역지침의 목적 및 시행 경위에 대해 문의해 옴.
 - 동 검역지침에는 쌀, 보리, 옥수수, 자몽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해 최장 25일간 농약 잔류여부를 검사하기로 되어 있음.
 - 보건사회부는 국민 위생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17가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만들어 1989.9.1.부터 1년간 계몽기간을 시행 중임을 통보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3.8. 한·미국 양국이 합의한 슈퍼 301조 농산물분야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파파야 훈증처리 자료 검토 및 특별법상 수입 제한리스트 작성 등 2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무부가 조속한 이행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4월 수입식품 관리지침 등 시행과 관련, 동 지침상 한글표기 요건은 국제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 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행의 보류를 외무부에 요청함.
 - 보건사회부는 수입식품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 허용문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을 통한 불법유통 상품과의 구별을 위해서 한글표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스티커 부착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량, 최초의 수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방침임.

17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대망(주)의 대가나 어망공장 플랜트 수출 손해배상 문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24 / 4 / 1-209

1987~90년 중 대망(주)의 대가나 어망공장 플랜트 수출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주가나대사는 1987.8.7. 주재국 Nyanteh Fishing Net Co. Ltd.가 1976~81년간 동 회사에 어망기계를 수출한 대망(주)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중고기계를 설치하고 중도에 기술자를 철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함.
 - 1981.12월 주가나대사관 참사관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구속된 동 회사 직원을 석방하기 위해 주재국 법원에 출두하여 구두로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 및 불이행 시 동 대사관의 배상 용의를 언급한바, Nyanteh 회사 측에서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2. 외무부는 1987.9.26.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망(주)이 1983.4월에 도산하고 동사 사장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부존재로 중재 또는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함을 주가나대사관에 통보함.
3. 주가나대사관 참사관은 1989.7.17. 주재국 외무부 영사·법규국장대리의 요청으로 면담한바, 동 국장대리는 4월 아크라 고등법원에서 대망(주)이 Nyanteh 어망회사에 대해 15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을 알리면서 배상금 회수방법을 문의함.
4. Cleland 가나 외무부 정부경제차관보대리는 1990.3.20. 주가나대사를 초치하여 Nyanteh 어망공장 손해배상청구 관계 Aide Memoire를 수교하면서 1981.12.3. 당시 주가나대사관 참사관이 주재국 법정에서 언급한 기록에 따라 주가나대사관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5. Asamoah 가나 외무장관은 1990.5.14.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으로 주가나대사관이 배상 약속한 대망(주) 어망 관련 150만 달러의 지불 이행을 요청함.
6. 외무부는 1990.6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Nyanteh 측의 기계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L/C 개설이 대망(주)의 가나 진출 전제조건이었으나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Nyanteh 측의 책임 문제 제기
 - 주가나대사관의 배상보증을 원칙적으로 부정

대일본 시멘트 수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4/5/1-24

1987~90년 중 대일본 시멘트 수출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일본 사회당 의원은 1987.9월 주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일본 니가타현 지방관청에 의한 한국산 시멘트를 재료로 한 레미콘의 사용방해 사례에 관하여 문의하고 한국 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해 옴.
 - 주니가타총영사는 니가타현을 방문하여 한국산 시멘트를 원료로 한 레미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니가타현은 한국산 시멘트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시멘트의 사용방해가 있다면 이는 업자들 간의 마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위해 지도하겠다고 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88.9월 한국 시멘트의 대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내수증가로 대일본 시멘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대일본 시멘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3. 상공부는 1990.3월 대일본 시멘트 수출량의 확대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일본대사관에 회신함.
 - 1989년도 이래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하여 금년도 시멘트 수요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어 재고 비축량이 급감함.
 - 1990년 상반기에는 업계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수가 안정되는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계획임.

176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터키의 한국산 상품(P.S.F.) 반덤핑 조사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4/6/1-31

1990년 중 터키 정부의 한국산 PSF(폴리에스터 섬유) 덤핑판정 관련 내용임.

1. 터키 정부의 한국산 PSF 덤핑판정

- 터키 대외무역청은 1990.10.11. 한국산 PSF에 대해 덤핑판정 결정 공고
 - 덤핑마진 CIF가격의 29.8%, 수입관세와는 별도의 수입담보금 15% 예치 부과
 - 대만(구 중화민국), 루마니아, 이탈리아의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판정 및 수입담보금 부과
 - 동 결정은 1990.12.7. 시행 예정
- 1989년 터키의 한국산 수입량: 3,278톤(약 400만 달러)

2. PSF 반덤핑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의 관련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는 터키의 반덤핑 조사 질의서 미접수
 - 동 품목에 대해 어떤 정보보조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국가에 덤핑판매는 전혀 없음.
- 무역분쟁은 양측이 인정하는 정당한 조사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임.
- 덤핑조사 절차의 재개 및 수입담보금 예치의 재심사 시행전까지 보류 요청

3. 터키 정부의 최종 입장

- 터키의 질의서 발송(1990.3.24.), PSF 덤핑결정 관보 게재(11.28.)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으로 동 결정을 번복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임.
- 터키 수입업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1년 후(1991.11월) 재심의 예정임.

각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안보과

MF번호 2020-124 / 7 / 1-36

1990년 중 각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관련 내용임.

1. 레바논

- 레바논군 구매장교 2인은 1990.2.5.~6. 주요르단대사관을 방문, 국산 방산품 구매협조를 요청
- 레바논 구매단은 1990.2.6.~15. 방한하여 력키금성사 등과 상담
- 상공부는 4.7. 아시아 자동차공업(주)의 화물트럭 등 방산품 수출허가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4.21. 한국과 레바논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대상품목이 비살상적 성격임에 비추어 별다른 외교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상공부에 회신

2. 소말리아

- 상공부는 1990.2.6. 현대종합상사가 소말리아에 수출 추진중인 일반 방산물자(Utility Truck) 수출허가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15.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상공부에 회신

3. 시리아

- 상공부는 1990.4.24. 삼성물산(주)이 시리아에 수출 추진 중인 일반 방산물자(Utility Truck) 수출허가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5.4. 한국이 시리아와 미수교 상태이나 수출품목의 비살상적 성격과 시리아의 미국인 인질석방 협조 등 태도를 감안하여 수출에 이의 없다고 상공부에 회신

4.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1990.11.27.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Arajo Inc.상사가 생산하는 155mm 고사포 및 105mm 고사포탄을 구입함에 있어 아르헨티나 정부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를 요청함.
- 국방부 조달본부는 상기 품목은 육군용으로 계약된 것으로서 제3국에 재수출하지 않고 교육훈련 용으로 사용된다고 확인함.

176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방위산업 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124/9/1-52

1990년 중 한·미국 간 방위산업 협력 관련 내용임.

1. 제4차 한·미국 방산회의(1990.1.15.~17., 샌프란시스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 공동 주최
- 참석자
 - 한·미국 양측 방산관련업체 대표 및 정부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

1766

2. Alan Dixon 미 상원의원(군사위 소속, 민주당)은 1990.3.26.자 미 국방장관 및 상무장관앞 서한에서 미국산 대잠수함 항공기 LOCKHEED P-3의 대한국 판매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자세를 취하고 있음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함.

- 동 의원은 한국 측이 유럽 국가의 100% OFF-SET 구매조건을 이용하여 고자세를 취한다고 언급함.

3. James Coleman 뉴올리언스 주재 명예총영사는 1990.5.30. '한국이 미시시피주 세인트루이스 만에 있는 군수품공장 매입에 관심이 있다'는 요지의 1990.5.11.자 신문기사와 동건 관련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한을 주휴스턴총영사관에 송부함.

4. T. Cooper 미국 General Electric사 Aerospace Technology 담당부사장은 1990.7월 한국 측이 HMPT-500 Transmission 부품구입을 위해 G.E.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미국대사에게 전달함.

- 동 부사장에 의하면 G.E.사가 한국군 지대공미사일 운반차량에 부착하는 HMPT-500 Transmission 부품판매를 위해 한국 측과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한국 측이 동 부품의 제3국 재수출 문제로 타국회사(독일)와 공급계약 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함.

대라이베리아 방위산업물자 수출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24 / 13 / 1-180

1990년 중 대라이베리아 방산물자 수출 관련 사항임.

1.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차량 등 구입 협조 요청

- 도우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정부전복 음모사건 즈음, 1990.1.2. 주라이베리아대사를 초치, 군용지프, 트럭 등 긴급구입 협조를 요청
- 외무부는 차량의 견적을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공수용 대형수송기의 부재로 공수는 불가하며 선평 수송이 가능하다고 회신

2. 대라이베리아 방산물자 수출 보류

- 도우 정부의 무기 긴급구입 시도
 - 라이베리아 정부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으로부터 무기 긴급구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한국으로부터 전세 화물기에 의한 무기 긴급수송계획을 추진
- 라이베리아 정부의 요청사항
 - 1990.5.3. Minikon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를 경유, 라이베리아 정부는 전세 화물기의 한국 영공통과 허가를 요청
- 조치 및 대책
 - 전세 화물기 운항허가 보류
- 한국입장 통보
 - 외무부는 5.14. 한국의 기본입장을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통보

176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대중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0-124 / 14 / 1-63

1984~90년 중 중남미국가에 대한 군수품 수출 관련 내용임.

1. 에콰도르

- 1984.5월 한국산 소총 K-2 2만 정 구매 건(샘플 요청)
- 1984.9월 데모 진압장비 판매요청(총액 269만 달러)

2. 베네수엘라

- 1986.5월 공관의 대베네수엘라 방산장비 수출추진 계획보고

3. 멕시코

- 1989.2월 주한 멕시코대사관은 자국 정부가 한국산 H.D.C.형 함정 10척 구입을 검토 중이라며, 함정의 제원 등 관련 자료 요청
 -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동 함정 관련자료 제공

4. 수리남

- 한국 방산품의 반군 판매 가능성 추측 보도문제
 - 1987.12.11. 수리남 De West지는 브라질 O Estado de Sao Paulo지를 인용, 브라질을 통해 다량의 무기(탱크 공격용 무기는 한국산 제품 추정)가 반군에게 판매되었다고 보도
 - 한국은 대전차무기를 브라질에 판매한 사실이 없고, 방산물자 수출통제가 엄격해 불법무기 수출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항의하여, 동 신문사들은 각각 해명기사 게재
- 1988.8월 수리남 군참모총장은 한국산 방산물자 판매가능 품목 및 가격제공 요청
 - 방산물자 카탈로그 제공

대잠수함 헬리콥터 구매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124 / 15 / 1-92

1. 한국 정부의 대잠수함 헬리콥터 구매계획과 관련하여 3개국(미국, 영국 및 프랑스) 회사의 기종이 경합한바, 국방부는 1988.8월 영국 Westland사의 Lynx를 구매하기로 결정함.
2. 국방부가 영국회사의 Lynx기종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아래와 같음.
 - Lynx(영국 Westland사)
 - 대잠수함 작전능력 우수, 영국·독일·프랑스 등 8개국에 200대 이상 운용, 1.49억 달러로 비교적 염가, 탑재함정 개조비용 저렴
 - SH-2F(미국 Kaman사)
 - 작전능력은 우수하나 대형으로 한국 구축함 탑재가 곤란, 추후 엔진교체 부담, 1.7억 달러로 비교적 고가, 이착함 보조장치 불비로 안전성 결여
 - Damphin-2(프랑스의 Aerospatial사)
 - 체공시간이 짧아 대잠수함 작전능력 미흡, 운용실적 미비, 가격(1.54억 달러) 및 함정개조 비용 고가, 타사 유도탄 및 음탐기 장착 불가능
3. 외무부는 헬리콥터 기종 선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관심을 감안, 아래와 같이 조치함.
 - 미국
 - 1988.9.1.자 외무부장관 명의 주한 미국대사앞 서한으로 Lynx 선정 배경 설명
 - 프랑스
 - 외무부 제1차관보가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구두로 설명할 것을 건의

176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방위산업제품 수입에 관한 대미국 협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124 / 16 / 1-172

1990년 중 방위산업제품 수입에 따른 각종 대미 조치내용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각종 방위산업제품 수입 관련 동 자재와 부품, 기술 등이 핵무기 운반체 개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보증서를 요청함.

● 구체적인 사례

- AP 분쇄기술 도입(1990.2월)
- 로켓 관성유도장치 수입(2~8월)
- 로켓 추진체 원료수입(3월)
- 터키산 대전차 무기구입계약 체결여부 확인(3~5월)
- 라디오 통신장비 부품수입(3월)
- 로켓 추진체 원료수입(3~5월)
-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자재수입(6월)
- 한국해양연구소의 자재수입(8~9월)
-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재수입(8월)
- 포항종합제철의 자재수입(8~9월)
- 국방과학연구소 및 육군의 자재 및 원료수입(8~10월)
- 신한과학의 자재수입(9월)
- 부산대학교의 우주공학 실험기구 도입(10월)
- 서울대학교의 기상학 자료수집기구 도입(11월)
-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의 자재수입(11월)
- 한국화약의 자재수입(12월)
-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재수입(12월)

2. 외무부는 국방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에 미국 측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문의, 동 의견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적의 통보함.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4 / 17 / 1-137

1988~90년 중 한·일본 간의 지적재산권 교섭 경과임.

1. 일본 측 요청사항

- 1986.11월 한·일본 무역회담 이래 각종 한·일본 간 회담 및 외교채널 통해 문제 제기
- 1989.4월 한국 측이 지적재산권 관련 양국간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특히 공업재산권)의 소급보호 인정을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
- 요청내용
 -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와 동등대우 인정 및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협의의 관련 대일 차별시정 및 동등대우 요청
 - 한·일본 간 고위 또는 실무급 협의 조기 개시

2. 한국 측 입장(1990.1월, 외무부)

- 미국 이외 제3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현재 무차별적으로 보호
 - 1987.7.1.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정 시행
 - 1988.10월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음반협약 가입
- 일본, EC 등 제3국에 대한 소급보호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인정
 - 한국 국내법 및 일반적인 국제규범에서도 기본적으로 소급보호는 불인정하며,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도 소급보호 불인정
- 상기 기본입장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검토 가능

177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 번호 2020-124 / 18 / 1-249

1990년 중 한·미국 양국간 지적재산권 협의 관련 내용임.

1. Carla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대표가 1990.1.6. 상공부장관과의 신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 중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 지적재산권 관련 통화요지, 1990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제7차 지적재산권 문제 대책반 회의자료, 상공부 통상협력관실 작성) 수록

1772

2. 미국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을 위한 업계의견서

- 1990.2.23. 총 6건 접수 마감(이중 3건이 한국을 언급)
 -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비디오 및 레코드 무단복제, 리복 운동화 위조품
- 1990.3.9. 리복 운동화 위조품 수출 관련, 리복사 측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희망

3.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90.4.20.)

- 1990년도 종합무역법에 의한 지적재산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성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Nancy Adams USTR 부대표보
- 주요협의 의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단속,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 입법사항 등

4.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 미 상무부 주관으로 1990.5.23.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태국의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 미국 상의, 지재권연맹 등 IPR 관련 단체, 리복, 코닥 등 주요 업체 참여
- 한국과의 지재권 문제 관련 발표자들은 특허법, 저작권법은 미국수준으로 개정되었고, IPR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모조품, 복제품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4 / 19 / 1-138

1990년 중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동향임.

1. 제8차 지적재산권 대책반 회의 개최(1990.7.16. 상공부)

- 토의 사항
 - 부처별 지재권 보호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토의
 - 미국의 지재권분야 우선협상국지정 결과 및 관심사항
 - 한·미국 협상과정에서의 약속사항 이행 점검 등
 - 1989년 국내유통 위조상품은 60여 종 800억 원 상당 추정

2. 김철수 특허청장 미국 방문(1990.7.13.~17.)

- Manbeck 미국 특허청장 면담
 - 한국 특허청의 발전에 미국의 지원협의 등 논의
 - 미국 측은 Ping 골프채 모조품 제조 수출문제 제기

3. 정부는 각국의 지재권 보호제도 파악 및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에 관계 부처 실태조사단을 1990.10.29.~11.7. 파견함.

4.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개최 관련 지재권분야(특허청) 자료(1990.12월) 수록

177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4 / 20 / 1-266

1988.2.~5월간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협상 관련 내용임.

1. 협상 경과

- 1988.1월 미 담배수출협회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미 통상법 301조를 청원
- 1988.2월 USTR은 301조 조사개시 결정
- 1988.3월 미 업계 청원에 대한 한국 의견서 제출
- 1988.5월 서울에서 담배 협의 개최
- 1988.5.27 한·미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Yeutter USTR 대표

2.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

- 전매공사의 간섭이 없는 수입·판매제도 보장
- 내·외산 비차별적인 세제
- 외국산 담배가 부담할 재정부담금 수준
 - 담배소비세제 도입 시 갑당 360원 미만 수준, 과도기간 중에는 갑당 300원
- 저급담배에 대한 별도세율 불인정
- 광고·판촉내용 문제

3. 한국 측 입장

- 공사간섭이 없는 수입·판매제도 보장
 - 전매제도 개편으로 1989.1월부터 유통전매 폐지
- 담배소비세제 도입
- 외국산 고급담배 재정부담금 갑당 360원
 - 저급담배의 별도세율 책정
- 잡지광고는 허용하나 신문, 여자·청소년대상 광고, 옥외광고는 불허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전2권 (V.2 후속조치(88.6-89.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5 / 1 / 1-147

1988.5.27. 서명된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의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8.6.27. 양담배 불법광고 관련 대미 유감표명 및 시정 요구

- 한·미국 양국은 5.27. 양해록에 따라 양담배의 잡지광고를 허용하되, 여성·청소년대상 잡지광고와 포스터 부착 등 옥외광고는 불허하기로 합의
- 최근 미국 담배업체들은 여성·청소년대상 잡지류를 포함한 각종 잡지에 담배 광고 게재
-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바, 주한 미국대사관은 사실 조사를 거쳐 미국 측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언급

2. 주미국대사관은 1988.8.26. 양담배 부당광고 재발 방지 촉구

-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담배업체의 부당광고 사례 사진을 USTR(미국무역대표부) 측에 전달하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 노력을 촉구
- 미국 측은 동 사진을 업계에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언급

3. 미국 정부는 1988.12.19. 한국 측의 담배합의 관련법 개정을 환영

- 미 USTR 한국과장, 한국 정부의 담배합의 관련법 개정 조치를 환영하고 미국은 향후 관련 대통령령 제정 및 시행 등 한국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노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 1989.1월 초 정부는 담배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를 의무화한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177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0-125 / 3 / 1-181

1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GATT 이사회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문제 논의 시(1990.1.25.) 각국 발언요지

- 미국
 - 한국 측의 수입자유화 일정 논의 거부입장은 패널보고서 채택 동의에 따른 의무부담과 상치
 - 패널 보고서항에 상응하는 제안 작성 촉구
- 호주 및 뉴질랜드
 - 자유화 일정 미제시에 실망
 - 2월 중 양자협상을 통해 자유화 일정에 대한 집중적 협의 및 실질적 진전 기대
- 한국
 - 제1차 기협의 및 제2차 협의 준비 중임을 설명
 - 소고기 문제의 정치·경제적 민감성으로 원만한 해결책 모색에 다소간의 시일 소요는 불가피
 - 보고시한인 2.6.까지 협의결과 보고예정

2. GATT 이사회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문제 논의 시(1990.4.3.) 각국 발언요지

- 미국
 - 한·미국 간 합의내용은 GATT 패널보고서 권고사항과 합치
- 호주 및 뉴질랜드
 - 한·미국 합의와 관련 동 합의사항의 실질적 무차별적 이행 강조
- 한국
 - 호주, 뉴질랜드와의 제3차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 도달 기대

3. 주제네바대사, GATT 사무국에 소고기 협상 타결 결과 문서 제출(1990.7.5.)

- 문서 내용
 - GATT 소고기 패널 권고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
 - 동 협상 결과는 GATT 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
- 7.11. GATT 이사회, 한국의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보고 논의
 - 일본대표는 한국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패널 권고를 충실히 이행함을 평가

미국·일본 통신문제 동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5 / 4 / 1-99

1989년 중 일본·미국 간 통신분야 통상마찰 해결 관련 내용임.

1. 일본 측, 미국산 통신장비 구입 의향 및 통상 문제 타결 의지 표명

- 다케시타 일본 수상은 1989.5.8.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 Super Conductor(초전도체) 및 통신분야에서 보다 많은 미국제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 우노 외상은 5.8.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수상이 G-7 정상회담(1989.7.14.~16., 파리) 전에 미국을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과 최종적으로 통상 문제를 타결해야 할 것이며, 자신도 미국 국무장관과 상기 문제 논의 의사 표명

2. 미국·일본 통신협상 타결(1989.6.28.)

- 미국·일본 통신마찰 경위
 - USTR(미국무역대표부)는 1989.4.28. 일본이 양국간의 통신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일 무역 보복조치를 결정
- 협상 타결
 - 일본은 오자와 전 관방부장관을 대표로 미국 측(대표: S. Lynn Williams)과 워싱턴에서 9일간의 협상을 거쳐 6.28. 최종 타결, 보복 조치 회피
- 타결 요지
 -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회사와 차별없이 제3무선통신 및 차량전화사업을 위해 주파수 배정
 - 수도권에서 미국방식 차량전화에 주파수 배정
- 평가
 - 미국 측은 일본 내 차량전화 시장의 65%를 점하는 도쿄, 나고야지역에 미국 시스템으로 참여가 가능해져 시장 진출의 확대 기대
 - 일본 측은 대일 보복조치를 피하고 일본·미국 간 통신협상을 타결, 장래 협상의 모델 마련

177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의 한국산 합섬스웨터 반덤핑 제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5/1-220

1989~90년 중 미국 정부의 한국 등 수출 합섬 스웨터에 대한 반덤핑 판정 관련 내용임.

1. 미국 편직의류 및 운동복 제조업 조합, 한국 등 수출 합섬 스웨터 반덤핑 제소

- 1989.9.22. 동 조합, 한국·홍콩·대만(구 중화민국)산 인조아크릴 스웨터에 대해 반덤핑 제소
- 1989.10월 미국 상무부, 제소내용 인정 및 조사개시 결정
- 1989.12월 상무부, 조사대상 업체 선정 및 질의서 송부
- 1990.4월 상무부, 한국 스웨터업체에 대한 반덤핑 최종 마진율 발표
 - 한국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1.3%로 실거래 가격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판정

2.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990.8.9.)

- 미국 생산자와 한국 등 수출자는 각기 최대한 중 제소의 문제점 부각
-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9월 초 산업피해여부 최종 판정

3. 한국산 등 합섬 스웨터 반덤핑 판정

- ITC는 1990.9.5. 상기 스웨터 반덤핑 제소에 따른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에서 2:1로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
 - 8.3. 미 상무부의 최종 마진 판결에 이어 ITC의 판정으로 반덤핑 제소 최종 확정
- 미국 편직의류 제조업자 협회는 1990.12월 한국·대만·홍콩산 스웨터의 반덤핑 판정 팸플릿을 발간, 미국 수입업체에 배포
 - 상기 3국으로부터 수입은 반덤핑 부과 등 추가 비용과 위험 및 불안정이 수반된다고 언급

한·미국 간 무역분쟁 처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5/6/1-163

1989~90년 중 한·미국 간 무역분쟁 처리 관련 내용임.

1. 미국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불법 압류품 반환 협조 요청

- 미국 텍사스 소재 Tandy Corporation(Radio Shack 모회사)은 1989.10.24. 마산 소재 투자 회사인 한국 TC전자가 1989.3월 노사분규로 공장이 폐쇄되고 전자제품 생산 기계설비 및 재고품이 근로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면서 불법 압류품의 반환에 협조해 줄 것을 주미국 대사관에 요청
- 외무부는 1990.1월 한국 TC 청산 절차는 장기 점거 농성근로자들에 대한 연행 조치로 향후 순조로이 진행될 전망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2. 한국 내 중국산 염장 양송이 통조림 가공공장 확인

- 미국 FDA는 1990.5월 삼성(주)가 가공, 수출한 중국산 염장 양송이 통조림에서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다며 양송이 통조림 가공공장 확인을 주미국대사관에 요청
- 외무부는 7월 보건사회부의 아래 회신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 포도상구균 검출에 따라 삼성(주) 측은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으며, 당시 가공한 제품 중 다수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밀봉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밀봉장비를 신형으로 교체
 - 1989년 상반기 중 염장 양송이로 가공된 통조림은 전량 캐나다로만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 내 유입은 불가능

3. 기타

- 가축사료 제조업체 Purina-Korea 공장의 시화공단 이전 문제, 한·미 합작회사 분쟁 해결, 수출품 하자에 관한 시정 요망, 장어가죽 불량품 대금 처리, 미국 해병대 작전용 컨테이너 적기 제작·선적 요청, 중개수수료 계약 불이행 관련 클레임 해결 신청 건 등 분쟁 처리 사례도 수록

177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허가문제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20-125/7/1-12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미수교국 항공기의 국내 운항 문제 관련 내용임.

1.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문제 제기

-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체육행사 시 선수단 및 관람객 수송을 위한 외국 항공기(전세기 및 자가용)의 한국운항 증가 예상
 - 외국 항공기의 한국운항은 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
- 특히 미수교국(중국 등) 항공기의 한국운항 허가에 대비 문제점 검토 필요

1780

2.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허가에 대한 입장(외무부)

- 전세기 운항허가 검토 시 보안조치 등을 보완하여 허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0년 베이징 개최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시 전세기 운항에 대비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세기 운항허가가 바람직함.

3. 미수교국 전세항공기 운항허가에 따른 보안문제 협의회

- 교통부 항공국장 주관으로 개최(1986.8.21.)
- 미수교국 전세항공기의 국내 상공운항 시 보안상의 문제점 등 협의

한·오스트리아 항공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8 / 1-25

1989~90년 중 한·오스트리아 간 항공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오스트리아 항공협정

- 1979.5.15. 서명 및 발효
- 1978.1.18. 한·오스트리아 간의 양해각서에서 대한항공 및 오스트리아항공을 각기 자국 지정 항공사로 합의

2. 서울-비엔나 간 항공기 취항문제

- 1989.8.31. 주오스트리아대사, 대한항공의 비엔나 취항 건의
- 1989.9.17.~19. 방한한 Mock 오스트리아 외무부장관은 서울-비엔나 직항 운항에 큰 관심 표명

3. 항공협정 개정과 복수항공사 지정 문제

- 1989.11.14. 오스트리아항공 당국은 정기운항 항공사로 라우다항공을 면허하였으며 현행 단수항공사 취항에서 복수항공사로 양국간 항공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통보
- 1989.12.14. 교통부는 항공수요 부족으로 복수항공제로 개정 필요성이 없으며, 오스트리아 측이 원하면 지정항공사를 오스트리아항공 대신 라우다항공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
- 1990.2.20. 오스트리아 측은 한·오스트리아 항공협정 3조에 따른 지정항공사로 라우다항공을 지정하고, 오스트리아항공의 지정 철회를 통보

4. 대한항공의 비엔나 취항

- 1990.6.4. 대한항공이 최초로 비엔나 취항

178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바레인 항공협력

생산연도 197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중근동과

MF번호 2020-125 / 9 / 1-123

1978~90년 중 한·바레인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협의사항임.

1. 한·바레인 항공협정 체결 동향

- 바레인 측은 1980.9월 한·바레인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함.
- 외무부는 1981.2월 바레인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정 체결에 대한 주재국 반응 파악 지시
 - 항공수요가 충분할 때까지 항공협정 체결을 연기하자는 입장 설명

1782

2. 한·바레인 항공회담 동향

- 대한항공 측은 1985.4월 항공수요가 증대할 때까지 항공협정 체결 보류를 외무부에 건의
 - 이해관계당사자인 항공사간 선택의를 거쳐 항공회담 개최 희망
- 교통부는 5월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항공회담 개최에 부정적 답변
 - 항공수요가 성숙될 때까지 항공회담 개최 연기 요청

3. Gulf Air 서울 취항 관련 동향

- 외무부는 1985.12월 Gulf Air 서울 취항에 대한 교통부 측 입장회신 요청
 - 11월 외무부장관의 바레인 공식방문 시 바레인 정부는 Gulf Air의 서울 취항을 요청
 - 교통부는 12월 항공수요 부족 등 이유로 부정적 답변
- 대한항공 측도 1986.2월 Gulf Air 서울 취항 저지 건의
 - * Gulf Air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등 4개국이 공동출자한 다국적 항공사
- 오만 교통장관은 1987.6월 주오만대사를 면담, Gulf Air의 서울 취항을 요청
 - 동 장관은 1988년 동 항공사 회장 취임 예정
- 오만 교통차관은 11월 주오만대사를 면담, Gulf Air와 대한항공 간 협의 희망
 - 대한항공 측은 11월 Gulf Air 측과 항공사 간 회의 개최 동의
- 1988.6월 대한항공과 Gulf Air항공사 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항공수요 부족으로 Gulf Air 서울 취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정리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5차. 서울, 1988.11.15.-17.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0 / 1-45

제5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해운위원회가 1988.11.15.~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장화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대만 측: Lin Chin-Chuan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

2. 회의 결과

- 대만선사의 한국 내 적취제한 개선 및 양국 선사 간 공평 적취(대만 측 제기)
 - 대만은 대만선사의 한·동남아 항로상 중간지점 적취 규제 및 한·일본 항로 취항금지는 부당하다는 입장
- 상호 면세대상 선박범위 확대(한국 측 제기)
 - 대만 측의 한국 내 적취제한 문제 개선과 운수소득 면세확대 문제 연계로 추후 재협의
- 양국 해운기관 간 정보교환 활성화(한국 측 제기)
 - 양국 선주협회 간 및 해운연구기관 간의 정보교환 활성화 합의

178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6차. Taipei, 1989.12.5.-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1 / 1-69

제6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해운위원회가 1989.12.5.~8.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재국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대만 측: 교통부 항정사 부국장

2. 정부훈령

- 양국 선사의 해상운수 소득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
- 대만선사의 한국내 화물적취 제한
- 선진국의 해운개방 압력에 공동노력
- 양국간 해운정보 및 자료교환 활성화
- 한국 해운시장 개방에 대한 대만선사의 동등대우

3. 회의 결과(합의의사록)

- 대만선사의 한국 내 적취제한 해제(자유경쟁 체제 유지)
- 양국의 운영선박에 대한 해운소득 면세 추진에 합의
 -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한국의 국취부 나용선의 대만 내 해운소득에 대한 면세문제 타결
- 해운연구기관 간 교류, 해운 실무요원 상호교환방문 합의 등

4. 제6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 1990.3.1.부터 한국 해운항만청과 대만 교통부 항정사 간 자료교환 실시

한·중국 항공협력. 전2권 (V.1 1988-8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과

MF번호 2020-125 / 12 / 1-163

1988~89년 중 서울올림픽 개최 전후 한·중국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서울올림픽 계기 중국 영공통과

- 조종건 대한항공 사장은 1988.7월 중국을 방문하여 올림픽기간 중 영공통과 추진 협의
 - 중국 측은 올림픽 기간 중 운항하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중국영공 통과가 가능하다고 언급
- 조종건 사장은 소련을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협의 진행
 - 소련 측에서도 호의적인 답변
- 교통부는 8월 중국과 소련에 영공통과 허가를 요청함.
 - 중국은 올림픽기간은 물론 1988.10.11.~31.간 동 허가를 연장함.

2. 대한항공 중국 전세기 운항추진

- 대한항공 측은 1989.1월 중국 방문 시 중국 민항총국 측과 만나 대한항공의 전세기 운항문제를 협의
- 중국 측은 3월 대한항공 측과 원칙적인 합의
- 주요내용
 - 정기성 전세편: 1989.5~10월 매주 1회, 서울-상해 왕복
 - 특정수요 수송전세기 운항: ADB(아시아개발은행) 베이징 총회 개최 계기 등

178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1990

한·중국 항공협력. 전2권 (V.2 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과

MF번호 2020-125 / 13 / 1-67

1990년 중 한·중국 간의 항공협력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 한·중국 간 항공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간의 항공협력을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킴.

2. 항공협력 내용

- 대한항공은 1990.6월 중국영공을 통과하는 곤명노선 사용허가를 취득
 - 주1회 서울-곤명 간 운항
 - 중국영공 통과로 기존노선에 비해 운항시간 37분, 운항거리 554km 단축
- 베이징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 9월 중국항공(Air China) 운항을 허가
 - 대한항공과 중국항공 간 사전합의로 인해 1990.9.17.~10.10. 중국항공이 한국영공을 통과하여 10차례 운항
- 중국 민항총국 소속 화물전세기가 1990.5.21. 한·몽골 친선의 밤 행사에 사용될 몽골 말수송의 목적으로 1회 운항됨.

한진해운의 프랑스 내 지점 설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4 / 1-28

1988~90년 중 한진해운의 프랑스 파리지점 설치 관련 내용임.

1. 한진해운의 파리지점 개설 신청 경위

- 1988.10.14.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주)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파리지점 개설신청서 제출
- 1989.8월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가 한국법령상 금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진해운 파리지점 개설 불허 통보
 - 파리 상공회의소 및 Boulogne-Billancourt시 측이 프랑스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금지에 따른 상호주의 적용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

2. 한국의 해운법 개정 및 파리지점 개설 허가

-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한진해운 파리지점 개설 불허 통보 이전인 1988.12월 해운법 개정으로 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가 이미 허용되어 있으므로 프랑스 측의 한진해운 파리지점 개설 불허 사유는 근거 상실
- 1989.9월 프랑스 외무부 및 Boulogne-Billancourt시 측에 한국해운법 개정자료 내용 통보
- 1989.12.18. 프랑스 외무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한진해운 주재원의 장기비자 발급에 동의함을 통보하여 한진해운의 파리지점 개설문제 해결

178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일본 항공협력.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5 / 1-173

1990.1~8월 중 한·일본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1989.9월 개최된 한·일본 항공협정에 따라 1990.4.6.부터 서울-센다이 간 정기항공기가 취항함에 따라 미야기현 지사 일행이 방한하여 4.10. 교통부장관을 예방하고, 아시아나항공, 전경련, 한·일본 경제협회를 방문함.

2. 일본 운수대신은 1990.7.26.~29. 교통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 주요 일정
 - 교통부장관 면담
 - 개포역 지하철공사 현장시찰
 - 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천항, 잠실역사 시찰

3. 한·일본 항공회담(1990.8.28.~31., 제주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현석 교통부 항공국장
 - 일본 측: 무카이야마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 심의관
- 정부 훈령
 - 기존노선 운항회수 증회: 서울-도쿄, 서울·부산-후쿠오카, 서울-나고야, 서울-니가타, 서울-삿포로, 서울-센다이, 부산·제주-도쿄, 부산·제주-나고야
 - 신규노선 개설: 서울·부산·제주-히로시마, 서울·부산·제주-오카야마, 서울·부산·제주-오키나와, 제주-후쿠오카
 - 노선 구조변경: 서울-구마모토를 서울-가고시마로, 서울-나가사키를 서울 또는 부산 및 제주-나가사키로
- 회의 결과
 - 신규노선 개설: 3개 노선 주13회
 - 기존노선 공급력 증가: 5개 노선 공급단위를 주당 16.4증가하고, 기종 대형화에 의한 공급력 증가
 - 운항횟수 증편: 5개 노선 주 11편 증가
 - 부정기 운항: 일본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허용

한·일본 항공협력.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6 / 1-155

1990.9~12월 중 한·일본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한·일본 항공협정 개정은 1990.11.20. 이원경 주일본대사와 나카야마 일본 외상 간의 개정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2. 히라마츠 일본 오이타현 지사를 단장으로 주요인사 150명으로 구성된 친선방문단이 1990.12.18.~20. 방한함.

● 방문 목적

- 오이타-한국 간 국제선 취항문제 협의
- 오이타현 내의 뱃부 온천지역에 한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예방
- 박태준 한·일본 경제협회 회장 주최 오찬
- 한국관광공사 사장 면담
- 부산 경제계 대표와 간담회 및 기자회견

178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일본 해운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7 / 1-194

1990년 중 한·일본 간의 해운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일본기항 선박에 대한 항만운영기금 폐지 요청(1990.4월, 주일본대사관)

- 일본 측의 일본기항 선박에 대한 항만운영기금 부과 관련, 일본 운수성에 동 기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동 기금의 폐지 요청
- 일본 정부, 동 사안은 민간차원의 사적인 사안으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며 방관적 자세를 견지
- 주일본대사관은 EC(구주공동체)·미국 등과 협조하여 공동항의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한국선사 관계자와 대책반을 구성

2. 부산-쓰루가 간 정기 컨테이너항로 개설(1990.10월, 주나고야총영사관)

- 일본 후쿠이현청은 부산항과 쓰루가항 간의 정기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하여 1990.10.1. 제1편이 입항하였고 10일 주기로 운항 예정

3. 요코하마시 항만국 한국대표사무소 설치(1990.7월,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 요코하마시 항만국은 해외 항만사정에 관한 현지 자료수집과 요코하마항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대표사무소를 1990.7월 서울에 설치 예정

4. 일본외무성은 1990.8월 한국적 선박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구상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요청

- 해운항만청은 1990.9월 상기 기름유출사고처리에 관해 회신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8 / 1-88

1987~90년 중 한·노르웨이 양국간 해운분야 협력 동향임.

1. 제2차 한·노르웨이 해운협의회 개최 협의

- 제2차 회의를 노르웨이에서 개최하기 위해 1987.7월부터 양국간 협의 개시
 - 제1차 협의회는 1985.10.29.~30. 서울에서 개최
- 1987~90년 동 협의회 개최를 위해 양국이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개최되지 못하고 1991년으로 연기

2. 제2차 한·노르웨이 해운세미나 개최 협의

- 한국 정부가 1988.6월 노르웨이 측에 제2차 해운세미나 개최를 제안한 이래 양국은 1991년 상반기 'EC(구주공동체)통합과 보호주의 경향에 대한 대처방안, 국제화물 유통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
 - 제1차 세미나는 1985.10.28.~11.9. 서울에서 개최

179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사우디아라비아 항공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5 / 19 / 1-10

1990년 중 한·사우디 간 항공노선 변경 검토 관련 내용임.

1. 한·사우디 항공노선 변경 요청

- 주사우디대사는 1990.3.21. 대한항공의 현 서울-제다 노선을 서울-리야드 노선으로 변경을 건의함.
- 요청 사유
 - 현재까지 서울-리야드 노선은 주2회 사우디아항공이 운영하여 왔으나, 사우디아항공은 1990.4월 부터 이를 전면 중단할 예정임.
 - 대한항공이 주1회 서울-제다 간 운항하고 있어 사우디아항공의 운항 중단 시 리야드 중심의 사우디 중·동부지역권의 한국 근로자(5,200명)의 사우디 출입국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됨.
 - 리야드는 사우디 정치·행정 중심지로서 사우디 정부와의 업무수행에도 편리하며 많은 한국 업체의 지사가 있음을 감안, 사우디아항공의 서울행 전면 중단 시 대한항공 노선을 서울-리야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한·사우디 항공노선 변경 요청에 관한 대한항공 회신

- 대한항공은 1990.4.18. 노선 구조변경에 따른 운항상의 문제점 및 사우디 내 2개 지점 운항 제한, 제다운항 중지 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서울-바레인-제다-트리폴리로 운항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한·수리남 항공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5 / 20 / 1-71

1989년 중 대한항공의 수리남 취항 문제 관련 내용임.

1. 수리남 측 요청사항(1989.5월 수리남 경제장관)

- 1989.4월 초 대한항공의 암스테르담 취항을 계기로 수리남 파라마리보-암스테르담 간 노선에 대한항공이 연장 취항해 주기를 희망
- 대한항공의 수리남 취항이 어려울 경우, 대한항공 측이 수리남 항공사에 보잉747 기종 1대를 대여(조종사 포함)하여 파라마리보-암스테르담 간 주 2회 SLM 이름으로 운항 가능한지 문의

2. 한국입장(교통부, 대한항공)을 수리남 측에 통보(1989.6월)

- 대한항공의 수리남 취항은 한·네덜란드 간 항공협정 노선구조 상 이원지점이 없어 곤란함.
- 대한항공의 보잉747 1대를 수리남항공에 임대하는 것은 항공기 및 승무원 모두 여력이 없음.

179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한·소련 전자·통신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25 / 21 / 1-234

1989~90년 중 한·소련 간의 전자·통신협력에 관한 내용임.

1. Kudriavtseu 체신부 제1차관 방한 초청

- 초청 경위: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 건설계획에 관해 논의, 한국 참여 의사 타진
- 추진 내용: 신원식 체신부차관 명의의 초청장 전달

2. 이우재 체신부장관 소련 방문(1990.8.8.~18.)

- 방문 목적
 - 한·소련 간 통신협력 증진방안 논의
 - 한·소련 간 직통회선 조기개설
 -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사업 참여
 - 소련의 통신방송위성사업 참여 등

3. 전자·통신조사단 소련 파견(1990.9.8.~18.)

- 조사단
 - 단장: 전자공업진흥회 회장
 - 단원: 상공부 및 체신부 관계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관계자
- 파견 지역: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바롭스크
- 파견 목적: 전자·통신기기의 제품 및 플랜트 수출 가능성 조사, 전자·통신기기의 합작 또는 기술 제휴, 전자·통신기술의 도입

4. Korneev 체신부장관 방한(1990.11.23.~30.)

- 방한 목적
 - TSL Project, 위성통신 및 기타 협력방안 논의
 - 소련의 컬러 TV 브라운관 제조기술 테스트 및 이와 관련 MOU 작성
- 주요 일정
 - 체신부차관 예방, 한국전기통신공사,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자 수원연구소 방문

한·소련 항공협력. 전2권 (V.1 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26 / 1 / 1-270

1990.2.12.~14. 모스크바에서 대한항공과 소련 AEROFLOT항공사 간 회의가 개최되어 한·소련 간 항공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1. 합의사항

- 1990.2.14. 양사간 상무협정 체결
 - 한·소련 양국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대한항공)
 - 서울-모스크바-구주 내 1개 지점 주 1회 운항
 - 서울 또는 부산-상하이·베이징·하얼빈·추후 지정지점 경유권 보유-모스크바(주 1회 운항)
 - (소련항공)
 - 모스크바 또는 하바롭스크-상하이·베이징·하얼빈·추후 지정지점 경유권 보유-서울(주 1회 운항)
 - 하바롭스크-서울-싱가포르(주 1회 운항)
 - 서울과 모스크바에 양국 항공사 상주사무소 설치(주재원 각 3명)
 - 영공통과료 지불조건(주 1회 왕복 연간 70만 달러)으로 대한항공 유럽 정기여객기 소련영공 통과(주 10회 왕복)
- 항공사 간 상무협정은 한·소련 당국이 이를 승인하고 동 사실을 공식적으로 상호통고함으로써 발효
 - 양 항공사는 1990.3.25.부터 상호취항 추진

2. 후속 조치

- 외무부는 주소련영사처장에게 동 상무협정이 발효되도록 교섭을 지시함.
- 1990.2.26. 교통부(항공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항공기 취항계획 및 각 부처 조치사항을 설명함.

179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소련 항공협력. 전2권 (V.2 3-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26 / 2 / 1-223

한·소련 양측 민간 항공사 간 체결된 상무협정이 1990.3.22. 발효되고, 대한항공 여객기가 1990.3.31. 최초로 소련에 취항함.

1. 상무협정 발효

- 주소련영사처와 소련 민간항공부 간 공한교환으로 대한항공과 소련 AEROFLOT항공사 간 체결된 상무협정이 1990.3.22.자로 발효됨.
- 외무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 협정 발효를 발표하바, 금번 조치는 양 항공사 간의 상무협정을 한·소련 양국 정부가 공한교환을 통하여 승인·발효시키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정부간 교섭에 의한 현안문제 타결 실적으로 평가됨.

2. 대한항공 여객기 최초 소련 취항

- 대한항공 여객기(KE 913)가 최초로 취항하여 1990.3.31. 20:40 서울 출발, 4.1. 02:15 모스크바에 도착함.

3. 한·소련 항공기 취항 기념행사 추진

- 한국 측
 - 대한항공은 기념식(김포공항)과 기념 리셉션(힐튼호텔) 개최
 - 교통부 항공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 기자단이 대한항공편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고, 관계기관 방문 및 주요 시설 시찰
- 소련 측
 - 파뉴코프 민간항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약 25명)이 방한하여 기자회견, 다과회, 정부인사 면담 등 추진

4. AEROFLOT의 평양비행 정보구역 통과문제

- 소련 측은 하바롭스크-서울-싱가포르 정기여객기의 평양정보구역 통과 허가신청
- 한국 측은 소련 측의 신청을 불허하바,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기항로 이용을 요망한다는 입장을 전달

한·소련 해운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3 / 1-136

1990년 중 한·소련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선사 간 해운실무회의(1990.5.7.~8., 모스크바)

- 참석자
 - 한국 측: 문익상 현대상선 상무 외 6명
 - 소련 측: Sergeev 중앙선박 관리국부사장 외 5명

2. 제2차 선사 간 해운실무회의(1990.5.10.~11., 블라디보스토크)

- 참석자
 - 한국 측: 문익상 현대상선 상무 외 6명
 - 소련 측: Pikus 극동해운공사 부사장 외 5명
- 주요 합의사항(제1, 2차 합의사항)
 - 투입선박 규모는 400~600 TEU급 1척
 - 선박주기 주1회(단, 2척 투입시 주 2회)
 - 컨테이너기기 사용: 소련선사 소유 컨테이너 사용

3. 제3차 해운협의회(1990.7.16.~18.,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서재국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외 4명
 - 소련 측: Kornilov 소련 해운청 국제국장 외 3명
- 주요 합의사항
 - 한·소련 간 정기 직항로 개설(10월초 예정)
 - 항로: 부산-보스토토키치 간
 - 한국 측 참여선사: 현대상선, 천경해운
 - 소련 측 참여선사: FESCO(극동 해운공사)

4. 제3차 선사 간 해운실무회의(1990.11.2.~9., 서울)

- 주요 협의내용: 부산-보스토토키치항 간 정기컨테이션 공동운항

한·미국 해운협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6 / 4 / 1-253

1990년 중 한·미국 양국간 해운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북미항로 6개 정기선사와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 간 벌금협상 타결(1990.7.3.)

- 타결내용
 - 협상참여 선사: 6개사(현대상선, 일본사 4개사, 싱가포르 1개사)
 - 벌금 액수는 향후 개별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 협상추진 경위
 - 1989년 FMC는 태평양항로 취항 정기선사의 해운 불공정 관행 조사 실시
 - 당초 한진해운 포함 7개사가 단체협상에 임했으나 1990.6월 한진해운은 단체협상 그룹에서 탈퇴
- 한진해운은 1990.8.20.까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사태 진전상황 주시 후 최종결정 예정

2. 미국 FMC, 한국의 미국선사에 대한 해운제약 관련 결정내용 발표(1990.11.2.)

- 한국의 미국선사에 대한 차별개선문제 등 구체적인 해운 개방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 자료 제출 명령 결정
 - 해운제약내용, 제약해소를 위한 노력 진전사항, 제약의 미국 선사에 대한 불리한 영향 등 관련 정보자료 제출 명령
- 미국 FMC는 상기 자료 검토 후 조사 등 관련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한국선사의 미국 항만 접근금지, 부과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가능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2차. 서울, 1990.5.30.-3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5 / 1-112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이 1990.5.30.~3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재국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EC 측: Jurgен Erdmenger EC집행위 VII 국장

2. 주요 회담 결과

- EC선사의 항만시설투자 및 운영참여는 민간개발방식의 광양항 개발 시 허용
- 해운시장 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이미 허용중이나 100% 완전개방은 곤란
- 항만 내 외국선 차별대우 개선
- EC 측의 비EC선사(특히 한국선사)에 대한 차별규제 방지

3. 회담 성과

- EC 측은 한국 해운·항만에 대한 이해 증진
-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긍정검토 의사표명으로 해운마찰 사전 예방
- 한국선사에 대한 EC 측의 차별적 규제 방지

179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0.6.25.-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6 / 6 / 1-174

한·미국 해운회담이 1990.6.25.~26.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공혁 해운항만청장
- 미국 측: W.G. Leback 해사청장

2. 주요 의제

- 육상 Trucking Service 개방 및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운영 참여
- 철도운송 직계약 및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장비 소유
- 외국적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차별 개선
- UR/GNS 다자간 협상 및 동구권과의 쌍무해운협력 정보교환
- 태평양 항로 안정화 및 한·미국 해운협력 증진

3. 협의 결과

- 미국 측은 Trucking 참여문제에 대한 진전사항이 없음을 지적하고 단거리(Short haul) 트럭 운행의 즉각적인 허용 및 구체적 개방 일정 요구
 - 한국 측은 국내업체 영세성으로 급속한 개방이 곤란하며,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협상결과를 존중하여 점진적 개방 추진을 언급
- 철도 운송 직계약 관련,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선사와 철도청 간 직계약 허용을 요구
- 미국 측은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및 운영 관련 부산항 4단계 개발참여를 요구한바, 한국 측은 컨테이너화물 적체해소를 위한 부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항 4단계 공영체제 유지 불가피성을 설명
- 항만 서비스료 차별
 - 미국 측, 미국선사에도 강제도선 면제 허용과 항만 서비스료 차별 해소 요구
 - 한국 측, 외국선사에 대한 강제 도선 면제는 선박 안전을 위해 허용 불가하며 기타 항만 서비스료는 1991년 중 개선 노력 중임을 설명
- 합의의사록 수록

4. 평가

- 한국의 해운산업 실정 및 정부의 점진적 개방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

라이베리아 해운사절단 방한, 1990.3.25.-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26 / 7 / 1-0v037

라이베리아 해운사절단이 1990.3.25.~28. 방한함.

1. 사절단 구성

- Joseph Keller 해사청장 외 3명

2. 방한 목적

- 한·라이베리아 간 해운협력 방안 협의
- 한국의 라이베리아 국적선 선박 검수권 수임 이후 한국 해운업 발전 동향 파악

3. 주요 일정

- 외무부 아중동국장, 해운항만청 차장 면담
- 한국 선급협회장 면담 및 간담회

4. 동 사절단은 해운항만청 차장 면담 시 1989.7월 논의된 라이베리아선원 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함.

180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2권 (V.1 1988-89.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8 / 1-165

1802

1. 국제무역산업박람회 기본계획(1989.1.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개최 배경 및 기본구상
 -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비전 제시
 - 동과 서, 남과 북의 교역 촉진과 대공산권, 제3세계와의 관계개선 증진에 가속적 계기
 -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역량을 경제, 문화, 선진화의 에너지로 응집
 - 상거래 위주의 무역전시와 과학기술 위주의 산업전시로 이원화하고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를 가미
- 행사 개요
 - 주최: 박람회 추진위원회
 - 개최시기 및 기간: 1991.5월부터 2개월 내외(무역전시는 2주 내외)
 - 참가유치: 10여 개 공산권 국가 포함 40여 개국
 - 전시장: 대전 대덕연구단지(잠정), 20만 평 내외
 - 소요예산: 724억 원
- 추진체제
 - 박람회추진위원회 설립: 재단법인체 설립, 상공부가 주무부서로서 추진, 구성인원은 200~300명 추정
 - 정부지원체제의 구성: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행정조정실장)

2. 재단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발기인 위촉 및 동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1989.2.28., 전경련
- 참석자: 설립발기인 30명
- 안건: 설립경위 보고, 설립취지서 채택,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재단법인 설립결의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2권 (V.2 1989.3-90.4)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 번호 2020-126 / 9 / 1-229

1. 제1차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지원위원회(1989.5.4.)

- 의안: 국제무역박람회 개최시기 및 전시장 규모 변경(안),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추진계획(보고사항),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정부지원법(보고사항),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지원실무위원회 규정(보고사항)

2. 국제무역산업박람회 기본계획 확정(1989.7.31.)

- 기본계획
 - 명칭: 국제산업무역박람회(약칭: 대전 엑스포 '91)
 - 주제: 지혜를 나누며, 꿈을 나누며
 - 개최기간: 1991.8.10.~11.10.(93일간)
 - 개최장소: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 도룡지구
 - 회장규모: 273만 평
 - 예상관람객: 1,000만 명
 - 소요 총예산: 약 3,000억 원

3. 제2차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총회(1989.8.25.)

-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규모 약 317억 원)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동 총회 연기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989.10.5. 정부가 최근의 기업경영환경과 국내외의 여론을 감안하여 박람회 개최를 1991년에서 1993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예산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총회에 서면심의 요청함.

- 예산(안): 총 국고보조금 3,933 백만 원
- 사업계획: 기본계획수립, BIE 공인추진 등

5. 제3차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총회(1989.11.3. 서면심의)

- 나웅배 위원장 사퇴에 따라 오명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안건

6. 제4차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총회(1990.2.26. 서면심의)

- 19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중 개정(안)



7. 제5차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총회(1990.3.29. 서면심의)

- 198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8. 제3차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지원위원회(1990.7.14.)

- 대전박람회 추진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심의(중점 토의사항: 교통, 부지, 예산분야)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 1989.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10 / 1-154

1989.1~6월 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추진 경과

- 1988.11.12. 박람회 실무기획단 설치(국무총리 행정조정실)
- 1989.2.14. 박람회 개최 방침 확정(대통령 재가)
- 1989.3.24.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조직위원장: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 1989.4.4. 정부지원위원회 설치(위원장: 국무총리)

2. 추진 목적

- 각국의 최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전시, 고유의 문화·예술 소개
- 동과 서, 남과 북 교역 촉진, 과학기술 교류 가교역할 수행
- 지방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선진화를 통해 대덕단지를 과학기술교육 종합센터로 육성

3. 대전 EXPO 해외참가 유치 기본목표

- 산업박람회
 - 정부(국제기구, 연구소 포함): 50개
 - 기업(국내업체 포함): 50개
- 무역박람회
 - 해외 200여 개 업체

4. 나웅배 대전 EXPO 조직위원장은 1989.4월 전 재외공관장 앞 협조요청 서한 및 설명자료를 송부하여 대전 EXPO 유치를 위한 외무부의 지원을 당부함.

5. 대전 EXPO 조직위원회는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과의 협의를 위해 1989.5.10.~21. 최흥식 국제부장(외무부 소속)과 김동선 국제1과장(상공부 소속)을 프랑스와 스페인에 파견함.

- BIE협약 개정에 따른 BIE의 대전 EXPO 공인 가능성 협의

180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2 1989.7-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11 / 1-246

1989.7~8월 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대전 EXPO 조직위는 아래 해외유치활동 마스터플랜에 따라 유치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전홍보 및 유치교섭활동을 외무부(재외공관)에 요청함.

- 기본방향: 산업박람회 중심의 무역박람회 성격을 가미한 참가 유치교섭
- 산업박람회 중점 유치대상(정부관, 기업독립관 등)
 - 국가: 개도국,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 및 기타 미수교국
 - 주정부: 미국 등 연방정부
 - 도시: 선진국 일부, 자매결연도시, 해외동포 다수 거주지역
 - 국제기구 및 연구소: 환경, 아동, 복지, 식량 등 관련 기구 중 한국가입 또는 연관기관
 - 기업: 선진국의 세계적 다국적 기업
- 무역박람회 중점 유치대상(상거래 공동관)
 - 과거 SITRA 참가 경험업체 및 신규투자 희망 업체
- 유치교섭 대상별 참가 교섭방법
 - 정부관: 외무부(재외공관)의 정식 외교경로를 통한 유치교섭
 - 기업독립관: 코트라를 통한 유치교섭
 - 상거래 공동관 참여업체 : 대기업, 단체·조합, 코트라 등을 통한 유치교섭
- 참가 지원
 - 장소 무료제공, 장치 및 시설 무료제공 또는 보조, 직매 허용
 - 전시물품 운송 및 통관 지원, 항공요금(인원 제한) 및 체재비 일부 지원

2. 정부는 1989.8.30.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EXPO 개최 시기 연기를 아래와 같이 공식 발표함.

- 1991년 개최 예정인 대전 EXPO를 2년 연기하여 1993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 연기 사유
 - 거국적 행사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BIE(국제박람회기구)와의 공인 가능성 타진 및 협의
 - 최근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박람회 예상 관람객 수가 1,000만 명 수준에 달해 주변 숙박시설,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완비가 필요함.



- 향후 계획

-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박람회 명실상부한 '민족제전'인 동시에 세계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BIE 공인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동 중인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존속시켜 차질 없는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임.

180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3 1989.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12 / 1-176

1989.9월 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93 대전 EXPO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사전 실무교섭단의 영국(글래스고우) 및 프랑스(파리) 방문(1989.9.7.~13.)

- 대표단: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박람회 조직위 국제부장 등 4인
- 주요 활동내용
 - BIE 집행위원장 및 사무총장 면담(BIE 공인 추진전략 수립)
 - 공인신청서 및 비망록 작성
 - 상공부 제1차관보의 BIE 집행위원장 및 사무총장 면담 일정 조율

2.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BIE 주요 인사 면담차 유럽 순방(1989.9.21.~27.)

- 출장 목적: BIE 공인 획득 교섭
- 방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 주요 면담인사
 - Allan BIE 집행위원장
 - 영국: Pestel 외무성 차관
 - 프랑스: Galopin BIE 프랑스 대표, De frene BIE 사무총장
 - 독일: Schmeros 경제성 통상협력차관보, Wachendorfer BIE 독일 대표
 - 벨기에: Simon EC(구주공동체) 집행위 전시담당총국장, Biesbroeck BIE 벨기에 대표

3. 외무부는 1989.9.19. '93 대전 EXPO 공인신청서를 BIE 사무국에 제출함.

4. 외무부는 1989.9.19. 제106차 BIE 총회 개최 시 대전박람회 공인 획득을 위한 BIE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전개를 관련 공관에 지시함.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4 1989.1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6 / 13 / 1-339

1989.10월 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BIE 공인 교섭사절단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파견(1989.10.8.~18.)

- 대표: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주요 면담인사
 - 멕시코: 외무부 BIE 담당국장
 - 베네수엘라: 대외통상부장관, 상공부차관
 - 페루: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2. BIE 공인 교섭사절단 미국, 캐나다, 일본 파견(1989.10.11.~21.)

- 대표: 이경훈 본부대사
- 주요 면담인사
 -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 캐나다: 외무부차관,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일본: 통산성 사무차관, 통산성 산업정책국장

3. BIE 공인 교섭사절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파견(1989.10.9.~19.)

- 대표: 허남훈 대전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
- 주요 면담인사
 - 노르웨이: 외무부차관, 상무성차관
 - 스웨덴: 대외무역성차관
 - 핀란드: 대외무역성차관, 대외무역협회 회장

4. BIE 공인 교섭사절단 튀니지, 모로코, 포르투갈 파견(1989.10.14.~22.)

- 대표: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 주요 면담인사
 - 튀니지: 외무부 및 경제통상부 BIE 담당국장
 - 모로코: 외무부 및 경제통상부 BIE 담당국장
 - 포르투갈: 상공부차관, 상공부 대외무역국장



5. BIE 공인 교섭사절단 영국, 독일, 프랑스 파견(1989.10.29.~11.6.)

- 대표: 정민길 본부대사
- 주요 면담인사
 - 영국: 외무부차관, 외무부 정보국장
 - 프랑스: 외무부차관, 대외무역부 차관
 - 독일: 경제성차관, 경제성 통상정책국장

1810

6. BIE 공인 교섭사절단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파견(1989.10.12.~19.)

- 대표: 이시용 본부대사
- 주요 면담인사
 - 덴마크: 산업부차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 그리스: 상무부장관, 대외무역정책국장
 - 네덜란드: 외무성차관, 외무성 경제총국장

7. BIE 공인 교섭사절단 헝가리, 소련, 폴란드, 불가리아 파견(1989.10.16.~29.)

- 대표: 임인주 코트라 본부장
- 주요 면담인사
 - 헝가리: 헝가리 EXPO 사장
 -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회장
 -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 회장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8. BIE 공인 교섭사절단 스위스, 스페인 파견(1989.10.19.~20.)

- 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주요 면담인사
 - 스위스: 외무부 BIE담당총국장
 - 스페인: 경제재무성 통상담당국무상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5 1989.11(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1 / 1-230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 추진을 위해 1989.10월 중 25개국 9개 지역별 BIE 공인 교섭사절단 파견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임.

1. 교섭사절단 파견 개요

- 방문국, 방문 기간, 접촉 인사 등

2. 각국별 반응

3. BIE 공인 교섭사절단 방문국별 주요 일정, 선물 내역 등

181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6 1989.11(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2 / 1-244

1989.11월 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박람회 조직위, 스페인 및 프랑스 방문(1989.11.23.~12.1.)

- 대표단: 허남훈 조직위 사무총장, 최흥식 조직위 국제부장 등 4인
- 방문 목적: '93 대전 EXPO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추진 협의
- 면담 인사
 - 스페인: 경제재무성 통상담당 국무상 및 총국장
 - 프랑스: BIE 의장, BIE 집행위원, 사회주의국가 BIE 대표, BIE 분과위 위원장

1812

2. 정부대표단, 영국 방문(1989.11.13.~14.)

- 대표단: 이종구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최흥식 조직위 국제부장
- 방문 목적: BIE 집행위원장과 BIE 공인 추진 협의
- 면담 인사: T. Allan BIE 집행위원장
 - BIE 집행위원회 및 총회 전략 탐문
 - '93 대전 EXPO 내부 준비사항 자문

3.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노르웨이 및 미국 방문(1989.11.26.~30.)

- 방문 목적: '93 대전 EXPO BIE 공인 추진 협의
- 면담 인사: 무역해운부차관(노르웨이), 상무부차관보(미국)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7 1989.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3 / 1-221

정부는 1989.12.1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06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임인택 상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정부 훈령

- BIE 총회에서 '93 대전 EXPO에 대한 BIE 조사단 한국 파견(1990.4월)이 가능한 한 컨센서를 통해 결정되도록 유도할 것
- 각국 BIE 대표와 교섭, '93 대전 EXPO가 BIE 실험약에 의거하여 주제, 개최기간, 규모가 인정 박람회로서의 요건에 충족함을 강조하고 참가 개도국의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함을 설명할 것

2. BIE 집행위원회가 1989.12.7. 파리에서 개최된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106차 총회에서 한국의 대전 EXPO 신청 채택여부를 단순 과반수에 의한 비밀투표로 결정
- 채택 시 1990.3월 조사단 파한
- 총회 개최 시 대전 EXPO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권고하기로 결정
- 집행위원국별 입장
 - 찬성(8국): 영국, 일본, 프랑스, 소련, 우크라이나, 스위스, 체코, 아르헨티나
 - 반대(3국): 미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 기권(1국): 이탈리아

3. 1989.12.14. 파리에서 개최된 제106차 BIE 총회에서 '93 대전 EXPO 신청접수 및 1990년 초 조사단 파한 건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됨.

- 총투표: 34개국
 - 찬성: 31개국
 - 기권: 2개국(영국, 오스트리아)
 - 반대: 1개국(미국)
- 향후 공인 획득 절차
 - 조사단 파한(3월)
 - 조사단 보고서 심의, 표결(6월, 총회)
 - 개최일자 배정 결정 표결(12월, 총회)
 - 최종 등록 결정(1991.6월, 총회)

181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8 1990.1-2(감사서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4 / 1-140

정부는 제106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표결에서 '93 대전박람회 신청접수 및 1990년 초 조사단 한국 파견 관련 안건 통과를 지지한 BIE 회원국에 대한 감사서한을 발송함.

1. 외무부는 1990.1.3. 제106차 BIE 총회에서 한국 안건 통과를 지지해 준 30개 회원국 BIE 담당부처장에게 아래 내용의 감사서한을 발송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 한국의 '93 대전 EXPO 안건이 통과되어 조사단 한국 파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하여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
- 한국 정부는 '93 대전 EXPO가 신탁약상의 인정박람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제, 개최 기간 및 규모 등을 계획해 나갈 것임.
- 향후 대전 EXPO 개최 추진 관련 모든 절차와 준비사항에 있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함.

2. 감사서한 발송 BIE 회원국(30개국) 명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페루, 아이티, 멕시코, 코스타리카, 호주, 헝가리,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일본,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3. 상공부는 1990.1.4. 한승수 상공부장관 및 김철수 제1차관보 명의의 감사서한을 22개 BIE 회원국에 발송함.

4. 대전 EXPO 조직위는 1990.1.8. 오명 조직위원장 명의의 감사서한을 39개국 BIE 대표에게 발송함.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9 1990.2-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5 / 1-222

1990.2~4월 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함.

1. 외무부는 1990.2.4. '93 대전 EXPO 유치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전 EXPO 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함.

2. 나웅배 의원(전 대전 EXPO 조직위원장)의 유럽4국(독일, 헝가리, 폴란드, 소련) 순방(1990.3.24.~4.5.)

- 순방 목적: BIE 공인 교섭
- 주요 일정
 - 독일: BIE 담당기관장 면담(외무장관 및 경제성장관)
 - 헝가리: BIE 담당기관장 면담(무역부장관 및 헝가리 EXPO 사장)
 - 폴란드: BIE 담당기관장 면담(상공회의소 회장)
 - 소련: BIE 담당기관장 면담(연방상공회의소 회장)

3. 허남훈 대전 EXPO 조직위 사무총장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1990.4.16.~27.)

- 방문 목적
 - 제107차 BIE 총회를 대비한 '93 대전 EXPO 공인교섭
 - 미국의 기권유도 및 기업, 주정부 대상 엑스포 참가 유치 관련 정보수집
- 주요 일정
 - 미국: Coppola BIE 대표 면담, EPCOT 센터 및 NASA 방문
 - 캐나다: Marceau BIE 대표 면담

181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0 1990.2-5(BIE 조사단 방한, 90.4.7.-14.))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6 / 1-202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유치 추진 관련 1990.4.7.~14. BIE(국제박람회기구) 조사단이 방한함.

1. BIE 사무국은 1990.3.8.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1990.4.7.~14. 방한하는 BIE 조사단 4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옴.

- 단장: Gallopin 프랑스 BIE 대표(외무성 참사관)
- 단원: Defrene BIE 사무총장, Cuadra 페루 BIE 대표(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옵서버: Sol-Rolland BIE 총회 의장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대전박람회 조직위원장 면담
- 대전시장 및 경제단체장 주최 오·만찬
- 대전박람회장 시찰

3. BIE 조사단 조사 주안점

- 정부의 재정보장 등 개최 의지
- Site plan의 규모 및 개최 가능성 여부
- 주제 개발 내용
- 교통, 호텔 등 숙박시설 현황
- 대외홍보전략 및 세미나, 행사 등 개최 계획

4. BIE 조사단 방한 결과(평가)

- 박람회 준비의 성실성, 완벽성 등을 높이 평가하며 보고서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음(Gallopin 대표단장 언급).

5. BIE 공인 관련 향후 절차

- 1990.5월: BIE 회원국에 조사보고서 송부
- 1990.6월: BIE 집행위원회 심의
- 1990.6.14.: 제107차 BIE 총회('93 대전 EXPO BIE 공인여부 표결)
- 1990.12월: 제107차 총회에서 공인 획득 시 BIE기 수령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1 1990.4-5(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7 / 1-185

오명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93 대전 EXPO 공인 교섭을 위해 주요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방문함.

1. 중남미지역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4.28.~5.11.)

- 방문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2. 유럽지역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19.~6.1.)

- 방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181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2 1990.5(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8 / 1-269

1990.6.14.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07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표결 대비를 위한 주요 BIE 회원국 대상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공인 지지교섭 대표단을 파견함.

1. 서유럽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16.~25.)

- 방문국: 영국, 벨기에, 덴마크
- 대표단: 이경훈 본부대사, 임풍환 조직위 행사과장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2. 아주지역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17.~24.)

- 방문국: 일본, 호주
- 대표단: 권태웅 본부대사, 정재현 조직위 참가유치과장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3. 서유럽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23.~6.1.)

- 방문국: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 대표단: 전계묵 공업시험원장(대표), 이광식 조직위 해외유치과장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4. 남미지역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23.~6.1.)

- 방문국: 우루과이, 페루, 아이티
- 대표단: 김태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충호 조직위 사업2과장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5. 유럽지역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23.~6.1.)

- 방문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 대표단: 김철수 특허청장, 서정학 조직위 해외유치과장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6. 유럽지역 주요 BIE 회원국 방문(1990.5.26.~6.3.)

- 방문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 대표단: 임인택 상공부차관
- 주요 면담인사: BIE 주관부서 장·차관급 인사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3 1990.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9 / 1-190

정부는 1990.6.14. 파리에서 개최된 제107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박필수 상공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93 대전엑스포(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 공인 획득

2. 정부 훈령

- 제107차 BIE 총회에서 조사단 보고서 채택과 개최 일자 배정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현지 BIE 대표들과 적극 교섭할 것
- 유보 입장을 표명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한 집중 교섭을 전개할 것
- '93 대전 EXPO 공인 표결에 앞서 실시될 EXPO 2000 후보지 선정문제에 있어서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되, 3개 후보 도시(토론토, 하노버, 베니스)가 끝까지 경합하여 표결이 실시 될 경우 기권할 것

3. 총회 결과

- 1990.6.14. 실시된 '93 대전 엑스포 공인 표결(비밀투표)에서 43개 회원국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38, 무효(기권) 3, 투표불참 1(쿠바) 결과에 따라 만장일치로 대전 EXPO BIE 공인을 획득함.

181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93 대전 EXPO(국제무역산업박람회)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전14권 (V.14 1990.7-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10 / 1-266

1. 정부는 1990.7.9. 제107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93 대전 EXPO 공인을 지지한 33개국 BIE 대표 앞 박필수 상공부장관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함.
2. 정부는 1990.12.12.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08차 BIE 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오명 대전박람회 조직위 위원장
 - 대표: 이봉학 대전시장, 이경훈 본부대사, 이종완 대전시 추진협의회장 등 6명
 - 주요 활동내용
 - 대전엑스포 공인 등록
 - 수석대표 연설 및 BIE기 수령
 - 대전엑스포 참가유치 교섭 및 홍보
 - 총회 전후 BIE 의장단, 각국 대표단 및 기자단 초치 참가교섭 전개

서울 국제무역박람회(SITRA '90), 1990.10.30.-1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7 / 11 / 1-99

서울 국제무역박람회가 1990.10.30.~11.5. 개최됨.

1. '90 서울 국제무역박람회(SITRA '90) 개최 준비

- 코트라는 1990.2.5. SITRA 참가안내서를 한국의 재외공관 등에 배포하여 박람회의 대외홍보를 외무부에 요청
- 상공부는 2.12. 동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
- 외무부는 2.14. 참가안내서를 재외공관에 송부, 홍보 및 참가교섭을 지시
- 재외공관 교섭 보고
 - 브라질: Cechin 박사 등 23명 참가 계획
 - 노르웨이: 30명 바이어 참가
 - 수단, 세네갈, 요르단: 참가 어려움

2. 서울 국제무역박람회(1990.10.30.~11.5.)

- 참가국: 35개국 430개사(국외 34개국 182개사)
 - 동구권국가 최초로 8개국 47개사 참가
- 성과목표
 - 바이어 유치: 3,000명
 - 상담: 4억 달러
 - 관람객: 7만 명
- 주요행사
 - 개막식: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국회 상공분과위원장, 경제4단체장 등 참석
 - 리셉션: 외무부장관 등 참석
- 성격: 1982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된 한국 유일의 종합무역박람회

182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127 / 12 / 1-98

1987~89년 중 한국이 미수교국인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Plovdiv 국제박람회에 참가함.

1.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불가리아는 미수교국인 한국에 대하여 국제박람회 참석을 허용함.

- 한국 민관대표단이 1987~89년 중 3차례 참석하여 불가리아 정부 관계자와 현안 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1822

2. 코트라는 1988.3월 불가리아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민간 기업 진출방안을 모색함.

3.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참사관의 1987.5.4.~10. 춘계 Plovdiv 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임.

- Spas Georgiev 불가리아 상무성차관 면담
 - 양국간 교역 증진
 -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하기로 함.
 - 환거래(Bank-Corres) 설치 문제
 - 상무성으로서는 양국은행 간의 코레스 설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측면지원할 것임.
 - 불가리아 교역사절단 방한 문제
- 불가리아 정세
 - 서비스분야에서 개인영업 허용, 기업의 이윤 추구 및 독립 재산제 도입, 6개 은행 신설 등 금융계 개편, 정부기구 개편 및 권한 조정 등
 - Zhivkov 당서기장의 고령화로 인한 후계자 문제가 관심의 초점
- 박람회 참가 특이 사항
 - Zhivkov 당 서기장이 개관식 참석 후 외국관 시찰 기회에 한국관 방문
 - 북한은 박람회 참가를 취소하였는바, 취소 이유는 미상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참가. 전3권 (V.1 1987-89년 상반기)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8 / 1 / 1-232

오사카 국제박람회(주제: 꽃과 녹음) 참가 관련 준비사항임.

1. 주한 일본대사는 1987.4.27.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1990.4.1.~9.30.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오사카 국제박람회에 한국의 참가를 요청해 옴.

- 개최 목적: 정원 및 조경발전을 위한 21세기 풍요사회건설
- 전시 대상
 - 원예 생산물: 꽃, 종자, 야채, 과일
 - 원예생산 및 조경 관련 도구, 장비 등

2. 니시다 세이야 '90 오사카 국제 조경박람회 정부대표 일행 6명은 1988.3.29.~31. 방한하여 한국의 박람회 참가를 요망함.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외무부 통상국장 방문
 - 코트라 사장 방문, 창경궁 견학

3. 국무총리실은 1989.2.9. '90 오사카 국제 조경박람회 참가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참석자
 - 김대영 국무총리실 제2행정 조정관
 -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외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코트라,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장급 관계관
- 토의 결과
 - 한·일본 간의 우호관계, 재일교포의 사기진작, 1991년 한국 개최 박람회와의 연계성 및 통상 증대차원에서 동 박람회 참가를 적극적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함.

4. 정부는 '90 오사카 국제 조경박람회 참가를 위한 현지조사단을 1989.3.6.~11. 일본에 파견함.

- 출장자: 김광의 농림수산부 농산물 유통국장 외 5명
- 출장지역: 도쿄, 오사카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참가. 전3권 (V.2 1989 하반기)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8 / 2 / 1-167

1989.6.9. 농림수산부에서 작성한 '90 오사카 국제박람회(꽃과 녹음) 추진상황 자료임.

1. 박람회 개요

- 장소: 오사카 쓰루미 공원
- 참가 신청: 60개국(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터키 등)

2.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주관: 농림수산부
- 사업 시행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3. 한국의 참가

- 한국의 꽃과 전통문화 해외홍보로 국위 선양
- 참가 전시내용: 한국 전통정원(정자, 연못), 원예상품을 이용한 실내장식, 주제별로 민간참여 유도, 한국주간 및 한국의 날 행사, 홍보

4. 세부행사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행사, 홍보, 영업점 참여, 소나무 조달, 전시장 운영본부 설치, 한국과 일본 업무추진, 화분 종사자 유통연수, 기관별 업무분장, 주요업무 추진경위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참가. 전3권 (V.3 1990)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8 / 3 / 1-267

오사카 국제박람회(주제: 꽃과 녹음) 한국정원 준공식이 1990.3.28. 개최됨.

1.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90.3월 '90 오사카 국제 조경박람회 한국정원 준공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보고함.

- 일시: 1990.3.28. 11:00
- 주요 행사
 - 농수산부장관 기념사
 - 주일본대사, 민단 중앙단장 축하
 - 정자 현판 제막
- 관련 행사
 - 박람회 전체 개장식: 1990.3.31.
 - 일본 황태자 한국정원 방문: 3.31.(황태자는 한국, 미국, 소련 등 7개 외국정원 방문)
- 한국주간: 1990.5.21.~5.24.
 - 한국의 날: 5.22.

2. '90 오사카 국제 조경박람회 한국의 날 행사에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차 1990.5.21.~24. 방일함.

- 주요 일정
 - 한국의 날 행사 참석(5.22.)
 - 이회건 흥은 회장 및 아사히신문 사장 면담

3. 외무부는 1991.3월 '90 오사카 국제 조경박람회의 성공적 참가에 기여한 유공 재일교포 28명에 대한 포상을 농림수산부와 총무처에 추천함.

- 정부는 재일교포 3명을 포함한 25명의 포상을 결정함.

182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중국 개최 전시회 참가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28 / 4 / 1-99

1989~90년 중 중국에서 개최된 전시회 참가 관련 내용임.

1. 중국 개최 행사 참가 및 취재

- 외무부는 1989.8.18. 김원하 교통신문기자의 '89 상하이 자동차 전시회 취재를 위한 1989.8.23.~30. 중국 방문 계획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 상공부는 1990.3.22. 아세아종합무역(주)가 중국무역촉진위원회(심양시 분회) 및 일본 Ishu Boeki Co.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1회 중국 심양시 신상품 카탈로그 및 샘플 전람회 (1990.5.23.~28., 중국 심양시) 개최를 승인함.

2. 중국 전시회 참관 및 방문

- 한국경제연구원은 1989.4.11. 외무부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으로 1989.4.17.~27. 중국광주교역회 참관 및 시장조사단 파견 관련 협조(여권기재사항변경)를 요청함.

3.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 국제전선주식회사는 1989.6.13. 외무부에 1989.6.8.~8.13. 중국 광주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 (Electric China '89) 참가 관련 미수교국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오키나와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개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8/5/1-27

1989년 중 오키나와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개최를 추진함.

1. 주나하영사관은 영사관과 코트라 후원하에 고려무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종합적인 한국 물산전을 1989.10월경 주재지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외무부에 건의함.

- 오키나와와의 문화 및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소규모 한국 민속무용단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 소개를 함께 추진하고자 함.
- 1989.7월 외무부는 상기 전시회가 9월 공예협동조합에서 개최되는 물산전과 중복이 되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음을 주나하영사관에 통보함.

2. 주나하영사관은 1989.11월 상기 전시회를 1990.4월 한·나하 간 정기선 운항에 맞추어 개최할 것을 재건의함.

- 외무부는 12월 상공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상 제약과 개최성과 및 업체호응도 등을 고려, 동 전시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주나하영사관에 통보함.

182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오사카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개관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8/6/1-84

코트라와 고려무역이 주관하는 오사카 한국상품 상설전시장(직매장)이 1986.12.8. 개관됨.

1. 전시장 개요

- 명칭
 - 1층: 한국상품 직매장(110평)
 - 2층: 한국상품 전시장(154평)
- 목표
 - 대일본 수출증진을 위한 유통구조 진출을 통해 한국 상품이미지 제고와 수출증대 거점 확보
- 출품업체
 - 전시장: 27개사 28개 품목
 - 직매장: 10개사 12개 품목

2. 운영 성과(1987년도)

- 신규거래처 확보
- 제품고급화
- 일본 시장동향 파악, 상품정보 수집
- 참가기업의 신용도 향상 효과

3. 문제점(주오사카총영사 보고)

- 상담 수용준비 미흡
- 내방 바이어 지속적 유치
- 행사장 전시관 연계활용 부족

4. 개선 방안(1987.7월, 주오사카총영사 보고)

- 중소기업 신규유망 상품 교체전시 코너 설치
- 중소전문 제조업 참여 확대
- 공업규격, 검사 획득 지원
- 기획전 출품 강화

5.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90.9월 상기 전시장 운영의 문제점(전시상품 구조의 취약성)이 다소 있으나 전시관 설립 취지인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동 전시장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미국산품 특별전시회(US Product Show-Seoul) 개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128/7/1-306

1987~90년 중 제1~2차 미국산품 특별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됨.

1. 제1차 전시회(1987.11.2.~5.)

- 경위
 - 1987.1월 코트라는 상공부와 전시회 개최 협의, 한·미국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추진 결정
 - 1987.2월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매사절단 미국 파견
 - 1987.3.9. 코트라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시회 개최 계획을 최종 확정
- 목적: 대미무역 불균형 개선, 235개 수입처 전환품목 수입처의 실질적 대미 전환유도
- 참가: 33개 주정부, 219개 개별업체
- 전시품목: 전기 전자통신기기, 컴퓨터, 공작기계, 화학제품 등
- 주요 방한인사: Thomson 위스콘신 주지사, Moore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Orr 인디애나 주지사, 캘리포니아 상의회장, Montoya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2. 제2차 전시회(1989.11.15.~18.)

- 경위
 - 1989.1.15. 상공부장관 명의 미국 상무부장관 앞 서한 송부
 - 1989.1.20. 상공부장관 명의 미국 50개 주지사 앞 서한 송부
 - 1989.3월 상공부·코트라 합동홍보유치단 파견, 설명회 개최
- 목적: 한·미국 무역균형 도모, 미국 첨단산업의 국내 소개
- 참가: 35개 주정부, 170개 개별업체
- 전시품목: 정밀기계류, 전기 전자, 화학제품, 일반소비재 등
- 성과: 대미 통상마찰 완화 기여, 미국 첨단산업의 국내소개, 대미 부품수출 확대 도모

182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Sofia(불가리아) KOTRA 무역관 개설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128/8/1-142

1988~90년 중 코트라 소피아무역관 및 불가리아 서울 무역사무소 상호 개설 관련 내용임.

1. 개설 경위

- 1988.4월 주비엔나무역관은 주오스트리아 불가리아대사관 상무관에게 무역사무소 설치 및 불가리아 경제협력단 한국 방문을 제의
- 1988.8.30.~9.1. 주비엔나무역관장 불가리아 출장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및 업무협력협정 체결 제의
- 1988.9.7.~19. Roussev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가리아 경제협력단 방한
 - 이선기 코트라 사장이 10월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업무협력협정 체결에 합의
- 1988.11.28.~30. 코트라 사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코트라·불가리아상공회의소 간 업무협력 협정에 서명
- 1989.4.4. 코트라 소피아무역관 공식 개관
- 1989.7.21. 불가리아 서울무역사무소 공식 개소

2. 코트라·불가리아상공회의소 간 업무협력협정 주요 내용

-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
 - 명칭: 대한무역진흥공사 소피아무역관, 불가리아 서울 무역사무소
- 주재원: 2명 이상
- 주재원에 대한 면세혜택, 신변안전보장, 사무실 및 주재원 주택 상호제공
- 경제정보 및 자료교환
- 전시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Prague(체코) KOTRA 무역관 개설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128/9/1-134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 프라하무역관이 1990.2.2. 개설됨.

1. 개설 추진 경위

- 1988.12월 코트라 특수사업부장은 체코를 방문, 업무협력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
- 1989.2월 코트라 주비엔나무역관장은 체코를 방문, 체코 상의회장에게 협정서 초안을 제시
- 1989.4월 코트라 주비엔나무역관장은 업무협력협정 체결 협의
 - 체코 측은 대외무역부와 협의 시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체코 상의회장의 방한 초청을 수락하며 1989.9월 초 사절단 방한 계획 표명

2. 체코와의 업무협력협정 체결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

- 상공부는 1989.5.23. 코트라와 체코 상의 간 무역사무소 교환개설을 위한 업무협력협정 체결 관련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는 6.3. 상주사무소 교환 설치가 양국간 교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
- 상공부는 11.10. 협정체결 방침을 외무부에 통보

3. 코트라와 체코 상의 간 업무협력협정 체결

- 경위
 - 1989.6월 코트라 측 초안 제시
 - 1989.10월 체코 상의 수정안 제시
 - 1989.11월 코트라 측 재수정안 제시
 - 1989.11.17. 체코 상의회장 방한 시 서명
- 협정 내용
 - 서울과 프라하에 무역사무소 설치(제1조)
 - 통상사절단 파견 주선(제3조)
 - 경제 및 수출입 관련 정보교환(제4조)
 - 박람회 참가 지원(제5조)
 - 파견직원 및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제7조)

183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동Berlin(동독) KOTRA 무역관 개설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28 / 10 / 1-76

코트라 베를린무역관이 1990.5.21. 개설됨.

1. 코트라 무역관 개설 협의단 동독 방문(1990.1.18.)

- 방문 목적
 - 동독 대외무역회의소 부회장 등과 면담하여 무역사무소 개설 협의

2. 코트라·동독대외무역회의소 간 업무협력협정서 체결 협의

- 추진 경위
 - 1989.11.10. 동독 Horizont 편집국장은 코트라 방문 시 동독 지도층의 대한국 관계개선 의사 전달
 - 1989.11.29.~30.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부관장의 동독 방문 시 동독무역관 개설 가능성 타진
 - 1990.1.18. 프랑크푸르트무역관장 동독 방문, 무역관 조기 개설 원칙 합의
 - 1990.1.31. 동독 대외무역회의소 회장으로부터 한국 측의 업무협정 체결 제의에 대한 공식 회신 접수
- 코트라는 1990.2.12. 무역사무소 교환개설 관련 협정서 체결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협정서 체결 및 상주사무소의 교환설치는 한·동독 간 경제 및 통상교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이익 없다고 하고 다만, 영사기능 부여는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배제하도록 회신

3. 코트라·동독대외무역회의소 간 업무협력협정서 체결 및 무역사무소 설치

- 협정 체결
 - 시기 및 장소: 1990.4.2. 동베를린
 - 서명자: 코트라 사장, 동독대외무역회의소 회장
- 무역사무소 설치
 - 코트라 무역관: 1990.5.21.
 - 동독 측 서울무역사무소: 1990.3.18. 총선 이후 신정부에서 결정

Bucharest(루마니아) KOTRA 무역관 개설, 1990.10.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28 / 11 / 1-52

코트라 부쿠레슈티무역관이 1990.10.1. 개설됨.

1. 루마니아 정부는 1990.2.21. 코트라 부다페스트무역관을 통해 무역사무소 상호개설을 제의함.
2. 외무부와 상공부는 코트라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북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경제진출 창구 마련 등을 위해 부쿠레슈티무역관 개설을 결정함.
3. 1990.3.28.~4.2. Mitran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루마니아 정부사절단이 방한하여 루마니아 상공회의소와 코트라 간 업무협력협정서 체결 및 조속한 시일 내 무역사무소 개설에 합의함.
 - 9.15. 루마니아 상공회의소와 코트라 간 업무협력협정서 체결
4. 이선기 코트라 사장은 1990.10.10.~14.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부쿠레슈티무역관 개관식을 거행 하고 무역관을 공식 개소함.

18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tlanta(미국 Georgia주) KOTRA 사무소 개설 검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20-128 / 12 / 1-5

1987년 중 미국 애틀랜타 코트라사무소 개설을 추진함.

1.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1987.1.23. 주애틀랜타 코트라사무소 개설을 건의함.

- 미국 동남부 6개주의 수도라 불리는 애틀랜타의 역내 교통,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서 지위 고려
- 한국의 대미 동남부지역 경제진출 및 확장의 중심지로 애틀랜타 활용 필요성 등 감안

2. 상공부는 1987.2.10. 1987년도에는 무역역조 개선이 시급한 일본지역 코트라 조직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애틀랜타무역관 신설이 어렵다고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통보함.

중동·아프리카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28 / 13 / 1-207

1990년 중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참가 관련 내용임.

1. 정책박람회 지원 방침

- 외무부는 주세네갈대사 등이 건의한 박람회가 코트라 주관 해외전시사업에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동 박람회 참가는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박람회로 선정하고 예산(5,000 달러)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 해당 공관이 중심이 되어 코트라 무역관 및 상사와 함께 참가방법을 협의하도록 지시

2. 케냐 나이로비 국제박람회(1990.10.2.~6.)

- 이탈리아, 영국, 중국, 스페인 등 16개국 98개 업체 참가
- 코트라 주관하에 삼성, 금성, 선경, 골드리카, 동국사업 등 5개 상사가 한국관을 구성, 가전제품, 농기계, 전기, 전자제품 및 각종 제품 전시

3. 튀니지 국제박람회(1990.11.7.~10.)

- 주튀니지대사는 튀니지 국제박람회 당국이 박람회 개최 관련 서한과 참가 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한국업체의 참가를 요청하였다고 보고
- 외무부는 상공부에 주튀니지대사의 보고내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
- 상공부는 코트라를 통해 관련 업계에 홍보하도록 조치

4. 세네갈 다카르 박람회(1990.11.29.~12.10.)

-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이 다카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요청하고 주세네갈대사도 강력하게 건의함.
- 코트라 본사 지원하에 한국홍보관 운영 및 세네갈 진출 중소기업체(가발회사, 사진업, 잡화상)가 참여함.
- 북한은 대성상사 명의로 공예품, 인삼제품 등 판매

183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주한 소련 및 동구권 무역사무소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28 / 14 / 1-132

1990년 중 주한 소련 및 동구권 무역사무소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면세특권문제

- 문제발생 배경
 - 한·소련 협의 의정서 상 의무이행의 필요성
 - 소련 측(특히 Golanov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부회장 방한 시)은 한국의 면세부여 지연에 불만을 표시
- 대책 협의
 - 1990.4.18. 외무부 의전관 주재 회의 및 9.14.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협의
- 외무부는 상공부에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주한사무소 및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관에 대한 면세혜택 종료를 통보
 - 1989.12.8. 발효된 한·소련 외무부 간 싱가포르 의정서는 양 사무소와 직원에 대한 면세 규정을 함.
 - 동 면세혜택은 한·소련 관계 변경 시(수교 등)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종료됨.
 - 1990.9.30. 한·소련 간의 국교 수립에 따라 양 사무소 및 직원에 대한 면세혜택을 1990.12.8.(상기의정서 발효 1주년) 종료할 것임을 통보함.

2. 주한 폴란드 무역사무소 직원 지위

- 상공부와 코트라는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
 - 1989.5.24. 폴란드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이래 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온 Okon 상무관은 1990.1.16. 주한 폴란드대사관 개설 후 대사관 상무관으로 지위가 변경됨을 통보하면서 외교관 신분증 발급을 요청함.
 - 또한,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는 Okon 상무관이 동 무역사무소 소장직을 겸임할 것임을 알려 오면서 상무관실에 추가 파견될 직원 1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업무협력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사무실 및 주택은 무료로 제공)에 의거, 코트라 측이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의전장)는 상기 사항이 주한 폴란드 대외무역사무소 직원의 외교관 신분과 겸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코트라·폴란드 무역회의소 협약 운용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 협약 적용을 당해직원의 외교관 등 신분취득과 동시에 배제시키는 방안 혹은 상호주의의 엄격한 적용방안이 있다고 검토함.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제14차. New York, 1990.10.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28 / 15 / 1-114

제14차 77그룹 외무장관회의가 1990.10.1.~3. 뉴욕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주유엔대사는 77그룹 연례 외무장관회의가 1990.10.3.(사전실무회의 10.1.~2.)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또한, 의제, 진행개요, 77그룹 의장 예비초안, 토의주제, 토의진행방식 등을 보고

2. 회의 준비

- 외무부는 1990.9.3. 77그룹 연례 외무장관회의에 관한 장관보고사항을 작성·보고함.
- 주유엔대사는 9.17. 77그룹 연례 외무장관회의 선언문 초안을 보고함.

3. 개최 결과

- C. Iturralde 볼리비아 외무장관 주재로 개최
- 128번째 회원국으로 나미비아 가입결정
- 77그룹 연례회의 보고서 채택
- 77그룹 연례 외무장관회의 선언문 채택

4. 특기 사항

- 선언문 채택 관련, 이라크는 쿠웨이트사태 언급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세네갈, UAE, 사우디, 쿠웨이트 대표는 표결을 주장
- 의장의 중재로 선언문에 쿠웨이트사태를 언급하는 대신 회의록에 본건 사태(국명 불언급)를 개탄 하면서 유엔현장에 의거한 동 사태의 해결을 희망하는 요지의 의장 성명을 포함시키기로 타협

183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6차. Houston, 1990.7.9.-11. 전2권 (V.1 3월-7.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28 / 16 / 1-186

1990.7.9.~11.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사전조치
관련 내용임.

1. G-7 재무장관회의

- G-7 정상회의에 앞서 1990.4.7. 파리에서 개최되어 공동성명 채택
- 금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 엔화의 하락방지를 위한 G-7 각국의 협조 여부와 동·서독 통일에 대한 반응 및 동유럽 개혁지원을 위한 조치 등임.

1838

2. 휴스턴 G-7 정상회의의 관련 한국입장 개진

- 외무부는 G-7 국가 주재 대사들에게 1990.6.4. 한·소련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동북아 평화구도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감 유도 등을 위해 G-7 정상회의의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시

3. 일본 측과의 협력

- 일본 정부는 1990.6.29. 와타나베 심의관을 파견하여 한국 측에 G-7 정상회의의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외무부에 통보
- 야나기 주한 일본대사는 7.4.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G-7 정상회의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마약문제에 관해 관심이 많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마약문제 해소를 위한 아태 국가간 고위실무자회담 개최 제의 예정을 언급함.
- 가이후 일본 수상은 7.5. 노태우 대통령과 통화하여 한반도에서 화해 및 긴장완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바, 노 대통령은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신형공업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선진국의 이익과 일치하므로 이들의 입장을 G-7 정상회의에서 적극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6차. Houston, 1990.7.9.-11. 전2권 (V.2 7.7.-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28 / 17 / 1-209

제16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이 1990.7.9.~11.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정치 분야
 - 민주주의 확산 지원, 소련·동유럽의 변혁, 중국 문제(대중국 경제제재), 테러리즘, 핵·화학·세균무기 확산 방지문제
- 경제 분야
 - 거시경제·정책조정, 대소련·동유럽 경제지원 문제, 국제무역체제(우루과이라운드), 환경 문제, 개도국 외채, 마약 문제

2. 문건 채택

- 정치 선언(부제: 민주주의 확보)
 -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지지 재천명
 - 독일 통일을 지원하며 유럽 민주화를 환영
 - 소련의 민주체제 전환 의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시도를 환영하며 그에 협조할 것을 다짐
 - 유럽 이외의 여타지역에서의 개혁추세 환영 등
- 특별 성명: 초국가적 문제에 관한 성명
 - 모든 형태의 테러비난 및 테러분자 또는 그 후원자들에 대한 양보불가 결의 천명 등
 - 핵, 화학, 세균무기 및 탄도미사일로 인한 국제평화회의 위협에 관해 협의 등
- 의장 성명
 - 정치선언 및 특별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분쟁에 관해 언급
- 경제 선언
 - 대소련 조건부 경제지원, 농산물 교역촉진 및 환경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4개 항목

3.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방한하여 G-7 결과 설명

- 아타나베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1990.7.15.~17.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을 예방하고 G-7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

183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회의. Jakarta, 1990.7.30.-8.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29 / 1 / 1-135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회의가 1990.7.30.~8.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1.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90.2.14. 주재국 외무부가 TCDC 회의 초청 공한을 전달하여 왔다고 보고
 - 명칭: 개도국간 기술협력 계획과정(TCDC Programming Exercise)
 - 주관: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협력조정위와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공동 주관
 - 초청대상 및 초청조건: 전문 정부관리 1명 및 민간전문가 1명. 항공료 및 체재비 제공 조건

2. 외무부는 1990.3.6. 과학기술처에 동 초청 내용을 전달하면서 회의참가 계획 통보 요청

콜롬보플랜 마약 자문계획 지원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129/2/1-168

1987~88년 중 콜롬보플랜 마약자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7.6월 주스리랑카대사, 콜롬보플랜 사무총장이 마약자문위 추진 7개 사업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 및 기금지원을 타진해 왔다고 보고하면서 연간 5,000달러 상당의 기금지원을 건의
- 1987.8월 관계부처(과기처, 보사부) 의견문의 및 외무부 검토 후 주스리랑카대사에 예산상 지원 불가 통보
- 이후 콜롬보플랜 사무총장과 주스리랑카대사는 수차에 걸쳐 동 사업 기금지원을 재차 건의

2. 지원 조치

- 외무부는 1988.5월 콜롬보플랜 DAP(마약자문계획)에 1989년 5,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 사유
 - 한국과 콜롬보플랜과의 관계 및 한국의 대국제기구 참여 현실화 고려
 - 한국의 국력 신장에 상응한 아태지역 내 영향력 증대 및 회원국간 인식도 제고
 - 마약 재배 및 거래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마약방지사업은 각국의 적극적 협조가 긴요

18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콜롬보플랜 일반사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 번호 2020-129 / 3 / 1-131

1989~90년 중 콜롬보플랜 관련 내용임.

1. 콜롬보플랜 자료 요청

- 주스리랑카대사는 1989.4.4. 콜롬보플랜 사무국이 1988년도 한국이 시행한 대표적인 기술협력 사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
- 외무부는 7.11. 과학기술처가 작성한 1989년도 한국 원조현황 자료를 사무국 측에 전달하도록 주스리랑카대사에 지시

1842

2. 전문가 참석 및 참가비용 문제

- 콜롬보플랜 사무총장은 주스리랑카대사 앞 서한을 통해 콜롬보플랜 사무국 및 기술자대학이 공동주관하는 심포지엄에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면서, 한국 참가자 포함 3명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을 요청
- 과학기술처는 참가지원 경비는 형편상 한국에서 참석하는 1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다고 통보
- 외무부는 주스리랑카대사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의 일반 참가자 중 1인은 동인의 소속기관(한국과학재단)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정부인사 2인은 사무국 측 부담이라고 부언
- 과학기술처는 외무부에 기술자대학 참가후보자로 김승연 대전공업대학 교수를 추천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3차. Bangkok(태국), 1990.11.22.-2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29 / 4 / 1-166

정부는 1990.11.22.~2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에 정주년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유희열 과기처 기술정책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

- 자문위원회 개최지 결정 관련 1992년의 제34차 자문위원회 개최국으로 예정된 미얀마를 지지하고, 제35차 자문위원회 한국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홍보할 것

2. 회의 의제

- 특별 의제: 농촌 천연자원의 관리(Rura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 주의 의제: 빈곤퇴치와 기본욕구(Poverty Alleviation and Basic Needs)

3. 한국대표단 활동

- 유희열 과기처 기술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선출
- 한국대표단은 콜롬보플랜의 이사회 보고에 대한 토의 중 콜롬보플랜이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대개도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개도국과의 경제기술협력 전담기관(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운영계획을 천명
- 정주년 수석대표는 1990.11.26. 회의 의제인 '빈곤퇴치 및 기본수요 충족'에 관해 기초연설을 함.
 - 한국이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문제, 사회복지 정책의 현상과 문제점 및 금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184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3차. Bangkok(태국), 1990.11.22.-2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29 / 5 / 1-244

제3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관련 자료임.

1. 콜롬보플랜 사무국 자료(1989.7월 송부)

- 제33차 자문위원회 주요의제
- 여성인력 개발문제
- 제185차 콜롬보플랜 이사회 회의록

1844

2. 콜롬보플랜 사무국 자료(1990.9월 송부)

- 제190차 콜롬보플랜 이사회 의사일정(수정)
- 제3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의사일정(수정초안)
- 콜롬보플랜 사무국장 임명
- 마약자문 프로그램 전문가 회의 보고서

3. 태국 정부 송부자료

- 제3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 토의자료 및 관련 공한 사본
- 마약자문사업 관련 공한

4. 제3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 관계자료

- 주요 의제 배포서한 및 자료
- 태국 기술경제협력부 서한
- 실무대표 사전회의 공고
- 실무대표 회의 일정
- 각료회의 일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1 기본문서 I(1월-6.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6/1-211

정부는 1990.7.30.~3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 회의에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필수 상공부장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APEC 각료회의 참석 건의 및 호주 수상의 대통령 앞 친서 접수

- 참석 목적: 1989.1월 한·호주 정상회담 시 합의로 추진된 APEC 각료회의 참가하여 APEC 각료회의의 계속화 유도 및 한·호주 정상외교 후속조치 및 양국관계 심화방안 협의
- 호주 수상은 친서에서 캔버라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의 건설적이고 유익한 역할 수행과 제1차 한·호주 협의회 개최에 즈음한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사의를 표시 하고, 한국의 제3차 APEC 회의 개최 제의는 아태협력의 호기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함.

2. 제2차 APEC 각료회의 준비 관련 유관부서 회의(1990.2.26.)

- 토의 안건: 제2차 APEC 각료회의의 준비 제1차 SOM(고위실무회의) 의제별 대책 협의, 아태 협력사업(Work Program) 관련 입장 정립
- 협의 요지: 아세안 각료회의의 결과 및 Work Program 관련 역내국 준비동향 등 역내국 동향, 한국 희망사업 선정, UR(우루과이라운드) 추진협력 방안, 참가국 추가

3. 제2차 APEC 각료회의 일정 및 행정사항 보고

- 외무부는 제2차 APEC 각료회의의 일정, 행정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장관 보고사항으로 보고함.

4. 제2차 APEC 각료회의 대표단 명단 추천 요청

- 외무부는 1990.6.25. 관련 부처에 제2차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할 명단 추천을 요청함.

184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2 기본문서 II(6.26.-7.1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7/1-175

1990.7.30.~3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관련 내용임.

1. 제2차 APEC 각료회의 참가계획 수립(대외협력위원회 보고안건)

- 회의개요, 참가의의, 의제별 토의전망 및 한국입장

2. 제2차 APEC 각료회의 관련 각국 동향 보고

- 외무부는 APEC 공관이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바, 동 내용은 싱가포르 측의 회의 운영방침, APEC 진전에 대한 각국평가, 금번 회의에 임하는 각국 기본입장 및 성과 전망, 참가국 확대문제에 관한 각국입장 등

3. 제2차 APEC 각료회의 초청서한 접수

- 주싱가포르대사는 1990.7.6. 주재국 상공장관 명의의 한국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앞 초청서한을 송부함.

4. 제2차 APEC 각료회의 대표단 훈령

- 일반 훈령
 - 아태협력을 1990년대와 21세기에 있어서 한국이 주력할 새로운 외교영역으로 확보하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 수행의 기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추진. 제2차 APEC 각료회의가 내실있게 개최됨으로써 제3차 서울 각료회의에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 등
- 세부 훈령
 - 의제1(세계 및 지역경제 정세/지역경제 전망), 의제2(세계 무역자유화 및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의제3(협력사업 진전상황 보고 및 승인), 의제4(기타 사업), 의제5(참가국 확대문제) 등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3 기본문서 III(7.12.-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8/1-216

1990.7.30.~3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관련 내용임.

1. 제2차 APEC 각료회의 참석 재가

- 노태우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차 APEC 각료회의에 외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참석을 재가함.
- 회의 참석 목적 및 의의
 - 1989.1월 한·호주 양국 정상간 합의로 추진된 APEC 각료회의에 주도적 참가, 외교적 위상 강화
 - APEC 각료회의의 계속화 및 발전 모색의 일환으로 제3차 APEC 각료회의(1991년, 서울)의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
 - 7개 협력사업 추진 적극 참여 및 한국입장 반영
- 주요 활동
 - 각료회의 참석
 - 회의참가 각료와의 회담

2. 문건에 관한 사전협의

- Issues Paper, Uruguay Round 관련 공동성명, 제2차 APEC 각료회의의 공동성명 등

3. 양자회담 개최 추진 및 결과

- 외무부는 1990.7.12. 주싱가포르대사에게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필리핀 측과 각각 양자 외무 장관회담 개최를 추진 중임을 통보함.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Baker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북대화, 한미안보협력, 한·소련 관계 등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나카야마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남북한 관계, 한·소련 관계, 일·북한 관계,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모스베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문제,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 담배유통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무토 일본 통상장관, 블루위트 호주 통상 교섭장관, 무어 뉴질랜드 외무무역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아태 경제협력,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양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184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4 의제별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 / 9 / 1-169

1990.7.30.~3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의 의제별 자료임.

1. 제2차 아태 각료회의 의제별 입장검토(1990.7월, 경제기획원 작성)

- 의제 1(세계 및 아태지역의 경제발전과 전망), 의제 2(세계무역자유화와 UR(우루과이라운드)), 의제 3(APEC 협력사업 및 진전상황 보고)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1848

2. Talking Point 자료

- 에너지분야, 투자·기술이전 증대, HRD-기술훈련센터 분야 등

3. Issues Paper 자료

- 제2차 APEC 각료회의의 의제1(세계 및 지역경제정세 / 지역경제전망) 토의자료로서 한국이 작성, 제출하기로 된 지역 현안문서(Issues Paper)

4. 외무부가 작성한 제2차 APEC 각료회의 참가자료

- 개회 발언
- 의제별 회의 자료
 - 세계 및 지역경제정세/지역경제전망
 - 세계무역자유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 아태 우선협력사업(APEC Work Projects)
 - 기타 사업보고
 - 참가국 확대
 - 기타 사항
- 폐회 발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5 말씀자료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 / 10 / 1-123

1990.7.30.~3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의 말씀자료 및 언론보도 등 자료임.

1. 한·호주 외무장관회담 말씀자료

- APEC 진전상황에 대한 평가, APEC의 장래문제, 참가국 확대문제 협의, 제3차 서울 각료회의 대책 협의

2. APEC 협력사업 추진 현황자료

- 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간사국 회의 결과, 무역진흥 W/G회의 결과, HRD W/G회의 결과, 해양자원보존(아태지역 해양오염문제), 전기통신전문가 W/G회의

3. 제2차 APEC 각료회의 시 장관 연설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외무부 해당실국에서 송부한 자료

- 무역자유화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일방주의와 UR, 세이프가드, 서비스, TRIMs,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WTO(세계무역기구) 등

4. 외무부장관의 언론회견 자료

- Korea Times 회견자료, MBC 회견자료, KBS 회견자료

5. APEC 각료회의 관련 언론보도

- 조선일보, Korea Herald, Korea Times 보도

184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2차. Singapore, 1990.7.30.-31. 전6권 (V.6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 / 11 / 1-103

1990.7.30.~3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개최 결과보고 내용임.

1. 주요 토의내용 및 합의사항

- 세계 및 아태지역 경제정세 및 전망
- 세계무역자유화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UR 협상의 성공적 연내타결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별도 선언문 채택
- 협력사업 승인
 - 7개 우선협력사업(무역진흥, 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인력자원개발, 투자 및 기술이전, 에너지 협력, 해양자원 보존, 전기통신)의 진전상황 보고에 입각, 사업내용 승인
- 참가국 확대문제
 - 각료들간의 비공식 논의를 통하여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의 조기·동시 참가 원칙에 합의
- 차기회의 개최문제
 - 제3차 서울 각료회의는 내년 10월 중순, 제1차 고위실무회의는 금년 10월 하순 개최 합의
 - 제4차 각료회의는 태국, 제5차 회의는 미국이 각각 주최하기로 결정
- 공동성명 발표
 - 금번 회의결과를 종합한 30개항의 공동성명 발표(UR에 관한 APEC 선언문 별도)

2. 한국 대표단 활동

- 회의 참가활동
 - 세계 및 지역경제 정세·전망(의제1)에 관한 외무부장관 기조발언
 - 세계무역자유화 및 UR(의제2) 토의 시 상공부장관 연설
 - 우선협력사업(의제3) 토의 시 상공부장관 발언(무역진흥사업)
- 양자회담 개최
 - 외무부장관: 미국, 일본, 캐나다, 필리핀 외무장관과 별도회담
 - 상공부장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별도회담

3. 후속 조치

- 대통령에게 제2차 APEC 각료회의 개최 결과보고 및 관련 부처에 송부
- 해당공관에 제2차 APEC 각료회의 개최 결과 및 공동선언문 송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Vancouver(캐나다), 1990.9.11.-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정특반

MF번호 2020-129 / 12 / 1-307

정부는 1990.9.11.~12.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통상장관회의에 박필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참가국: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 의제: 농산물, 섬유 등 UR 15개 협상항목 전반

2. 회의 결과

- 회의 성과
 - 섬유,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조치, 농산물 등 일부분야에서는 실질적 의견 접근 도달
 - 농산물 관련 한국은 미국, 캐나다 대표들과 개별 막후 접촉, 의장 요약문에 비교역적 요소를 최대한 인정한다는 항목 추가
- 한국의 토론 참여
 - 한국 수석대표가 무역규율분야 주제 발표
 - 농업기반이 취약한 한국이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최근 농민, 농업 관련 단체, 종교단체, 정당 및 국회 등이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격렬한 반대로 정치·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함.
- 양자회담 개최: Crosbie 캐나다 대외무역부장관, Blewett 호주 통상장관, Muto 일본 통상장관, Carla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

3. 자료

- UR 협상 분야별 말씀요지
- 벤쿠버 APEC 통상장관 회의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

18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환경장관회의. Bangkok, 1990.10.15.-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29 / 13 / 1-146

정부는 1990.10.15.~1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환경장관 회의에 한수생 환경처차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정주년 주태국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명칭

- 아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각료급 회의

1852

2. 참가국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35개국) 및 준회원국(6개국), 옵서버국(12개국, 북한 포함), 국제기구(14개) 및 기타기구(4개)

3. 회의 목적

- 아태지역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및 지역전략 채택
- 환경과 발전분야의 아태지역 협력방안 모색

4. 회의 개최 결과

- 아태지역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장관 선언문 채택
- 아태지역 환경상태보고서 검토
-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위원회 건의사항 이행실태와 아태지역의 향후조치 방향
-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 지구환경 문제의 아태지역에 대한 의미
- 환경과 개발분야에서의 지역협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
-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를 위한 지역적 inputs

5. 평가

- 일본 등이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 개도국입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중국, 말레이시아 대표 등이 협조하여 각료선언문에 개도국입장을 상당 반영함으로써 향후 환경 관련 회의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됨.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0.3.7.-8. 전3권 (V.1 기본문서 1(1989-90.1.2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29 / 14 / 1-157

정부는 1990.3.7.~8.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1차 SOM(고위실무회의)에 이시영 외무부 정특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APEC 각료회의 관련 추진계획

- 싱가포르 측은 상공부 차관보의 각국 수석대표 앞 서한을 통해 APEC 각료회의 및 고위실무회의 추진 계획을 통보함.
- APEC 각료회의 및 고위실무회의 개최 시기
 - APEC 각료회의: 1990.6.26.~27.(7월 중순으로 연기 가능성 불배제)
 - 고위실무회의: 1990.2.1.~2.(1차), 5.2.~4.(2차), 제3차(필요시), 6.25.(최종 점검 회의)
- 제1차 APEC-SOM 의제
 - APEC 각료회의 결과(후속조치), Work Program: 사업별 우선순위, 주관국가 선정 및 작업 추진방안,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력방안, 참가국 추가문제 등 7개항

2. 정부대표단 임명

- 외무부는 1990.1.17. 주싱가포르대사에게 이시영 정특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주재국에 전달하록 지시함.

3. 제1차 APEC-SOM 연기

-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1차 APEC-SOM에 앞서 JMM(아세안합동각료회의)를 개최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정하고, 아세안대사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함.
- 주싱가포르대사는 1990.1.24. 주재국 외무성 담당국장으로부터 제1차 APEC-SOM이 연기될 것임을 통보받았다고 보고함.

185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0.3.7.-8. 전3권 (V.2 기본문서 2(1990.1.26.-3월))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정특반

MF 번호 2020-130 / 1 / 1-209

1.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SOM(고위실무회의) 개최 통보

- 주싱가포르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제1차 APEC-SOM을 1990.3.7.-8. 개최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2. 대표단 훈령

- APEC 각료회의가 한국의 태평양시대 외교의 주무대로서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
- 제2차 APEC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제3차 서울 개최 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

3. 회의 결과

- 제2차 APEC 각료회의를 1990.7.30.~31. 개최하기로 합의
-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적극 협력: 캐나다 벤쿠버 개최 APEC 통상장관회의에 적극 참가, 제네바 고위실무회의 강화
- 6개 우선협력사업 선정, 간사(sheperds) 국가 지정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0.3.7.-8. 전3권 (V.3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2 / 1-203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1차 SOM(고위실무회의)의 사업제안 및 대책에 관한 내용과 동 회의 개최 시 발언 자료임.

1. APEC 사업 관련 미국 측 제안 및 대책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1.30. 외무부에 작업계획(work program) 관련, 에너지 등 4개분야를 우선사업으로 제시하고 역내 에너지 협력증진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함.
- 외무부는 부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 측 제안문서에 대한 입장을 정함.
 - 상기 Working Group 구성이 우선착수 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미국 측 제안 지지 고려
 - 에너지 동향에 관한 정보교환 및 대체에너지 공동연구개발 Group 구성 지지
 - 교통 및 관광 관련 미국입장 지지 가능성 고려

2. APEC 사업 관련 호주 측 제안 및 대책

- 주한 호주대사는 1990.2.16.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 면담 시 호주 측 제안문서(Work Program Review of Trade and Investment Data)를 전달
- 상공부는 역내교역 및 투자흐름에 관한 데이터 현상과 그에 따른 동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에 있어서는 한국입장과 일치한다고 검토

3. APEC 사업 관련 일본 측 제안 및 대책

- 일본은 Asia International Pacific Fair 개최를 제안
- 상공부는 일본의 아태 박람회 구상은 기본적으로는 추진내용 등이 한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아태 올림픽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일본 제안사업에 대한 찬반의견 표시보다는 한국의 추진사업(역내 무역진흥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각국의 동향을 파악한 후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제시

4. 회의 개최 시 발언요지(영문)

- 의제별 발언자료

185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2차. Singapore, 1990.5.21.-2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3 / 1-174

정부는 1990.5.21.~22.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2차 SOM(고위실무회의)에 이시영 외무부 정특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APEC 각료회의 준비 유관부서 회의 개최(1990.3.20.)

- 논의내용
 - 제1차 APEC-SOM 결과 설명
 - 사업별 주무부서 선정
 - 한국이 간사국으로 지정된 사업: 무역진흥, 다자간 인력자원개발

2. 대표단 훈령

- 아태협력이 21세기에 있어 한국의 새로운 외교영역을 확보하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 수행의 기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전되도록 추진
- 아태지역 협력의 틀에 미국의 적극 참여를 확보하고 역내 선진·후진국의 평등하고 균형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의 중간자적 입장을 활용
- 제2차 회의의 내실있는 개최로 제3차 서울 각료회의에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
- 아태협력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중심의 세계 자유무역 질서유지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도록 유인

3. 제2차 APEC-SOM(1990.5.21.~22.) 결과

- 참가국: 회원국(12개국), 아세안사무국,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SPF 옵서버
- 협의결과
 - GATT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APEC 차원의 협력강화 합의
 - 6개 우선협력사업 추진 현황 검토
 -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작성 문제: PECC 측이 보고서 제출
 - 참가국 확대 문제: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의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확인
 - 제2차 APEC 각료회의 가의제 결정
- 한국대표단 활동
 - 각국대표단과 양자 협의
 - 차기 의장국으로서 서울 각료회의 개최 막후 협의 진행



● 관찰 및 평가

- 7월 각료회의 대비, 우선협력사업 추진현황 준비 완료
- 회원국 추가 문제는 당분간 기대 난망
- 제3차 서울회의에 대한 기대 고조

18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2차. Singapore, 1990.5.21.-22. 전2권 (V.2 참가보고서 및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4 / 1-141

1858

1.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2차 SOM(고위실무회의) 참가 보고서

- 회의 개요
 - 명칭: The Second Meeting of the Asia-Pacific Economic Senior Officials' Meeting
 - 기간 및 장소: 1990.5.21.~22. 싱가포르
 - 참가: 12개국 113명,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아세안사무국, SPF 옵서버
 - 한국대표단: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 등 10명
 - 의제: UR(우루과이라운드) 협력 방안, 협력사업 추진 현황보고, 여타 사업 추진, 각료회의 의제, 참가국 확대
- 회의 결과
 - UR 관련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합의
 - 6개 우선협력사업 추진 현황 검토 및 통신분야 추가
 -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작성 문제: PECC 측이 보고서 제출
 - 참가국 확대 문제: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의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확인
 - 제2차 APEC 각료회의 가의제 결정
- 한국대표단 활동
 - 각국대표단과 양자 협의
 - 고위 실무회의 토의 및 막후 협의 진행
- 관찰 및 평가
 - 7월 각료회의 대비, 우선협력사업 추진현황 준비 완료
 - 회원국 추가 문제는 당분간 기대 난망
 - 제3차 서울회의에 대한 기대 고조
- 건의사항
 - 서울 각료회의 관계
 - 우선협력사업 추진 관계

2. 자료

- List of Possible Work Projects
- 제2차 아태각료회의 준비 제2차 고위실무회의: 유관부서회의 자료
- 제2차 아태고위실무회의 대책(안)
- Summary Record of the 2nd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enior Officials' Meeting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0.10.22.-23. 전3권 (V.1 기본문서 1(1990.7.-10.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5 / 1-145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1차 SOM(고위실무회의)이 1990.10.22.~23. 서울에서 개최됨.

1. 제1차 서울 APEC-SOM 개최준비

- 잠정 개최일자 통보
 - 외무부는 1990.8.25. 제1차 서울 APEC-SOM의 1990.10.23.~24. 개최 결정내용을 재외공관을 통해 APEC 회원국에 통보
- 각국별 개최 희망일자
 - 싱가포르: 일정에 동의 표시, 아세안 6개국의 동의 예상
 - 말레이시아: 10.22.~23. 희망
 - 태국: 밴쿠버 APEC 통상장관회담 시 개최시기 결정 희망
 - 인도네시아: 10.22.~23.로 하루 앞당기는 방안 제시
 - 미국: 일정에 동의 표시
 - 호주: 일정에 이의 별무
- 개최계획 확정(9.6.)
 - 일자: 1990.10.22.~23.
 - 장소: 서울 신라호텔
 - 참가국: 역내 12개국 대표 약 120명
 - 회의주재: 외무부 정특반장
 - 의제(안): 제2차 APEC 각료회의 결과보고, 우선협력사업관계 토의, 참가국 문제협의 등

2. 제1차 서울 APEC-SOM 개최 일정 통보 및 설명

- APEC 회원국 주한외교단 초청 브리핑
 - 시기: 1990.9.14.
 - 내용: 잠정회의 일정 등 회의 전반 설명, APEC 회원국 대사관별 연락관 지정 및 수시 연락체제 유지
- 참가국 통보
 - 외무부는 9.12. 개최일정을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 의제 등 협의
 - 외무부는 10.10. 각 의제에 관한 회원국 의견, 제출문서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185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0.10.22.-23. 전3권 (V.2 기본문서 2(1990.10.15.-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6 / 1-192

정부는 1990.10.22.~23.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1차 SOM(고위실무회의)에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SOM 의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12개국 102명(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 6개국), 기타 옵서버(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아세안사무국 및 SPF)

2. 훈령

- APEC 의장단 수임을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위상 확립과 지역협력의 주도 계기로 활용
- APEC이 아태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 기여
- 중국, 홍콩, 대만(구 중화민국)의 APEC 참가교섭에서 SOM이 3자와의 교섭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합의 유도 등

3. 주요 성과

- SOM 및 SOM 의장 기능 강화
- 중국, 대만, 홍콩과의 APEC 참가교섭 권한을 의장국(한국)에 명시적으로 위임
- 협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검토: 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 인력자원개발, 에너지협력 등
- 각료회의 의제 준비: 서울 각료회의 토의자료와 정책건의서 준비의 중요성 인식, 차기 SOM에서 구체적 의제 검토 합의
- 제2차 SOM 잠정일정을 1991.3.5.~6. 합의

4. 평가

-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확립
- 1991년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차적 토대 확립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0.10.22.-23. 전3권 (V.3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7 / 1-158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제1차 SOM(고위실무회의) 관련 자료임.

1. 준비자료

- APEC 협력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자료(관계부처 의견 종합)
 - 투자기술이전 확대, 인력자원 개발사업, 에너지협력, 해양자원보존
 - 관광분야의 우선협력사업 추가문제, 수산분야
- 의제별 각국 의견종합
 - 제1차 SOM 관련 기본입장, 희망사항
 - 싱가포르 각료회의 및 밴쿠버 통상장관 회의 결과
 - Work Projects
 - 협력사업 추가
 - 참가국 문제
 - 각료회의 의제 준비
- APEC 협력사업 진전상황 및 한국입장 검토
 - 7개 APEC 협력사업 진전상황 및 한국입장: 무역 및 투자데이터,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 인력자원개발, 에너지협력, 해양자원보존, 통신
 - APEC 협력사업 확대에 관한 입장: 교통, 관광, 수산협력

2. 참고자료

- APEC-SOM Programme
- Progress Report: Working Group on Trade Promotio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 Provisional Agenda
- Participants List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역 및 투자데이터(TID) 검토 간사국 회의. 동경, 1990.7.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8/1-167

정부는 1990.7.9. 도쿄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사업의 간사국(일본, 미국, 싱가포르) 회의에 주일본대사관 APEC 담당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1. 참가국

- 간사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 옵서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PECC(태평양경제협력 위원회)

2. 의제

- 제2차 SOM 보고
- Inventory 관련 보고서 및 코멘트
- 설문지 포함 내용 토의
- 서비스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상 예상문제 토의
- 제2차 APEC 각료회의 보고용 Progress Report 채택

3. 합의사항

- 제2차 각료회의 보고: 회의시 채택된 Progress Report에 4개 문서를 첨부하여 보고
- 상품교역분야 Inventory 보완: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 설문지 형식을 통해 보완
- 서비스교역 및 투자의 Inventory 작성: 뉴질랜드와 호주가 초안을 각각 작성하기로 결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WGTP(무역진흥 실무그룹) 회의, 제1차. 서울, 1990.6.28.-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9 / 1-340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WGTP(무역진흥 실무그룹) 회의가 1990.6.28.~29.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위

- 1990.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각료회의의 준비 고위실무회의에서 6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사업별 간사국가 지정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무역진흥 협력프로그램 및 메카니즘'의 간사국가로 선정되어 제1차 APEC / WGTP 회의를 1990.6.28.~29. 서울에서 공동 개최

2. 참가국

- APEC 12개국 53명
 - 한국은 정부, 민간 연구소 전문가 17명 참석
- 공동의장
 - 한국 측: 신국환 상공부 1차관보
 - 말레이시아 측: Ngian Yet Chong 상공부 국제무역 부국장

3. 주요 결과

- 5개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별 주관국가 선정
 - 아태무역진흥훈련센터(한국), 무역 및 산업정보의 교환(싱가포르), 아태무역진흥세미나 개최(호주), 아태무역박람회 개최(일본), 무역 및 경제사절단의 교환(미국)
- 역내 무역확대에 긴요한 UR(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 이후 무역협력방안도 적극 검토
- APTPA(아태무역진흥기구) 설립방안은 민간의 참가문제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협의
- 한국이 동 실무회의의 결과를 제2차 APEC 각료회의(1990.7월)에 보고

4. 평가

- 그간 APEC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던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APEC의 계속성에 대한 밝은 전망 기대 가능
- 무역진흥사업의 주관국가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분되었고 APEC 추진에 있어 한국의 중개자적 역할 및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발판 구축

186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투자 및 기술이전 실무그룹 회의, 제1차. 동경, 1990.11.8.-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10 / 1-252

정부는 1990.11.8.~9.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투자 및 기술이전 실무그룹회의에 윤지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90.10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APEC 고위실무회의에서 논의된 투자 및 기술정보망 구축, Technopark 설립 지원 문제 등 협의

1864

2. 참가국

- APEC 12개국 46명

3. 정부 훈령

- 투자 및 기술이전사업이 아태협력의 견인차가 되고 제3차 서울 APEC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추진 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
- 역내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

4. 한국 대표단의 활동

- 금번 회의에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지원하에 설립 추진 중인 아태투자정보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APEC의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정보망 구축 시 동 센터가 핵심 연구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국은 동 회의에서 투자 및 기술정보망 이전 확대를 위한 조정국으로 피선

5. 주요 결과

- 일본은 Technopark에 관한 Manual 및 Inventory를 작성하기로 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투자 및 기술정보망 구축 관련 자료를 조정국인 한국에게 1991.1월까지 서면 제출하기로 결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정특반

MF번호 2020-130 / 11 / 1-360

1990년 중 제1~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HRD(인적자원개발) 간사국 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7.2.~3., 도쿄)

- 경위
 - 제2차 APEC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1차 고위실무회의 합의에 따라 개최
- 참가국: APEC 11개국
 - 한국대표단: 윤지준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박을용 KDI 박사 등 5명
- 정부 훈령
 - HRD 사업이 아태협력의 견인차가 되고 제3차 서울 APEC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한국의 관심사업이 APEC / HRD 관련 사업 중 일부분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 주요결과
 - 참가국들은 자국들의 HRD 사업 추진현황을 서술한 자료를 일본 측에 1990.7.6.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HRD 사업을 검토 및 의견 조정하기 위한 조정국을 선정하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은 경제개발정책분야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핵심기관으로 KDI 역할을 제의하였으나 태국 측의 이의 제기로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
- 일본 측은 금번 회의에서 의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각국 대표들이 진지하게 토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

2. 제2차 회의(1990.10.18.~19., 싱가포르)

- 참가국: APEC 12개국
 - 한국대표단: 송영오 외무부 정특반 심의관 등 3명, 박을용 KDI 박사(고문)
- 정부 훈령
 - HRD 사업이 아태협력의 견인차가 되고 제3차 서울 APEC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HRD 사업이 양자간 차원을 넘어 진정한 다자간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주요 결과
 - HRD 핵심프로젝트의 잠정 조정국으로 한국(경제개발), 일본(기업경영), 호주(산업기술)가 지정되었고, 차기 제3차 간사국 회의는 1991년 캐나다가 주최하기로 합의
- 한국은 경제개발분야 관련 각국의 네트워크 및 구체적인 제안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정국 역할을 위임받아 당초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

186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90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 KOPEC(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0 / 12 / 1-244

1990년 중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KOPEC(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관련 회의가 개최됨.

1. PECC 개요

- PECC는 태평양지역 주요 국가 간 다변적 경제협력을 위한 비공식 협의체이며, 1990년 기준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태평양 도서국 등임.

2. KOPEC 개요

- KOPEC은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평양지역 국가간 상호협력 증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창설된 민간단체이며, 대외적으로 PECC에서 한국대표임.
 - 창설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사무국을 맡아 오다가 1990.1월부터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사무국 이관
 - 제7차 PECC 총회(1989.11월) 합의에 따라 1990.2월 KOPEC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설치

3. PECC 조정위원회 주최 무역정책포럼(1990.8.1.~4., 쿠알라룸푸르)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및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13개 PECC 회원국 및 소련 등 PECC 5개 비회원국 정부, 학계 전문가 참가
- 섬유, 서비스, 농산물 등 6개 UR 협상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UR 이후 다자무역체제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 절차 강화, 각국의 무역정책 법규의 명료화 필요성 강조
 - 한국 정부에서는 외무부, 경제기획원 관계자 6명 참가

4. KOPEC 주최 국제세미나(1990.11.4.~7., 서울)

- KOPEC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신태평양시대를 향한 과학기술협력'이라는 주제로 15개국 12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 개최
- 참석자들은 한태평양 국가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 인력개발, 연구개발 협력방안 토론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3차. 동경, 1990.5.20.-2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 번호 2020-131 / 1 / 1-120

정부는 1990.5.20.~23.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에 구평희 PBEC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파견함.

1. PBEC 개요

- 1967년 일본에서 설립된 태평양 연안국 경제계, 민간 기업인으로 구성된 민간기구로서 태평양 연안국 간의 경제협력과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1968년부터 매년 총회 개최
 - 한국은 1984년 제17차 총회 시 가입했고, 1986년 제19차 총회 주최
- 구성
 - 국별위원회: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구 중화민국), 멕시코, 페루
 - 지역위원회(정식 회원국이 아닌 역내국가): 아세안, 홍콩, 중남미

2. 제23차 PBEC 총회

- 참가국: 아태지역 18개국, 550여 명의 경제계 지도급 인사
- 주제: 변화하는 1990년대 세계 환경속에서 태평양 협력
- 토의 내용
 -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로 개최되었으며 제1분과위는 기술 이전, 제2분과위는 국제경제 통합의 문화적인 양상, 제3분과위는 아태지역 무역, 투자 및 자본 흐름, 제4분과위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세계주의 유지, 제5분과위는 아세안-경제성장 지속에 대해 토론, 제6분과위는 태평양지역에서 자연환경 변화에 대해 토의
 -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아태지역 국가원수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원격으로 특별 연설
 - 홍콩, 페루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고, 소련은 옵서버국으로 계속 참가하기로 결정. 또한 PBEC 대표를 APEC에 옵서버로 파견하도록 노력하고 아세안의 PBEC 총회 참석을 권유
- 주요 인사 언급요지
 - 노태우 대통령은 원격 연설에서 개방적 협력을 통한 자유경제체제의 강화 등 아태지역 4원칙을 강조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역내경제발전은 민간의 창의력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 강조
 - 가이후 일본 수상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역내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마찰 해소가 아태지역 성장에 중요하다고 언급

1867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3차. 동경, 1990.5.20.-23.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1 / 2 / 1-367

1990.5.20.~23.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일정, 영문 연설문 및 토론 자료 등임.

1. 총회 자료

- 전체회의 일정, 공동성명문 등
- Rokuro Ishikawa PBEC 일본 회장의 기조연설문
- 분과위원회 회의 각 회원국 대표 발표문

1868

2. 인공위성을 통한 아태지역 국가원수들의 특별연설문

- George Bush 미국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Carlos Salinas 멕시코 대통령, Paul Keating 호주 총리 대행 등

3. 일본 PBEC 위원회 발간 태평양 협력 민간 중견실무연수프로그램 안내 책자

태평양연안국협의회(PACRIM) 회의. San Francisco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131 / 3 / 1-90

제3차 PACRIM(태평양연안국협의회) 회의가 1990.9.9.~12.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1. 경위

- 1984년 서호주 정부는 서호주의 경제개발을 위해 WADC(서호주 개발공사) 창설
- WADC는 1986년 PACRIM 심포지엄을 주최하였으며 동 심포지엄이 성공을 거두자 태평양 연안국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제1, 2차 포럼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3차 PACRIM 포럼을 1990.9.9.~12.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2. 의제안

- 태평양 연안국 경제권의 변화, 시장으로서의 아시아 대중
- 중국의 발전과 태평양 연안국에 미치는 영향
- 세계금융 동향 및 동북아에 집중된 자산의 의미
- 역내 프로젝트 전망 및 금융기회, 무역블록의 장래
- 태평양 연안국 기업의 성공사례, 지속적인 개발 및 환경을 위한 지도력

3.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초청

- C. Lawrence 서호주 정부 총리는 1990. 4.9.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제3차 PACRIM 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 초청
- 외무부는 5.9. 노 대통령이 9월 대외일정상 포럼에 참가하는 어려우나 사전 녹화방식에 의한 연설 참가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

186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 중미과

MF번호 2020-131 / 4 / 1-236

1990년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NAFTA 체결 추진

- 미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인구 4억의 북미단일시장을 형성하여 자본, 물자,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역내 통상증대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부터 NAFTA 결성을 추진함.
- 미국은 연간 106억 달러의 대캐나다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지원,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1992년 EC(유럽공동체)의 통합,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함.

2. 추진 경위

- 1985.9월 미국과 캐나다 정상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선언에 서명하고 1988년 미·캐나다 간 FTA에 서명(1989.1월 발효)
- 1990.3월 캐나다와 멕시코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으며 캐나다 수상은 미·캐나다 간 FTA에 멕시코의 참여를 권유
- 1990.6월 미국과 멕시코 정상은 양국간 FTA 체결에 합의
- 1990.9.25.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미·캐나다·멕시코 간 FTA 체결 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법적검토 요청

3.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

- 캐나다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진출과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 하지만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과 경쟁을 우려함.
- 멕시코는 인접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 확보, 해외투자 유치 등 국내 경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석유산업분야는 협상에서 제외를 희망함.

카리브지역 연구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1 / 5 / 1-148

1989~90년 중 제13~14차 카리브지역 연구회의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됨.

1. 제13차 회의(1989.11.28.~12.1.)

- 참석자
 - 자메이카, 세인트루이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등 카리브 연안국 총리와 미국 행정부 관리 및 의회 의원, 중남미 및 미국 실업인 등 200여 명
 - 대표단(한국 측): 김영목 외무부 미주국 서기관
- 주요 협의 사항
 - 봉제, 가죽, 석유화학 제품, 설탕 등 카리브지역 생산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특혜 확대 요구
 - CARICOM(카리브공동체) 경제통합문제, 마약문제 등 역내 주요 문제

2. 제14차 회의(1990.12.4.~7.)

- 대표단(한국 측): 김해선 본부대사, 김주택 외무부 미주국 사무관
- 대표단 활동내용
 - 주요 인사 면담: 니카라과 대통령, 세인트 빈센트 총리 등
 - 총회 연설
 - 각종 회의 참가

18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EC(구주공동체)와 태평양 연안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구주 의회 결의안, 1989.3.1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 서구1과

MF번호 2020-131 / 6 / 1-58

1989.3.17. EC(구주공동체) 구주 의회가 채택한 EC와 태평양연안국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EC·태평양연안국 경제관계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을 1988.12.1. James Moorhouse 구주 의회 의원(영국 보수당)이 대외경제위원회에 제출함.

- EC는 균형된 발전을 위해 한국 국내시장의 개방, 특히 수입허가 관련 행정조치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계속 압력을 행사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동등 보호 획득이 필요함.
- 한·EC 간 교역증대를 통해 한국의 대미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함.

2. EC 구주 의회는 1989.3.17. EC와 태평양 연안국과의 경제·무역 관계에 관해 아래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EC와 태평양 연안국 간 경제·통상 관계 강화의 중요성 강조
-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 등 경제 환경의 발전에 대한 책임 인식 필요
-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 필요
-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한국의 EC에 대한 대미 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한국의 수입추천제 폐지 요청
- 일본 및 한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상호주의 적용 및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치 필요
- 반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 강화 필요

Andriessen, Frans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0.3.24.-2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131 / 7 / 1-69

Andriessen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990.3.24.~27. 방한함.

1. 방한 목적

- 1990.3.26. 주한 EC대표부 개관식 참석

2. 방문인사

- Frans Andriessen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관계·통상정책담당 집행위원 내외
- Giola 대외총국 부총국장 등 수행

3. 주요 방문일정

-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 주한 EC대표부 개관식 참석

4. 주요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면담
 - 1992년 EC 단일시장을 앞두고 상호협력 증진방안 협의
 - 동구권 변혁과 관련하여 구주, 세계정세 및 UR(우루과이라운드) 추진에 대한 의견교환
-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시 한·EC 경제관계 확대방안 협의
- 무역협회 주최 오찬 연설회에서 EC 경제통합 연설

187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ECOWAS(서부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1 / 8 / 1-71

1988~90년 중 제11~13차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의가 개최됨.

1. 제11차 정상회의(1988.6.24.~25., 토고 Lomé)

- 16개 회원국 중 기니 대통령을 제외한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15개국 국가원수 참석
 - 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의장국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 역내 무역자유화의 조기 시행, 회원국 분담금 지불이행, 역내 인적교류 자유화, 기금 합리화를 위한 노력 표명

1874

2. 제12차 정상회의(1989.6.28.~29., 브루키나파소 Ouagadougou)

- 10개국 국가원수와 6개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아래 사항을 발표
 - 자연보호, 농업 생산 증가, 농산물 가격 정책의 합리화, 동물병 퇴치를 위해 노력
 - 역내 경제통합 조치를 위한 장애물 제거에 노력
 - 역내 이민노동자의 추방, 강제이주, 본국 송환사례 등 조치 구체화
 - 서부아프리카 총부채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채권국가들의 관대한 협조를 호소

3. 제13차 정상회의(1990.5.29.~30., 감비아 Banjul)

- 7개국 정상 및 외상급 각료 참석
-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동구의 개혁, 유럽의 경제통합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공동 대비책과 역내 국가 간의 단합문제 협의
 - 역내 단일 경제권 촉구
 - 역내 통합추진
- 아프리카 아동보호 및 생존에 관한 결의문 채택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2차. Geneva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31 / 9 / 1-343

1989~90년 중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가 개최됨.

1.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제1차 회기(1989.11.13.~17., 제네바)

- 경위
 - UNEP(유엔환경계획)는 1989.8월 제1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방향을 토대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방안 등 각국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동 의정서 개정안 마련
- 의제
 - 규제물질의 생산소비 철폐일정 단축, 신규 규제물질 추가, 현행 개도국에 대한 예외 경과규정의 재검토
- 참가국
 -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33개국), 한국 등 미가입국(16개국)
 - 한국대표로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익관, 상공부 정밀화학과장 참가
- 정부 훈령
 -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논의에 한국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의정서 가입시기를 건의
 - 의정서 개정에 개도국의 경제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
- 회의 진행
 - 전체회의·기초위원회·개도국 조정위원회·실무그룹 회의로 나누어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권고안 심의
- 한국대표단 활동
 - Tolba UNE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건 협의
 - 전체회의에서 규제물질의 소비삭감과 전면금지 조치는 생산국 및 소비국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 주요 사안에 대한 미국·일본 등 입장을 파악하고 소련 측 대표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 협의
- 주요 결과
 -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 삭감일정 단축, 규제물질의 범위 확대 및 개도국 관련 조항 강화
- 평가
 - 2000년까지 규제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중지하는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이 기정사실화됨.
 - 규제강화에 대해 북유럽 국가와 EC(구주공동체)가 적극적이고 미국과 일본은 유동적이며, 한국, 소련, 동구국가들은 소극적임.

187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건의

- 미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수출입금지가 199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1991년 초까지 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건의

2.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제2차 회기(1990.2.16., 제네바)

- 규제물질 사용금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규모, 재정부담 산정에 포함될 항목, 재정부담의 주체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별무 진전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3차. Geneva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31 / 10 / 1-169

1990년 중 개최된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회의 내용임.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제3차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1차 회기(1990.3.8.~14., 제네바)

- 개최 경위
 - 제1차 협약국 회의(1989.5.2.~5., 헬싱키) 결정에 따라 실무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합의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조환복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 주요 의제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 단축 개정안 협의
 - 신규 규제물질 목록 추가 작성
 -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체계 및 관련 조항 검토
- 파견 목적
 -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논의에 한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규제일정 단축 내용을 파악, 한국의 가입대책 건의
 - 개정된 의정서 규제일정이 한국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국내업계 대책 마련

2. 제3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1차 실무회의(1990.12.3.~5., 나이로비)

- 한국대표: 주케냐대사관 담당관
- 주요 의제
 - 의정서 4조(비가입국과의 교역 규제) 이행상황
 - 의정서 4조(비가입국과의 교역 규제)에 따른 국별 조치 내용
 - 규제물질을 포함한 교역규제 물품리스트 작성
 - 의정서 4조(비가입국과의 교역 규제) 규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제반 문제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4차. London, 1990.6.20.-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31 / 11 / 1-19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4차 실무회의가 1990.6.20.~26. 런던에서 개최됨.

1. 경위

- UNEP(유엔환경계획)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 마련

2. 참가국

-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57개국)
- 한국, 인도, 중국 등 미가입국(20개국)
 - 한국대표: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익관, 상공부 정밀화학과장

3. 영국 환경장관의 연설

- C. Patten 영국 환경장관은 개회연설을 통해 21세기 전에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완전 감축하기 위한 의정서의 규제강화 및 기술이전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오존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4. 한국입장 반영 노력

- 주영국대사는 1990.6.23. D. Fisk 영국 수석대표를 면담하여 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동인은 한국입장에 이해 표명

5. 주요 합의결과

- 2000년까지 규제물질의 생산·소비 완전 철폐,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방안, 개도국에 대한 원조문제 등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함.
 - 몬트리올의정서 제10조(재정체계) 관련 개도국들은 동 의정서 가입 조건으로 프레온 대체기술의 공유 등 선진국의 기술지원과 원조를 주장한바, 개도국 입장을 수용하여 원조를 총괄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조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 F의 메틸클로로포름은 1993.1월 동결, 2000.1월까지 50~85%로 삭감하고, 제2조 E의 사염화탄소는 1993.1월 동결, 2000.1월까지 100% 삭감하기로 합의
 - 몬트리올 개정의정서는 20개국의 비준서 기탁 시 1992.1.1. 발효
- 몬트리올의정서 제4조(비가입국 제재), 제8조(비준수), 제19조(탈퇴) 등 대부분 조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어 재토의하기로 결정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2차. London, 1990.6.27.-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31 / 12 / 1-293

정부는 1990.6.27.~29.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에 오재희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가입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57개국
- 미가입국: 한국, 중국, 인도 등 20개국

2. 회의 일정

- 실무회의(6.20.~26.)
- 각료급 회의(6.27.~29.)

3. 주요 의제

- 의정서 개정 및 조정(CFC 사용규제 스케줄 등)
- 개도국 재정체계 및 기술이전 관계(신탁기금 설립 및 기술지원 방안 연구)
- 불준수(non-compliance) 절차 및 제도 장치

4. 한국 정부 입장

- 대선진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될 수 있는 1993.1.1. 이전까지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 동 의정서 가입을 위해 상공부는 규제물질 제조와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법 제정을 추진 중
- 한국은 개도국이면서도 규제물질 소비량이 0.6kg에 달해 개도국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선진국과 같은 재정부담 및 삭감일정 준수가 불가피
 -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개정안 규제일정의 지나친 강화 반대
- 현 몬트리올의정서는 규제물질 소비량이 0.3kg을 넘는 개도국은 재정·기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교섭 필요

187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1 / 13 / 1-131

1987~90년 중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 국무부 차관보 UAE 방문(1987.5.9.~10.)

- Zayed UAE 대통령 예방 시 논의사항
 - Murphy 차관보는 1987.5.9. 이란·이라크전 계속의 위험성 및 최근 미국·아랍 관계개선,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문제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설명함.
 - Zayed 대통령은 미국은 아랍지역 국가와의 우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란·이라크전의 종전을 위하여 미국·소련 양국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또한 미국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 Tian Jiyun 중국 부수상 UAE 방문(1989.3.16.~19.)

- 주요 협의내용
 - 팔레스타인 및 걸프만 정세 협의, 양국간 통상경제 및 투자진흥 문제 협의
 - 1989.12월 중 양국간 경제공동위 개최 합의

3. UAE·폴란드 외교관계 수립(1989.9.4.)

- UAE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중국,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와 수교한바, 금번 폴란드와 수교는 공산진영으로서 6번째임.

4. 제2차 UAE·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1989.11.25., 아부다비)

- 참석자
 - UAE 측: 재무공업부장관
 - 중국 측: 경제대외무역장관
- 결과
 - 중국기업의 JEBEL ALI 자유무역지대 진출여건 공동 조성 및 공공 및 사적부문에서의 상호투자 증대 등 권고 채택

5. Yang Shangkun 중국 주석 UAE 방문(1989.12.23.~24.)

- 방문 목적
 - 중국 주석의 UAE 방문은 중동 4개국 순방 일환으로써 동 지역에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계 긴밀화



- 방문 결과

- UAE에 건설공사 등에 중국인 근로자 다수 진출 등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인력진출 등 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6. Zayed 대통령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3개국 순방(1990.5.8.~23.)

188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아프가니스탄 사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중근동과

MF번호 2020-131 / 14 / 1-115

1990년 중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아프간 주둔 소련군 철수

- 아프간 주둔 소련군(약 10만 명)이 예정대로 1989.2.15. 철수를 완료
 - 1988.5.15. 철수 개시
- 의의
 -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미국·소련 등 강대국 합의의 중요성 재확인
 - 군사력에 기초한 소련의 팽창주의정책 한계 봉착
 - 외부 공산세력에 대항하는 아프간 민족세력 및 동 지원세력의 승리
- 아프간 신정부 구성 전망
 - 무자히딘은 500여 명의 자문협의회(과도정부) 구성문제 협의 진행
 - 나지불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정부의 정권 수호의지 재천명, 무자히딘 측과의 평화협상 모색
 - 무자히딘은 소련군 철수 후 현 친소련 정부의 붕괴 기대

2. 군사 쿠데타 발생

- 군사 쿠데타가 1990.3.6. 발생, 실패로 끝났으나 카불에서는 정부군과 쿠데타군 간 공방전이 진행
 - 친소정권인 나지불라 대통령의 심복인 국방장관이 무자히딘 반군 지도자와 공모
 - 나지불라 정부가 인민민주당의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파 124명을 체포,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불만 폭발

3. 아프간 민족대회의(1990.5.28.~29., 카불)

-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민족대회의를 개최하여 나지불라 정부가 제의한 헌법 수정문제 논의
- 회의 결과 및 전망
 - 현 정부 제의 헌법 수정안 동의: 다당제 채택, 경제자유화 포함
 - 단일 독재정당인 민족회의 해체 제의
 - 헌법 수정 동의에도 불구하고 내분상태 지속 전망

4. 대통령 인도 방문(1990.8.29.~31.)

- 인도 대통령, 수상 등 면담 시 인도 측은 아프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나지불라 대통령의 제안을 전폭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캐시미르 문제에 대한 아프간의 인도입장 지지 표명
- 나지불라 대통령은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연설에서 아프간 문제의 자체적인 해결, 아프간 내 휴전 후 제정파가 참여하는 평화회의 개최 등을 언급

알제리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31 / 15 / 1-73

1990년 중 알제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지방선거 실시

- 1990.6.12. 시의회 및 지역위원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실시
 - 28개 정당중 11개 정당 참가
 - 알제리는 1989.2월 헌법에서 종전의 1당제를 포기하고 복수정당제 도입
- 집권 FLN과 강경회교원리주의파인 FIS 간 대결에서 FIS가 승리
 - FIS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 50%를 상회하는 실업률로 시달리는 도시 청소년층의 지지로 승리한 것으로 분석
- 선거 결과가 FLN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1988년 말 이래 민주개혁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첫 심판으로 대통령의 입지를 어렵게 할 전망

2. 제3차 지중해지역 비동맹 외무장관 회의(1990.6.25.~26., 알제리)

- 알제리를 비롯한 사이프러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11개국 외무장관 참석
- 지중해 지역의 안보협력, 유럽의 정세변화, 동·서 긴장완화 등 논의
- 회의 결과 이스라엘의 지역 평화안보 위협 비난, CSCE와 PNAM 간의 정치대화 문호개방, EC (구주공동체)의 대지중해 정책 등에 관한 성명 발표

3. Chadli 알제리 대통령은 1990.7.25. 자신이 겸직한 국방장관직을 포함하여 23명의 각료 중 6명을 경질하고 2명을 전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함.

- 동 개각은 1990.6.12. 지방선거에서 FLN 참패 후 정부의 이미지 제고, 군의 독립성 제시로 민주화 개혁의지를 시현함.

4. Chadli 대통령은 1990.12.11.~18. 요르단, 이라크, 이란, 오만 등 9개국을 순방하여 UMA 의장국으로서 중동문제에 대한 알제리의 평화해결 노력을 과시하고 걸프위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188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알바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1 / 16 / 1-144

1990년 중 알바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0.11.14. Alia당 제1서기는 인민의회 연설을 통해 당정역할 분리, 의회기능 강화, 종교의 자유, 외국인 투자허용 등 민주화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을 선언함.

2. 대외 관계 동향

- 대미 관계개선 추진
 - 1990.5월 이래 관계 정상화를 위한 4차례 접촉
 - 알바니아는 대미 수교를 서두르는 입장이나, 미국은 페르시아만 사태 해결에 대한 전력투구 및 알바니아 개혁 정국 향방이 불투명한 관계로 수교에 미진한 입장임.
- 영국, 프랑스, 일본과의 관계개선 추진
 - 영국과 1991년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
 - 프랑스와는 1990.7월 티라나주 내 프랑스대사관 피신 알바니아인 망명 허용으로 악화 상태
 - 일본과는 11월 일왕 즉위식에 알바니아 외상의 참석 및 일본 외상과의 면담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가입 추진
 - 금번 파리에서 개최된 CSCE 정상회담(11월)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 CSCE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알바니아가 민주화 실현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가입을 거부함.

3. 평가 및 전망

- 알바니아 정부는 소련 및 동구의 변화, 루마니아의 정권붕괴 등 개혁 없이는 정권유지가 어렵다는 우려에서 일부 개혁정책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에는 소극적인 자세임.
- 민주화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도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개정된 선거법에서도 복수정당 제도를 불허하고 있어 근본적인 자유민주선거가 실시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전망

- 일반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조직적인 반체제 세력 부재 등으로 공산당 주도의 일당독재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서방 측의 대알바니아 관계개선은 알바니아 민주화 개혁의 진전 여하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알바니아의 구체적인 민주화 조치에 따라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2 / 1 / 1-196

1989~90년 중 아르헨티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

- 1989.5.14.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정의당(페론당)의 메넴 후보가 현 여당인 급진시민연합의 안헬로스 후보에 압승, 대통령에 당선됨.
- 여당(급진당)의 패배 요인
 -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경제정책 실패
 - 군정 시 인권침해 장교 처벌에 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노조 및 저소득층의 불만
 - 여당 내의 단합 결여

2.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책

- 1989.7.8. 취임한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Alfonsin 정권의 실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경제파탄, 특히 극심한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안정 회복, 군부와의 융화, 영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한 EC(구주공동체)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조성 등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실시함.

3. 군부 일각 반란사건

- 1990.12.3. 새벽 4시경, 대령급 장교가 인솔하는 약 50명의 반군들이 수도 내의 육군본부 건물을 점거하고 총사령관 등 군 지휘계통을 교체, 군 예산 증가 등을 요구함.
 - 이어 해군 특공대 등 300여명 병력이 수도권의 1개 병영 및 탱크 제조창을 점거
- 메넴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반군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함.
- 반군은 소규모 저항 후 동일 21:30 정부군에 투항함으로써 반란사태가 종결됨.
- 반군 진압과정에서 여·야당, 언론계, 시민단체 등은 전폭적인 정부입장을 지지함.

188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호주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2 / 2 / 1-257

1990년 중 호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2차 호주·PNG(파푸아뉴기니) 각료회의 (1990.1.18.~19., Port Moresby)

- 에반스 외무장관 외 국방, 자원, 법무장관 참석
- 양국간 경제개발, 국방협력 등 논의

2. 외무장관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1990.4.19.~28.)

- 에반스 장관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PNG, 뉴칼레도니아를 순방함.
 - 신정부 출범 후 해외 첫 방문으로 주변 도서국을 선택, 이 지역에 대한 호주의 관심을 재확인하고 대외원조문제 및 1990년 하반기 개최예정인 남태평양포럼 논의

3. 대중국 교류제한 완화

- 호주는 1989.7월 이래 시행하여 온 중국과의 교류제한 조치(고위인사 교류제한, 군수교역제한 등)를 일부 완화, 양국간 각료급 교류 허용 결정
 - 에반스 외무장관에 의하면 천안문 사태에 따른 계엄령은 최근 해제되었으나 중국 내 정치 환경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각료급 교류허용 조치는 사례별로 검토 시행 예정

4. 리투아니아 독립 문제

- 호주는 1990.3.28. 리투아니아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함.
 - 호주는 1940년 소련의 발트 3국 합병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온 기본입장을 재천명하고 소련에 대해 리투아니아의 독립선언 존중을 촉구

5. 호크 수상 외국 방문

- PNG 방문(1990.9.2.)
 - 양국 수상회담에서 부겐빌 사태, 양국간 경제협력 및 방위협력 문제, PNG 국내치안문제 등 협의
- 터키 방문(1990.4.23.~26.)
 - 제76주년 ANZAC Day 기념식, 주이스탄불 호주영사관 개관 행사 참석

방글라데시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32 / 3 / 1-69

1989~90년 중 방글라데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리펑 중국 총리 방글라데시 방문(1989.11.17.~19.)

- 주요 일정
 - 양국 정상회담, 중국 지원 부리강가 교량 시찰 및 기자회견
- 방문 결과
 - 관용비자면제협정, 1990~94년 무역협정, 요소비료 수입협정 등 협정 체결
 - 2개 교량 타당성 조사를 위한 각서교환
 - 베이징-다카 직항노선 개설협의 등

2. 최저개발국 각료회의(1990.2.10.~2.12., 다카)

- 최저개발국 42개국 중 30개국이 참가
- 198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1980년대 선진국의 대개도국 개발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고 1990년도 공동전략 협의
- 1990년대 신행동강령 채택을 요구하고 LDCS 총외채 600억 달러의 탕감을 요구하는 다카선언 채택

3.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글라데시 방문(1990.2.22.~24.)

- 엘사드 방글라데시 대통령과 홍수복구 및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등 협의
- 양국은 1989.12월 런던회의 합의에 따라 프랑스의 방글라데시 홍수방지 1단계 지원(25백만 달러) 약정서에 서명
- 이밖에 양국은 남아시아 내 분쟁의 대화를 통한 해결, 경제협력의정서 체결문제, 과학기술자 훈련문제 등 협의

4. 엘사드 방글라데시 대통령 외국 방문

- 영국 방문(1989.2.14.~18.)
 - 엘리자베스 여왕, 하원의장 등을 면담하고 대처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관심사 논의
- 프랑스 방문(1989.3.22.~25.)
 - 미테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파리 개최 1989년 방글라데시 원조공여국 회의 등 논의
- 이라크 방문(1989.8.14.~16)
 - 정상회담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 논의, 회교사원 기도회 참석

188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미국, 프랑스, 사우디 등 순방(1990.1.27.~2.6.)
 - 77 그룹회의 연설, 미 의회 조찬기도회 참석, 상하원 외교분과위원장, 베이커 국무장관, 미테랑 대통령 면담
- 이탈리아 방문(1990.3.20.~21.)
 - 경제협력 방안 등 협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중국 방문(1990.6.28.~7.2.)
 - 덩샤오핑, 리펑 총리 등 면담, 양국현안 협의

불가리아 정세.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2 / 4 / 1-196

1990.1~8월 중 불가리아 민주화와 국내정세 동향임.

1. 정치 및 경제상황

-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다당제 및 시장경제 도입 등 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생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식품 및 농산품의 품귀 사태로 외채가 급증,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1990.3월 외채상환 일시중단을 선언함. 재야 정당 등은 공산당의 권력독점 청산 미흡과 일방적 정국 주도에 반발하여 정부 퇴진 요구시위를 개최하였고 야당 단일화를 이룸.
- 3.29. 루카노프 불가리아 총리는 국영기업의 보조금 폐지와 사적소유권 일부 인정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방침을 발표함.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
 - 가격자유화 대상품목 확대(12%→40%)
 - 현행금리를 물가상승률에 일치
 - 실업수당 지급
 - 무역적자 및 외채규모 축소

2. 민선 의회 구성 및 대통령 선출

- 1990.4월 불가리아 의회에서 Mladenov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으며, 6월 자유총선이 두 차례 실시되어 사회당(구 공산당)이 승리함.
 - 사회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연정 구성이 불가피
- 한편 Mladenov 대통령은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관련된 실언으로 7.6. 사퇴하였고 수차례 투표를 통하여 8.1. 동 의회에서 야당 민주세력연맹 지도자인 Zhelev 대통령이 선출됨.
- 7월에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활동 추진 등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마비사태에 항의하는 파업이 단행됨.
- 8월 루카노프 총리는 신 민선내각 구성을 위하여 내각 총사퇴서를 동 의회에 제출함.

3. 불가리아 정치개혁 추진 동향

- 인민 의회는 1990.4.3. 국가의 성격을 변경한데 이어 대통령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승인
- 집권 공산당도 당 최고평의회 특별회의에서 당명을 불가리아 사회주의당으로 개칭
-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다당제, 시장경제 도입, 당·정 분리, 당 기구 개편 등 개혁
- 집권 공산당은 재야세력과의 원탁회의를 개최, 정치체제 개혁, 민주주의 확립, 원탁회담의 지위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협정 체결

188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불가리아 정세.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2/5/1-116

1990.9~12월 중 불가리아의 민주화와 국내정세 동향임.

1. 신내각 구성과 붕괴

- 대통령 요청으로 연립내각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거부로 사회당 단독 Loukanov 내각이 1990.9.21. 출범함.
- Loukanov 수상은 10월 야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 측은 이를 자신들의 개혁안 복사판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함.
- 결국, 개혁추진이 지연되고 고율의 인플레이션과 식량공급부족 등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총파업 등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동 수상은 11.30. 사임함.

2. 불가리아 정국 불화 심화 동향

- 불가리아 시민 10만여 명이 1990.11.16. 최대 야당연합세력인 민주세력동맹 주도로 수도 소피아에서 현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개최
- 과격시위대 1만여 명은 Loukanov 수상 공관을 포위하고 수상의 사퇴를 촉구
- 1990.11.17.~18. 1만 8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반정부 시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국불안이 심화됨.

3. 불가리아의 불안한 정국 분석

- 연정에서 배제된 야당세력이 동절기를 앞두고 생필품 부족사태 등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을 이용, 현 경제위기를 사회당 내각의 경제 실정과 연계시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데서 기인함.
- 그간 Loukanov 수상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어 왔고 정부의 가격인상과 국가독점 청산을 골자로 하는 '100일 경제계획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금번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동 수상이 보다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4. 신임 수상 취임 및 신내각 구성

- 불가리아 의회는 1990.12.7. Zhelev 대통령이 무소속인 Popov를 신임 수상으로 인준함에 따라 Popov가 수상으로 취임하였으며, 12.19. 비공산 연립정부가 43년만에 처음으로 출범함.
 - 1991.5월 총선까지 존속하는 과도내각 성격

미얀마 정세. 전2권 (V.1 1989-90.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32 / 6 / 1-253

1989~90년 중 미얀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얀마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

- 1989.2.17. 일본 정부는 미얀마 신정부를 승인하고 경제협력 등 재개
-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동향
 - 1989.4.13. 미얀마를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 1989.4.16. Moynihan 상원의원은 대미얀마 목재, 수산물 수입금지 법안 제출

2. 미얀마 정세 및 대책(1990.3월 주미얀마대사 보고)

- 주미얀마대사는 1990.2.27. 군사정부 수반인 소몽 장군과 면담 후 대미얀마 정책 보고
 - 소몽 장군 면담내용, 미얀마의 정치 및 경제 전망, 신정부와의 관계 및 대책 포함
- 미얀마 신정부가 한국을 가장 우호적인 협력국으로 우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경제 협력 및 EDCF(경제협력기금) 지원 등 건의

3. 미얀마 총선(1990.5.27.)

- 전체 485개 선거구에서 실시: 93개당 2,311명(무소속 포함) 입후보
 - 1960년 이후 30년 만에 최초의 자유총선을 평온하게 실시
- 선거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NLD(민주국민동맹)이 80% 의석을 획득하여 압승
 - 1988.9월 군사정부의 유혈 시위진압 및 억압정치에 대한 염증과 경제난이 승리 요인
- 한국 정부는 1990.6.22. 미얀마 총선 결과 공식발표에 관한 외무부 논평 발표
 - 공정하고 자유로운 총선 실시 환영 및 신정부가 평화적, 민주적 절차에 의거, 구성 기대
- 1990.7.28.~29. NLD 당선자 대회 개최
 - 군사정부에 정권이양 협의 촉구, 아웅산 수치 여사 석방 등 결의안 채택

189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얀마 정세. 전2권 (V.2 1990.9-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32 / 7 / 1-166

1990.9~12월 중 미얀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NLD(민주국민동맹) 간부를 체포한 미얀마 소몽 수상은 1990.9.7. 연설을 통해 전국민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 일부 외국 공관과 언론을 비난하면서, 외국 정부의 내정 간섭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항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소몽 수상은 자신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 왔으며, 무한정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힘.

1892

2. 미얀마 정세에 대한 주요국 반응

- 미국 주도 미얀마 민정이양 촉구 공동성명 추진
 - 미국 정부는 1990.5.27.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민정이양 약속을 지연시키는데 대해 우방국과 공동으로 항의 성명 발표를 추진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호주 등 대사들은 9.21. 공동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
- 미얀마 외무부는 9.12. 주재국 외교단장(소련대사) 앞 외교공한을 통해 외교단의 국내정치 간섭 행위 자제를 공식 요청
- 미얀마 정부는 10.5. 미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철회

3. 미얀마 반정부 단체의 태국민항기 피납

- 양곤행 태국민항기 TG 305편이 1990.11.10. 미얀마 반정부 단체 납치범에 피납되어 인도 캘커타공항에 도착함(한국인 승객 17명 탑승).
- 납치범들은 미얀마의 조속한 민정이양,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승객 및 승무원을 전원 석방함.

보츠와나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2/8/1-12

1988~90년 중 보츠와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Masire 보츠와나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1988.8.8. 앙골라 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고(추후 앙골라전투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명)로 인하여 Masire 대통령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8.10.자 위로 전문을 발송함.
- 1989.10.7. 총선에서 동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인 보츠와나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동 대통령은 6번째로 연임하게 됨.
 - 보츠와나 민주당은 3석을 추가로 31석을 확보함.
 - 제1야당인 좌경 보츠와나 국민전선은 2석을 상실하여 3석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단1석을 보유하고 있던 제2야당인 보츠와나 인민당은 원내의석을 확보하지 못함.

2. 대외 관계

- Masire 대통령은 1990.4.23. 외무장관 등 다수 각료를 대동하고 에스와티니(구스와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간의 공동 관심사와 우호증진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의 종식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 아파트헤이트를 종식하고 인종의 평등과 선린원칙을 존중하는 새로운 남아공 출현 기대
 - 약소국 안보에 대한 위협 증가와 약소국 존립 및 주권에 대한 관심 표명
 - 모잠비크와 앙골라 간의 평화 및 진실한 타협노력을 환영하며 이를 지지
 - SADCC(남부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를 지역개발과 통합의 견인차로서 인식
- Masire 대통령은 1990.7.22.~27. 나미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양자협정 체결 및 협력가능 분야와 남아공 사태, 앙골라 내전 등 역내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협정 체결: 방위 및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 공동위 설치협정, 문화·교육협력협정
 - 최우선 협력분야: 교통, 체신, 무역, 수자원개발, 환경보존, 관광, 에너지 및 광물, 교육분야
 - 국제 관계: 남아공 정부와 ANC(아프리카민족회의) 간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앙골라 정부와 UNITA(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 간 원활한 대화 추진을 위해 모든 당사자의 무력행사 자제, 나미비아의 SADCC 가입 지원 등

189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브루나이 정세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2 / 9 / 1-198

1985~90년 중 브루나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정치 정세

- 브루나이는 1984.1월 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 이래 막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H.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권력기반 강화 및 절대왕권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규제, 종교성 신설 및 이슬람 윤리를 강화하면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한편, 소득세 면제, 주택개량, 무료병원시설, 무상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 확보에 주력함.
- 브루나이 정부는 1986.10월 대폭개각을 통한 친정체제 구축, 1988.1월 브루나이 BNDP (국민민주당) 해체 등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 규제, 이슬람 율법 강화를 위해 1990.12월 주류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함.

2. 경제 정세

- 브루나이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산유국으로서 1985년 세계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6~90년)을 실시하여 다소 경제 회복세를 실현함.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요지는 개발은행과 중앙은행 설립추진, 자원의 이용 극대화,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증대, 인력개발 및 사회개발을 위한 시설확충 등임.

3. 대외 정책

-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과 동시에 영국연방 및 아세안, 유엔에 가입하여 독립국가로서 국제적인 기반을 구축함.
- 외교정책 기조는 왕정 수호 및 친이슬람 정책, 경제안정을 위한 아세안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강화, 서구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이며, 이슬람 왕정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공산주의 노선을 배격하며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
 - H. Bolkiah 국왕은 영국연방 수뇌회의 참석(1985.10월), 뉴질랜드 방문(1987.2월), 호주 및 독일 방문(3월), 인도네시아 방문(1990.9월) 등 해외 순방을 통해 우방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에 노력함.
 - 1990년 브루나이는 말리, 쿠웨이트, 니제르, 이라크, 이란, 튀니지 등과 수교하여 6월 현재 총수교국은 55개국임.

4. 대한반도 정책

- 제40차 유엔총회에서 브루나이 외상의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발언 등 브루나이 정부는 한반도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관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반공주의 노선을 견지함.
 - 1983.9월 주브루나이총영사관 개설, 1984.1월 한·브루나이 수교 및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1987.2월 주한 브루나이 공관이 개설됨.

볼리비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2 / 10 / 1-41

1990년 중 볼리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90년도 대통령 시정연설

- Paz Zamora 볼리비아 대통령은 1990.1.11. 전국 방송망을 통해 1990년도 시정방침을 발표함.
 - 균형예산편성: 조세행정의 부패척결, 생산성 향상
 - 긴축통화 및 가격정책
 - 투자촉진: 내외국인 투자장려, 자본재 도입 시 관세율 인하
 - 사회복지정책 등
- 시정방침은 전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의 수용 및 사회복지분야의 보강 도모
-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린 국민들은 1989.8월 출범한 Zamora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함.

2. 안데안 정상회담(1990.5.22.~23., 페루 Cuzco)

- 안데안 5개국 대통령이 회동하는 제3차 안데안 정상회담에서 지역의 경제통합 활성화 문제를 논의

3. 제5차 라틴아메리카 의회 특별총회(1990.3.19.~20., 볼리비아 라파스)

- 라틴아메리카 의회 14개국 대표 참석
- 동 회의에서 6개항의 결의 채택
 - 라틴아메리카의 외채문제를 연구할 국제이사회 창설 권고
 - 콘트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 즉각 중단 및 콘트라 해체 권고
 -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침공 규탄, 즉각 철수 요구
 - 볼리비아 해양통로 회복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볼리비아와 칠레 간 협상권고 등

4. Zamora 대통령 외국 방문

- 우루과이(1990.3.1.), 브라질(3.15.), 페루(7.28.)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미국 방문(1990.5.5.~8.)
 - 무역투자공동위원회를 창설을 합의, 식량원조협정 및 마약 및 풍토병 퇴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방문(1990.4.23.~28.)
- 브라질 방문(1990.8.14.~16.)
 - 천연가스관 설치 등 동력통합 협력문제 등 협의

189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2 / 11 / 1-303

1990.1~6월 중 캄보디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배경

- 1978.12월 베트남군 20만 명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폴포트 크메르루즈 정권을 전복하고 1979년 행상린을 수반으로 하는 친베트남 정부(수상은 훈센)를 수립함.
-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저항세력 3파는 1982년 민주캄보디아연립정부를 구성하여 행상린 정부와 내전을 계속하면서 1983년 유엔총회에서 캄보디아 대표권을 획득함.
 - 캄보디아연립정부는 시아누크를 대통령, 크메르루즈의 키우 삼판을 부통령, 크메르 인민민족 해방전선의 손산을 수상으로 구성함.
- 베트남 정부는 20만 캄보디아 주둔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989.9월 완전 철수함.
- 1989년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군의 철수로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나 캄보디아는 각 정파 간 세력 확장을 위한 내전으로 변질되었고 각 정파 간 권력배분이 문제해결의 최대 관건으로 부상함.

2.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

- 에반스 호주 외무장관은 1989.11월 유엔의 감시감독 하에 정전, 잠정기간 유엔 신탁통치, 자유총선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나미비아식 평화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소련, 캄보디아, 베트남 정부는 지지하고 중국 및 크메르루즈 측은 반대함.
 - 소련, 베트남은 행상린파, 서구는 시아누크파와 손산파, 중국은 크메르루즈파를 각각 지지함.
- 1989년 세계적 화해분위기에 따른 강대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1990.1~3월간 파리 및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회의 3회 개최, 2월 자카르타 비공식회담, 6월 도쿄에서 시아누크·훈센회담이 개최되어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정파 간 이견으로 큰 진전은 없음.
 - 유엔 감독하의 신정부 구성 및 4개 정파가 참가하는 국가최고평의회(SNC, Supreme National Council)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과도기간 중 유엔의 역할 범위와 신 캄보디아 정부 구성에 있어 정파 간 권력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

3. 한국 정부의 입장

-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캄보디아 신정부 수립 이전에는 어느 특정 정파도 지지하지 않으며, 캄보디아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함.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2 / 12 / 1-234

1990.7~12월 중 캄보디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유엔 안보리 5개 평화안 합의 및 결의안 채택

- 1990.8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방안으로 1990.1월 이래 6회에 걸친 회담 끝에 유엔 감시하의 종전 및 자유총선, 자유총선 전까지 잠정주권기관으로 SNC(국가최고 회의) 구성, 과도기간 중 UNTAC(유엔임시행정기구) 설립, 인권보장, 중립적인 독립주권국가 지위유지 등 국제적 보장 5개 평화안에 합의함.
- 유엔 안보리는 9.20. 캄보디아 평화안 승인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45차 유엔총회는 10.15. 캄보디아사태 결의안을 채택함.

2. 캄보디아 분쟁 4개 당사자 간 SNC 구성 합의(1990.9.10.)

- 캄보디아 분쟁 4개 정파들은 1990.9.10.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상기 유엔 안보리 5개 평화안을 수락
 - 자유총선 시까지 잠정주권기관으로 SNC를 구성하되 구성비율은 민주캄보디아연정 3파 (시아누크, 손산, 크메르루즈)와 캄보디아 훈센 정부간 6 : 6 동수로 하며 의장에는 시아누크를 선출하기로 함.
- 평가 및 전망
 - 1978년 캄보디아사태 발발 이후 11년 만에 최초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199.8.28. 합의한 평화안을 중심으로 사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함.
 -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소련 간의 공동협력,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평화회담 추진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캄보디아 문제는 유엔 임시행정기구 설립 및 국가최고회의와의 권한범위 설정, 신정부 구성절차 등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의 입장
 -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상기 합의는 10년간 캄보디아 내전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캄보디아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함.
 - 아세안,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유엔사무총장은 SNC 구성 합의를 환영함.

3. 제1차 SNC 구성회의(1990.9.17.~19.)

- 결과
 - 캄보디아민주연정 측은 시아누크의 SNC 의장 선출 및 13번째 구성원으로서의 선출을 주장하고, 훈센 정부 측은 시아누크의 SNC 의장 선출은 환영하나 12번째 구성원으로서의 선출을 주장하여 이견으로 회의가 결렬됨.

189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90

중화민국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2 / 13 / 1-213

1990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만과 동구권 간 교류

- 소련의 무역 및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대표단이 1990.5월 중 대만 방문 예정 (연합보도, 1990.1.1.)
- 대만은 2.12. 자국기업의 대소련 직교역을 허가하기로 내정하고 2.28. 행정원 회의에서 공식 결정
- 대만 외교부장은 4.16. 감찰원에 출석하여 동구국가에 차관 제공 등 실질적인 경제원조로 공식관계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3월 헝가리에 대표처를 설립한 이래 폴란드 등 동구권과 경제교류 강화 및 대표기구 설립 추진 예정이라고 언급
- 대만의 소련 내 공장건설 및 지사 설립 등 대소련 직접투자 허용(중앙통신사 보도, 4.24.)

2. 총통 선거

- 1990.3.21 및 3.22. 정·부총통선거 실시(국민대회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
- 선거 결과
 - 총통선거에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단독 입후보, 95%의 득표율로 재당선
 - 부총통 선거에서 리덩후이 총통이 지명한 리위안추(李元鑑) 총통부 비서장이 단독 입후보, 94% 득표로 당선
- 분석
 - 국민당의 내부 갈등 표면화: 총통의 친정체제 확립을 위한 부총통 후보자 지명으로 타이베이 출신 원로파의 반발 초래
 - 야당 및 학생의 개혁 요구: 민진당 및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국민대회 해산, 비상 조치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 당분간 정국불안 지속 예상

3. 신내각 출범

- 1990.6.1. 하우베이춘(郝柏村) 행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신내각 출범
- 신내각은 리덩후이 총통과 하우베이춘 행정원장 간의 타협적 성격, 새로운 인사의 소폭 등용, 경제부처 위주로 개편

4. 치안개선 정책

- 1987.7월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의 민주화 추진과 동시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국내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함.
- 1990.6월 하우베이춘 내각의 등장으로 '치안개선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국내 치안이 개선됨.

칠레 정세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2 / 14 / 1-235

1986~90년 중 칠레의 주요 정세 동향에 관한 주칠레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1986년도

- 주칠레대사관의 중장기 정세보고(1986.7.9.)
- 대통령 피습 사건
 - 1986.9.7. 피노체 칠레 대통령은 Cajon De Maipo(산티아고 인근 휴양지)에 주말 휴가를 마치고 귀경 중 산티아고 근교에서 테러분자(12명 내지 15명으로 추정)들로부터 무력(기관총, 수류탄 등) 공격을 받고 왼손에 경상을 입었으며, 경호원 5명이 테러분자들과 교전 중 사망, 수명이 부상을 당함.
 - 군사평의회는 내무부의 건의에 따라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
- 칠레 외무부 성명 접수
 - 1986.9.10. Ayala 주한 칠레대사대리는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을 방문하여 상기 비상사태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피노체 대통령의 피습사건 및 칠레 테러단체의 은닉무기 발견과 관련한 칠레 외무부 성명과 무기 관련 사진첩을 수교하고, 동 사실을 관계요로에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1987~88년도

- 주칠레대사관의 중장기 정세보고 및 정기 정세보고(1987.7.2.)
- 주칠레대사관의 중장기 정세보고(1988.7.7.)
- 주칠레대사관의 정기 정세보고(1988.7.21.)

3. 1989~90년도

- 주칠레대사관의 정기 정세보고(1989.1.17.)
- 칠레 총선 결과
 - 1973년 이래 16년간 집권해온 칠레 피노체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민간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이 1989.12.14. 실시된 결과, 17개 재야 정당연합 후보인 기독교민주당의 엘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
- 주칠레대사관의 칠레 차기 정부내각 명단보고(1990.1.12.)
- 주칠레대사관의 칠레 신정부의 경제시책 방향보고(1990.5.30.)

1899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카메룬 정세, 1988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3 / 1 / 1-98

1988년 중 카메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폴비야(Paul Biya) 카메룬 대통령 재선

- 1988.4.24. 카메룬 대선에서 현 폴비야 카메룬 대통령이 야당 세력의 부재로 단독 출마하여 98.7%를 득표하여 재선됨.
 - 폴비야 대통령은 1982.11월 전 대통령이 신병으로 정계 은퇴 이후 당시 수상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1984년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이번에 재선됨.
- 동 대통령은 앞으로도 친서방 비동맹 중립정책을 견지하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기존의 자립적인 경제정책을 변경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정부는 4.29.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동 대통령 앞 재선 축전을 송부함.

2. 개각 단행

- 폴비야 대통령은 1988.5.16. 재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신임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료급 40명을 29명으로 축소한 신내각을 구성함.
 - 27명의 장관이 연임되고 외무장관 등 2명이 새로 임명

3. 카메룬 인민민주연합의 정당대회

- 카메룬 유일 정당인 인민민주연합은 제1차 정당대회를 1988.11.24.~26. 개최하여 행정연수원 강화, 과학기술개발, 국가 투자기관 통폐합, 외교적 다변화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 참여 등을 요지로 한 결의안을 채택함.

4. UDEAC(중부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 정상회담이 1988.12.7.~8. 카메룬에서 개최되어 신세계 경제질서 정립 및 아프리카를 위한 마살플랜 채택을 촉구하고 국제금융기관과의 경제구조개편 노력을 강조함.

카메룬 정세, 1989-9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3 / 2 / 1-76

1989~90년 중 카메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폴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1988.12.31. 신년사를 통해 1988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1989년에는 1차 상품의 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서민주택 건립, 교육시설 투자 증대, 정부지출 감소, 부정 및 탈세 방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역할 수행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2. 대외 관계 및 수교

- 제12차 UPA(아프리카 의원연맹) 총회가 1989.2.27.~3.4. 카메룬에서 개최되어 아래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함.
 - 아프리카 외채의 원인은 남북 간 교역의 불균형 심화에서 기인한다고 하고 소수 대자본 횡포에 희생되고 있는 아프리카 정부의 결속을 촉구함.
 -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미국의 남아공 군사원조 중단 및 모든 이해당사국이 참가하는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촉구함.
- 폴비야 대통령은 1989.6.4.~5. 가봉에서 개최된 카메룬·가봉·콩고 간의 3국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경제위기 공동대처 방안에 대해 협의함.
- 1989.3.8. 카메룬과 콜롬비아 간 수교함.

3. 폴비야 대통령, 벨기에 방문(1989.5.8.~11.)

- 벨기에 국왕 및 수상 면담
- EEC(유럽경제공동체)를 방문하여 EEC의 카메룬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
- 외신기자 회견에서 카메룬은 50억 달러의 대외부채 재조정을 위해 파리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 카메룬 재무장관은 1989.5.24. 파리클럽에 참가하였으며 파리클럽은 카메룬 경제구조 개혁에 만족을 표명하고 카메룬 외채 지불기한을 10년 연장하기로 함.

4. 폴비야 대통령은 1990.9.8. 개각을 단행하여 24명 각료급 중 11명을 교체함.

190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캐나다 Quebec주 분리·독립 문제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3 / 3 / 1-186

캐나다 퀘벡주의 분리·독립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문제의 배경

- 1867년 캐나다 연방 출범 당시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할, 각주 간 이해의 충돌 등이 문제되어 옴.
 - 특히 유일한 불어 문화권인 퀘벡주와 여타 영어권지역 간의 제반 대립 심화
- 1982.4월 발효된 캐나다 헌법에도 10개주 중 유일하게 퀘벡주만이 동의를 거부

1902

2. 헌법개정안 추진

- 1984년 국가적 화합의 가치를 내걸고 연방 총선에서 승리한 진보보수당의 멀루니 수상은 집권 후 퀘벡주의 헌법 가입을 위한 설득 교섭을 개시함.
 - 1987.4.30. 멀로니 수상 주재하에 연방헌법가입협정(Meech Lake Accord) 초안 작성
- 연방 및 10개 주 수상이 6.3. 헌법개정안에 서명함.
 - 퀘벡주가 연방 내에서 특수한 사회임을 인정하는 등 17개 조항
- 1988.6.22. 퀘벡주 연방헌법가입협정 비준
- 그러나, 그후 마니토바주와 뉴펀들랜드주가 퀘벡주에 대한 특별대우에 반대하고, 비준기한인 1990.6.23.까지 비준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됨.

3. 헌법개정안 유산 이후 정국

- 1982년 발효된 헌법은 여타 9개 주에 계속 유효함.
- 그러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퀘벡주의 경우, 1867년 헌법에 따라 계속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 있으나 법률적으로 일부 독자성 보유
 - 퀘벡주의 수상은 이민 및 통신분야의 연방정부 통제배제를 선언
 - 단, 외교, 국방 등 분야는 연방의 관할하에 있음.
- 금번 헌법개정안 실패는 멀루니 수상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었으며, 차기 1993년 총선 시 여당인 진보보수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캐나다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3 / 4 / 1-281

1988~90년 중 캐나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8~89년도

- 멀로니 수상 제2기 내각 구성(1989.1.30.)
 - 1988.11.21. 캐나다 총선에서 진보보수당 승리에 따라 재집권한 멀로니 수상의 2기 내각
 - 각료는 총 38명으로 지난 내각의 40명보다 축소(각료 6명 새로 입각, 기타 각료들 중 대규모 자리 이동)
 - 외무, 통상, 부수상, 재무 등 선임 각료들은 유임됨으로써 정책 계속성 유지 예상
- 신임 총독 임명
 - 1989.10.6. 멀로니 수상은 국가원수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얻어 Jeanne Sauve 총독 후임에 Ramon John Hnatyshyn 전 법무장관을 임명
 - 신임 총독은 1990.1.29. 취임

2. 1990년도

- 온타리오주 총선 결과
 - 1990.9.6. 온타리오주 총선 결과, 신민주당이 총 의석 130석 중 74석을 획득하여 36석을 얻은 자유당을 참패시킴으로써, 캐나다 10개 주 중 최대의 인구분포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에 사상 최초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신민주당(당수: Bob Rae)이 들어서게 됨.
- Mohawks 원주민 분규 종결
 - 그간 Oka지역 의료시설 건물 내에서 계속 저항하고 있던 약 25명의 Mohawks 무장 전사들이 9.26. 저녁, 명예로운 후퇴(Honorable Disengagement) 명분하에 캐나다군에 투항함으로써 Oka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Mohawks 원주민 무장 분규사태는 77일 만에 일단 평화적으로 종결됨.
 - 동 사태는 법과 질서의 확보를 우선적 과제로 삼은 연방정부 및 퀘벡주 정부 측과 원주민 토지소유권 및 광범한 자치권 허용 등을 주장하는 원주민 측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여론의 초점이 되어왔는데, 표면상의 사태 종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원주민 문제는 계속 캐나다의 주요 정치현안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임.

190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코스타리카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3 / 5 / 1-62

1990년 중 코스타리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 동향 및 결과

- 1990.2.4.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성향 야당 기독교통합당의 깔데론(Calderon) 후보 당선
 -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로 야당 대통령 후보 당선
 - 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총 57석 중 29석 당선)
- 1990.2.7.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 1990.5.8. 신정부 출범

2. 깔데론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대만(구 중화민국) 및 일본 방문

- 1990.11.6.~10. 대만 방문
 - 대만 정부에 경제지원 1억 달러 요청
- 1990.11.10.~16. 일본 방문(일왕 즉위식 참석)
 - 일본 정부에 경제개발을 위한 229.5백만 달러 지원 요청

중국 티베트(西藏)자치구 문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3 / 6 / 1-65

1. 1987년 티베트 유혈시위사태

-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1987.9.19.~29.) 중 1987.9.27. 라싸에서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함.
 - 9.29. 주미국 중국대사관은 달라이라마의 미하원 인권위 연설허용에 강력항의하는 각서를 전달
- 티베트 라싸에서 1987.10.1.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게엄령이 선포됨.
 -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6명의 사망자 발생(서방언론은 19명으로 집계)
 - 10.6.에도 시위 발생

2. 1989년 티베트 독립요구 시위 발생

- 1989.3월 라싸에서 독립요구 유혈시위가 발생하여 게엄령이 선포됨.

3. 국회의원 티베트 문제 국제회의 참석

- 최운지 민자당 의원은 1990.5.23.~29.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티베트 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 회의 주제는 민족 문제(특히, 티베트 문제)이며, 민족 문제 관련 5분간 연설할 예정
- 한국대표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석하고, 티베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함.

190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중국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3/7/1-179

1990년 중 중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중국의 계엄령 해제

- 1990.1.10. 이붕 중국 총리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베이징 일원에서 실시 중이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중국의 당면문제는 경제환경 개선, 경제질서 회복이며, 이를 위해 사회·정치적 안정을 추구할 것임.
 - 개혁 개방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임.
- 주요국 입장
 - 미국, 일본, 영국은 계엄령 해제조치를 환영하고 중국의 정치개혁과 개방, 인권신장 노력을 기대한다고 함.
- 한국 정부의 입장
 - 계엄령 해제조치가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 대서방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환영하며 한·중국 관계확대를 기대한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계엄령 해제조치는 중국의 외교적 고립 탈피와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난국타파가 주목적이며 중국은 강력한 사회통제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의 외국과의 관계개선 추구

- 1989년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외교적 고립 탈피, 국제사회의 대중국 제재 조치(고위인사교류 중단, 무기수출 및 차관 중단 등) 해제 등 경협증진을 위해 제3세계 순방 및 수교 등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함.
- 중국의 제3세계 순방
 - 1989.9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튀니지 방문
 - 1990.2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라크, 예멘, 카타르, 바레인 방문
 - 1990.3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카타르, 바레인, 인도 방문
 - 1990.5월 양상곤 국가주석의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방문
 - 1990.7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사우디, 모로코, 알제리 방문
 - 1990.11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방문
 - 1990.12월 이붕 총리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 방문



- 외국 고위인사의 방중
 - 1990.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6월 시리아 부통령, 8월 요르단 부수상, 9월 이라크 부총리가 각각 방중함.
- 수교 확대
 - 중국은 사우디(7.21.), 나미비아(3.22.), 싱가포르(10.3.), 마셜군도(11.16.)과 각각 수교하고 인도네시아와 복교(8.8.)함.

3. 중국·에티오피아 관계강화

- 1990.8.28.~30.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은 1,050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4. 중국·인도 간 국경문제 협의

- 1988.12월 간디 인도 수상시 중국 방문 시 중국과 인도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 및 양국 기본 관계 회복에 합의하였으며 1989.9월 제1차 국경문제 실무위원회 및 1990.8월 제2차 국경문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중국은 인도가 관할하고 있는 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쉬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
 - 인도는 1914년 영국·티베트 간 맥마흔 라인에 의거, 아루나찰 프라데쉬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티베트·캐시미르조약에 의거, 아크사이친과 캐시미르 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

190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3/8/1-40



1988~90년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개각

- 1988.7.5. 개각
 - 신설된 사회문제담당국무상 포함, 각료 20명
 - Gbezera-Bria 외무부장관에 대한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 전달
- 1989.6.15. 개각
 - 법무부, 보사부, 농촌개발부, 동력자원부 4개 부처 장관 경질
 - 동력자원부, 외무부, 고등교육담당국무상(차관급) 신설
- 1990.6.5. 개각
 - 외무부장관 포함 16명 각료 중 10명 경질
 - Gombia-Pampali 외무부장관에 대한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 전달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수단 간의 외교관계 단절

- 중앙아프리카는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시 항공기의 수단영공 통과 거부문제로 1989.5.29. 수단과 외교관계를 단절함.
- 주중앙아프리카 수단대사는 48시간 내 출국 통보를 받고 6.2. 출국하였으며, 중앙아프리카는 수단에 상주대사관을 미설치

3. 중앙아프리카 다당제 도입 거부 및 수상제 신설

- 1990.5.14. 중앙아프리카 민주연합당 임시 당무위원회 특별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Kolingba 대통령은 다당제가 민주화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외래사조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현 시점에서 중앙아프리카에 다당제 도입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선언함.
- 동 특별회의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각부처간 의견 조정 및 협력도모를 위한 방편으로 수상제를 신설하기로 결정함.

카보베르데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3 / 10 / 1-31

1990년 중 카보베르데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세네갈대사관은 1990.1.7. 포르투갈어권 정상회담(1989.12.18.~20., 카보베르데) 선언문을 보고함.

- 동 선언문은 다당제 도입 등 급속한 변혁을 주장한 모잠비크 및 상투메프린시페 측과 지속적인 사회주의 독재주의를 옹호한 앙골라 간 이견 대립 이후 양측 주장을 모두 수용한 중도형태의 선언문
 -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 증액, 아프리카 각지역의 분쟁종식 촉구에 중점

2. 카보베르데 정부는 1990.7.14. 소폭 개각을 단행함.

- 국방장관직 신설 후 종전 군 및 치안장관직 폐지
- 종전 6개 청장을 12개 청장으로 확대

3. 카보베르데 인민 국회는 1990.9.28. 아래와 같이 정책방침을 채택함.

- 복수정당제 실시
- 헌법개정: 헌법 제4조(집권당(PAICV당)이 카보베르데 유일의 국가사회의 지도세력) 삭제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1991.1~2월 중 실시: 대통령은 자유보통선거, 비밀직접선거에 의해 다수표 획득자를 선출. 다수표 확보 불가 시 21일 경과 후 재선거
- 국무총리는 국회 참석 정치대표 중에서 선정 후 대통령이 임명
- 정부 각료는 국회의원 겸직 불가

190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 번호 2020-133 / 11 / 1-155



1990년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과정 등 정치 정세 동향임.

1. 1990.3월 체코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이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체코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코공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됨.

2. 체코 정부는 1990.5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격 체제의 완전 자유화, 기업의 환거래 자유화 등을 1991.1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 계획 확정안을 발표함.

3.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자유총선 실시(1990.6.8.)

- 44년 만에 실시된 총선에 22개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시민포럼이 46%를 득표하고 공산당은 13% 득표에 그침.
- 민주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시민포럼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
 - 체코 공산정권의 실질적 붕괴로 동독, 헝가리에 이어 반공산 개혁추진세력의 압승

4. 하벨 대통령 재선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는 1990.7월 단일 후보인 하벨 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함.
 - 인민회의, 민족의회 모두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

5. 부시 미국 대통령 체코 방문(1990.11월)

- 하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연방의회 연설, 프라하 광장에서 대중연설

6. 체코슬로바키아 지방선거 실시(1990.11월)

- 체코공화국의 시민포럼에 대한 전반적 지지도는 1990.6월 총선 시의 지지율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남.
- 공산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 계속
 -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우 공산당이 최대 다수의 시장직을 획득
- 분리독립 및 광범위한 자치를 요구하는 과격민족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함.

덴마크 정세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33 / 12 / 1-269

1987~89년 중 덴마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덴마크대사관 정세보고서

- 1986년도 하반기 덴마크 정세보고서(1987.2.6. 보고)
- 1987년도 덴마크 중장기 정세보고서(1987.8.19. 보고)
- 1988년도 덴마크 중장기 정세보고서(1988.7.15. 보고)

2. 1987년도 덴마크 조기 총선 결과

- 1987.9.8. 실시된 총선에서 폴 슈뤼터(Schlueter) 덴마크 수상의 보수우익연정(보수당 등 4개당)이 총 197석 중 종전보다 7석이 감소된 70석을 차지
 - 슈뤼터 수상은 소수내각의 어려움 타파를 위해 1988.1월로 예정 총선을 4개월 앞당겨 실시
 - 조기 총선에서 여당은 원내 절대다수 확보에 실패하고, 오히려 의석 감소로 연정구성 불안
- 9.10. 슈뤼터 수상의 신내각 발족(중도우파 4당간 소수연립정부)

3. 덴마크 사민당의 동방정책

- 1989.9.16.~17. 사민당 연차대회 시 채택된 동방정책에 관한 결의문 발표
 - 사민당은 동구권의 민주주의 변혁을 환영하고 문제해결 지원
 -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재래식병력의 대규모 감축 및 단거리 핵무기 제거협상 추진
 - EC(구주공동체)는 동구권원조를 위한 새로운 마셜플랜 수립 및 시장접근 허용 등

191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3 / 13 / 1-63

1990년 중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도미니카공화국 총선 동향 및 결과

- 1990.5.16. 실시된 총선에서 발라게르(Balaguer) 대통령이 승리
 - 보수우익성향의 집권 개혁사회기독당의 발라게르 후보는 좌익성향의 보쉬(Bosch)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
 - 도미니카 중앙선거위는 7.13. 총선결과를 확정 발표, 보쉬 후보는 동 결과에 불복
- 7.18.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발라게르 대통령 앞 축전 전달

2. 도미니카공화국의 불안한 정세 동향

- 1990.5.16. 총선의 후유증
 - 부정선거 논란, 국회의 여소야대 현상으로 원활한 국정운영 불가
- 경제사정의 악화
 - 1990.8월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환율평가절하, 유가 100% 인상 등) 이후 빈번한 파업
 - 페르시아만사태로 국내 석유위기 심화
- 야당 및 노조의 현 정부 퇴진 요구

에콰도르 정세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3 / 14 / 1-95

1985~90년 중 에콰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에콰도르 총선 및 대통령 선거 결과

- 1988.1.31.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5.8. 상위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를 함.
 - 야당 민주좌익당 보르하(Rodrigo Borj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8.10. 취임
 - 중도좌익성향의 신정부는 제3세계와의 관계강화 의사 표명, 향후 비동맹노선 추구 예상
 - 북한은 에콰도르의 좌경정권 수립을 계기로 수교를 적극 추진 예상
- 노태우 대통령 명의로 보르하 당선자 앞 축전을 5.9. 전달
 - 취임식(8.10.)에 김정렬 전 국무총리를 경축특사로 파견
 - 보르하 대통령 친서(9.1.자)로 경축특사 파견과 방한 초청에 사의 표명
- Wilfredo Lucero 신임 국회의장 및 Diego Cordovez 신임 외무장관에 대한 축전 전달

2. 에콰도르 국회의원 선거동향 및 국회의장 선출 파동

- 1990.6.17.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기독교사회당(PSC)이 원내 제1당이 됨.
- 인민세력연합당(CFP) Averroes Bucaram 의원을 8.10. 국회의장으로 선출
- 집권여당 민주좌익당(ID)은 보르하 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을 위하여 우익정당 의원들과 동조하여 Bucaram 국회의장을 해임하고 10.18. 사회당 Bonilla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

191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이집트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3 / 15 / 1-56

1990년 중 이집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1990.2.18.~19.)

- 카다피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양국공동 금융위원회 개최를 추진, 리비아에 2,000개의 변압기 공급, 2000명의 이집트 의사 및 간호사의 리비아 파견 등 우호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양국은 레바논사태, 아랍권의 단합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리비아·차드 문제 등 지역분쟁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2.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1990.3.6.~8.)

- 알리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무바라크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아랍연맹(Arab League) 본부를 튀니지에서 카이로로 복귀, 소련 거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군 점령지 내 정착 반대, Hrawi 레바논 대통령의 정통성 인정에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함.

3. 무바라크 대통령의 시리아 방문(1990.5.1.~3.)

- 무바라크 대통령은 시리아를 방문하여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 검토를 위한 경제정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중동문제의 외교적 해결 지지 및 아랍연맹 회담의 정기적인 개최에 합의함.

4. 무바라크 대통령의 오만, 중국, 북한, 소련, 영국 방문(1990.5.10.~18.)

- 이집트와 중국은 양국간 직항공로 개설 합의, 이집트의 대중공 부채(약 7,000만 달러) 상환 연기, 이란·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자결권 존중 및 중동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프리카 인종차별철폐 등에 인식을 같이함.
- 이집트와 소련은 양국간 경제무역기술관광협력협정 체결, 이집트의 대소련 부채 경감 및 군사 협력에 합의하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군 점령지 내 정착 반대, 이스라엘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철폐에 의견을 같이함.
- 이집트와 영국은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군 점령지 내 정착 반대, 중동 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철폐에 의견을 같이함.

5. Kaifu 일본 수상의 이집트 방문(1990.10.2.~3.)

- Kaifu 수상은 수상으로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하여 이집트 경제개발 참여문제, 중동평화를 위한 일본의 기여방안, 대이집트 유무상 원조 지원문제를 협의함.

엘살바도르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3 / 16 / 1-243

1990년 중 엘살바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엘살바도르 내전 동향(FMLN(민족해방전선)의 테러공격 등)

- 1990.1.7. 좌익 옹호 대학총장 및 신부 등 8명 암살(1989.11.16.) 사건 수사결과 발표
 - Cristiani 대통령 정부는 암살사건에 9명의 현역군인이 관련되었음을 밝힘.
- 1990.3.12. FMLN은 모든 테러활동 중지 선언
 -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의 산디니스타 좌익정권이 투표에 의해 붕괴된 데 충격
- 1990.5.1. FMLN 게릴라 수도 공격
- 1990.10.17. FMLN과 정부군과 전투
- 1990.11.19. FMLN, 수도 및 인접 7개주 군경 공격

2.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과의 평화협상

- 1990.4.4. 평화협상 재개 합의(유엔사무총장 주재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 간 제네바회담)
 - 4.10. 비상사태 해제(1989.11.11. FMLN 대공세 이후 30일마다 갱신)
- 제1차 평화협상(1990.5.16.,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협상 의제와 전체일정에 합의
- 제2차 평화협상(1990.6.19.~25., 멕시코 오아스테펙)
 - 무장해제 문제 관련 FMLN은 군부 숙청 요구하여 양측간 대립
- 제3차 평화협상(1990.7.26.,코스타리카 산호세)
 - 양측, 인권 문제에 관한 합의서 서명
- 제4차 평화협상(1990.8.19.~22., 산호세)
 - 군부 문제에 대해 대립, FMLN은 휴전 및 협상타결을 위한 18개항 조건 제시
- 제5차 평화협상(1990.9.13.~18., 산호세)
 -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
- 1990.11.14. 제6차 평화협상 양측 합의로 연기

3. 중미지역 평화를 위한 노력

- 중미 5개국 외무장관회담(1990.12.15.~16., 산호세)
 - 엘살바도르 내전과 관련, 좌익 게릴라 측과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휴전 실시 및 조속한 시일 내 협상에 의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촉구하는 성명 발표
- 엘살바도르 외무장관의 최후중 외무부장관 앞 친서(1990.10.18.) 전달
 - 우방국이 FMLN에 대한 경고 전달 및 유엔사무총장의 중재 노력 지지 요청

191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에티오피아 정세, 19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3 / 17 / 1-100



1989년 중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에티오피아 정부는 1989.2월 일왕 장례식에 당초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변경하여 수상을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에티오피아는 1989.4월 현 외무성 차관을 주미국대사로 내정하고 대미국 관계개선에 관심을 표명함.

- 양국은 1974년 혁명으로 셀라시이 황제가 축출된 이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경제 원조도 미국 의회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1988년도에는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바 있음.

3. 멩기스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1989.6.6. 쿠데타 발생 3주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쿠데타 전모를 밝힘.

- 쿠데타 진압 성공
 - 5.16. 쿠데타 군이 정부의 항복 명령에 불복하고 국방부장관을 피살함.
 - 정부군은 쿠데타를 주도한 참모총장 및 공군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장교 28명을 아디스아바바 및 에리트리아 수도 아스마라에서 사살함으로써 쿠데타를 진압함.
- 북부 에리트리아지역 분리주의자들과의 평화회의 추진 발표

4. 에티오피아에 주둔해온 쿠바군 2,094명의 마지막 병력이 철수함에 따라 1989.9.12. 그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해온 쿠바군은 완전 철군함.

5. 에티오피아 정부는 1989.11.3. 16년간 단절했던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의 재개를 발표함.

- 에티오피아가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주를 다시 허용하는 대신 이스라엘에서 군사원조를 기대해서 취해진 조치임.

에티오피아 정세,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3 / 19 / 1-20

1990년 중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멩기스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1990.3월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정치 및 경제개혁안을 제출함.
 - 최근 동구지역 변화를 시인하고 변천하는 세계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대폭 변경하여 개인의 토지 및 주택 소유와 생산품 판매를 허용하는 혼합경제제도를 채택함.
 - 반대세력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노동당 명칭을 민주통일당으로 변경함.
2. MOI 케냐 대통령 1990.3.15. 멩기스투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케냐 측은 에티오피아 반군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함.
3. 멩기스투 대통령은 1990.6월 지부티와 케냐를 방문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에티오피아 반군과의 평화 회담 재개 중재를 요청함.
4. 제4차 에티오피아 인민회의는 1990.6.21.~24. 개최되어 대통령의 국정보고를 토대로 내전의 평화적 해결, 국가안보 및 경제건설 방안 등을 집중 토의하고 3개 부문 결의안을 채택한 후 폐회함.

191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에티오피아 Eritrea지역 분리·독립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 번호 2020-133 / 18 / 1-82

1989~90년간 에티오피아 Eritrea지역의 분리·독립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에리트리아지역은 1947년 이탈리아 식민통치에서 독립하고 1952년 유엔결의에 의하여 자치 정부로 인정받았으나 1962년 에티오피아에 병합되어 14개주 중 하나의 주가 됨.
- 1962.11월 이슬람 ELF(에리트리아 해방전선)는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의 지원하에 기독교 중심의 에티오피아로부터 에리트리아지역의 분리·독립을 위해 무장 항쟁을 시작하였으며 1975년 에리트리아 수도를 장악함.
 - 1970년 EPLF(Eritrean Popular Liberation Front)는 ELF에서 분리하여 에리트리아 해안 및 북부 고지대를 장악하면서 가장 강력한 반정부군으로 부상함.
 - 1975.2월 TPLF(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는 티그레이지역(인구 240만 명)의 자치권 획득을 위해 반정부 게릴라를 조직(병력 2만 명)하여 소련군 철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 과도정부 수립 등을 주장함.
- 1988년 에티오피아 멩기스투 친소련 공산정권은 정부군 3개 사단을 동원하여 내란의 진압에 나섰으나 대패하였으며, 1990.6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격작전을 개시함.
 -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리아 독립 시 홍해로 해상통로의 단절로 내륙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경제적·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에리트리아의 독립에 반대함.
- 1989.9~90.3월 에티오피아 정부군은 EPLF와 TPLF에게 각각 평화회의를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서로 이견으로 진전이 없음.
- 멩기스투 정권은 6월 지부티와 케냐에 평화회담 재개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반군들은 멩기스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공세를 강화함.

2. 주요국의 입장

- 소련, 쿠바 등 공산세력들은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는 반면, 수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세력들은 멩기스투 공산정권이 에리트리아를 장악하면 홍해의 강국이 되어 중동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에리트리아의 독립을 지원함.
- 미국은 1990년 홍해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인권개선,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에티오피아, 미국과 소련, EPLF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함.

프랑스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20-133 / 20 / 1-62

1990년 중 프랑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프랑스 사회당 전당대회(1990.3.15.~18., Rennes)

- 미테랑 직계 파벌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당 강령을 발표하지 못하고 당 지도부 구성도 못함.
 - 1995년 포스트 미테랑을 겨냥한 후계체제를 위해 각 파벌 간 경쟁 본격화
 - Fabius 하원의장, Mauroy 당수, Jospin 문교상, Rocard 수상 등이 각축
- 1990.3.20.~21. 파리 개최 당무위원회에서 사회당 신지도부 구성

2. RPR-UDF 양당 연합 결성

- 1990.6.26. 프랑스 야당 우파 RPR(당수: 시락 파리시장)과 UDF(당수: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는 프랑스 연합을 결성하기로 합의
- 양당은 기존조직 존속하에 공동정당을 수립할 것과 1995년 대통령 선거 시 우파 단일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

3. 프랑스 정부는 1988.5월 Rocard 내각 출범 이래 9번째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1990.11.19. 표결하여 부결됨.

-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래 75번째 불신임 결의안

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90.10.2. 법무장관, 농림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함.

191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가봉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3 / 21 / 1-127

1990년 중 가봉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학생소요 사태 발생 및 개각

- 1990.1.16.부터 학생시위 발생, 1.19.부터 통행금지 발표
 - 긴축재정 실시, 봉고 가봉 대통령의 22년 장기 집권, 다당제 도입 거부, 동구권 민주화 등이 요인
- 2월에는 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소요사태 확산

1920

2. 국민회의 개최 및 과도헌법 채택

- 1990.3.27.~4.19. 국민회의 개최, 가봉 민주화 개혁 방안 협의
 - 75개 정치단체, 98개 사회직능 단체, 20개 비정치 단체, 5개 종교단체 참석
- 4.29. 개각으로 수상 및 각료 교체
 - 봉고 대통령이 국민회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한 조치
- 5.22. 국민회의가 건의한 과도헌법 채택
 - 1990년 실시 국회의원 선거까지 유효, 단일정당제 폐지 및 복수정당제 도입
 - 봉고 대통령의 임기를 1993.12월 말까지 보장

3. 시민 폭동 발생

- 1990.5.22. 야당지도자 가봉진보당 사무총장 암살사건이 발생함.
 - 5.23.부터 암살에 항의하는 시민폭동 발생하여 정부는 통행금지를 실시

4. 다당제 하의 국회의원 선거 실시

- 1990.9.16. 국회의원 선거 제1차 투표 및 10.21. 국회의원 재선거
 - 당선 확정된 72개 선거구 중 집권 가봉민주당이 44석 획득
- 10.30. 결선투표 및 11.4. 결선 재투표
- 최종 선거결과: 집권 가봉민주당 총 120석 중 64석 획득, 7개 야당 56석 획득

5. 신국회 개원 및 개각

- 1990.11.2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120명 국회의원으로 다당제 하의 신국회 개원
- 11.26. 신내각 출범

독일 통일과정 및 경제사회 통합 연구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 / 1 / 1-178

1987~90년 중 독일 통일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한 연구 참고자료임.

1. 동·서독 관계개선 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1989.9월 윤치원 외무부 본부대사실)

- 동·서독 관계의 변천과정
 - 1945~49년: 연합국공동관리
 - 1949~55년: 동서독 정권 수립
 - 1955~66년: 대결
 - 1966~69년: 대연정 시대의 통일정책
 - 사민련 정권하의 통일정책
 - 1982~현재
- 분야별 접촉과 교류
 -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 동·서독 간 정상회담(총 4차례 회담)
- 동·서독 간 교류 증진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 한·독일 간 통일문제의 차이점
 - 동·서독 간 기본입장의 교훈
 - 동·서독 간 교류증진 모델 수용 검토 및 대소련 관계개선

2. 주독일대사관, '통독과정 연구를 위한 업무체제 강화방안'을 작성 건의(1990.7월)

- 최근 통독과정의 진행개요
- 통독과정 연구업무의 체계적 추진
- 업무추진을 위한 대상기관과의 협조 강화
- 공관의 업무체제 개편
- 본국정부와의 효율적 업무체제 정립 및 건의

3. 정부는 동·서독의 경제사회 통합과정을 조사·분석하여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정부합동 단기조사단(단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을 1990.8~9월간 독일에 파견함.

- 동 조사단이 작성한 독일의 경제사회통합과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 내용
 - 통독의 배경
 - 경제사회 통합에 따른 문제점
 - 동·서독 통합이 독일 경제, EC(구주공동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 정세. 전6권 (V.1 1989.5-90.2)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2/1-236

1989.5~90.2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서독 대통령 재선

-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서독 대통령은 1989.5.23.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됨.

2. 독일·소련 정상회담(1989.6.12.~15., 서독)

- 독일·소련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전후 유럽의 분열 종식을 위한 구주단합 노력 경주, 동·서 진영의 군사력 균형 감축(미국·소련 전략핵무기 50% 삭감 포함), 화학무기 보유 및 핵실험 금지, 동·서 간 경제협력 강화, 인간의 존엄성과 제권리 및 각 민족의 자결권 존중, 비구주지역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위기 관리체제 창설
- 독일·소련 간의 경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11개 협정 체결

3. 동독인의 서독 탈출

- 1989.5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 철조망 제거 시작
- 1989.8~9월 동독인의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를 통한 서독 탈출 러시 시작
- 1989.9.30. 동독, 체코, 폴란드 내 11,000명 동독인 서독 이주 허용
- 1989.5월 헝가리의 대서방 국경개방 이래 인접국가를 통한 탈출자 수는 10.5 현재 약 37,000명으로 추산

4. 동독사태 관련 정세

- 국경 전면 개방
 - 동독 정부는 1989.11.9. 베를린 포함 동·서독의 모든 국경통과 장소를 통한 외국여행 허용, 자유선거 제도 등 정치개혁 단행을 약속
- 대규모 동독인의 서독 왕래
 - 국경개방 조치 이래 11.14.까지 약 510만 명(동독 전체 인구의 약 1/3)에 출국비자 발급
 - 대부분 서독 왕래(약 2만 명이 서독이주 예상)

5. 동·서독 여행 자유화 조치

- 동독을 방문 중인 Seiters 서독 수상실 관방장관은 1989.12.5. Modrow 동독 수장과 동·서독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1990.1.1.부터 취하기로 합의



6. 독일 통일에 관한 2+4 구상에 합의

- 1990.2.13. 오타와에서 개최된 23개국 외무장관회의 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간에 통독문제 협의형태를 2+4 구성으로 합의함으로써 통독 과정이 구체화됨.

192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독일 정세. 전6권 (V.2 1990.3)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3/1-165

1990.3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2+4 실무자 회의(1990.3.14.)

- 1990.3.14. 서독에서 개최된 2+4 실무자 회의에서 6개국 정부대표는 앞으로 동 회의가 폴란드 서변 국경에 관해 협의 시에는 폴란드 정부대표를 동 회의에 초청한다는데 합의

2. 동독의 총선(1990.3.18.)

- 기민당 중심 보수 3개 정당 연합인 독일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 득표율 48.15%, 의석수 193석
- 사민당(SPD): 21.84%, 87석
- 민주사회당(PDS: 공산당): 16.33%, 65석
- 자민연합: 5.28%, 21석
- 금번 동독 총선에서 콜 서독 수상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민당 등 보수 3개 정당연합인 독일동맹이 압승하게 된 것은 동독인들이 콜 수상의 통독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
- 금번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 독일동맹은 과반수 의석 획득에는 실패하였으며,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의석 2/3 찬성으로 서독에의 즉각적인 합병을 통한 통독을 위해 사민당, 자민연합과의 대연정을 제의함. 자민연합은 이를 수락하고 사민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금번 보수연합의 승리로 통독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3. 동독 총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 반응

- 서독: 콜 수상, 역사적인 결과로 환영 입장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노력의 승리라고 논평
- 소련: 외무부, 서독의 보수 정당이 동독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비난
- 영국: 대처 수상, '유럽을 위한 위대한 날'로 평가
- 프랑스: 외무부, 동독인의 조기 통독 방안 선택으로 콜 수상의 개인적 승리로 평가

독일 정세. 전6권 (V.3 1990.4-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 / 4 / 1-225

1990.4~5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동독 신정부 출범

- 1990.3.18. 동독 자유총선 결과, 기민당 주도 신 연립정부가 1990.4.12. 의회 승인을 받아 출범
- 기민당 당수 Lothar de Maiziere를 동독 총리로 하는 신연립내각 출범
- 연정 구성(총리 제외 23명)
 - 기민당(CDU) 중심 독일동맹(13명): 기민당 10명, 독일사회주의동맹 2명, 민주각성당 1명
 - 사민당(SPD) 7명, 자유민주연합(LDP) 3명
- 평가
 - 동독 최초의 자유민선정부 출범
 - 동독 공산정권 붕괴
 - 조기 통독을 위한 여건 조성

2. 동·서독의 경제·통화 동맹 추진

- 양독일 정상간 합의내용(1990.4.24., 본)
 - 양독일 통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단일화
 - GEMU(경제·통화동맹)를 1990.7.2.까지 달성
 - EM(동독 마르크화)는 원칙적으로 DM(서독 마르크화)과 등가 교환
- De Maiziere 동독 수상은 양독 전문가 회의(1990.4.25., 동베를린)를 긴급 소집
 - GEMU 내용에 대한 협의 개시
 - 5.7. 동독 지방의회 선거 전 GEMU협정 체결 목표

3. 독일 통일 문제 관련 2+4 회의(1990.5.5., 본)

-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 4개국을 최초로 독일 민족자결권을 공식 인정함.

4. 동·서독 재무장관은 1990.5.18. 본에서 동·서독 통화·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함.

- 1990.7.1.부터 DM으로 통화 단일화

192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독일 정세. 전6권 (V.4 1990.6-8)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5/1-224

1990.6~8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2차 독일 통일 관련 2+4 회담(1990.6.22., 동베를린)

- 소련 측은 통일 독일의 안정 및 군사문제 관련 아래 방안을 제시함.
 - 통일독일은 5년간 과도기간 후 NATO 가입 가능
 - 통일 후 3년 이내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군 단계적 감축
 - 통일 후 3년 이내 독일군을 20~25만으로 감축
 - 통일 후 6개월 이내 전승국 군대 베를린에서 철수
- 서독 및 미국은 독일 통일 후 군사동맹 가입여부는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문제라며 상기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
- 2+4 회담을 1990.11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하기로 합의
- 독일 통일 관련 국제문제 중 2+4 회담에서 취급할 문제와 기타 협상에서 취급할 문제(통일독일의 군비문제, CSCE 강화문제)를 분리 협상하는데 대한 원칙적 양해 성립

2.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1990.7.1.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국경개방을 위한 협정이 7.1. 동·서독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됨.

독일 정세. 전6권 (V.5 1990.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6/1-128

1990.8~9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동독의 서독 편입일자 확정

- 1990.8.22. 동독 의회는 동독 5개주의 서독 편입일자를 1990.10.3.로 의결
- 동·서독 간 경제·사회통합 조치의 시행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동독 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기 편입을 결정
- 1990.10.3.자로 동독 소멸 및 독일 통일 달성, 서독 정부가 12.2. 전 독일 총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통일독일을 통치

2. 동·서독 간 통독조약 체결

- 동·서독 간 경제·통화·사회통합조약에 이어, 1990.8.31. 동·서독 간 법체계 통합을 위한 통독 조약을 체결함.
 - 10.3. 이후 서독 기본법, 법령, 국제조약이 동독지역에도 유효
 - 베를린을 통일 수도로 규정, 의회 및 정부 소재지는 통일 후 결정

3. 1990.9.12.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 회담에서 동·서독 및 전승 4대국 외무장관은 독일 문제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

- 전승 4대국의 대독일 권리·의무 종료
-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및 동맹가입 권리 보장

192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독일 정세. 전6권 (V.6 1990.10-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4/7/1-186

1990.10~12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독일 통일 선포(1990.10.3.)

2. 통독 의회 개원(1990.10.4.)

- 서독 출신 국회의원 519명 및 동독 출신 국회의원 144명 참석
-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수상 등 동독 출신 무임소 장관 5명 연방정부 취임 선서
- 콜 서독 수상이 통독 의회에서 행한 연설 주요내용
 - 동독지역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사회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급선무
 - 통독 비용은 막대하나 이는 공동의 장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독 경제가 재건되면 증대되는 재정수입으로 충당 가능
 - 서구 동맹에의 잔류, 군축 및 군비통제 계속 추구 입장 천명
 - NATO, EC(구주공동체) 및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테두리 내에서 미국, 캐나다와의 우호 협력관계 지속 희망
 -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를 축으로 한 구주통합 운동 가속화 천명
 - CSCE 기능 강화 및 분쟁예방센터 창설 노력
 - NATO 동맹국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 간 협력 및 불가침선언 서명 등 동반자 관계 정립 희망

3. 독일 통일 관련 향후 일정

- 1990.10.14. 통일독일로 편입된 동독지역 5개주 주의회 선거
- 1990.11.19.~21. 파리 개최 CSCE 정상회의에서 독일 통일 최종 승인
- 1990.12.2. 전독일 총선 및 신정부 구성

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독일 방문(1990.11.9.~10.)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및 콜 수상과 회담을 갖고, 콜 수장과 함께 양국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함.
- 또한 양국 각료 간에 경제·산업·과학·기술협력조약 및 노동 및 사회분야 협력협정 등 2개 협정이 서명됨.

가나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4/8/1-62

1990년 중 가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90년도 시정연설

- Rawlings 국가원수는 전국 방송망을 통한 1990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시책 발표
 - 지방의회를 통한 일반대중의 참여민주주의 강화
 - 국가경제의 재건, 공공 및 복지시설 향상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정부예산 절약

2. 1990년도 예산 발표

- 재무경제기획장관이 발표한 1990년도 예산 내역
 - 세출액: 8.45억 달러, 세입액: 8.96억 달러, GDP 성장률: 5%, 인플레이션: 15%

3. 다당제 요구 민주화 운동

- 가나 초대 대통령 Nkrumah 기념위원회, 1990.7.24. 다당제 민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가나 정부는 7월 초부터 Rawlings 국가원수 및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당제는 서구의 정치제도로써 아프리카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없으므로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정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홍보활동을 전개
- Movement for Freedom and Justice라는 단체가 8.1. 다당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 Christian Council은 12.21. 기자회견을 통해 1992년부터 복수정당체제에 의한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정당정치활동의 금지조치 해제를 촉구

4. 주요 인사 외국 방문

- 양골라 정부사절단 방문(1990.3.25.~27.)
 - 국가원수 예방, 양국간 협력 등 논의
- Chissano 모잠비크 대통령 방문(1990.4.3.~5.)
 - 상호협력, 모잠비크 평화, 남아프리카지역 문제 등 논의
- 리비아 합동위사절단 방문(1990.6.18.~20.)
 - 가나·리비아 합동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 재정협력, 노동협력, 인사교류 등 협의
- 이란 건설농촌개발장관 일행 방문(1990.11.14.)
 - 국가원수 예방, 양국간 협력 논의
 - 제1차 가나·이란 협력상설위 회의 개최

192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과테말라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4/9/1-60

1990년 중 과테말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과테말라 국가화합위원회와 URNG(게릴라단체) 간 평화회담 개최

- 1990.3.27.~30.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양측간 협상 후 1990.3.30. 평화달성 합의에 서명
 - 동 평화협상은 루터고 세계재단, 노르웨이 교회협의회, 노르웨이 정부가 중재
 - 국가화합위원회: 1987.8월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미 각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경제, 사회단체들이 망라하여 각국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과테말라는 9월 위원회를 발족
 - 과테말라 게릴라단체: 3개 무장 게릴라 단체와 불법정당인 과테말라노동당으로 구성
- 주요 합의내용
 - 과테말라 정당대표와 게릴라단체 대표단과의 회의를 1990.5월 하순경 개최
 - 기업계, 종교계, 일반사회단체 대표와 게릴라 대표단과의 회의를 6월경 개최
 - 상기 회의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군을 포함한 과테말라 정부 측과 게릴라 측 간 최종회의 개최
- 평화회담 평가
 - 30년 동안 10만~15만 명의 사망자와 3만여 명의 실종자를 기록하고 있는 과테말라 게릴라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2. 과테말라 평화회복을 위한 게릴라단체와 각계대표 간 대화(국가화합위원회 주관)

- 과테말라 주요 정당대표(9인)와 게릴라단체 대표 간 대화(1990.5.28.~6.1.,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 El Escorial)
 - 게릴라 측은 1990년 총선을 방해하지 않고, 정당대표들은 1991년 헌법 개정으로 게릴라가 정치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의
- 전국 경제연합회 대표와 게릴라단체 대표 간 대화(1990.8.31.~9.1., 캐나다)
- 종교계 대표와 게릴라단체 대표 간 대화(1990.9.24.~26., 에콰도르 키토)
 - 키토선언으로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내평화를 정착시키자는데 합의
- 노조 및 사회단체 대표와 게릴라 간 대화(1990.10.23.~25.) 및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대표와 게릴라 간 대화(1990.10.26.~28.)가 연이어 멕시코에서 개최
- 과테말라 정부와 게릴라단체 대표 간 협상은 1990.11.11. 총선(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연
 - 대통령 선거는 1991.1.6. 제2차 선거(결선투표)까지 치를 것으로 전망

헝가리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4 / 10 / 1-229

1990년 중 헝가리 주요 정세 동향임.

1. 헝가리 외무장관, 이스라엘 공식 방문(1990.1.7.~9.)

- 사미르 이스라엘 수상, 페레스 부수상 겸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 이스라엘 측 주요 지도자들과 회담
 - 중동 문제, 동구사태 및 양국관계 강화 방안 등 논의

2. 외국 정상 헝가리 방문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1990.1.18.~19.)
 - Sulzueros 대통령 권한 대행 등 정부인사 및 주요 야당 당수와 면담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 논의
- 하벨 체코 대통령(1990.1.25.)
 - 취임 후 처음으로 헝가리 공식 방문
 - 1989.5월 이후 건설이 중단된 다뉴브강 댐 건설 재개 문제 논의
- 대처 영국 총리(1990.9.18.~20.)
 - Aatall 헝가리 총리의 초청으로 1984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헝가리 방문
 -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과 관련 영국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헝가리의 EC 가입을 목표로 한 준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영국의 협조 요청

3. 헝가리·소련 외무차관회담(1990.2월)

- 소련군 철수 구체 일정을 타결 짓지 못하고 양국 정부간 협정에 기초하여 소련군 철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원칙에만 합의함.

4. 헝가리 총선

- 헝가리 총선 제1차 투표(1990.3.25.) 및 제2차 투표(4.8.) 결과 제1당이 된 민주광장은 소지 주당, 기민당, 무소속 등과 연립하여 5.16. 비공산연정을 구성함.
 - 연정 3개 정당의 의석수는 총 386석 중 과반수가 넘는 229석
 - 형식상 연정이나 민주광장이 수상을 비롯하여 외무, 국방, 내무 등 핵심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광장 단독정부 성격의 내각 구성

5. 헝가리는 1990.11.6. 로마에서 조인된 CE(유럽이사회)의 인권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구공산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CE 회원국이 됨.

193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홍콩 장래문제, 1984-85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4 / 11 / 1-53

1984~85년 중 영국의 홍콩 정치개혁 관련 중국(구 중공)의 반응임.

1. 신화사 홍콩분사장 기자회견

- 쉬자툰(許家屯) 신화사 홍콩분사장은 1985.11.21.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이 추진 중인 홍콩의 정치개혁을 공격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홍콩 장래문제에 관한 영국·중국 양국간 이견이 표면화됨.
 - 영국은 6월 영국·중국 협정 발표와 함께 홍콩정치개혁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고 제한된 범위의 대의제도를 도입한바, 종래 임명되어 온 입법위원 일부(56석 중 24석)를 간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하고 이를 1987년까지 실시 후 review 절차를 거쳐 1997년까지 적용하기로 함.
 - 쉬자툰 분사장은 최근 영국 정부의 홍콩 내 정치개혁 추진이 영국·중국 공동성명 정신과 원칙에 벗어나는 조치로 보고 경고하는 바이며, 과도기간 중의 어떤 급격한 변동은 양국이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함.

2.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소 주임 홍콩 방문(1985.12.10.~22.)

- 지펑페이(姬鵬飛) 홍콩·마카오 주임이 Youde 홍콩 총독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기초위원회 홍콩 측 부위원장 5명의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함.
- 지펑페이 주임의 방문은 1949년 중국 정권수립 이래 최고위 인사의 홍콩 방문이며, 특히 홍콩의 과도기를 앞두고 영국·중국 간 정치개혁 문제로 대립 중인 시기에 홍콩 문제에 관한 중국의 최고 책임자가 방문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주요 일정은 홍콩 기본법 기초위원 접견, 주요 상공인 및 금융계 인사 면담, 홍콩 기본법 자문위원 성립대회 참석, 언론계 대표 및 편집장 초청 간담회 및 기자회견 등임.
- 기자회견 주요내용
 - SAR(홍콩특별행정구) 자치권 범위 관련, 영국·중국 협정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가 합의되었으며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영국·중국 협정의 틀 안에서 홍콩의 자치권 부여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
 - 언론자유는 1997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누리게 될 것임.

홍콩 장래문제,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4 / 12 / 1-183

1990년 중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공포에 관한 내용임.

1. 배경

- 1980년대 중국은 영국의 홍콩 조차기간 만료(1997.7.1.)가 다가옴에 따라 영국·청조 간 체결한 북경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홍콩반환 협의를 영국 측에 제의함.
- 1983~84년간 영국, 중국 양국은 수차례 회의 끝에 1984년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함.
 - 1997.7.1.을 기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홍콩에 특별행정구(SAR,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를 설치
 - 홍콩은 1997.7월 이후 50년간 특별행정구역으로서 현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양식을 유지
- 중국은 제7기 전인대 제3차 회의(1990.3.20.~4.4.)에서 상기 영국·중국 간 홍콩반환협정에 의거 제정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함.
 -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구 중화민국)에 대한 통일방안인 1국 2체제 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함.

2.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내용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부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중앙정부가 홍콩 행정수반을 임명(임기 5년)함.
-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대(1997~99년) 의원 60인(선거위원회 선출 10, 직능 대표 30, 직선의원 20)으로 구성됨.
- 중앙정부가 홍콩의 외교, 국방을 책임지며 외교부는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군이 홍콩에 상주하며 사회치안은 홍콩 정부가 책임을 짐.

3. 특징

- 중국 정부는 1989년 천안문사태 시 홍콩주민의 중국 민주화 운동화 지원 등을 감안하여 반중국 활동제한 및 규제조항을 대폭 강화함.
- 행정장관, 입법회 주석 등 주요 관직에 외국 여권 소지자의 취임 금지조항 삽입 등 외국 여권 소지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함.
- 입법회의의 직선의원 비율을 3기까지 50%로 한정하여 주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함.

4. 주홍콩총영사관의 대책위원회 구성

- 1990.12.13. 주홍콩총영사관은 1997년 이후 홍콩의 정치경제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홍콩장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대책위원회는 총영사관(위원장은 대사), 한국은행, 코트라, 무역협회 등 정부투자기관장, 종합상사, 항공, 해운회사, 교민 대표로 구성하며 반기별 회의를 개최함.

19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교황청 정세

생산연도 1983-1990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0-134 / 13 / 1-164

1983~90년 중 교황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신교회법 채택

- 1983.1.25.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1917년 교회법을 대체하는 아래 내용의 새로운 교회법(11.27. 발효)에 서명하여 지난 20년간 교회법 개정작업을 완료함.
 - 성직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 및 정교 분리를 추구함.
 - 주교의 권한 및 교회의 지방 분권화를 강화함.
 - 비신자와의 결혼 허용 및 낙태와 이혼을 엄격히 규제함.
 - 율법주의 탈피 및 진보적 신학 노선을 추구하고, 성직자가 맡아오던 직무를 평신도에 대폭 이양함.
 - 여성의 사제서품을 제외하고 남녀 동등권을 인정하는 등 평신도와 여신도의 권리를 강화함.

2. 이탈리아와 교황청 간 종교협약(Concordat) 서명(1984.11.15.)

- 협약 내용
 - 종교협약은 1990년 시행되며 정부가 교회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교회가 재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함.
 - 개인이 교회에 기부금을 낼 경우 200만 리라까지는 세금이 공제됨.
 - 교회도 일반 법인체와 같이 등록해야 하며 세금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음.

3. 교황은 아프리카에서의 가톨릭교세 강화, 이슬람 및 아프리카 토착문화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1985.8.8.~19. 토고,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케냐,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7개국을 순방함.

- 교황은 인권과 자유, 사회정의 등을 강조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세계의 양심에 호소함.
- 주요 일정
 - 케냐 나이로비 개최 제43회 세계성체대회(1985.8.11.~18.) 폐막식 참가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엔 건설된 성당 준공식 참석
 - 카메룬에서 미사 집전,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면담
 - 교황으로서 최초로 회교국인 모로코를 방문하여 8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

아이티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4 / 14 / 1-162

1990년 중 아이티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비상사태 선포

- 1990.1.20. 아브릴 아이티 대통령은 향후 30일간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함.
- 배경
 - 빈번한 노조파업으로 경제위기 직면 및 군 간부 피살사건 발생(1990.1.19.)으로 치안질서 불안
 - 아브릴 대통령의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1990.1.10.~14.) 기간 중 야당 인사들의 대통령 추방 운동으로 국내정국 불안정
- 주요 내용
 - 헌법상의 일부 권리를 정지하고 과격 야당인사 체포 명령
 - 해외 거주 아이티인의 국내입국 규제강화 및 내국인의 국외추방

2. 아브릴 대통령 사임

- 아브릴 대통령은 1990.3.10. 사임하고, 아브라함 군 총사령관이 대통령 권한을 잠정 대행(2~3일간)하기로 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3.12.부터 대법원장에게 임시 민간정부의 대통령직을 이양함.
 - 이는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정부와 야당 지도자로 구성된 시국수습대책위에서 결정됨.
- Trouillot(트루이요) 대법관(여)이 3.13. 임시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

3. 아이티 대선 결과

- 1990.12.16. 실시된 아이티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FNCD(좌파연합) 후보인 Jean Bertrand Aristide 신부가 대통령에 당선됨.

193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인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34 / 15 / 1-229

1990년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첸치첸(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인도 방문(1990.3.20.~23.)

- 중국·인도 외무장관회담 시 협의 내용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제경제분야에서 선진국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 측은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 중국 측은 미국·소련 관계개선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 인도 측은 카시미르 내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연계 현상 및 파키스탄 측의 테러리스트 지원을 설명하고, 종교에 입각한 영토분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함.
 - 캄보디아 문제 관련하여 양측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각기 입장 설명에 그치고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음.

2. 인도·소련 무역회담(1990.6.27.~29., 모스크바)

- 주요 회담내용
 - 1995년까지 향후 5년간 Rupee Trade 연장
 - 1990년 양국간 교역규모를 Rs 8,800Crores로 확정(인도 대소련 수출 Rs 5,300Crores, 대소 수입 3,500Crores, 1989년 교역량 Rs 7,000Crores)

3. 인도 수상 소련 방문(1990.7.23.~26.)

- 양국 정상회담 주요 협의내용
 -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호 강조하고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세계정세 및 향후 소련의 개혁 추진과정에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동의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인도 신정부의 서남아지역 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소련·중국·인도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 양국은 인도·소련 간 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이 되는 1991년에 과학, 기술, 무역, 경제 및 문화분야에서의 공동 기념행사를 갖기로 합의

인도네시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5/2/1-160

1990년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과 알리타스 인도네시아 외상은 1990.8.8. 인도네시아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양국간 국교정상화 양해각서에 서명함.
- 국교정상화 경과
 - 1989.2월 첸치천 외교부장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복교원칙에 합의
 - 1990.7.1.~4. 알리타스 외상은 중국을 방문하여 첸치천 외교부장과 회담 시 복교의 장애요 소인 캄보디아사태에 관한 포괄적 해결에 합의하고, 대중국 채무상환의정서에 서명함.
 - 1990.8.8. 리펑 중국 총리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양국 관계정상화 합의
 - 1990.9.27.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대사관 개설

2. 수하르토 대통령의 중국, 일본 및 베트남 방문(1990.11.11.~21.)

- 일본
 - 일왕 즉위식 참석, 가이후 총리와 회담
- 중국
 - 1990.8월 리펑 총리 방문에 대한 답방 방문으로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리펑 총리 등 면담, 광저우 방문, 우주연구소 및 산업시찰
- 베트남
 - 베트남 대통령, 수상 및 공산당 총서기 등과 면담하고 경험증진,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캄보디아사태 등을 논의

3. 주요 인사 인도네시아 내방 및 외국 방문 동정

- Ibragimov 소련 연방최고회의 부의장 방문(1990.1.17.~23.)
 - 1989.9월 서명한 무역·경협협정 논의
- Michelis 이탈리아 외상 방문(1990.2.17.~18.)
 -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양국 외상, 이종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체신, 자동차, 항공분야 등 협력증진 방안 협의
- 가이후 일본 수상 방문(1990.5.4.~6.)
 -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 개최

193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38

- UAE Zayed 대통령 방문(1990.5.19.~23.)
 - 1977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자관계, 국제정세, 지역정세, OPEC(석유 수출기구) 문제 등 협의
- Mugabe 짐바브웨 대통령 방문(1990.6.4.~6.)
 - 정상회담에서 무역, 기술, 교육 등 실질협력 강화, 남남협력 증진 합의
- 수하르토 대통령 태국 방문(1990.7.6.~7.)
 -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문제, 캄보디아 문제 등 논의
- Loncar 유고 외상 방문(1990.7.9.~11.)
 - 외상회담에서 양국 협력문제 및 비동맹 회의 논의
- 말레이시아 국왕 방문(1990.9.24.~30.)
 -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협력, 아세안 협력, 캄보디아사태 등 협의
- 만델라 남아프리카 ANC 지도자 방문(1990.10.19.~22.)
 - 수하르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ANC 지원 등 논의

이라크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5/3/1-276

1989년 중 이라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아랍 4개국 지역경제협력기구 ACC(Arab Cooperation Council) 창설

- 1989.2.16.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북예멘 등 4개국은 역내 공동시장의 창설을 포함하여 경제, 문화,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내지 통합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기구인 ACC를 창설함.

2. 이라크 민주화 계획 발표(1989.3월)

- 1988.8월 이란·이라크전 휴전 이후 평시체제로 이행해 온 이라크 정부는 전쟁 중 유보되었던 민주화 계획을 발표함.
 - 헌법개정(복수정당 인정, 대통령 직선, 국회 권한 확대)
- 헌법기초위에 의한 신헌법안 마련 후 국민투표에 회부 예정
- 새 헌법에 의한 복수정당 설립 및 새 국회 선거 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1989.4.1.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의석 250명에 951명 입후보, 선거유세 및 옥외집회 금지, 일반 국민 관심 저조).
- 전망
 - 4.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모두 바스당 또는 집권층 무소속 후보로서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없음. 새 헌법 제정후 정부가 약속한 일부 민주화 조치가 예상되나(4.1. 선출 국회해산 및 다당제 출현 가능), 현 집권 바스당 체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3. 제3대 국회(1989.4.1. 총선 실시) 1989.4.12. 개원

-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이 배제된바, 국회의 정당 대표성은 없음.
- 대부분의 의원은 바스당 소속 내지는 친정부 무소속임.
-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 기능은 정부 추진기관에 불과함.

4. 미국·이라크 관계

- 1984년 양국의 외교관계 복교 후 결성된 미국·이라크 상공인협회의의 미국 실업인 대표단이 1989.6.5.~9. 이라크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협의를 가짐.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6.7. 동 실업인단 접견 시 언급 내용
 - 이라크는 미국의 이란 게이트사건을 잊지 않고 있으나, 과거 문제에 집착하지는 않음.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
 - 이란과의 전쟁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라크는 휴전상태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193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이란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5 / 4 / 1-131

1990년 중 이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란의 국내 정세

- 1990.2.21. 테헤란 시내 축구장 관중 2만 명 반정부 시위 발생(물가고 등 경제난에 기인)
- 반정부 움직임 관련, 국내 반대파는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의 온건입장에 반대하는데 비해, 국외 반대파는 레자 팔레비 등의 체제전복을 통한 왕정복고를 기도함.
- 1990.10.9. 호메이니 사후 처음 개최된 제2기 Assembly of Experts를 계기로 강·온파 간 대립
- 하메네이 지도자, 라프산자니 대통령, 아마드 호메이니 간의 삼각협력, 해외 반정부 세력의 약화, 라프산자니 대통령의 입지 강화 등 관측

2. 이란·영국 관계

- 1990.3.15. 이란 정부는 영국 Observer지 기사를 간첩죄로 처형
 - 영국 정부는 이란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대사를 소환하여 유학생 출국 등 조치를 결정
- 라프산자니 대통령은 8월 루시디 사건 관련 영국 외상의 이슬람에 대한 경의 표명 등 발언 후 대영국 관계개선을 지시
- 이란과 영국은 1990.9.27.자로 외교관계 재개 합의를 발표

3. 이란·미국 관계

- 1990.4.26. Mohajerani 이란 부통령은 미국과 외교관계 재개 등 대미 직접협상을 주장하여 파문
- 1990.7월 미국의 이란 지진 피해 구호품 제공, 이란의 레바논 억류 미국인 석방 협조
- 1990.5월 미·이란 재산청구권 분쟁 중 25만 달러 이하 미국 측 배상청구권 2,750여 건에 대해 이란은 미국에 5천만 달러를 지급, 미국 AID에 대한 미상환금 55백만 달러 지급을 합의

4. 이란·프랑스 관계

- 1990.7.27.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전 이란 수상 암살기도범 등 5명을 특별사면하고 이란으로 귀환
- 1990.12.8.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프랑스 방문으로 양국관계 정상화 분위기 조성

5. 이란·EC(구주공동체) 관계

- 1990.10.22. EC의 대이란 제재 해제는 이란의 대서방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됨.

6. 이란의 역내관계

- 1990.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

이스라엘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35 / 5 / 1-159

1988~90년 중 이스라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3국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중동지역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를 비난
 - 특히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 공동의 이스라엘 보이콧위원회, 사우디 상무성 내 보이콧 위원회는 대이스라엘 수출회사의 거래 조사를 통해 수입규제 등 강경한 제재조치를 시행
- 중동 주재 대다수 공관들은 한국의 대이스라엘 쌍무관계에 관한 통계 및 실적 발표는 비난의 근거를 제공하므로 이스라엘과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

2. 이스라엘 총선(1988.11.1.) 결과

- 1984.7월 총선 실시
 - 양대 정당 리쿠드당 39석, 노동당 38석 획득, 군소정당 비중 증대
- 1988.12월 리쿠드당과 노동당은 연정을 구성

3.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 동향

- 1988.12.23. 케냐와 외교관계 재수립
- 1989.9.18. 헝가리와 외교관계 정상화
- 1989.11.3. 에티오피아와 외교관계 재개
- 1990.2.27. 폴란드와 외교관계 재개

4. 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평화

- 1989.6~7월 안보리의 피점령 팔레스타인지역 사태에 관한 토의 및 결의안 채택
- 1989.10.6. 이스라엘 각의는 중동평화를 위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카이로회담 주선을 거부
 -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중동평화 중재안 5개항을 제안

5. 이스라엘 연정 붕괴 및 신내각 출범

- 1990.3.15. 내각불신임안 가결로 연정 붕괴
 - 리쿠드당과 노동당의 연립내각이 베이커 국무장관의 중동평화 중재안 수용문제로 대립
- 1990.6.11. 샤미르 수상의 리쿠드당 주도 신내각이 출범

19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이탈리아 정세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5/6/1-223



1987~90년 중 이탈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7년도

- Craxi 수상 사임(3.3.)
 - Cossiga 대통령은 Andreotti 외상을 수상으로 지명하고 내각 조직을 추진했으나 조각에 실패
 - Cossiga 대통령은 Fanfani 상원의장을 임시 수상으로 임명(4.15.)
- Fanfani 수상의 선거 내각 출범(4.18.) 및 하원의 내각 불신임 투표 가결(4.28.)
 - Cossiga 대통령은 4.28.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6.14.) 결정
- 이탈리아 의회 총선 결과(6.14.)
 - 기민당이 1당 지위 고수, 2당인 공산당 의석 감소, 3당 사회당의 의석 대폭 증가
- Giovanni Goria 기민당 수상의 5당 연립내각 출범(7.29.)
 - 11.8. 원전 및 사법개혁에 관한 5건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 11.14. Goria 수상이 사임하였으나, 의회 신임투표에서 재신임을 획득

2. 1988년도

- Goria 수상은 2.10. 사임서 제출, 1988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존속 재신임
 - 3.11. Goria 수상 사임서 제출(3.10. 예산안 통과)
- Cossiga 대통령은 3.16. De Mita 기민당 서기장을 수상으로 지명
 - 4.13. De Mita 수상의 신내각 출범

3. 1989~90년도

- 1989.7월 De Mita 수상 사임, Andreotti 외상이 수상에 취임
- 1989~90년도 정상외교
 - 1989.5.10.~13. Cossiga 대통령 폴란드 공식 방문
 - 1989.9.17. Andreotti 수상 유고슬라비아 방문
 - 1989.10.10.~16. Cossiga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 1989.12.27.~30. Andreotti 수상 남예멘, 북예멘 교차 방문
 - 1990.1.30.~2.2. Cossiga 대통령 프랑스 방문

코트디부아르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5 / 7 / 1-112

1990년 중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코트디부아르 소요 및 파업사태

- 1990.2.16. 이래 발생한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교수, 공무원으로 확산
 - 대통령 하야, 다당제 수용, 소득 재분배 등 정치, 경제적 개혁 요구로 비화
- 1990.3.2. 학생 소요사태 확산으로 전 교육기관 무기한 휴교조치
 - 3.27. 교원노조 시위(130명 체포), 4.2. 무기한 휴교조치 해제
 - 4.7. 학생 소요사태 전국으로 확산, 4.9. 무기한 휴교조치
- 1990.4.18. 경제위기 타개책(2.3. 발표) 전면 시행 중단
- 1990.5.21. 수도권 경찰 전면 파업
- 1990.9.24. 아비장 국립대 학생 소요사태(Boigny 대통령 출마 반대)

2. 코트디부아르 군부 소요사태

- 1990.5.16. 일부 하사관급 군인 소요사태 발생
 - 국영방송국 일시점거, 공항 일시폐쇄

3.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동향 및 결과

- 1990.5.1. 복수정당제 허용 발표
 - 6.14.까지 총 14개의 신정당 창당
- 1990.10.28.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Boigny 현 대통령이 당선
- 1990.11.6. 코트디부아르 임시국회에서 헌법 제11조 및 제12조 개정
 - 헌법 제11조 개정: 대통령 궐위 시 국회의장이 신임 대통령으로 잔여임기 수행하도록 의결
 - 헌법 제12조 개정: 행정수반으로 수상직 신설
- 1990.11.25. 국회의원 선거 실시
 - 집권당(PDCI)이 총 175석 중 163석 획득

194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일본 정치 정세. 전2권 (V.1 중의원 총선 및 제2차 가이후(海部) 내각 출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35 / 8 / 1-307

1990년 중 일본 정치 동향임.

1. 가이후 일본 수상, 중의원 해산(1990.1.24.)

- 해산 배경
 - 1989.7월 참의원 선거 이래 지속되어 온 정국불안 타개를 위해 임기만료(1990.7월) 이전에 해산시킴.
 - 자민당은 금번 선거 결과에 따라 야당의 협력 유도를 모색

1944

2. 일본 중의원 선거(1990.2.18.) 결과

- 자민당의 압승
 - 총의석 512석 중 275석 획득
 - 사회당은 136석 획득, 선거 전의 83석에서 대폭 약진
 - 공명, 민사, 공산당 등 군소 정당세 퇴조
- 가이후 수상의 국내정치적 입지강화가 예상되나 수상 자신의 정치력 발휘 여부가 금후 정국 추진의 주요 관건
- 주일본대사관은 1990.2.19. 대통령 명의의 가이후 총리 앞 축전을 전달

3. 제2차 가이후 내각 출범(1990.2.27.)

- 신내각의 성격
 - 중의원 총선에서의 승리로 일단 본격 내각으로 출발
 - 리쿠르트 사건 및 록히드 사건 관련 의원 입각 배제
 - 당내 파벌 세력 분포에 따라 각료직 안배
 - 당3역(간사장, 정조회장, 총무회장)은 다케시타, 아베, 미야자와파에 할애
- 가이후 수상은 1990.2.28. 기자회견을 통해 최우선 정치과제로 외교문제는 일본·미국 관계이며, 내정으로는 소비세 정책, 토지문제, 내외 가격차 시정을 통한 물가안정이라고 언급함.

일본 정치 정세. 전2권 (V.2 제3차 가이후 내각 출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35/9/1-333

1990년 중 제3차 가이후 내각 출범 등 일본 정치 동향임.

1. 제35회 민사당 전당대회(1990.4.24.~26.)

- 1990년도 운동방침 및 조직활동 방침을 채택하고, 오우치 신임위원장 등 신 집행부를 정식 선출한 후 폐막
- 운동방침에 한국과는 향후에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일·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교차승인을 촉진하기 위한 일본 통상대표부의 북한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 포함

2. 제19차 일본 공산당 전당대회(1990.7월)

- 미야모토 의장과 후와 위원장이라는 현 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35세의 시이 가즈오를 서기국장에 발탁한 후 1990.7.13. 폐막

3. 가이후 내각 지지율 하락

- 1990.10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가이후 내각의 지지율이 6월 조사 때보다 5.6% 하락한 46%로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1.4% 상승한데 반해 가이후 수상의 개인적 인기는 하락

4. 제29차 일본 공명당 정기 전당대회(1990.11월)

- 1991년도 활동 방침을 채택하고 지도부 인사 단행
- 당면 주요 정치과제로 1991.4월 고르바초프 방일을 계기로 일본·소련 관계 타개를 위한 여·야간 협의기구 창설 주장

5. 제3차 가이후 내각 출범(1990.12.29.)

- 개각 배경: 최근 이나무라 의원 탈세사건으로 연내 개각은 무리라는 당내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개각 단행
- 신내각의 성격
 - 외상, 대장상 등 핵심 각료의 유임으로 대내외 정책의 일관성, 계속성 유지에 중점
 - 주로 각료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인물들을 대거 기용
 - 당내 파벌 세력분포에 따라 각료직 안배

194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90

일본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35 / 10 / 1-62



1990년 중 일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가이후 일본 수상, 구주 8개국 순방(1990.1.8.~18.)

- 순방국
 - 독일(구 서독),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서구 5개국 및 로마교황청
 -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 2개국
- 순방목적
 - 동서화해 급진전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
 - 동구개혁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 일본의 적극적 참여
 - 중의원 선거에 대비한 가이후 수상의 외교적 역량 과시
- 수행원
 - 나카야마 외상, 후지모토 관방부장관, 자민당 나카무라, 니카이도 중의원 등
- 주요 순방 결과
 - 가이후 수상, 중국 고립화 회피 필요성 설명
 - 베를린 연설에서 구주 순방의 목적, 구주정세 및 일본·구주 관계 등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일본의 기본인식 표명

2. 가이후 일본 수상, 아시아지역 국가(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순방 (1990.4.28.~5.6.)

- 가이후 수상은 순방 중 인도 국회에서 최근의 소련, 동구 정세와 관련하여 일본의 대아시아 기본 정책에 관해 연설함.

3. 일본 외상·NATO 사무총장 간 회담 (1990.7.3.)

-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미국 순방(1990.7.1.~16.) 중 나카야마 일본 외상은 1990.7.3. 뉘르너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차기 방위력 증강계획 책정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 NATO와의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일본의 대NATO 대화강화 합의는 극동을 중심으로 한 소련군의 전개 상황에 대한 정보획득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케냐 정세, 1988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5 / 11 / 1-239

1988년 중 케냐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모이 대통령 당선

- 1988.2.29. 모이 케냐 대통령은 집권 정당인 KANU(케냐아프리카민족동맹)의 대통령 단독후보 공천으로 경쟁없이 KANU당 집회에서 제3선 대통령으로 당선됨.
 - 모이 대통령은 소수부족인 카레진족 출신으로 1978.8월 케냐타 전 케냐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10년간 장기 집권해옴.

2. 신내각 구성

- 1988.3.24. 모이 대통령은 집권기반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기존 27개 부처를 32개 부처로 증편하고 부통령, 외무부장관, 상업부장관 등 13명의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등 신내각을 구성함.
- 강력한 정치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키바키 부통령을 보건상으로 격하하여 대통령의 통제기반을 강화하고 인력·고용성 및 기술훈련성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 제6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추진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3. 모이 대통령의 대외활동

- 이집트 방문(1988.4.2.~4.)
 - 모이 대통령은 1984년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1988.4.2.~4. 이집트를 방문하여 아프리카 및 중동 정세, 통상, 관광, 에너지, 농업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함.
 -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주재 국제중동평화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차드·리비아 분쟁에 대한 OAU(아프리카 통일기구)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1988.7.6. 케냐를 방문하여 동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의 남아공에 대한 제재 조치 채택,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을 위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함.
- 동 대통령은 7.11. Mwinyi 탄자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비난하고 운송, 통신, 공업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동 대통령은 11.15. 하메이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이란·이라크 전 종식을 위한 이란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진영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체제수립을 강조함.
 - 케냐 측은 이란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함.

194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4. 케냐·수단관계 악화

- Ouko 케냐 외무부장관은 1988.6.2. 주케냐 수단대사를 면담하여 케냐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따라 수단 반란군 SPLA(Sudanese People Liberation Army)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수단 정부가 케냐 반정부 인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려는 의사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함.
- 수단 정부는 6.7. 케냐와 남부수단 반란군과의 접촉 중단을 요구하고 케냐 소재 SPLA의 원조 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함.

1948

케냐 정세, 1989-9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5 / 12 / 1-234

1989~90년 중 케냐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78년 집권 이래 모이 케냐 대통령은 10년간 KANU(케냐아프리카민족동맹)의 유일정당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집권화를 통해 통치기반을 강화함.
- 1989.5월 모이 대통령은 무리한 Kenyanization 정책으로 인한 외국투자 감소, 외국기업들의 공장폐쇄, 실업 증가 등으로 악화된 민심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각을 단행함.
 - Karanja 부통령을 해임하고 부족 간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해 Saitoti 재무장관을 부통령에 임명함.
 - 황무지개발개간부를 신설하고 10여 명의 각료를 교체함.

2. 대외 관계

- 모이 대통령은 친서방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국가들과의 상호방문을 통해 실질협력을 강화함.
 - 동 대통령은 1988.6월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군 측에 제시한 평화안을 지지하다고 함.
 - 동 대통령은 1989.11.20.~25. 서독(독일)과 영국 방문, 1990.1.16. 제3차 한발 및 개발에 관한 정부간 회의 참석차 지부티 방문, 3.5. 세계 교육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문 등을 통해 우방국과 실질협력을 강화함.
- 대케냐 원조협의회(1990.11.19.~20., 파리)
 - Saitoti 케냐 부통령은 일본, 영국, 미국 등 10여개 원조공여국들이 참가하는 케냐 원조협의회에 참가하여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11억 달러의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공여국들은 1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함.

3. 케냐·남아공 항공 취항

- 케냐 정부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여 1967년부터 남아공국적기의 대케냐 취항을 금지하였으나 남아공 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고 남아공과 여타 아프리카 국가 간 상호 항공편 운항을 해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1990.12.8. 남아공국적기의 대케냐 취항을 허용함.

4. 케냐와 노르웨이 단교

-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에 망명 중인 K.Wamwere 케냐 반정부 인사가 케냐에 귀국 후 체포되자 이에 항의함.
- 케냐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의 항의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노르웨이와 1990.10.22. 단교함.

194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쿠웨이트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5 / 13 / 1-31

1988~90년 중 쿠웨이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쿠웨이트의 정상외교 동향

- 1989.2.26.~27.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
 - 수에즈 운하 등 프로젝트 참여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ACC(아랍협력이사회) 문제 등 협의
- 1989.12.24.~26. 양상곤 중국 주석 쿠웨이트 방문
- 1990.1.8.~10. Saad 쿠웨이트 총리 이집트 공식 방문
 - 아랍권 단결문제,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문제 협의, 5억 달러 상당 이집트 무기 구입

2. 쿠웨이트 국내정치 상황

- 1986년 쿠웨이트 정부, 국회 해산
 - 재야활동가들은 45인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및 1962년 헌법 부활 기본권보장 언론 보장 요구
 - 1989년 12월 대규모 정치집회 개최, 매주 월요일 디와니아(관습적 집회) 개최
- 1990.4.16. Saad 총리는 해산된 국회의원들과 대화
 - 국회 회복, 국민의 참정권 인정, 국회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합의

3. 쿠웨이트 국가평의회(National Council) 설치 및 신내각 출범

- 1990.4.22. 쿠웨이트 국왕은 과도적으로 국가평의회 설치 칙령 발표
 - 임기 4년의 예산 감독권 및 입법권을 갖는 과도적 기구(국민 선출 50명, 국왕 임명 25명)
 - 1986년 해산된 국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며, 새로운 민주발전 방안 제시 역할
- 6.10. 국가평의회(National Council) 위원 선거에서 50명 위원 선출
- 6.20. Saad 총리는 신내각 구성
 - 국가평의회 위원 선거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던 내각을 해산하고 신내각 구성

라이베리아 정세.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5 / 14 / 1-188

1990.1~6월 중 라이베리아 내전에 관한 주요 정세 동향임.

1. 라이베리아 내전 발생

- 라이베리아 토착 원주민 16개 종족 중 집권 크란족과 기오족 간의 분쟁악화와 도우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인권침해,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1989년 중반 10년간 동 대통령의 통치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도우 정부군은 기오족을 무차별 살상하여 국민의 지지를 상실함.
- 1989.12월 테일러 전 조달청장이 주도하는 NPFL(라이베리아애국전선, 반군세력) 200여 명이 코트디부아르부터 라이베리아 국경선을 침입하여 기오족 세력을 규합하면서 1990.6월 전 국토의 3/2을 점령하고 수도 몬로비아 시내까지 진입함.
 - NPFL 약 3500명, 정부군은 약 800명
- 1990.5월 토착 원주민 기오족 출신인 존슨(Johnson) 세력이 NPFL에서 이탈하여 미국 등 외세 개입을 통한 사태 해결을 주장함.
- 1990.6월 주라이베리아 미국대사관에서 라이베리아 정부대표단과 NPFL 간에 협상이 개최 되었으나 반군세력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동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여 성과없이 끝남.

2. 주요국 입장

- 가나,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는 반군세력을 지원하고 대만(구 중화민국), 루마니아, 이스라엘이 도우 정권을 지원함.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국들은 도우 대통령의 무기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자국민의 철수를 추진함.
 - 1990.4.17. 미국은 전세기편으로 교민, 공관원 일부 등 200여 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킴.

195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라이베리아 정세.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 번호 2020-136 / 1 / 1-281



1990.7~12월 중 라이베리아 내전에 관한 주요 정세 동향임.

1.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평화감시군 파견

- 1990.7.19.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은 라이베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미국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함.
- ECOWAS는 8월 유혈종식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이지리아, 가나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평화감시군 3천여 명을 라이베리아에 파견함.

1952

2. 임시정부 수립

- 도우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1990.9.10. 반군에 의해 처형당하고, 11월 ECOWAS 후원으로 감비아에서 결성된 라이베리아 망명정부가 몬로비아에 진입하여 11.22. 임시정부를 수립함.
- 임시정부 수립에 존슨 세력과 도우 추종병력이 합세하여 테일러 반군정부와 서로 대치함.

3. 주요국 입장

-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기니, 감비아는 평화감시군 파견 등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함.
-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는 엄정중립을 표방하고, 내전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을 지지함.
-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는 라이베리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테일러 반군정부를 지지함.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세력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불개입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국민 보호에 치중함.

4. ECOWAS 16개국 정상회담

- 라이베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ECOWAS 회원국 정상회담(13개 회원국 정상 참석)이 1990.11.27. 말리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담에서 테일러, 존슨, 도우병력 대표들은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적대행위의 종식을 희망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함.

5. 교민 철수

- 외무부는 1990.9월 라이베리아 정세악화로 인해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을 폐쇄하고 공관원, 교민들을 철수시킴.

라오스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6 / 2 / 1-107

1989~90년 중 라오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라오스 국내정치

- 1986년 제4차 라오스 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경제개혁정책 채택 및 대외개방정책 추진
- 1989.3월 최고인민회의 총선 실시 등 점진적 정치적 개선 추진
- 일당통치의 사회주의 노선 견지, 반정부 단체의 기반 및 활동 미약으로 민주화 기대 난망

2. 라오스 경제정세

- 1987년 이래 경제개혁 추진중
 - 1988년 협동농업의 가족농장제 전환, 부분적 시장경제체제 도입
 - 1989년 해외투자법 발효 이래 외국인 투자장려 및 촉진
- 경제성장 저조 및 제반 변화와 개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3. 라오스 대외정책

- 실용적 개방외교정책 추진으로 국제적 지지와 경제원조 유치 노력
-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증진 도모
-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소련 및 베트남과의 사회주의 결속은 견고하나 절대적 의존도는 감소
- 소련 및 COMECON(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의 원조 감소에 대비하여 서방국가로부터 경제 원조를 적극적으로 강구

195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리비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36 / 3 / 1-100

1990년 중 리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16차 GPC(총인민회의) 정기회의(1990.3.2.~9.)

- 108억 달러 규모의 1990/91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농·공·수산업, 금융, 원유생산, 대수로 사업, 아랍단결 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 동 회의는 폐회에 앞서 Rabta 화학공장 관련, 미국의 우려와 미국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침략위험을 제기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 반대입장을 천명함.

2. 리비아의 대서방 보이콧 촉구

- 1990.3.19.~21.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이슬람지도자 총회 개막식에서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는 미국, 영국 등을 '악의 무리'로 지목하고 이슬람 국가의 외교관계 거부 등을 촉구함.
- 세계이슬람지도자 단체는 1989년부터 카다피가 이슬람권의 친 리비아 인사를 중심으로 결성함.

3. 아랍 4개국 경제각료회의(1990.6.26., 트리폴리)

- 경제, 통상, 재정, 과학 등 분야의 아랍권 대통합을 위한 4개국(수단,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간 협력문제를 협의하는 4개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

4. 리비아·수단 통합 추진

- 리비아와 수단의 통합을 추진해온 카다피 지도자와 알바시르 수단 혁명위 의장은 1990.9.1. 양국 통합사무국 기본조직 합의서에 서명함.
- 주요 합의내용
 - 1990.9월 이전 통합기구 설치 완료
 - 1990.8월부터 1년간 월 10만 톤의 리비아 원유 수단 공급
 - 국제나일은행 창설 및 수단계은행의 리비아 통화계정 개설

5. 카다피 지도자 외국 방문 동정

- 1990.2.18. 이집트 아스완을 방문하여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간 협력문제 및 팔레스타인 등 중동 문제를 협의함.
- 바그다드 아랍정상회담 참석 후 1990.5.30.~6.1. 예멘 방문
- 1990.9.8.~9. 알제리 Janet에서 개최된 알제리, 말리, 니제 대통령과의 4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함.
- 1990.10.23.~25. 우간다를 방문하여 정상회담, 산업시찰 및 이슬람 총회 강연을 함.

말레이시아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6 / 4 / 1-56

1989~90년 중 말레이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부분 개각

- 마하티르 수상은 1989.6.14. 노동부장관 등 7명의 장관 및 6명의 부장관을 교체함.
 - 노동부장관 외 동력체신부, 공공사업부, 주택지방행정부, 토지지역개발부, 보건부, 법무부장관 경질

2. 1989년도 경제 정세

-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초래된 1985년도 이후의 경제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1988년에는 8.7%의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1989년도에는 7.6%의 성장을 지속함.
 - 경제성장의 달성은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 장려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민간투자의 급증, 특히 해외민간투자의 증가에 기인
- 경제의 당면과제는 경제 활성화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제어하고 비교적 높은 실업율의 해소에 있음.

3. 리펑 중국 총리 말레이시아 방문

- 1990.12.11. 리펑(李鵬) 총리와 마하티르 수상 간 정상회담은 축소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나누어서 개최, 축소회담에서는 마하티르 수상의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제안이 주로 논의되고, 확대회담에서는 양국관계 및 지역문제에 관해 토의함.
- 양국관계에서 말레이시아 측은 1989.12월 말라야 공산당 해체 이후 자국민의 대중국 여행제한 조치 완화를 설명하고 중국 측은 자국의 평화공존 5원칙 특히 상호내정불간섭에 의거, 동남아 내 중국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195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몽골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6 / 5 / 1-70



1990년 중 몽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소도놈 몽골 수상 일본 방문(1990.2.27.~3.4.)

- 주요 일정
 - 일왕, 중의원·참의원 의장 예방
 - 카이후 수상 회담, 기자회견
 - 오사가 및 교토지방 여행
- 수상회담 내용
 -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 및 일본·몽골 간 교역확대 노력 합의
 - 몽골의 소형제철소 건설을 위한 무역보험 부보 약속
 - 몽골의 변혁, 쇄신에 대한 일본의 환영 및 지원
 - 일본·몽골 간 관계발전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 표시

2. 몽골 민주화 운동

- 1989.12월 몽골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시위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1990.3.12. 몽골 집권 인민혁명당은 당 정치국원과 중앙위 서기 전원의 사임을 발표함.
- 민주화 시위 배경
 -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동구 개혁으로 인한 영향
- 몽골 정부의 대응
 - 민주화 요구의 부분적 수용: 몽골민주연합의 공식인정, 당의 지도적 역할을 삭제한 신당 강령 초안 채택, 몽골민주당 등 야당 창당대회 허용
 - 정치일정 제시: 바트문흐 서기장은 2.13. 당 중앙위 총회 및 인민대회 조기 공표

3. 총선 및 대통령 선출

- 1990.7.29. 실시된 총선에서 총의석 430석 중 402명 당선 확정(득표율 51% 미만의 28석은 1개월 내 재선거 예정), 몽골인민혁명당 343명, 몽골민주당 23명, 몽골사회민주당 4명 등 당선
 - 금번 총선은 인민혁명당(집권당)과 5개 야당이 참여한 혁명 후 최초의 민주선거로서의 의의
 - 미국·영국·소련 등 국제참관단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이 대체로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의견 표명
- 대인민회의에서 9.3. Ochirbat 후보(현 대통령)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함.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 승인 문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136 / 6 / 1-120

1987~90년 중 미국 신탁통치령인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승인 문제임.

1. 경위

- 1947년 유엔 결의에 따라 남태평양 도서지역(마셜제도, 북마리아나,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 미국의 전략신탁통치령이 됨.
- 1986.5.28. 유엔 신탁통치이사회는 상기 도서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해제 결의안을 채택함 (소련은 반대).
- 미국은 신탁통치해제를 위해 1982.10월 마셜제도, 1983.6월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 각각 Compact of Free Association(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이 발효되자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각각 독립을 선언하였고, 군사안보분야를 제외한 제반분야에서 독립국가의 권한을 향유함.
- 팔라우는 1986.1월 미국과 Compact of Free Association를 체결하였으나 미발효 상태이며, 북마리아나는 1975년 주민투표를 통해 미국의 Commonwealth에 귀속하기로 결정함.

2. 주요국의 입장

- 미국은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외교관계 수립을 권유함.
 - 신탁통치해제를 위해서는 유엔신탁통치이사회와 안보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여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발효시켜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뉴질랜드, 호주, 피지, 서사모아, 통가는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을 국가 승인함.
- 일본은 Free Association 하의 독립이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사실상 미독립 지역으로 간주함.
- 영국, 프랑스, 중국은 신탁통치 해제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미국의 일방적인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발효가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음.
- 소련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신탁통치 종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3. 한국 정부의 입장

-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1986년 독립 이래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수교를 제의해 온바 1990.2.1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신탁통치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독립국가로서의 흥결이 있으나 국가 승인여부는 정부의 재량사항이라고 검토함.

19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모리타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36/7/1-41



1990년 중 모리타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개각

- 제1차 개각(1990.2.4.)
 - 법무, 내무 등 6명의 장관 교체
 - 제2인자로 알려진 지브릴 내무장관의 퇴진으로 세네갈과의 관계개선 도모
- 제2차 개각(1990.2.17.)
 - 보사부 등 3명 장관급 교체
- 제3차 개각(1990.4.9.)
 - 재무장관 경질
- 제4차 개각(1990.4.28.)
 - 외무, 내무, 법무, 문교, 보건 등 7명의 장관 교체
- 제5차 개각(1990.6.18.)
 - 상무 등 3명의 장관급 교체
- 제6차 개각(1990.10.21.)
 - 재무, 상공 등 4명의 장관 교체

2. 주요 외국인사 모리타니 방문

- Jawara 감비아 대통령과 Conte 기니 대통령(1990.3.19.), 정상회담에서 모리타니·세네갈 분쟁 관련 협의
- Pereira 카포베르데 대통령(1990.6.4.~6.),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을 협의
- Trao 말리 대통령(1990.6.6.),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국경지대에서의 가축소유권 분쟁 문제 협의
- Hussein 요르단 왕(1990.8.29.),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으로 야기된 아랍문제에 대해 아랍국가에 의한 해결방안 협의
- Pelletier 프랑스 대외협력상(1990.8.28.), Taya 모리타니아 대통령에게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사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설명
- 이라크대표단(1990.9.7.), 양국 민간레벨의 친선유대를 도모
- Ramadanf 이라크 제1부수상(1990.10.15.), Taya 대통령 예방

몰타 정세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36/8/1-36

1989~90년 중 몰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Vincent Tabone 몰타 외무장관은 1989.3.17.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에서 사임함.
 - 동 장관은 대통령 선거 관련, 헌법 개정 시 국민당 원로로서 몰타 대통령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2. 몰타 의회는 4.4. Vincent Tabone 전 외무장관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함.
 - 정부는 동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를 당선 축전을 송부함.
3. 몰타 정부는 1990.5.3. 외무장관을 비롯, 내무장관, 농수산장관, 경제장관을 경질함.
 - 외무부는 De Marco 신임 외무장관에게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를 축전을 발송함.

195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나이지리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6 / 9 / 1-130

1990년 중 나이지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나이지리아 내각 수반은 1990.1.21.~25.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함.

- Aikhomu 내각수반은 1.21. 최근 개각 및 군 수뇌 인사이동에 대한 국내의 집단적 반발과 관련, 동 개각은 민정이양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특정집단의 향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함.

1960

2. 나이지리아에서 1990.4.22. 소장급 장교들이 주동이 된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한때 쿠데타 군이 국영라디오 방송을 장악했으나 동일 오후 정부군에 의해 완전 진압됨.

- 쿠데타 배경
 - 1985.8월 Babangida 대통령 집권 이래 누적되어온 전통적인 종족대립과 종교적 차별에 대한 불만의 표출
 - 물가 폭등, 실업률 증가, 경제개발정책 추진 성과의 미흡
- 나이지리아 역사상 가장 유혈적이고 사망자수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

3. 제2차 나이지리아·니제르 합동위 회의(1990.7.18.~19., 나이지리아 Maiduguri)

- 주요 합의사항
 - 정보교환, 체육협력 및 교류, 공유수자원 개발·보존·이용 협력, 국토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

4. 바방기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1990.8.30. 부통령의 임명과 11개 각료 경질 등 대규모 개각을 단행함.

- 부통령에는 전 내각수반 아이코무를, 외무장관에는 전 외무장관 Nwachukwu를 임명함.
- 부통령, 국방장관을 제외한 군 출신 전 각료(외무, 내무, 문화 및 사회 복지 등 9명) 예편 조치
 - 바방기다 대통령은 동 예편에 대해 군사정부가 갑자기 민간정부로 전환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나미비아 독립. 전3권 (V.1 1989.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6 / 10 / 1-149

1989.1~6월 중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1978년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나미비아 독립 투쟁세력(SWAPO,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남아공 간 충돌사태 관련 내용임.

1.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안보리 결의 435(1978) 이행

- 유엔 안보리는 1989.1.16.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안보리 결의 435(1978) 이행 개시일을 4.1.로 결정함(안보리 결의 629).
- 유엔 안보리는 2.16. 안보리 결의에 따라 4.1.부터 개시될 나미비아 독립절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UNTAG(나미비아 평화유지군) 규모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승인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632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동 결의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1차적으로 4,650명의 군사요원, 800명의 민간 선거감시원 및 500명의 경찰 감시원을 나미비아에 파견할 수 있게 됨.
 -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5.9. UNTAG 군 요원 및 경찰 감시요원 전원이 5.9.자로 배치완료 되었으며, 군 요원은 나미비아 내 약 30개 지점, 앙골라 내 2개 지점, 경찰요원은 윈드훅 본부에 26명, 기타 전국 각지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고 함.

2. SWAPO·남아공 간 충돌사태

- 1989.4.1. 북부 오카헨지(앙골라 국경으로부터 15km 지점) 등 지역에서 나미비아 독립투쟁 세력(서남아인민기구: SWAPO) 게릴라와 남아공 군 및 경찰 간 총격전이 발생함.
- 남아공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1989.4.4.) 요지
 - 1,000명 이상의 SWAPO 게릴라 병력이 나미비아에 침투해 있으며 이들은 SWAPO 본부와 교신중
 - 앙골라 내 SWAPO 병력이 상당한 규모로 나미비아 국경 근접지역으로 이동해 있음.
 -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나미비아 평화 프로세스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음에 주의를 환기함.
 - 안보리의 묵인하에 SWAPO가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는 남아공도 그 의무 이행을 중지 할 권리를 가진.
- SWAPO 측은 4.8. 나미비아 내 SWAPO 게릴라들에게 72시간 내 전투중단, 재집결 및 앙골라로 퇴진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나미비아 충돌사태는 일단 종결됨.

196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90

나미비아 독립. 전3권 (V.2 1989.7-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6 / 11 / 1-79

1989.7~12월 중 나미비아 독립 과정의 총선을 둘러싼 동향임.

1. 나미비아 총선 관련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1989.11.6.)

- 안보리 결의안 643의 이행에 관한 1989.11.3. 유엔사무총장의 안보리 보고서는 1989.11.7.~11. 시행될 나미비아 총선 관련 선거운동 등을 포함한 나미비아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평가
- 선거를 위해 나미비아 전역에 350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선거참관을 위해 27개국으로부터 파견된 885명의 참관요원을 포함, 금번 총선에 총 1,695명의 UNTAG (나미비아 평화유지군) 선거 관련 요원이 동원될 것이라고 함.
- 또한 제헌국회에 관한 포고 및 관련 각서교환이 11.3. 나미비아 특별대표와 행정청장 간 합의 되었다고 하며, 동 포고의 중요 규정의 하나는 여하한 법원도 동 제헌국회의 의사진행을 심리 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함.

2. 나미비아 총선 결과

- 1989.11.14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이 발표한 나미비아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 득표내용은 아래와 같음.
 - SWAPO: 57.3% 득표로 총의석 72석 중 41석 확보
 - DTA: 28.6% 득표, 21석 확보
 - UNDF 및 ACN: 각각 4석 및 3석 확보
- 투표율은 97%
- 사무총장 및 나미비아 특별대표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나미비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 하게 치러졌다고 언급함.
- 유엔에 의해 나미비아인의 유일 합법대표로 인정된 바 있는 SWAPO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 헌법 제정 및 신정부 구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나미비아 독립. 전3권 (V.3 199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6 / 12 / 1-132

1990년 중 나미비아 독립 관련 동향임.

1. 나미비아 제헌의회는 1990.1.31. 회의에서 3.21.을 나미비아 독립일로 정하기로 결정하고 2.9.자로 독립나미비아의 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2. 나미비아 제헌의회는 1990.2.16. Sam Nujoma SWAPO 의장을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함.
3. 나미비아는 1990.3.21. 75년간의 남아공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여 나미비아공화국으로 공식 출범함.
 - Nujoma 나미비아 대통령은 독립과 동시에 내각 명단을 발표함.
 - 대통령 및 수상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된 최초 내각은 주로 학자 및 독립전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안배됨.
4. 유엔총회는 1990.4.23. 나미비아의 160번째 유엔 회원국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196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노르웨이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36 / 13 / 1-85



1990년 중 노르웨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노르웨이의 동구권 지원

- 동구권과의 협력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동구권 국가 방문, 동구권 경제원조안 등
 - 동구경제개혁을 위해 설립되는 유럽개발은행에 8천만 달러 제공 예정
- 폴란드는 1990.3.12. 헝가리 지원을 위해 일부 섬유류 수입자유화 및 여타 섬유류쿼터를 증량하고 3.16. 동구원조를 위해 15.3백만 달러 무상지원을 결정함.

1964

2. 노르웨이의 EC(구주공동체) 접근 동향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정상회담(1989.3월), EFTA 통상장관회담(6월)을 통해 EFTA-EC 간 협력 심화 추진
 - 12월 EFTA-EC 간 외무장관회담에서 유럽단일경제권 구성을 위한 협상 개시 합의
- 1990.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EC 가입 지지도가 50%를 넘어섬.
- EFTA·EC 간 EES(European Economic Space) 창설을 위한 협상 진행
 - EC 측에 통보해야 할 양허법안을 놓고 집권 연립정부 3정당 간에 입장 대립

3. 노르웨이 왕위 계승권 및 국왕 병환

- 1990.5.28. 노르웨이 의회 왕위계승에 관한 헌법 조항 개정
 - 1990년 이후부터 출생하는 왕손은 남녀구별 없이 왕위계승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규정
- Olav V 노르웨이 국왕이 병환으로 6.3.부터 병원 입원(6.22. 퇴원)
 - 6.6. 노르웨이 국왕의 쾌유를 비는 대통령 명의의 위문문 전달

4. 노르웨이 노동당 신내각 출범

- 1990.9.21. Syse 수상의 과거 주식법 위법사실보고서 발표
- 1990.10.29. Syse 수상은 국왕에게 내각사직서 제출
 - EC 접근에 대한 연립3당 간 의견대립(보수당 및 기민당은 긍정적, 중앙당은 강력 반대)
- 1990.11.3. Brundland 수상의 노동당 소수 단독내각 출범

니카라과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6 / 14 / 1-220

1990년 중 니카라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니카라과 총선 결과(산디니스타 정권의 교체)

- 1990.2.25. 니카라과 총선에서 전국야당연합의 차모로(Violeta Chamoro) 후보 당선
 - 야당연합의 차모로 후보 55% 지지 획득, 42%를 얻은 오르페가 후보에 승리
 - 여당 후보인 오르페가 현대통령은 선거패배를 인정하고 정권인수 협조 약속
 -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연합이 압승
- 야당연합 차모로 후보의 승리 요인
 - 미국의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선거 지원 및 카터 전 대통령, 유엔, 미주기구 등 선거감시단 파견
 - 현 산디니스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및 장기간 지속된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 동구권의 민주화 개혁, 코스타리카 및 온두라스 등 인접국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영향
-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
 - 역내 친미정권에 의한 중미평화 정착 계기
 - 좌익혁명이념 퇴조 및 쿠바에 개혁압력 가중
 - 14개 야당연합의 결속력 미약, 산디니스타 영향 하의 군부 및 경찰 반발이 취약 요인

2. 니카라과 신정부 출범과 정세

- 1990.4.25. 차모로 신임 대통령 취임
 -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10여 년간의 니카라과 내전 종식을 실현
- 콘트라(반군) 해체
 - 4.19. 정권인수팀, 콘트라 및 산디니스타 3자 간 콘트라 해체에 합의하고 종전협정 서명
 - 베네수엘라 공정대 등으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군 감시하에 6.10.까지 콘트라 해체
 - 5.30. 콘트라 측과 신정부는 무장해제에 관한 마나과협정 체결
 - 반군 해체 시한(6.10.)까지 총 11,228명이 무장해제하고, 약 4천 명이 추가로 무장해제 예정
- 정권안정을 위해 산디니스타 세력과의 타협추구
 - 산디니스타 정권하의 국방장관인 오르페가를 참모총장에 임명
 - 이에 대해 야당연합이 반발하고, 콘트라 측은 무장해제를 일시 거부
- 10.26. 정부, 노조, 고용주 3자 간 Social Pact 서명 합의로 3차례 위기 극복

196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파키스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36 / 15 / 1-118

1990년 중 파키스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파키스탄 하원의원 선거(1990.10.24.) 결과

- 야당세력인 IDA(이슬람 민주동맹)가 부토 전 수상의 PDA(파키스탄 민주동맹)에 압승
 - 18개 군소정당 연합세력인 이슬람 민주동맹은 과반에 가까운 48% 의석을 획득
- 부토 전 수상의 파키스탄 민주동맹은 20% 의석 획득으로 예상외 참패
 - 집권 중 경제발전 부진, 정국불안과 부정부패 연루설, 군부와 대립 관계 등이 패배의 요인

1966

2. 나와즈 샤리프 신내각 출범(1990.11.6.)

- 1990.11.6. 파키스탄 의회는 이슬람 민주동맹 의장 나와즈 샤리프를 신임수상으로 선출
 - 샤리프 신임 수상은 중도우파 성향의 인물로 미국과의 관계강화 전망
- 1990.11.7.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 전달
 - 샤리프 수상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 경제분야에서 관계강화를 예상

폴란드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6 / 16 / 1-123

1990년 중 폴란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폴란드·이스라엘 간의 국교 재개

- 1990.2.27. 폴란드 외상과 이스라엘 외상은 바르샤바에서 양국간 외교관계 재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23년 만에 국교를 재개함.

2. 폴란드 수상, 프랑스 방문(1990.5월)

- Mazowiecki 폴란드 수상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및 수상과 회담
- 미테랑 대통령과의 회담(5.28.) 시 폴란드·독일 국경을 조약으로 보장하는데 대한 프랑스의 지지입장 및 새로운 구주질서 수립문제 등을 협의함.

3. 폴란드 하원 대통령 선거 실시 및 의회 해산안 의결

- 폴란드 하원은 1990.9.21. 금년 12월 중 대통령 선거 실시 및 1991.3월 말까지 의회 해산안을 가결함.
- 그간 논란이 되어온 대통령 선거 및 총선 조기실시 문제를 각 정파 간 대화를 통해 의회에서 최종 공식 확정함.
- 폴란드 하원의장은 10월 대통령 선거일자를 1990.11.25.로 공고함.

4. 폴란드 대통령 선거

- 1990.12.9.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레흐 바웬사 자유노조 위원장이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민선 대통령(임기 6년)에 당선됨.
 - 바웬사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총 유효투표의 74% 득표)
- 12.10. 대통령 명의를 축전을 발송함.

196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파나마 사태. 전6권 (V.1 198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6 / 17 / 1-256

1988.2~12월 중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델바에 파나마 대통령은 1988.2.25. 노리에가 장군을 군사령관직에서 해임함.

- 파나마 군부는 Del Valle 대통령의 노리에가 장군 해임에 반발하여 군부가 지지하는 여당인 민주혁명당 단독으로 의회에서 솔리스 문교장관을 신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Del Valle 대통령을 축출함.

1968

2. 미국은 1988.3.11. 파나마운하 사용료(연 8천만 달러) 지불 유보, 파나마 관세 우대적용 해제 등 대파나마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함.

3. 솔리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1988.3.18. 파나마 정부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4.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8.4.2. 미국민 보호 및 파나마운하 안전을 위해 육·해·공 병력 1,300명을 파나마에 추가 파병함.

5. 미국과 파나마 정부는 1988.5.25. 노리에가 장군 퇴임을 위요한 아래 내용의 미국·파나마 간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됨.

- 노리에가 장군의 1988.8.12.자 퇴임
- 퇴임 후 1989.5월 총선까지 노리에가 장군 해외 체류
- 비상조치 해제, 집회 및 언론의 자유보장, 해외 반정부인사 귀국 허용 및 정치범 석방
- 미국의 노리에가 장군 마약범 기소 철회

6. 델바에 전 파나마 대통령은 1988.12.21.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및 부시 대통령 당선자를 면담하고 파나마사태 조기종식 방안을 협의함.

파나마 사태. 전6권 (V.2 1989.1-6)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6 / 18 / 1-229

1989.1~6월 간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군부 지지 집권여당인 민주혁명당은 1989.1.6. 6개 군소정당을 규합, 국가해방연합을 구성하여 조직 및 세력을 확장함.

- 이에 대해 주요 4개 야당으로 구성된 야당연합은 1.21. 차기 대선 정·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노리예가 장군의 군부정권에 대항함.

2.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89.4.6. 전 레이건 행정부의 대파나마 경제제재 조치 1년 연장을 발표함.

- 미국 내 파나마 정부 자산(5,000만 달러) 동결
- 파나마운하 사용료 지불 중단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중지
-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파나마 지원 중단
- 파나마 국민의 미국 입국 및 제품 반입 시 마약 소지 등 감시 강화

3. 1989.5.10. 파나마 선관위는 5.7. 실시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전면 무효를 선포함.

4. 미국과 EC(구주공동체) 12개국 등은 1989.5.11. 파나마 정부의 대선무효 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

- 미국은 전투병력 1개 여단을 파나마에 증파하고 파나마 국민과 군부에 노리예가 전복을 촉구

5. OAS(미주기구)는 1989.5.17. 파나마에 대표단 파견 및 노리예가 장군이 대선 승리자에게 정권을 이양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6. 파나마 야당연합은 1989.6.28. 여당인 국가해방연합과의 협상에 동의 표명함.

- OAS 대표단이 파나마 정부, 야당, 군부 3자 간의 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 노력의 결과로 야당의 입장 변화

196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파나마 사태. 전6권 (V.3 1989.7-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6 / 19 / 1-249

1989.7~9월 간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OAS(미주기구) 중재로 1989.7.16.~17. 파나마 여당, 야당, 군부 간 3자회담이 개최됨.

- 여당은 Woerner 미국 남방사령부 사령관의 파나마 출국, 야당은 노리예가 장군의 퇴진을 주장하며 대립함.

2. 1989.7.20. 워싱턴에서 개최된 OAS 외상회의에서 아래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함.

- 조속한 시일 내 자유선거 실시 후 1989.9.1. 정권 이양
- 권력이양은 헌법 규정과 파나마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권력이양 전에 노리예가 장군은 파나마를 떠나야 함.

3. 1989.8.3. 재개최된 3자회담에서 여, 야, 군부는 9.1. 여야 정치세력을 망라한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하고 선행조건으로 미국의 파나마 경제제재 해제 및 미국 남방사령부 증원 병력철수를 제의함.

4. 파나마 국가평의회는 1989.8.31. 현 대통령 권한대행 임기만료에 따라 로드리게스 전 감사원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9.1.자로 파나마 임시과도정부를 출범시킴.

- 동 임시정부는 친노리예가 6개월 한시 정부로서 야당 연합의 노리예가 퇴진 및 민주화 추진 압력으로 인해 난관 봉착이 예상됨.

5. 1989.9.6. 파리에서 개최된 EC(구주공동체) 12개국 정치위원회는 아래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함.

- 1989.9.1. 출범 파나마 임시정부의 불인정
- 파나마 고위인사 접촉 금지
- 파나마 정부 또는 군부 주관행사 불참
- 국제기구에서의 파나마 지지 금지
-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대파나마 원조 중단

파나마 사태. 전6권 (V.4 1989.10-11)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7 / 1 / 1-159

1989.10~11월 간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파나마 군부 소장파가 주도하는 반노리예가 쿠데타가 1989.10.3. 발생함.

- 친노리예가 정부군은 쿠데타를 진압하고 10.3.부터 무기한 통행금지 실시, 일체의 집회 불허, 언론보도 통제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함.

2. 노리예가 장군은 1989.10.12. 쿠데타 진압 이후 5개항의 비상조치를 발표함.

- 공직자 보수 무기한 동결
- 공직자 해임 제한 관련 법규 효력 정지
- 교수·교사 임면 및 전보권 행사 관련 법규 효력 정지
- 일체의 집회·결사 금지
- 정부임명 지역대표위원회 위원(501명)에 대한 노리예가 장군의 총감독권 부여

3. 미국 행정부는 1989.11.3.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을 1990.1.1.부터 금지 조치를 검토함.

- 한국 정부는 파나마선적 보유 한국 해운사에 대한 대비계획 수립을 통보

4. 제16차 OAS 총회에서 1989.11.13.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대표는 파나마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 파나마 국민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시까지 파나마 주재 OAS 회원국 대사를 소환함.
- OAS 역내위원회를 결성하여 합헌 정부 출범을 위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함.

19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파나마 사태. 전6권 (V.5 1989.1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7 / 2 / 1-214



1989.11~12월 중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국 정부는 1989.11.30.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 금지를 발표함.

- 1990.1.31.부터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을 전면 금지

2. 파나마 국민의회는 1989.12.15. 대미 전쟁상태를 선포, 노리에가 장군을 행정수반으로 선출하여 아래의 비상대권을 위임함.

- 정부기관의 업무조정
- 행정부장관 및 국방군 장교 임면권
- 대통령과 대외관계 협조
- 외국과의 협정 및 조약 서명

3. 미국은 1989.12.20.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기소를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함.

- 미군은 파나마 텔레비전 방송국을 접수하여 미국의 군사개입이 노리에가를 체포·기소하기 위한 작전임을 파나마 국민들에게 알리고 엔다라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및 칼데론 부통령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서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선언함.

4. 노리에가 장군은 1989.12.24. 주파나마 교황청대사관으로 피신하여 정치적 망명을 요청함.

5. 파나마 선관위는 1989.12.27. 엔다라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인함.

- 5.7. 실시된 선거에서 64%의 득표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
- 12.27. 외무부는 엔다라 신정부 대통령 앞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파나마 사태. 전6권 (V.6 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7 / 3 / 1-143

1990년 중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파나마 교황청대사관에 피신하고 있던 노리에가 장군은 1990.1.3. 자진투항 형식으로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됨.
 - 노리에가 장군은 미국으로 압송되어 미 연방 법무부에 의해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미국, 영국, 일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정부는 1990.1.5. 엔다라 대통령의 파나마 신정부를 승인함.
 - 한국 정부는 1.4. 엔다라 대통령 앞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하고 1989년도 대파나마 무상 원조(20만 달러 상당 기자재)를 공여함.
3. 엔다라 대통령은 1990.1.18. 파나마 국가재건 시책을 발표함.
 - GNP(국민총생산) 감소, 실업률 증가, 정부재정 파탄 등 노리에가 정권 폐해 유산 청산
 - 사회, 단체 고용인력 및 조직 재평가(잉여, 무능 부패 인력 축출)
 - 파나마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미국 및 우방국 경제지원 확보
4. 미국 의회는 1990.2.7. 대파나마 원조 예산안을 승인함.
 - 총 10억 달러 규모 중 4,200만 달러 우선 승인하여 미군의 파나마 침공 시 파손된 주택복구 사업 등에 활용함.
5. 파나마 의회는 1990.3.1. 개원(의장, 부의장 선출)하여 3.31. 통금 조치를 해제함.
6. 엔드라 대통령은 1990.4.29.~5.4. 미국을 방문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요청 및 미국·파나마 마약퇴치협정을 체결함.

197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파푸아뉴기니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37 / 4 / 1-85



1989~90년 중 PNG(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PNG·솔로몬제도 간 해상국경조약 조인(1989.1.25.)
2. 소련의 대PNG 활동 관련 정보보고서(1989.3.21.)
3. Namaliu 수상, 각료 4명을 경질한 소폭 개각 단행(1989.5.21.)
4. Namaliu 수상, 호주 수상 초청으로 호주 공식 방문(1989.5.23.~28.)
 - 방문기간 중 PNG·호주 개발협력조약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5. Bougainville 일원 비상사태 선포(1989.6.22.)
 - PNG 정부, Bougainville 동광 일원 강경파 지주들의 반정부, 폭력 테러사태 해결을 위한 최후의 합헌적 조치로서 비상사태를 선포 결정
6. Bougainville 소요사태 배경 및 결과 보고(1989.10.30.)
 - PNG North Solomons주 동광 일원 지주들이 토지 및 환경 손상보전 요구를 주장, 1988.11월 표면화된 Bougainville 소요사태는 무장 강경파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 North Solomons주 분리·독립운동까지 발전하였으나,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 결과 1989.10.27. 평화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일단 진정국면에 돌입
7. 대만(구 중화민국) 무역사무소 개설(1990.2.22.)
 - 1989.3월 PNG·대만 간 합의한 Port Moresby 주재 대만 무역사무소 개설
8. Namaliu 수상 방미(1990.5월)
 - 현직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1주일간 공식 방문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 등 일정 소화
9. Namaliu 수상, 4명의 각료를 새로 임명하는 일부 개각 단행(1990.6.25.)
10.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PNG 입장을 표명한 Circular Note 보고(1990.8.21.)
11. Namaliu 수상, 3명의 각료를 임명하는 일부 개각 단행(1990.8.30.)
12. 호주 수상, PNG 방문(1990.9.2.~6.)

포르투갈 정세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37 / 5 / 1-93

1987~90년 중 포르투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포르투갈 Porto Santo섬에 미국 공군기지 설치 문제

- 1987.3.14. 포르투갈 일간지는 Porto Santo섬의 NATO 기지에 다양한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군기지 개조공사 시작 보도
- 1987.11.11.~13. 스페인을 방문한 Cavaco 포르투갈 수상은 스페인 토레혼 미국 공군기지 주둔 F16기의 포르투갈 이전이 미국으로부터 공식 제의된바 없다고 언급

2. 소아레스 포르투갈 대통령은 1987.11.23.~29. 민선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함.

3. 포르투갈은 1988.11.14. 런던에서 스페인과 함께 WEU(서유럽연합)에 가입하기로 정식 서명함.

4. 포르투갈과 모잠비크 간의 외교관 상호 추방

- 1989.3.17. 포르투갈 정부는 리스본 근교에서 발생한 모잠비크 반정부단체 인사의 암살사건 배후인물로 주포르투갈 모잠비크대사관 서기관을 지목하고 추방함.
- 모잠비크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3.18. 마푸토 주재 포르투갈대사관 참사관을 추방

5. 포르투갈은 구식민지 앙골라의 평화협상 지원을 위해 1987.7월 Barroso 포르투갈 국무상을 앙골라에 파견함.

- 차관 제공, 쿠바군 철수에 대비한 군사교류 방안 협의 등

6. Cavaco 포르투갈 수상은 1990.1.11.~13. 미국을 공식 방문함.

7. 포르투갈 중장기 정세보고

- 1988년도 포르투갈 중장기 정세보고(1988.8.19.)
- 1989년도 포르투갈 중장기 정세보고(1989.7.10.)

197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국제기구 가입 노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중근동과

MF번호 2020-137 / 6 / 1-126

1989~90년 중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국제기구 가입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팔레스타인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문제

- 미 국무부는 1989.5.1. 브리핑 시 PLO의 WHO 가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베이커 미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함.
 - 정치적 문제는 WHO와 같은 유엔기구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러한 기구가 정치화될 경우 주요한 본연의 기능을 이탈하게 됨.
-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대리는 5.4. 주미국대사관 직원을 초치하여 PLO의 WHO 가입 저지를 위한 한국 측 지원을 요청함.
-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동 문제에 대한 토의연기를 주장하고 지지를 요청함.
- 미국의 압력 및 사무국의 비협조로 PLO의 WHO 가입 시도가 좌절됨.

2. 주유네스코대사는 1989.6.20. 각 지역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6.19.)에서 PLO의 유네스코 가입 건을 제25차 총회의 가의제로 채택함을 결정하는 타협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제36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1989.6.22. 토의에서 팔레스타인 지원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

4.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WTO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1989.8.28. PLO가 WTO에 자격미달임을 지적하고 심의를 차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단독 제출하였으며, 중동국가는 PLO를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페루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7 / 7 / 1-173

1990년 중 페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페루 총선 동향 및 결과

- 1990.4.8. 페루 총선(정·부통령 선출, 상원의원 60명 및 하원의원 180명 선출)
 - 야당 민주전선 Vargas Llosa 후보(32.5%), 무소속 Alberto Fujimori 후보(29.1%)가 대통령 결선투표 진출(여당 후보는 3위)
- 선거결과 분석
 - 1985.7월 집권한 Alan Garcia 대통령의 사회주의 지향적 경제정책 실패로 지지 상실
 - Llosa 후보와 Fujimori 후보의 자유경제체제로의 복귀 주장이 국민들에게 부각
 - 무명 후보였던 Fujimori 후보의 급부상은 자본가에 대한 견제와 신선한 이미지가 요인

2.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 1990.6.10.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Fujimori(일본계) 후보가 당선
- Fujimori 후보의 승리 요인
 - 구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새로 등장한 Fujimori 후보에 대한 참신한 기대감
 - 동양인의 근면 성실성에 대한 호감 및 인디언 혼혈족이 대부분인 주재국 국민의 동양인에 대한 동질감
 - Llosa 후보의 과격한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 좌익성향 유권자들의 Llosa 후보에 대한 반감이 Fujimori 후보 지지로 표출
- Fujimori 당선자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축전 전달

3. 후지모리 신정부의 정책 및 정세

- 1990.7.28. Fujimori 대통령 취임
- 페루 정부는 8.7. 비상사태 선포(전국 11개 지역에 30일간)
 - 8.9. 긴급경제조치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들의 소요 및 폭동사태 방지 목적
 - 긴급경제조치는 전 정부로부터의 초인플레이를 진정시키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환율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촉진, 초인플레이 억제, 국가재정적자 해소에 중점
- Sendero Luminoso 게릴라들의 계속된 테러로 치안 상황 불안

197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루마니아 정세, 1981-85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137/8/1-41



1981~85년 중 루마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1.4월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국가평의회 의장(루마니아 대통령)은 루마니아 노조에 대해 자치권 확대를 시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2.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60명의 수행원을 대동 1982.11.21.~27.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웨이트를 방문함.
 - 파키스탄 방문 시 핵무기 문제, 아프가니스탄사태, 레바논사태 등을 논의함.
 -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동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구 캄푸차) 정세를 설명하고 루마니아의 시아누크 연정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함.
 - 인도네시아 방문 시 제3세계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함.
3. 1983.12.27. 루마니아와 일본 정부는 루마니아에 대한 채무구제 조치에 관해 합의하고 각서를 교환함.
 - 약 100억 엔 상당의 과거 채무의 변제를 최장 6년간 지불 연장하기 합의함.
4.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1984.10.15.~17. 독일을 방문함.
 - 루마니아 측은 핵무기 협상에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국가의 참여를 제한한바, 콜 독일 총리는 유럽국가의 직접 참여에는 반대하고 미국·소련의 주도적 협상을 지지함.

1978

루마니아 정세, 1989-9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7 / 9 / 1-240

1989.12.22.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공산정권 붕괴 후 전개된 루마니아의 정세 동향임.

1. 차우세스쿠 대통령 실각

- 1989.12.16.~17. 티미쇼아라 반정부 시위대와 군경 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함.
 - 정규군이 반정부시위 세력에 가세하여 차우세스쿠 보안군의 저항을 대부분 진압
- 차우세스쿠 부부 12.25. 처형

2. 임시정부 수립

- 마네스쿠 전 외무장관 주도 구국위원회 중심의 임시정부가 1989.12.23. 수립
- 구국위원회는 공산당의 권력독점 폐지, 개헌, 국명 변경 및 내년 4월 자유총선 실시 등 정치개혁 발표
 - 기존 국호인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을 루마니아로 변경
- 12.27. 비정규군인 보안군을 국방부 지휘하에 두도록 조치
 - 정부군의 진압작전 성공으로 차우세스쿠 지지 보안군 병력이 속속 투항

3. 자유총선 실시(1990.5.20.)

- 배경
 - 1989.12.22.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 이후 민주화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총선 실시
 - 대통령, 상원의원 119명 및 하원의원 398명이 선출됨.
- 선거 결과
 - 일리에스쿠 구국전선 후보가 압도적 지지(86.2%)로 대통령 당선
 - 일리에스쿠 임시 대통령은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바르샤바조약이 존속하는 한 동 기구에 잔류 하면서 소련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도 우호협력관계를 다져 나가겠다고 밝힘.

4. 일리에스쿠 대통령은 1990.6.28. 취임 후 첫 내각을 발표함.

- 외무장관에 40세의 Adrian Nastase 구국전선 집행위원을 임명함.
 -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 발송

5. 루마니아인 10여만 명은 1990.11.15. 수도 부카레스트 및 10여 개 도시에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전개함.

- 물가자유화 정책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국민 불안이 촉발된 것으로 일리에스쿠 신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197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르완다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7 / 10 / 1-93

1988~90년 중 르완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Habyarimana 르완다 대통령 취임식이 1989.1.8. 르완다 국회의사당에서 외교단을 비롯한 각계인사 5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

2. 우간다 르완다 반군의 르완다 침공(1990.10.2.)

● 발단

- 1990.10.2 새벽 약 2~3천 명 규모의 Tutsi 르완다 무장반군이 르완다 북동부 우간다 접경으로 부터 침투, Habyarimana 대통령 정부의 전복을 기도

● 경과

- Rwegyema 전 우간다 국방차관이 이끄는 반군은 10.4. 수도 키갈리 근방까지 진격하여 정부군과 교전함.
- Habyarimana 대통령은 서구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10.3. 르완다에 귀환하여 벨기에 등에 반군진압을 위한 군사지원 요청
- 벨기에, 프랑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은 10.5. 자국민 보호 명분아래 군대파견
- 프랑스 및 벨기에군은 키갈리 국제공항 및 주요기관을 방위

● 반군 지도자 Rwegyema는 캄팔라에 체류하며 추가병력 동원을 도모함.

● 10.10. 동 대통령은 200만 명에 달하는 르완다 해외 난민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부룬디 및 르완다 간 지역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함.

● 르완다 국방부는 11.3. Rwegyema 반군 지도자가 10.2. 전사했다고 발표함.

● 르완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으로 11.20. 르완다와 우간다 간 정상회담 및 우간다 부총리 참석하에(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르완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함.

● 11.22. 현재 르완다 정부군은 북부 우간다 접경 및 동부 Akagera 국립공원에서 반군을 소탕 중임.

- 반군은 소규모 부대로 분산, 게릴라전을 전개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7 / 11 / 1-234

1989~90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남아공 내 권력구조 개편 움직임

- 집권 국민당은 1989.3.13. Botha 현 대통령(73세) 후임에 De Klerk 문교장관 겸 국민당수(52세)를 지명하기로 결의함.
- Botha 대통령의 뇌졸중 입원 및 대통령직 사임 의사 표명에 따라 헌정 위기 발생
- 동 대통령은 사퇴를 거부하고 헌 헌법이 보장한 1990.3월까지 집권 예정임을 천명함에 따라 Klerk와 Botha 간 대치 상태가 지속됨.

2. Botha 남아공 대통령 사임

- Botha 대통령은 1989.8.14. 사임하고 De Klerk 문교장관 겸 국민당수(53세)가 8.15. 대통령 대행에 취임

3. 남아공 총선(1989.9.6.)

- 국민당(NP) 93석, 보수당(CP) 39석, 자유민주당(DP) 33석, 기타: 1석
- 국민당은 과반수 의석은 확보했으나, 지지율 대폭 감소

4. 남아공은 1990.2.2. 흑인 지도자 만델라의 석방 등 개혁 조치를 발표함.

- ANC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조기 석방(1962년부터 구속 중) 및 ANC(아프리카 민족회의) 합법화
- 여타 반아파르트헤이트 활동단체 합법화 조기시행

5. 남아공 정부의 흑인 지도자 만델라 석방에 대한 외무부 당국자 논평(1990.2.5.)

- 한국 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조기 석방 및 ANC의 합법화를 결정하는데 대해 이를 환영하며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함.
- 한국 정부는 남아공이 인종차별 없는 민주사회로 평화적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남아공 정부가 추가 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취하기 바라며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하고자 함.

198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7 / 12 / 1-56

1990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라크 대통령 사우디 방문(1990.3.17.~19.)

-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시 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 등 대부분의 주요 문제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특히 성지문제와 관련해 이라크 측이 사우디 입장을 지지하고, 이란·이라크 양국간 평화회담 문제와 Bazoft 기자 처형 문제에 있어서 사우디 측이 이라크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됨.

1982

2. 사우디·중국 외교관계 수립

- 1990.7.21.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사우디는 중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한편, 대만(구 중화민국)은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여 주사우디 대만대사관의 통상대표부로의 격하가 예상됨.

3. 사우디·소련 외교관계 재개

- 경위
 - 1926.9월 사우디·소련 간 외교관계 수립(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가 히자즈 왕국 선포 후 소련·사우디 수교)
 - 1938.4월 소련은 사우디가 미국 편향적인데 대한 불만표시로 주사우디 소련대사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킴.
 - 1988.1월 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 소련 방문 시 아프간 철군 및 관계개선 협의
 - 1990.9.17. 사우드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간 복교 합의 서명(모스크바)
- 배경
 -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 세력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
 - 소련의 걸프 연안국가와의 관계개선 일환(1963.3월 쿠웨이트, 1985.9월 오만, 11월 UAE 등에 연이어 걸프 공동체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 사우디는 고르바초프 이래 소련의 체제변화에 긍정적인 평가
 - 1989.2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철수(소련·사우디 간 관계개선 전제조건)
 - 미국의 중동정책이 미온적인데 비하여 소련은 아랍 내의(Cause) 적극 지지
- 분석 및 평가
 - 사우디는 종래 친미 일변도에서 점차 실익위주의 다원화 외교노선으로 전환
 - 최근 걸프사태 관련, 소련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 양국 관계개선의 적절한 시기로 포착
 - 사우디는 걸프 역내 안보에 소련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소련은 사우디와의 경제협력이 필요하여 상호 이해일치
 - 사우디와 소련은 막대한 원유 부존국가로서 관계개선 이후 양국이 유가 문제들에 협력하는 경우 세계 석유시장에 지대한 영향이 예상

세네갈 정세, 1986-89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7 / 13 / 1-90

1986~89년 중 세네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총선 및 신정부 구성

- 1988.2.28. 총선거에서 디우프 현 세네갈 대통령은 73% 득표로 재선됨.
 - 여당(PS)이 71%로 전국구 45석, 지역구 58석 등 100석을 차지하여 다수당 유지
 - 제1야당(PDS)은 전국구 15석, 지역구 2석 등 17석 차지
- 디우프 대통령은 4.4. 대통령직에 재취임하고 4.5. 신정부 각료를 임명함.
 - Fall 외무부장관 등 9명은 유임, 5명은 자리바꿈, 13명이 신규로 입각

2. 총선 소요사태

- 총선 후 학생 및 과격분자의 소요사태가 지속되어 세네갈 정부는 1988.2.29. 다카르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금지, 집회금지를 시행함.
 - 소요 관련 노동자 및 청년 120명이 2.29. 집회 혐의로 체포, 재판에 회부
- 야간 전면 통행금지 조치를 3.2. 공포함.
- 문교부는 3.14.부터 대학과 초등학교의 수업을 재개하도록 휴교 조치를 완화함.

3. 축전 발송

- 디우프 대통령, 1986.12.20.~21. 개최된 세네갈 제11차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로 재선
 - 12.30. 전두환 대통령(민정당 총재) 명의의 축전 발송
- 1988.2.28. 디우프 대통령 재선
 - 3.5.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 4.3. 동 대통령, 국회의사당에서 재취임식 거행
 - 4.3.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 4.5. 개각에서 Fall 외무부장관 유임
 - 4.9.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 발송
- 12.10. Ndaw 국회의장 선출
 - 12.17.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 발송

198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세네갈 정세,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7 / 14 / 1-79

1990년 중 세네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개각(1990.3.27.)

-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은 23개 행정부처를 15개로 축소하는 기구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함.
 -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의거, 기구 축소개편
 - 각료 11명 퇴임, 2명 유임, 5명의 신규 기용, 나머지는 자리 바꿈
- 개각의 특징은 정부의 2인자였던 대통령 비서실장의 퇴임과 모리타니아 등 인접국과의 분쟁으로 인한 외무장관의 경질, 기획협력장관으로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D. Ka를 문교장관으로 하향 전보한 것으로 분석됨.

2. 세네갈 30주년 독립기념행사(1990.4.4.)

- 세네갈은 독립 3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군대사열, 대통령궁 리셉션을 개최함.
- 대통령 담화에서는 국내정세 관련 개각의 당위성, 모리타니아로부터의 피난민 구제사업 호소 등을, 국제정세는 나미비아 독립 등 남아프리카 문제를 언급함.

3. 제12차 세네갈 사회당 전당대회(1990.7.28.~29.)

- 사회당 총재로 디우프 대통령 재선출
- 당 정치국 개편: 30명의 신임 정치국원 선출
- 당 중앙위원 등 선출

4. 디우프 대통령 외국 방문

- 말리 방문(1990.3.1.):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 지역협력, 세네갈·모리타니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협의
- 이집트 등 아랍국 순방
 - 카이로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인권과 아프리카'에 관한 심포지엄 참석(1990.3.4.)
 - 이어서 사우디, 쿠웨이트 및 모로코 순방(1990.3.7.~11.), 양국간 협력, 이슬람회의 개최문제, 세네갈·모리타니아 분쟁 해결 협의
- 이탈리아 방문(1990.5.2.~5.): 정상회담에서 국채문제, 유럽·아프리카 관계, 양국 협력문제 등을 논의. 이탈리아는 세네갈 식량지원을 위해 400만 달러의 재정원조 약속
- 미국 방문(1990.5.12.~18.):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협력, 세계정세를 논의 하고, 의회 지도자, 세계은행·IMF 총재 면담
- 말레이시아 방문(1990.6.1.~3.): 15개 개도국 정상회담 참석, 개막연설

수단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37 / 15 / 1-172

1989~90년 중 수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수단 신내각 구성(1989.3.25.)

- 남부 내전 문제에 대한 연립정당 간 이견, 군부 불만, 경제난 등으로 인한 정국 혼미상황 수습의도
- 구성(각료 23명 중 우선 17명 임명)
 - UMMA당: 8명, DUP당: 5명(외상 포함), 기타: 4명, 회교정통파인 NIF당 불참

2. DUP당과 SPLA 간 평화협정

- 협정 체결
 - 1988.11.16. 제2당인 DUP당 지도자 Mirghani와 SPLA 지도자 J. Garang 대령 간 체결
- 주요 협정내용
 - 회교율법의 동결, 주권에 미치는 모든 외국과의 군사협정 폐기, 비상사태법 폐지, 상호정전 합의
 - 상기 협정 이행 시 1988.12.31.까지 범국민 헌법회의를 개최하며 동 헌법회의 준비위를 구성하고 헌법회의 장소를 결정하도록 위임함.

3. 구국경제회의(1989.10.30.~11.21.)

- 구성: 정부·민간 각 분야 인사 약 600여 명
- 개최 동기: 혁명정부의 지나친 경제활동 통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
- 회의 내용: 공정한 부의 분배 및 지역격차 해소 노력, 사회간접자본 복구, 계획경제 강화 등

4. 남·북 평화교섭(1989.12.1.~7., 케냐 나이로비)

-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수단 정부 측은 연방제를 강조하고 반군 측은 회교형법 폐지, 긴급조치 해제 등을 강조, 양측의 상이한 주장으로 실질적 진전 달성에는 실패함.

5. 리비아·수단 통합 추진

- 리비아·수단 통합을 추진해온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와 알바시르 수단 혁명위 의장은 1990.9.1. 양국 통합사무국 기본조직 합의서에 서명함.
 - 완전한 통일은 4년 후 실현 전망

198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수리남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7 / 16 / 1-103

1990년 중 수리남 군부 쿠데타에 관한 정세 동향임.

1. Richard Howland 주수리남 미국대사는 1990.1.10. 수리남 군부가 민간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면에 자주 나서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의 서한을 수리남 정부에 전달함.

- 수리남 외무부는 1.30. 미국대사 서한에 대한 답신을 통해 국내문제와 대외문제 관계에서 오해나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이는 주재국의 관습과 처리속도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2. Shankar 수리남 대통령은 국가평화를 위하여 반군대표 Jungle Commando Brunswijk와 동부지역대표 및 군부지도자 Bouterse, 정부대표 사회교육개발장관 및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범국가적 회의를 1990.3.19.부터 주재함.

- 반군 측은 반군점령지역 및 Hinderland에 대해 행정력, 지휘, 통솔 등 관할권을 요구하였으며, 정부 측에서는 국가의 분할을 반대함.

3. 수리남 정부는 3주간 계속된 위기사태 해결을 위해 1990.6.15.부터 Lachman 국회의장 등을 대표로, 반군단체 Jungle Commando 대표와 가이아나 Cayenne에서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음.

4. 수리남 군부는 1990.12.24. 저녁 모든 행정권을 접수하며 일주일 내 과도내각을 수립하고 100일 이내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스위스 정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37 / 17 / 1-24

1989~90년 중 스위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신임 상·하원의장 선출

- 스위스 의회는 1989.11.27. Victor Ruffy 하원의장과 Luregn Mathias Caveltz 상원의장을 각각 신임 선출함.
- 12.9. 신임 상·하원의장에 대한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의 축하 서한 발송

2. 1990년도 스위스연방 대통령 선출

- 1989.12월 Dr. Arnold Koller 스위스연방 사법경찰장관이 1990년도 연방 대통령으로 피선됨.
- 12.26.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3. 1991년도 스위스연방 대통령 선출

- 1990.12.5. Flavio Cotti 현 부통령 겸 내무장관을 1991년도 대통령으로 선출함.
- 1991.1.1.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198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튀니지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37 / 18 / 1-63

1988~90년 중 튀니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사면 발표

- Ben Ali 튀니지 대통령은 국민화합의 일환으로 1988.3.21. 독립기념일을 기해 2,044명의 재소자 등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기로 발표함.
- 동 사면 조치는 대통령 취임 1개월 후인 1987.12.6. 시행한 대사면(2,487명)에 이어 두 번째임.

1988

2. 대통령 취임 연설

- Ben Ali 대통령은 1989.4.9. 총선에서 선출된 141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회 개원식에서 대통령 취임 선사와 더불어 대국민 연설을 함.
- 대통령 연설 요지
 - 정권교체 이래 개혁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거 수행
 - 전국민의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교육, 문화, 보건 등 제 분야의 기회균등 주력
 - 전국민적 화합을 위한 정치범 사면 법안 시행 계획

3. 개각

- Ben Ali 대통령은 1990.3.4. 외무장관 등 4명의 각료를 신규 임용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
- 이번 개각은 Karoui 수상을 재신임한 가운데 경제부처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외교총수에 국제경제외교 경험이 많은 중앙은행 총재 역임자를 기용

4. 대통령 외국 방문

- 미국 방문(1990.5.15.~17.):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랍정상회담 관련 협의
- 이탈리아 방문(1990.6.4.~6.):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협의
- 독일(구 서독) 방문(1990.7.16.~18.): 경제협력증진방안 등 협의

5. 축전 발송

- 튀니지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외무장관 취임 계기 축전 발송

상투메프린시페 정세

생산연도 1984-1988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7 / 19 / 1-104

1984~88년 중 상투메프린시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서방권 차관 공여국회의(1985.12.9.~11., 브뤼셀)

-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차관 공여를 위한 서방권 회의에서 극도로 악화상태에 있는 상투메프린시페 경제의 장래 문제를 협의함.
- 상투메프린시페의 경제상태는 계속적인 생산감소, 농업부진으로 매우 악화되어 1985년 중 Manuel da Costa 대통령은 토지사용제 인정, 무역의 국가독점제 폐지, 관민합작회사 설립 등 일련의 자유경제요소를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프랑스 프랑화권 가입 의사를 표명함.

2. 개각

- Da Costa 대통령은 1986.2.3. 개각을 단행, 자신이 겸직하던 외무장관 등 각료를 임명
 - 일부 정부기구 개편과 함께 3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고 4개 부처 장관을 수평이동, 이는 차관 공여국 회의 후 강화하기로 한 자유경제체로의 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됨.
- 1987.1.17. 개각에서 외무장관 등 교체
- 헌법 개정에 따른 수상제 신설에 따라 Celestino Rocha da Costa 전 문교부장관을 1988.1.9. 수상에 임명하고, 수상제 시행에 따라 외무장관 등 일부 개각을 단행

3. 대통령 외국 방문

- 가봉 방문(1985.5.16.부터 2주간): 친선 및 양국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 및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국과의 협력강화 도모
- 가봉 친선 방문(1986.5.13.~16.): 지리적 고립성을 탈피하기 위한 인근국과의 협력강화 도모
- 네덜란드 방문(1986.9.16.~18.): 여왕, 수상 등과 면담. 네덜란드는 상투메프린시페로부터 코코아를 주로 수입

4. 쿠데타 실패

- 40명의 무장대원이 1988.3.8. 해상으로부터 상투메프린시페에 상륙하여 경찰 본부를 공격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하였으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
- 양측 간 교전 중 무장세력 2명 사살, 10여 명이 투항하여 시내는 평온을 회복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발표

1989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7 / 20 / 1-75

1990년 중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트리니다드토바고(T&T) 정변

- T&T 회교 반군은 1990.7.27. 저녁 국회의사당 및 TV 방송국을 무력 점거하여 Robinson 수상 및 각료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정부군과 대치함.
 - Abu Bakr T&T 회교지도자를 추종하는 회교 반군은 국회에서 각료회의 중인 Robinson 수상 등을 억류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함.
 - 현 정부의 부정부패 비난, 수상 사임 및 90일 내 총선 실시 요구

2. T&T 정부의 비상조치 선포 및 Robinson 수상 석방

- T&T 정부는 1990.7.28.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반군과 대치하다가, 7.31. 반군과 조속한 총선 실시 및 즉각 사임을 합의한 후 Robinson 수상을 석방함.
- T&T 정부는 동 합의가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금번 사태로 사망 100명, 중상 69명 등 총 사상자 314명 발생함.
 - Robinson 수상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입원 가료 중

3. 쿠데타 종료로 비상사태 및 통금 해제

- Abu Bakr 회교 지도자와 그 추종자 50명이 1990.8.1. 정부군에 무조건 항복하고 인질 전원을 석방함으로써 쿠데타는 종료됨.
- T&T 정부는 12.10.부로 비상사태와 통금을 해제함.

탄자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7 / 21 / 1-55

1990년 중 탄자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탄자니아 지도자의 다당제 고려 발언

- 탄자니아 유일당 CCM 당수인 원로정치인 니에레레는 1990.2.22. 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NEC에서 사회주의 기본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당제 채택여부 신중 검토 의향을 표명
- 니에레레는 이후 자택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동 결정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함.

2. 개각

- 므위니 탄자니아 대통령은 1990.3.16. 새로운 내각 구성을 발표함.
 - 각료직을 종전 27개에서 22개로 축소하고 10명의 각료 경질
-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각료가 경제개혁추진에 소극적이며 부정부패를 야기한 점을 지적하고 신임 내각을 통한 경제난국의 해소를 도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3. 신 투자촉진법 도입

- 탄자니아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세제혜택 및 투자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투자촉진 정책을 1990.4월 중 의회 상정 예정임.
- 동 법안에는 므위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의 보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됨.

4. 총선 및 대통령 선출

- 1990.10.28. 대통령 선거와 총 선거 실시
- 1990.11.4. 선관위, 므위니 대통령이 95%의 득표로 당선되었다고 공식 발표
- 총선거 결과 241석 중 33명의 현직 의원이 탈락하고 신진 인사 당선
- 므위니 대통령, 수상, 외무부장관 등 신임 각료 20명 임명

5. 므위니 대통령 외국 방문

- 아랍에미리트 방문(1990.3.7.~10.):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아랍·아프리카 정세 등 논의
-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순방(1990.4.19.~22.): 양국간 유대 및 경제협력 논의

199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영국 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37 / 22 / 1-124

1988~90년 중 영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8년도

- 1/4분기 및 2/4분기 정세보고
 - 1988.3월 북아일랜드사태, 5월 지방의회 선거 등

2. 1989년도

- 1989.7.24. 대처 영국 수상은 내각 22인 중 13인의 각료를 대폭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
 - 제3기 집권 중반기에 정책전반 재검토, 차기 총선에 대비 젊은 인사 다수 기용
 - John Major 신임 외무부장관 발탁(1990.1월 개각에서 재무부장관으로 기용)

3. 대처 수상 보수당 당수직 출마 포기

- 1990.11.20. 영국 보수당 당수 1차 경선에서 대처 수상 당선 무산
 - 대처 수상은 차기총선 승리를 위해 1990.11.22. 2차 투표 출마 포기 선언

4. 영국 메이저 수상 신내각 출범

- 1990.11.27. 보수당 당수 경선 제2차 투표 결과 메이저 재무부장관이 신임 당수에 당선
- John Major 보수당 당수는 11.28. 신임 수상 취임하여 신내각을 구성
 - Douglas Hurd 외무부장관 유임

소련 정치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38 / 1 / 1-115

1988~89년 중 소련 정치의 주요 동향임.

1.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88.11.28.) 및 연방 최고회의(12.1.)에서 헌법개정안 및 정치 개혁안을 채택함.

- 헌법개정 추진 배경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실질적 국가운용과 유리된 선언적 성격의 헌법을 지양하고 기능적 헌법제정을 시도함.
 - 개혁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 추진
 - 입법부(최고회의)의 권한강화 및 당 통제·지도 기능의 분산추구
 -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은 10.1. 임시 최고회의시 의장(국가원수)에 피선됨.
- 헌법개정안 요지
 - 기존 최고회의 의원수를 1,500명에서 425명으로 축소하고 최고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인단격인 인민대표대회(2,250명)를 신설
 - 최고회의 의장의 권한 강화: 최고회의 의장에게 광범위한 입법 및 집행기능 등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의 권한을 부여
 - 헌법심의위원회 창설에 의한 법치국가 지향

2. 공산당 중앙위원회 특별회의(1989.9.19.~20.)에서 정치국 및 서기국을 개편함.

- 정치국 및 서기국 개편
 - 정치국 정위원직에 마슬류코프 소련 제1부수상 및 크루치코프 KGB 의장 임명
 - 정치국 후보 위원직에 프리마코프 소련 연방회의 의장 및 푸고 당 통제위원장 임명
- 민족문제에 대한 당의 강령 채택
 - 각 공화국에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
 - 단, 분리독립 주장은 불용
- 평가
 - 개혁에 비협조적인 인사 제거, 리가초프 등 보수세력 견제
 - 측근인 마슬류코프(경제정책 책임자) 및 프리마코프(대외정책 참모)의 발탁으로 고르바초프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 및 개혁정책 지속 의지 표현

199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소련의 극동개발계획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38/2/1-194



1987~90년 중 소련의 극동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임.

1. 소련 극동개발계획의 개요

- 개발비: 3,480억 달러
- 개발지역: 바이칼호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소련 극동지역
- 개발목표(계획기간 최종년도: 2000년)
 - 공산품 및 전력생산: 현재보다 2배 증가
 - 석유 생산: 현재보다 3배 증가(연간 6백만~8백만 톤)
 - 천연가스 생산: 현재보다 9배 증가(연간 1천 3백만~1천 5백만 큐빅미터)
 - 농업 및 식품가공분야 투자증대로 식량생산 자급자족 달성
 - 어류 가공공장 및 선박정비소 건설, 대규모 여항증설로 수산업 중심지를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
- 추진 전망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7월 소련 극동지역을 순방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을 통해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해 개발 필요성과 의지를 강하게 천명함.
 - 소련 극동지역에는 방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고르바초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개발계획은 소련 지도층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2. 소련 극동개발계획 관련 공관보고

- 주일본대사관의 보고(1987.9.4.)
 - 관계인사를 접촉하여 의견 청취 결과,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의 여지가 있으나 각종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련과의 경제협력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음.
- 주영국대사관의 보고(9.16.)
 - 주재국 외무부 소련과장을 접촉하여 의견 청취 결과, 소련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통해 역내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봄.

제28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1990.7.2.-13.

생산연도 1990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0-138/3/1-335

제28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가 1990.7.2.~13. 개최됨.

1. 주요 결정사항

- 당 강령 승인
 -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주의 지향
 - 규제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이행
 -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 자발적인 참여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연방체제 수립 촉구
- 당 인사 개편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재선
 - 부서기장에 고르바초프가 추천한 이바시코 우크라이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선출
 - 보수파의 거두인 리가초프 정치국원은 낙선
 -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
 - 현 정치국원중 보수파인 리가초프, 보로트니코프, 자이코프와 대통령 측근인 야코블레프, 메드베데프 탈락
- 방어적 군사정책 지지의 결의안 채택
 - 합리적이고 충분한 국가안보와 방위능력 강화

2. 분석 및 평가

-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 안정화 및 지속적 개혁추진 기반 정비
 - 개혁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보수적 성향의 당 역할 약화
 - 주요 정책결정 등 정치국의 기능은 이미 대통령위원회가 수행
- 첨예한 보수파·혁신파 간의 대결속 타협적 개혁노선 채택
 -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산당의 영향력 의존 불가피성 감안, 실리적 타협
 - 민주집중제 유지 및 군, KGB, 내무성 등 당 초급조직 존속 등
- 연방분리·독립 추세 무마 및 공화국의 자율권 확대
 - 비러시아계인 각 공화국 지도자의 정치국원 편입 배려로 탈소련 독립 추세 무마 및 통제
-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대외정책 지지
 - 보수파들의 군축협상 등 대서방 양보 비난 불구, 방어적 군사정책 지지의 방위정책 관련 결의안 승인

199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대소련 경제협력 관련 각국의 입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138 / 4 / 1-272

1990년 중 대소련 경제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임.

1. 서독의 대소련 차관 제공

- 차관규모: 50억 마르크(31억 달러)
- 1990.6.18.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콜 독일 수상 간의 회담에서 원칙 결정
 - 소련을 경제적으로 도움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정치적 성격의 차관임.

1996

2. 서방의 대소련 지원 추진 동향

- 1990.6.26. 더블린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에서 대소련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
 -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대소련 경제원조 즉각적 지원을 주장
 - 영국, 덴마크: 대소련 지원 원칙에는 동의하나 신중한 시행 촉구
- 1990.7월 휴스턴 G7(서방선진국) 정상회담 개최 시
 -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측면지원하고, 고르바초프의 입장 강화를 위한 대소련 경제지원 필요성에는 공감
 - 구체적인 지원방안 관련, 이견 노정으로 대소 금융지원 문제는 각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일임하되, 공동지원 방안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EC 등이 소련 측 경제사정 조사 후 이를 토대로 원조 및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

3. 소련 내 식량사정 악화와 서방의 지원 동향

- EC: 1990.11.21. 소련에 식량 10억 달러 상당의 조속 지원 계획 발표
- 고기, 우유, 감자 등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 대도시와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12.1.부터 제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식량배급제 실시
- 독일: 11.28. 델치크 콜 수상 특사는 시타린 소련 부수상과 독일의 생필품 긴급원조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 일본: 서구 국가의 지원동향을 감안하여 인도적 관점에서 식량 및 의료원조를 전향적으로 검토 예정
- 캐나다: 11.28. 식량구입자금 1,290만 달러의 신용원조제공 계획 발표

미국 의회 동향 일반. 전2권 (V.1 1989.12-90.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8 / 5 / 1-180

1989.12~90.6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하원 윤리규정 개정

- 1989.11.30. 미국 하원은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1990.1월부터 연간 수령 가능한 선물 총액을 기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초청자의 경비로 여행 가능한 기간은 국내여행은 4일, 국외여행은 7일로 정함.

2. 1990년 미국 의회 주요 의제

- 미국 하원 의장은 1990.1.24. 전국제조업협회 연설에서 1990년 미국 의회는 동구권에 대한 외교정책 문제, 대기 정화, 탁아소 운영지원 등 아동보호, 재정적자 감축, 교육, 의료보험, 마약 범죄, 민간 저축률 제고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함.

3. 미 국방예산의 의회 제출

- 1990.1.29. R.Cheney 미 국방장관은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군대의 자질과 역량을 유지하고 소련, 동구권 변화에 대응하는 군의 구조재편 등을 위해 1991년 국방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함.
- 국방예산안은 수권예산 요구: 2,951억 달러, 지출 예산 요구: 2,921억 달러

199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의회 동향 일반. 전2권 (V.2 1990.7-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8 / 6 / 1-120

1990.7~12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미국 의회 101기 회기(1990.1.3.~10.28.)에서 재정적자 삭감, 이민법 개정, 1991년 세출법안 통과 등 주요 사안이 아래와 같이 타결됨.

- 미국 상하원에서 향후 5년간 4,920억 달러의 연방적자를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요지는 대외군 사원조 삭감 등 국방비 지출 억제 1,824억 달러, 의료비 등 연방프로그램 지출 삭감 990억 달러 등임.
- 미 행정부가 신청한 액수보다 1.2% 삭감된 6,927억 달러의 세출 규모를 확정함.
- 1997년 제정된 대기오염규제법을 개정하여 스모그 등 오염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이민법을 개정하여 연간 49만 명의 이민을 1992~94년간 매년 7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1994년 이후 연간 67.5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함.
- 사형선고와 총기류 규제조치를 확대하며,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을 강화함.
- 1991년도 국방예산 수권법안 통과
 - 총액은 2,883억 달러(SDI: 29억 달러, B-2폭격기 연구개발비 및 구입비: 41억 달러)이며, 미국병력 10만 명 감축, 총병력은 197만 6천 명으로 수준 유지하기로 함.

2. 중간선거 동향 및 전망

-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석 중 34명을 개선하는 중간선거를 1990.11.6. 실시할 예정임.
- 1955년 이후 계속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해 왔으며 현역의원의 재선율이 98%임을 감안할 때 금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월 현재 미국 하원 정당별 의석(총 435석) 분포: 민주당 257, 공화당 176, 공석 2
- 상원 정당 의석수(민주당 55석, 공화당 45석)를 볼 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최소한 12석 이상만 당선되면 상원의 지배가 가능하므로 민주당의 상원지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 선거), 1990.11.6. 전2권 (V.1 선거 동향, 6-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8 / 7 / 1-159

1990.6~10월 중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 동향임.

1.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 대상

-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
-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
- 주지사 총 50석 중 개선타당 주지사 36명(민주당 20, 공화당 16)

2. 전망

- 1986년 및 1988년 선거 시 현직 하원의원의 재선율이 98%이며 풍부한 선거자금으로 현역의원이 우세함. 주지사 선거의 경우 교육, 세금, 낙태 등 다양한 이슈로 접전이 예상됨.
- 금번 선거의 주요 이슈는 페르시아만사태, 1991년 회계연도 예산협상 난항, 저축대출조합(savings & loans) 비리 등이며, 현 부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하락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금번 선거에서 압승을 통해 1992년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며 공화당은 1990년도 인구센서스 결과로 선거구의 재편성을 잘 활용하여 상·하원을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민주당 및 공화당 예비선거

- 민주당 및 공화당은 1990년도 주지사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Primary)를 6~10월간 텍사스 등 36개주에서 실시하여 각각 후보자를 선출함.

199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 선거), 1990.11.6. 전2권 (V.2 선거 동향, 11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8/8/1-178

1990.11.6. 실시된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선거) 결과임.

1. 민주당의 압승

- 금번 중간선거 투표율은 36%이며 민주당이 하원 9석, 상원 1석을 늘려 상하원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함.
 - 하원(435석)에서 민주당 267석, 공화당 167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 9석이 증가
 - 상원(100석)에서 민주당 56석, 공화당 44석으로 민주당 1석이 증가
 - 주지사(50석) 선거에서 민주당 28석, 공화당 19석, 무소속 2석, 미정 1석

2. 특징

- 금번 중간선거 투표율은 36%이며 1942년 이후 최저 투표율임.
- 풍부한 자금동원 능력을 보유한 현직 의원의 재선율은 98%이며 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주지사 당선자 중 정치경험이 없는 신진인사들이 대거 진출함.

3. 평가 및 전망

- 전반적으로 집권당인 공화당의 선거전략 실패로 민주당이 압승하였으며, 공화당은 하원 8석, 상원 1석, 주지사 3석 상실 등 의석이 축소됨.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잔여임기 2년 동안 국정운영에 보다 큰 어려움을 안게 되었고, 주요정책 결정에 대비하여 의회와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38/9/1-264

1990년 중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 대외정책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및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90.2.1. 상원 외교위에서 1990년도 미국의 5대 외교정책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소련의 개혁정책 및 동구 국가의 민주화 지원 등 민주주의 가치 확산
 - 동구, 아시아, 남미국가의 통제경제정책 완화 및 민간부분의 자율성 제고 등 시장경제원칙 확산
 - 지속적인 군비통제 추구 및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 평화 증진
 - 환경보호, 테러리즘 공동대처 등 범세계적인 위험으로부터 세계 보호
 - 아태지역 국가 간의 새로운 지역협력체 창설 노력 및 NATO의 정치적 성격강화 등 우방국과의 동맹 강화
- 베이커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의 대한민국 안보공약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며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의 관건이라면서 북한의 개방화를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2. 미국의 아태지역 정책 목표

-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90.2.22. 하원 외무위 증언을 통해 1989년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로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개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1990년도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5대 정책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미국·일본 동반자 관리, 아시아 집단안보에 대한 컨센서스 재확인, 지역분쟁 해결, 미국·중국 관계 안정화 도모,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증진
- 솔로몬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이 중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및 소련과의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1988.12월 이래 7차례 미국·북한 간 접촉 등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함.

3. 미국의 대NATO 정책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0.5.4.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 동구의 민주화와 유럽 주둔 소련군의 철수에 따라 유럽에서 미국의 철수를 주장하는 신고립주의에 반대한다고 하고 미국은 유럽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함.

2001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우루과이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8 / 10 / 1-98

1990년 중 우루과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라카에 우루과이 대통령 당선자는 1990.2.21. 기자회견 시 국민화합 정부수립을 천명함.
 - 국민화합 정부는 연정이 아니라 각 당이 내각에 참여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식임.
- 동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후 1개월에 즈음한 4.1. 기자회견을 가짐.
 - 재정개혁법 시행에 따라 타격을 받게 되는 극빈계층을 위한 시한부 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및 농·목축업분야 기업들의 국내 채무해결이 긴급하며, 이를 위해 '국내 Brady Plan'을 구상
- 동 대통령은 8개 정파지도자 연석회의를 주재하여 남미 4개국 공동시장 설치 참여문제에 관해 협의함.
- 각 정파 실무대표 2명씩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 금후 동 문제 협의

2. 국제 관계

- 로드리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1990.1.24.~25.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1.25. 상기네티 우루과이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함.
 - 지역경제 통합추진에 있어 파라과이-파라나-우루과이 강을 이용한 수로개발의 중요성에 양국정부의 이해와 지원 재확인
-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이 1990.5.22.~26.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함.
 - 체육, 축산물보건, 농산물품질 관리 등 3개 분야 협력협정에 서명
- 라카에 대통령은 1990.6.11.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 축하 축전을 발송함.
-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외무 및 경제장관 회의가 8.1. 브라질에서 개최됨.
 - 역내 경제통합 관련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공동시장 설치에 우루과이 전폭 참여
 - 6.27. 부시 미국 대통령의 범민주 자유무역지대 설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 부시 대통령이 남미 5개국 순방 일환으로 1990.12.4.~5. 우루과이를 방문함.

베트남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38 / 11 / 1-65

1990년 중 베트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소련군 베트남 철수

- 소련 외교부는 1990.1.18. 베트남 캄란기지에서서의 소련 항공기 일부철수 입장을 표명함.
- 소련군의 캄란기지 주둔 현황
 - 함정 30척, 항공기 40기 배치 추정
 - 1990.1.18. 소련 외교부, 1989년 말 MIG 23, TU-16기 철수로 항공기 6-10기 잔류 표명
- 소련 측 의도 분석(우방국의 평가 및 반응)
 - 경제개혁 등 국내문제 치중을 위한 군사비 지출 감소
 - 대아시아 평화공세의 일환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수정 촉구
 - 베트남의 대소련 의존도 감소 및 실용주의 정책채택을 위한 압력의 의도
-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동남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 가능
 -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동 문제는 당사자 간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안
 - 베트남 측은 소련군의 캄란기지 완전철수에 대비, 대중국 관계개선 추진 가속화 예상
 - 미국은 소련의 아시아 주둔 군사력 감소는 환영하나,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감축과는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2. 미국·베트남 비공식 회의(1990.2.14.~17., 인도네시아 발리)

- 회의 목적
 - 단순히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며 캄보디아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의제 및 내용
 - 동남아에서의 평화 및 안보: 캄보디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여 방안, 동남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양국의 역할
 - 경제 관계: 베트남 경제회복의 성공 전망 및 개혁 문제, 베트남을 세계 경제공동체에 통합하는 문제
 - 상호 인도주의적 관심사항
 - 국제 관계: 소련 및 동구의 정세변화, 대중국 및 아세안 관계개선

200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1990



3. 일본·베트남 경험관계

- 일본의 대베트남 경험 기본정책
 - 1978.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인도적 지원 외 정부차원의 ODA(정부개발원조) 지원 중단
 - 민간부문의 경험에 대해서는 자율에 일임
- 경험 현황
 - 인도적 원조: 태풍 등 계기 긴급무상원조, 호치민 소재 병원에약품 지원
 - 문화: 외국무역학교에 일어 학습기자재 무상지원, 국립극장에 극장용 기자재 지원

베네수엘라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38 / 12 / 1-40

1990년 중 베네수엘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베네수엘라·미국·스페인 정상회담(1990.3.9., 베네수엘라 La Guzmania)

-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Gonzales 스페인 수상 및 Dan Quayle 미국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별장에서 1990.4.25. 예정된 니카라과 정권이양 문제에 대해 토의
 - 세 정상은 니카라과 정권이양 이전 콘트라(반혁명 게릴라세력)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 취해야 할 구체사항에 관한 문제에는 합의 도달에 실패함.

2. 베네수엘라의 대니카라과 파병

- 1990.3.22. 나미비아를 방문 중인 Figueredo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가 700명으로 구성된 1개 공수대대를 니카라과에 파병하여 평화유지 및 CONTRA 반군으로부터의 무기 수거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3. Perez 대통령은 1990.4.25.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6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2차례 공식회담을 갖고,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조건 완화 및 경기회복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현안 문제와 푸에르토리코 독립, 미·쿠바 관계개선, 니카라과 정권이양 등 지역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함.

4. 1990.8.2.~3. 베네수엘라에서 28개 South Commission 회원국 수상 및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South Commission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5. 쿠웨이트 동자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웨이트 정부대표단이 1990.9.13. 쿠웨이트 국왕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베네수엘라 대통령 및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가을 유엔 총회가 안보리의 대이라크 Boycott 결의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의 협조를 요청함.

200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중남미 통합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0-138 / 13 / 1-242

1990년 중 중남미지역 국가 간 경제통합 관계 동향임.

1. 1990.5.7. 주엘살바도르대사관은 중미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와 중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년 내 현안문제인 IDB(미주개발은행) 가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BCIE(중미경제통합은행)에 자본출자 혹은 기금참여를 건의함.

- BCIE는 중미 5개 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경제통합과 균형있는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함.

2. Fernando Collor De Mello 브라질 대통령은 1990.7.5.~6.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아르헨티나·브라질 간의 경제통합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함.

- 양국간 경제통합 의정서는 1995.1.1.부터 자유시장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임.

3.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990.8월 칠레를 방문하여 양국간 자유시장 창설협정에 서명함.

- 1995.12.31.부터 완전 자유시장 시현이 주요 내용

4.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동향

- 지역적, 문화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경제통합 움직임 강화
 - 역내 국가 간 무역자유화 실현 및 외채 등 당면 경제문제에 공동대처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블록화 경향에 대응
- 중남미지역 국가 간 경제수준 격차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EC(구주공동체), 아세안 등과는 달리 아직은 미숙한 단계임.
 - 최근 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 및 브라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간 소지역별 경제 통합을 추진

5. 제9차 중미 정상회담 개최(1990.12.15.~17., 코스타리카 Puntarenas)

- 중미 5개국 대통령과 파나마 대통령(옵서버) 참석하여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발표
 - 1992.12.31.까지 중미 단일관세 적용, 시행
 - 중미 정상회담을 매 반기(6월, 12월) 개최하기로 결정

중미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38 / 14 / 1-132

1990년 중 그레나다·멕시코·바하마·온두라스·자메이카 등 중미지역 국가 정세 동향임.

1. 그레나다

- 총선 결과
 - 1990.3.13. 실시된 그레나다 총선 결과, 중도보수 성향의 야당인 NDC(민주국민회의당)과 구 집권여당 NP(국민당)가 연정을 구성하고, NDC의 Brathwaite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

2. 멕시코

- Salinas 대통령 방일(1990.6.12.~20.)
 - 일본 측은 금후 멕시코에 대해 경제교류사절단을 파견하기로 약속
 - 멕시코 측은 미국·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예비교섭이 개시되었음을 설명
- Salinas 대통령 중남미 6개국 순방(1990.10.6.~13.)
 -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방문
- 대통령 연례 국정연설(1990.11.1.)
 - Salinas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2차례 연례 국정연설을 행함.

3. 바하마

- 바하마 정부는 1990.10.1. Maynard 부수상에게 외무장관을 겸직하게 하고, Carter 현 외무장관을 보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함.

4. 온두라스

- 온두라스 총선 결과(1989.1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내용)
- 온두라스 경제조치 현황 자료

5. 자메이카

- 자메이카 정부는 1990.1.30. 난항 중이었던 연례 차관협정을 IMF(국제통화기금)와 체결함과 동시에 IMF의 경제정책 권고를 수용, 환율상승 및 기본물가 인상조치 등을 시행함.
- Manley 총리는 11.4. DNP 전당대회 연설에서 자메이카는 부채가중, 생산침체의 2대 위기에 처해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위기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함.

200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유고슬라비아 정세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9 / 1 / 1-202

1983~90년 중 유고슬라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3~89년도

- 1983.5.13. Peter Stambolic 유고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대통령부 회의에서 Mika Spiljak 부통령을 신임 대통령으로, Vidoje Zarkovic 대통령부 위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함.
- 1988.12.30. Branko Mikulic 수상 내각이 유고 역사상 최초로 4년 임기 중 1년 반을 남기고 총사퇴를 선언, 유고 의회가 이를 승인함.
 - Mikulic 수상 내각의 사퇴는 동 내각이 제출한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해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2개 공화국이 승인을 거부한데 이어, 기타 유고 내 공화국들도 동 내각의 1989년도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한데서 기인
- 1989.3.16. 안테 마르코비치 수상이 영도하는 유고 제9대 신내각이 정식으로 출범

2. 1990년도

- 1990.5.15. Borisac Jovic 유고 대통령이 취임함.
- 유고 내 민족 분규
 - 7월 초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공화국, 연방정부로부터의 분리 및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주권 선언을 함.
 - 7.2. 코소보 의회(세르비아 내 자치주),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함(코소보 의회: 190명 중 알바니아인 154명).
 - 7.25.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의 주권 및 자치 선언
-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제2차 투표
 - 12.9. 실시된 총선 결과 과반수 미달 선거구에서 제2차 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12.23. 실시된 제2차 투표 결과, 세르비아공화국의 경우 사회당(전 공산당)이 총 의석 250석 중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 몬테네그로공화국에서도 Bulatovic 공산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한편, 공산당 세력이 의회 125석 중 83석을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
 - 세르비아공화국에서의 공산당 세력 상승은 Milosevic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로 평가됨.

남·북예멘 통합, 1990.5.22. 전2권 (V.1 198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9/2/1-88

1989년 중 남·북예멘의 통일협상 관련 내용임.

1. 남·북예멘 통일협상 경위

- 남·북예멘은 민족, 언어, 문화, 종교 등 동질성 유지
 - 1918년 북예멘 독립(1517년 이후 오스만 터키 지배)
 - 1967년 남예멘 독립(1839년 이후 영국 지배), 사회주의 정부 수립
- 1972.9월 남·북예멘 국경 충돌(10월 카이로에서 정전협정)
- 1972.11월 트리폴리 정상회담에서 양국 통합원칙 선언
- 1972년 이래 10여 차례 정상회담 개최, 통일협상 진행

2. 남·북예멘 통일협상(공동성명 발표)

- Saleh 북예멘 대통령은 1989.11.29.~12.1. 남예멘 아덴을 방문함.
 - 1989.11.30. Al-Beedh 남예멘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
- 공동성명 내용
 - 통일헌법안 합의(국호: 예멘공화국, 수도: 사나, 국교: 이슬람, 국어: 아랍어)
 - 통일헌법안 6개월 이내 의회 비준, 국민투표 회부
 - 아랍연맹 대표단 및 양국 내무장관 포함 공동위 감시 하 국민투표 실시
- 전망: 양국간 이념대립 등으로 실질적 통합의 조기 실현 난망

200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남·북예멘 통합, 1990.5.22. 전2권 (V.2 199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39 / 3 / 1-202

1990년 중 남·북예멘 통일협상 관련 내용임.

1. 1989.11월 이후 남·북예멘 통일협상 경위

- 남·북예멘 정상회담
 - 1989.12월부터 1990.5월까지 6차례 정상회담 개최
 - 1989.11월 아덴 정상회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남·북 예멘에서 윤번제로 개최
 - 1990.5월 양국 통합을 선언하기로 합의
- 공동각료회의 개최
 - 1990.1월 및 3월 양국 수상 주재로 공동각료회의 개최, 정부부처 설치 및 법안 채택
- 정치조직공동위원회 설치, 4차례 회의 개최
 - 정치체제, 복수정당제 등 정치조직 협의

2. 남·북예멘 통합 선포(1990.5.22.)

- 대통령 평의회 구성
 - 1990.5.22. 남예멘 인민최고회의 회의장에서 남·북예멘 통합 선포
 - 대통령 평의회(5명) 구성: 살레 전 북예멘 대통령이 대통령 평의회의장에 취임
- 1990.5.24. 내각 구성: 수상, 4명의 부수상, 34명의 각료
- 1990.5.25. 통일의회 의장단 구성
 - 5.27. 통일예멘의 국기, 국가문장, 국가 등 채택

자이르 정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39 / 4 / 1-74

1990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개각 단행
 - 1990.1.11.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경제개혁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28개 각료 중 12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함.
 - 모부투 대통령은 1965.11월부터 국방상을 겸임하는 등 강력한 통치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바, 인플레이가 1985~89년간 연평균 70%, 1989.6월 외채 80억 달러 등 악화되는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 민주화 조치 발표
 - 모부투 대통령은 4.24. 동구 유럽에서의 개혁조치가 콩고민주공화국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1~3월 말까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비판과 제안을 청취하고 다당제 채택, 1991년 대통령 선거 실시, 국회권한 강화, 헌법 개정 등 국내 민주화 개혁을 발표함.

2. 경제 정세

- 상기 민주화 개혁 조치 발표 이후 공무원들이 자기몫 찾기 운동으로 봉급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자 모부투 대통령은 7월 말 100% 봉급인상을 결정함.
- 사회각층의 봉급인상 및 국제유가인상으로 12월 말 기준 콩고민주공화국 화폐가치가 400% 이상 평가절하되는 등 경제가 악화됨.

3. 대외 관계

- 모부투 대통령은 르완다사태의 해결을 위해 1990.10.23. 르완다 및 부룬디 대통령과 회담하고 10.24. 우간다, 탄자니아 대통령과 회담함.

4. 한·콩고민주공화국 관계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부장관이 1990.7.17.~20. 방한하여 대통령 예방과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함.
 - 투자보장협정 서명 및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부장관은 10.1.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이 제안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201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네팔·인도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39 / 5 / 1-39

1990년 중 인도·네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Upadhyaya 네팔 외상 인도 방문(1990.1.2.~5.)

- Upadhyaya 외상은 Gujral 인도 외상과 양국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

2. 인도·네팔 외무차관회담 개최(1990.2.20.~22., 뉴델리)

- 양측은 무역·통관협정 안보인식, 네팔 평화지대 제언, 경험 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협의하고 차후 실무회담에서 포괄적 문서작성에 착수하기로 합의
 - 동 문서작성 완료 시 Gujral 외상이 3월 네팔을 방문하여 양국 문제 일괄타결을 위한 문서에 서명하기로 합의

3. 인도·네팔 관계정상화

- 네팔 Bhattarai 수상은 1990.6.8.~10. 인도를 공식 방문, Singh 인도 수상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특별한 우호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고, 금년 7.1.까지 양국간 현안문제들을 1987.4.1.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골자로 함. 이에 양국정부는 7.1.까지 1989.3.23.자로 효력을 상실한 무역 및 통관협정의 회복을 위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양국관계 정상화 평가
 - 금번 관계정상화는 1987.4월 이전 상태로 양국 우호관계가 일단 환원되었으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여부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불편했던 양국관계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91년 네팔 신정부 수립 이후 거론될 것으로 관측
 - 그러나 양국간 기존의 근본적 갈등요인은 내재(內在)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관계정립 문제 해결도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4. Gujral 외상 네팔 방문(1990.8.5.~7.)

- 동 외상은 Bhattarai 수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
 - 인도의 외국관광객용 통과지점 3개 추가허용, 양국간 철도부설 검토와 양국 지도자 간 교환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
- 관찰 및 평가
 - 동 외상의 주요관심사는 네팔·중국 간 군사협력 관계 저지 등 네팔을 인도 안보영역에 존치 하는데 있었으며, 네팔 측은 더 이상 중국무기의 네팔 내 반입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 관련 총영사관 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39 / 14 / 1-135

1990년 중 한·일본 간 최대 현안인 재일본 한국인 후손 문제 관련, 일본지역 총영사관의 활동내용임.

1. 1989.12월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및 나가사키현 의회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의 안전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1990.1월,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2. 1990.1.20. 오사카 일본·한 친선협회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개정 등 8개항 관철을 위한 일본·한 친선 추진대회를 개최(1990.1월, 주오사카총영사관 보고)
3. 재일한국인 후손문제에 관련된 동북 6현 민단별 활동현황 보고(1990.2월, 주센다이총영사 보고)
4. 1991년 문제(재일한국인 3세 법적지위) 자문회의 관련기사 및 아이치현 민단 활동자료, 1991년 문제 및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와의 간담회 결과보고(1990.2월 및 4월, 주나고야총영사 보고)
5. 규슈, 야마구치 기독교연락협의회는 1990.5.13. 기타규슈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문 압날제도 철폐요구 집회 개최보고(1990.5월, 주후쿠오카총영사 보고)
6. 1990.8월 야마구치현 시장 회의에서는 시모노세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1990.8월, 주시모노세키총영사 보고)

201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 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39 / 15 / 1-309

1990년 중 한·일본 간 최대 현안인 재일본 한국인 후손 문제 관련, 관계 기관·단체가 송부, 발표 또는 채택한 요망서, 성명문, 결의안 등 자료임.

1. 한국 JC(청년회의소) 일본지구 회장단 및 가나가와지구 회장단은 1990.2.9. 주일본대사를 면담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함.

- JC 회장단은 5.27. 경 고베에서 JC 일본지구 전국대회 개최 예정임을 설명하고, 주일본대사에게 기념강연을 요청함.
- 주일본대사는 재일한국인 3세 문제는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일본 측과 교섭 중이며, 전국대회는 일정상 참석이 어려우나 6.10.은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2. 1990.3월 가칭 사단법인 재일교포 법적지위 추진회 설립 발기인(대표: 박순조)은 외무부에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요청해옴.

- 재일교포의 지위향상과 그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본 거주 교포의 현황 파악 및 법적지위 향상 보호 감시 등의 사업을 수행

3. 1990.3.15. 국회 본회의는 외무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함.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와 재일본 민단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39 / 16 / 1-181

1990년 중 한·일본 최대 현안인 재일본 한국인 후손문제 관련, 재일본 거류민단의 활동 내용임.

1. 재일거류민단은 3.6. 개최예정인 민단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기초로 장총명 전 민단단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관련 진정단'을 1990.3.8.~10. 한국에 파견함.
 - 동 진정단은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하고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 협의에 대한 민단의 입장 및 요망사항을 전달
2.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은 1990.4.27. 주일본대사를 방문하여 동 연합회에서 결의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재협의'에 관한 요망서 제출
3. 재일한국청년 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은 1990.4.7. 도쿄에서 개최된 동 연합회 주최 심포지움에서 결의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관련한 요망서 및 결의문을 주일본대사관에 전달함.

201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재일본 한국인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140 / 1 / 1-172

1990년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의 적극적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재일 거류민단 등 재일한국인단체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재일 거류민단, 재일교포 법적지위 관련 진정단 한국 파견(1990.3.19.~20.)

- 진정단 구성
 - 장총명 민단 중앙본부 상임 고문 외 19명
- 방문자
 - 국무총리,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외무부차관 및 한·일본 의원연맹 회장

2. 재일 거류민단 부인회, 청년회 간부일행 방한(1990.4.21.~26.)

- 재일교포 3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부의 대통령 전달 및 정부·국회에 관련 청원서 제출
- 방한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대통령 앞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3. 재일 한국부인회 방한(1990.8.27.~28.)

- 대통령 방일성과에 대한 보고와 부인회 전국연수결과를 종합한 요망서 제출
- 권병우 재일 한국부인회 중앙본부 회장 등 부인회 간부 5명
- 방한 일정
 - 대통령 영부인 오찬
 -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예방, 한·일본 의원연맹 간사장 면담

재소련 한인동포 현황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40 / 4 / 1-145

1989~90년 중 재소련 한인동포 현황 및 실태에 관한 내용임.

1. 재소련 동포 허진(허웅배)씨와의 간담회

- 참석자
 - 한국 측: 이흥구 통일원 장관, 통일원 차관, 조사연구실장 등
 - 소련 측: 허진, 이베오리(작가, 정주영 회장 방소 시 통역), Golen Poski(Sombaminko 사장)
- 허진 발표내용 요지
 - 심정으로는 한국사람이고 법적으로는 소련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동포들은 조국의 분단을 괴로워하고 있음.
 - 소련 내 동포들은 법적으로 세 가지(북한국적자, 소련국적자, 무국적자 등)로 분류됨. 소련 국적자가 대부분이며, 소수의 무국적자들 중에는 기회를 보아 남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음.

2. 재소련 한인동포 현황 및 사적탐방 보고서

- 장소: 하바롭스크, 사할린스크, 타슈켄트,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 방문자(단장): 최서면 한국연구원 원장
- 교민 분포
 - 소련 내 동포는 약 39만 명으로 소련 전체 인구의 0.1%
 - 거주 지역: 극동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3. 사할린 동포현황 및 대책 보고

- 현황
 - 소련 정부의 태도 유연화를 배경으로 사할린 동포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이 현저하게 증가 되고 사할린 동포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추진 대책
 - 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국내 수용태세 정비, 대일본 교섭 강화, 한·소련 간 직접교섭 추진

4. 전소고려인연합회 창립총회(1990.5.17.~18., 모스크바)가 소련 내 한인단체대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201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세계 한인 상공인대회, 제1회. 서울, 1990.3.18.-2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140/7/1-36

제1회 세계 한인 상공인대회가 1990.3.18.~2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개최기간: 1990.3.18.~20.
- 장소: 호텔 롯데월드
- 주최: 미주한인 상공인 단체 총연합회
- 참가인원: 340명

2018

2. 주요 일정

- 조직위원장, 대회장 주최 리셉션
- 강연
 - 상공부 제1차관보
 - 김동기 고려대 교수
 - 이기택 연세대 교수
- 각 지역 대표별 경제, 무역환경 설명
- 분과위원회별 토의
-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주최 만찬

3. 회의 결과

- 일부 회의 참가자 금번 총회 문제점 지적
 - 국내 상공 기업인 불참
 - 재일동포 상공인 불참
 - 국내 언론의 관심 저조
- 차기 준비위 설치: 준비위원 지역별 배분 위촉
- 교민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
 - 교민청 신설 등

재칠레 한국인 학교 설립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40/8/1-34

1989~90년 중 재칠레 한국인 학교 설립 추진 경과임.

1. 주칠레대사는 1989.3월 재칠레 한인회가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본국 요로에 지원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송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주칠레대사관에 송부된 진정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 재칠레 한인회장은 상기 진정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앞으로 송부

2. 주칠레대사는 1989.3월 재칠레 한인회가 한글학교 건립 모금활동을 진행 중임을 보고하면서 교민 자녀들의 모국어 체계적 교육을 위해 문화교육원장 파견을 외무부에 건의함.

201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40 / 9 / 1-229

1988~90년 중 재일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 및 일본 내 구명운동 상황임.

1. 1990.2월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민주화 조치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장기복역한 공안사범 1,111명에 대한 특별가석방 조치함을 발표함.
2. 1990.2월 주일본대사관은 재일한국인 보안사범인 서승의 석방 결정 발표와 관련한 일본 내 언론 보도를 외무부에 보고함.
 - 서승의 석방은 신여당인 민자당 결성을 계기로 민주화 추진을 어필하기 위한 것임(아사히).
 - 한국 법무부는 동인의 석방과 관련, 일본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동인과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동경)
 - 한국 정부는 민주화와 국민화합의 정신에 기초, 서승을 포함한 정치범 22인 등 총 1,111명에 대해 특별가석방 결정(산케이)

미국 이민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0-140 / 13 / 1-252

1985~90년 중 미국의 이민법 관련 사항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89.7월 미국 상원이 7.12. John Chafee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을 보고함.

- 동 개정안은 1986년 이민법에 의한 사면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도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면 추방하지 않고 사면자와 같이 취업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1986년의 사면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봄.
 - 동 개정안은 연간 이민자 총 수 상한선을 60만 명으로 잡고 있어 Kennedy-Simpson 법안상의 상한선 59만 명을 다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2. 미국 상원 본회의는 1989.7.13. Kennedy-Simpson 이민법안을 대폭 수정 통과시킴.

- 연간 이민총수 상한선
 - 연간 59만 명으로 잡혀있던 동 상한선이 63만 명으로 결정됨.
 - 기술연고 이민 48만 명, 전문기술 이민 15만 명.
 - 총 이민 쿼터 증대 및 아시아계 이익사항 반영으로 긍정적 결과
- 동 수정안은 오랜 토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이익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어 당초의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게 됨.

3. 주미국대사관은 1990.2월 이민법 개정안과 관련, 작년 7월 이민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하원 법사위의 이민, 난민 및 국제법 소위가 개최되어 하원의 이민법 심의가 개시되었음을 보고함.

202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남미 소재 농장관리 방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해외이주과 / 남미과

MF번호 2020-140 / 14 / 1-154

1989~90년 중 남미 소재 5개 국영농장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임.

1.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9.3월 남미 소재 5개 농장관리 방안 자료를 아래 목차로 작성함.

- 검토 목적
 - 정부재산인 해외농장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활용대책을 강구함.
- 구입 경위
 - 아르헨티나: 산하비엘, 루항, 앗다 마우까 농장
 - 칠레: 테노 농장
 - 파라과이: 산베드로 농장
- 개황
-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관리 방안
- 결론
- 건의

2. 외무부는 1989.12월 한국해외개발공사에 남미 5개 해외 국영농장 처분 관련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함.

- 최종적인 농장처리 방안은 현지 공관장 의견 및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강구하되, 동 매각 등 대금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귀속을 결정할 수 있음.

한·벨기에 영사 협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41 / 1 / 1-83

1. 1986.9.20. 마약밀매 혐의로 벨기에 경찰에 의해 억류 후 1987.4월 주재국 재판에서 조기 석방되어 귀국한 남영우 및 박수일의 사건 당시 담당 변호사인 Vandermoere가 미 수령 변호비용 5만 벨기에프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벨기에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2. 주벨기에대사는 1990.7.25.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벨기에 출신 다이아몬드 거래업자 Ferstenberg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함.
 - 외무부는 7.27. 동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조치와 여권반환이 7월 말까지 처리되어 늦어도 8월 초에는 출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벨기에대사에게 통보함.

202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중국의 아국 조난선원 송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41 / 3 / 1-24

한국어선 삼양 77호 조난 선원 송환 관련, 중국의 협조 내용임.

1. 삼양 77호가 1990.1.12. 해상화재 사고로 동지나해에서 침몰하여 선원 9명 중 5명이 실종되고 4명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함.

- 중국 측은 1.17. 수협중앙회 앞으로 선원 4명의 구조사실을 알려오며 공해상에서 신병 인도를 제의하여 한국 측은 1.22. 동 구조선원 4명을 인수함.
- 중국 측은 2.6. 삼양 77호 실종선원 중 2명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한국 측 처리 의견을 문의하여 온바, 한국 측은 시신 화장 후 송환을 요청하고 2.22. 공해상에서 유해를 인수함.

2. 삼양 77호 조난선원 송환 관련한 중국 측의 협조는 한·중국 간의 어업협력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중국인 불법입국 처리대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41 / 4 / 1-56

1990.1.22. 외무부는 중국인 불법입국(불법상륙 포함) 문제 처리와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중국인 불법입국 처리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1. 대책 수립 목적

- 대다수 중국인 불법입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장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국 및 대만(구 중화민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2. 기본처리 원칙

- 불법입국 발생 시, 원칙적으로 제3국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능한 조기 퇴거 조치를 시행함.
- 정치적 난민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상의 난민처리 방식에 따르되 난민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

3. 불법입국 사전방지 대책

- 영공 대책(국방부, 교통부)
 - 방공식별 구역 내 중국항공기(군용기, 민항기) 진입 탐지 및 차단
 - 영공 진입 시 원칙적으로 착륙 불허 및 퇴거 유도
- 해상 대책(내무부, 국방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 중국선박의 한국영해 진입 사전차단
 - 공해 및 영해상 한국선박에의 중국인 승선 불허
 - 외국선박이 구조한 중국인의 상륙 불허
- 출입국관리 대책(법무부, 내무부)
 - 출입국항을 이용한 불법입국자는 퇴거조치(원출발지 또는 중국)
 - 합법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감시 강화 및 불법체류 방지 조치 강구
 - 중국인의 망명 및 제3국 망명주선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4. 불법입국자 발생시 대책(법무부)

- 법무부 주관하에 제3국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조치 시행

202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5. 외교적 민감사항 또는 정치적 난민 발생 시 대책(외무부)

- 외무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치적 난민여부 확정
- 정치적 난민의 경우에도 국내정착 불허처리 원칙
- 항공기 또는 군함 이용시 처리 원칙
 - 군용기 조종사는 제3국 인도시 국내법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 후 처리
 - 민항기 납치범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행사 및 재판 후 신병처리 결정
 - 군함을 이용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지원만 제공 후 퇴거조치
- 난민의 제3국 송환 교섭
 - 난민의 희망행선국 또는 UNHCR(유엔난민기구)과 교섭

한·프랑스 영사 협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41 / 5 / 1-46

1989~90년 중 프랑스 유학생의 의료보험비 관련 민원사항 처리내용임.

1. 프랑스 의료보험비 관련 민원 제기

- 1989.11.9. 민원인은 프랑스 유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아래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
 -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금 1년분 납부 의무
 -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50여 개국 학생들은 9만원을 내는데 비해 한국 유학생들은 20~22만원의 비싼 보험료를 납부함.

2. 민원내용 확인

- 외무부의 민원내용 확인 지시에 따라 주프랑스대사는 1989.12.22.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EC(구주공동체) 12개국 등 41개국) 유학생
 - 사회보장제도 의무가입
 - 사회보장 가입비는 27세 미만은 연간 900프랑 상당, 27세 이상은 연간 9,000프랑 상당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한국, 미국, 일본 등 기타 국가) 유학생
 - 프랑스 정부 초청 유학생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의무가입 대상이고 이는 초청국이 부담
 - 기타 유학생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개인보험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보험료는 연간 1,600~3,000프랑(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종합 의견
 - 한국 유학생의 경우도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일단 가입 후에는 해약불가 조건 및 연령별 보험금액의 차이로 유학생들 스스로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기피함.
 - 민원사항은 프랑스 유학생 사회보장제도와 개별보험가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주프랑스대사관은 영사회보를 통해 유학생 의료보험가입 안내정보를 배포하고, 보험회사 등과 협의하여 1989.9월부터 한국 유학생 의료보험 전담부서를 운영함.

3. 민원인에 통보

- 외무부는 1990.1.5. 민원인에게 주프랑스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통보함.

202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이스라엘 간의 영사협력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영사과

MF번호 2020-141 / 6 / 1-8

1983년 중 이스라엘의 한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통보 관련 내용임.

1. 주일본대사 보고에 의하면 주일본 이스라엘대사관은 1983.3.15.부터 한국 관광객은 무사증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하여 15일간 체류 가능함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3.3.11. 이스라엘의 한국 관광객에 대한 15일 범위 내 무사증 입국 허용조치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함.

한·바누아투 간의 영사협력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영사과

MF번호 2020-141 / 9 / 1-3

1986.3월 중 바누아투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 결정 관련 내용임.

1. 주피지대사는 1986.3.5. 바누아투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1개월간(4개월간 연장 가능) 입국 사증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2. 바누아투 정부는 영국연방국가, EC(구주공동체) 및 한국 등 기타 범주의 국가로 구분하여 사증 면제를 시행함.

202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국선박 베트남 억류사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41 / 10 / 1-50

1989.10월 중 발생한 한국선박의 베트남 억류사건 관련 내용임.

1. 사건 개요

- 선명: STARLET 1호 (어선 148톤)
- 국적 및 선주: 국적 시에라리온, 선주 Pacific Trading LPD(1)
- 승선 인원: 선장 이명수 외 6명
- 나포 경위
 - 1989.10.4. 부산항을 출발하여 중간 보급지인 싱가포르(최종 목적지: 라스팔마스)를 향해 가던 중 대만(구 중화민국) 부근에서 폭풍우를 만나 10.14. 베트남 경비정에 나포됨.

2. 주태국대사를 통한 베트남 측 접촉

- 외무부는 1989.11.9. 동 건을 베트남 측에 적의 설명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도록 주태국대사에 지시
- 주태국대사는 11.16. 주태국 베트남대사 접촉 시, 동인은 동 건을 본국 정부에 즉각 보고했다고 함.

3. 삼성을 통한 해결

- 베트남 측은 삼성이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선주 측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삼성 베트남 지사장은 베트남 외무부 영사담당국장을 접촉한 후 베트남 측 입장을 1989.12.7.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함.
 - 베트남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나, 관련 경비(선박예인, 선원숙식, 정박 선체수리 비용 등)의 처리문제가 있을 것이며, 봉타우 인민위원회 측과 협의 권고
- 삼성 지사장은 12.8. 봉타우를 방문하여 성 인민위 부위원장장을 접촉한바, 인민위원회 측은 영해 침범에 대한 보상금 2만 달러와 관련 제비용 21,114달러를 지불할 경우 선박 출항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함.

4. 석방 및 출항

- 선주 측은 1990.1.8. 베트남 측 관계자를 만나, 나포어선 및 선원의 석방을 위하여 37,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어선은 2.11. 베트남을 출항함.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41 / 11 / 1-131

1990년 중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관련 내용임.

1. 입국 경위

- 필리핀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형의 방문을 위해 출국허가를 받은 베트남인 Pham, Ngoc Thuan이 형을 만나 미국 정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3국행을 결심함.
- 베트남 난민수용소가 있는 한국을 택하여 주필리핀대사관에서 박물관 견학 목적으로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1990.2.24. 한국에 입국함.

2. 경과

- 동인은 한국 체류기간 만료(1990.3.1.)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는데,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한국 정착이나 제3국으로 출국을 희망함.
- 심경변화로 귀국을 희망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으나, 환송지인 싱가포르에서 갑자기 베트남으로의 귀국을 거부하면서 다시 제3국으로의 출국을 주장하자 싱가포르 이민당국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은 후 출발지인 한국으로 환송 조치함.
- 대한항공을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탑승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경유지인 방콕에서 동인을 하기 조치하여 베트남으로 퇴거하도록 지시함.

3. 추후 조치

- 방콕에서도 베트남으로의 퇴거조치가 불가하여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의거, 수용조치한 후 외무부 등과 재협의하여 강제퇴거 조치방안을 강구함.

203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인 처리 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국제법규 / 영사과

MF번호 2020-141 / 12 / 1-131

1989~90년 중 부산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계 난민 87명의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9.5월 베트남 난민 79명이 한국 덕적도에 불법 진입하여 부산 난민수용소로 이송됨.
- 안기부 심문 결과 동인들은 중국을 탈출한 베트남 화교출신이라고 진술함.
 - 1978.4~79.5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생활하다 차별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중국을 탈출

2032

2. 처리

- 외무부는 1989.9.27. 중국 측에 동인들의 인수를 요청하기로 하고 주홍콩총영사에게 신화사 채널을 통해 인수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 근거: 난민들이 최근 10년간 중국에 거주한 중국인이라고 진술,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들이 중국이주 당시 중국 정부가 이들의 거주를 허용했으므로 중국에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
-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은 10.20. 신화사 관계자를 접촉하여 동 중국인들의 조속 인수를 요청함.
 - 신화사 관계자는 10.18. 중국 관계당국에 의하면 35명의 신분이 판명되었는데 그중 32명은 중국에 이주한 인도차이나 난민이며 3명은 중국인이라고 설명함.

3. UNHCR(유엔난민기구)을 통한 교섭 및 처리

-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1990.7.2. UNHCR 도쿄사무소장 면담 시 동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바, 한·중국 양국간 외교관계가 없어 교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UNHCR이 중계자로서 난민들의 인적사항을 중국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베트남 난민의 송출 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영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141 / 13 / 1-106

1989~90년 중 한국에 수용된 베트남 및 중국 난민에 대한 송출 문제임.

1. 1989~90년간 베트남(월남) 및 중국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탈피를 위해 해상을 통해 한국으로 불법 이주해 옴.

- 난민선 1척(중국계 월남인 승선)이 1989.2.13. 서해상 소흑산도에 진입하였으며, UNHCR (유엔난민기구)의 제3국 재정착 보장 약속에 따라 부산 난민수용소에 수용됨.
- 난민선 1척(중국인 78명 승선)이 5.7. 서해상 덕적도에 진입하였으며, 부산 난민수용소에 수용됨.
- 1990.3.15. 노르웨이 국적선 Hoegh Gandria호가 남지나 해상에서 월남 난민 10명을 구조하고 평택 가스터미널에 도착하였으며,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및 UNHCR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동인들을 접수하고 3.16. 필리핀 난민수용소로 이송 조치함.
- 월남 난민선 1척(난민 40여 명 승선)이 4.27. 충남 서산군 해상에 접근함에 따라 해경은 난민 선을 공해상으로 예인하여 추방함.
- 바하마 국적선 Dorsetshire호가 5.15. 인도지나 해상에서 월남 난민 9명을 구조하고 울산항에 입항함. 주한 UNDP(UNHCR 업무대행)는 동인들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동인들이 무작정 출국한 14세정도의 미성년자이고 베트남과의 외교관계가 없어 송환교섭이 어려워 동인들의 상륙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2. 부산 난민수용소 현황

- 1990.11월 현재 부산 난민수용소에 수용중인 난민 수는 230명임.
 - 중국인 87명, 중국계 월남인 42명, 월남인 101명
 - 3년 이상 장기수용 난민 17명

3.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1990.11.23. Guy Prim UNHCR 도쿄사무소장을 면담하고, 중국인 난민의 중국으로의 송출문제, 중국계 월남인 및 월남인의 제3국 재정착 문제에 대해 협의함.

20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20-141 / 14 / 1-22

1990년 중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 거주여권 발급 문제 관련 내용임.

1. 홍콩 British 여권의 성격

- BDTC(British Dependent Territory Citizen) 여권은 영국 식민지 통치 상 필요에 의해 영국의 위임을 받은 속령(홍콩 정부)이 그 속령인에 대해 발급함.
- 동 여권소지자는 영국 국적법에 따라 영국속령인을 포함하는 영국국민(British National)에 해당되지만 영국에 거주권이 있는 British Citizen과는 구별되어 영주거주권이 없으므로 BDTC 여권소지자는 완전한 의미의 영국국적 취득자로 간주할 수 없음.

2034

2.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여권 발급 여부 검토

- 주홍콩총영사는 홍콩 British 여권 및 한국호적 동시보유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에 대한 정부 의견 문의
 -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자는 한국국적 상실(이중국적 불인정)
 - 1997년 홍콩주권의 중국 귀속을 앞두고 홍콩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국여권 신청
- BDTC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여권 발급 관련 정부의 검토의견
 - BDTC 여권 소지자는 대부분 편의상 BDTC 여권을 발급받은 자임.
 - BDTC 여권의 성격상 새로운 국적 취득(한국국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내호적이 있을 경우 한국여권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여권 발급이 타당함.
- BDTC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
 - 한국호적 보유자는 BDTC 여권 포기사실 확인 후 5년 거주여권 발급
 - 한국호적 미보유자는 한국호적 회복 및 BDTC 여권 포기사실 확인 후 5년 거주여권 발급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대처방안 검토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20-141 / 15 / 1-272

1988.5월 외무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1988.7.1.)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 방안을 검토함.

1. 문제의 제기

-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에 따라 여행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부작용 또한 빈발할 것으로 예상
- 1988.5월 외무부 주관으로 상기 부작용 사례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11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작용 사례별 대처방안을 강구함.

2. 부작용 사례별 대처방안

- 범법자 해외도피
 - 국제수사협력 강화 및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
- 해외 불법체류, 불법취업
 - 소양교육 강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계도
- 보안사범, 망명자 발생
 - 공관의 여행자 보호 기능 강화
- 위화감 발생
 - 건전여행 풍토조성을 위한 여행알선업체 계도

3. 1990.3월 주일본대사관은 한국인의 일본 내 불법취업 실태를 보고하면서 대책 강구를 건의함.

- 1989년도에 일본에 불법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제일 많은 수를 점함.
 - 이들 중 상당수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노동부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203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지침 개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20-141 / 16 / 1-284

1990년 중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지침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9.1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후 다수의 여행객이 여권법령에 명시된 여행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무단 여행함으로써 제반 문제점이 대두된바, 현행 행정제제 강화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에 수시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수 여행허가 부여
- 외무부는 내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990.5.1.부터 시행함.

2. 주요 개정내용

- 폴란드, 유고를 적용대상국가(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에서 제외
- 남아공을 특정여행제한 대상국가에서 제외
- 국내거주자의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방문을 위한 복수여행허가제도 세부조항 추가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무단방문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등 구체적인 제제 규정 신설
- 동 지침 적용 대상국가
 - ‘북방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한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12개국): 중국, 소련, 동독,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 특정국가(2개국): 아프가니스탄, 남예멘

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 조정

- 체코, 루마니아, 몽골 및 불가리아 4개국을 1990.5.1.부터 동 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 남예멘도 제외
- 1990.10.3. 서독과 통합한 동독을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 지침 적용대상국가인 “미수교 사회주의국가”에서 “7개 사회주의국가”로 개정하여 수교한 북방 사회주의국가에 적용되도록 한바, 소련과는 1990.9.30. 수교하였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음을 감안, 통상·경제교류 관계가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련조항을 소련에 대해 당분간 적용함.
 - 7개 사회주의국가: 중국, 소련, 알바니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41 / 17 / 1-114

1990년 중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현황

- 북방교류협력 업무지침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동구 수교국가 국민의 한국 입국시 반드시 한국 공관을 통해 입국사증을 취득해야 함.
- 공관장 재량에 의해 발급되는 사증 체류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일반 수교국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 5일 이내 무사증 입국 가능
 - 90일 이내 입국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헝가리, 유고 등에서는 사증체류기간 연장 및 입국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함.
- 문제점
 - 우호 및 이해증진 도모 등 수교국의 반감
 - 일반 수교국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과의 형평성 문제
 - 수교 동구국가의 한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과의 비교시 상호주의 원칙 문제 발생 가능

2. 조치 내용

- 외무부는 동구국가 주재 공관에 한국국민에 대한 주재국의 입국사증 실태파악을 지시함.
- 외무부는 북방외교추진협의회를 개최함.

3. 개선방안 마련(1990.9.20.)

- 원칙적으로 수교후 2년부터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내년부터 90일로 연장 시행함.
- 반면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체류동향 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외사방첩상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함.

203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1 1990.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 국유재산과

MF 번호 2020-141 / 18 / 1-251

1990.1~4월 중 추진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현황임.

1. 1990.1월 외무부는 1990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해당공관에 매입 적정건물을 물색하여 보고할 것을 훈령함.

- 주미국대사관 청사 매입
- 주스위스대사관 청사 매입
- 주벨기에대사관 청사 매입
- 주덴마크대사관 청사 매입
- 주노르웨이대사관 청사 매입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청사 매입
- 주유네스코대표부 관저 매입
- 주미국대사관 관저 증·개축
- 주이탈리아대사관 청사 개축

2. 1990.4월 주뉴질랜드대사는 1987.11월 매입한 관저 신축부지에 관저 신축이 가능하도록 1991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함.

3. 주그리스대사는 1990.4월 최근 수년간 주재국 경제불황에 따른 건축 경기침체로 청사 건물로 사용할 만한 건물임차가 용이하지 않음을 이유로 1990년도 중 청사 국유화 사업을 건의함.

4. 주뉴욕총영사는 1990.4월 직원주택 2채(부총영사 및 영사 주택)의 국유화 사업을 건의함.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2 1990.5-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 국유재산과

MF번호 2020-141 / 19 / 1-303

1990.5~12월 중 추진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현황임.

1. 1990.4월 주시드니총영사는 청사 및 관저의 국유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저는 계약기간이 1991.5월 만료되므로 금년 말 또는 1991년 중 매입을 추진
- 청사는 1990.6월 신청사 입주 예정이므로 기본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1996년경 매입을 추진

2. 1990.5월 주에콰도르대사는 주재국의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임차료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음을 이유로 1991년도에 관저, 1992년도에 청사 국유화 사업 추진을 건의함.

3. 1990.5월 외무부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계획을 재조정하여 해당공관에 통보함.

- 취소
 - 주싱가포르대사관 청사 신축
 - 주스페인대사관 청사 매입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청사 매입
- 감액
 - 주뉴욕총영사관 관저 개축
 - 주스위스대사관 관저 매입
- 신규
 -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청사 매입
 -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매입
 -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증·개축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저 개축
- 증액
 - 주미국대사관 청사 매입
 - 주벨기에대사관 청사 매입
 - 주노르웨이대사관 청사 매입
 - 주필리핀대사관 청사 매입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전2권 (V.1 1983-84.7)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1 / 20 / 1-251

1983~84.7월 중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관련 내용임.

1. 주브라질대사는 1983.10.18. 주브라질대사관 및 관저 증·개축을 건의함.

- 소요액: 약 90만 달러
- 증·개축 면적: 1,400㎡

2. 외무부는 1983.12.16. 증·개축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이므로 설계요율, 설계 용역 범위, 감리용역 등을 검토한 후 건의하도록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함.

3. 청사 및 관저 증·개축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 1984.1.9. 주브라질대사, 청사 및 관저 증·개축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상신
- 주재국 건축가협회의 설계 및 감리용역 기본 요율표 및 건축가 면허증 사본 등 자료 송부
- 1984.2.17. 외무부, 주브라질대사관의 청사·관저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승인
- 1984.4.24. 주브라질대사,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전2권 (V.2 1984.8월-1990)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1 / 1-257

1984.8~90년 중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관련 내용임.

1. 주브라질대사는 1985.1.11.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을 위한 건축업자를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명경쟁계약으로 선정하고자 외무부에 승인을 건의함.
 - 공사예정가격: 73만 달러
 - 지명업체: 현지의 유명 5개 업체
 - 공사기간: 1985.3~86.8월
2. 외무부는 1985.2.6. 주브라질대사관의 증·개축 공사 지명경쟁계약을 승인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85.4.23.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을 위한 시공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 80만 달러
 - 계약상대방: Construtora Noura Schvark LTDA
4. 주브라질대사는 1988.9.2.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증·개축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함.
5. 주브라질대사관은 1990.11.28. 국유재산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함.

20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헝가리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0-142 / 2 / 1-359

1988~90년 중 주헝가리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을 추진함.

1. 헝가리와 대표부(대사관) 건물 상호교환 추진

- 헝가리 측의 제의 내용
 - 양국이 자국 내 공관, 관저, 직원주택 구입, 소유권을 상대국 정부에 이전
 - 1988.12.27.~29.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예정인 양국 외무차관회담에서 원칙 합의를 희망
- 외무부는 아래 이유로 헝가리 측 제의 내용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1988.12월 장관재가를 득함.
 - 헝가리 내 적절한 건물 물색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
 - 건물 임차 시 제반 보안문제가 수반됨을 감안하여 동구권 진출 교두보인 헝가리에 국가 소유 건물 확보가 바람직함.

2. 한·헝가리 정부간 건물교환 합의

- 1988.12.27. 한·헝가리 외무차관회담 시 양측은 자국 내에서 파견국의 대사관, 관저 및 직원용 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국이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소유권 이전 원칙에 합의함.

3. 1990.1월 당초 한·헝가리 간 청사건물 상호교환 원칙에서 상호매입 원칙으로 전환 추진

- 주헝가리대사관은 4.11. 청사용 부동산 및 관저용 부동산의 매입 계약을 체결함.
 - 4.23. 한국 외환은행 취리히 지점과 매입 및 개축자금(총 6,300,000달러) 대차계약 체결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하자보수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3 / 1-228

1986~90년 중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하자보수를 실시함.

1. 주카타르대사관은 1986.6.26. 외무부에 청사 및 관저 신축건물 하자보수를 요청함.
 - 청사 및 관저의 스텐레스 시공부분의 녹슬음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공업체(한국건업) 및 감리회사(공간사)가 책임지고 재시공할 것을 요청함.
2. 주카타르대사관은 1987.4.4. 외무부에 청사, 관저 건물에서 비 새는 곳이 발견되어 조속한 보수작업을 요청함.
3. 주카타르대사관은 1987.6.30. 설계업자 및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접수함.
4. 카타르대사관은 1990.4.14. 외무부에 청사 및 관저의 하자보수공사 완료보고를 함.
 - 5.24.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설계 감리 완료 확인원 송부

204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준공. 전2권 (V.1 198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4 / 1-274

1989.5.3. 외무부는 방콕지역의 임차료 급상승 및 임차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주태국 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 주택의 국유화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추진함.

1. 경위

- 1989.10월 신축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계약 체결
- 1990.10월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준공
- 1990.11월 준공검사

2044

2. 공사 개요

- 대지: 5,818평
- 건평: 청사 708평(지하 1층, 지상 3층), 관저 288평(지상 2층), 직원주택 135평(2동)
- 공사기간: 1989.1~90.6월

3. 소요 예산(6,170,948달러)

- 설계용역(현대엔지니어링): 290,078달러
- 감리용역(조달청): 89,870달러
- 공사비용(유원타이건설): 5,800,000달러

4. 외무부는 청사, 관저, 직원주택 간 별도출입문 및 담장 등을 설치하여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조치함.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준공. 전2권 (V.2 1990)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5 / 1-199

1990년 중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준공과 관련된 내용임.

1. 1989.1.15.부터 시작된 주태국대사관의 청사 708평(지하 1층, 지상 3층), 관저 288평(지상 2층), 직원주택 135평(2동) 신축공사가 건축자재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어 4개월의 연장을 거쳐서 1990.11.15. 준공됨.
2. 주태국대사관 신축청사 자체 방호계획 측정단은 1990.9.10.~12. 태국을 방문하여 청사주변 울타리, 공관장 집무실, 담장 보안등, 암호실, CCTV 설치장소, 소각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유원건설로 하여금 청사보안을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이행하게 한 후 1990.10.31. 신축공사를 완료함.
3. 주태국대사관은 1990.11.1.~3. 신청사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11.5.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함.
 - 단, 신축 관저의 경우, 지근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96층 고층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외교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1991.6월로 신관저 입주시기를 연기함.

204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터키대사관 청사 및 관저부지 매입 검토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6/1-49

1987~90년 중 주터키대사관 청사 및 관저부지 매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터키와 대사관 신축부지 교환문제

- 터키 정부의 주한 터키대사관 및 주터키대사관 신축부지 등가 교환 제안(1988.6월)
 - 주한 터키대사관은 구기동 외교단지에 1800㎡ 부지 요청
 - 주터키대사는 OR-AN 외교단지에 총 9,000㎡(청사 및 관저) 부지 매입 건의
- 구기동 외교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터키와의 외교공관 신축부지 교환은 불가 통보(1989.10월)

2. 주터키대사관의 국유화 사업 건의(1990.4월)

- 터키 앙카라 오란 외교단지 내 청사 및 관저 부지 매입 및 신축
 - 청사 신축규모(안): 대지 4,500㎡, 연건평 1,500㎡, 예산 240만 달러
 - 관저 신축규모(안): 대지 4,500㎡, 연건평 1,500㎡, 예산 240만 달러

주캐나다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7 / 1-63

1981~86년 중 주캐나다대사관 청사매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주캐나다대사관 신축사업 추진(1981년 및 1982년)

- 캐나다 정부의 외국대사관 신축부지 장기 임차계획에 따라 1981.2.19. 청사 부지 임차 및 신축을 건의함.
- 주캐나다대사관은 5.6. 청사부지 매입을 건의하였으나, 오지공관 국유화 우선 추진 방침에 따라 중단됨.

2. 주캐나다대사관 청사매입 추진(1986년)

- 1986.4.17. 신청사 매입 검토 건의
- 1986.6.10. 외무부는 청사매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1988년 이후 국유화 사업 검토 가능 입장

204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Cairo(이집트)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1 1987)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8 / 1-230

1987년 중 주카이로총영사관 청사 매입 관련 내용임.

1. 주카이로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 국유화 건의

- 1987.4.30. 주카이로총영사는 관저 부지 구입 및 신축안, 청사건물 구입안을 건의
 - 임차료 상승, 기존건물 노후, 보안상 문제, 북한대사관에 비해 초라한 점 등 문제점 감안
- 1987.7월 주카이로 청사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대상건물 최종 점검 지시

2048

2. 주카이로총영사관 청사 국유화 사업 추진(건물 매입)

- 주카이로총영사관 청사 매입 예산으로 306만 달러 확보
 - 공관 소요액 311만 5천 달러(건물 매입비 265만 5천 달러, 개조수리비 41만 달러 등) 보고
- 1987.8월 청사 국유화 대상 공동건물주들이 입장을 변경하여 매매 계약 추진 중단
 - 주카이로총영사관은 대체 후보건물 물색이 어려움에 따라 1988년 중 국유화를 건의

주Cairo(이집트)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2 1988-90)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9 / 1-176

1988~90년 중 주카이로총영사관 청사 매입 관련 내용임.

1. 주카이로총영사관 관저 국유화 사업 추진

- 1988.4.13. 주카이로총영사관은 관저 국유화 대상 건물을 물색하고 국유화를 건의
 - 시내중심부 나일강 인접지역에 위치한 대지 650평, 연건평 450평 건물
- 외무부는 1989년 주카이로총영사관 관저 국유화 사업 예산으로 429만 3천 달러를 확보
 - 1989년 청사 국유화 사업 우선 추진으로 관저 국유화 사업은 1990년도에 추진 예정

2. 주카이로총영사관 청사 국유화 사업(청사 매입)

- 1989.5.24.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청사 국유화 적정 후보건물을 보고
 - 시내 중심부 외국공관 및 대사관저 밀집지역 최적지, 대지 1,212평, 건물 560평 규모
- 7.22. 외무부는 총소요 예산 4,225,200달러로 동 건물 국유화를 승인(수리비 등 포함)
- 9.11. 신청사 매입 계약 체결 및 국기 게양 및 총영사관 현판 부착
 - 1990.1.31. 신청사로 이전 예상

204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독일대사관 청사 부속건물 매입 검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 번호 2020-142 / 10 / 1-90

1987년 중 주독일대사관 청사 부속건물 매입을 검토함.

1. 주독일대사관은 1987.8.31. 현 청사의 협소한 사무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인 출입부서들을 별도의 부속건물로 이동배치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자 현 청사 인근지역 소재 청사 부속건물 매입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함.

- 규모 및 건물 형태: 대지 465평, 건평 510평, 지상 2층 지하 1층 벽돌 건물
- 매입 예상가: 72만 마르크(약 402,234달러)

2050

2. 외무부는 1987.11.13. 주독일대사관에 동 청사 부속건물 매입 검토 결정을 통보하고 매입가 인하 교섭, 건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구체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3. 주독일대사관은 1987.12.18. 매입 추진중인 청사 부속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주거용에서 사무용) 신청에 대해 독일 외무부로부터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12.25. 상기 주독일대사관 보고에 따라 부속건물 매입을 보류하고 추후 적정 청사 부속건물을 물색한 후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 번호 2020-142 / 11 / 1-34

1990년 중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매입을 검토함.

1. 주그리스대사관은 1990.7.16. 아테네 도심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인근에 20여 개 외국공관 소재)하고 있는 Psychico지역 소재 신축 단독건물을 청사로 매입 추진하고자 외무부에 건의함.
 - 규모 및 건물 형태: 대지 1,260㎡, 건평 630㎡, 지상 1층 지하 1층 콘크리트 건물
 - 매입 예상가: 280만 달러(1개층 증축 내부 공사비 포함)
2. 외무부는 1990.8.7. 주그리스대사관에 동 건물에 대해 220만 달러 범위 내 매입가를 인하교섭 하도록 지시하고 건물용도 변경 가능여부 및 증축 공사비, 공증비, 소개료 등 구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함.
3. 주그리스대사관은 1990.8.21. 매입가 인하교섭을 통해 245만 달러로 최종 매입대금 결정사실을 보고하면서 동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사매입 추진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90.8.22. 청사매입 관련 2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산지원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청사매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1992년도 국고채 예산사업에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매입 예산을 포함 편성하여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205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주네덜란드대사관 청사 매입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12 / 1-205

1985~90년 중 주네덜란드대사관 청사 매입에 관한 내용임

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8.9.5. 주네덜란드대사관 청사 매입을 건의함.

- 건물형태
 -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 건물 및 별채 3층 건물
- 총 소요액: 약 213만 달러

2052

2. 외무부는 1988.11.22.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청사 매입 승인 및 매입자금을 배정함.

- 배정액: 212만 8천 달러
- 자금 차입
 - 차입처: 외한은행 암스테르담지점
 - 원금은 1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이자는 6개월 LIBOR+0.7%

3.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8.11.22. 청사 매입계약서를 체결함.

- 소요 예산: 212만 8천 달러
 - 건물가격: 141만 3천 달러
 - 내부 수리비: 67만 3천 달러
 - 소개료, 변호사 비용 등: 4만 2천 달러
- 계약 내용
 - 계약체결 시 건물가의 10% 이내 계약금 지불
 - 전액지불과 동시에 건물명도

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8.12.15. 잔금을 지불하고 12.17. 등기이전을 완료함.

주포르투갈대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1 1987-88)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2 / 13 / 1-152

1987~88년 중 주포르투갈대사관의 청사 매입 관련 내용임.

1.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8.11.25. 청사 매입을 건의함.

- 12층 건물 중 7층 전체(305평)
- 소요예산: 약 210만 달러

2. 외무부는 1988.12.22. 주포르투갈대사관에 청사 매입 가계약 체결을 지시함.

- 소요예산: 212만 달러
 - 건물가격: 190만 달러
 - 내부 수리비: 20만 달러
 - 소개료, 변호사 비용 등: 2만 달러
- 내부 구획변경을 위한 포르투갈 당국의 승인 등을 감안하여 1988년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1989년에 정식계약 체결을 추진함.

3.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8.12.30. 청사 매입 가계약을 체결함.

- 소요 예산: 184만 6천 달러
 - 사무실: 162만 달러
 - 복도: 7만 6천 달러
 - 주차장: 15만 달러
- 본 계약은 1989.1.16.~20. 기간 중 체결 예정

205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주포르투갈대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2 1989-90)

생산연도 1987-1990

생산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1 / 1-351

1989~90년 중 주포르투갈대사관의 청사 매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1.6. 주포르투갈대사관이 1988.12.30. 가계약한 청사 매입을 승인함.

2.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9.2.13. 청사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2.27. 청사를 이전함.

- 건물형태: 12층 건물 중 7층 전체 (305평)
- 건물가격: 184만 6천 달러
- 계약 내용
 - 계약금 20% 지불
 - 1차 중도금 30%(시 당국 승인 후 10일 이내)
 - 2차 중도금 45%(1차 중도금 지불 후 30일 이내)
 - 잔금: 등기이전 시

3.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90.7.20. 청사건물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7.25. 건물 잔금을 지불함.

주스위스대사관 청사 매입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2 / 1-201

1987~90년 중 주스위스대사관 청사 매입 관련 내용임.

1. 주스위스대사관은 1989.11.3. 부동산 가격상승 추세 및 외교단지내 건물 신축 제한으로 인해 적합한 청사건물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 임차 사용중인 청사건물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 규모 및 건물 형태: 대지 1,142평, 건평 242평, 독립식 3층 석조 건물 및 지하차고 1동
- 매입비용 내역
 - 건물가: 360만 스위스프랑(235만 달러)
 - 내부수리비: 150만 스위스프랑(96만 8천 달러)
 - 부대경비: 14만 스위스프랑(91,000달러)

2. 외무부는 1989.12.19. 주스위스대사관 청사 국유화 건의를 검토, 승인하고 재외공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지시함.

3. 주스위스대사관은 1989.12.12. 매매 계약서를 체결, 12.29. 매입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부를 이전하고 청사국유화를 완료함.

205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용 건물 매입. 전2권 (V.1 1986-87)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3 / 1-113

1986~87년 중 주미국대사관의 통합청사용 건물(주미국 캐나다 무관부 건물) 매입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87.4.15. 통합청사용 건물 구입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주미국 캐나다대사관 측에 전달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87.5.26. 통합청사용 건물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함.
 - 무관부 건물(1954년 건축)
 -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 단독 건물
 - 매입 예상가격: 약 2,200만 달러
 - 구입 일정
 - 1987.8~9월 매각 입찰 예정
 - 1988.10월 주미국 캐나다대사관 신청사로 이사
 - 1989년 초 주미국대사관 입주
3. 외무부는 1987.6.26. 주미국대사관 기존 부동산 처분계획 보고를 지시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87.6.30. 통합청사 건물 구입 시 기존의 5개 청사 건물 중 2개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며 동 2개 건물의 매각 가격은 약 180~250만 달러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5. 주미국 캐나다대사관은 1988.4~6월경 공개입찰을 통해 무관부 건물을 매각할 예정임을 1987.9.2. 외무부에 통보함.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용 건물 매입. 전2권 (V.2 1990)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4 / 1-234

주미국대사관은 통합청사용 건물(주미국 캐나다대사관 무관부 건물) 매입 계약을 1990.4.17. 체결함.

1. 외무부는 1989.10.27. 통합청사용 건물 매입을 위해 주미국대사관의 입찰 참가를 승인하고, 주미국대사관은 공탁금 25만 달러를 캐나다 측에 전달함.

- 무관부 건물: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 단독 건물

2. 주미국 캐나다대사관 측은 1990.2.12. 주미국대사관에 무관부 건물 양도의사를 표명함.

3. 외무부는 1990.3.26. 상기 무관부 건물 매입과 자금 차입을 승인함.

- 소요 예산: 1355만 3,150달러
 - 건물가격 1350만 달러, 부대 경비 53,150달러
- 자금 차입
 - 한국외환은행 로스앤젤레스지점
 - 원금은 1년 거치 후 10년 균등 분할상환

4. 주미국대사관은 1990.4.17. 상기 무관부 건물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5.8. 등기이전을 완료함.

205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주Sao Paulo(브라질)총영사관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5 / 1-280

1987~90년 중 주상파울루총영사 관저 매입 관련 내용임.

1. 관저 임차 재계약 문제

-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87.7.22. 관저 소유주가 5,000달러 상당 현지화 임차료계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주기를 요구한다면서 관저 임차에 대한 외무부 방침을 문의함.
- 외무부는 7.31. 월 임차료 5,000달러 상당의 현지화 재계약을 원칙 승인함.

2058

2. 청사 및 관저 국유화 건의

-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87.8.6. 임차료 인상 추세에 비추어 청사 및 관저에 대한 국유화를 건의함.
 - 동 총영사는 10.9. 국유화 사업으로 물색하는 주택 현황(아파트 및 단독 주택, 위치)을 보고
- 외무부는 12.8. 관저용 아파트 매입을 승인함.
 - 매입가격: 88만 6천 달러
- 외무부는 12.30. 현 관저 건물의 매입을 승인하고 1988.1.20. 건물의 등기이전을 완료함.

주Toronto(캐나다)총영사관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6 / 1-205

주토론토총영사관은 관저 매입 계약을 1989.4.20. 체결함.

1. 주토론토총영사는 1986.12.9. 토론토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 및 캐나다지역에서의 주토론토총영사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임차 입주 중인 주토론토총영사 관저 국유화를 건의함.
2. 주토론토총영사관은 1987.2.27. 총영사 관저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함.
 - 2층 벽돌 건물(1973년 건축)
 - 대지 749평, 건평 337평
 - 총 소요예산: 134만 6천 달러
3. 외무부는 1989.4.20. 주토론토총영사관에 관저 매입을 승인함.
 - 국고채 예산: 124만 5,517달러
 - 건물가격: 114만 2,241달러
 - 내부 수리비: 98,104달러
 - 부대경비: 5,172달러
4. 주토론토총영사관은 1989.4.20. 상기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7.10. 등기이전을 완료함.

205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피지대사관 관저 매입 검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7 / 1-5

1987년 중 주피지대사관의 대사관저 매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주피지대사는 1987.6.11. 관저 임차계약이 1988.3월 말 만료 예정임을 고려하여 1987년도에 관저를 구입하여 1988년 초에 이전하고자 외무부에 건의함.

● 매입 후보 주택 현황

- 도심지 주택가(인근에 인도, 말레이시아대사관 소재)에 위치한 대지 2에이커, 건평 1/2에이커의 전망 좋은 주택
- 매입가: 50만 달러 요구(협상 시 40만 달러 이하 가능)
- 수리비: 10~20만 달러 소요 예상

● 주택 사정

- 정세불안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
-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상황
- 장기적 관점에서 위치, 규모 등 측면에서 구입 시 경제적 실익 가능

2. 외무부는 1987.7.8. 상기건 관련, 임차료 대비 매입가격이 고가이며 1987~88년 국유화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1989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주피지대사관에 통보함.

주Agana(Guam)총영사관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8 / 1-122

주하갯나총영사관은 관저 매입 계약을 1989.8.25. 체결함.

1. 주하갯나총영사관은 1989.4.10. 외무부에 관저 매입을 건의함.

- 2층 단독 주택
 - 대지 330평, 건평 140평
- 총 소요예산: 131만 6천 달러

2. 외무부는 1989.7.25. 주하갯나총영사관 관저 매입 및 자금 차입을 승인함.

- 배정액: 131만 6천 달러
- 자금 차입처: 외환은행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점

3. 주하갯나총영사관은 1989.8.25. 상기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990.2.8. 등기이전을 완료함.

20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청사 임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 번호 2020-143 / 9 / 1-18

1990년 중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의 청사 국유화 및 임차 문제 관련 내용임.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90.2.16. 청사 임차대상 건물 및 국유화 가능성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함.

- 청사 임차계약이 1990.8.31. 만료되고, 임대인이 건물매각 예정임을 통보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90.4.5. 청사 국유화 대상 건물로 신축건물 내 3층(1000평방미터)을 건의함.

- 한국기업인 두양상사가 건물 매입 후 공간이 임차하는 방안도 건의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90.6.1. 두양상사가 매입한 사무실 일부(600평방미터)를 임차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주미국대사관 구관저 처분 및 직원주택 매입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0-143 / 10 / 1-271

1987~90년 중 주미국대사관 구 관저 처분 및 직원 주택 매입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는 1987.3.13. 관저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관저 사용 문제를 검토한 결과, 동 건물이 주거지에 소재하여 사무실 등 용도로 변경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처분을 건의함.
2. 주미국대사는 1987.4.24. 구 관저 건물의 역사적 의의 및 경제적 가치를 고려, 매각 처분하기 보다는 수석공사 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재건의함.
3. 외무부는 1987.4.30. 동 주택은 규모가 크고 관리유지비가 과다 소요되어 공관 차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매각하여 공관 차석 및 공사용 주택 2동을 매입하는 방안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87.5.12. 부동산 업자에게 구 관저 매각을 의뢰함(소개료: 판매가의 5%).
 - 7.20. 개발업자에게 160만 달러에 매각
5. 주미국대사관은 1987.10.21. 공사 관저 2채의 매입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2.8. 공사용 주택의 매입(가격: 63만 5천 달러)을 승인함.
6. 미 국무부는 1987.11.19. 주택 매입에 동의하고 11.28. 집주인 측이 확인함으로써 매입 계약이 체결됨.
7. 주미국대사는 1990.5.16. 구 관저 매각 자금 집행 결과를 보고함.

206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Vanderdonckt, Paul 주한 벨기에대사관 상무관 간첩사건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43 / 11 / 1-31

1984~85년 중 주한 벨기에대사관 상무관 간첩사건 관련 내용임.

1. 주한 벨기에대사관 직원 간첩 혐의 체포

- 1984.11.9. 주한 벨기에 상무관실에 근무하는 Paul Vanderdonckt가 벨기에 사직당국에 의해 체포 조사 중임.
 - 동인은 1972~77년 중 벨기에 외무부와 계약에 의해 주싱가포르 벨기에대사관에서 근무, 계약 만료로 귀국하여 개인회사에 근무하다가 1981.11월 외무부와 재계약하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상무관실 시장조사관으로 근무
- 동인은 싱가포르 근무 당시 모종의 군사기밀을 동구권 국가에 제공한 혐의로 사직당국에 의해 내사를 받던 중 사적 용무로 일시귀국한 기회에 사직당국에 체포
 - 본 건 담당관인 벨기에 외무부 안전국 차장에 의하면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는 서울 부임 이후 간첩활동 혐의는 미발견됨.

2. 한국 관련 간첩행위 혐의여부 확인요청 공한 발송

- 주벨기에대사관은 1985.1.7. Vanderdonckt의 한국 관련 간첩 혐의 확인을 요청하는 공한을 벨기에 외무부에 전달함.
 - 벨기에 외무부는 1.22. 주벨기에대사관 요청 내용을 사직당국에 통보했고,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내용의 회한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

안상근 재독일 반한 동포 간첩사건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43 / 12 / 1-426

1985~87년 중 재독일 반한(反韓) 동포 안상근 간첩사건 관련 내용임.

1. 안기부 및 보안사의 해외유학생 간첩 학원침투사건 발표(1985.9.9.)

- 이진숙: 1985.3월 귀국, 대구 모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며 학원침투 기반 확보
- 안상근: 이진숙의 활동 검열 임무를 띠고 국내 잠입
 - 1982.9월 독일(구 서독) 반정부지 “우리나라” 편집국장
 - 1984.4월 독일 망명
 - 1984.7~85.6월 동베를린 4차 방문 간첩교육
 - 1985.2월 재독 유학생 이진숙 대동 평양 방문(25일간)
 - 1985.6.27. 서울 도착, 7.15. 안기부에 자수

2. 안상근 사건 관련, 독일 녹색당 의원의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결과

-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5.10.8.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 중인 Müller 녹색당 소속 의원을 면담함.
- 동 의원은 한국 정부가 안상근을 유인하여 귀국시켰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구주국장은 동인이 6.27. 귀국해서 7.15. 체포되기까지의 자유행동 등을 설명하고 동 의원의 언급내용의 오류를 지적함.
 - 동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소문에 근거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 설명이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임.

3. 안상근 사건 개요

- 발단
 - 1985.6.27. 안상근, 독일 정부 발행 망명자 여권을 소지하고 귀국
 - 1985.10.4.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10.18. 자살
 - 1985.11월 독일 외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안상근의 사망에 유감을 표하고 적절한 해명 요청
- 경과
 - 한국 측은 1985.11.19. 및 11.27.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독일 측에 전달하고, 독일 일부 정치인 및 언론의 오해 불식을 위한 협조 요청
 - 독일 정부는 한국 측 설명에 수긍하고 설명자료를 대언론 및 대의회 답변 근거로 활용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
 - 1985.12.10. 본에서 개최된 안상근 추모시위는 일반 및 언론의 관심환기에 실패로 사실상 사건 종료
- 현안 및 대책
 - 안상근의 모친 김영희(반정부 활동, 전직 간호원)에 의한 사건 왜곡 선전은 계속됨.
 - 안상근의 사체 이장 문제, 유류품 등 압수물에 대한 인도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206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김형규 재독일 동포 간첩사건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143 / 13 / 1-68

1987년 중 김형규 재독일 동포 간첩사건에 관한 내용임.

1. 사건 개요

- 김형규는 1983.10월 독일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1987.7월까지 3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남한 혁명에 관한 간첩 교육 및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서독으로 귀환, 북한 공작원과 자주 접촉하던 중 새로운 임무를 지시받고 모친 문병을 구실로 9.2. 국내에 입국하여 암약하다가 9.25. 관계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2. 조치 사항

- 외무부 서구1과장은 1987.9.30. 주한 독일대사관 문정관을 면담함.
 - 주한 독일대사관은 Note를 통해 재독 교포로 독일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Adrian Kim(한국명: 김형규)의 행방 파악을 협조 요청한바, 서구1과장은 9.30. 동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여 상기 내용을 통보함.
- 주한 독일대사관 영사는 10.10. 김형규를 면담함.
 - 김형규는 Welberts 영사 앞에서 3차례 방북한 사실, 북한 지령에 의해 미국, 캐나다 교민 실태 및 아르헨티나 교포 동향과 거점구축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보고한 사실 등을 시인함.
- 외무부 구주국장은 10.12. 주한 독일대사를 면담함.
 - 구주국장은 김형규가 동 여권을 소지하고 체코를 경유하여 평양에 다녀온 일이 있어 명백한 증거물로 채택되어 있음을 설명한 데 대해 동 대사는 동 여권이 정부의 재산이라고 말함.
- 검찰은 11.21. 김형규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죄로 정식기소함.

김대중 귀국. 전8권 (V.6 2.13.-28.)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 동북아1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144 / 3 / 1-225

1985.2월 중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김대중 관련 사항임.

1. 미국 언론 동향

- 3대 TV 방송사(ABC, NBC, CBS)는 1985.2.8.~11. 매 뉴스시간마다 집중적으로 보도
-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신문사 및 라디오 매체들도 사설과 논평 등을 통해 수시 보도

2. Paul Sarbanes 등 미 상원의원 10명은 1985.1.28.자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 및 공민권 회복 보장을 요청함.

3. 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언론도 김대중 귀국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함.

206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김대중 귀국. 전8권 (V.7 3-12월)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 동북아1과 / 재외국민과

MF 번호 2020-144 / 4 / 1-216

1985.3~12월 중 김대중 귀국 후 활동 등에 관한 내용임.

1. 김대중과 김상현 등에 대한 경고 조치

- 형집행정지 중인 자가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정당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 징역)
- 치안당국은 1985.7.1. 관계규정에 따라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고 조치를 취함.
- 마포경찰서장은 8.5. 김대중에게 아래 사유로 경고조치를 발함.
 - 8.2. 신한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 것은 정당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법행위임을 명백히 경고

2. Barbara Mikulski 미 하원의원은 김대중 복권 조치를 희망하는 1985.9.12.자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주미국대사관으로 발송함.

학원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 반응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44/6/1-162

1985년 중 학원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의 반응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8.7. 학원안정법 입법 시 예상되는 한·미국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미국 측 평가 예상
 - 학원안정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에 근본적 의문 제기
 - 학원자율화 및 정치발전에 상충되는 조치로 이해
 - 한국 정부가 학생문제에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입법과정에서의 논란 및 법안 가결 이후의 정국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
- 예상되는 미국 측 반응
 - 백악관,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모두 깊은 우려를 표명할 것이며 한국의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발전 문제에 관해 공개 논평 예상
 - 의회에서는 한국의 학원문제를 비롯한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
 - 미국내 주요 일간지 및 TV 등 언론매체는 본 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
- 인권단체, 학계 및 종교계 등의 반응
 - 이들 단체들은 법률 폐지 요청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서한 발송 및 대표단 파견을 시도할 것임.
 - 진보적 학계인사 및 종교계 인사들의 공개서한 발송 및 주요일간지 기고 예상
- 한·미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양국간 최상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보여준 긴밀한 우호협조 관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
- 대책
 - 미국 측에 법안자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납득하도록 설득 노력
 - 입법과정에서 무리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미 행정부, 의회,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설득 노력 전개
 - 교민,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전개

2.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8.7.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하여 학원안정법의 필요성,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촉구함.

- 운동권 학생의 과격화 성향이 사회적 안정과 안보 기반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법안이 학생들의 처벌보다는 선도에 그 목적이 있고 정부가 법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각계각층의 견해를 듣고 이를 반영할 것임.

206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19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안요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촉구

3. 월포워츠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85.8.11.~13. 군사안보연구협의회에서 행한 ‘최근 한국의 안보 발전과 미국의 정책’ 제하 연설 중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함.

- 국내 일부 언론은 외신을 인용하여 동 연설이 학원안정법 제정 추진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보도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외신 보도는 비판적 시각에서 연설의 내용을 거두절미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바, 월포워츠 차관보가 한국을 비판하거나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논평

대일본 외교 강화 방안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45/2/1-109

외무부는 1985.11월 중 대일본 외교 강화 방안을 작성함.

1. 통상 관계

- 대일본 통상교섭 강화
 - 중요 산업 및 품목별 통상교섭 채널 확대 구축, 설득력 있는 시장개방 교섭
- 효과적인 대일본 수출 확대 활동 전개
 - 일본시장 침투 방안 강구 및 시행
- 대일본 수입상품 분류 다변화 강화
 - 수입대체 유망품목의 조기 국산화 방안 강구
- 일본 경제계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체계적 전개
- 일본의 각종 협회, 조합 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수립

2. 조직적 측면

- 외무부
 - 일본 국회담당 직원 보강, 통상담당 직원 보강
- 주일본대사관
 - 정무관계 직원 보강, 의원별 신상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 경제담당 직원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경제부처 주재관의 통상활동 기능 강화, 주일본대사관의 수출진흥협의회 기능 강화
- 주일본 각 총영사관
 - 관할지역 선거구 후원단체 등 주요 인맥과의 조직적 접촉 강화
- 각 지방 경제관리 및 주요 경제인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
- 일본 경제종합연구소 설치
-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 대일본 로비망 구축
- 주일본대사관의 컴퓨터 시스템 도입

20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미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45 / 15 / 1-148

1985년 중 한·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뉴욕타임즈 1985.4.30.자 사설란에 Edward W. Poitras의 한국 정부 비판 기고문이 풍자만화와 함께 게재되는데 대해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함.

- 5.10.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인의 반박기고문 뉴욕타임즈 전달
- 5.14. 주미대사관 국공보관장 명의 반박문 전달

2072

2. 주미국대사는 1985.7.30. Rangel 미 하원 세입위 소위원장과 면담하고 무역 및 교포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함.

- 주미국대사는 최근 미 의회내 보호무역 입법 동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 미국의 지나친 우려로 한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
- Rangel 의원은 무역문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미국내 정치문제인바, 미국은 막대한 재정 및 무역적자에 처해있으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

3. 한국 정부는 1985.7.3.자 CMS(Christian's Science Monitor)지 독자투고란에 실린 Gregory Henderson의 미·북한 직접접촉 관련 기고문에 대해 11.19. 주미국대사관 대변인 명의의 반박 기고문을 게재함.

- 휴전협정 시 한국 제외 주장에 대해, 휴전협정은 해당국 정부대표가 아니라 군사지휘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미국 장군은 유엔군을 대표하였음을 상기
- 북한은 남침 능력이 없으며 미·북한 접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세계 최대의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은 북한이 무력적화정책을 고집하는데 있음을 주장

한·우루과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45 / 16 / 1-81

1985년 중 한·우루과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우루과이대사의 정무 관련 주요 활동

- 1985.1.21. Flores Silva 집권당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우루과이·중국(구 중공) 간 수교 문제에 관해 의견교환
- 1.22. 외무장관 후보인 Ricaldoni 상원의원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협의
- 1.29. Seregni 좌익연합 당수와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관해 협의
- 5.7. 외무성 신임 정무국장 Marquez 대사와 남북한 관계에 관해 의견교환
- 5.30. Miguel Semino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유조선의 대우루과이 정책수출 문제, La Paloma 어업가공시설 투자 문제 등 협의

2. 경제사절단 우루과이 방문(1985.7.15.~18.)

- 대표단(단장): 유종하 제2차관보
- 방문 목적: 북한의 실질협력 증대를 앞세운 대우루과이 침투 책동에 대처
- 주요 일정
 - 외무장관, 농수산부장관, 교육문화장관, 기획예산장관 등 면담
- 결과
 - 한국 측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제의에 우루과이 측은 호의적 검토 약속
 - 양측은 우루과이의 관심 품목(피혁, 양모, 우육, 곡물, 수산물)에 대한 수출 가능성 협의
 - 한국 측은 제화 및 수산물 가공공장 분야 합작투자 검토
 - 우루과이 측은 합작투자 시 한국의 노동력 사용 비율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
- 종합 평가
 - 우루과이 측은 신정부 출범 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사절단이 방문한데 사의를 표하면서 10월 외무장관의 방한 시까지 금번에 거론된 사항 중 한 두 가지라도 결실을 맺기 희망
 - 우루과이 측은 특히 제화공업 등 기존설비의 유휴율이 높은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희망
 - 우루과이의 대북한 태도는 신정부하에서도 변함없이 부정적 인식을 견지할 것으로 감지

207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호요방(胡耀邦) 중공 당 총서기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 1985.4.13.-2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0-145 / 18 / 1-127

호요방 총서기가 호주(1985.4.13.~18.) 및 뉴질랜드(4.18.~21.)를 방문 계기, 한국 정부는 상주대사관이 있는 호주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한·중국 교류 문제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이 중국 측에 전달되도록 외교활동을 전개함.

1. 한반도 문제와 한·중국 교류에 관한 한국 측 입장

- 한반도 문제
 - 남북회담 등 대화를 통한 남북한 접촉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남북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희망함.
 - 최근 중국이 남북대화 지속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음.
- 한·중국 교류
 -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희망
 - 현재 양국 교류는 국제대회 및 회의 참석 등 다자관계 범위에서 간접 접촉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체육, 문화, 교역 등 제반 분야에서 간접교류를 최대한 확대하여 직접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확보가 중요함.

2. 외무부는 1985.2.22. 주호주대사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호요방 총서기 방문 시 호주 측이 한반도 문제 및 한·중국 관계 등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적의 설명해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한국 측 입장
 -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하여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등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도록 요청
 - 최근 중국의 경제개혁 조치 및 대외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경제특구 및 연안방 도시개발 등 추진 중인 현대화사업 중 가능한 분야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
- 주호주대사는 4.10. 호크 호주 수상을 면담하고, 호요방 총서기 방문 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주도록 요청함.
- 주홍콩총영사는 호요방 총서기 방문 관련 각종 정보를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3. 호크 수상은 1985.4.23. 전두환 대통령 앞 메시지를 통해 호요방 총서기 면담 시 한국 측 입장을 적의 전달했음을 알려줌.

- 남북한 접촉 증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 및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희망하는 한국 측 입장 설명
- 호요방 총서기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

화국봉(華國鋒) 중공 수상 일본 방문, 1980.5.27.-6.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담당관실 / 일본담당관실

MF번호 2020-146 / 1 / 1-203

화국봉 중국(구 중공) 수상이 1980.5.27.~6.1. 일본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5.27. 일왕 예방, 오히라 수상과 회담(두 차례), 국회 방문
- 5.29. 공장 견학, 기자 회견
- 5.30. 나고야 방문 및 공장 견학
- 5.31. 교토 및 오사카 방문, 공장 견학

2. 주요 협의 사항

- 양자협력 확대: 중국 현대화 협력, 통상 증진, 문화교류 증진, 군사협력, 중국 내 자원개발 참여 등
- 한반도, 아프가니스탄사태, 이란사태 등 국제정세 협의

3. 방문 결과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 중국·일본 간 정기 각료회의 개최
- 대일본 석유 및 석탄 안정적 공급을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
- 베이징시민병원 건립
- 일본·중국 문화교류

4. 외무부는 1980.5.27.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서독, 호주, 대만(구 중화민국) 주재 대사 및 주홍콩총영사에게 화국봉 수상의 방일과 관련한 주재국 정부와 각계 반응 및 평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207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중공·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구과

MF번호 2020-146 / 2 / 1-195

1985년 중 중국(구 중공)·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6차 중국·소련 외무차관회담(1985.4.9.~22.)

- 중국은 양국간 3대 장애요소 제거에 진전을 기대하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
- 중국 측은 3대 장애요소 중 가장 해결이 용이한 요소로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을 들면서 소련이 베트남에게 압력을 가해 캄보디아로부터 철수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2076

2. 요리림 중국 부수상 소련 방문(1985.7.9.~16.)

- 아르히포프 소련 제1부수상과 140억 달러 규모의 중·소무역협정에 서명
- 중국 측은 3대 장애요소 문제를 거론했으나 소련 측이 종전의 입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진전이 없음.
- 양측은 양국관계 및 국제문제 등 광범위한 정치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3. Kapitsa 소련 외무차관의 중국 방문(1985.12.5.~13.)

- 양측은 중국·소련 양국관계 외에도 군축, 국제정세 일반, 중동,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구 캄푸차), 남아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함.

4. 이붕 중국 총리가 1985.12.23.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개최함.

- 양측은 중국·소련 관계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
- 고르바초프는 양국 우호관계 강화가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
- 이붕 총리는 중국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기여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Van den Broek 네덜란드 외무장관 중공 방문, 1985.1.15.-2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46 / 4 / 1-25

Van den Broek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1985.1.15.~21.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1. Hoytink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1984.12.3.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방문하여 네덜란드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전달을 요망하는 입장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구두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함.

2. Van den Broek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1985.1.17. 베이징을 방문하여 오학겸 중국 외상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함.

- 중국 측 언급내용
 - 최근 남북한 간 직접접촉은 사태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봄.
 -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평양 정권이 한국을 공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신함.
 - 중국 측은 한국 내 미군 주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대신 남북 화해과정을 고무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함.
- Van den Broek 장관은 한국 외무부장관과의 회담 사실을 언급하면서 베이징 측과 직접 접촉을 갖고자 하는 한국의 희망을 전달함.
 -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함.

207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중공의 대한 태도 조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담당관실

MF번호 2020-146/8/1-109

1980년 중 중국(구 중공)의 대한민국 태도를 조사함.

1. 외무부는 1980.7.2. 아래의 사유로 64개 재외공관에 중국의 대한민국 태도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 등소평 등장 이후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 한반도 문제 토의 시 종전의 회피적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국제회의나 외교모임 등에서 중국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교환하는 사례가 늘어남.

2. 외무부는 1980.8.4.까지 접수된 21개 공관의 보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함.

- 21개 공관 중 2개(핀란드, 시에라리온)를 제외하고는 이제 중국 대사와 한국 대사는 상호 인사와 악수를 나누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눔.
- 과거에는 중국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과 접촉 시, 고의적으로 접촉을 피하거나 한국 외교관을 소개받는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묵살하는 등 적대적 태도를 보였으나 1979년 중순 이후부터 연회 및 기타 공식석상에서 한국 외교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함.
- 대화 내용은 주로 비정치적 사항이나 남북대화나 한국의 경제발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함.
- 중국 당국은 1979년을 전후하여 한국 외교관과의 인사교환 및 비정치적인 일상대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분석됨.

3. 외무부는 1980.8.28. 중국 외교관과의 접촉 강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

- 일반 활동 지침
 - 중국 외교관 및 인사에 능동적으로 접근,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등 중국 외교관 및 인사와의 다방면 접촉을 보다 강화
 - 중국에 대해 정식호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사용하되 필요시 약칭(China) 사용
- 특수 활동 지침
 - 한국의 평화·선린외교정책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중국 외교관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
 - 중국 외교관들이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비정치적 사항에 관한 대화를 통해 우선 개인적인 친분관계 유지 및 발전에 노력
 - 중국·북한 간 특수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를 표시하되, 한반도 현상 유지가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부합됨에 비추어 한·중국 양국간 최소한의 접촉 관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1 1-3월)

생산연도 1977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152 / 3 / 1-173

1977.1~3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한국 관계 조사 결의안 채택(1977.2.3.)

- 조사 내용
 - 한국 정부 관련 기관 및 인사와 이들에 협조 활동하는 미국 내 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 조사
 -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협조하는 미국 내 단체나 인사들과의 정치, 군사, 정보, 경제, 교육, 공보, 기타 모든 분야에 걸친 관계 조사
 - 기타 필요한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
- 조사를 위한 압류 영장은 소위원회(참석 과반수 찬성)와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각각 발부하고,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나 증언의 공개 금지

2. 조사 분야(배경 설명 자료)

- 한국 정부, 특히 중앙정보부의 미국 내 활동
- 한국 정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묵인 및 부작위
- 한국 정부에 의해 악용된 미국과의 군사관계
- 한국 내 미국기업에의 자금제공 강요
- 한·미국 행정협정의 미국 의회 미보고

3. Fraser 소위원회 조사 관련 Progress Report(1977.3.14.)

- 조사반 인원구성(4.4.까지 조사요원 12명 선정), 예산(3.9. 경비결의안 본회의 통과)
- 조사활동은 업무 개시(4.4.) 이전부터 일반적 사항 소개, 특수사항 소개, 자료 정비, 조사착수 이전, 조사활동 착수, 청문회까지 단계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중앙정보부와 문선명 산하기관과의 관계, 문선명 및 박동선 일파의 미국은행 장악을 위한 노력, 중앙정보부에 의한 재미교포 억압, 한국 정부의 미국 언론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한국 정부에 의한 주한미군 계약의 조직적 조작, 한국 정부에 의한 주한 미국기업 자금 갈취, 문선명 단체에 의한 가짜 자선행위 및 라디오 방송을 위한 모금활동과 기금 유용, 의회에 미 통고된 한·미국 간 비밀 행정협정, PL480에 의한 미국판매 관련 부정 중개료 지불 등
- 조사요원 약력

207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4. Fraser 의원은 1977.3.22.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를 위한 컨설턴트 6명 선발 계약에 대한 국제관계위원회의 허가를 요청함.

- Jerome Cohen(하버드대학 교수), Gregory Henderson(Fletcher School 교수), 이재현(전 주미국대사관 공보관장), Richard Mauzy(전 국제기구소위 전문위원), Donald Ranard(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6명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2 4-8월)

생산연도 1977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152 / 4 / 1-204

1977.4~8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Fraser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1977.4.4. 한국 관계 조사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대부분의 미국 언론과 일본 기자, 소련 타스 통신 기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반정부 인사로는 문명자 참석
 - Fraser 의원이 향후 조사 계획과 현재까지 조사팀 구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배석한 직원을 소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기자회견을 통해 Fraser 의원 측이 목적하는 것은 새로운 구체적 사실의 제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조사를 시작한다는 대언론 선전효과

2. 국제기구소위원회 한국 관계 조사규칙이 1977.6.7. 채택된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및 청문회, 청문회 개최 절차, 자료제출 강제 명령, 보고 승인, 조사문건 처리 절차, 규칙의 채택과 개정, 직원, 소위원회 회의 및 청문회 방송 허가 절차 등

3. 외무부는 1977.5.28. 통일교와 한국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해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일교 관련 기업 '일화제약'의 탈세 사건 자료를 법무부와 국세청에 요청함.

4. Fraser 소위원회 김형욱 청문회(1977.7.11.)에서의 조사관 질문사항 및 답변 요지가 수록됨.

- 박동선의 조지타운클럽 설립 관련 은행 융자, 미국판매 중개료, 통일교 박보희 관계,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의 자금 출처, 김한조 건 등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 및 김형욱의 답변 요지

5. 미 국무부는 1977.8.19. 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자료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함.

6. 참고자료

- 미 하원 내 한국 관계 조사를 위한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와 공무수행 규범위원회(윤리위원회)의 조사 근거, 조사기간, 예산, 조사내용, 혐의 내용 비교표
- Fraser 소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를 명할 인사 명단

208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3 9-11월)

생산연도 1977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152 / 5 / 1-190

1977.9~11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청문회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7.9.9. Fraser 의원의 자료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에 따라 회신하되 대사관 기록 및 실정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주미국대사에 지시함.

- Korean Cultural Foundation의 장부 및 문서 등 제공, 박보희 씨의 주미국대사관 방문 관련 사항, 대사관 직원 명부, 박동선 등 7명의 인사 접촉 기록 등에 대한 정부 입장

2082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7.11.29.~30.)

- 손호영(전 뉴욕총영사관 중앙정보부 요원 근무 후 미국 망명)을 필두로 이정식(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 Alan Krause(국무부 소속 외교관), Stefan Leader(극동전문가,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김영진(조지워싱턴대학 교수), La Rocque 퇴역 제독(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유영수(한국계 미국 기업인)에 대한 Fraser 소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의 청문 절차 진행
 - Fraser 소위 위원장, Derwinski 의원, Harrington 의원, Goodling 의원 등 참석 또는 방청
 - 주요 미국 신문, 통신, TV 및 라디오 기자, 한국 및 일본 기자를 포함 약 60명 내외의 기자가 취재하였고 PBS에서는 청문회 진행을 라디오로 생방송
 - 국무부에서 한국과장과 한국과 직원이 참관하였고, 베트남(구 월남) 패망 당시 주월남대사였던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과 반정부 교민 다수 방청
- 각 증인별 질의응답 내용, 첨부

3. 미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 청문회(통일교 관계) 보고서가 수록됨.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4 12월)

생산연도 1977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152 / 6 / 1-260

1977.12월 중 미국 의회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 청문회 결과 보고 및 관련 자료임.

1. 외무부는 1977.12.2. 미 하원 Fraser 소위원회(11.29.~30.)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 결과를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이번 청문회에서는 '76년도 대미공작 방안' 의 공작 방법 및 대상 공개
- Fraser 의원 성명요지, 손호영, 이정식 등 증인의 성명 및 질의답변 요지, 종합평가

2. 수록자료

- 청문회 청문록 원본 및 사본

208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 1월-3.18.)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2/7/1-255

1978.1~3월 기간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1978.2.2. 2건의 Fraser 결의안이 의결됨.

- 조사기간 2개월 연장 결의안, 증인 심문에 의원 참석 하에 진술 청취(deposition) 권한 부여 결의안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3.15.~16.)

- Gary Ledyard 콜롬비아대학 교수, Marshall Green 전 주한 미국대사, William Porter 전 주한 미국대사, Donald Ranard 전 국무부 한국과장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
 - Fraser 위원장 외 Derwinski 의원, Goodling 의원(양 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만 시종 참석 하였고 소위의 Harrington, Hamilton, Ryan 의원은 오전 청문회 도중 퇴장
 - 국내외 다수 언론의 취재진과 Rich 국무부 한국과장, 이재현, 문명자 등 50여 명 방청
- Fraser 의원 개최 성명
 - 한국 정부의 대미국 로비활동 동기, 로비 계획 방법, 미국 관리들의 사전 인지 여부 등 언급
- Derwinski 및 Goodling 의원 성명
 - 조급한 결론 도출을 경고하고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인 청문회 중용
- Ledyard 교수 증언
 - 1960년대말~1970년대초의 한국 내 정세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대미국 로비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비정상적 로비활동은 비난받을만하나, 한국을 전체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 표명
- Green 대사 증언
 - 1969년 당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강력 반대, 원조 제공 가능성이 희박함을 우려했으며, 한국의 지나친 대미국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고 언급
- Porter 대사 증언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크게 우려했고, 청와대 회의 관계 정보보고는 신빙성이 의심됨.
- Ranard 전 국무부 한국과장 증언
 - 청와대 회의 관계 정보보고의 신빙성 관련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동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음.

3. 한국 정부는 1978.3.16. 주미국대사관 및 3.17.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성명을 발표함.

- 신빙성 없는 정보보고에 기초한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 비밀 전락회의 개최 사실 강력 부인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2 3.20.-27.)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2/8/1-174

1978.3.21.~22. 개최된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 관련 내용임.

1.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3.21.~22.)

- James Hise 전 법무부 등록과장, William McDonnell 전 FBI 수사관, Michael Hershman Fraser 소위 전문위원, George Blake 전 농무부 조사관, John Mitchell 전 법무부장관, 박보희 한국문화자유재단 총재 대상 청문회 개최
- Fraser 위원장 외 Derwinski 의원, Goodling 의원만 시종 참석하였고, 소위의 Hamilton, Ryan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만 참석
- 국내외 다수 언론과 Misch 국무부 한국과 직원, 박보희 씨 가족 및 다수의 통일교도 방청

2. 청문회 증언 요지

- Hise 전 법무부 등록과장
 - 자유아시아방송에 관한 국무부 문의 서한 접수 및 회신 발송에 관해 사무적 관여 사실 확인
- McDonnell 전 FBI 수사관
 -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한국 중앙정보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 청와대가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십만 달러 기부금 제공에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 등을 키신저 안보담당보좌관 및 법무장관에게 제공
 - 1971년 FBI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자유아시아방송을 조사할 때 닉슨 대통령, 상원의원들이 동 방송 이사로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 있음.
- Hershman Fraser 소위원회 자문위원
 - 정보보고 열람 결과 동 보고 사용에 제한을 가했던 흔적이 없었음.
- Blake 전 농무부 조사관
 - 박동선이 외국인이라 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국세청 및 FBI, CIA에 보고
 - 박동선이 한국 정부 요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곡물 수출상의 중개인
- Mitchell 전 법무장관
 - FBI로부터 통보받은 정보 보고 중 의회보좌관 2명이 중앙정보부와 관련 있다는 정보는 기억할 수 있고, 동 보고에 따라 앨버트 전 하원의장 면담
 - 하원의장에게만 귀띔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FBI 측에서 배포를 제한하도록 경고하였고 의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

208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 박보희 한국문화자유재단 총재

- 1964년 한국문화자유재단 설립을 위해 양유찬 대사 등과 협의한 바 있으며, 주미국대사관은 오히려 비우호적이었고 재단은 한국 정부 및 중앙정보부와 전혀 무관
- Fraser 소위의 조사는 한·미국 관계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한국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한국 속담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고, 미국 속담에 “전투에는 이겼으나 전쟁에는 졌다”라는 말이 있는바, 현명하게 처리하기 바람.

2086

3.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청문회 보고(1978.3.21.~22.)가 수록됨.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3 4월)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2 / 9 / 1-170

1978.3-4월 중 미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4.11.)

- 한국문화자유재단 박보희 총재를 증인으로 개최
 - Fraser 위원장 외 Derwinski, Goodling 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후반에는 전부 퇴장하고 Fraser 의원 혼자 진행
 - 청문회에는 대부분 통일교도로 보이는 70~80명의 방청객이 참관하였으며, 문명자, 이근팔 등 반정부 인사도 참관
 - 소수의 기자만 참석하여 언론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청문회 요지
 - 청문회 조사관 측은 박보희가 중앙정보부 양두원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문제를 위주로 통일교와 중정 간 관련을 집중 질문하고, 양유찬 대사 및 김종필 공화당 의장과의 관계도 취급
 - 박보희의 성명 및 증언 자세는 상당히 반격적이었으며, Fraser 의원에 대해서는 3월 증언 시보다 더 심하게 비난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4.20.)

- 키신저 전 국무장관, 박보희 한국문화자유재단 총재를 증인으로 개최
 - 오전 청문회에는 Fraser, Derwinski, Goodling 의원이, 오후 청문회에는 Fraser, 더윈스키 의원만 참석
-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증언
 - 한 명의 하원위원이 관련된 문건 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전반적으로 부인
 - 다만 한국인의 중립 혐의는 1975년초 당시 하비브 국무부 차관보가 보고하여 알게 되고 그 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소관 부처에 이송
 - 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정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당시 자신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베트남 문제, 대소련 문제 등으로 여타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
- 박보희에 대한 질의응답
 - 박보희의 퇴역 후 현재까지의 재정적 거래 관계 계속 추궁

208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3. 미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는 1978.4월 약 140개 한국 진출 미국 기업에 설문을 발송하여 이들 업체의 한국 정부 또는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와 그 내용 등 조사함.

- 외무부는 4.19. Fraser 소위의 설문서 발송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에 항의하고 뉴욕 소재 미국·한국 경제협의회로 하여금 Fraser 소위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항의하는 서한 발송 등을 주미국 대사에 지시함.

4.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청문회 보고(1978.4.11. 및 4.20.)가 수록됨.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4 5-6월)

생산연도 1978이호성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2 / 10 / 1-222

1978.6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6.1.)

- 신인섭 American 대학 선임연구정치학자, John E. Nidecker 전 닉슨 대통령 보좌관, Richard L. Sneider 주한 미국대사를 증인으로 청문회 개최
- Fraser 의원 개회사 요지
 - 청문회는 1973~76년 간 한국의 대미국 영향력 확대 시도 조사에 중점
 - 한·미국 양국의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정책, 재미 한인에 대한 한국 중앙정보부의 위협, 미국 대학에 대한 한국의 활동, 박동선·통일교회·한국의 대미국 로비활동에 대한 미 행정부의 사전 인지 여부 등 확인
- 증인별 증언 요지
 - 신인섭 정치학자: 1973~74년 중 일반적인 한·미국 관계와 유신체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등 한국의 국내사정에 관해 진술하고 최선의 로비활동은 매수가 아니라 한국이 민주국가라는 이미지를 미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
 - Nidecker 전 닉슨 대통령 보좌관: 박종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1만 달러 뇌물 건, 노진환 의원의 선거자금 제의 등 증언
 - Sneider 대사: 한국의 유신체제와 내외적 환경, 한국의 대미국 로비활동, 재미교포 협박문제, 현안 중인 한국관계 조사 분야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답변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6.6.~7.)

- 김상근 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송선근 전 교포신문 발행인, 강경구 전 주미국대사관 장학관, 임기서 전 주미국대사관 공보관을 증인으로 청문회
- Fraser 의원 성명
 - 소위원회 조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문선명 목사의 조직과 한국 정부 간 관계임을 강조
- 증인별 증언
 - 김상근 전 참사관: 주미국대사관 내 정보 업무, 친정부 교포신문 단체에 대한 지원, 교포 움직임 조사, 김대중 관계, 대미국 로비활동계획서, 통일교 관계, 외국인 입국금지자 명단 (Black List) 등 증언
 - 송선근 전 교포신문 발행인: 중앙정보부의 미국 내 활동(연설 방해, 한·미국 정치협회 내막, 교포 신문 발행 박해) 증언

208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강경구 전 장학관: 하버드대학, 하와이대학, 조지워싱턴대학 등의 한국학 연구 지원 및 대사관 회의 내용 등 증언
- 임기서 전 공보관: 한국문제연구소(강영훈)에 전달되는 자금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받고 자신의 수표로 연구소에 기부한 사실 증언
 - Fraser 소위가 6.30. 최홍래 참사관의 은행계좌 기록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 측은 7.3. 외교관의 은행계좌 기록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가침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측에 항의 공한 송부

2090

3. 한국 정부는 1978.6.5. 주미국대사에게 전직 외교관을 미국 의회에 출두, 증언하도록 한 Fraser 소위 측에 항의하도록 지시함.
4.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 결과 보고가 수록됨.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5 7-9월)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2 / 11 / 1-243

1978.7~9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7.19.)

- 주제: 한국의 군사발전과 미국의 역할
- Richard G. Stilwell 장군(전 주한미군 사령관), Dennis J. Doolin 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부차관보 및 Nathan White 조지워싱턴대학 중국·소련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증언 청취
- 동 청문회는 Fraser 의원의 짧은 개회사 후 3명의 증인이 각기 준비한 성명을 낭독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동 청문회는 종전과는 달리 미국의 대한국 관계 조사를 위한 청문회라는 성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증인들은 한결 같이 한국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대한국 공약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Fraser 의원도 별다른 반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음.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비공개 청문회(1978.7.20.)

- Fraser 의원 측은 증인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김형욱이 증언한 것으로 확인

3.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8.2.)

- 주제: 한국의 경제개발과 미국의 역할
- Joel Bernstein 박사(전 주한 USAID(미국국제개발처) 사무소장), David Cole 박사(전 주한 USAID 경제고문, 하버드대학 교수), David Walsh 전 주한 USAID 기획관, Michael Adler 주한 USAID 처장 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참사관, Paul Cleveland 전 주한 미국대사관 정부담당참사관, Kuznets 인디애나대학 교수의 증언 청취
- Fraser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증인들이 각자 성명서를 발표한 후 Fraser 의원이 질문하면 각자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
- 증인들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치하하였고 특히 Walsh와 Bernstein 박사는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라고 거듭 강조
- 한편 Kuznets 교수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저임금 문제, 소득배분 문제에 비판적이었고 정치적인 면도 비판
- Fraser 의원은 인권 문제와 경제면에서 대한국 비판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증인들은 회피적이거나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

209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4. 한국 정부는 1978.8.4. 미 하원 Fraser 소위원회의 박정일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은행계좌 기록 요구에 대해 외교공한으로 미 국무부에 항의했으나, Riggs 은행은 8.11. 상기인 계좌 자료를 Fraser 소위원회에 전달함.
5. 미국 미네소타주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1978.9.12.)에서 예상과 다르게 진보적 좌파세력인 Donald Fraser 후보가 보수적 색채의 Robert Short 후보에게 패배
 - 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는 Fraser 의원의 민주당 상원의원 예선 패배로 차질 예상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6 10-11월)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2 / 12 / 1-258

1978.11.1.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Fraser 의원은 1978.11.1. 한·미국 관계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함.

- 한·미국 관계 조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 행정부의 지나친 호혜정책이 문제
-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금 요구는 현재도 계속
-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향력 행사를 기도했으나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데는 실패
- 금번 조사는 지금 종결되나 의회가 이 문제를 계속 추구할 것을 희망

2. 최종보고서 요지

- 구성: 총 7부(서론 및 요약, 한·미국 관계의 회고, 조사활동과 그 결과, 조사 진행상의 특수문제, 외국 정부에 의한 영향력 행사 활동, 추가 견해, 용어 해설)
- 서론 및 요약
 - 서론: 1977.2.3. 국제관계위원회에 의해 한국 문제에 관한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3년간에 걸쳐 조사 실시
 - 안보와 정치 문제, 한국 정부의 정보활동과 계획, 미 행정부와 한국 관계 의혹사건, 경제 관계, 교육·공보 및 문화 활동 기술
- 평가
 - 한국의 영향력 행사 기도는 한·미국 양국간 불신을 야기하여 한·미국 관계의 후퇴 초래
 - 미국 정부도 적극적 행동은 물론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 부담
 -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오늘과 내일의 갈등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해소되고 미국이 여러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 간에 향유하는 원만한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희망
- Fraser 최종 보고서에 견해를 달리하는 Derwinski 의원과 Goodling 의원의 소수 견해가 수록됨.

3. 주미국대사관(1978.11.1.) 및 한국 정부 대변인 논평(11.2.)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이 보고서에서 되풀이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문선명 조직과 한국 정부 간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
- Fraser 소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 활동으로 기존 한·미국 우호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

2093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7 12월)

생산연도 1978이호성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3 / 1 / 1-90

1978.12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8.12.4. Fraser 보고서에 관한 한국 정부 비망록(Aide-Memoire)의 미국 의회 전달과 관련한 처리방안을 주미국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Fraser 보고서에 대한 한국 측 견해를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 공식 기록에 삽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이 비망록 형태로 미 국무부에 전달한 공식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는 형식은 국무부의 판단에 따르는데 이의 없음.

2094

2. Fraser 소위 한·미국 관계 조사보고서 부록 발간(1978.12.7.)

- Appendix A: 조사의 경위와 조사활동 내용
- Appendix B: 국제기구소위원회 및 관계 위원회의 청문회 목록
- Appendix C: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각종 문서의 사본

3. 외무부는 1978.12.11. Fraser 소위원회 최종 보고서 중 김형욱 재산 관련 내용 및 신문기사를 대통령 및 총리 앞 보고함.

- Fraser 소위원회 최종 보고서 중 관계 부분
 - 김형욱은 1977.6.22. 미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15만 달러 미국 반입 증언
 - 김형욱은 1978.1월 유럽에서 미국 입국 시, 6만 4천 달러를 불법 반입한 죄로 유죄 판결
 - 김형욱은 뉴욕의 한 은행에만 400~600만 달러를 예금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및 외국은행에 예치된 김형욱의 재산은 1,500~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워싱턴포스트 제하 기사 "Korea Witness: A Horatio Alger Mysterious about His Millions"
 - 김형욱은 지난 수년 간 라스베이거스 도박장 Caesar's Palace에 120만 달러 지불
 - Citi Bank의 변호사는 하원 국제기구소위에서 김형욱의 재산이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기록은 풍문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
 - 김형욱은 350만 달러 정도의 재산 반입 사실을 인정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9 청문록, 3.15.-16.)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3 / 3 / 1-259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3.15.~16.) 내용을 기록한 청문록임.

1. 3.15. 청문록

- Fraser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Ledyard 콜롬비아대학 한국학전공 교수, Marshall Green, William Porter 전 주한 미국대사의 성명과 질의응답 내용 수록

2. 3.16. 청문록

- Porter 대사와의 질의응답, Donald Ranard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성명 및 질의응답 내용 수록

209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0 청문록, 3.21.-22.)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3 / 4 / 1-197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3.21.~22.) 내용을 기록한 청문록(Transcript)임.

1. 3.21. 청문록

- Fraser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James Hise 전 법무부 등록과장, William McDonnel 전 FBI 수사관, Michael Hershman Fraser 소위원회 전문위원, George Blake 전 농무부 조사관, John Mitchell 전 법무부장관의 성명과 질의응답 내용 수록

2096

2. 3.22. 청문록

- 박보희(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목사 특별보좌관 겸 한국문화자유재단 총재)의 성명 및 질의응답 내용 수록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1 청문회 자료, 3.21.)

생산연도 1978이호성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3 / 5 / 1-206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3.15.~16. 및 3.21.~22.)에서 제시된 자료임.

1.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의원 대상 로비활동 관련 자료
2. 미 국무부 전문 및 서한 사본

209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90-1975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2 청문록, 4.20.)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3 / 6 / 1-139

미국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4.20.)
내용을 기록한 청문록임.

- 4.20. 청문록

- Fraser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 박보희 씨(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목사 특별보좌관 겸 한국문화자유재단 총재)의 증언 및 질의응답 수록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3 청문록, 6.1.)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20-153 / 7 / 1-134

미국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6.1.) 내용을 기록한 청문록임.

● 6.1. 청문록

- Fraser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인섭 American대학 선임연구 정치학자, John Nidecker 전 닉슨 대통령 보좌관,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의 성명 및 질의응답 수록

209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한 미국문화원(서울) 점거 농성사건, 1985.5.23.-26. 전2권 (V.2 농성해제 후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53/9/1-232

1985.5.23.~26. 발생한 주한 미국문화원(서울) 점거 농성사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 5.24. 미 주요 언론보도

(뉴욕타임즈)

- 50명의 학생이 평온리에 사무실을 점거, 미국정부의 공개사과 및 한국 정부의 광주사태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금번 행동은 야당의 광주사태 처리 조사요구가 국회에서 거부된 다음 취해진 것으로 학생들의 항의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증할 것으로 기대됨.

(워싱턴포스트)

- 미국 외교관들은 금일밤 50~100명의 한국 학생들과 협상 중임.
- 과격파 학생들이 미국의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최초의 사건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및 광주 문화원 점거사건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53 / 10 / 1-66

1985년 중 한국 대학생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 사건 관련 내용임.

1. 서울대 등 서울 시내 7개 대학 학생 14명이 1985.11.4. 조선호텔 307호 소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에 침입 및 점거,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 철폐 구호를 외치고 워커 주한 미국대사 면담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요청하며 농성한 사건이 발생함.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진입, 농성학생 전원을 연행함으로써 사건은 종료됨.
- 사건 당시 내부에 미국인은 없었으며 학생들은 사무실내에 라이터용 기름을 살포하고 경찰이 진입하면 방화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연행 당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음.

2. 사건 발생 직후 주한 미국대사관은 사건 처리 관련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해옴.

-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처리할 문제이며,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내와 관용을 갖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기를 바람.

3. 동 사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주요 일간지 및 방송, TV 등이 관심을 나타냈으며 중국(구 중공)과 소련도 방송, 통신 등을 통한 사실보도와 논평으로 반응을 보임.

210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전5권 (V.1 예비회담, 1-6차, 1978.7.7.-15.)

생산연도 1977-1979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실

MF번호 2020-154/2/1-472

베트남(구 월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을 위한 제1~6차 예비회담이 1978.7.7.~15. 개최됨.

1. 베트남 억류 공관원 구출 방안

- 구출 대상: 이대용 공사, 안희완 영사, 서병호 주재관
- 교환석방 문제
 - 베트남 외무성 제1부외상은 1978.1월 말 주하노이 프랑스대사에게 북한 측이 한국 억류 북한 인과의 교환석방 조건으로 한국 공관원 3인의 석방을 용인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 왔다고 알림
 - 한국 측은 5.10. 프랑스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수감 중인 북한 공작원 중 한국 공관원과 같은 인원인 3명 이내에서 북한이 석방을 원하는 명단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함.
- 베트남 측 제의 요지
 - 주랑군 베트남대사관에서 남북한 및 베트남 간 3개국 회담 제의
 -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소위 '혁명적 조선인' 명단을 6.23.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
- 주랑군 베트남대사관에서 실무자회담(6.27.) 및 본회담(7.5.) 개최
 - 한국 측 대표단: 외무부 정무차관보, 아주국장, 중앙정보부 제7국장, 아주과장
- 이후 베트남 측의 수정 제의로 회담 장소가 랑군에서 뉴델리로 변경됨.

2. 예비회담 개최 결과

- 동 회담은 주인도 베트남대사관 직원 사택에서 1978.7.7., 7.8., 7.10. 3차례에 걸쳐 개최됨.
- 예비회담은 교환대상자에 대한 본회의 의제 표현문제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짐.
 - 한국 측은 교환대상자를 사형수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및 베트남 측은 '남조선에 의해 체포, 투옥된 혁명인사와 베트남 측에 억류된 남조선인의 교환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이후 예비회담을 3회 추가로 개최한 끝에 겨우 합의함.
 - 교환대상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Alva Castro, Luis 페루 수상 겸 경제장관 방한, 1985.10.7.-1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56/2/1-134

Luis Alva Castro 페루 수상 겸 경제장관이 1985.10.7.~11. 방한함.

1. 방한 목적

-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서울 총회 참석 계기 한국 정부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 및 산업시찰 등을 통해 한·페루 간의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 모색
 - 현 집권당인 APRA 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외무부 초청으로 1985.7.24. 방한 예정이었으나 동인의 사정으로 연기됨.

2. 방한 의의

- 1985.7.28. 취임한 Alan Garcia 대통령의 친북 성향 등으로 페루의 대북한 수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집권하게 될 페루 신정권 고위 인사의 방한 기회를 활용, 친한국 인식 제고 및 한국산업 발전상 소개로 페루의 대북한 수교 저지
-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및 한국의 중남미 진출기반 조성

3. 주요 일정

- 10.8.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총무처장관 면담
- 10.10. 판문점, 삼성전자, 잠실종합운동장 시찰
- 10.11.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종합제철 방문

4. 방한 결과 평가

- 유력한 페루 고위인사의 방한을 통한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 금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대페루 수교 저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발전하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기대

210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한국 직원 등 중국 방문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156 / 10 / 1-290

1981~85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한국 직원 등의 중국(구 중공) 방문 관련 내용임.

1. 이종영 박사 중국 방문

- 1981.11.7.~17.
 - FAO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공동사업으로 중국 농민들의 농산품 공동판매활동 시찰 목적
 - 이 박사는 상하이 및 근교 그리고 소주지방을 시찰하는 중 중국의 농업관계 직원, 인민공사 소속 농민 및 일반 시민을 접촉하면서 행한 주요 대화 내용, 관찰 소감 및 인상 등을 “급변하는 중국 대륙, 상해 근교 농촌을 가다”라는 여행기로 남김.
- 1982.8.22.~30.
 - 중국 국가농업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중국 농업은행 초청으로 베이징 및 천진지역을 방문
 - 방문소감: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중국의 기본노선 불변, 경제운용에 있어서 실용주의 채택, 사회주의가 점진적으로 변모해가는 모습, 경제에 있어서 실용주의 노선을 대한국 관계에도 적용할 가능성 감지
- 1983.9.1.~30.
 - 식품 유통체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FAO 사절단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2. 오홍근 박사 중국 방문(1983.4.1.~30.)

- FAO 본부가 파견하는 FAO 농업국세조사단의 일원으로 방문

3. 이종연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기좌 중국 방문(1983.8.14.~9.10.)

- FAO 수산양식훈련 과정 참가차 방문

4. 김성훈 박사 중국 방문(1984.10.13.~26., 1985.4.27.~5.11.)

- 중국 농업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유통경제 강의차 방문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 수리남 및 우루과이 방문, 1985.2.20.-3.7.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57 / 2 / 1-316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이 1985.2.20.~3.7. 수리남 및 우루과이를 방문함.

1. 수리남 방문(1985.2.23.~25.)

- 방문 목적
 - 혁명 5주년 기념식 참석
- 주요 일정
 - 보터스 혁명지도자, 미시엘 대통령 서리, 우덴호르트 수상 겸 외상 등 면담
 - 혁명기념 행사 참석
 - 북한의 대수리남 침투 책동 저지
- 방문 결과
 - 북한의 수리남 침투 책동 저지와 관련하여 군부 우익인사인 Gorre 작전처장을 친한국 인사로 확보

2. 우루과이 방문(1975.2.28.~3.3.)

- 방문 목적
 - 상기네티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 주요 일정
 -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임 대통령 하례식 참석
 - 상기네티 대통령, 따리고 신임 부통령 및 상원의장, 이글레시아스 신임 외상, 마르케사노 하원 의장, 리칼도니 상원의원 등 면담
- 방문 결과
 - 북한의 고위 경축특사 파견 등을 통한 침투 책동 저지
 - 한·우루과이 간의 실질경제협력 증진 방안 논의

210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북한·콜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57 / 3 / 1-68

1985년 중 주콜롬비아대사관이 북한의 콜롬비아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임.

1.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5.4.29. 콜롬비아의 대북한 수교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 콜롬비아는 베탕쿠르 대통령 취임 이후 개방주의 외교정책을 기조로 비동맹 가입,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있어, 개방적이고 보편주의 정책에 입각하여 어느 국가와도 수교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비동맹권의 일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콜롬비아 정부에 집요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서방국가의 대북수교가 갖는 의미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 주변국인 페루가 북한과 수교할 경우 콜롬비아에 대한 여파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2. 주콜롬비아대사관은 북한노동당 소속 북한인 3인이 1985.8.14. 콜롬비아에 입국하였음을 확인하고, Carlos Gamba 주재국 외무성 아시아과장에게 동인들 체재기간 중 정치행위 등의 공식 활동 규제를 요청함.

북한·에콰도르 관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57 / 7 / 1-72

1985년 중 북한·에콰도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은 1985.4.7.~14. Febres Cordero 에콰도르 대통령 방미 시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동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면담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됨.
2. 유제영 외 4명의 북한 요원들이 1985.5.8. 에콰도르 과야킬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과야킬 중앙대학과 비밀접촉 활동을 가진 후 출국함.
3. 주에콰도르대사는 1985.6.27. 주재국 외무성 정무차관을 면담한바, 동 차관은 북한 외무차관 일행이 8월 중순경 주재국을 방문하고자 주쿠바대사관을 통해 입국비자를 신청해왔다고 알려줌.
● 이에 대해 동 대사는 사증 발급은 한·에콰도르 우호관계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한바, 동 차관은 금일 중 사증 발급 불허 훈령을 해당 공관에 보내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4. 국제언론인기구 총회(1985.6.29.~7.2.) 참석차 최관홍 외 2명의 북한대표단이 6.28. 리마로부터 에콰도르로 입국함.
5.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북한의 주재국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주재국 인사 면담, 북한요원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항의, 북한 정세 설명, 한·에콰도르 관계 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함.

210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북한·중미 관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58 / 1 / 1-89

1985년 중 북한·중미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가이아나

- 조지타운 근교에 1천 헥타르 규모의 농업 및 공업단지 조성
- 농사시험소 설치 및 100대 트랙터 원조
- Eclips Fall에 3.5메가와트 수력발전소 건설 지원

2108

2. 니카라과

- 주니카라과 북한대사로 1985.8.24. 박명학을 임명
- L.A. Times는 1985.5.4. 9천정 이상의 소련제 AK-47 소총과 수백만 발의 탄약, 수류탄 등 니카라과로 가는 이란 무기가 흥남항에 도착하였는바, 이는 무기의 원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3.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 국립자치대학교 법정대학 강당에서 1985.9.16. '주체사상 세미나' 개최
 - 도미니카 위원회 회장, 법정대학장, 사무국장, 정치학과장 및 교수들과 학생 60여 명 참석

4. 도미니카연방

- Douglas 도미니카연방 좌익 야당당수는 1985.10월 이전에 예상되는 총선을 위해 주가이아나 북한대사에게 선거물자 및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북한은 이동스크린을 부착할 수 있는 선거유세용 마이크로버스 구입자금과 당원용 배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함.

5. 바베이도스

- 북한전시회(1985.6.27.~7.6.) 참석차 주가이아나 북한대사관 직원 3명이 입국함.
-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담(1985.7.1~4.) 참관 명목으로 북한 요원 2명(윤솔철, 윤용진)이 쿠바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됨.

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박리현 주가이아나 북한대사는 최근 검입국 세인트빈센트 수상 예방을 요청하면서 기술원조를 제의한바 있으나, 미첼 수상은 구체적 원조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임.



7. 엘살바도르

- 북한 용병이 엘살바도르 반정부군에 가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8. 쿠바

- 김영남 북한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1985.6.14.~19. 쿠바를 방문, 카스트로를 면담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함.

국제기구회의의 참가 중공 인사 방한 초청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161 / 6 / 1-189

1984~85년 중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기구 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구 중공) 인사 관련 내용임.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총회(1984.11.5.~16.)

- APT 회원국 간 전기통신분야 협력방안 협의
- 한국, 중국 등 18개국 참석
 - 중국 대표: 체신부 대외사업국장 Liu Yuan 등 4명 참석

2. 제3차 AAAP(아시아태평양축산학연합회) 총회(1985.5.6.~10.)

- '아시아지역 복리를 위한 효율적 가축생산' 주제 하에 31개국 대표 참석
 - 동 회의 참가 목적으로 일본 규슈대학에서 수학 중인 중국인을 방한 초청

3. 제2차 범태평양 경영학회(1985.5.13.~15.)

-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독일, 뉴질랜드와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경제, 경영, 기술교환 논의를 위해 400여 명 참석 예정
 - 중국 대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수학 중인 대외무역부 소속 Lin Jian Hai 외 1명 참석

4. 제5차 PBNC(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1985.5.19.~23.)

- 세계 각국 원자력계 저명인사의 연구논문, 원자력개발정책 관련 발표와 토론 진행
- 차기 PBNC 개최국인 중국에서 Lu Guangyi 중국원자력학회 사무총장 등 6명 참석

5. 제14차 물리학 응용군론에 관한 회의(1985.8.26.~30.)

- 원자물리, 핵물리, 고체 및 입자물리 등 광범위한 응용분야와 물리학의 기초이론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는 학술회의
- 중국 대표: Jin-Quan Chen 난징대 물리학과 교수(공산당 중앙위원) 등 8명 참석

6. ESCAP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중소기업 기술정책 세미나(1985.9.17.~20.)

- 중국 대표: Lin Zixin 중국 경제기술사회개발연구센터 컨설턴트 외 1명 참석

7. AFRACA(아시아태평양농업금융협의회) 이사회(1985.10.21.~24.)

- 중국 대표: Zou Yimmin 중국농업은행 해외담당총지배인 참석

8. 제22차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의(1985.10.20.~31.)

- 중국 대표: Zhu Jifeng 중국 라디오 TV 체육국장 등 6명 참석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3차. Rome, 1985.11.9.-28. 전2권 (V.2 이사국 입후보)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161 / 11 / 1-237

1985.11.9.~28. 로마에서 개최된 제2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이사국 선거 한국 입후보 검토 내용과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관련 내용임.

1. 1985.9월 한국 정부는 제23차 FAO 총회 계기 이사국 입후보를 검토하였으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후보를 보류하기로 결정함.

2. 각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 지지 결정

-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이티, 니카라과, 온두라스,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등 FAO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 외무부는 1985.11.4. 동 선거에서 아래 국가를 지지하기로 결정
 - 1986~87년 임기: 파나마, 온두라스, 아이티(중남미), 일본, 인도네시아(아주), 스페인, 터키(유럽), 이라크(근동)
 - 1987~88년 임기: 브라질, 트리니다드토바고, 콜롬비아, 멕시코(중남미), 캐나다, 미국(북미)
- 외무부는 FAO 이사국 선거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지시함.
 - 유럽지역
 - 1986~88년 임기: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3개국 지지
 - 1987~89년 임기: 스위스만 지지
 - 중남미지역
 - 1986~88년 임기: 니카라과를 제외한 3개국 지지
 - 1987~89년 임기: 쿠바 및 온두라스를 제외한 5개국 지지

211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0-162/7/1-69

1985년 중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작성한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으로서 아래 사항을 수록함.

1. 중국의 해양법제도

- 일반적인 방향, 중국의 영해선언, 영해, 어업구역, 방위수역, 기타사항

2. 해양법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방법(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모색)

- 영해 폭에 관한 입장 변경, 경계 해역에 대한 주장, 대륙붕, 제네바해양법 체계에 대한 도전

3. 서해(황해) 및 동중국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 서해 및 동중국해와 그 연안국의 지리적 구성, 한·중국 해양법체제의 불균형, 한·중국 간 협력 가능성, 서해·동중국해에서 국제분쟁의 요소

4. 종합적 전망 및 대책

- 전망: 협력 또는 분쟁 가능성, 대륙붕 문제, 국가 관할권 확대 가능성, 영해,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
- 대책: 중국과의 협력 모색 및 분쟁회피 방향 추구, 협력이 불가피한 분야와 공동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 모색, 중국과 대등한 연안국 권리 확보를 위한 보충조치, 대륙붕정책

5. 참고자료

- 중국영해에 관한 선언, 일본·중국 간 민간어업협정, 중국이 1970.12월 발표한 일련의 주장 및 비난, 유엔 해저평화이용위원회에서의 중국대표 연설문

6. 부록

- 중국 해양법제도의 지리적 명시(5종 지도), 중국 석유개발 현황 및 타국과의 협력관계, 종합지도 축소판 등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 경제협력과

MF번호 2020-163 / 5 / 1-73

1985년 중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한·프랑스 건설협력

- 주프랑스대사는 1985.4.11. 주재국 도시계획·주택·운수부가 아프리카 및 동남아지역에서의 한·프랑스 건설업계 간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한·프랑스 총리회담 및 경제부총리·총리 간 경제회담(4.8.)에서 프랑스 측은 해외건설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희망 의사 피력
- 외무부는 4.15. 한국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는 건설부 및 재무부의 의견 회신에 따라 동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2. 프랑스 국철(國鐵, SNCF) 총재 방한 초청

- 철도청은 1985.10월 프랑스 국철 SNCF 측과 양국간 철도산업분야 기술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방안 협의를 위해 Essig SNCF 사장을 방한 초청함.
 - 동 초청 건은 조중훈 한·프랑스 민간경협위원회 회장과 Pierre Sudreau 프랑스 철도공업협회 회장의 주선으로 추진

211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유공(주)의 수단 석유 합작개발 사업 참여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0-163/6/1-134

1980~85년 중 (주)유공의 수단 석유 합작개발 사업 참여 관련 내용임.

1. 수단의 원유탐사 동향

- 주수단대사는 1980.6.30. 원유 탐사업체 Chevron사의 협조로 수단 서남부지역의 원유탐사 현장을 시찰하고 관찰내용을 보고함.
 - 동 지역은 개발가치가 있는 원유가 충분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Chevron 측도 현재까지의 탐사 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재국의 석유개발 전망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주수단대사는 1981.5.15. 수단의 유전탐사 현황 및 정유공장 건설 계획을 보고하면서 주재국의 석유 전망이 밝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국의 안정적인 원유도입을 위해 주재국 석유탐사 귀추에 계속 유의할 것을 건의

2. (주)유공의 수단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 추진

- (주)유공은 1985.11.1. 수단의 Nile 및 Dongola 광구의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 지분 중 12.325%를 미국의 Sun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12.10. 해외자원개발심의회에서 (주)유공의 수단 Nile 및 Dongola 육상석유광구공동개발사업 심의 안건이 의결됨.
 - 본 사업의 추진으로 국내 소요원유의 장기 안정적 확보는 물론 국제수지 개선 효과와 양국 간의 외교 및 경제교류 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사업 추진 필요
 - 생산·개발사업은 탐사작업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우선 탐사(조사)사업만 허가하고 동 탐사작업 결과에 따라 검토 조치
- 수단 Nile 및 Dongola 광구참여 계획(1985.11월, (주)유공) 자료가 수록됨.

프랑스 핵연료 화학 재처리 시설 도입문제. 전3권 (V.3 언론보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 조약과 / 구주1과 / 북미1과

MF번호 2020-163 / 10 / 1-70

1974~76년 중 한국의 프랑스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경위 및 관련 해외언론 보도내용임.

- 1975.10.29. 미국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핵장비 판매 결정을 “세계적인 핵무기 팽창을 지향하는 거보(巨步)이며 최후의 재난”이라고 규정
 - 핵무기 확산 위험성을 경고하고 특히 분단된 한국에 대한 동 시설 판매는 북한과 일본의 핵무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
- 10.30.~31. 프랑스의 르피가로, 르몽드 신문은 사설에서 프랑스 입장을 천명
 - 한국에 판매될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재생될 물질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취하여졌고 IAEA와 한·프랑스 간 3자협정이 서명되었음을 강조
- 11.6. 워싱턴 포스트는 'Another Bad Nuclear Deal'이라는 제목 하에 한·프랑스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협력사업을 공격하는 사설 게재
- 1976.1.30. 워싱턴 포스트 및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구입 계획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보도
 - 워싱턴 포스트: S. Korea Cancels A Plant
 - 뉴욕타임즈: South Korea Drops Plan to Buy a Nuclear Plant from France
- 2.1. 뉴욕타임즈는 “Seoul Officials Says Strong U.S. Pressure Forced Cancellation of Plans to Purchase a French Nuclear Plant”라는 제목으로 기사 게재
- 3.28. 영국 Sunday Times는 세계 군소국가들에 의한 플루토늄 처리공장 건설에 따른 문제 점을 지적하는 기사 게재

211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중공 대륙붕 문제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0-164 / 4 / 1-153

1973~74년 중 한·중국(구 중공) 간 대륙붕 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 정부의 서해 및 동중국해의 해저자원개발 관련 성명 발표(1973.3.15.)

- 한국은 일방적으로 외국 석유회사를 끌어들여 동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있음.
- 국제 석유독점 재벌은 중국 연안의 해저자원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탐사하여 왔는데, 최근의 시굴은 분명히 중국의 해저자원을 탈취하려는 국제 석유독점 재벌의 새로운 조치임.
-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유보함.

2116

2. 한국 정부의 대응성명 발표(1973.3.16.)

- 현재 탐사시굴이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서해 및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대륙붕 분할선 확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때라도 '중화인민공화국' 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
- 언론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정식 국가호칭(중화인민공화국)을 처음 사용하여 대화를 유도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

3.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통보(1973.3.16.)

- 외무부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당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은 동 성명이 중국 정부 승인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려는 의도임.
- 외무부 성명은 중국이 성명을 통해 서해 및 동중국해지역에서의 대륙붕 분할선 확정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동 지역의 해저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는 데 대해 한국 입장을 밝힌 것
- 특히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의 공사를 조치하여 한국의 대만에 대한 친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강조

4. 한국 정부의 성명에 대한 일본 언론계, 뉴욕타임즈, 볼티모어 선 등 외국 언론 반응 수록

- 일본 아사히신문은 1973.5.7. '한국과의 대륙붕 문제, 중국이 교섭 준비, 해저유전 채굴에 의욕' 제하 기사 보도
- 중국 측 움직임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캐나다 광업자원부장관, 영국 통산부장관이 전언

5. 주유엔 중국대사, 중국의 해양탐사 4원칙 발표(1973.4.2.)

- 모든 연안국은 영해에 대해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개발권 보유



- 연안국 인접해역에서 해양학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타국은 연안국의 사전동의와 국내법 준수 의무
- 연안국은 관할해역에서 타국이 실시하는 학술조사에 참가, 자료 및 조사결과 접수 권리 보유
- 국제해역 존재 자원은 국제기구에서 공동개발 등

211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90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KIWI)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165 / 5 / 1-102

1983~85년 기간 중 개최된 KIWI(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3.7.8.)

- 한국 측은 Matrix상 청색분야(방산 수출상담 허용 품목·국가)는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임의 수출하고(“나”항), 한국에서 생산되는 방산 장비를 “미국형 장비”와 “한국형 장비”로 구분(“라”항) 하는 것을 제안
- 미국 측은 상기 한국 측 제안은 미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나”항이 문제라는 입장 개진

2. 제3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3.10.21.)

- 한국 측은 방산품 수출에 관한 미국 측 답변을 듣고, Matrix 확대 등 국방부장관의 슈나이더 미 국무부차관에게 대한 요청사항 전달
 - Matrix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동 품목 제시 요구
 - 장비구분 문제 협의를 위한 합동 협의기구 설치 제의 등
- 대이란 무기수출 문제, 대북예멘 한국산 무기 수출 문제, 품목별 동의 문제, 차기회의 개최 문제 등 협의

3. 제4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3.10.29.)

- Matrix 상의 적색장비 조건부 수출 허용, 주황색 품목(amber item)과 한·미국업체 간 합의 시 수출허용 백색품목(white item)의 구분 문제
- 녹색 및 백색장비 수출 동의절차 개선 문제
- 한국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미국형 및 한국형 장비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 한국 방산문제 검토를 위한 한·미국 간 상설기구 설치 운영 문제 등 협의

4. 제5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4.5.16.)

- Matrix 문제, 제한 수출품목의 연간 수출물량 결정, 업체 간 협상 허용, 불판매 보증서 발행기관, 미국 군사장비의 한국 방산업체에 의한 정비, 정부간 합의서 채택, 혼합기술 문제 등 협의

5.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한·미국 간 협의경과가 수록됨.

- SCM(한·미국 안보회의) 시 한국 방산에 관한 협의경과와 KIWI 시 협의사항

유양수 교통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1980.2.22.-3.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0-165 / 11 / 1-111

유양수 교통부장관이 1980.2.22.~3.7.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1. 정부는 1980.2.2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규 수습책의 일환으로 유양수 교통부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함.

2. 방문 목적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요 인사 방문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리야드 및 한국업체 주요 공사현장 방문, 한국 근로자 격려
- 표면적인 방문 목적 이외에도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촉발된 제2차 오일 쇼크 이후 원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외교적 노력의 일환

3. 주요 일정

- Nazer 기획부장관 면담 및 오찬
- Abdulla 왕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Jawah Petromin 부총재, Zamil Sabic(사우디아라비아 기간산업공사) 부회장 면담
- Mansouri 도로철도부장관 면담 및 오찬, Sultan 국방항공부장관 면담
- 한국업체 주요 공사현장 방문

4. 방문 결과

- Nazer 기획부장관 면담 시 주요 언급내용
 - 한국 측의 하루 10만 배럴 공급 요청에 대해 전량 공급은 어렵더라도 일부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한국 측의 유류 소비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제시
 - 한국 측이 수교한 '양국간의 경제 및 안보협력방안' 검토 용의를 표명하고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방문이 성공적이고 성과 있는 것(원유의 원활한 공급 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Sabic 부회장 면담 시 주요 언급내용
 - 공업 합작을 통한 한국 측의 장기적 경제협력 제의를 적극 환영하고, Sabic의 고위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합작에 필요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한국 측의 3월 중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환영
 - 대한국 합작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철, 비료, 석유화학의 순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합작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개진

중공 국내정세 및 권력구조

생산연도 1985이호성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65 / 14 / 1-231

1985년 중 중국(구 중공)의 국내정세 및 권력구조 관련 내용임.

1. 제6기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제3차 회의(1985.3.27.~4.10.)

- 토의 의제
 - 1985년도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심의, 1984년 예산·결산 및 1985년 예산 심의
 -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심의, 국무원의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에 관한 잠정 규정 및 조례 결정
 - 상속법 심의, 상임위,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청취 등
- 주요 결의사항
 - 정부 공작보고·홍콩문제에 관한 중국·영국 공동성명·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기초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 결의, 1985년 국가예산안, 1985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상속법안 결의 및 의결 등

2. 제12기 중국 공산당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85.9.13.~16.)

- 인사 개편: 주요 기구 간부의 사표 수리
 - 정치국: 정위원 24명 중 10명 퇴진, 중앙위원회: 총원 346명 중 64명 퇴진, 중앙기율심사위원회: 총원 132명 중 30명 퇴진, 중앙고문위원회: 총원 72명 중 37명 퇴진
- 제7차 5개년 계획 내용 심의
- 주미국대사관은 1985.9.8.~10. 중국 지도층 개편 및 체제 개혁에 관한 특별 연재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한바, 9.12. 외무부에 연재 기사를 송부함.

3. 중국 공산당 특별 전국 대표자회의(1985.9.18.~23.)

- 주요 의제
 - 제7차 5개년 개발계획 제안: 3대 주요 목표 설정, 경제성장 연 7% 목표, 시장경제개혁 계속 추구, 대외무역 연간 700~800억 달러 목표, 외국 자본 및 기술 적극 유치, 전력·원유·철강 생산목표 설정 등
 - 당 요직 간부 선출: 중앙위원회, 중앙고문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주임 등 신규 선임

4. 제12기 중국 공산당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85.9.24.)

- 중앙정치국 및 중앙서기처 간부 인선
 - 중앙정치국 정치국원: 리펑(李鵬) 등 신규 6명 선임
 - 중앙서기처: 차오스(喬石) 등 신규 5명 선임



부 록

I 1990년 I

- 1.10.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 고시 제180호)
- 1.14.-18. 수교교섭대표단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 단장: 홍순영 외무부 본부대사
 - 1.17. 수교의정서 가서명
- 1.15. 한·알제리 외교관계 수립
 - 1.15. 수교공동발표문 서명(New York)
- 1.15.-19. 이흥구 통일원장관 독일 방문
- 1.17. Amado, Luiz Mattoso Mata 제7대 주한 브라질대사 신임장 제정
- 1.17. A. MAJID Haji Abdul Rahim 초대 주한 브루나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7. Vela, Ruben Antonio 제5대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신임장 제정
- 1.17. Elink Schuurman, H.G.A. 제4대 주한 네덜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 1.17.-20. Ghurburrin, Beergoonath 모리셔스 부총리 겸 경제기획개발장관 방한
- 1.18.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한·미국 실무회의(Hawaii)
- 1.19.-22. 한·미국 통상회담(Hawaii)
 - 수석대표: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Adams, Nancy 미국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부대표보
- 1.19.-22. 한·불가리아 수교협상(도쿄)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본부대사 / Ishpekoy, Philip 외무부차관
- 1.22.-25. Sheikh Hisham Hisham M. NAZER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 방한
- 1.25.-28. 조기성 대통령 특사(주과테말라대사) Callejas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27. 취임식
- 1.29.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정 서명
- 1.29.-30. 제22차 한·일본 무역회담(도쿄)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주국장
- 1.30.-2.15. 김재순 국회의원 아주 순방(호주, 태국, 대만(구 중화민국))
 - 호주(2.1.~6.), 태국(2.7.~10.), 대만(2.12.~15.)

- 1.31.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제6차 예비회담(판문점)
- 2.2.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제993호)
- 2.2. 한·폴란드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994호)
- 2.2.-6. 제2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Tripoli)
 - 수석대표: 권영각 건설부장관 / Al-Zaidi 보건장관
- 2.4.-10.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지원 정부조사단 필리핀 방문
- 2.5.-8. 국회의원단 독일 방문
 - 단장: 노승환 국회 부의장
- 2.6. Kasenda, Rudolf F. 제5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 2.6. Luiselli Fernandez, Cassio 제2대 주한 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 2.6. Anouil, Gilles 초대 주한 구공동체(EC)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6. Fetscherin, Walter 제4대 주한 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 2.7. 주유고연방공화국대사관 개설
- 2.8.-9. 우루과이라운드(UR) 고위급 비공식 회의(New Schatel)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 2.9.-22.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중동 순방(북예멘, 오만, 이란)
 - 오만(2.9.~11.), 북예멘(2.12.~15.), 이란(2.16.~19.)
- 2.11. 주Prague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코트라 무역관 개설
- 2.12.-13.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Mosbaker, Robert 상무장관
- 2.13. 한·소련 간의 과학협력협정 서명
- 2.13.-15. 한·불가리아 수교협상(Sophia)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본부대사 / Ishpekoy, Philip 외무부차관
 - 2.15. 수교의정서 가서명
- 2.14.-15. 한·미국 통신회담(Washington, D.C.)
- 2.14.-16. Cheney, Richard 미국 국방장관 방한
- 2.15. 신동원 제12대 주독일대사 신임장 제정
- 2.17.-19. 제3차 한·이란 공동위원회(Teheran)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 Gholam AGAZADEH 석유장관

- 2.20.-21. 한·호주 소고기협상(서울)
- 수석대표: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맥그리거 제1차 산업부 축산담당국장
- 2.20.-23. 마약문제에 관한 유엔특별총회(New York)
- 옵서버대표: 박쌍용 주유엔대사
- 2.21. 제1차 한·미국 고위4인위원회(서울)
- 최호중 외무부장관, 이상훈 국방부장관 / Gregg 주한 미국대사, Menetrey 주한미군 사령관
- 2.21.-23. 한·호주 항공회담(Canberra)
- 수석대표: 안중구 주호주대사관 공사 / Kerr 교통통신부 양자관계국 부국장
- 2.23. 한·호주 간의 항공협정 가서명
- 2.22. 제2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차관 / Perpina-Robert 외무부 정무차관
- 2.22. 주소련영사처 개설
- 2.26.-27. 재일한국인 3세 문제에 관한 한·일본 외무부 아주국장 회의
- 수석대표: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 / 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주국장
- 2.26.-27. 제1차 한·미국 금융정책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Dallas, Charles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 2.26.-28. 제1차 한·호주 원자력협의회(Canberra)
- 수석대표: 한영성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 Jones, C.R. 외무부역부 군축·안보 및 원자력국장
- 2.27. Gribble, Darren P. 제10대 주한 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 2.27. Leken, Stephen Kappai Ole 주한 케냐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 2.27. Rachad Ahmed Saleh FARAH 주한 지부티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 2.27. Butler, Christopher 제5대 주한 뉴질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 2.27.-3.12.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련 방문
- 3.2.-9. 1990년도 공관장 회의(서울)
- 최호중 외무부장관 주제
- 3.4.-7. Khokhlov, Vitali 소련 국제경제협력은행(IBEC) 총재 방한
- 3.4.-12. 박준규 특사(전 민정당 대표) Aylwin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 3.11. 취임식

- 3.5.-30. 국제해저지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회의(Kingston, 자메이카)
- 수석대표: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
- 3.6. 공로명 주소련영사처장 부임
- 3.6. 주서울 불가리아무역대표부 개설
- 3.6.-8. Derzsi, Andras 헝가리 교통·통신·건설장관 방한
- 3.6.-12. 제1차 한·불가리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서울)
- 3.7.-8.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제1차 고위실무회의(SOM)
(싱가포르)
- 수석대표: 이시영 외무부 외교정책특별반장
- 3.10.-15. 핀란드 국회의원단 방한
- 3.11.-23. 최호중 외무부장관 서남아 및 동구 순방(파키스탄, 인도, 유고슬라비아, 체코
(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 중국(3.12.), 파키스탄(3.12.~15.), 인도(3.15.~17.), 유고슬라비아(3.18.~20.),
체코(3.20.~22.), 불가리아(3.22.~23.)
- 3.12.-14. 제1차 아시아지역 원자력 회의(도쿄)
- 수석대표: 이상의 과학기술처장관
- 3.12.-17. 박준규 특사(전 민정당 대표) Collor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 3.15. 취임식
- 3.12.-17. 제29차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베이징)
- 수석대표: 조광제 외무부 본부대사
- 3.12.-19. Aquino 필리핀 하원의장 방한
- 3.12.-19. 과학기술조사단 헝가리 방문
- 3.13. 제2차 한·파키스탄 공동위원회(Islamabad)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 Sahabzada Yaqub Khan 외무장관
- 3.14.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관 개설
- 3.14.-16.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북한 방문
- 3.14.-17. Dunkley, Carlyle 자메이카 문교장관 방한
- 3.15. 주한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대사관 개설
- 3.15. 제2차 한·미국 고위4인위원회(서울)
- 유종하 외무부장관대리, 이상훈 국방부장관 / Gregg 주한 미국대사, Menetrey
주한미군 사령관

- 3.16.-17. 제4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도쿄)
- 수석대표: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오키라 가즈오 외무성 문화교류부장
- 3.17.-4.13. 김영남 북한 부총리 겸 외교부장 아프리카지역 순방(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기니, 가나)
- 나미비아(3.21.~23.), 콩고민주공화국(3.23.~24.), 콩고공화국(3.24.~28.), 코트디부아르(3.29.~30.), 기니(3.30.~4.2.), 가나(4.6.~4.8.)
- 3.18.-22. Aguino 파라과이 하원의장 방한
- 3.18.-22. 노재원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나미비아 독립경축식 참석
- 3.21. 독립선포일
- 3.19. 제1차 재일한국인 3세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회의(도쿄)
- 3.19.-20. 한·미국 소고기협상(Washington D.C.)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Kristoff, Sandra 미국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대표보
- 3.19.-20.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일본 방문
- 3.21. 한·나미비아 외교관계 수립
- 3.28. 수교의정서 서명
- 3.21.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1990.2.19. 각서교환, 조약 제996호)
- 3.21.-27. 당·정대표단 소련 방문
- 단장: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
-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 앞 노태우 대통령 친서전달
- 3.22.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외교관계 수립
- 3.23. 한·불가리아 외교관계 수립
- 3.23.-27. 제2차 한·소련 경제인 합동회의(서울)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 Golanov, Vladimir 연방상의 수석부회장
- 3.24.-26.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몽골 방문
- 3.26. 수교의정서 서명
- 3.24.-27. Andriessen, Frans 구주공동체(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 3.27. 주한 EC대표부 개관식 참석
- 3.26. 한·몽골 외교관계 수립
- 3.26.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 개설

- 3.26.-29. Ansell 뉴질랜드 외무차관 방한
- 3.27. Wolzfeld, Jean Louis 초대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 3.27. Sabogal Perez, Luis 제3대 주한 페루대사 신임장 제정
- 3.27. Misros, Lindsay 초대 주한 솔로몬제도대사 신임장 제정(솔로몬제도 상주)
- 3.27. Juuko, James 주한 우간다대사 신임장 제정(인도 상주)
- 3.27.-29. Lehman, Ronald 미국 국방부 군축국장 방한
- 3.28.-30. 루마니아 수교교섭단 방한
 - 단장: 미트란, 미르차 외무차관
 - 3.30. 수교의정서 서명
- 3.29.-31. 제24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도쿄)
 -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 차장 / 나카무라 코우지 수산청 차장
- 3.30. 이시용 제5대 주교황청대사 신임장 제정
- 3.30. 한·루마니아 외교관계 수립
- 3.30. 한·일본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81호)
- 3.30. 한·세인트루시아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1990.2.27. 각서교환, 조약 제997호)
- 3.30. 한·도미니카연방공화국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1990.2.27. 각서교환, 조약 제998호)
- 3.30. 한·세인트키츠네비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1990.2.27. 각서교환, 조약 제999호)
- 3.30.-31. 제3차 한·일본 21세기위원회 본회의(서울)
 - 수석대표: 고병익 위원장 / 스노베 료조 위원장
- 3.31. 이재춘 제7대 주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
- 4.1.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조약 제995호)
- 4.2. 한·동독 간의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 합의(동베를린)
- 4.2.-4. 제31차 미주개발은행(IDB) 총회(Montreal)
 -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4.2.-7. 제83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Nicosia, 싸이프러스)
- 단장: 박정수 민자당 의원
- 4.3. 주알제리대사관 개설
- 4.4. 제2차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회의(서울)
- 4.4.-6. 제9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Canberra)
- 수석대표: 장상현 동력자원부차관 / Core, Peter 제1차산업 및 에너지부차관
- 4.5. 권동만 초대 주구주공동체(EC)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4.5.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Prague)
- 4.7.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방한
- 단장: Sol-Rolland, Jacques 의장
- 4.7.-16.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련 방문
- 4.9.-12. 한·미국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Angevine, Charles 국무부 운수담당부차관보
- 4.9.-12. 한·중·일·소 경제확대 회의(Bladibostock)
- 4.9.-14. Lachmon, Jagernath 수리남 국회의장 방한
- 4.10. 백영기 제4대 주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 4.12.-15. 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상공장관 방한
- 4.13.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82호)
- 4.13. 한·독일 간의 산업안전전문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83호)
- 4.13. 한·독일 간의 군산 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84호)
- 4.13.-14. 제3차 한·소련 학술회의(서울)
- 4.14.-5.4. 박성철 북한 부주석 동아프리카지역 순방(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잠비아, 보츠와나, 앙골라)
- 에티오피아(4.15.~17.), 짐바브웨(4.17.~21.), 모잠비크(4.21.~24.), 잠비아(4.24.~29.), 보츠와나(4.29.~5.2.), 앙골라(5.2.~4.)
- 4.15.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000호)
- 4.15.-17. 일·한 의원연맹 회장단 방한
- 단장: 다케시다 노보루 회장

- 4.15.-21. Suy, Eric 벨기에 외무장관 고문 방한
- 4.16.-18. 제22차 한·일본 민간경제합동위원회(고베)
- 4.16.-22. Morales Ballesteros, Norberto 콜롬비아 하원의장 방한
- 4.17. Jorae Cespedes Toro 제2대 주한 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 4.17. 야나기 게니치 제9대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 4.17. Wright, David J. 제10대 주한 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 4.17. Volpicelli, Dino 제8대 주한 이탈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 4.17.-22. Vulkoic, Veseline 유고슬라비아 정무장관 방한
- 4.17.-18. 한·미국 무역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Adams, Nancy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 4.19.-5.2.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미국 방문
- 유엔특별총회 참석
- 4.20.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1002호)
- 4.20. 한·미국 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85호)
- 4.20.-21. 가토 무츠키 일본·한국 의원연맹 간사장 방한
- 4.20.-21.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 교섭 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Louda, Otomar 대외무역부 부국장
- 4.20. 한·체코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가서명
- 4.21.-27. Burke 뉴질랜드 국회의장 방한
- 4.23.-25. 박태준 한·일 의원연맹 회장 일본 방문
- 4.23.-27. 제2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베이징)
- 수석대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
- 4.23.-5.1. 유엔 경제특별총회(New York)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차관
- 4.24.-25. 제2차 한·호주 소고기협상(서울)
- 4.25.-26. 한·캐나다 어업회의(서울)
- 수석대표: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Perron, Arthur C. 외무부 북아시아·태평양국장
- 4.25.-26. 제3차 재일한국인 3세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 / 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주국장

- 4.25.-5.10. 북한 외교부 대표단 동남아 순방(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태국(4.25.~5.3.), 말레이시아(5.3.~7.). 인도네시아(5.7.~10.)
 - 단장: 차봉주 부부장
- 4.26. 최동진 제12대 주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
- 4.26.-28. 제28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도쿄)
- 4.27.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개설
 - 4.26. N'Gambani-Zi-Mizele 대리대사 부임
- 4.27. 한·미국 소고기협상(Washington D.C.)
 - 수석대표: 박동진 주미국대사 / Hills, Karla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 4.27. 최종합의서 서명
- 4.28.-5.2. Cordovez Feger, Diego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 4.30. 제18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회의(서울)
 - 수석대표: 정석모 회장 / 하라다 켄 회장
- 4.30. 제5차 한·일본 외무장관회담(서울)
 - 최호중 외무부장관 / 나카야마 타로 외상
 - 재일한국인 3세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정부입장 최종 전달
- 5.1. 한·피지 간의 대피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001호)
- 5.1.-3. 김중희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 미국 방문
- 5.2.-4. 제2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New Delhi)
 - 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장관
- 5.4. 김승호 주코트디부아르대사, 겸임국 니제르 신임장 제정
- 5.4.-27. 북한 외교부 대표단 구주 순방(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 포르투갈(5.4.~9.), 핀란드(5.12.~16.), 노르웨이(5.16.~21.). 덴마크(5.22.~24.), 아이슬란드(5.24.~27.)
 - 단장: 전인철 부부장
- 5.6.-10. 조순 대통령 특사(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Calderon Fournier, Rafael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 5.7.-10. Ridley, Nicholas 영국 상공장관 방한
 - 5.8. 한·영국 상공장관회담
- 5.7.-18. 제43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김정수 보건사회부장관

- 5.8.-11. Solomon, Richard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 5.10.-13. Curien, Hubert 프랑스 연구기술장관 방한
- 5.11. 한·프랑스 과학기술의정서 교환
- 5.10.-18.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남미 비공식 순방(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 5.13.-15. 캐나다 통상대표단 방한
- 단장: Denis, Germain 대외문제 및 국제통상부 차관보
- 5.14.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의원단 소련 방문
- 단장: 이진우 민자당 의원
- 5.14. Erdem, Kaya 터키 국회의장 방한
- 5.14. Abdol Govahi 이란 중공업차관 방한
- 5.14.-16. 한·폴란드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통상국장 / Dabkowski, Z. 민항청장
- 5.16. 한·폴란드 항공협정 가서명
- 5.14.-16. 국제표준화기구(ISO/OIN) 회의(Paris)
- 5.15. 제4차 한·스리랑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5.18. 한·남예멘 외교관계 수립
- 5.19.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발효(조약 제1003호)
- 5.19.-22. 특별사절단 이등휘 대만(구 중화민국) 총통 취임식 참석
- 단장: 김정렬 전 국무총리
- 5.20. 취임식
- 5.19.-30. 정동성 체육부장관 동구지역 및 모로코 순방(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모로코)
- 유고슬라비아(5.20.~21.), 불가리아(5.22.~23.), 체코(5.24.), 루마니아(5.24.~25.), 모로코(5.26.~28.)
- 5.21.-22.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제2차 고위실무회의(SOM)(Singapore)
- 수석대표: 이시영 외무부 외교정책특별반장
- 5.21.-26. Dobrynin, Anatoly 소련 대통령 외교담당고문 방한
- 5.22. 세지마 류조 일본 특사(이토주 상사고문) 방한
-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막후교섭

- 5.23.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의 개정안,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86호)
- 5.23. 홍순영 제9대 주말레이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 5.23. 한·불가리아 체육교류 의정서 서명
- 5.23.-25. 제3차 한·뉴질랜드 소고기협상(Wellington)
- 5.23.-26. 제8차 전직정부수반협의회(IAC)(서울)
- 5.23.-6.2. Norov, Jantsan 몽골 문화부차관 방한
- 5.24.-26.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 5.24.~26. 제1~2차 정상회담(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도시키 수상)
- 5.25. 한·일본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93호)
- 5.25.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제1004호)
- 5.28.-29.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Kuala Lumpur)
- 5.28.-31.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Bonn/Berlin)
 - 수석대표: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Eberle 외무부 공사
 - 5.30. 한·독일 문화교류 의정서 서명
- 5.29.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설립협정 서명
- 6.1. 김일권 제7대 주네팔대사 임명
- 6.1. 정민길 제16대 주홍콩총영사 임명
- 6.1. 주서울 동독무역사무소 개설
- 6.1. 주동베를린 코트라사무소 개설
- 6.2.-11. 민·관합동 경제조사단 소련 방문
 - 단장: 남덕우 무역협회장
- 6.3.-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 6.4. 한·소련 정상회담(San Francisco)
 - 6.6. 한·미국 정상회담(Washington, D.C.)
- 6.4.-6. Moore, Henson 미국 에너지부차관 방한
- 6.6.-27. 제7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옵서버대표: 최영철 노동부장관

- 6.9. 권영순 초대 주몽골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6.9.-15. Wimmer, Willy 독일 국방차관 방한
- 6.11.-12. 제17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박필수 상공부장관 / Evans, Gareth 외무무역장관
- 6.11.-16.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Vienna)
 - 수석대표: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 6.12.-23. 김운용 특사(IOC 집행위원) 동구 순방(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 유고슬라비아(6.12.~16.), 폴란드(6.16.~19.), 헝가리(6.19.~22.)
- 6.13. 주불가리아대사관 개설
- 6.13. 주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대사관 개설
- 6.13. 주루마니아대사관 개설
- 6.14. 한국 무역협회·소련 상공회의소 간의 협력협정 서명
- 6.14. 소련, 사할린·한국 우호협회 창설
- 6.14. 제10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Paris)
 - 수석대표: 박필수 상공부장관
 - '93 대전 EXPO 공인 결정
- 6.14.-17. Asamoah, Obed Yao 가나 외무장관 방한
- 6.14.-18.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미국 방문
- 6.16. 한·콩고 외교관계 재개
- 6.18. 주나미비아대사관 개설
- 6.18. 주몽골대사관 개설
- 6.20.-22. Rodriguez, Andres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 6.23.-26. Alatas, Al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방한
- 6.24.-28. 루마니아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Vasiliu, Ioan E. 대외무역부차관
- 6.25.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관한 한·미국 합의각서(MOA) 서명
 - 이상훈 국방부장관 / Menetry 주한미군 사령관
- 6.25.-27. 한·뉴질랜드 소고기협상(서울)

- 6.28.-30. Somare, Michael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방한
- 6.28.-30. O'Malley, Desmon J. 아일랜드 상공장관 방한
- 6.29.-7.13.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 방한
- 단장: Neiss, Hubert 아시아담당부국장
- 6.30.-7.28.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서아프리카 순방(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기니, 세네갈)
- 나이지리아(6.30.~7.6.), 카메룬(7.7.~12.), 코트디부아르(7.12.~14.), 시에라리온(7.14.~18.), 기니(7.23.~26.), 세네갈(7.26.~28.)
- 단장: 양형섭 의장
- 7.1.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교환서한 발효(1990.5.25. 서한교환, 조약 제1005호)
- 7.1. 한·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1990.6.6. 각서 교환, 조약 제1011호)
- 7.1.-3. Stercken, Hans 독일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
- 7.3.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제7차 예비회담(판문점)
- 7.4.-5.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항공회담(Prague)
- 7.5.-7. 미국 스텐포드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남·북한·미국 3자 군축세미나(San Francisco)
- 7.6. 한·베트남 직업기술원 개설(Ho Chi Minh)
- 7.9. 핵사고 시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009호)
- 7.9.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자원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010호)
- 7.9.-11. Jackson, Rashleigh E. 가이아나 외무장관 방한
- 7.9.-14. 스리랑카 의원대표단 방한
- 단장: Amaratunga, John 의원
- 7.10.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008호)
- 7.15. 한석진 초대 주알제리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16.-18. 제3차 한·소련 해운협의회(서울)

- 7.16.-31.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아일랜드, 벨기에 및 구주공동체(EC), 터키)
- 아일랜드(7.18.~20.), 벨기에 및 EC(7.23.~25.), 터키(7.25.~26.)
- 7.17. 이현홍 초대 주루마니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18.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 7.18.-20. Kalimbawa, Mushobekwa Katana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 방한
- 7.19. Alvarez Baca, Rodolfo 초대 주한 온두라스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19. Lagarini Freire, Jolio 제6대 주한 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 7.19.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투자보장협정 서명
- 7.19.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개설
- 7.19. Urian, Izidor 초대 주한 루마니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19. Bucheli Garcés, Gustavo 제3대 주한 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 7.20. 선준영 초대 주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23.-27. 제21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총회
- 한국, 정회원국 가입
- 7.23.-29.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 7.28. 취임식
- 7.24.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제8차 예비회담(판문점)
- 7.24.-8.19. 최광수 특사(전 외무부장관) 미주 순방(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캐나다(7.25.~28.), 멕시코(7.31.~8.4.), 브라질(8.8.~11.), 아르헨티나(8.12.~14.)
- 7.26.-29. 오노 아키라 일본 운수성장관 방한
- 7.27.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012호)
- 7.27. 김항경 제6대 주미얀마대사 신임장 제정
- 7.27.-28. 제4차 한·일본 21세기위원회 본회의(도쿄)
- 7.27.-28. 제3차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Kuala Lumpur)
- 박필수 상공부장관 / Dato Seri P. RAFIDAH AZIZ 상공장관

- 7.28.-8.9. 최호중 외무부장관 싱가포르 및 구주 순방(노르웨이, 루마니아)
- 싱가포르(7.30.~31.), 노르웨이(8.2.~5.), 루마니아(8.5.~8.)
- 7.28.-8.15. 노재원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인도 및 중동 순방(예멘, 알제리)
- 인도(7.29.~8.1.), 예멘(8.3.~5.), 알제리(8.6.~8.)
- 7.29.-8.7.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 Gaviria, Cesar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7.30.-31.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Singapore)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박필수 상공부장관
- 7.31. 한·일본,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한·미국 상공장관회담
- 7.31.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개설
- 8.1. 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96호)
- 8.2.-4. 제1차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 수교협상(Moscow)
- 수석대표: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 Masluykov, Yuri 부총리
- 8.7. 한·루마니아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 8.7.-9. Solomon, Richard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 8.9. 완전수출 절차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91호)
- 8.9. 동일상태 재수입 절차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88호)
- 8.9.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87호)
- 8.9. 제1차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서울)
- 박필수 상공부장관 / Gradin, Anita 대외통상장관
- 8.9.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 절차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89호)
- 8.9.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90호)
- 8.9.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192호)
- 8.10. 제7차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협의회(서울)
- 문동석 국제기구조약국장 / 노부토시 아카오 유엔국장
- 8.10.-21. 박희도 특사(전 육군참모총장) Balaguer,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 8.13.-14.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Jakarta)
- 수석대표: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8.18.-27. 관민 경제사절단 몽골 방문
- 단장: 윤익섭 외무부 본부대사
- 8.20.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발효
(1990.6.27. 서명, 조약 제1013호)
- 8.20. 한·가나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발효(1990.6.14. 서명, 조약 제1015호)
- 8.20.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 8.20.-9.14. 제4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 8.21.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014호)
- 8.23. 한·니카라과 관계정상화
- 8.26.-9.12. 이홍구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구주 순방(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 독일(8.27.~29.), 오스트리아(8.29.~31.), 이탈리아(8.31.~9.4.), 영국(9.4.~7.), 프랑스(9.7.~11.)
- 8.27.-9.21. 이일규 대법원장 미주(미국, 브라질) 및 포르투갈 순방
- 포르투갈(8.30.~31.), 브라질(9.3.~9.), 미국(9.10.~15.)
- 8.30.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제3차 실무접촉(판문점)
- 8.30.-9.1. 제23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장관 / Siew, Vincent C. (소만장) 경제부장
- 8.31.-9.7. Sukalev. Z 소련 검찰총장 방한
- 9.1. 특허협력조약 제2장(제31-4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 한국에 대하여 발효
(외무부고시 제194호)
- 9.3.-6. Duffy, Michael J. 호주 법무장관 방한
- 9.4. 한·잠비아 외교관계 수립
- 9.4.-6.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 및 협력회의(Bladibostock)
- 수석대표: 공노명 주소련영사처장

- 9.4.-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수석대표: 강영훈 국무총리 / 연형묵 총리
- 9.4.-8. Collins, Gerard 아일랜드 외무장관 방한
- 9.5. 한·호주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 9.5.-6. 제18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도쿄)
- 수석대표: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 다케시다 노보루 회장
- 9.6.-7. Brady, Nicholas F. 미국 특사(재무장관) 방한
- 9.7.-8. 제12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 / Ginandjar 광업에너지부장관
- 9.7.-11. 박익춘 북한 외교부 부부장 중동(수단, 예멘) 및 소말리아 순방
- 수단(9.7.~11.), 예멘(9.11.~15.), 소말리아(9.16.~20.)
- 9.8. 김승영 제8대 주에티오피아대사 신임장 제정
- 9.10. Krakowski, Jędrzej 초대 주한 폴란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9.10.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개설
- 9.10. Zarak Linares, Enrique Antonio 제6대 주한 파나마대사 신임장 제정
- 9.10. Hussein Ali ABDULLATIF 제3대 주한 오만대사 신임장 제정
- 9.10.-12. Kissinger, Henry 전 미 국무장관 방한
- 9.10.-12.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 9.12. 정상회담
- 9.1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Vancouver)
- 9.11.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1016호)
- 9.11.-12. 동북아 국제학술회의(서울)
-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1주년기념
- 9.11.-15.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프랑스 방문
- 9.12. 제7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도쿄)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오와다 외무성 외무심의관
- 9.12.-14. 한·소련 항공회담(Moscow)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한·소련 항공협정 가서명

- 9.13.-14. 한·소련 무역회담 (Moscow)
- 수석대표: 신국환 상공부 제1차관보
- 9.13.-17. Weatherill, Bernard 영국 하원의장 방한
- 9.14. 재일한국인 후손 지위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회의(서울)
- 9.15.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미국 방문
- 9.15.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사전협의
- 9.17.-19.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항공회담(Prague)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9.19. 한·체코 항공협정 가서명
- 9.17.-19. Moi, Daniel Toroitich 케냐 대통령 방한
- 9.17. 한·케냐 정상회담
- 9.17.-21. 제3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 한·소련 과학기술장관회담
- 9.18.-12.5. 제45차 유엔총회(New York)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 9.19. 한·캐나다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발효(조약 제1017호)
- 9.19.-20. Clark, Charles J. 캐나다 외무장관 방한
- 9.20. 한(특허청)·소련(국가발명발견위원회) 간의 특허협정 서명
- 9.20.-21. 한·유고슬라비아 항공회담(Belgrade)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9.20.-21. 한·영국 해운회담(London)
- 9.20.-24. Shaheddine Baly 튀니지 국회의장 방한
- 9.21. 제9차 한·미국 정책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Ross, Dennis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 9.21. 노영찬 제10대 주프랑스대사 신임장 제정
- 9.21.-24. 정동성 체육부장관 중국 방문
- 아시안게임 참관
- 9.23. 한·중국 체육장관회담
- 9.23. 남·북한 체육장관회담(베이징)
- 정동성 체육부장관 / 김유순 국가체육위원장

- 9.23.-29. Nguyen, Pran Duc 베트남 국가기획위원회 수석경제고문 방한
- 9.24.-25. Cresson, Edith 프랑스 특사(유럽부장관) 방한
- 9.2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서명
- 9.25.-27. 제45차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장관
- 9.26.-27. 제2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Gombocz, Zoltan 무역부차관
- 9.27. Prince Dlamani, David 초대 주한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9.27. King, Charles Shu-chi(김수기) 제11대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 신임장 제정
- 9.27. 주쿠웨이트대사관 잠정 철수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9.27. 한·말리 외교관계 수립
- 9.27. Rendon Maldonado, Juan Alfredo 제3대 주한 과테말라대사 신임장 제정
- 9.27. Dorjee, Karma 초대 주한 부탄대사 신임장 제정(방글라데시 상주)
- 9.27.-29.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Geneva)
- 9.30. 한·소련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Shevardnadze, E.A. 외무장관
- 한·소련 수교 공동성명서 서명
- 9.30. 한·소련 외교관계 수립
- 9.30. 한·뉴질랜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97호)
- 9.30.-10.5. Rusak, Nikolai I. 소련 체육장관 방한
- 9.30. 한·소련 체육교류협정 서명
- 10.3. 한·베냉 외교관계 재개
- 1975.10.6. 외교관계 단절
- 10.3. 독일 통일
- 10.4.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발효(조약 제1018호)
- 10.5. 다케무라 마사요시 일본 자민당 의원 방한
- 가네마루 전 부수상 방한 사전조정

- 10.8.-14. CHAMLONG Srimuang 태국 Bangkok 시장 방한
- 10.11. 주한 튀니지대사관 개설
- 10.13.-25. 우루과이라운드(UR) 국회지원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구주 공동체(EC) 방문
- 단장: 한승수 민자당 의원
- 10.15.-16. 제7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대퐁, 자크 대외경제청장
- 10.15.-18. 한·소련 투자보장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Vladimirovich, Sitnin 재정부차관
- 10.15.-19. Air, Brian 영국 원자력청장 방한
- 10.15.-19. Henry 룩셈부르크 왕세자 방한
- 10.15.-20. 제84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Panta del Este, 우루과이)
- 단장: 박정수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 10.16.-19.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수석대표: 강영훈 국무총리 / 연형묵 총리
- 10.17. 한·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1019호)
- 10.17. 송학원 초대 주나미비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0.17.-20. 제3차 한·룩셈부르크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10.17.-20. Garcia, Joaquin Ricardo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 10.18.-22. Chirac, Jacques 프랑스 파리 시장 방한
- 10.20. 한·중국 무역대표부 교환개설 합의서 서명(베이징)
- 10.22.-23.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제1차 고위실무회의 (SOM)(서울)
- 수석대표: 이시영 외무부 외교정책특별반장
- 10.22.-25. Ssemogerere, Paul Kawanga 우간다 외무장관 방한
- 10.22.-26. 제2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총회(Montreal)
- 수석대표: 최성홍 주Montreal 총영사
- 10.22.-26. 일본 대한 수입촉진단 방한

- 10.22.-27. 제26차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Geneva)
- 수석대표: 조규인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 10.22.-30.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 동구 순방(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 루마니아(10.22.~24.), 유고슬라비아(10.24.~25.), 헝가리(10.27.~30.)
- 10.24. 남·북한 체육장관회담(서울)
- 정동성 체육부장관 / 김유순 국가체육위원장
- 10.24.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98호)
- 10.25. 한·독일 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99호)
- 10.25.-28. Dienstbier, Jiri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 방한
- 10.26.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서명
- 10.26.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1020호)
- 10.26.-11.3.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미국 및 스위스 방문
-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한국 측 입장 논의
- 10.27.-11.8. 걸프사태 정부조사단 터키 및 중동 순방(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 단장: 유종하 외무부차관
- 10.30. 주소련대사관 개설
- 주소련영사처에서 승격
- 11.1. Brahim KHELIL 초대 주한 튀니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1. Constantinos Vassis 주한 그리스대사 신임장 제정(도쿄 상주)
- 11.1. Visnjevac, Vukota 초대 주한 유고슬라비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1. Wong Heng Tem, Raymond 초대 주한 싱가포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1.-2. 제4차 한·영국 상설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신성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Maler, David 영국문화원 미주·태평양 동아시아담당국장
- 11.2. 주한 수단대사관 개설
- 11.3. 황남자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중앙아프리카 신임장 제정
- 11.6. 한·일본 의원연맹 간사장 회의

- 정석모 민자당 의원 / 가토 중의원 의원
- 11.6. 주한 예멘대사관 개설
- 11.7.-10. Jovic, Borisav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 11.8. 정상회담
- 11.8.-11. Montealegre, Harold J. 니카라과 특사 방한
- 11.9.-10. 제1차 한·일본 원자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오파 히로시 외무성 과학기술심의관
- 11.1. Raymond Wong Heng 초대 주한 싱가포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10. 한·캐나다 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양해각서 서명
- 11.10.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협정 서명
- 11.12.-14. 강영훈 국무총리 아키히토 일본 국왕 즉위식 참석
- 11.13.-15. 제22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SCM)(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종구 국방부장관 / Cheney, Richard 국방장관
- 11.14. 한·소련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 11.14.-15. Mitsotakis, Constantine 그리스 총리 방한
 - Dimas, Stavros 공업기술장관 수행
- 11.14.-15. Solomon, Richard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 11.14.-17.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 11.15. 정상회담
- 11.15. 한·불가리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1990.3.23. 서명, 조약 제1021호)
- 11.15.-12.9.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위원 남미 순방(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파라과이(11.21.~24.), 아르헨티나(11.24.~27.), 브라질(11.28.~30.)
- 11.16.-23. Medvedev, Vadim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 방한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초청세미나 참석
 - Gorbachev 대통령 친서 휴대(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초청 관련)
- 11.17. 한·헝가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11.19.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아주국장회의(서울)

- 11.19.-23. 한·소련 이중과세방지협약 실무회담(서울)
- 수석대표: 김용진 재무부 관세담당차관보 / Rodjushkin, Vladimir 관세청 차장
- 11.20.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01호)
- 11.21. 한·포르투갈 간의 문화협정 서명
- 11.22.-24. Wong Kan Seng 싱가포르 외무장관 방한
- 11.23.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02호)
- 11.23.-30. Nazarbayev, Nursultan A. 소련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방한
- 11.24. 한·독일 간의 한·독일 신채탄법 도입 및 광산재해 예방사업 보충약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03호)
- 11.25.-26. 제15차 한·일본 정기각료회의(서울)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 나카야마 타로 외상
- 11.26.-29. Liang Su-Yung(양숙웅) 대만(구 중화민국) 입법원장 방한
- 11.28.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04호)
- 11.29. Murshed, Iftikkar 제3대 주한 파키스탄대사 신임장 제정
- 11.29.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통일각)
- 11.29. Gonzalez Cubero, Rafael Angel 제4대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 11.29. Mernier, Andre 제8대 주한 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 11.29.-12.6. Chit Swe 미얀마 농림장관 방한
- 11.30. 주르완다대사관 폐쇄
- 12.3.-5. 제25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총회(Phonpei, 마이크로네시아)
- 단장: 서정화 민자당 의원
- 12.3.-6. Sy, Seydina Oumar 세네갈 외무장관 방한
- 12.3.-6. Soares, Joao Clemente Baena 미주기구(OAS) 회장 방한
- 12.3.-7.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 각료회의(Brussel)
- 수석대표: 박필수 상공부장관,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 12.3.-16. 고시로 이시다 일본 공명당위원장 방한
- 12.7. 제2차 한·소련 투자보장 실무회담(Moscow)
 - 수석대표: 최대화 외무부 통상국장 / Sytnin 재무차관
 - 한·소련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 12.7. 주한 소련대사관 개설
- 12.8.-12. 북한 19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대표단 방한
 - 단장: 성동춘 음악가동맹 부위원장
- 12.11. 장훈 제5대 주스리랑카대사 임명
- 12.11. Sokolov, Oleg M. 초대 주한 소련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2.11. Attalla Hamad Bashir 초대 주한 수단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2.11. Lindeman, Gunnar 제3대 주한 노르웨이대사 신임장 제정
- 12.1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수석대표: 강영훈 국무총리 / 연형묵 총리
- 12.11.-12. Renon, Gerard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 12.11.-20. 조순 특사(전 부총리) 미국 방문
- 12.12. 제108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Paris)
 - 수석대표: 오명 '93 대전 EXPO 조직위원장
- 12.12.-13. 제4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도쿄)
 - 수석대표: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오파 히로시 외무성 과학기술심의관
- 12.13.-16.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 12.14.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모스크바 공동선언 발표
- 12.14. 한·소련 간의 투자보장협정 서명
- 12.14. 만국우편연합(UPU) 헌장 제4추가의정서 서명
- 12.14. 한·소련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 12.14.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1022호)
- 12.14. 한·소련 간의 이종과세방지협정 서명
- 12.17.-18. 제11차 한·미국 무역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Adams, Nancy 미국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담당부대표

- 12.18.-22. 중국 무역대표부설치대표단 방한
- 단장: Zhong Minn(중민) 중국 국제상의(CCOIC) 연락부장
- 12.21. 한·루마니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1990.8.7. 서명, 조약 제1024호)
- 12.21. 한·루마니아 간의 무역협정 발효(1990.8.7. 서명, 조약 제1025호)
- 12.28. 한·그레나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90년(II)

인 쇄 | 2021년 3월 8일

발 행 | 2021년 3월 25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강호, 송금영, 엄기영, 이강국, 이휘진, 정인균,
하태운

감수위원 류광철, 이호성

인 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